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55호

2026. 6. 11.(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6-1788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제2026-1790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제2026-1791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제2026-1792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5

◈ 고 시

제2026-314호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7
제2026-321호 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9
제2026-322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 157
제2026-323호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8
제2026-324호 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4
제2026-325호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96
제2026-326호 어울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6
제2026-327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9
제2026-328호 금천구 시흥3동 937-11번지 일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고시 ····· 257
제2026-3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제정 · 변경 고시 ····· 260
제2026-332호 도시관리계획(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61
제2026-333호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88
제2026-334호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19

제2026-335호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44
제2026-336호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73
제2026-33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14

◈ 공 고

제2026-1730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 423
제2026-173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26
제2026-1736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427
제2026-1740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28
제2026-1741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434
제2026-1742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440
제2026-175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442
제2026-1760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443
제2026-176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444
제2026-177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446
제2026-177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47
제2026-178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462
제2026-1781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512
제2026-1782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514
제2026-178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515
제2026-178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516
제2026-1799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517
제2026-1808호 시금고 지정 공고 ····· 524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6-25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525

◈ 구 고 시

제2026-9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 532

제2026-56호 도시계획시설[증산문화공원(가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 535
제2026-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 544
제2026-54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목동 408-78) 고시(양천구) ····· 546
제2026-109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 559
제2026-107호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 566
제2026-108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 569

◈ 구 공 고

제2026-890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제설차량 주차장 등 건설사업](강북구) ····· 571
제2026-10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노원구) ····· 572
제2026-1177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공람공고(영등포구) ····· 574
제2026-1444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삼성동 168-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강남구) ····· 621
제2026-1453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6-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강남구) ····· 623

◈ 사업소고시

제2026-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24
제2026-2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24
제2026-2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25
제2026-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25

◈ 사업소공고

제2026-26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래한강본부) ····· 626

◈ 기 타

제2026-1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46
제2026-17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47

◈ 정 정

제2026-330호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고시 ····· 648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88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변화하는 도시환경 및 기술발전에 맞춰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심의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나. 위원회 부위원장 정수 및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원회 회의록의 속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
라. 우수공공디자인과 표준형 디자인 권장을 명시함
(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마. 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을 공공디자인 사업 환경 및 사회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비함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디자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담당관(전화:02-2133-2192, E-mail: j1200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3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명,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 2명은”을 “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로, “호선한다”를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회의록 등의 비치)”를 “(회의록 등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록 또는”을 “회의록과”로,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을 “녹취 등을 통해 회의록을 작성할”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표준형 디자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된”을 “표준형 디자인, 인증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2)(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 · 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 굴다리 등(승강기,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 무단횡단금지시설 · 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파.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캐노피 포함) 하.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거.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 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 · 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마.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 보행통로, 휴게공간 및 특화공간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들목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다. 수변 시설물 라. 빗물펌프장
자전거 이용시설	가. 공공자전거, 안내시설, 킥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 나.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

2. 그 밖의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통신안테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가로친수시설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재활용수거함, 대기오염 안내시설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흡연부스 · 쉘터, 옥외흡연공간 마. 음수대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 · 마을버스 ·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 시티투어버스 · 노면전차 승차대 및 경전철 정거장(정류장, 정류소 포함) 다.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 ·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 라.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진 · 출입표지 마.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바.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교통 감시시설 사. 볼라드, 보호펜스 아. 횡단보도 쉘터 자. 신호등주 차. 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카. 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기기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 · 공공기관 안내표지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 · 구두수선 · 거리가게 · 자동판매기 · 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입구, 위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자동차 주차장 · 광장 ·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마. 스마트쉼터, 스마트부스형 시설물 일체
그 밖의 시설물	가. 서울 상징물(해치 등)을 이용하는 교통시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티투어버스, 관용차 등 나. 한강유람선, 한강버스, 수상택시, 유선장, 도선장 그 밖의 유사한 것 및 기타 부유식 공작물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마. 미디어폴, 미디어조형물, 미디어시설 및 스마트시설 등 바. 거리 조형물(아치 등 상징조형물) 사. 그늘막 아.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자. 공작물(타법령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각이미지 나. 픽토그램, 서체, 색 등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 · 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단, 설계공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할 수 있음
3)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
11.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 (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11.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5조제2항제2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삭 제>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 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 시장이 지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 회의록과 ---------- ---------- 녹취 등을 통해 회의록을 작성할 ----------.
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 ---------- -- 위하여 표준형 디자인, ---------- ----------.
② 시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 표준형 디자인, 인증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파.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캐노피 포함) 하.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도시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서울시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 굴다리 등(승강기,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시설·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파.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캐노피 포함) 하.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거. 특화거리 조성사업 〈신 설〉
도시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 · 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들목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삭제
자전거 이용시설	가. 공공자전거, 자전거보관대, 안내시설, 킥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

2. 그 밖의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통신안테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정보통신망	가. 삭제 나. 삭제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 · 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마.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 보행통로, 휴게공간 및 특화공간 〈신 설〉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들목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다. 수변 시설물 〈신 설〉 라. 빗물펌프장 〈신 설〉
〈삭 제〉	〈삭 제〉
자전거 이용시설	가. 공공자전거, 안내시설, 킥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 나.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 〈신 설〉

2. 그 밖의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통신안테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삭 제〉	〈삭 제〉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가로친수시설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재활용수거함, 대기오염 안내시설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흡연부스 · 쉘터, 옥외흡연공간 〈신 설〉 마. 음수대 〈신 설〉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 · 마을버스 ·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 시티투어버스 · 노면전차 승차대 및 경전철 정거장(정류장, 정류소 포함) 다.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 ·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 〈신 설〉 라.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진 · 출입표지 마.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바.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교통 감시시설 사. 볼라드, 보호펜스 〈신 설〉 아. 횡단보도 쉘터 자. 신호등주 차. 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카. 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기기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 · 공공기관 안내표지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 · 구두수선 · 거리가게 · 자동판매기 · 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입구, 위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자동차 주차장 · 광장 ·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마. 스마트쉼터, 스마트부스형 시설물 일체 〈신 설〉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삭제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 · 마을버스 ·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정류장, 정류소 포함) 다. 삭제 라.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 ·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 마.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진 · 출입표지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삭제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 ·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 · 구두수선 · 버스카드 판매대 · 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자동차 주차장 · 광장 ·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용차 등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유선장, 도선장 그 밖의 유사한 것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마. 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바. 가로 영상문화시설, 미디어폴, 정류장·스마트 쉘터 복합 미디어 시설 등 미디어 콘텐츠 시설물 사. 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기기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각이미지 나. 픽토그램, 서체, 색 등
미디어콘텐츠	가. 미디어 콘텐츠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그 밖의 시설물	가. 서울 상징물(해치 등)을 이용하는 교통시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티투어버스, 관용차 등 나. 한강유람선, 한강버스, 수상택시, 유선장, 도선장 그 밖의 유사한 것 및 기타 부유식 공작물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마. 미디어폴, 미디어조형물, 미디어시설 및 스마트시설 등 바. 거리 조형물(아치 등 상징조형물) 사. 그늘막 아.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신 설〉 자. 공작물(타법령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신 설〉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각이미지 나. 픽토그램, 서체, 색 등
〈삭 제〉	〈삭 제〉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단, 설계공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할 수 있음 <신 설>

3)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90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관광시설 이용료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 정함으로써 이용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및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정책과(전화: (02) 2133 - 2825, FAX: 768-8813, E-mail: s022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하 “시”라고 한다)”를 “(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 징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본인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10.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11. 20명 이상의 단체
1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13. 디스커버 서울패스 이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광시설 이용료 기준(제18조 및 제19조 관련)

<서울달 이용료>

1. 기준 및 이용료 범위

구분	금액(원)
성인(19세 이상 64세 이하)	25,000~40,000원
경로(65세 이상)	20,000~32,0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20,000~32,000원
어린이(3세 이상 12세 이하)	15,000~24,000원

2. 할인기준

구분	할인율	비고
장애인	10~30%	• 경증장애인: 본인 적용 • 중증장애인: 본인 및 동반 1인 적용
국가유공자 등	10~30%	• 본인 적용(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30%	• 본인 및 자녀 적용
단체	10~30%	• 20인 이상 적용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10~30%	• 본인 적용(유효한 카드 소지자에 한함)
디스커버 서울패스 이용자	10~30%	• 본인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1. ----------(이하 “법”이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광진흥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하 “시”라 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	제8조(관광특구 시설기준) -----

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 별표 1과 ---------- ----------.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 ---------- ---------- ---------- ---------- ---------- ---------- ---------- -------- 범위----------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 징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본인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10.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11. 20명 이상의 단체 1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13. 디스커버 서울패스 이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신 설>	

[별표 3]

관광지설 이용료 기준(제10조 및 제15조 관련)

<서울랜 이용료>

1. 기준 및 이용료 범위

구분	금액(원)
성인(32세 이상 64세 이하)	25,000~40,000원
경로(65세 이상)	20,000~32,0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20,000~32,000원
어린이(3세 이상 12세 이하)	15,000~24,000원

2. 할인기준

구분	할인율	비고
장애인	30~50%	· 경증장애인: 본인 적용 · 중증장애인: 본인 및 동반 1인 적용
국가유공자 등	30~50%	· 본인 적용(제10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복지에 해당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0~50%	· 본인 및 자녀 적용
단체	30~50%	· 20인 이상 적용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30~50%	· 본인 적용(유효한 카드 소지자에 한함)
디스커버 서울패스 이용자	30~50%	· 본인 적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91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남권 마이스 균형발전을 위해 개관한 서울마이스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를 추가 정의(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서울마이스플라자 설치 및 운영,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2조)
다. 서울마이스플라자 시설 이용에 대한 대관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의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E-mail: lshye88@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관광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02-2133-276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시가” 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가”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 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로 한다.

3.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이하 “마이스플라자” 라 한다)는 관광 및 마이스산업 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상담 및 공유형 업무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이스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마이스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이스전담조직” 을 “마이스 전담조직” 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마이스플라자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플라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이스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 및 마이스기업에게 다목적 회의공간 제공
2. 관광 및 마이스기업에게 다목적 교육공간 제공
3. 관광 및 마이스기업에게 네트워킹 공간 제공
4.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마이스플라자의 운영을 제7조에 의한 마이스 전담조직에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마이스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마이스플라자의 대관료 등) ① 마이스플라자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④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⑤ 시장은 마이스플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료 징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이스 전담조직에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마이스 홍보대사”를 “마이스홍보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한 자”를 “위촉한 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센티브 관광”을 “포상관광”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 서울마이스기업간”을 “범위에서 서울마이스기업 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MICE산업육성”을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부과기준(제8조의3제2항 관련)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부과기준

시설구분	면 적	수용인원	대관료 부과기준 (시간당 금액, 부가세 포함)
대회의실	179.12㎡	100명	100,000원 ~ 250,000원
소회의실	32.52㎡	16명	20,000원 ~ 50,000원
써밋라운지	188.78㎡	40명	80,000원 ~ 180,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마이스 전담조직” 이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① ----------. 1. (현행과 같음) 2.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 3. “서울마이스(MICE)플라자”(이하 “마이스플라자”라 한다)는 관광 및 마이스산업 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상담 및 공유형 업무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생략)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③ ----------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범위에서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소재 마이스기업의 지원을 위해	제8조(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서울특별시마이스산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이스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제7조에 의한 마이스전담조직에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마이스 전담조직----------.
<신 설>	제8조의2(마이스플라자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플라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이스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 및 마이스기업에게 다목적 회의공간 제공 2. 관광 및 마이스기업에게 다목적 교육공간 제공 3. 관광 및 마이스기업에게 네트워킹 공간 제공 4.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마이스플라자의 운영을 제7조에 의한 마이스 전담조

	직에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마이스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마이스플라자의 대관료 등) ① 마이스플라자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1000분의 50 감액 ④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⑤ 시장은 마이스플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료 징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이스 전담조직에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략)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시의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마이스홍보대사 임명) ① 시장은 마이스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이스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마이스홍보대사 임명) ① ---------- ---------- ---------- ------ 마이스홍보대사----- ----------.
② 시장은 마이스홍보대사로 위촉한자가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② ---------- 위촉한 자---------- ---------- 범위에서 ----------

할 수 있다.	--------.
제11조(마이스 개최 지원) ① (생략)	제11조(마이스 개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 포상관광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생 략)	제12조(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마이스기업간 네트워킹과 협력강화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서울마이스기업 간 ---------- ---------- ----------.
제16조(육성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제16조(육성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MICE산업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실·본부·국장 및 전담조직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 마이스산업 육성---------- ----------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부과기준(제8조의3제2항 관련)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부과기준

시설구분	면 적	수용인원	대관료 부과기준 (시간당 금액, 부가세 포함)
대회의실	179.12㎡	100명	100,000원 ~ 250,000원
소회의실	32.52㎡	16명	20,000원 ~ 50,000원
써밋라운지	188.78㎡	40명	80,000원 ~ 180,000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92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남권 마이스 균형발전을 위해 개관한 서울마이스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마이스플라자의 시설 이용에 대한 신청·허가·취소, 대관료 부과,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12조)
나. 대관료 및 반환 기준표 신설(안 별표 2, 별표 3)
다. 대관 신청 및 취소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E-mail: lshye88@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관광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02-2133-2768)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 신청)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마이스플라자를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 제한) 시장은 대관 신청이 마이스플라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스플라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2. 특정 종교단체가 개최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3. 특정 정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 허가) ① 시장은 마이스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관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허가를 받은 후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 받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 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관자는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료) 조례 제8조의3에 따른 대관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제11조 관련)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시설구분	면적	수용인원	사 용 료		위 치
			기준시간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대회의실	179.12㎡	100명	1시간	173,800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르웨스트시티 D동 7층
			1일(8시간)	1,390,400	
소회의실	32.52㎡	16명	1시간	31,900	
			1일(8시간)	255,200	
써밋라운지	188.78㎡	40명	1시간	102,300	
			1일(8시간)	818,400	

(비고)

가. 기본대관료에는 장비 사용료 및 전기료가 포함된다.

나.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다.

다. 행사 준비 및 철수 기간의 대관료는 1시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대회의실, 써밋라운지

2) 적용 조건: 대관 신청 시 설치 · 철거 시간이 포함된 경우

3) 할인 범위

가) 총 대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최대 1시간 요금 감면

나) 총 대관 9시간(종일): 최대 2시간 요금 감면

라. 종일 대관 시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요금은 감면하여, 일 최대 8시간 요금만 부과한다.

마. 대관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설치 · 철거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일 대관에 따른 점심시간 1시간 요금 감면은 기본 적용한다.

[별표 3]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반환 기준표(제12조 관련)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반환 기준표

연 번	반환율	적용대상	비고
1	100% 반환	· 서울특별시 및 서울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취소 시 · 천재지변,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 불가 시 (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용일 기준 3일 전까지 대관변경/대관취소 신청서 및 공문 제출 시	
2	반환 없음	· 대관일 기준 2일전~당일 취소 또는 무단불참 발생 시 대관료 전액(100%) 위약금 발생	향후 6개월간 대관 신청 제한

(비고) 가. 대관 취소 :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서 및 공문 접수
나. 대관 변경 :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서 및 공문 접수(단, 변경 횟수는 1회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변경) 허가신청서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변경) 허가신청서

<table>
<tr><td rowspan="5">대관자</td><td>단체(법인)명</td><td></td><td rowspan="2">담당자 정보</td><td>성명/직위:</td></tr>
<tr><td row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rowspan="2"></td><td>사무실:</td></tr>
<tr><td>핸드폰:</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이메일:</td></tr>
<tr><td>단체/사업장
대표 성명</td><td></td><td>단체/사업장
대표번호</td><td></td></tr>
<tr><td rowspan="3">행사내용</td><td>행 사 명</td><td></td><td>참여인원수
(외국인 포함)</td><td>총 명
(내국인: 명/외국인: 명)</td></tr>
<tr><td>행사 내용</td><td colspan="3">· 행사 진행 날짜 및 시간, 행사 목적, 프로그램 요약 내용(주제)</td></tr>
<tr><td>주최 / 주관</td><td></td><td>후원기관</td><td></td></tr>
<tr><td rowspan="5">대관신청</td><td>대관 용도</td><td colspan="3">□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기타(내용기입)
(☑ 행사 대관 용도에 따른 구분 반드시 체크)</td></tr>
<tr><td>대관시설</td><td colspan="3">□대회의실 □소회의실 □써밋 라운지 □전체 대관</td></tr>
<tr><td>전체 대관 기간</td><td colspan="3">년 00월 00일 00시 ~ 년 00월 00일 00시까지 00일 동안
(반드시 설치 및 철수 기간과 전체 시간 포함하여야 함)</td></tr>
<tr><td>설치(준비) 시간</td><td colspan="3">년 00월 00일 00시 ~ 년 00월 00일 00시까지</td></tr>
<tr><td>철수(정리) 시간</td><td colspan="3">년 00월 00일 00시 ~ 년 00월 00일 00시까지</td></tr>
<tr><td>변경사항</td><td colspan="4">· 대관 변경 신청의 경우 대관 기간 등 변경사항 기재</td></tr>
<tr><td>기타사항</td><td colspan="4">· 대관자 자체 공문 양식으로 공문 발송 필수 (대관시설, 용도, 일시, 행사명, 행사내용 포함)
· 추가 장비 반입 및 설비 설치 계획 (장비 규모, 운반 계획 등)
· 행사 세부 계획안 첨부 (공간연출, 홍보 방법 포함, 별도의 양식은 없음)</td></tr>
<tr><td>확인사항</td><td colspan="4">신청인 확인 및 동의 사항
· 본인은 '서울MICE플라자' 운영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파손·분실 시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보유 및 이용 기간 대관 종료 후 1년)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대관 승인심사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able>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인)

(대관 신청 작성 담당자의 서명 반드시 기입 요망)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 취소 신청서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 취소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연락처: 000-0000-0000 담당자 휴대폰: 010-0000-0000
	이 메 일	
취소 신청	행 사 명	
	대 관 시 설	
	대 관 기 관	
	비 고	
취소 사유	*※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마이스 개최 지원 결정 등) ① (생 략)	제3조(마이스 개최 지원 결정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① (생 략)	제4조(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이스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 별표 1과 --.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른 마이스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 ---------- 별지 제1호서식---------- ----------.
<신 설>	제6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 신청)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마이스플라자를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 제한) 시장은 대관 신청이 마이스플라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스플라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행사 2. 특정 종교단체가 개최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3. 특정 정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 설>	제8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 허가) ① 시장은 마이스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관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허가를 받은 후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 받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 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관자는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 설>	제11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료) 조례 제8조의3에 따른 대관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12조(마이스플라자의 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

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2]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제11조 관련)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시설구분	면적	수용인원	사용료		위치
			기준시간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대회의실	179.12㎡	100명	1시간	173,800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40 르웨스트시티 D동 7층
			1일(8시간)	1,390,400	
소회의실	32.62㎡	16명	1시간	31,900	
			1일(8시간)	255,200	
버핏라운지	188.78㎡	40명	1시간	102,300	
			1일(8시간)	818,400	

(비고)

가. 기본대관료에는 장비 사용료 및 전기료가 포함된다.

나.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다.

다. 행사 준비 및 철수 기간의 대관료는 1시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대회의실, 버핏라운지

2) 적용 조건: 대관 신청 시 설치·철거 시간이 포함된 경우

3) 할인 범위

가) 종 대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최대 1시간 요금 감면

나) 종 대관 9시간(종일): 최대 2시간 요금 감면

라. 종일 대관 시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요금은 감면하여, 일 최대 8시간 요금만 부과한다.

마. 대관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설치·철거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일 대관에 따른 점심시간 1시간 요금 감면은 기본 적용한다.

<신 설>

[별표 3]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반환 기준표(제12조 관련)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료 반환 기준표

번호	반환율	적용대상	비고
1	100% 반환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장(자치단)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취소 시 · 정전지보, 자연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 불가 시 (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용일 기준 3일 전까지 대관변경/대관취소 신청서 및 공문 제출 시	
2	반환 불가	· 대관일 기준 3일전~당일 취소 또는 무단불참 발생 시 대관료 전액(100%) 위약금 발생	향후 6개월간 대관 신청 제한

(비고) 가. 대관 취소 :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서 및 공문 접수

나. 대관 변경 :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서 및 공문 접수(단, 변경 횟수는 1회에 한함)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변경) 허가신청서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변경) 허가신청서

대관자	단체(법인)명		담당자 정보	성명/직위: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핸드폰:	
	주소			이메일:	
	단체/사업장 대표 성명		단체/사업장 대표번호		
행사내용	행사 명		장애인행주 (최국인 포함)	총 명 (내국인: 명/외국인: 명)	
	행사 내용	·행사 진행 날짜 및 시간, 행사 목적, 프로그램 요약 내용(주제)			
	주최 / 주관		후원기관		
대관신청	대관 용도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기타(내용기입) (※ 행사 대관 용도에 따른 구분 반드시 체크)			
	대관시설	□대회의실 □소회의실 □써밋 라운지 □전체 대관			
	전체 대관 기간	년 00월 00일 00시 ~ 년 00월 00일 00시까지 00일 동안 (반드시 설치 및 철수 기간과 전체 시간 포함되어야 함)			
	설치(준비) 시간	년 00월 00일 00시 ~ 년 00월 00일 00시까지			
	철수(정리) 시간	년 00월 00일 00시 ~ 년 00월 00일 00시까지			
변경사항	· 대관 변경 신청의 경우 대관 기간 등 변경사항 기재				
기타사항	· 대관과 관계 없는 영리로 판단 될 경우 (대관시설, 용도, 일시, 행사명, 행사내용 포함) · 추가 장비 반입 및 설비 설치 계획 (장비 규모, 운반 계획 등) · 행사 세부 계획안 첨부 (공간연출, 홍보 방법 포함, 별도의 양식은 없음)				
확인사항	신청인 확인 및 동의 사항 - 본인은 '서울MICE플라자'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을 파손·분실 시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보유 및 이용 기간 대관 종료 후 1년)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대관 승인심사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인)
(대관 신청 작성 담당자의 서명 반드시 기입 요망)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 취소 신청서

서울마이스(MICE)플라자 대관 취소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연락처: 000-0000-0000 담당자 휴대폰: 010-0000-0000
	이 메 일	
취소 신청	행 사 명	
	대 관 시 설	
	대 관 기 관	
	비 고	
취소 사유	※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14호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2002.01.29.)로 최초 결정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12.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2009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이후 도시환경 및 인접 지역의 변화 특성을 고려하고 관련 정책· 제도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임.

○ 전통문화 업종 변화와 현대 한옥 수요 증가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4,068	-	124,068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2-27호 (2002.1.29.)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6	30~40	주간선도로	2,600 (7)	안국동 광장	동대문 광장	일반도로	1978.01.28.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6호)	
기정	중로	2	6	10~12	국지도로	690 (374)	인사동 72	관훈동 74-1	일반도로	1936.12.26. (총독부고시 제722호)	
변경	소로	1	6	10~12	국지도로	739 (538)	인사동 72	관훈동 113	일반도로	1936.12.26. (총독부고시 제722호)	
기정	소로	3	92	6	국지도로	145 (145)	견지동 71	관훈동 186	일반도로	1963.07.01. (건설부고시 제432호)	
기정	소로	3	98	6	국지도로	170 (170)	관훈동 35	경운동 63-12	일반도로	1963.07.01. (건설부고시 제432호)	
변경	소로	3	98	6	국지도로	168 (168)	관훈동 27-6	경운동 70	일반도로	1963.07.01. (건설부고시 제432호)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중로 2-6	소로 1-6	도로 규모 변경 종점 변경	·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9조에 따라 현행 도로 폭원 기준 도로 규모 변경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형과 불일치되었던 기존 시종점, 연장 수정
소로 3-98	소로 3-98	도형 변경 시종점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간 연속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선형 변경 및 불일치되었던 시종점, 연장 수정

2) 주차장 : 변경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주차장 (서인사마당)	종로구 견지동 85-18번지 일대	1,588.1	-	1,588.1	2002.0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7호)	중복결정 - 지상 : 문화시설 - 지하 : 주차장
변경	①	주차장 (서인사마당)	종로구 견지동 85-18번지 일대	1,588.1	-	1,588.1	2002.0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7호)	중복결정 - 지상 : 문화시설 - 지하 :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번호 변경	· 「종로구고시 제2022-89호」에 따른 주차장(동인사마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번호 변경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 변경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문화시설(서인사마당)	-	종로구 견지동 85-18번지 일대	1,588.1	-	1,588.1	2007.09.06.(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7-311호)	중복결정 - 지상 : 문화시설 - 지하 : 주차장
변경	①	문화시설(서인사마당)	-	종로구 견지동 85-18번지 일대	1,588.1	-	1,588.1	2007.09.06.(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7-311호)	중복결정 - 지상 : 문화시설 - 지하 : 주차장
기정	③	문화시설	-	종로구 경운동 65번지	494.5	-	494.5	2009.12.10.(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7호)	민병옥가옥 전면부지
기정	④	문화시설	-	종로구 견지동 85-24번지 일대	971	-	971	2009.12.10.(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9-497호)	서인사마당 인접부지
변경	②	문화시설	-	종로구 견지동 85-24번지 일대	971	-	971	2009.12.10.(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9-497호)	서인사마당 인접부지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①	문화시설	번호 변경	· 「종로구고시 제2022-89호」에 따른 주차장(동인사마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번호 변경
④→②	문화시설	번호 변경	

▌문화시설 규모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문화시설(서인사마당)	60%이하	600%이하	5층(22m) 이하	2007.09.06.(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07-311호)
기정	②	문화시설(견지동 85-24)	60%이하	600%이하	5층(22m) 이하	2009.12.10.(서울시특별고시 제2009-497호)
기정	③	문화시설(경운동65번지)	60%이하	600%이하	민병옥 가옥의 용마루선 높이 이하	2009.12.10.(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09-497호) ·건축물 형태 : 한옥 ·건축물 높이 : 측량성과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 시 실측 후 건축

※ 문화시설(경운동65번지)의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건축물의 형태는 한옥(인사동 한옥 기준)으로 유지하고,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h+0.65a(a=건물폭, 1층 h=4, 2층 h=7)를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소가로구역 지침을 적용함.

2) 공공청사 : 변경 없음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친환경계획 : 변경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토양환경	자연지반 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의 보존을 권장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의 보존을 권장 – 포장면적 최소화, 투수성 포장 및 녹화 권장	–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2017)」, 「조경기준」에 따른 옥상녹화 권장	정정
	토양오염	–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난방유 저장탱크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 실시	변경
물환경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시설 설치 권장	정정
	저영향개발기법(LID) 및 유휴물자원 활용	–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지는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이행	변경
	지하수	–	·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지하수위를 관리하고, 사업설계 단계부터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 계획	변경
기후대기환경	미기후 및 바람길	–	· 주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로부터 공기순환 및 열순환계획 권장 · 주변 건축물 배치를 고려한 바람길 확보 권장	변경
	친환경 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른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장	변경
열환경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조경기준」에 따른 벽면녹화 권장	정정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인사동 한옥'은 적용 제외)	정정
	수목 보존	· 기존 수목의 보존 또는 재활용 권장	· 기존 수목의 보존 또는 재활용 권장	–
자원순환	신·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권장	–
	에너지 절약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준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설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권장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LED등 고효율 조명기기의 설치를 권장	
	녹색 건축자재	-	·환경성선언제품(EPD), 저탄소자재, 자원순환자재, 유해물질저감자재 등 녹색건축자재 사용 권장 ·한옥자재은행 사용 권장	변경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에 따른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항목 신설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2009)의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중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시행지침 포함)'를 기정 계획으로 반영함.

※ 관계 법령·지침 등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개정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기정 계획 중 법령 등 제도 변경 및 신설에 따라 변경 기준을 정정하여 기재함.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토양오염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도 이행 사항 명시
변경	저영향개발기법(LID) 및 유휴 물자원 활용 / 지하수	·조례 등 기준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도 이행 사항 명시
변경	미기후 및 바람길	·바람길 조성 및 미기후 개선을 위한 계획 신설
변경	친환경 주차장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시설 계획 수립 필요
변경	에너지 절약	·법령 및 기준 등 제도 신설 반영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 추가 변경
변경	녹색건축자재	·자원순환 및 녹색건축 권장계획 수립

나. 방재안전계획 : 신설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 조서(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소방설비의 설치	·자동식 소화기, 간이형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시설 설치, 드렌쳐 설비 설치, 방호 및 망입유리 설치 등 소방설비 설치	(규제)
건축물의 방재성능 개선	·한옥 등 목조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화방벽 설치, 방염처리 등의 방법으로 방재성능 개선	(규제)
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 위험이 있는 위치에 물막이 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	(권장)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소방설비의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에 따른 방재안전계획 신설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인사동 문화의 거리) 지정에 따른 화재안전계획 수립
	건축물의 방재성능 개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에 따른 방재안전계획 신설 ·폭우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난 예방 계획 신설

4.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문화유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호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수	변경
매장유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매장유산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 후 보존 방안 이행	변경
역사 유적지 및 도시조직*	지구단위계획구역	·멸실된 역사적장소의 외부공간 또는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 내부공간에 역사유적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권장 ·설치의 위치와 규모는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역사유적지를 포함한 대지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 계획』 및 「서울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석 설치	변경
		–	·옛길, 옛 물길, 골목길(통로)로 사용되던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하는 경우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길의 형태와 통행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현재 필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합필을 금지하고,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을 분절하여 배치 ·기존 한옥이 있는 경우 기존 배치와 형상 및 규모 유지 권장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옥 등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 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며, 본 구역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 밀집지역)』 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에 근거하여 완화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을 따른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및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는 별도 적용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단, 한옥 특례는 '인사동 한옥' 기준을 준수하고 '한옥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인정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및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는 별도 적용 ※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 별도 적용	변경
근대건축물 보전*	보전건축물*** -농협(견지동111번지 외 1필지) -동현필방(공평동5번지 외 2필지)	·건축물의 형태 및 입지여건상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의 외관 및 재질 등의 보존	·건축물의 형태 및 입지여건상 보전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의 보전 ※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전에 따른 높이 완화, 특례 적용 여부 결정	변경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에 따른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항목 신설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2009)'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중 '역사·문화 환경 보전에 관한 결정조서'를 기정 계획으로 반영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6호(2020.12.24.)』 지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502호(2020.12.24.)』 결정

※ ** 한옥 등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관리계획(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에 따른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함.

※ *** 보전건축물 : 태화관길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라 철거 위기에 있던 근대건축물을 역사적·건축적 보존가치를 인정하여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해제하고, 보전건축물로 결정한 사항임.

※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 시 변경 기준에 따름.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문화유산, 매장유산, 한옥 등 건축자산	· 법령 및 제도, 관련 계획에 따른 보호· 활용 계획 반영
	역사유적지 및 도시조직	· 옛 길, 옛 물길, 한옥골목길, 한옥 필지 형태 등 기존 도시조직의 흔적 및 한옥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 법령 및 제도, 기준에 따른 보호·활용 계획 반영 및 심의사항 삭제
	한옥 등 건축자산	· 정의는 시행지침에 명시하고, 내용을 간소화하여 표기 변경 ·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인정 기준 명시
	근대건축물 보전	· 근대건축물 보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적용 사항 명시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	M-1	320㎡ 이하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특별계획구역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공동건축) ※ M-2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9호 (2007.6.28.)에 의해 결정
		M-2	414㎡ 이하	
	한옥관리구역	I	240㎡ 이하	
	소가로구역	S-1(동측)	220㎡ 이하	
		S-2(서측)	500㎡ 이하	
		S-3(우정국로변)	640㎡ 이하	
	기개발구역	D	2,060㎡ 이하	
	간선가로변	O	1,760㎡ 이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	M	330㎡ 이하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특별계획(가능)구역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기 공동건축된 필지의 합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권장)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있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시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
	한옥관리구역	I		
	소가로구역	S-1(동측)		
	소가로구역	S-2(서측)	660㎡ 이하	
	기개발구역	D	1,500㎡ 이하	
	간선가로변	O		

나 획지 : 변경

▌획지계획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대상	기본방향	비고
획지선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주변구역 (M) 한옥관리구역 (I)	·현재 대지 상태 유지를 위해 획지선 지정 ·획지 간 공동개발 불가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 획지계획의 변경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단, 과소필지(80㎡미만)의 경우 구역별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공동개발 허용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 내용	비고
획지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적 도시조직 보호를 위해 대지 단위 획지선 지정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해제지역 주변 통합개발을 위한 획지선 지정 ·대규모 부지 관리를 위한 획지선 지정	변경 (도면표기)
		·획지 간 공동개발 불가, 단,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공동개발하는 '인사동 한옥' 적용 예외 ·분할가능선 또는 기존 필지 단위로 분할하여 개발 가능. 단, 대지가 부정형, 과소필지, 맹지가 되는 경우 불허	변경

※ 획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획지 지정계획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다. 공동개발 : 변경

▌공동개발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소가로구역 (S) 기개발구역 (D) 간선가로변구역 (O)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 기 공동건축된 동일소유자 필지는 신축 시 (2필지 이상) 공동개발 가능 (이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지정)	맹지, 부정형필지, 과소 필지 등으로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 토지소유주가 동일한 인접필지와 공동개발 지정	신설(도면표기)
공동개발(권장)		· 토지소유주가 다른 인접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신설(도면표기)
자율적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계획 또는 획지계획 미수립 필지	· 최대개발규모 이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자율적 공동개발 불허 대상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구역에 의해 필지 간 서로 상이한 지침을 적용받는경우	변경

라. 대지의 분할 및 교환 : 신설

▌대지의 분할 및 교환 결정조서 (신설)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대지의 분할 및 교환	지구단위계획구역	·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지의 분할과 교환 허용. · 단, 아래의 경우에는 대지의 분할과 교환을 불허 –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 대지의 분할 및 교환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준수.

마. 건축협정 및 맞벽건축 : 신설

▌건축협정 및 맞벽건축 결정조서 (신설)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건축협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협정 시 각 단위 대지에 적용되는 최대개발규모를 따름. 다만, 필지단위로 분동하여 건축하는 경우 등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건축협정, 구역 간 건축협정, 획지 간 건축협정 허용	-
맞벽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구역 간 또는 획지 간 건축협정 시, 맞벽건축 및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는 건축 불허	-

바.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A1	1	M	관훈동	143-1	33.4	142.8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43-1, 145-4)
			관훈동	144	82.6		
			관훈동	145-4	26.8		
	2	M	관훈동	145	124.6	124.6	획지선 지정
	3	M	관훈동	145-7	9.1	88.4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45-7)
			관훈동	146-1	79.3		
	4	M	관훈동	146-2	99.2	99.2	획지선 지정
	5	M	관훈동	147	53.9	53.9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6	M	관훈동	155-1	24.0	226.4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필지 전체)
			관훈동	155-5	11.7		
			관훈동	155-6	11.7		
			관훈동	155-7	12.5		
			관훈동	155-8	22.0		
			관훈동	155-9	13.8		
			관훈동	155-10	14.3		
			관훈동	155-11	15.1		
			관훈동	155-12	44.8		
			관훈동	155-14	6.0		
			관훈동	155-15	7.6		
			관훈동	155-16	7.9		
			관훈동	155-18	11.2		
			관훈동	155-19	10.6		
			관훈동	155-20	13.2		
	7	M	관훈동	169-1	78.3	78.3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8	M	관훈동	170	228.1	228.1	획지선 지정
	9	M	관훈동	185	125.6	125.6	획지선 지정
	10	M	관훈동	186	74.0	74.0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1	I	관훈동	164	66.1	66.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2	I	관훈동	165	82.6	82.6	획지선 지정
	13	I	관훈동	166	99.2	99.2	획지선 지정
	14	I	관훈동	168	86.0	113.4	획지선 지정
			관훈동	169-2	27.4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5	I	관훈동	172	99.2	99.2	획지선 지정
	16	I	관훈동	173	59.5	82.6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73,174)
			관훈동	174	23.1		
	17	I	관훈동	182-1	99.2	99.2	획지선 지정
	-	S2	견지동	74-2	1,250.9	-	-
	-	S2	견지동	81	165.3	-	-
	-	S2	견지동	82	171.9	-	-
	-	S2	견지동	83	132.2	-	-
	-	S2	견지동	84	53.7	-	-
	-	S2	관훈동	176	193.7	-	-
	-	S2	관훈동	177	220.6	-	-
	-	S2	관훈동	180	97.4	-	-
	-	S2	관훈동	181	170.9	-	기 공동건축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30호(2005.6)]
	-	S2	관훈동	182-2	225.5	-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A1	-	S2	관훈동	183	98.8	-	기 공동건축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30호(2005.6)]
	-	S2	관훈동	184	204.7	-	
	-	S3	견지동	68-20	7.9	-	-
	-	S3	견지동	71	365.7	-	기 공동건축
	-	S3	견지동	74-15	213.9	-	
	-	S3	견지동	74-8	155.4	-	-
	-	S3	견지동	74-10	43.3	-	기 공동건축
	-	S3	견지동	74-11	28.4	-	
	-	O1	관훈동	151-4	35.4	-	기 공동건축
	-	O1	관훈동	151-8	1,196.4	-	
	18	특별	견지동	74-1	2,236.0	5,855.0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대성산업부지)
			관훈동	154-1	1,216.5		
			관훈동	154-3	148.8		
			관훈동	155-2	2,075.2		
			관훈동	175	178.5		
A2	1	M	관훈동	187	127.1	127.1	획지선 지정
	2	M	관훈동	188	704.3	714.4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91-1,192-34)
			관훈동	191-1	7.8		
			관훈동	192-34	2.3		
	3	M	관훈동	189	82.6	82.6	획지선 지정
	4	M	관훈동	192-1	153.7	153.7	획지선 지정
	5	M	관훈동	192-13	254.5	254.5	획지선 지정
	6	M	관훈동	192-14	115.7	115.7	획지선 지정
	7	M	관훈동	192-35	89.9	89.9	획지선 지정
	8	M	관훈동	196-3	64.5	64.5	획지선 지정
	9	M	관훈동	196-5	169.6	169.6	획지선 지정
	10	M	관훈동	196-6	172.2	172.2	획지선 지정
	11	M	관훈동	197-1	178.5	178.5	획지선 지정
	12	M	관훈동	197-4	336.4	336.4	획지선 지정
	13	M	관훈동	197-24	193.7	193.7	획지선 지정
	14	M	관훈동	198-10	132.8	161.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87-3)
			인사동	187-3	29.1		
	15	M	관훈동	198-31	109.8	431.5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9호]
			관훈동	198-32	125.3		
			관훈동	198-33	196.4		
	16	M	인사동	181-1	63.1	63.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7	M	인사동	182-1	61.5	61.5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8	M	인사동	182-2	4.6	83.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82-2)
			인사동	183	79.3		
	19	M	인사동	183-4	376.9	376.9	획지선 지정
	20	M	인사동	184	320.6	320.6	획지선 지정
	21	M	인사동	186	103.1	103.1	획지선 지정
	-	S2	견지동	68-1	231.3	-	-
	-	S2	관훈동	192-6	188.4	-	-
	-	S2	관훈동	192-10	178.5	-	-
	-	S2	관훈동	192-11	195.0	-	-
	-	S2	관훈동	192-12	188.4	-	-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A2	-	S2	관훈동	192-15	612.2	-	기 공동건축
	-	S2	관훈동	196-10	275.1	-	
	-	S2	관훈동	196-12	107.8	-	
	-	S2	관훈동	196-29	106.2	-	
	-	S2	관훈동	196-31	34.7	-	
	-	S2	관훈동	196-33	126.6	-	
	-	S2	관훈동	196-34	129.4	-	
	-	S2	관훈동	192-17	337.2	-	-
	-	S2	관훈동	192-21	559.3	-	-
	-	S2	관훈동	192-36	108.8	-	-
	-	S2	관훈동	192-46	99.2	-	-
	-	S2	관훈동	192-47	368.5	-	-
	-	S2	관훈동	195	571.6	-	-
	-	S2	관훈동	196-8	80.0	-	기 공동건축
	-	S2	관훈동	196-9	80.0	-	
	-	S2	관훈동	196-11	125.3	-	-
	-	S2	관훈동	197-18	208.6	-	-
	-	S2	관훈동	197-9	430.1	-	-
	-	S3	견지동	68-3	113.4	-	-
	-	S3	견지동	68-14	121.0	-	-
	-	S3	견지동	68-15	95.2	-	기 공동건축
	-	S3	견지동	68-19	53.6	-	
	-	S3	견지동	68-17	58.8	-	-
	-	S3	견지동	68-18	187.1	-	-
	-	S3	견지동	69-3	25.8	-	-
	-	S3	견지동	87-1	666.8	-	-
	-	S3	견지동	88	273.8	-	-
	-	S3	견지동	88-2	18.8	-	-
	-	S3	견지동	88-8	66.8	-	-
	-	S3	견지동	88-9	62.8	-	-
	-	S3	견지동	90	122.3	-	-
	-	S3	견지동	91	176.2	-	-
	-	S3	견지동	92-1	443.0	-	-
	-	S3	견지동	93	86.0	-	-
	-	S3	견지동	95	64.8	-	-
	-	S3	견지동	95-2	84.0	-	-
	-	S3	견지동	95-3	58.2	-	-
	-	S3	견지동	98	71.7	-	-
	-	S3	견지동	99-1	275.0	-	-
	-	S3	견지동	100	115.7	-	-
	-	S3	견지동	100-1	20.0	-	-
	-	S3	견지동	101	79.3	-	-
	-	S3	견지동	102	191.7	-	-
	-	S3	견지동	103	69.4	-	-
	-	S3	견지동	104	79.3	-	-
	-	S3	견지동	105	135.5	-	-
	-	S3	견지동	106	99.2	-	-
	-	S3	견지동	107	343.8	-	-
	-	S3	견지동	108	43.0	-	기 공동건축
	-	S3	견지동	108-1	8.3	-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A2	-	S3	견지동	108-2	39.7	-	기 공동건축
	-	S3	견지동	108-3	9.6	-	
	-	S3	견지동	109	101.5	-	-
	-	D	견지동	85-6	586.1	-	기 공동건축
	-	D	관훈동	192-9	120.5	-	
	-	D	관훈동	192-18	3,897.4	-	
	-	D	관훈동	192-49	99.4	-	
	-	D	견지동	88-7	76.7	-	기 공동건축
	-	D	관훈동	198-37	105.9	-	
	-	D	관훈동	198-38	111.1	-	
	-	D	관훈동	198-42	1,723.3	-	
	-	D	인사동	194-26	76.5	-	
	-	D	견지동	111	1,204.7	-	기 공동건축
	-	D	공평동	5-6	49.6	-	
	-	D	견지동	118-1	92.4	-	기 공동건축
	-	D	견지동	119-1	81.0	-	
	-	D	관훈동	198-8	388.0	-	
	-	D	관훈동	198-9	62.8	-	
	-	D	공평동	5	142.1	-	-
	-	D	공평동	9	137.5	-	기 공동건축
	-	D	공평동	9-1	13.6	-	
	-	D	관훈동	197-28	2,197.2	-	기 공동건축
	-	D	관훈동	198-1	841.6	-	기 공동건축
	-	D	인사동	194	35.5	-	
	-	D	관훈동	198-11	585.5	-	-
	-	D	관훈동	198-16	497.8	-	기 공동건축
	-	D	관훈동	198-29	83.6	-	
	-	D	관훈동	198-17	172.6	-	기 공동건축
	-	D	관훈동	198-20	172.9	-	
	-	D	관훈동	198-27	145.8	-	-
	-	D	관훈동	198-30	68.4	-	기 공동건축
	-	D	관훈동	198-34	95.5	-	
	-	D	관훈동	198-35	72.1	-	
	-	D	관훈동	198-36	184.0	-	
	-	O1	견지동	65-1	1,092.9	-	-
	-	O1	견지동	68-5	1,055.9	-	-
A3	1	M	관훈동	37	185.5	239.9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37-1)
			관훈동	37-1	54.4		
	2	M	관훈동	71	53.3	56.2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71, 71-1)
			관훈동	71-1	2.9		
	3	M	관훈동	72	241.7	297.5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72-1)
			관훈동	72-1	55.8		
	4	M	관훈동	73-1	69.9	104.8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73-1, 73-3)
			관훈동	73-3	34.9		
	5	M	관훈동	73-2	23.3	53.9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73-2, 73-4)
			관훈동	73-4	30.6		
	6	M	관훈동	74	139.4	205.0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74-1)
			관훈동	74-1	65.6		
	7	M	관훈동	100-5	229.1	229.1	획지선 지정
	8	M	관훈동	103	89.0	89.0	획지선 지정
	9	M	관훈동	105	100.4	100.4	획지선 지정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A3	10	M	관훈동	118-36	62.8	62.8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1	M	관훈동	119	159.6	159.6	획지선 지정
	12	M	관훈동	120	76.0	191.3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관훈동	121	115.3		
	13	M	관훈동	123-4	207.3	207.3	획지선 지정
	14	I	경운동	66-7	806.6	806.6	획지선 지정 / 추후 공공보행통로 조성사업에 따라 변경 가능
	15	I	관훈동	30-1	1,170.5	1,263.1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84-8	92.6		
	16	I	관훈동	30-11	120.0	120.0	획지선 지정
	17	I	관훈동	30-15	84.6	84.6	획지선 지정
	18	I	관훈동	30-16	86.0	93.0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45-1)
			관훈동	45-1	7.0		
	19	I	관훈동	32	109.0	109.0	획지선 지정
	20	I	관훈동	32-1	3.4	278.7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44	275.3		
	21	I	관훈동	42-2	44.0	44.0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22	I	관훈동	55-1	203.4	203.4	획지선 지정
	23	I	관훈동	56-1	135.5	135.5	획지선 지정
	24	I	관훈동	56-2	92.6	92.6	획지선 지정
	25	I	관훈동	57	102.5	102.5	획지선 지정
	26	I	관훈동	58	72.7	72.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27	I	관훈동	59	142.1	142.1	획지선 지정
	28	I	관훈동	60	59.5	59.5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29	I	관훈동	61	86.0	86.0	획지선 지정
	30	I	관훈동	62	128.9	128.9	획지선 지정
	31	I	관훈동	64	360.3	360.3	획지선 지정
	32	I	관훈동	65	36.4	36.4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33	I	관훈동	66	39.7	39.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34	I	관훈동	67	112.4	112.4	획지선 지정
	35	I	관훈동	68	181.8	181.8	획지선 지정
	36	I	관훈동	70	64.6	69.4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0, 70-1)
			관훈동	70-1	4.8		
	37	I	관훈동	75	97.8	99.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5-2)
			관훈동	75-2	1.4		
	38	I	관훈동	76	92.6	92.6	획지선 지정
	39	I	관훈동	77-1	26.4	59.5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7-1, 78-1)
			관훈동	78-1	33.1		
	40	I	관훈동	77-3	59.5	64.5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7-3, 78-4)
			관훈동	78-4	5.0		
	41	I	관훈동	78-2	106.1	106.1	획지선 지정
	42	I	관훈동	78-5	56.2	56.2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3	I	관훈동	79	109.1	109.1	획지선 지정
	44	I	관훈동	83	56.2	56.2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5	I	관훈동	83-2	105.8	105.8	획지선 지정
	46	I	관훈동	84-2	261.2	261.2	획지선 지정
	47	I	관훈동	84-3	255.5	255.5	획지선 지정
	48	I	관훈동	84-4	284.3	284.3	획지선 지정 / 추후 공공보행통로 조성사업에 따라 변경 가능
	49	I	관훈동	84-5	240.3	240.3	획지선 지정
	50	I	관훈동	84-6	111.4	111.4	획지선 지정 / 추후 공공보행통로 조성사업에 따라 변경 가능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A3	51	I	관훈동	84-7	199.3	199.3	획지선 지정
	52	I	관훈동	84-9	152.4	152.4	획지선 지정
	53	I	관훈동	84-10	200.7	200.7	획지선 지정
	54	I	관훈동	84-11	214.9	214.9	획지선 지정
	55	I	관훈동	84-12	148.8	148.8	획지선 지정
	56	I	관훈동	84-13	221.5	221.5	획지선 지정
	57	I	관훈동	84-14	155.4	155.4	획지선 지정
	58	I	관훈동	84-16	336.2	336.2	획지선 지정
	59	I	관훈동	84-17	158.7	158.7	획지선 지정
	60, 67	I	관훈동	84-18	138.8	229.0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87-1) [종로구고시제2024-111호]
		I	관훈동	87	72.7		
		I	관훈동	87-1	17.5		
	61	I	관훈동	84-20	109.1	109.1	획지선 지정
	62	I	관훈동	84-21	159.7	159.7	획지선 지정
	63	I	관훈동	84-22	114.7	114.7	획지선 지정
	64	I	관훈동	84-23	129.9	129.9	획지선 지정
	65	I	관훈동	84-24	86.0	86.0	획지선 지정
	66	I	관훈동	86	214.9	214.9	획지선 지정
	68	I	관훈동	88	135.5	206.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88-1)
			관훈동	88-1	71.4		
	69	I	관훈동	89	89.3	89.3	획지선 지정
	70	I	관훈동	90	92.6	92.6	획지선 지정
	71	I	관훈동	91	36.4	261.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91)
			관훈동	92	224.8		
	72	I	관훈동	95	99.2	132.3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96)
			관훈동	96	33.1		
	73	I	관훈동	97	43	138.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97)
			관훈동	98	95.9		
	74	I	관훈동	99	76.0	76.0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75	I	관훈동	100-1	36.4	185.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00-1)
			관훈동	100-3	148.8		
	76	I	관훈동	100-2	162.9	163.6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00-10)
			관훈동	100-10	0.7		
	77	I	관훈동	100-4	158.5	165.3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00-9)
			관훈동	100-9	6.8		
	78	I	관훈동	100-6	150.0	160.7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00-8)
			관훈동	100-8	10.7		
	79	I	관훈동	106	284.3	284.3	획지선 지정
	80	I	관훈동	107-1	181.8	181.8	획지선 지정 / 추후 공공보행통로 조성사업에 따라 변경 가능
	81	I	관훈동	107-2	79.3	79.3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82	I	관훈동	108	178.5	178.5	획지선 지정
	83	I	관훈동	109-1	113.4	113.4	획지선 지정
	84	I	관훈동	109-2	71.8	71.8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85	I	관훈동	110	102.5	102.5	획지선 지정
	86	I	관훈동	118-2	277.6	277.6	획지선 지정
	87	I	관훈동	118-6	86.0	162.0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18-7)
			관훈동	118-7	76.0		
	88	I	관훈동	118-13	33.1	102.5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18-13, 118-15)
			관훈동	118-15	69.4		
	89	I	관훈동	118-16	76.0	76.0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90	I	관훈동	118-17	72.7	72.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91	I	관훈동	118-18	72.7	72.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92	I	관훈동	118-19	69.4	69.4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93	I	관훈동	118-20	66.1	66.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94	I	관훈동	118-21	33.1	33.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95	I	관훈동	118-22	43.0	43.0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96	I	관훈동	118-23	109.1	109.1	획지선 지정
	97	I	관훈동	118-25	79.3	79.3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98	I	관훈동	118-26	95.9	95.9	획지선 지정
	99	I	관훈동	118-27	99.2	99.2	획지선 지정
	100	I	관훈동	118-28	122.3	122.3	획지선 지정
	101	I	관훈동	118-29	39.7	39.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02	I	관훈동	118-31	112.4	112.4	획지선 지정
	103	I	관훈동	118-32	119.0	119.0	획지선 지정
	104	I	관훈동	118-33	119.0	119.0	획지선 지정
	105	I	관훈동	118-34	112.4	112.4	획지선 지정
	106	I	관훈동	118-35	59.5	59.5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	S1	경운동	66-2	29.8	-	-
	-	S1	경운동	66-3	122.3	-	-
	-	S1	경운동	66-4	112.4	-	-
	-	S1	경운동	66-5	59.1	-	-
	-	S1	경운동	66-11	152.1	-	-
	-	S1	경운동	67	74.7	-	-
	-	S1	경운동	68-1	92.6	-	-
	-	S1	경운동	68-2	59.8	-	-
	-	S1	관훈동	30-8	192.6	-	-
A3	-	S1	관훈동	30-9	150.7	-	기 공동건축
	-	S1	관훈동	30-31	13.9	-	
	-	S1	관훈동	30-10	152.7	-	-
	-	S1	관훈동	30-12	128.9	-	-
	-	S1	관훈동	31	69.4	-	기 공동건축
	-	S1	관훈동	33	138.8	-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30호(2005.6)]
	-	O1	경운동	62-9	4.5	-	
	-	O1	경운동	63-1	12.9	-	
	-	O1	경운동	63-13	36.4	-	기 공동건축
	-	O1	경운동	69	165.3	-	
	-	O1	경운동	70	261.2	-	
	-	O1	경운동	71-4	759.3	-	
	-	O1	경운동	74	313.7	-	-
	-	O1	경운동	96-15	145.8	-	기 공동건축[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30호(2005.6)]
	-	O1	경운동	91-1	816.9	-	-
	-	O1	경운동	96-18	497.0	-	
	-	O1	경운동	96-24	46.3	-	기 공동건축
	-	O1	경운동	96-27	4.6	-	
	-	O1	경운동	96-21	185.8	-	-
	-	O1	관훈동	117-2	405.0	-	-
	-	O1	관훈동	126-2	103.5	-	기 공동건축
	-	O1	관훈동	127-2	26.4	-	
	-	O2	경운동	85	1,144.8	-	기 공동건축
	-	O2	경운동	88	4,018.8	-	
	-	O2	경운동	88-2	9.9	-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A3	-	O2	경운동	90-3	3,209.1	-	기 공동건축
	-	O1	경운동	90-19	11.4	-	
	-	O2	경운동	91-6	72.0	-	
	107	특별	경운동	89-4	5,586.5	5,923.8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고함부지)
			관훈동	85	337.3		
	108	특별	관훈동	38	1503.2	1,503.2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쌈지[(구)영빈가든부지])
	109	특별	관훈동	112-4	1,707.1	1,707.1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덕성학원부지)
A4	1	M	관훈동	6	74.9	11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6, 6-1)
			관훈동	6-1	44.1		
	2	M	관훈동	7	97.9	132.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2)
			관훈동	7-2	34.3		
	3	M	관훈동	8-2	55.1	113.4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8-2, 8-4, 8-5)
			관훈동	8-4	6.6		
			관훈동	8-5	51.7		
	4	M	관훈동	16	121.3	230.4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16-1	109.1		
	5	M	관훈동	21	624.2	677.3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21-5)
			관훈동	21-5	53.1		
	6	M	관훈동	17	57.3	218.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7, 17-1, 18, 18-1)
			관훈동	17-1	41.9		
			관훈동	18	68.6		
			관훈동	18-1	50.4		
	7	M	관훈동	23	281.0	289.9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26-2)
			관훈동	26-2	8.9		
	8	M	관훈동	26-1	10.9	114.0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26-1, 27-6, 27-7)
			관훈동	27-6	78.0		
			관훈동	27-7	25.1		
	9	M	관훈동	27-3	86.9	216.3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27-4, 27-5)
			관훈동	27-4	59.3		
			관훈동	27-5	70.1		
	10	M	인사동	1-1	101.3	208.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2, 1-3, 1-4, 1-5)
			인사동	1-2	47.9		
			인사동	1-3	17.2		
			인사동	1-4	23.8		
			인사동	1-5	18.0		
	11	M	인사동	8-3	52.9	247.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8-3)
			인사동	9	195.0		
	12	M	인사동	10	72.7	72.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3	M	인사동	11	62.8	62.8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4	M	인사동	12	55.9	55.9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15	M	인사동	14-1	115.7	115.7	획지선 지정
	16	M	인사동	14-4	82.6	82.6	획지선 지정
	17	I	관훈동	1	394.1	394.1	획지선 지정
	18	I	관훈동	2-1	145.5	145.5	획지선 지정 / 추후 공공보행통로 조성사업에 따라 변경 가능
	19	I	관훈동	2-2	274.4	274.4	획지선 지정
	20	I	관훈동	2-3	158.7	158.7	획지선 지정
	21	I	관훈동	4-2	204.0	204.0	획지선 지정
	22	I	관훈동	5	185.1	185.1	획지선 지정
	23	I	관훈동	10	238.0	238.0	획지선 지정
	24	I	관훈동	11	72.7	72.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25	I	관훈동	12-1	12.2	114.7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2-1)
			관훈동	15-2	102.5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26	I	관훈동	12-2	123.3	123.3	획지선 지정
	27	I	관훈동	13-1	29.4	250.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3-1, 14-1)
			관훈동	14	211.6		
			관훈동	14-1	9.9		
	28	I	관훈동	13-2	145.8	145.8	획지선 지정
	29	I	관훈동	15-1	112.4	168.6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29-22)
			관훈동	29-22	56.2		
	30	I	관훈동	15-3	128.9	128.9	획지선 지정
	31	I	관훈동	19	105.8	105.8	획지선 지정
	32	I	관훈동	29	94.9	94.9	획지선 지정
	33	I	관훈동	29-2	84.0	84.0	획지선 지정
	34	I	관훈동	29-3	85.0	85.0	획지선 지정
	35	I	관훈동	29-4	79.7	79.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36	I	관훈동	29-5	75.0	75.0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37	I	관훈동	29-7	73.1	73.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38	I	관훈동	29-8	73.1	73.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39	I	관훈동	29-9	79.7	79.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0	I	관훈동	29-10	93.9	93.9	획지선 지정
	41	I	관훈동	29-12	68.1	68.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2	I	관훈동	29-13	71.7	71.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3	I	관훈동	29-14	76.4	76.4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4	I	관훈동	29-16	69.8	69.8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5	I	관훈동	29-17	66.1	66.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6	I	관훈동	29-18	44.0	44.0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7	I	관훈동	29-19	49.6	49.6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A4	48	I	관훈동	29-20	56.2	56.2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49	I	관훈동	29-21	109.4	109.4	획지선 지정
	50	I	인사동	2	92.6	92.6	획지선 지정
	51	I	인사동	3	103.2	103.2	획지선 지정
	52	I	인사동	4	147.1	147.1	획지선 지정
	53	I	인사동	5	175.2	175.2	획지선 지정
	54	I	인사동	7	185.1	185.1	획지선 지정
	55	I	인사동	8-1	66.1	66.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56	I	인사동	8-2	39.7	39.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57	I	인사동	8-4	66.1	66.1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58	I	인사동	8-6	69.4	69.4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
	59	I	인사동	8-7	155.4	155.4	획지선 지정
	60	I	인사동	8-8	99.2	99.2	획지선 지정
	-	S1	경운동	64-6	215.2	-	-
	-	S1	경운동	64-10	26.4	-	-
	-	S1	경운동	64-12	24	-	기 공동건축
	-	S1	경운동	64-13	42.3	-	
	-	S1	경운동	64-14	35.8	-	
	-	S1	경운동	64-15	43.2	-	기 공동건축
	-	S1	경운동	64-16	51.4	-	
	-	S1	관훈동	27-1	38.7	-	-
	-	S1	관훈동	29-23	313.3	-	-
	-	S1	관훈동	30-3	56.7	-	-
	-	S1	관훈동	30-4	56.5	-	-
	-	S1	관훈동	30-7	81.6	-	-
	-	S1	관훈동	30-13	175.6	-	-
	-	S1	관훈동	30-27	169.9	-	-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A4	-	01	경운동	63-4	244.6	-	기 공동건축
	-	01	경운동	63-7	431.9	-	기 공동건축
	-	01	경운동	63-9	109.1	-	-
	-	01	경운동	63-10	125.6	-	-
	61	특별	경운동	46-4	3.4	5,146.3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건국대학교부지)
			경운동	46-5	24.1		
			경운동	47-1	2,055.9		
			경운동	47-2	36.7		
			경운동	47-3	1.0		
			경운동	47-4	178.5		
			경운동	47-5	0.7		
			경운동	47-6	13.2		
			경운동	47-8	13.9		
			경운동	47-9	121.7		
			경운동	47-17	396.4		
			관훈동	1-4	80.7		
			낙원동	280	1,591.7		
			낙원동	280-4	628.4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획지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1	I	관훈동	1	394.1	394.1	획지선 지정
2	I	관훈동	2-1	145.5	145.5	획지선 지정
3	I	관훈동	2-2	274.4	274.4	획지선 지정
4	I	관훈동	2-3	158.7	158.7	획지선 지정
5	I	관훈동	4-2	204.0	204.0	획지선 지정
6	I	관훈동	5	185.1	185.1	획지선 지정
7	I	관훈동	10	238.0	238.0	획지선 지정
8	I	관훈동	11	72.7	72.7	획지선 지정
9	I	관훈동	12-1	12.2	114.7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12-1)
		관훈동	15-2	102.5		
10	I	관훈동	12-2	123.3	123.3	획지선 지정
11	I	관훈동	13-1	29.4	250.9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13-1,14-1)
		관훈동	14	211.6		
		관훈동	14-1	9.9		
12	I	관훈동	13-2	145.8	145.8	획지선 지정
13	I	관훈동	15-1	112.4	168.6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29-22	56.2		
14	I	관훈동	15-3	128.9	128.9	획지선 지정
15	I	관훈동	19	105.8	105.8	획지선 지정
16	I	관훈동	29	94.9	94.9	획지선 지정
17	I	관훈동	29-2	84.0	84.0	획지선 지정
18	I	관훈동	29-4	79.7	79.7	획지선 지정
19	I	관훈동	29-5	75.0	75.0	획지선 지정
20	I	관훈동	29-7	73.1	73.1	획지선 지정
21	I	관훈동	29-8	73.1	73.1	획지선 지정
22	I	관훈동	29-9	79.7	79.7	획지선 지정
23	I	관훈동	29-10	93.9	93.9	획지선 지정
24	I	관훈동	29-12	68.1	68.1	획지선 지정

획지 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25	I	관훈동	29-13	71.7	71.7	획지선 지정
26	I	관훈동	29-14	76.4	76.4	획지선 지정
27	I	관훈동	29-16	69.8	69.8	획지선 지정
28	I	관훈동	29-17	66.1	66.1	획지선 지정
29	I	관훈동	29-18	44.0	44.0	획지선 지정
30	I	관훈동	29-19	49.6	49.6	획지선 지정
31	I	관훈동	29-20	56.2	56.2	획지선 지정
32	I	관훈동	29-21	109.4	109.4	획지선 지정
33	I	관훈동	30-11	120.0	120.0	획지선 지정
34	I	관훈동	30-15	84.6	84.6	획지선 지정
35	I	관훈동	30-16	86.0	92.6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45-1)
		관훈동	45-1	6.6		
36	I	관훈동	32	109.0	109.0	획지선 지정
37	I	관훈동	32-1	3.4	278.7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44	275.3		
38	I	관훈동	42-2	44.0	44.0	획지선 지정
39	I	관훈동	55-1	203.4	203.4	획지선 지정
40	I	관훈동	56-1	135.5	135.5	획지선 지정
41	I	관훈동	56-2	92.6	92.6	획지선 지정
42	I	관훈동	58	72.7	72.7	획지선 지정
43	I	관훈동	59	142.1	142.1	획지선 지정
44	I	관훈동	60	59.5	59.5	획지선 지정
45	I	관훈동	61	86.0	86.0	획지선 지정
46	I	관훈동	62	128.9	128.9	획지선 지정
47	I	관훈동	64	360.3	360.3	획지선 지정
48	I	관훈동	65	36.4	36.4	획지선 지정
49	I	관훈동	66	39.7	39.7	획지선 지정
50	I	관훈동	67	112.4	112.4	획지선 지정
51	I	관훈동	68	181.8	181.8	획지선 지정
52	I	관훈동	75	97.8	99.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5-2)
		관훈동	75-2	1.4		
53	I	관훈동	76	92.6	92.6	획지선 지정
54	I	관훈동	77-1	59.5	59.5	획지선 지정
55	I	관훈동	77-3	59.5	64.5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8-4)
		관훈동	78-4	5.0		
56	I	관훈동	78-2	106.1	106.1	획지선 지정
57	I	관훈동	78-5	56.2	56.2	획지선 지정
58	I	관훈동	79	109.1	109.1	획지선 지정
59	I	관훈동	83	56.2	56.2	획지선 지정
60	I	관훈동	83-2	105.8	105.8	획지선 지정
61	I	관훈동	84-2	261.2	261.2	획지선 지정
62	I	관훈동	84-3	255.5	255.5	획지선 지정
63	I	관훈동	84-4	284.3	284.3	획지선 지정
64	I	관훈동	84-5	240.3	240.3	획지선 지정
65	I	관훈동	84-6	111.4	111.4	획지선 지정
66	I	관훈동	84-10	200.7	200.7	획지선 지정
67	I	관훈동	84-11	214.9	214.9	획지선 지정
68	I	관훈동	84-12	148.8	148.8	획지선 지정
69	I	관훈동	84-13	221.5	221.5	획지선 지정
70	I	관훈동	84-14	155.4	155.4	획지선 지정
71	I	관훈동	84-16	336.2	336.2	획지선 지정
72	I	관훈동	84-17	158.7	158.7	획지선 지정

획지 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73	I	관훈동	84-18	138.8	229.0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87-1) [종로구고시제2024-111호]
		관훈동	87	72.7		
		관훈동	87-1	17.5		
74	I	관훈동	84-20	109.1	109.1	획지선 지정
75	I	관훈동	84-21	159.7	159.7	획지선 지정
76	I	관훈동	84-22	114.7	114.7	획지선 지정
77	I	관훈동	84-23	129.9	129.9	획지선 지정
78	I	관훈동	84-24	86.0	86.0	획지선 지정
79	I	관훈동	86	214.9	214.9	획지선 지정
80	I	관훈동	88	135.5	206.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88-1	71.4		
81	I	관훈동	89	89.3	89.3	획지선 지정
82	I	관훈동	90	92.6	92.6	획지선 지정
83	I	관훈동	91	36.4	261.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91)
		관훈동	92	224.8		
84	I	관훈동	95	132.3	132.3	획지선 지정
85	I	관훈동	97	43.0	138.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97)
		관훈동	98	95.9		
86	I	관훈동	99	76.0	76.0	획지선 지정
87	I	관훈동	100-1	36.4	185.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00-1)
		관훈동	100-3	148.8		
88	I	관훈동	100-2	162.9	163.6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00-10)
		관훈동	100-10	0.7		
89	I	관훈동	100-4	158.5	165.3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00-9)
		관훈동	100-9	6.8		
90	I	관훈동	100-6	150.0	160.7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00-8)
		관훈동	100-8	10.7		
91	I	관훈동	106	284.3	284.3	획지선 지정
92	I	관훈동	107-1	181.8	181.8	획지선 지정
93	I	관훈동	107-2	79.3	79.3	획지선 지정
94	I	관훈동	108	178.5	178.5	획지선 지정
95	I	관훈동	109-1	113.4	113.4	획지선 지정
96	I	관훈동	109-2	71.8	71.8	획지선 지정
97	I	관훈동	118-2	277.6	277.6	획지선 지정
98	I	관훈동	118-6	86.0	162.0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118-7	76.0		
99	I	관훈동	118-13	33.1	102.5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18-13)
		관훈동	118-15	69.4		
100	I	관훈동	118-16	76.0	76.0	획지선 지정
101	I	관훈동	118-17	72.7	72.7	획지선 지정
102	I	관훈동	118-18	72.7	72.7	획지선 지정
103	I	관훈동	118-19	69.4	69.4	획지선 지정
104	I	관훈동	118-20	66.1	66.1	획지선 지정
105	I	관훈동	118-21	33.1	33.1	획지선 지정
106	I	관훈동	118-22	43.0	43.0	획지선 지정
107	I	관훈동	118-23	109.1	109.1	획지선 지정
108	I	관훈동	118-25	79.3	79.3	획지선 지정
109	I	관훈동	118-26	95.9	95.9	획지선 지정
110	I	관훈동	118-27	99.2	99.2	획지선 지정
111	I	관훈동	118-28	122.3	122.3	획지선 지정
112	I	관훈동	118-29	39.7	39.7	획지선 지정
113	I	관훈동	118-31	112.4	112.4	획지선 지정
114	I	관훈동	118-32	119.0	119.0	획지선 지정

획지 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115	I	관훈동	118-33	119.0	119.0	획지선 지정
116	I	관훈동	118-34	112.4	112.4	획지선 지정
117	I	관훈동	118-35	59.5	59.5	획지선 지정
118	I	관훈동	164	66.1	70.4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169-5)
		관훈동	169-5	4.3		
119	I	관훈동	165	82.6	82.6	획지선 지정
120	I	관훈동	166	99.2	99.2	획지선 지정
121	I	관훈동	172	99.2	99.2	획지선 지정
122	I	관훈동	173	59.5	82.6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74)
		관훈동	174	23.1		
123	I	관훈동	182-1	99.2	99.2	획지선 지정
124	I	경운동	66-7	806.6	806.6	획지선 지정
125	I	인사동	2	92.6	92.6	획지선 지정
126	I	인사동	3	103.2	103.2	획지선 지정
127	I	인사동	4	147.1	147.1	획지선 지정
128	I	인사동	5	175.2	175.2	획지선 지정
129	I	인사동	7	185.1	185.1	획지선 지정
130	I	인사동	8-1	66.1	66.1	획지선 지정
131	I	인사동	8-2	39.7	39.7	획지선 지정
132	I	인사동	8-4	66.1	66.1	획지선 지정
133	I	인사동	8-6	69.4	69.4	획지선 지정
134	I	인사동	8-7	155.4	155.4	획지선 지정
135	I	인사동	8-8	99.2	99.2	획지선 지정
136	M	관훈동	6	74.9	119.0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6-1)
		관훈동	6-1	44.1		
137	M	관훈동	7	97.9	132.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2)
		관훈동	7-2	34.3		
138	M	관훈동	8-2	55.1	113.4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8-4)
		관훈동	8-4	6.6		
		관훈동	8-5	51.7		
139	M	관훈동	16	230.4	230.4	획지선 지정
140	M	관훈동	17	57.3	218.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7-1)
		관훈동	17-1	41.9		
		관훈동	18	68.6		
		관훈동	18-1	50.4		
141	M	관훈동	21	624.2	677.3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21-5)
		관훈동	21-5	53.1		
142	M	관훈동	23	281.0	289.9	획지선 지정 / 과소필지(26-2)
		관훈동	26-2	8.9		
143	M	관훈동	26-1	10.9	114.0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26-1, 27-7)
		관훈동	27-6	78.0		
		관훈동	27-7	25.1		
144	M	관훈동	27-3	86.9	216.3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27-4	59.3		
		관훈동	27-5	70.1		
145	M	관훈동	37	185.5	239.9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관훈동	37-1	54.4		
146	M	관훈동	70	64.6	69.4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70-1)
		관훈동	70-1	4.8		
147	M	관훈동	71	53.3	56.2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71-1)
		관훈동	71-1	2.9		
148	M	관훈동	72	241.7	297.5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관훈동	72-1	55.8		

획지 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149	M	관훈동	73-1	69.9	158.7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과소필지(73-3,73-2,73-4)
		관훈동	73-2	23.3		
		관훈동	73-3	34.9		
		관훈동	73-4	30.6		
150	M	관훈동	74	139.4	205.0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관훈동	74-1	65.6		
151	M	관훈동	100-5	229.1	229.1	획지선 지정
152	M	관훈동	103	89.0	89.0	획지선 지정
153	M	관훈동	105	100.4	100.4	획지선 지정
154	M	관훈동	118-36	62.8	62.8	획지선 지정
155	M	관훈동	119	159.6	159.6	획지선 지정
156	M	관훈동	120	76.0	191.3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관훈동	121	115.3		
157	M	관훈동	123-4	207.3	207.3	획지선 지정
158	M	관훈동	144	142.8	142.8	획지선 지정
159	M	관훈동	145	124.6	124.6	획지선 지정
160	M	관훈동	145-7	9.1	88.4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45-7)
		관훈동	146-1	79.3		
161	M	관훈동	146-2	99.2	99.2	획지선 지정
162	M	관훈동	147	53.9	53.9	획지선 지정
163	M	관훈동	155-1	24.0	226.4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 과소필지(필지전체)
		관훈동	155-5	11.7		
		관훈동	155-6	11.7		
		관훈동	155-7	12.5		
		관훈동	155-8	22.0		
		관훈동	155-9	13.8		
		관훈동	155-10	14.3		
		관훈동	155-11	15.1		
		관훈동	155-12	44.8		
		관훈동	155-14	6.0		
		관훈동	155-15	7.6		
		관훈동	155-16	7.9		
		관훈동	155-18	11.2		
		관훈동	155-19	10.6		
		관훈동	155-20	13.2		
164	M	관훈동	168	211.5	211.5	획지선 지정
165	M	관훈동	170	228.1	228.1	획지선 지정
166	M	관훈동	185	125.6	125.6	획지선 지정
167	M	관훈동	186	74.0	74.0	획지선 지정
168	M	관훈동	187	127.1	127.1	획지선 지정
169	M	관훈동	188	704.3	714.4	획지선 지정 (기 공동건축)/과소필지 (191-1,192-34)
		관훈동	191-1	7.8		
		관훈동	192-34	2.3		
170	M	관훈동	189	82.6	82.6	획지선 지정
171	M	관훈동	192-1	153.7	153.7	획지선 지정
172	M	관훈동	192-13	254.5	254.5	획지선 지정
173	M	관훈동	192-14	115.7	115.7	획지선 지정
174	M	관훈동	192-35	89.9	89.9	획지선 지정
175	M	관훈동	196-3	64.5	64.5	획지선 지정
176	M	관훈동	196-5	169.6	169.6	획지선 지정
177	M	관훈동	196-6	172.2	172.2	획지선 지정
178	M	관훈동	197-1	178.5	178.5	획지선 지정
179	M	관훈동	197-4	336.4	336.4	획지선 지정

획지 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180	M	관훈동	197-24	193.7	193.7	획지선 지정
181	M	관훈동	198-10	132.8	161.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87-3)
		인사동	187-3	29.1		
182	M	관훈동	198-31	109.8	431.5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관훈동	198-32	125.3		
		관훈동	198-33	196.4		
183	M	인사동	1-1	101.3	208.2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1-2,1-3,1-4,1-5)
		인사동	1-2	47.9		
		인사동	1-3	17.2		
		인사동	1-4	23.8		
		인사동	1-5	18.0		
184	M	인사동	8-3	52.9	52.9	획지선 지정
185	M	인사동	9	195.0	195.0	획지선 지정
186	M	인사동	10	72.7	72.7	획지선 지정
187	M	인사동	11	62.8	62.8	획지선 지정
188	M	인사동	12	55.9	55.9	획지선 지정
189	M	인사동	14-1	115.7	115.7	획지선 지정
190	M	인사동	14-4	82.6	82.6	획지선 지정
191	M	인사동	181-1	63.1	63.1	획지선 지정
192	M	인사동	182-1	61.5	61.5	획지선 지정
193	M	인사동	182-2	4.6	83.9	획지선 지정(기 공동건축) / 과소필지 (182-2)
		인사동	183	79.3		
194	M	인사동	183-4	376.9	376.9	획지선 지정
195	M	인사동	184	320.6	320.6	획지선 지정
196	M	인사동	186	103.1	103.1	획지선 지정
197	I	관훈동	29-3	85.0	582.9	획지선 지정 (도시계획시설해제지역)
		경운동	64-47	179.2		
		경운동	64-48	60.8		
		경운동	64-49	103.5		
		경운동	64-50	26.8		
		경운동	64-54	127.6		
198	S1	경운동	64-14	35.8	423.3	획지선 지정 (도시계획시설해제지역)
		경운동	64-17	299.2		
		경운동	64-18	25.8		
		경운동	64-19	62.5		
199	D	관훈동	198-8	388.3	787.1	획지선 지정(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
		관훈동	198-9	62.8		
		관훈동	198-49	5.1		
		견지동	118-1	92.4		
		견지동	118-2	87.1		
		견지동	119-1	81.0		
		견지동	119-4	70.4		
200	D	관훈동	198-37	105.9	2,356.0	획지선 지정 (도시계획시설해제지역)
		관훈동	198-38	111.1		
		관훈동	198-42	1,723.3		
		관훈동	198-50	10.9		
		관훈동	198-52	27.0		
		견지동	88-7	76.7		
		견지동	120-1	152.7		
		견지동	120-8	9.0		
		인사동	194-26	76.5		
		인사동	194-35	63.7		

획지 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201	03	견지동	69-3	25.8	1,812.6	획지선 지정(S&S 대규모 미개발지)
		견지동	69-6	28.3		
		견지동	88-2	18.8		
		견지동	90	122.3		
		견지동	91	176.2		
		견지동	92-1	443.0		
		견지동	101	79.3		
		견지동	102	191.7		
		견지동	103	69.4		
		견지동	104	79.3		
		견지동	105	135.5		
		견지동	106	99.2		
		견지동	107	343.8		
202	특별	관훈동	110	102.5	1,845.0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덕성학원부지)
		관훈동	110-1	35.4		
		관훈동	112-4	1,707.1		
203	특별	관훈동	85	337.3	5,923.8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고합부지)
		경운동	89-4	5,586.5		
204	특별	관훈동	1-4	80.7	5,146.3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건국대학교부지)
		경운동	46-4	3.4		
		경운동	46-5	24.1		
		경운동	47-1	2,055.9		
		경운동	47-2	36.7		
		경운동	47-3	1.0		
		경운동	47-4	178.5		
		경운동	47-5	0.7		
		경운동	47-6	13.2		
		경운동	47-8	13.9		
		경운동	47-9	121.7		
		경운동	47-17	396.4		
		낙원동	280	1,591.7		
		낙원동	280-4	628.4		
205	특별	관훈동	154-1	1,216.5	5,855.0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대성산업부지)
		관훈동	154-3	148.8		
		관훈동	155-2	2,075.2		
		관훈동	175	178.5		
		견지동	74-1	2,236.0		
206	특별	관훈동	38	1,503.2	1,503.2	획지선 지정 (쌈지[(구)영빈가든부지])
207	특별	관훈동	192-9	120.5	4,704.1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대상부지)
		관훈동	192-18	3,897.4		
		관훈동	192-49	99.4		
		관훈동	198-3	0.7		
		견지동	85-6	586.1		
208	특별	관훈동	30-1	1,170.5	1,717.3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경인미술관)
		관훈동	57	102.5		
		관훈동	84-7	199.3		
		관훈동	84-8	92.6		
		관훈동	84-9	152.4		

획지 번호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획지	
209	특별	경운동	63-7	(29.6)	946.6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인사)
		경운동	64-20	89.9		
		경운동	64-21	27.8		
		경운동	64-22	86.6		
		경운동	64-23	40.0		
		경운동	64-24	52.2		
		경운동	64-25	44.3		
		경운동	64-27	26.8		
		경운동	64-28	18.8		
		경운동	64-29	15.5		
		경운동	64-30	27.8		
		경운동	64-31	21.2		
		경운동	64-32	33.4		
		경운동	64-33	40.0		
		경운동	64-34	68.8		
		경운동	64-36	34.4		
		경운동	64-37	16.5		
		경운동	64-38	17.5		
		경운동	64-39	21.2		
		경운동	64-40	64.5		
		경운동	64-41	35.7		
		경운동	64-42	18.8		
		경운동	64-43	29.1		
		경운동	64-44	31.1		
		경운동	64-45	14.2		
		경운동	64-46	15.5		
		경운동	64-59	25.4		

※ ( )는 획지 내 면적임.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결정 조서 (신설)

연번	구역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공동개발	
1	O1	경운동	96-18	497	547.9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96-24, 96-27)
		경운동	96-24	46.3		
		경운동	96-27	4.6		
2	O1	경운동	67-3	44.7	1,284.3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67-3)
		경운동	69	165.3		
		경운동	70	1,074.3		
3	S1	관훈동	27-1	38.7	45.6	공동개발 지정 / 과소필지
		관훈동	27-2	6.9		
4	S1	관훈동	30-3	56.7	120.3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30-5), 맹지(30-4)
		관훈동	30-4	56.5		
		관훈동	30-5	7.1		
5	S2	관훈동	192-46	99.2	104.6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192-52)
		관훈동	192-52	5.4		
6	O3	견지동	108	43	51.3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 과소필지
		견지동	108-1	8.3		
7	O3	견지동	111	1,204.7	1,254.3	공동개발 지정, 보전건축물(농협) / 동일소유, 과소필지 (5-6)
		공평동	5-6	49.6		
8	O3	공평동	5	142.1	293.2	공동개발 지정, 보전건축물(동헌필방) / 동일소유, 과소필지(9-1)
		공평동	9	137.5		
		공평동	9-1	13.6		
9	O1	관훈동	126-2	103.5	129.9	공동개발 권장 / 과소필지(127-2)
		관훈동	127-2	26.4		
10	O2	경운동	90-3	3,209.1	3,292.5	공동개발 권장, 문화유산(구 통계국 청사) / 과소필지(90-19)
		경운동	90-19	11.4		
		경운동	91-6	72		
11	O1	경운동	49-2	(22.2)	464.2	공동개발 권장 / 과소필지(49-2, 62-2 62-4)
		경운동	62-2	0.7		
		경운동	62-4	9.4		
		경운동	63-7	431.9		
12	S1	경운동	66-2	29.8	181.9	공동개발 권장 / 과소필지(66-2)
		경운동	66-11	152.1		
13	S1	경운동	64-6	215.2	241.6	공동개발 권장 / 과소필지(64-10)
		경운동	64-10	26.4		
14	O3	견지동	68-3	113.4	122.7	공동개발 권장 / 과소필지(68-18)
		견지동	68-18	9.3		
15	O3	견지동	68-23	27.4	86.3	공동개발 권장 / 과소필지(68-23)
		견지동	68-24	58.9		
16	O3	견지동	95	64.8	342.5	공동개발 권장 / 간선가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관리
		견지동	95-2	84.0		
		견지동	95-3	58.2		
		견지동	100	115.7		
		견지동	100-1	19.8		

※ ( )는 획지 내 면적임.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허용(지정)용도 : 변경

▌지정용도 결정조서 (기정)

구분 (도면표시)	위치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U1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 (M)	1층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일용품판매점(1,000㎡미만)	고미술, 필방/지업사, 공예품, 생활한복, 불교용품판매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구점(500㎡미만)	표구점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관, 전시장,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기념관, 박물관
		2층 이상 지정용도 (지하포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일용품판매점(1,000㎡미만)	고미술, 필방/지업사, 공예품, 생활한복, 기타문화용품, 불교용품판매, 액자점
				휴게음식점(300㎡미만)	전통찻집
				서점(1,000㎡미만)	서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구점(500㎡미만)	표구점
				일반음식점	한식집(한정식집 포함), 전통주점
				학원, 교습소(500㎡미만)	문화관련(서예학원, 다도학원, 화실, 서당 등)
				사진관(500㎡미만)	사진관
				사무소, 출판사(500㎡미만)	문화관련(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사무실, 기타 인사동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공연장(300㎡미만)	전통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관, 전시장,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기념관, 박물관
				공연장	전통공연장
			주거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주택
U2	소가로 구역 (S-1,2)	전층 지정용도	U1-B에서 다루는 용도		
U3	한옥 관리구역 (I)	전층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일용품판매점(1,000㎡미만)	고미술, 필방/지업사, 공예품, 생활한복, 기타문화용품, 불교용품판매
				휴게음식점(300㎡미만)	전통찻집
				서점(1,000㎡미만)	서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구점(500㎡미만)	표구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한식집(한정식집 포함), 전통주점, 전통찻집
				학원, 교습소(500㎡미만)	문화관련(서예학원, 다도학원, 화실, 서당 등)
				사진관(500㎡미만)	사진관
				사무소, 출판사(500㎡미만)	문화관련(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사무실, 기타 인사동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공연장(300㎡미만)	전통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관, 전시장,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기념관, 박물관
				공연장	전통공연장
			주거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주택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전통숙박시설

※ 위에서 분류한 U1, U2, U3의 세부용도와 유사한 용도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 운영가능)의 자문을 거쳐 인정 가능하며, 문화지구의 권장용도 변경 시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부용도에 포함 가능함.

※ 동헌필방부지(공평동 5번지외2필지)의 경우 기정 기개발구역 U1 1층 지정용도, 2층 이상 지정용도(지하층 포함) 적용.

※ 용도분류표에서 말하는 개별 세부용도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정)

1) 고미술(골동품점): 고미술품의 매매점은 전적, 고문서, 서화 및 탁본류와 조각, 도자기 및 기타공예품류, 민속자료 및 기타 문화재와 우리나라, 동양 및 서양 준골동품이나 모조품으로서 기타 준골동품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말함.
2) 필방/지업사: 필방은 서예와 동양화에 사용되는 붓, 벼루, 먹, 연적 등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며, 지업사는 각종 형태의 전통종이를 판매하는 곳을 말함.
3) 공예품: 공예품은 과거에서 전승된 기술과 생산방법, 또는 현대에 새로이 개발된 기술, 기법, 재료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예술적, 장식적, 실용적 특성을 지니며 일반 대중들이 두루 사용하는 생활용구, 장식품, 기호품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품목들을 제작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4) 생활한복: 생활한복 판매점은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의 개인 맞춤복이나 개량된 양식의 한복 기성품목을 판매하는 곳을 말함.
5) 기타 문화용품: 기타 문화용품 판매점은 고미술, 공예품 판매점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주로 기념품 및 소비재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함.
6) 표구점: 표구를 하는 곳을 말하며, 표구란 서화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꾸미고 나무 등의 장식을 써서 족자, 액자, 병풍 등을 만드는 일을 말함.
7) 전통찻집: 찻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부속적으로 커피 등 기타음료 포함)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 제외)를 말함.
8) 한식집: 일반한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9) 전통주점: 맥주, 양주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함.
10) 전통공연장: 국악 및 고전무용 등의 공연과 무형문화재 등 장인들의 공예 시연의 장으로 사용되는 곳을 말함.
11) 전통숙박시설: 한옥을 활용한 민박, 여인숙, 여관업 등을 말함.
12) 한정식집: 흰밥에 국과 반찬을 곁들여 한 상(床)으로 차려내어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13) 액자점: 그림·글씨·사진 등을 넣어 벽에 걸기 위한 틀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허용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모체용지)	적용 구역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허용 1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 (M)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일용품소매점(1,000㎡미만)	고미술, 필방/지업사, 공예품, 생활한복, 액자점, 서점, 불교용품	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표구점	-	-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전시장) 중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	-
		1층 외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주택, 한옥체험업	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일용품소매점(1,000㎡미만)	고미술, 필방/지업사, 공예품, 생활한복, 액자점, 불교용품, 기타문화용품, 서점	변경 정의수정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미만)	한식집, 전통찻집, 한식제과점	정의수정
				자목 중 사무소, 출판사(30㎡미만)	문화관련(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사무실, 기타 인사동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
				바.공공업무 수행시설(1,000㎡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신설
				사.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신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표구점, 사진관	-	-
				자.일반음식점	한식집, 전통주점	정의수정
				아.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이상)	한식집, 전통찻집, 한식제과점	정의수정
				카.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문화관련(서예학원, 다도학원, 화실, 서당 등)	-
				하목 중 사무소, 출판사(500㎡미만)	문화관련(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사무실, 기타 인사동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
				가.공연장(500㎡미만)	전통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가.공연장	전통공연장	-
				라목(전시장) 중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	-
			교육연구시설	바.도서관	-	신설
			노유자시설		-	신설

구분 (묵현상)	적용 구역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허용 2	소가로 구역 (S-1,2) 한옥 관리구역 (I)	전층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주택, 한옥체험업	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일용품소매점(1,000㎡미만)	고미술, 필방/지업사, 공예품, 생활한복, 액자점, 기타문화용품, 서점	변경
				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미만)	한식집, 전통찻집, 한식제과점	정의수정
				자목 중 사무소, 출판사(30㎡미만)	문화관련(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사무실, 기타 인사동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
				바.공공업무 수행시설(1,000㎡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신설
				사.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신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서점	-	신설
				바.표구점, 사진관	-	-
				자.일반음식점	한식집, 전통주점	정의수정
				아.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이상)	한식집, 전통찻집, 한식제과점	정의수정
				카.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문화관련(서예학원, 다도학원, 화실, 서당 등)	-
				하목 중 사무소, 출판사(500㎡미만)	문화관련(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사무실, 기타 인사동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
				가.공연장(500㎡미만)	전통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가.공연장	전통공연장	-
				라목(전시장) 중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	-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	신설
			노유자시설		-	신설
			숙박시설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전통숙박시설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서 도입 가능한 용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별로 정한 허용용도(건축법상 용도 및 세부용도)에 한해서만 허용함.

※ 「건축법」, 「학교보건법」, 「청소년 보호법」,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르며, 인사동 문화지구 내 대지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에서 금지하는 업종 및 시설을 불허함.

※ 구역별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일용품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자목 일반음식점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프랜차이즈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등)하는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체인점 형태'의 업종을 불허함. 단, 아래 사항은 세부구역별로 허용하는 용도 내에서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생활편의시설(편의점, 약국, 세탁소, 미용실 등)에 해당하는 용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소지를 둔 본점의 경우
- 매장유산 보호전시를 하는 경우
-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건축자산 가치보전 등 인사동 고유의 지역성 강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에서 분류한 허용1, 허용2의 세부용도와 유사한 용도에 대하여는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 운영가능)의 자문을 거쳐 인정 가능.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권장용도 변경 시 구역별 허용용도 내에서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부용도로 인정 가능.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용도구분에 따라 본 용도분류 및 세부용도 계획을 따름.

※ 용도분류표에서 말하는 개별 세부용도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변경)

1) 고미술(골동품점): 고미술품의 매매점은 전적, 고문서, 서화 및 탁본류와 조각, 도자기 및 기타공예품류, 민속자료 및 기타 문화유산과 우리나라, 동양 및 서양 준골동품이나 모조품으로서 기타 준골동품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말함.
2) 필방/지업사 : 필방은 서예와 동양화에 사용되는 붓 벼루, 먹, 연적 등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며, 지업사는 각종 형태의 전통종이를 판매하는 곳을 말함.
3) 공예품 : 공예품은 과거에서 전승된 기술과 생산방법, 또는 현대에 새로이 개발된 기술, 기법, 재료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예술적, 장식적, 실용적 특성을 지니며 일반 대중들이 두루 사용하는 생활용구, 장식품, 기호품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품목 중 '국산품(확장개념)' 및 '창작품' 에 대하여 제작·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4) 생활한복: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의 개인맞춤복, 개량된 양식의 한복 기성품목 세 가지 품목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을 말함.
5) 기타 문화용품 :기타 문화용품 판매점은 고미술, 공예품 판매점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주로 기념품 및 소비재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함.
6) 표구점: 표구를 하는 곳을 말하며, 표구란 서화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꾸미고 나무 등의 장식을 써서 족자, 액자, 병풍 등을 만드는 일을 말함.
7) 전통찻집: 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부속적으로 커피 등 기타음료 포함)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8) 한식집: 한정식 및 일반한식을 포함하여, 한식 재료가 가미되거나 한식 조리기법을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9) 한식제과점 : 한식 재료가 가미되거나 한식 조리기법을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부속적으로 일반제과 포함)
10) 전통주점: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함.(부속적으로 맥주, 양주 등 포함)
11) 전통공연장: 국악 및 고전무용 등의 공연과 무형문화유산 등 장인들의 공예 시연의 장으로 사용되는 곳을 말함.
12) 전통숙박시설: 한옥을 활용한 민박, 여인숙, 여관업 등을 말함.
13) 한정식집: 흰밥에 국과 반찬을 곁들여 한 상(床)으로 차려내어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14) 액자점: 그림·글씨·사진 등을 넣어 벽에 걸기 위한 틀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15) 불교용품: 불교 신앙과 의례, 수행, 장식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각종 용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불상·불화·탱화 등 불교미술품, 목탁·염주·운수탁자·촛대 등 의식용구, 불교 경전·서적, 불교 관련 기념품 및 장식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나. 불허용도 : 변경

▌불허용도 결정조서 (기정)

구분 (모법표시)	위치	구분	세부용도
U4	소가로구역 (S-3) 기개발구역 (D) 간선가로변 구역 (O)	전층 불허용도 (지하층 포함)	·공동주택(단, 주상복합일 경우 제외) ※ 주상복합건축 시 저층부(4층까지)는 U2(단, 주거제외)의 용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바, 커피전문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바, 커피전문점,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게임제공업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위락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1층 불허용도 (가로환경 비활성화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학원, 독서실, 의약품도매점 ·의료시설 (종합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운동시설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세부시설기준: 바닥면적의 30%이상 또는 가로변 외벽길이의 1/3이상 입지 불허

※ 농협부지(견지동 111번지외1필지)는 기정 기개발구역 전층불허용도(U4) 적용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모법표시)	적용구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전층 불허	1층 불허	비고
불허 1	기개발 구역 (D) 간선가로 변구역 (O)	공동주택 (주상복합 제외)		○		주상복합 건축시 저층부(4층까지)는 비주거용도 설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세탁·수선시설(목욕탕, 세탁소, 이용원, 미용원 등)		○	-
			라. 주민의 진료·치료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 중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500㎡미만)	○		-
			다.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		신설
			마. 총포판매소	○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500㎡미만)	○		신설
			차목 중 장의사	○		-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500㎡미만)		○	변경
			타. 독서실, 기원		○	변경
			파목 주민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500㎡미만)		○	변경
			파목 주민체육시설 중 실내낚시터,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00㎡미만)	○		-
			하목 중 금융업소를 제외한 일반업무시설(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500㎡미만)		○	-
			거. 다중생활시설 (500㎡미만)	○		신설
			더. 단란주점 (150㎡미만)	○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중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500㎡이상)	○		-
			나목 집회장 중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500㎡이상)	○		변경
			다. 관람장	○		신설
			마. 동·식물원	○		신설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신설
		의료시설	가목 병원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
			나. 격리병원	○		-
		교육연구시설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	-
		운동시설	가목 중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	변경
			가목 중 실내낚시터,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
			나. 체육관(관람석 1,000㎡미만)	○		신설
			다. 운동장	○		신설

구분 (목적표시)	적용구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전층 불허	1층 불허	비고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건축 시 저층부(4층까지) 비주거용도 설치
		위락시설		○		-
		공장		○		-
		창고시설	가. 창고		○	신설
			나. 하역장, 다.물류터미널, 라.집배송시설	○		신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신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제외)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신설
		국방·군사시설		○		신설
		방송통신시설		○		신설
		발전시설		○		신설
		관광 휴게시설		○		신설
		장례시설		○		신설
		야영장시설		○		신설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서 도입 가능한 용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별로 정한 불허용도(건축법상 용도 및 세부용도)는 불허함.

※ 「건축법」, 「학교보건법」, 「청소년 보호법」,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르며, 인사동 문화지구 내 대지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에서 금지하는 업종 및 시설을 불허함.

※ 구역별로 허용하는 용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일용품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자목 일반음식점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프랜차이즈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등)하는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체인점 형태'의 업종을 불허함. 단, 아래 사항은 세부구역별로 허용하는 용도 내에서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생활편의시설(편의점, 약국, 세탁소, 미용실 등)에 해당하는 용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소지를 둔 본점의 경우
- 매장유산 보호전시를 하는 경우
-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건축자산 가치보전 등 인사동 고유의 지역성 강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용도구분에 따라 본 용도분류 및 세부용도 계획을 따름.

다. 권장용도 : 신설

▌권장용도 결정조서 (신설)

구분 (도면표시)	적용구역	적용층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권장1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0-2제외)	저층부 (지하1층~지상4층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일용품소매점 (1,000㎡미만)	·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시설 중 골동품점, 필방/지업사, 민속공예품점	구역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인센티브 연계
				자목 중 사무소, 출판사 (30㎡미만)	·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창업 및 활동공간 설치 ※ 종로구 문화과 협약 체결 시 인정	
				사.주민공동이용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출판사 (500㎡미만)		
				바목 중 표구점	·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시설 중 표구점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전시장) 중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시설 중 화랑	
권장2 (가로 활성화 용도)	간선가로변구역 (0-1,0-3), 기개발구역 (D)	저층부 (지하1층~지상4층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일용품소매점(1,000㎡미만)	–	구역별 용적률,높이 인센티브 연계
				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목 중 사진관	–	
				자. 일반음식점	–	
				하목 중 사무소, 출판사 (500㎡미만)	문화관련(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사무실, 기타 인사동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구역 및 부지별로 허용하는 용도 내에서 해당 권장용도(건축법상 용도분류 및 세부용도)를 적용함.

※ 권장용도는 저층부(지하1층~지상4층)에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면적을 건축물 전체층에 대한 평균바닥면적의 1개층 면적 이상(공용부 제외) 설치하거나 연면적 600㎡이상 설치 시 수용한 것으로 적용하며,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는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도계획을 따름.

※ 권장1,권장2 용도를 각각의 수용 인정 면적 이상으로 설치 시 해당 용도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적용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용도구분에 따라 본 용도분류 및 세부용도 계획을 따름.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권장시설 및 정의 변경 시 구역별 허용용도 내에서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 가능.

▌권장용도 설치에 따라 완화 적용받은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 시 인센티브 환수 방안

현금환수	증가한 연면적의 기준가액 – 의무기간 유지비율 = [증가한 연면적(㎡)X 기준가액(원/㎡)] - [증가한 연면적의 기준가액 X 유지기간(연) / 의무기간(연)]
공간환수	증가한 연면적(㎡) - [증가한 연면적 X 유지기간(연) / 의무기간(연)]

※ 공간환수를 우선으로 하고, 현금환수 기준가액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시점의 인근 유사 건물의 KB부동산시세 평균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시가표준액xα(1.5~2)의 연면적 기준 환산 금액(원/㎡) 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

※ 권장용도 유지 의무 기간은 구조 등 건축물의 사용기한(「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구조별 내용연수 기준)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폐율 : 변경

▌건폐율 결정조서 (기정)

적용구역	건폐율	완화범위	건폐율 완화기준	비고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주변구역(M)	60%이하	70%이하	· 4층 건축시	구역에 관계없이 한옥(한식기와, 목구조)을 신축할 경우 건폐율을 80%로 완화 (단, 한옥이 건축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만 적용)
		80%이하	· 3층 이하 건축시	
소가로구역(S-1,S-2)	60%이하	70%이하	· 3층 건축시	
		80%이하	· 2층 이하 건축시	
한옥관리구역(I), 소가로구역(S-3) 기개발구역(D), 간선가로변구역(O)	60%이하	-	-	
· 농협부지(견지동 111번지외1필지) · 동헌필방부지(공평동 5번지외2필지)	-	80%이하		※ 보전건축물 : 근대건축물 보존사항 준수 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특례 적용 (한옥 인정은 '인사동 한옥' 기준을 따름)
-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90%까지 완화
- 건축자산 공간환경 범위 내 일반건축물이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비한옥 건축요소 가이드라인>』 준수 시 80%까지 완화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적용구역	건폐율	완화건폐율	완화기준	비고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주변구역(M)	60%이하	70%이하	· 4층 건축 시 · 5층 건축, 권장용도(권장1) 설치,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모두 준수 시	-
	60%이하	80%이하	· 3층 이하 건축 시 · 4층 건축, 권장용도(권장1) 설치,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모두 준수 시	
한옥관리구역(I)	60%이하	80%이하	· '한옥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을 모두 준수 시	
소가로구역(S)	60%이하	70%이하	· 3층 건축 시 · 4층 건축 및 권장용도(권장1) 설치,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하여 건축 시	
	60%이하	80%이하	· 2층 이하 건축 시 · 3층 건축 및 권장용도(권장1) 설치,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모두 준수하여 건축 시	
기개발구역(D)	60%이하	-	-	
간선가로변구역(O)	60%이하	-	-	
지구단위계획구역	-	90%이하	·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특례** - 한옥,건축자산(건축물) 보호· 활용 90%이하 - 건축자산(공간환경) 내 비한옥 80% 이하	※ 보전건축물 통합 적용
	-	80%이하	· 문화유산 보전 시	-
	-	산식적용*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용도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식: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와 용적률 및 높이 완화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특례 적용. 단, 한옥 인정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인사동 한옥' 기준을 적용하고, 건폐율 완화 조건은 다음의 기준을 따름.
-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90%까지 완화. 부지의 건폐율 최대한도 산정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제17조 건폐율 완화)을 따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호·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완화 범위를 결정.
- 건축자산 공간환경 범위 내 일반건축물(비한옥)은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비한옥건축요소 가이드라인>』 준수 시 80%까지 완화. 단, 한옥관리구역은 '한옥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80%까지 완화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침을 따름. 다만, 문화유산 및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활용에 따른 완화 적용 가능.

나. 용적률 : 변경

▌용적률 결정조서 (기정)

구분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기준
- 건축물의 비주거 용적률 비율 기준(용적률의 10%)은 향후 사회 및 상업 구조 변화로 인한 상업공간 필요면적 급감에 대응을 위해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별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적용할 수 있음.
-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비주거 비율은 해당 규정에 따름
- 비주거용도(상가)를 도입하는 경우 간선도로변(1층)에 설치 검토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600%	660%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기준
- 건축물의 비주거 용적률 비율 기준(용적률의 10%)은 향후 사회 및 상업 구조 변화로 인한 상업공간 필요면적 급감에 대응을 위해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별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적용할 수 있음.
-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비주거 비율은 해당 규정에 따름
- 비주거용도(상가)를 도입하는 경우 간선도로변(1층)에 설치 검토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허용용적률 완화 결정조서 (신설)

적용구역	완화기준			완화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탄소중립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 분담량 확보시	기준용적률 x 0.01	60% 이내
	디자인 혁신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축물(BF)' 인증 시	기준용적률 x 0.01	
	녹지 생태도시	개방형녹지	'서울특별시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인정 한도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02	
	지역 맞춤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0.01	
		지역특화건축물	목조건축 설치 시(구 건축위원회 인정 시)	기준용적률 x 0.01	
		지역특화 권장용도	'권장용도(권장1)'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06	
			'권장용도(권장2)'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01	
			공공개방주차장 설치 시 (법정의무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서 최소5면 이상)	설치면수 x 2 기준용적률 x 0.04	
		가로지장물 수용	지하철출입구 설치	기준용적률 x 0.02	
			배전함 등 이전 설치	기준용적률 x 0.01	

※ '공공개방주차장 설치'는 종로구 부설주차장 개방협약 시 인정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대지면적 1,000㎡이상, 연면적 1,500㎡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빗물분담량 기준의 1.5배 이상 설치 의무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서울시 담당 부서의 운영기준에 따라 10년간 유지 의무.

※ '권장용도 설치에 따른 높이완화와 허용용적률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관계 법령·지침 등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개정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상한용적률 완화 결정조서 (신설)

적용구역	완화조건	완화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1.0×α현금·건축물)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건폐율 및 높이 완화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하철출입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설치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재활용건축자재 사용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다. 건축물의 높이 : 변경

▌높이 결정조서 (기정)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M)	· 4층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
한옥관리구역(I)	· 비한옥 : 최고높이 1.5D 이하 · 한옥 - 1층 : 최고높이 H=(4+0.65a)m 이하 - 2층 : 최고높이 H=(7+0.65a)m 이하	※ D : 전면도로 폭 ※ 전면도로는 현재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 (최소도로 확폭 의무 배제, 대지내 건축선 후퇴부분 불인정) ※ a : 건물 폭
소가로구역(S-1, S-2)	· 3층 이하 / 최고높이 14m이하	-
소가로구역(S-3)	· 5층 이하 / 최고높이 22m이하	-
기개발구역(D)	· 최고높이 30m이하	-
간선가로변구역(O-1)	· 최고높이 50m이하	-
간선가로변구역(O-2)	· 최고높이 30m이하	-
농협부지 (견지동 111번지외 1필지)	· 최고높이 30m이하	※ 건축자산 보호·활용에 따른 별도 결정
동헌필방 부지 (공평동 5번지외 2필지)	· 최고층수(높이) 3층(14m)이하	
청송화랑 부지 (견지동 99-1외 1필지)	· 최고층수(높이) 7층(22m)이하	
구 통계국 청사 (경운동 90-3외 1필지)	· 최고층수(높이) 36m 이하	※ 신축계획에 따른 높이변경결정 문화유산 등록으로 인한 신축 계획 무산

▌높이 결정(변경)조서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M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	18m(4층) 이하	22m(5층) 이하	-
I	한옥관리구역	· 일반건축물(비한옥) : 최고높이 1.5D 이하 · 한옥 : 2층 이하 - 1층 : 최고높이 H=(4+0.65a)m 이하 - 2층 : 최고높이 H=(7+0.65a)m 이하		※ D : 전면도로 폭 ※ 전면도로는 현재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 (최소도로 확폭 의무 배제, 대지내 건축선 후퇴부분 불인정) ※ a : 건물 폭
S	소가로구역	14m(3층) 이하	18m(4층) 이하	-
D	기개발구역	30m 이하	40m 이하	-
O-1	간선가로변구역1	-	50m 이하	-
O-2	간선가로변구역2	-	30m 이하	-
O-3	간선가로변구역3	20m 이하	30m 이하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보전건축물'은 계획지침에 따라 보전

※ 최고높이는 높이 완화계획에 따라 완화조건 및 완화범위 산정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최고높이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계획지침을 따름.

※ 높이적용 및 산정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2조~제24조를 따름.

▌높이 완화계획 결정조서 (신설)

적용구역	완화조건	완화범위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최고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높이는 최고높이의 1.2배 이내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M), 소가로구역(S)	· 권장용도(권장1) 설치 및 구역별 형태 지침 준수 시 ·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4m(1층) 이내		-
기개발구역(D) 간선가로변구역.(O-3)	· 권장용도(권장1) 설치 시	5m	10m이하	※ 평균바닥면적의 1개 층 면적 이상 또는 600㎡이상 설치 시 ※ O-3구역 내 건축자산 포함 대지는 적용 제외
	· 권장용도(권장2) 설치 시	5m		
간선가로변구역(O-3)	·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	10m 이하		-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와 용적률 완화는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건축자산 보호·활용하는 경우 완화범위 이내에서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 여부 및 범위 결정
※ 건축자산 보호·활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동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준수
※ 권장용도 설치에 따른 높이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종로구 지구단위계획팀 등 관계 부서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4.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1) 건축선 : 변경

▌건축선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
건축지정선	·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가로 접도대지 · 한옥관리구역 접도 대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선 지정	-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 조성구간	· 대지경계선에서 1~4m 건축물 1층(6m) 벽면부 돌출 금지	도면표기
고층부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 건축지정선, 대지경계선에서부터 5~10m 지정 – 건축물 층수(높이)와 연동하여 지정	-
담장지정선	· 특별계획구역 · 대규모개발필지	· 전통양식의 담장 및 건축물 벽체 설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결정조서(기정)

▌건축선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도면표기 (변경) 보도형 전면공지 설치
	· 인사동 진입도로 일대 (우정국로,인사동9길,인사동10길,인사동11길,인사동16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4m	도면표기 (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동인사) 연접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도면표기 (신설)
건축지정선	· 인사동길, 태화관길 · 한옥관리구역 · 소가로구역 일대(인사동10길, 인사동11길)	· 대지경계선 기준 지정	도면표기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민영환광장) 해제 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8.5m (지적선 기준)	도면표기 (신설) 보도형 전면공지 설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① 종로경찰서)	· 대지경계선 기준 지정	도면표기 (변경) 담장지정선(기정)
고층부 벽면한계선 (18m(4층) 초과부분)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민영환광장) 해제 구역**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10m내외	도면표기 (신설)
	· 인사동길 일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도면표기 (신설)
	· 인사동9길 일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	도면표기 (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동인사) 연접지 : 경운동 64-6,64-19,64-48,64-47,64-49,64-50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민영환광장)해제 구역 : 견지동 118-2,119-4,120-1, 관훈동192-18, 194-35, 198-42, 198-49, 198-50

※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 시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건축선 후퇴 완화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의 정의)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의 완화 가능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을 따르며, 조성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제6장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따름.

2) 대지 안의 공지 : 변경

▌대지 안의 공지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간선가로변	· 조성규모 :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기준 준용 · 조성위치 ; 간선가로변 및 보행통로 연접구간	-
대지안의 조경	간선가로변	· 조성규모 :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 기준 준용 · 조성폭 : 3m이상 · 조성위치 : 간선도로변에 면하여 설치 · 시설설치기준 : 앉음벽(sitting wall) 조성	-
공공보행통로	보행연결 필요구간	· 폭 2~4m	-

▌대지 안의 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위치에 해당 규모 이상으로 공개공지 설치 ·실내형 조성을 권장하는 경우 실내형 공개공간으로 조성 권장 ·공개공지등의 설치 대상, 면적 및 규모, 조성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지침 및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를 따름.	도면표기(위치지정)
대지안의 조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설치 의무를 갖는 대지로서 대지안의 조경이 지정된 위치에는 건축한계선(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내측 폭 3m이상의 조경을 설치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개방형녹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에 따른 개방형녹지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설치 대상, 면적, 식재기준, 설치기준 등은 시행지침 및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같은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및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을 따름.	도면표기(위치지정)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정된 위치에 최소 폭 2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방식, 개방시간 등은 시행지침을 따름.	도면표기(위치지정)

※ 건축지정선 준수 시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완화 적용

※ 관계 법령·지침 등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개정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을 따르며, 조성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제6장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을 따름.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1) (일반)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변경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인사동주가로변 ·한옥관리구역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기존건물과 조화(파라펫 높이 일치) ·옥탑층 노출 금지	○		-
재료 및 색채	지구단위계획구역	·반사성재료 사용 금지(금속, 타일, 반사유리)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원색계열 재료, 도료 사용 금지	○		-
		·역사자원이 지닌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의 사용을 권장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사용 권장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범위 사용 권장		○	서울경관기본계획 및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역사특성기점에 준하여 신설
저층부 외관	·인사동주가로변	·1층 벽면면적의 8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		-
진입구 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단, 불가피할 경우 1:24이내의 경사로 설치 ·접근로는 유효폭 1.8m 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교행될 경우 보행자 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의 보도 설치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지침 반영
담장 지정선	·특별계획구역 ·대규모개발필지	·전통양식의 담장 및 건축물 벽체 설치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결정(변경)조서

① 공통지침

제어요소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 1층 개구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내, 사인존 높이 3~5m 이내로 설치 · 옥탑층 노출 금지 원칙,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벽 등의 차폐요소를 이용하여 차폐	○		변경
재료 및 색채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금속, 타일, 반사유리)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원색계열 재료, 도료 사용 금지 · 지나친 토속주의적인 재료(통나무, 전면황토벽, 초가 등)의 사용 금지 · 국적 불명의 이국적 경향의 재료 사용 금지	○		한옥형태지침 포괄/ 변경
	· 역사자원이 지닌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의 사용을 권장 ·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사용 권장 ·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범위 사용 권장		○	-
저층부 외관	· 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지 않음.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변경
진입구 처리	· 건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단, 불가피할 경우 1:24 이내의 경사로 설치 · 건축물이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해야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 기타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름.	○		관련 법령 준용/ 변경
부착 시설물	·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의 위치 및 크기, 사용용량 등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가로변 미설치 원칙. ·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가려야 함.	○		한옥형태지침 포괄/ 변경

② 구역별 특화지침

구분	적용지역	제어요소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고
전통문화 특화 경관 구역	·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M) · 소가로구역(S)	저층부 외관	· 1층 개구부에는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1층 벽면면적의 8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 1층에 셔터 설치를 금지함. 단, 불가피할 경우 셔터는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1/2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 셔터로 조성해야 함.	○		변경 (높이 인센티브 연계)
			· 1층부 상점의 외관은 쇼윈도로 처리하고, 야간 보행활성화를 위해 전시물 등을 비출 수 있는 야간조명을 설치 권장		○	
한옥 특화 경관 구역	· 한옥관리구역(I)	건축물 외부형태	· 일반건축물(비한옥)은 한옥의 외관 특성을 형성하는 요소인 한옥의 지붕과 구조 형태를 갖추어 건축(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1조 및 제52조 준수)할 것을 권장 · 일반건축물(비한옥)은 『인사동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비한옥 건축요소 가이드라인>준수할 것을 권장		○	신설 (건폐율 인센티브 연계)

2) 한옥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한옥의 형태 및 색채 결정조서 (기정)

구분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고
한옥인정기준		· 건축면적의 70% 이상 한옥으로 건축 시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한다.	○		
지붕	지붕형상과 재료(기와)	·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와를 잇는다.	○		-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지붕 물매의 방향은 인접한옥과 맞추고 용마루선의 높이는 주변한옥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	
	쳉의 형상과 재료, 색	· 함석 쳉, 동판 등을 사용하여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		-
		· 신재보다는 고재(기존의 재료) 재사용을 권장한다.		○	
	처마노출	· 외벽을 목조기둥선까지 후퇴시켜 처마선이 드러나도록 한다. · 부득이 외벽을 후퇴시킬 수 없는 경우, 처마가 닿는 외벽의 상부부분이라도 철거하여 처마선이 드러나도록 한다.	○		-
구조	목구조 방식	· 주요 구조부는 전통적인 목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 단, 기단부 이하(지하)의 경우 기타구조로 조성 가능하다.	○		-
가로에 면한 외벽 또는 담장	재료와 형태	· 가로에 면한 입면 또는 담장은 반드시 전통무늬와 장식을 구현하며, 장대석, 사고석, 전벽돌, 와편 등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입면에 구조물 등을 덧붙여 한옥의 구조 및 외관을 가리는 것은 금지한다. · 외벽 치장을 위해 기타 부착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벽면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비주거 한옥의 경우, 가로변에 면한 입면에 쇼윈도, 출입문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창호 및 출입구 등의 면적은 해당면 면적의 4/5이하로 하며, 한식 외벽 및 담장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
외벽	외벽 구성과 재료	· 벽체를 상부(창, 회벽) + 중부(전벽돌, 사고석) + 하부(장대석)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 목조기둥의 상부 또는 전체를 드러내도록 한다. · 외관의 목구조 구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① 빈적거림, 금속계열 재료(타일, 반사유리) ② 지나친 토속주의적인 재료(통나무, 전면황토벽, 초가) ③ 원색계열의 도료와 재료 ④ 국적불명의 이국적 경향 · 외벽 치장을 위해 기타 부착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부착재료는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기존의 표층구성을 존중하여 재현하고 신재보다는 고재(기존의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기존 한옥의 개보수, 증축 등의 건축행위 시, 기존에 한옥의 입면에 구조물 등을 덧붙여 입면이 가려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한다.		○	-
문간	재료와 문양	· 길과 마당에 면하여 목재 문틀을 사용하고, 철재장식은 옛 장식문양을 따른다.		○	-
온돌마루	내부 구조	· 온돌과 마루 등으로 구성된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을 존중하는 것을 권장한다.		○	-
마당	상부개방 여부	· 마당은 상부를 개방해야한다. · 부득이 상부를 덮어서 내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마당 상부구조물을 투명하게 처리하거나, 높이가 처마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내부입면	창호와 벽체 재료와 형태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 안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호를 원칙으로 하고, 벽체는 회벽마감을 권장한다.		○	-
부속시설	처마이격 여부	· 마당에 건축되는 시설물은 한옥으로부터 적절한 방식으로 이격하여 시설한다. · 가급적 한옥구조를 권장하며, 기존 본체 한옥의 질감과 스케일을 존중하면서 높이도 가급적 처마높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하게 처마높이 이상으로 설치 할 경우에는 한옥의 전체 외관과 배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내부시설	목조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편의	· 내부공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성하되, 목가구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부엌과 화장실은 적절한 위치에 기능과 위생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 시공한다. · 냉난방 방식도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을 선택하되, 실외기는 길쪽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
이층한옥	형식과 높이	· 한옥의 경우 이층으로 신축할 수 있다. · 구조형식과 지붕형태는 단층 한옥의 기준과 동일하다.	○		-
		· 한옥의 1층과 2층은 적절한 방식으로 분절한다. 2층 벽체를 1층 벽체보다 후퇴시키거나, 1층과 2층이 만나는 부분은 층도리나 수평적인 부재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난간설치도 가능)		○	

▌한옥*의 형태 및 색채 결정(변경)조서

제어요소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고
인정기준		· 건축면적의 50% 이상 한옥으로 건축 시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 · 가로에 면하여 깊이(보방향) 1칸(2.1m) 이상의 한옥을 배치	○		변경
지붕	지붕재료	· 한식기와(암키와, 수키와 형상의 현대적 한식기와 포함) 사용	○		변경
	처마길이	· 처마 길이 최소 60cm이상(차양 제외) 설치. 단, 건축면적 10평(34㎡)이하의 한옥의 경우 적용 예외 가능	○		처마길이 구체화
구조	목구조 방식	·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적인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단부 이하(지하)의 경우 기타구조로 조성 가능. 단,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의 주요구조부 중 15개 이하의 기타구조를 허용하되, 전체 주요구조 부재수의 50%(1/2) 이하로 건축	○		변경
	기단, 초석	·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초석 설치	○		신설
	입면비례	· 한옥의 입면 비례를 감안하여 한옥의 몸채와 지붕구조의 비율 1.0:0.8~1.0 계획(주심도리 하부 기준). 한옥의 지붕 높이는 0.65a(a:건물 보방향 폭) 이하로 계획. 단, 건축면적 10평(34㎡)이하의 한옥의 경우 적용 예외 가능	○		신설
가로에 면한 외벽 또는 담장	재료와 형태	· 입면에 구조물 등을 덧붙여 한옥의 구조 및 외관 차폐 금지 · 외벽 치장을 위해 기타 부착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한옥 구조 차폐 금지 · 비주거 한옥의 경우, 가로면에 면한 입면에 쇼윈도, 출입문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창호 및 출입구 등의 투명재료 사용 가능.	○		변경
	담장높이	·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 이하로 설치	○		신설
	외벽	· 외기에 면하는 목재는 방수·방부·방염 등 성능향상을 위해 조치, 목재무늬가 드러나도록 조성	○		신설
		·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 단, 사괴석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을 쌓는 경우는 예외	○		신설
마당	마당구배	·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 재료 사용	○		신설
	상부개방 여부	· 마당은 상부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지 내 공지(마당 포함) 면적의 1/2 이하 범위 내에서 썬큰 마당을 계획 가능 · 부득이 상부를 덮어서 마당 상부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마당 상부구조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통풍 및 화재 시 배연 등을 고려하여 열리는 부분이 있도록 설치. ② 구조물의 높이는 처마끝선과 용마루의 중간 높이 이하로 설치. ③ 한옥의 구조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한옥 구조 및 지붕, 마당의 윤곽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설치	○		권장사항에서 변경 및 세부조건추가
이층한옥	형식과 높이	· 한옥의 1층과 2층은 적절한 방식으로 분절한다. 2층 벽체를 1층 벽체보다 후퇴시키거나, 1층과 2층이 만나는 부분은 층도리나 수평적인 부재로 구분 (전통난간설치 가능)	○		권장사항에서 변경

※ 한옥*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 정의한 '인사동 한옥' 건축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높이,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시 준수하여야 함.

※ 건축면적 10평(34㎡)이하의 한옥으로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양식) 개보수 비용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름.

다. 경관계획

▌경관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table>
<tr><th>구분</th><th>적용구역</th><th>계획내용</th><th>규제</th><th>권장</th><th>비고</th></tr>
<tr><td rowspan="4">옥외
광고물</td><td>지구단위계획구역
(한옥)</td><td>· 간판의 누계면적이 가로에 면한 한옥외벽면적의 1/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간판의 숫자는 2개 이하로 제한한다.
· 간판은 목조기둥으로 분절된 칸의 기본단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간판은 지붕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돌출형 간판의 경우 처마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움직임이 있는 발광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직접조명방식을 지양하며, 원색계열의 광원 사용을 금지한다.</td><td>○</td><td></td><td>-</td></tr>
<tr><td>· 한옥관리구역
· 기개발구역
· 간선가로변구역
· 특별계획구역 중 고함부지, 덕성학원부지</td><td>·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종로구고시 2008-16호)"에서 일반권역 내용을 따름. 단, 삼일로, 율곡로, 우정국로에 면한 건축물은 중점권역 내용 적용.
권역별 주요사항 * 3층인 경우 간판의 가로는 건물가로의 1/2이내
<table>
<tr><th>구분</th><th>수량</th><th>가로형 간판설치</th><th>광원노출, 점멸조명</th></tr>
<tr><td>중점권역</td><td>업소당 1개이내</td><td>3층이하*</td><td>설치불가</td></tr>
<tr><td>일반권역</td><td>업소당 2개이내</td><td>3층이하</td><td>설치불가</td></tr>
</table></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 소가로구역
· 특별계획구역 중 대성산업부지, 건국대학교부지, 쌈지[(구)영빈가든부지]</td><td>· 수량 : 업소당 1개 이내
· 규모 : 가로형간판- 가로 3m, 세로 0.6m이내 /돌출 · 세로형간판- 가로 0.6m, 세로 1m이내
· 표현방식 :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 등 금지 , 2층 이상 업소는 돌출 간판만 허용
·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종로구고시 2008-16호)"에서 보전권역 내용을 따름.
권역별 주요사항
<table>
<tr><th>구분</th><th>수량</th><th>가로형 간판설치</th><th>광원노출, 점멸조명</th></tr>
<tr><td>보전권역</td><td>업소당 1개 이내</td><td>2층이하</td><td>설치불가</td></tr>
</table></td></tr>
<tr><td>지구단위계획구역</td><td>· 형태 : 간판의 글자와 간판의 베이스를 분리하는 형태인 채널(문자형) 간판 권장
· 크기 : 입체문자형일 경우 윗층과 아래층 사이 창문간 벽면 폭의 40% 이내, 최대 40cm
· 색상 : 가급적 원색과 같은 고채도의 색은 피하고 제시된 권장색채 사용
· 재료 : 간판의 베이스 재료를 인사동의 주요 재료인 나무, 돌, 회반죽 등을 권장, 벽체에 부착하는 문자형 간판을 고려할 경우 한국전통문양을 형상화한 베이스를 권장
· 조명 :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간판전체 직접조명방식은 지양하며, 직접조명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원색계열의 광원사용 금지</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야간
경관
조명</td><td>지구단위계획구역
(한옥포함)</td><td>*서울특별시 야간경관 계획 준용
· 직접광원의 노출 금지 · 조명기구 노출 금지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금지
· 과도한 색상의 변화, 반복점멸 금지 · 디지털 경관조명 설치불가</td><td>○</td><td></td><td>-</td></tr>
<tr><td>· 기개발구역
· 간선가로변구역
· 특별계획구역</td><td>· 건축물표면 기준휘도 20(cd/㎡)</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 한옥관리구역
· 소가로구역</td><td>· 건축물표면 기준휘도 5~10(cd/㎡)
· 백색계열을 광원 사용 금지</td></tr>
<tr><td>지구단위계획구역</td><td>[건축물 내부조명]
· 친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을 권장</td><td></td><td>○</td><td>-</td></tr>
</table>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고
		· 폐점시간부터 24시까지 1층 매장부의 디스플레이 공간부에 야간조명 권장 ·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지역은 색온동 3000K의 광원사용 권장 [건축물 외부조명]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간접조명, 라이트 업, 이루미네이션 등의 조명방법을 고려하면서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기를 연출 권장 · 일몰시간부터 24시까지 건축물 외부에 투사하는 야간경관조명 권장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고 건축물 빛의 레벨이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경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고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구역	· 옥외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기준>, <종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름. · 옥외광고물의 세부 수량, 규모, 표현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및 종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소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름. · 옥외광고물의 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1조(건축물의 재료), 제42조(건축물의 색채)를 준용 · 한옥의 간판은 누계면적이 가로에 면한 한옥외벽면적의 1/12을 이하 설치 · 한옥의 간판은 목조기둥으로 분절된 칸의 기본단위를 넘지 않도록 설치 · 한옥의 간판은 지붕을 가리지 않고, 돌출형 간판의 경우 처마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	○		-
		· 간판의 글자와 간판의 베이스를 분리하는 형태인 입체형 채널(문자형) 간판 설치 권장		○	-
야간경관조명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빛공해방지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과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	○		-
		·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기를 연출하는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 · 부착형 조명기구보다는 바닥 매립형 조명기구 설치를 권장		○	-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1) 기본방향

· 대상지별로 별도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서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보존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해 관리한다.

· 특별계획구역에 건축물을 건축(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되,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입안권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단,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대수선은 민간부문시행지침 제89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를 따른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덕성학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관훈동 112-4번지 외 2필지	1,707.1	증) 137.9	1,84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 (2002.01.29.)	변경
②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	경운동 89-4번지 외 1필지	5,923.8	-	5,923.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 (2002.01.29.)	변경없음 (사업완료)
③	건국대학교부지 특별계획구역	경운동 47-1번지 외 13필지	5,146.3	-	5,146.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 (2002.01.29.)	변경
④	대성산업부지 특별계획구역	관훈동 155-2번지 외 4필지	5,855.0	-	5,855.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 (2002.01.29.)	변경없음 (사업완료)
⑤	쌈지 [(구)영빈가든부지] 특별계획구역	관훈동 38번지	1,503.2	-	1,503.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 (2002.01.29.)	변경없음 (사업완료)
⑥	대상부지 특별계획구역	관훈동 192-18번지 외 4필지	-	증) 4,704.1	4,704.1	-	신설
⑦	경인미술관 특별계획구역	관훈동 30-1번지 외 4필지	-	증) 1,717.3	1,717.3	-	신설
⑧	동인사 특별계획가능구역	경운동 64-17번지 외 26필지	-	증) 946.6	946.6	-	신설

※ 상기 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 변경

▌덕성학원부지 특별계획구역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개발방향	· 인사동 내부로의 보행연결체계 확보(공공보행통로 조성) · 대상지 서측면의 골목길 형태·분위기 유지 (고층부 벽면한계선 적용)		-
용도	· U4 (전층 불허용도)	· 불허용도 : 불허1(전층. 단, 저층Zone 제외) · 허용용도 : 허용2(저층Zone:지상1층~2층) · 권장용도 : 권장1·권장2(지하1층~지상4층), 공공개방주차장(지하2층 이하)	저층Zone 도면표기
건폐율	· 건폐율 : 60% 이하 (단, 높이 30m 이하로 건축 시 80%까지 완화 가능)	· 건폐율 : 60% 이하 · 저층Zone 설치 시 10m(2층)이하 건폐율 : 80% 이하	저층Zone 도면표기
용적률	· 기준용적률 : 500% · 허용용적률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의 조성 및 제공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①항 제2호에 의한 용적률 이하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허용용적률 : 660% 이하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높이	· 최고높이 : 50m 이하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 최고높이 : 50m 이하 · 저층Zone : 10m(2층) 이하	저층Zone 도면표기
배치	· 건축한계선 – 율곡로변 3m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 서측 이면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 동측 이면도로변 반대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구간(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대상지 남측 (3층 이상 부분)	· 건축한계선 – 율곡로 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동측 이면도로변 반대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 건축지정선 – 서측 이면부 반대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고층부벽면한계선 – 서측 건축지정선으로부터 5m 후퇴 (2층(10m) 초과 부분)	도면표기
공개공지	· 공개공지 : 대상지 남측변 폭 5m 이상 조성 (골목 내 마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행편의시설 설치)	·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수용 시 이와 연계한 공개공지 설치 및 실내형 공개공간으로 설치 권장	도면표기
대지안의 조경	· 대상지 서측 공공보행통로변 및 이면도로변에 면하여 보행인의 폐적성 확보를 위해 조경시설을 연접하여 설치 (화단 및 식재 등)	· 율곡로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폭 3m의 조경 설치	도면표기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서측변 폭 3m로 조성	· 대상지 서측변 폭 3m로 조성	도면표기
형태 재료 색채	· 대상지 남측변 2층(10m) 이하 Zone 설정 (지정용도 없음)	· 폭5m 이상의 저층Zone 설치 · 저층 Zone 조성방식은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 · 저층Zone 상부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형태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옥외공간 설치 · 한옥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형태재료색채 사용 · 1층 필로티 형태 금지	저층Zone 도면표기
교통처리	·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변 주차출입구	·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변 주차출입구 설치(위치 지정)	도면표기
	–	·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변 율곡로로부터 20m 이내 차량 진출입 불허	도면표기
기타	·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도 용적률 계획을 중복 적용	· 지하철출입구 대지 내 수용 권장	-

▌건국대학교부지 특별계획구역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개발방향	· 대상지 서측의 한옥관리구역과 어울리는 건축규모 및 형태 유도 · 단일 대규모 건물보다는 매스분절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유도 · 가로의 연속성 유지(대화관길변 건축지정선 지정) · 공공공간의 적극적 확보(공용주차장, 공개공지, 대지안의 조경(대상형) 등 지정)	· 삼일대로와 한옥골목길의 가로연결성 확보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경관 형성 · 공공공간의 적극적 확보 · 기존 전통문화업종의 보호 유도	–
용도	· 전체구역 : U4(전층 불허용도) · 지정용도 : U1(저층Zone)	· 불허용도 : 불허1(전층. 단, 저층Zone 제외) · 허용용도 : 허용2(저층Zone:지상1층~4층) · 권장용도 : 권장1·권장2(지하1층~지상4층), 공공개방주차장(지하2층 이하)	저층Zone 도면표기
건폐율	· 건폐율 : 60% 이하 (단, 높이 30m이하로 건축 시 80%까지 완화 가능)	· 건폐율 : 60% 이하 · 저층Zone 설치시 18m(4층)이하 건폐율 : 80% 이하	저층Zone 도면표기
용적률	· 기준용적률 : 500% · 허용용적률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의 조성 및 제공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①항 제2호에 의한 용적률 이하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허용용적률 : 660% 이하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높이	· 최고높이 : 50m 이하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 최고높이 : 50m 이하 · 저층Zone 높이 : 18m(4층) 이하	–
배치	· 건축한계선 : 삼일로변 3m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 건축지정선 : 대화관길변 (대지경계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대화관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5층 이상 부분)	· 건축한계선 : 삼일대로 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건축지정선 : 대화관길 변 대지경계선 기준 · 고층부벽면한계선 : 대화관길 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후퇴(4층(18m) 초과 부분)	도면표기
공개공지	· 위치 : 삼일로변 폭 10m 이상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설치 및 실내형 공개공간 설치 권장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치 설정)	도면표기
대지안의 조경	· 삼일로변 폭 3m(대상형)	· 삼일대로 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폭 3m의 조경 설치	도면표기
공공보행통로	· 폭 3m 이상 (대상지내)	· 삼일대로-인사동 내부를 연결하는 폭원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실내형 권장,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폭원 및 위치 설정)	도면표기
형태재료 색채	· 대상지 남측변 4층(18m) 이하 Zone 설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 폭10m 이상의 저층Zone 설치 · 저층 Zone, 삼일대로 저층부 조성방식은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 · 저층 Zone 상부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형태로 옥외조망공간 설치 · 한옥과 조화되는 건축물 외관 재료 및 색채 사용	저층Zone 도면표기
교통처리	· 폭 6m 이상 (대상지 북측변) : 문화시설①과 공동주차출입구 조성가능한 구조로 조성 · 주차장 설치 하한기준 × 0.1 이상 조성 · 보행자우선도로변에서의 접근	· 대상지 북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원 6m 도로 조성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적용) ※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1항의 도로를 말함. · 삼일대로 일부, 대화관길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 삼일대로 주차출입구 위치 지정 및 이면도로에서 차량출입	도면표기
기타	·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도 용적률 계획을 중복 적용함	· 가로시설물 대지 내 수용 권장 · 기존 전통문화업종 보호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장기임대차 계약 권장	–

▌대상부지 특별계획구역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개발방향	· 인사동 내 기개발구역의 계획적 정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열린공간 형성 · 기개발구역 일대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정비 · 인사동길-우정국로 보행활성화와 연계한 전통·문화 용도 특성 강화	-
가구 및 획지	· 합필 금지 (현재 지적선 유지)	-
용도	· 불허용도 : 불허1(전층.단, 저층Zone 제외) · 허용용도 : 허용2(저층Zone: 지상1층~지상4층) · 권장용도 : 권장1·권장2(지하1층~지상4층), 공공개방주차장(지하2층 이하)	저층Zone 도면표기
건폐율	· 건폐율 : 60% 이하 · 저층Zone 설치시 18m(4층)이하 건폐율 : 80% 이하	저층Zone 도면표기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 허용용적률 : 660%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높이	· 기준높이 : 30m 이하 · 최고높이 : 40m 이하 (권장1·권장2 준수 시 각 5m 완화) · 저층Zone 높이 : 18m(4층) 이하 ※ 역사·지역특성 강화 및 공공공간 확보(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 연계 등) 시, 최고높이 1.2배 이내에서 완화높이 제공(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저층Zone 도면표기
배치	· 건축한계선 : 북측 도로변(인사동9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고층부벽면한계선 : 18m(4층)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인사동9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후퇴	도면표기
공개공지	· 동측 회화나무 연계한 공개공지 조성 (실내형 권장,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폭원 및 위치 설정) ·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치	도면표기
대지안의 조경	· 인사동9길 건축한계선 이격부 및 회화나무와 연계한 녹지 조성 권장	도면표기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북측-남측을 연결하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설치(실내형 권장,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폭원 및 위치 설정)	도면표기
형태재료색채	· 폭7m 이상의 저층Zone 설치 · 저층Zone 조성방식은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 · 저층Zone의 상부공간은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형태로 옥외조망공간 설치	저층Zone 도면표기
교통처리	· 인사동7길, 인사동9길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및 주차출입구 위치 지정	도면표기
기타사항	· 가로시설물 대지 내 수용 권장 · 옛 죽동궁터, 사동궁터의 역사성을 공유할 수 있는 표석 설치 및 관련자료 전시 권장 · 북측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주차장)부지 내 문화시설 조성 권장 (인센티브 연계)	-

▌경인미술관 특별계획구역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획지1	획지2,3	
개발방향	· 기존 공간구조, 규모 및 기능 유지 · 인접 한옥관리구역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밀도계획		–
가구 및 획지	· 합필 금지 (현재 지적선 유지) · 획지 간 공동개발 불허, 건축협정 가능 (획지 간 맞벽건축, 건폐율, 용적률 통합산정 불허. 단, 지하층의 설치, 대지 안의 조경 등 타 항목은 통합산정 가능)		–
	· 획지지정 – 획지1 : 관훈동 30-1, 57, 84-8	· 획지지정 :획지2,3 – 획지2 : 관훈동 84-9 – 획지3 : 관훈동 84-7	
용도	· 허용용도 : 허용2(단, 숙박시설은 불허) · 권장용도 : 권장1		–
건폐율	· 한옥 : 건폐율 90% 이하 · 일반건축물(비한옥) : 건폐율 60% 이하 한옥형태시행지침 제51조(지붕),제52조(구조) 준수 시 80%이하	· 한옥 : 건폐율 9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허용용적률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높이	· 한옥 : 최고높이 H=(h+0.65a)m 이하 (h=건물높이 (1층:4m,2층:7m), a : 건물 폭)		※세부 적용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2조~제24조를 따름.
	· 일반건축물(비한옥) : 1.5D	–	
배치	· 건축지정선 : 북측, 서남측 한옥골목길 변 대지경계선 기준 · 고층부 벽면한계선 : – 서남측 한옥골목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부 (5m(1층)초과 부분)		도면표기
공공보행통로	· 경인미술관 – 한옥골목길(인사동14길~인사동10길)을 연결하는 폭원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설치(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폭원 및 위치 설정)		도면표기
대지안의 공지	· 기존 마당 및 정원의 형태 유지하여 공개공지 조성. 단, 기존 마당을 유지하지 못할 시 건축물 옥외공간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활용한 입체적인 공지 및 조경계획 수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폭원 및 위치 설정)		도면표기
형태 재료 색채	· 한옥 건축 권장 · 비한옥 건축 시, 한옥과 조화되는 형태·재료·색채 사용 · 필로티 금지	· 한옥 건축 의무	–
기타사항	· 기존 한옥 보전·활용 권장		–

▌동인사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구분	특별계획 가능구역 계획지침		비고
	통합개발	분할시행(해제 시)	
가구 및 획지	· 합필금지 (현재 지적선 유지)		
	–	· 자율적 공동개발(최대개발규모 이내)	–
용도	· 불허용도 : 불허1(전체) · 권장용도 : 권장1·권장2(지하1층~지상4층), 공공개방주차장(지하2층 이하)	· 허용용도 : 허용2 · 권장용도 : 권장1(지하1층~지상4층)	–
건폐율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허용용적률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높이	· 기준높이 : 20m 이하 · 최고높이 : 30m 이하(권장1·2 준수시 각 5m 완화)	· 기준높이 : 14m(3층) 이하 · 최고높이 : 18m(4층) 이하 (권장용도(권장1) 및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시 4m 완화)	–
배치	· 건축한계선 : 구역 내부 도로확보를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도면표기
형태 재료색채	· 한옥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형태재료색채 사용 · 1층 필로티 형태 금지		–
공공보행 통로	· 인사동10길-건국대학교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설치(실내형 권장,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치설정)	–	도면표기
공개공지	· 건축물과 대지 안의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활용한 입체적인 공지·조경·동선계획 수립(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치 설정)	–	–
교통처리	· 북측, 남측(도로조성시) 주차출입구 위치 지정	· 대상지 북측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도면표기

※ 해제 시 본 계획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가로구역1(S1)]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준수

6.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 인센티브 결정조서 (기정)

구 분	적용구역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건폐율	지구단위 계획구역	· 한옥 신축 시			· 건폐율 80%	· 한옥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만 적용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M)	· 4층 건축시 · 3층 이하 건축시			· 건폐율 70% · 건폐율 80%	· 높이 제한에 따른 완화
	소가로구역(S)	· 3층 건축시 · 2층 이하 건축시			· 건폐율 70% · 건폐율 80%	
	특별계획구역 (덕성학원,건국대학교, 대성산업 부지)	· 30m이하 건축시			· 건폐율 80%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유도
용적률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용도	지정용도	규제	·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1이내	–
		대지안의공지	공개공지	유도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이내	· 피로티 구조 a=0.3 · 개방형 구조 a=0.5
			첨상형 공지	유도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이내	· 첨상형 구조 a=0.5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	규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이내	· 건축한계선 a=0.2 · 건축지정선 a=0.4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규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이내	· 피로티 구조 a=0.2 · 개방형 구조 a=0.4 ※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 시 부여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규제	· 기준용적률 × 0.01이내	–
			공용주차장의 설치	유도	· 기준용적률 × 0.02이내	· 주차장설치 하한기준 x 0.1이상 설치 시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 내 공공시설 설치	유도	· 기준용적률 × 0.03이내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의무	·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1이내	–
			옥상녹화	의무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05이내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준 준수 시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	· 기준용적률 × 0.02이내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 기준용적률 × 0.02이내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 설치
			녹색주차장	의무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0.02이내	· 서울시기준(녹색주차장 활성화계획) 준수시
			신·재생 에너지시설	의무	· 기준용적률 × 0.02이내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1등급	의무	· 기준용적률 × 0.03이내	·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에너지성능지표 81점 이상,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 이상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2등급	유도	· 기준용적률 × 0.02이내	· 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 미만,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 미만
		도시경관개선	옥외광고물	유도	· 기준용적률 × 0.02이내	· 옥외광고물 지침 중 권장사항 준수시
			야간경관조명	규제	· 기준용적률 × 0.02이내	·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권장사항 준수시
			1층부 형태	규제	· 기준용적률 × 0.01이내	· 시행지침 제21조 준수시
			벽면한계선	규제	· 기준용적률 × 0.01이내	–
			고층부 벽면한계선	유도	· 기준용적률 × 0.01이내	–
			건축물외관 우수디자인	유도	· 기준용적률 × 0.05이내	· 설계경기 방식에 의하여 건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물 내 설치	유도	· 기준용적률 × 0.03이내	· 지하철 및 지중화관련 시설물을 건물 내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개방화장실 설치 시 · 가로지장물을 건물 내 수용 시			· 50% 완화	· 구역별 최대개발규모 이하에서 건축 시
		· 공공에게 공간제공 시 (택 1) – 구분지상권 설정 – 무상임대계약체결			· 100% 완화	· 신축건축물 · 기존건축물 중 부설주차장 전체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 한옥 신축 시 · 근대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체 보존시			· 100% 완화	–

※ 주1)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1. 용적률 완화범위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합계비율 ≤ 법정허용용적률 (600%)
2. 공공시설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①항 제2호의 규정 준용)
3. 공공시설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범위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합계비율 + 기부채납비율에 따른 용적률완화비율 ≥ 법정허용용적률 (600%)
4.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 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적용 가능
5. 옥상녹화 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며,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은 제외
6.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사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7.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함
8. 의무형 인센티브인 환경친화적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9.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 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함.
10.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주2)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도 용적률 계획을 중복 적용함.

▌인센티브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구역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건폐율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용도지역·지구 건폐율의 1.5배 이내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M)	· 4층 건축 시 · 5층 및 '권장용도(권장1)',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 시	· 건폐율 70%	–
		· 3층 이하 건축 시 · 4층 및 '권장용도(권장1)',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 시	· 건폐율 80%	
	한옥관리구역(I)	· '한옥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 시	· 건폐율 80%	–
	소가로구역(S)	· 3층 건축 시 · 4층 및 '권장용도(권장1)',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 시	· 건폐율 70%	–
		· 2층 이하 건축 시 · 3층 및 '권장용도(권장1)',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 시	· 건폐율 80%	
	특별계획(가능)구역 (덕성학원, 건국대학교, 에스앤에스,대상부지)	· 저층Zone 설치 시	· 건폐율 80% 이내	–
	지구단위계획구역	· 한옥 건축 시	· 건폐율 90% 이내	·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특례 적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호 및 활용 시	· 건폐율 90% 이내 – 한옥 90% – 일반건축물 (비한옥) 80%	
		· 문화유산 보전 시	· 건폐율 80%이내	–

구 분	적용구역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허용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탄소중립	저영향 개발	· 사전협의 빗물 분담량 확보시	· 기준용적률 x 0.01	· 기준용적률의 1.1 배 이내
		디자인 혁신	유니버설 디자인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축물(BF)' 인증 시	· 기준용적률 x 0.01	
		녹지 생태 도시	개방형 녹지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인정 한도 이상 설치 시	· 기준용적률 x 0.02	
		지역 맞춤형	공동개발	· 공동개발(권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0.01	
			지역특화 건축물	· 목조건축 설치 시(구 건축위원회 인정 시)	· 기준용적률 x 0.01	
			지역특화 권장용도	· '권장용도(권장1)' 설치 시	· 기준용적률 x 0.06	
				· '권장용도(권장2)' 설치 시	· 기준용적률 x 0.01	
				· 공공개방주차장 설치 시 (법정의무주차대수의 10% 이상, 최소5면이상)	· 설치면수 x 2 · 기준용적률 x 0.04	
			가로 지장물 수용	· 지하철출입구 설치	· 기준용적률 x 0.02	
				· 배전함 등 이전 설치	· 기준용적률 x 0.01	
상한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 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 하는 경우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α 토지 +1.0×α현금 · 건축물) 이내	·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에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하철출입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건축법」에따른 공개공지등설치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재활용건축자재 사용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 관련 법률 및 기준에 따름	
높이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 기준 또는 최고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 최고높이의 1.2배 이내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M) 소가로구역(S)	· '권장용도(권장1)' 및 '전통문화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 준수하여 건축 시 · 건축자산 보호 및 활용 시			· 4m(1층) 완화	·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완화범위 이내에서 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 여부 및 범위 결정
	간선가로변구역 (O-3)	· 건축자산 보호 및 활용 시			· 10m완화	
	기개발구역(D) 간선가로변구역 (O-3)	· '권장용도(권장1)' 설치 시			· 5m(1층) 완화	· O-3구역 내 건축자산포함 대지는 적용 제외
		· '권장용도(권장2)' 설치 시			· 5m(1층) 완화	
배치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지정선 준수 시			· 도로 적용 완화 (4m→ 현황도로)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 도로 적용은 건축법 적용의 완화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①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으로 차량출입이 불가한 대지			· 50%완화	· 50% 비용납부 또는 인근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②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으로 차량출입이 불가한 대지			· 50%완화	· 50% 비용납부 또는 인근 설치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으로 차량출입이 불가한 대지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에 '권장용도(권장1)' 설치 시			· 100%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	· 한옥 건축 시 ·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호·활용 시			· 100% 완화	·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특례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건폐율 완화는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용적률 완화와 높이 완화는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공공개방주차장 설치'는 종로구 부설주차장 개방협약 시 인정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대지면적 1,000㎡이상, 연면적 1,500㎡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빗물분담량 기준의 1.5배 이상 설치 의무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서울시 담당 부서의 운영기준에 따라 10년간 유지 의무
※ 권장용도는 저층부(지하1층~지상4층)에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평균바닥면적의 1개층 면적 이상(공용부 제외) 설치하거나 600㎡ 이상 설치 시 수용한 것으로 적용하며,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는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도계획을 따름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단, 권장용도 중 창업활동공간 설치 시 종로구 문화과 협약 시 인정
※ 권장용도의 '권장1', '권장2' 용도를 각각의 수용 인정 면적 이상으로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 시, 동일한 용도라 하더라도 해당 용도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용도구분에 따른 개별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적용
※ '기개발구역(D)'은 권장용도 설치에 따른 높이 및 용적률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건폐율(국토계획법 제77조), 건축선(건축법 제46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 58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건축법 제59조)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단, 한옥 인정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인사동 한옥' 기준을 적용하고, 건폐율 완화 조건은 다음의 기준을 따름.
  -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90%까지 완화. 부지의 건폐율 최대한도 산정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호·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완화 범위를 결정.
  - 건축자산 공간환경 범위 내 일반건축물(비한옥)은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비한옥건축요소 가이드라인>』 준수 시 80%까지 완화. 단, 한옥관리구역은 '한옥특화경관구역 형태지침'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80%까지 완화
※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 및 지원 별도 적용하며,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해당 대지 내 건축자산 및 비건축자산(일반건축물) 모두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완화 가능
※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 별도 적용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의 정의)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의 완화 가능
※ 관계 법령·지침 등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개정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구간	내용	비고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가로변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차량 출입 불허	-
	인사동길 및태화관길 주변구역, 한옥관리구역, 소가로구역 (S-1, S-2)	· 도로에서 대지 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차없는 거리 확대 운영 및 골목길 환경 개선도모를 위해 지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도로에서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지역 인사동길 및태화관길 주변구역, 한옥관리구역 소가로구역 (S-1, S-2)	· 구역 내 주차장설치 금지(기조성 주차장 제외) ·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인근 주차장 또는 비용납부로 대신) · 공공기여에 따라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공공기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
주차출입구/ 공동주차 출입구	간선가로변	· 지정 위치에 면한 곳에서 주차를 위한 진입구 설치 허용	-
보행자우선도로	특별계획구역	· 차량 및 보행인이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보차혼용통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용어변경
공용주차장	특별계획구역	· 주차장설치 하한 기준 X 0.1이상 설치	-

※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이 금지되나,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차량출입은 허용한다. 단, 신축 시에는 차량출입을 불허하고 주차장 설치를 금지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차량의 통행은 허용)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지역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구단위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차량 출입 불허	· 용어변경 · 간선가로 교통영향 최소화 및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 도면표기 (위치변경)
(공동) 주차출입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지정된 위치에 주차출입구 설치 허용 ·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공동주차출입구 또는 공동주차통로 설치	· 도면표기 (위치변경)

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 결정조서 (기정)

구분		완화조건	계획내용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신축건축물 · 기존건축물 중 부설주차장 전체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개방화장실 설치 시 · 가로지장물을 건물 내 수용 시	50% 완화	· 구역별 최대개발규모 이하에서 건축시
		· 공공에게 공간제공 시 (택 1) - 구분지상권 설정 - 무상임대계약체결	100%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		· 한옥 신축 시 · 근대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존 시	100%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및 완화계획 (변경) 결정조서

구분	완화조건(대상)	계획내용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으로 차량출입이 불가한 대지	50% 완화	(50% 비용납부 또는 인근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② (한옥관리구역(I),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M), 소가로구역 (S))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에 '권장용도(권장1)' 설치 시	100%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	· 한옥 건축 시 · 한옥등 건축자산을 보호·활용 시	100% 완화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따름

※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평균바닥면적의 1개층 면적 이상(공용부 포함) 설치하거나 600㎡ 이상 설치 시 수용한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해당 대지 내 건축자산 및 일반건축물 모두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완화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름. 다만, 문화유산 및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에 따른 완화 적용 가능.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대개발규모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완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변경
  -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계획 적용의 변경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02-2133-8644), 종로구 건축과(☎02-2148-28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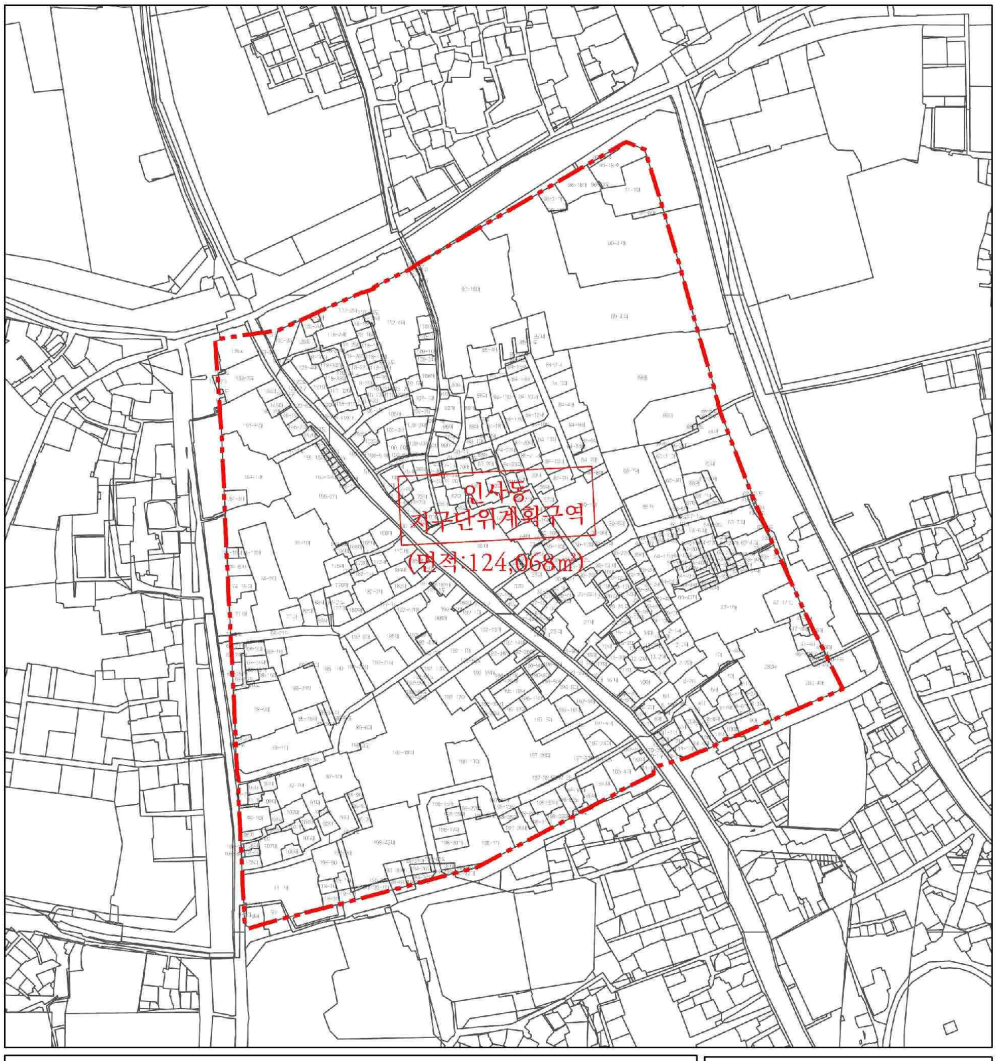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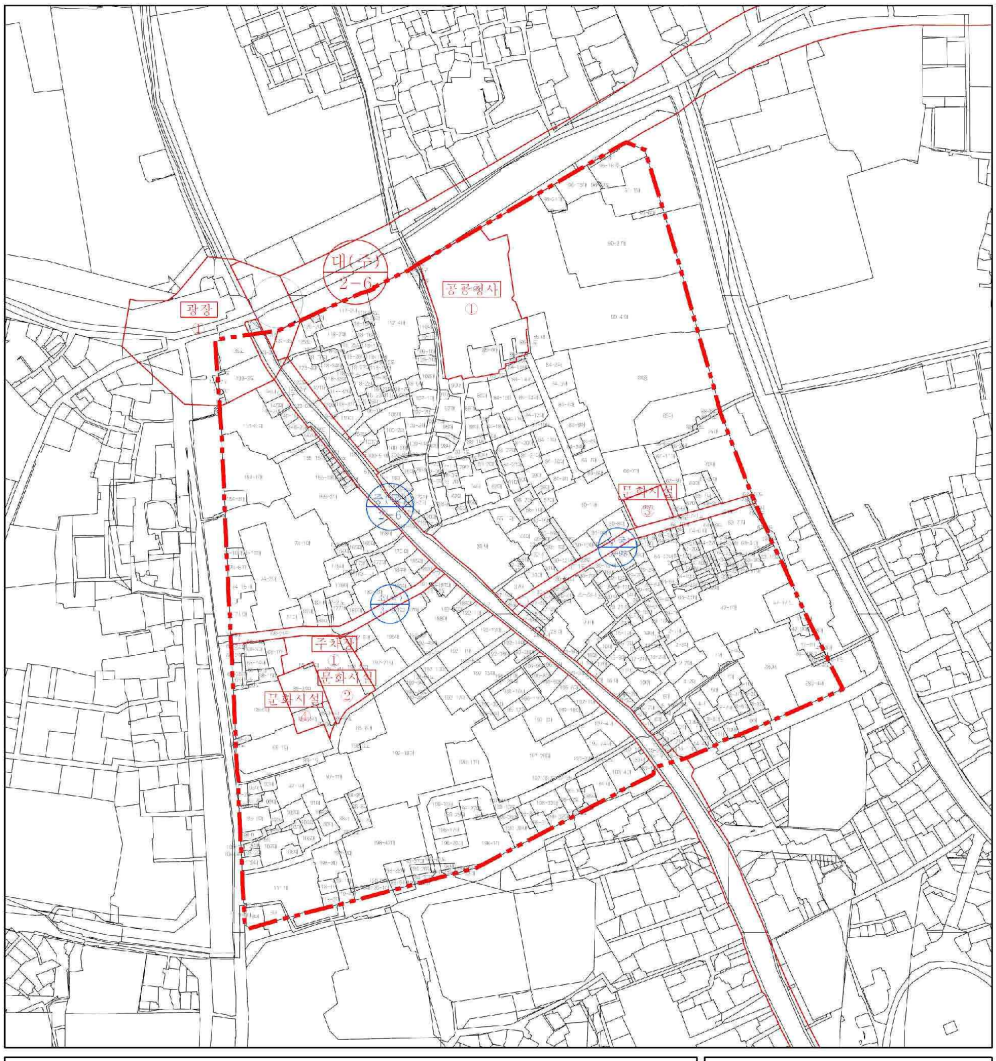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속지적도
- 도로(대로 이상)
- 도로(중로 이하)
- 광장
- 주차장
- 문화시설
- 공공청사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scale 1:3,000

0 25 50 100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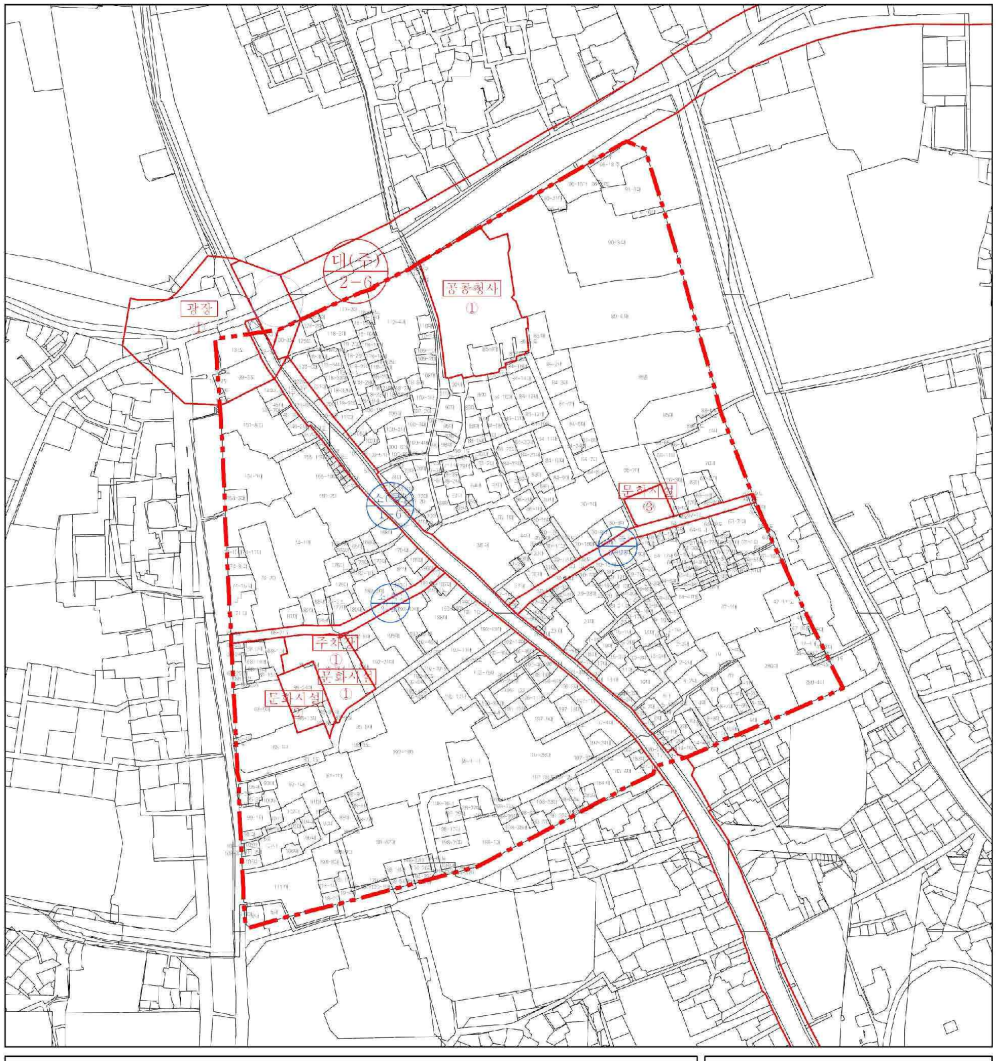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속지적도
- 도로(대로 이상)
- 도로(중로 이하)
- 광장
- 주차장
- 문화시설
- 공공청사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scale 1:3,000
0 25 50 100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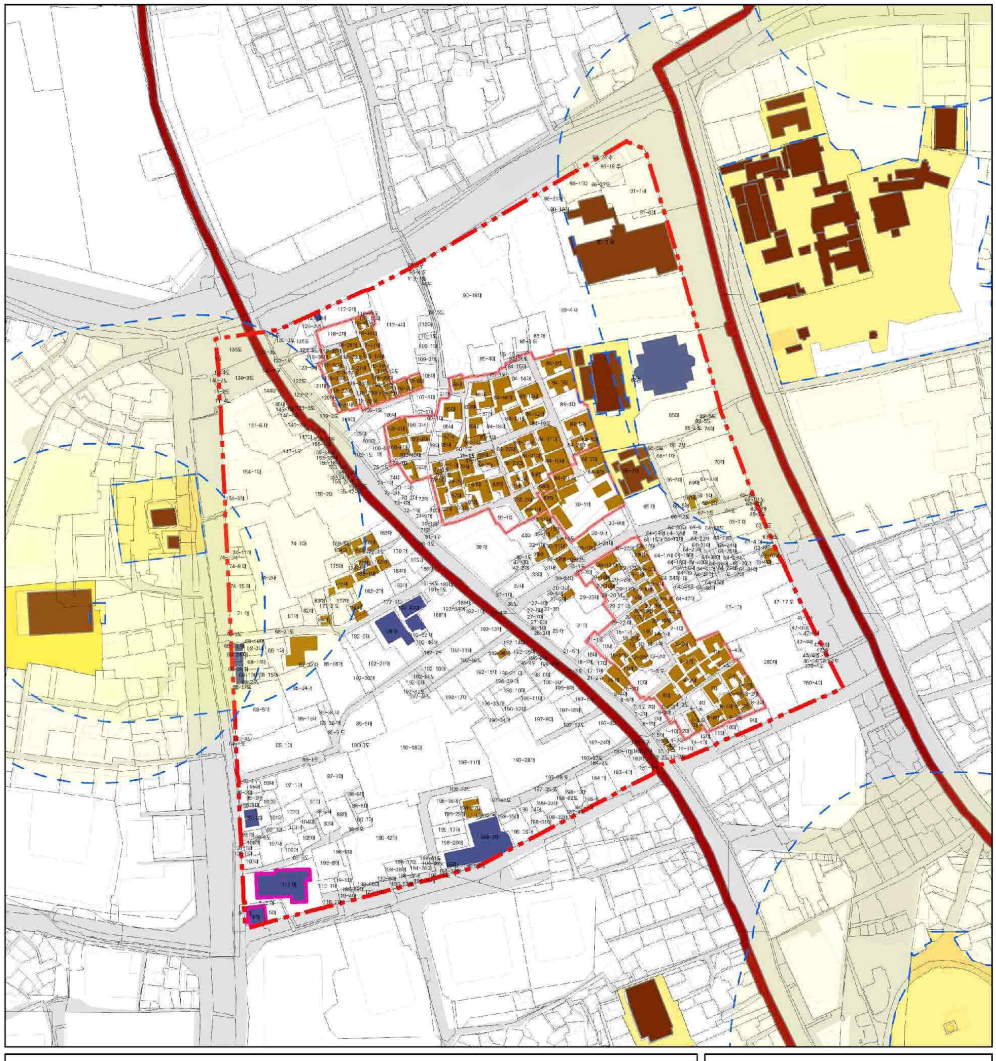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속지적도
- 건축물
- 문화유산
- 문화유산보호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한옥
- 보전건축물
- 건축자산(건축물)
- 건축자산(공간환경:한옥군)
- 건축자산(공간환경:가로/골목길)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지역(역사)자산에 관한 결정 (신설)

scale 1:3,000

0 25 50 100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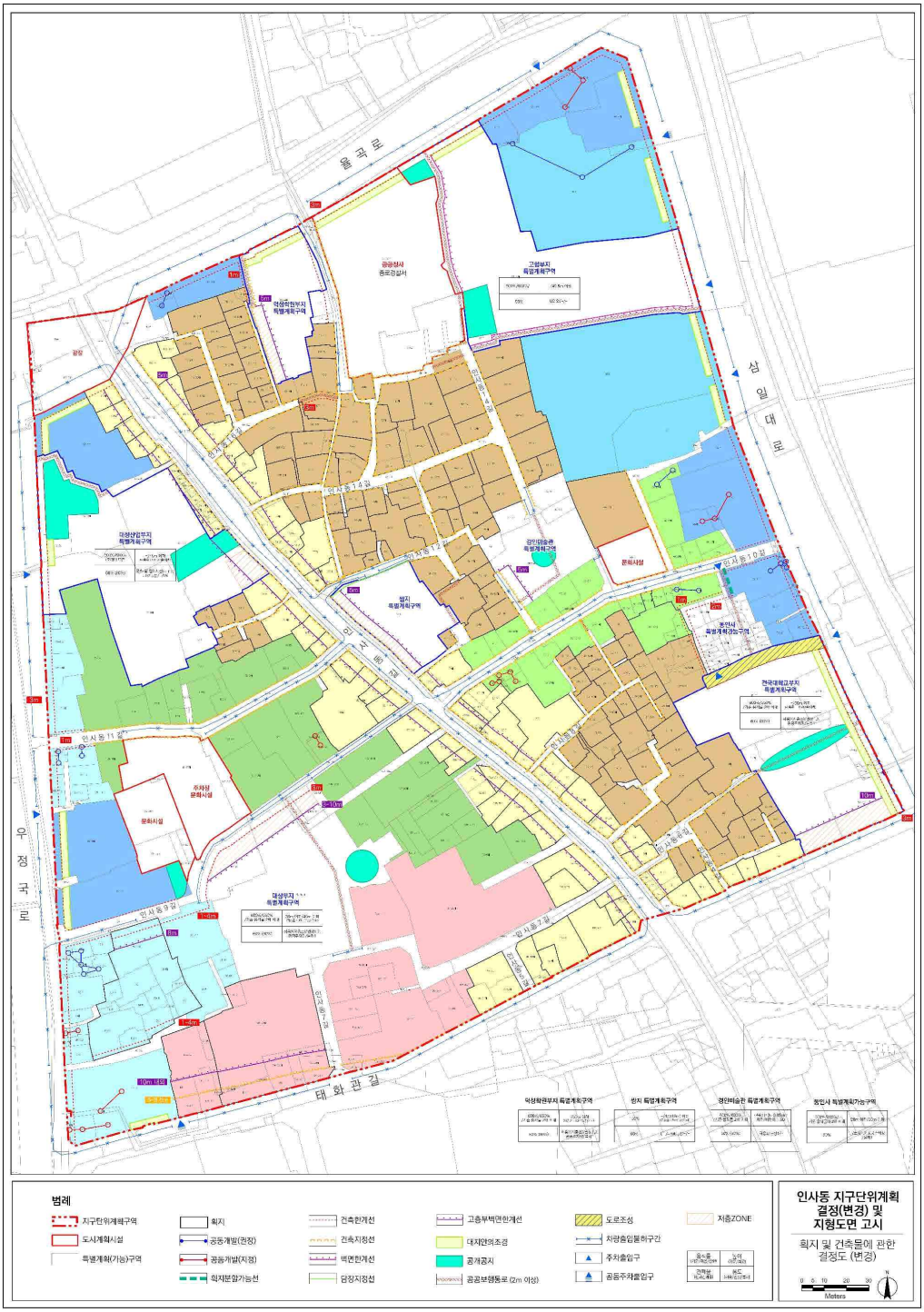
율곡로
삼일대로
우정국로
태화관길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특별계획(기능)구역
획지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획지분할가능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담장지정선
고층부벽면한계선
대지안의조경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2m 이상)
도로조성
차량출입불허구간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저층ZONE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변경)
Meters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침

용적률 (기준/허용)	높이 (기준/최고)
건폐율 (완화건폐율)	용도 (허용/권장/불허)
최대개발규모	

한옥관리구역(I)		인사동길 주변구역(M)		소가로구역1(S1)		소가로구역2(S2)	
600%/660%	한옥:(h+0.65e²)m 비한옥:1.5D…	600%/660%	기준:18m(4층) 최고:22m(5층)	600%/660%	기준:14m(3층) 최고:18m(4층)	600%/660%	기준:14m(3층) 최고:18m(4층)
60%(80%)	허용2/권장1	70%(80%)	허용1/권장1	70%(80%)	허용2/권장1	70%(80%)	허용2/권장1
330㎡		330㎡		330㎡		660㎡	

기개발구역(D)		간선가로구역1(O1)		간선가로구역2(O2)		간선가로구역3(O3)	
600%/660%	기준:30m 최고:40m	600%/660%	최고:50m	600%/660%	최고:30m	600%/660%	기준:20m 최고:30m
60%	권장1,2/ 불허1	60%	권장1,2/ 불허1	60%	불허1	60%	권장1,2/ 불허1
1,500㎡		1,500㎡		1,500㎡		1,500㎡	

※ 건폐율 완화계획

적용구역	건폐율 완화	완화조건
M	기준의	0.5× 전용주거지역 및 준주거 시 / 0.2 근린시
S	60%기준	0.8× 전용주거지역 및 준주거 시 / 0.6 근린시
I	70%기준	0.8× 전용주거지역 및 준주거 시 / 0.6 근린시
자구변위 계획구역	80% 이하	"한옥마을관리구역 변위 계획 준수 시
	100%기준	특수건물 준공시
	60%기준	0.8× 일 근린생활시설 포함 시 / 0.6× 전용지역 및 준주거 지역 중 "한옥마을관리구역 및 인사동길 주변구역" 외 지역 중 공공공사 등 공공시설 건축 시
	신축 도로변	공공시설 조성 부지 확보 및 공공공사 실시계획 제출하는 경우

※ 높이 완화계획

적용구역		완화조건	완화내용
S	M	한한옥도 1층부지 구조한지설 도입 및 구역에 경제시 등 준수 시 / 간접적인 부연해설 시	4층(14m)
D	O-3	전선로도 지구지구 구조한지설 도입 시 / 간접해도 간접적설(한옥형) 도입 시	5m / 6m
O-3		간접자산 부연해설 시	10m 이내
자구변위 계획구역		이하의 일부를 설설시설 도입 부지 확보 하거나, 간접시설 조성 일조이에 제공하는 경우	허가높이 최대 기준에 [illegible] 35%에 이내의

※ 상한용적률 완화계획

적용구역	완화조건	완화권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 (1+1.3×기증부 × α부지/× 33㎡ 한옥·건축물)	기존정비설의 2배 이내

■ 용도계획

· 허용용도

구분	적용구역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용도분류		세부용도
허용1	인사동길 및 대화라길 주변구역(M)	1층 (허용 1-A)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용품소매점(1,000㎡ 미만)	고미술, 판방/지인사, 공예품, 생활한복, 액자점, 시점, 꽃고용품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표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전시장) 중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
		1층 외 (허용 1-B)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주택, 한옥체험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용품소매점(1,000㎡ 미만)	고미술, 팔방/지인사, 공예품, 생활한복, 액자점, 불교용품, 기타용품류, 시점
				나. 휴게용식점, 제과점(300㎡ 미만) 등	한식점, 차전차집, 한식체개점
				지목(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 출판사	문화관리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 사무실, 기타 인사동 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바.공공업무 수행시설(1,000㎡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시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사.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안동센터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표구점, 사진관	-
				자. 안반용식점	한식점, 전통주점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이상)	한식점, 전통찻집, 한식체과점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 미만)	문화관리(서예학원, 다도학원, 화실, 서당 등)
				하목(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 출판사 (600㎡ 미만)	문화관리기획사무실, 출판사, 협회 사무실, 기타 인사동 내 입지한 문화업소의 관리사무실)
				가.공연장(500㎡ 미만)	전통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가.공연장	전통공연장
				라목(전시장) 중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
			교육연구시설	바.도서관	-
			노유자시설		-
허용2	소가로구역(S) 한옥관리구역(I)	전층	허용 1-B에서 다루는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시정	-
			숙박시설	기목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전통숙박시설

※ 위에서 분류한 허용1, 허용2의 세부용도와 무사는 용도의 대하에는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은 회의요서 별도의 소개절의 운영가능)에 자문을 거쳐 인정 가능하며, 분류지구은 건정용도 변경 시 구역에 허용용도 내에서 종로구 도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부용도에 포함 가능.

※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정용도 변경 시 구역에 허용용도 내에서 종로구 도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부용도로 인정 가능.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공통적용 사항]

※ "비도계획법, 및 「도시개발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구·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판매(주 이용하며, 8.단 법령 및 조례에서 도입 가능한 불허규정없이도 설계이고 인지불로 정한 이용농도(건축심상 불도 및 시기불도에 한하여만 허용함

※ 「건축법」, 「학교보건법」, 「청소년 주택법」,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규정」 등에 따라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르며, 인사동 문화지구 내 다지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기획」에서 금지 하는 업종 및 시설은 불허함.

※ 구체적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시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일용품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 안반용식점, 제과점 등, 또는 일반숙박시설에서 「「가칭 사인가이드 설정체계 간판 변경, 및 「가칭사인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칭사업」을 통해 개설된 프랜차이즈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한 개업도의 운영(식정)하면, 도전차이드성 공지는 문종 등 이에 준하는 「체인은 정비」의 영종을 불허함.

단, 마목 사항은 세부구역별로 허용함. 또도 세에서 예인을 제한할 수 있음.

- 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생활편의시설(편의점, 약국, 슈퍼등, 미용실 등)에 해당하는 등.
- 「가로사업지에서 고성화이 금한 법률, 제3조(적용하제)에 해당하는 경우
  - 지구내 에서 업시크 시 수소시설 등 혼합된 경우
  - 폐점유산 보수정비를 하는 경우
  - 서울시 건축사는 건문위원회 시군을 통해 건축자산 가치부전 등 인사동 구당의 지역심 강화에 기여 인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용도구능에 따라 허당 용도심을 적용 세부용도 계획을 따름.

※ 용도분류표에서 달라는 개별 세부용도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이국(숙박업은 기이은보도 계획심은 전조, 그로서, 지목 및 적도심의 조각, 주차기 및 기타심에들의, 건축자은 및 기타 문화재의 보리 내는 통합 및 시장 주요동문이나 우측으로부터 기타 주요동문을 기도이는 입증을 요함.
2) 일반/지인시 : 일반은 서개의 통합심에 사용자는 및 보목, 목, 여석 등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며, 지인시는 지종 등대의 전등종이를 단매하는 곳을 말함
3) 고에종 : 공개용은 개기에서 전승과 기능과 생산방법, 뚜는 현대의 새로의 기념의 기능, 기법, 조류 등을 이용이 관련하인 것으로서 예술적, 장식적, 신목적 등성을 이 개이이 새롭 개에하는 업종을 말함.
4) 생활한 "고" 한정에 및 한 인속하면 업종 한국의 개한 말로, 기본의 양식의 하지 기념되고 지 거지 교육이용 위기 적으로 판매하는 곳을 말함
5) 사무 문화용은 : 기타 문화용도 도매업은 고미술, 장계전 단 목점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단 매하는 업종으로 주로 기금로 및 소비세 상점을 판매하는 곳을 말함.
6) 고수심 : 고수를 하는 곳을 말하며, 고수란 서울이 송이나 비다을 받은 부미고 나누 능의 신지을 서서 속자, 이자, 변동 능을 반드는 일을 말함
7) 전통숙집: 정적, 제주 등 족족의 인심조, 송화지 등 지목(구속적으로 커피 등 기타음료 포함)은 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8) 한식점: 순조식 및 일반숙식을 포함하며, 한식 지금가 기미되기나 한식 조리기법을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9) 한식체과점: 한식 체로가 기미되기나 한식 조리기법을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숙속적으로 판단해야 포함)
10) 전통주점: 우리나라 고유의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하, (주속적으로 백주, 정주 등 포함)
11) 전통상점: 국의 및 고유무은 도구 성주가 무형도옥자 등 장인들의 공예 시연의 장으로 사용되는 곳을 말함.
12) 전통숙박시설: 한옥을 활용한 아이, 여인숙, 여관숙 등을 말함.
13) 한정소개: 하기에 내가 판매을 목일에 하 소개하고자 하려내어 판매하는 것소를 말함.
14) 예지는: 노동 설비·시귀 등을 넣이 해에 같" 위한 활일 포 적이며 판 해하, 업소을 말함.
15) 문니용품 : 일로 시장나 아에, 장식 등 종사문학과 관련한 시종 용품을 판 매하는 업종으로, 불상 불화 (불화 등 불교미술품, 목탁·염주 등 주부니 계 등 포함)을 말하며, 골동 (오인 서가, 골동 관련 기념일 등 생가능 등급 위심 단매하는 업종을 말함.

· 불허용도

구분	적용구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전층불허	1층불허
불허1	기개발구역(D), 간선가로변구역(O)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상복합 제외)	○	
				다.체육 : 순선시설(복합형, 시목수, 이용원, 미용원 등)		○
				라.주민의 신료 : 지료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마.탁구장, 체육도장 등(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공연장 중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500㎡ 미만)	○	
				다.자동차영업소(1,000㎡ 미만)	○	
				마.총무원폐소	○	
				사.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500㎡ 미만)	○	
				차목 중 장의사	○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500㎡ 미만)		○
				타. 독서실, 기원		○
				파.주민체육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공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500㎡ 미만)		○
				파목 주민체육시설 중 실내낚시터,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00㎡ 미만)	○	
				하목 일반업무시설중(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500㎡ 미만)		○
				거. 다중생활시설 (600㎡ 미만)	○	
				너. 단란주점 (150㎡ 미만)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분회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중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500㎡ 이상)	○	
				나목 집회장 중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500㎡ 이상)	○	
				라. 관람장 (1,000㎡ 이상)	○	
				마. 동·식물원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의료시설		가목 병원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나.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
		운동시설		가목 중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
				가목 중 실내낚시터,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나. 체육관(1,000㎡ 미만)	○	
				다. 운동장	○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창고시설		가. 창고		○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	

· 권장용도

구분	적용구역	적용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따른 용도분류		세부용도
권장1 (중층 이하 건축물)	시구단위 계획구역 (O-2제외)	저층부 (지하1층~지상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용품소매점(1,000㎡ 미만)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사업 중 공동공동점, 필방/지인사, 민속공예용점
				지목(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 출판사 (600㎡ 미만)	문화지구 존장사설의 집업 및 활동공간 설치
				사.주민공동이용시설	※ 종로구 문화고 형약 체결 시 인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출판사(500㎡ 미만)	
				바목 중 표구점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사업 중 표구점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전시장) 중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사업 중 화랑
권장2 (10층 이하 건축물)	간선가로변 구역 (O-1,3), 기개발구역(D)	저층부 (지하1층~지상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용품소매점(1,000㎡ 미만)	-
				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사진관	-
				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사. 일반음식점	-
				하목 중 사무소, 출판사(500㎡ 미만)	-

※ 지구단위계획수으로 정한 구역 및 지지별로 허용하는 용도 내에서 제일 권장용도(건축심상 불도 분류 및 세부용도)를 적용함.

※ 권장용도는 저층부(지하1층~지상4층)에 당해 용도가 지지하는 인력은 원금에(작한적의 1개층 만도 이상(원동수 제외) 입지하기니 연면적 600㎡이상 설치 시 승설하 것으로 판정하며, 권장용도 이외은 용도는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도계획에 따 다름.

※ 국정1, 권장2 강도를 작각의 수정 인정 주체 이상으로 설치 시 해당 강도를 만두 수정의 것으로 인정하여 가일 인서티브를 적상 적용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용도구분에 따라 정한 강도로부터 적상 세부용도 계획을 따름.

※ 문화시구은이계획의 권장사설 및 설이 본금 시 「구별로 허용용도 내에서 시구별 고유의 인생 가능.

※ 권장용도 설치에 따라 완화 적용받은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 시 인센티브 환수 방안

현금환수	증가된 연면적의 기준가액 - 증가 전 기준가액
	[증가된 연면적(㎡)X 기준가액(원/㎡)- 1층가반 연면적의 기준가액 X 감지기간(년)] / 의무기간(년)
공간환수	[증가된 연면적(㎡) - [증가된 연면적(㎡) 기준가액(원/㎡) / 의무기간(년)]

※ 공간환수를 우선으로 하고, 건설협회 기준가액은 인지 송을 고려해야 용도변경 시점의 인근 유사 건물은 KB부동산시세에 평균가액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시가표준액x(1.5~2)의 연면적 / 층 합산 금액(원/㎡) 으로 설정 등록 결정

※ 권장용도 무지 이후 기간은 구수 등 건축물의 사용기한(「시장세 시구수준에 주시사정」/준행)등에 정한 「건축등 경과연수별 전가율」의 구조별 내용연수 기준을 그대로와 건축가로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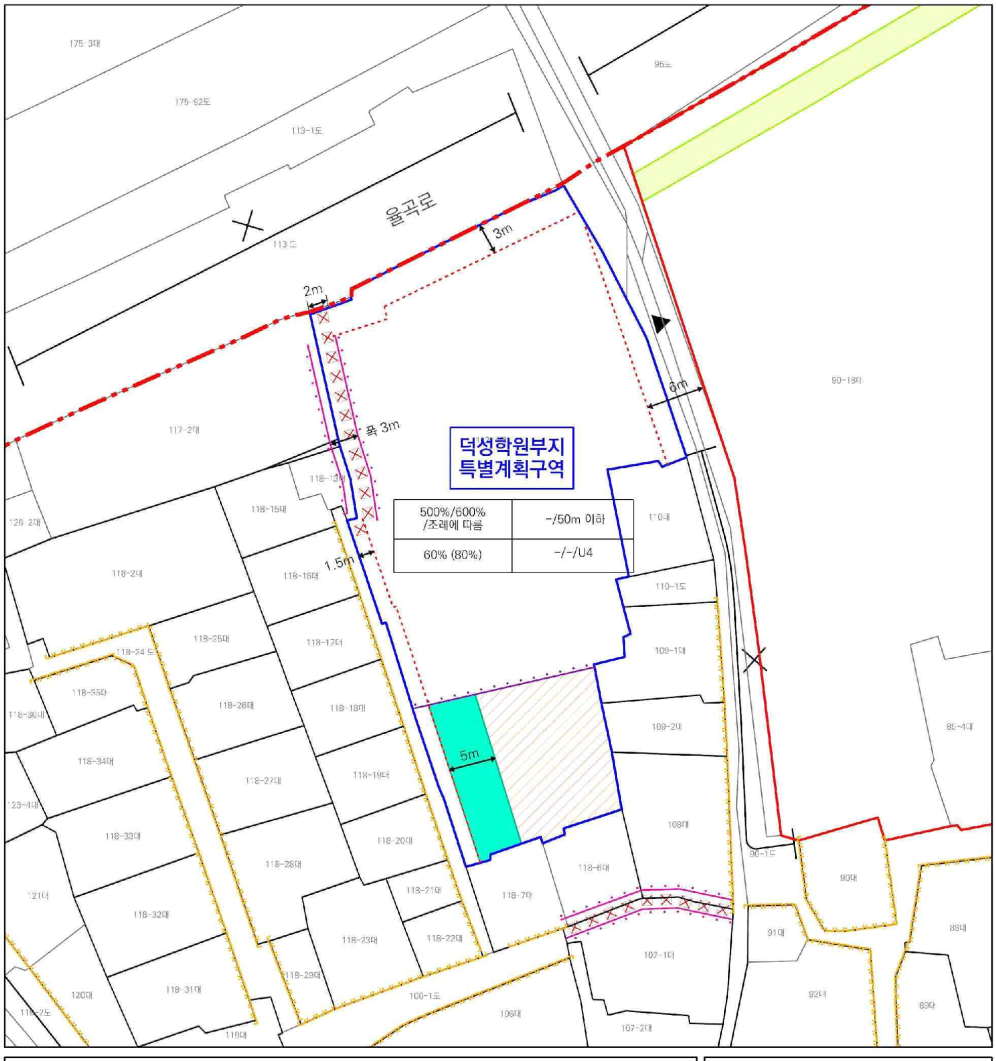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 연속지적도
- 획지선
-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 벽면한계선
- 고층부벽면한계선
- 공개공지
- 대지안의조경
- 저층ZONE
-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용적률 (기존/허용/상한)	높이 (기준/최고)
건폐율 (완화건폐율)	용도 (지정/권장/불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덕성학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 (기징)

scale 1:500

0 3.5 7 14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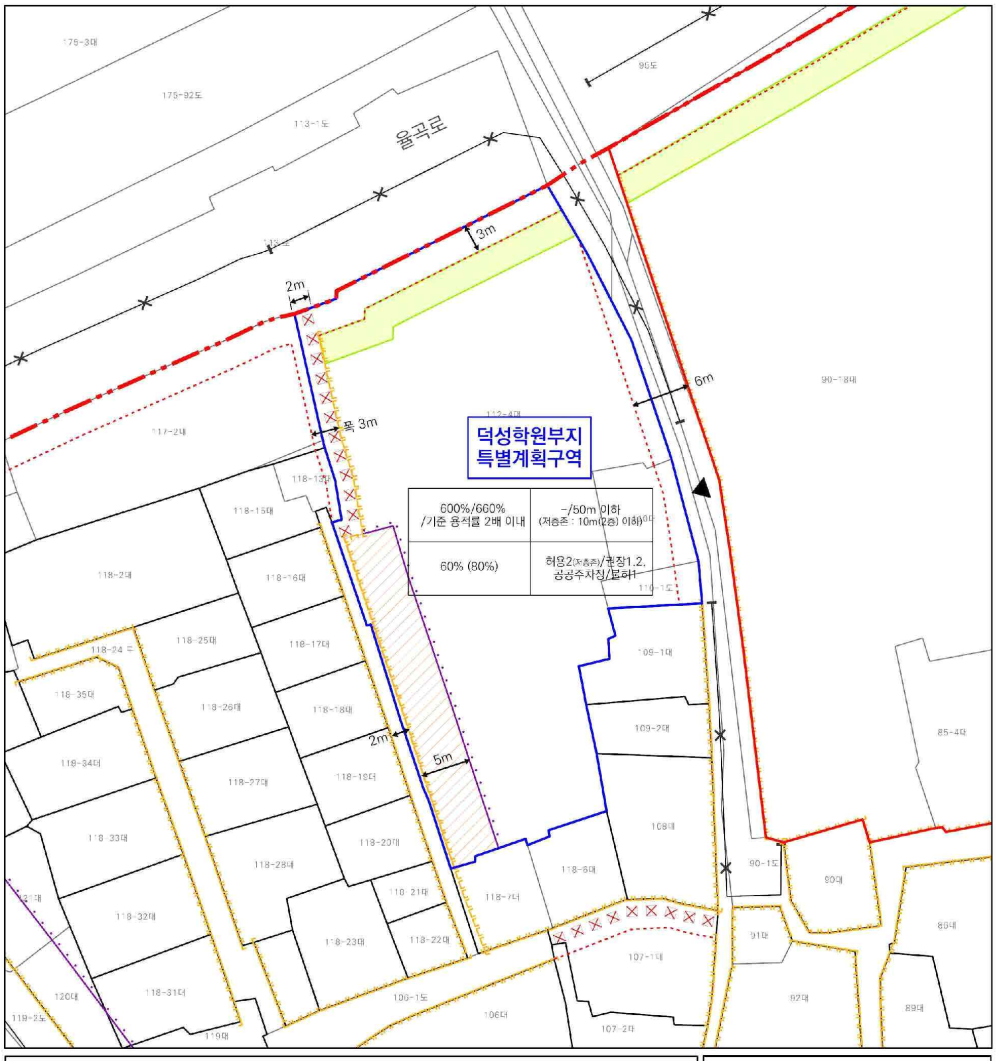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 도시계획시설
- 연속지적도
- 획지선
-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 고층부벽면한계선
- 대지안의조경
- 저층ZONE
-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 (기준/최고)
건폐율 (완화건폐율)	용도 (허용/권장/불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덕성학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 (변경)

scale 1:500
0 3.5 7 14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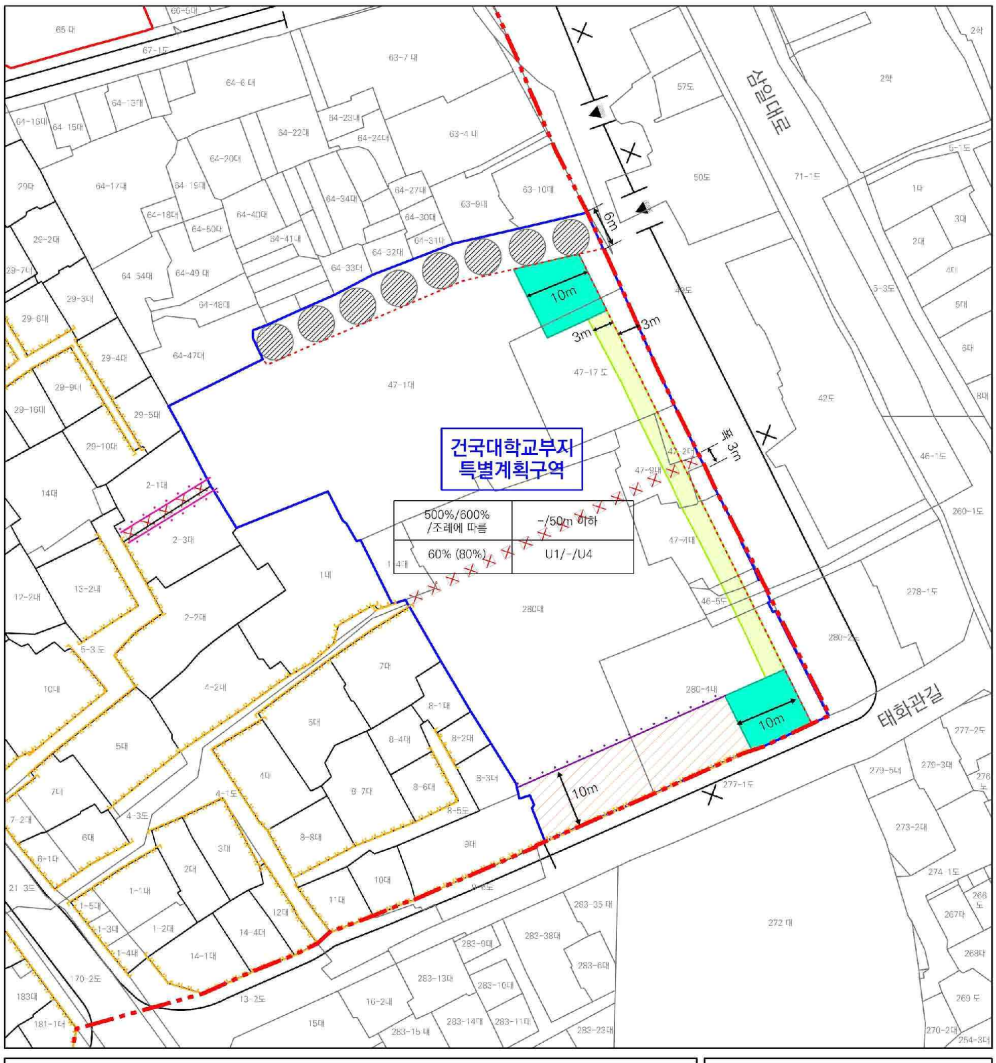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 연속지적도
- 획지선
-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 벽면한계선
- 고층부벽면한계선
- 공개공지
- 대지안의조경
- 저층ZONE
-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 보행자우선도로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 (기준/최고)
건폐율 (완화건폐율)	용도 (지정/권장/불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건국대학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 (기정)

scale 1:750
0 5 10 20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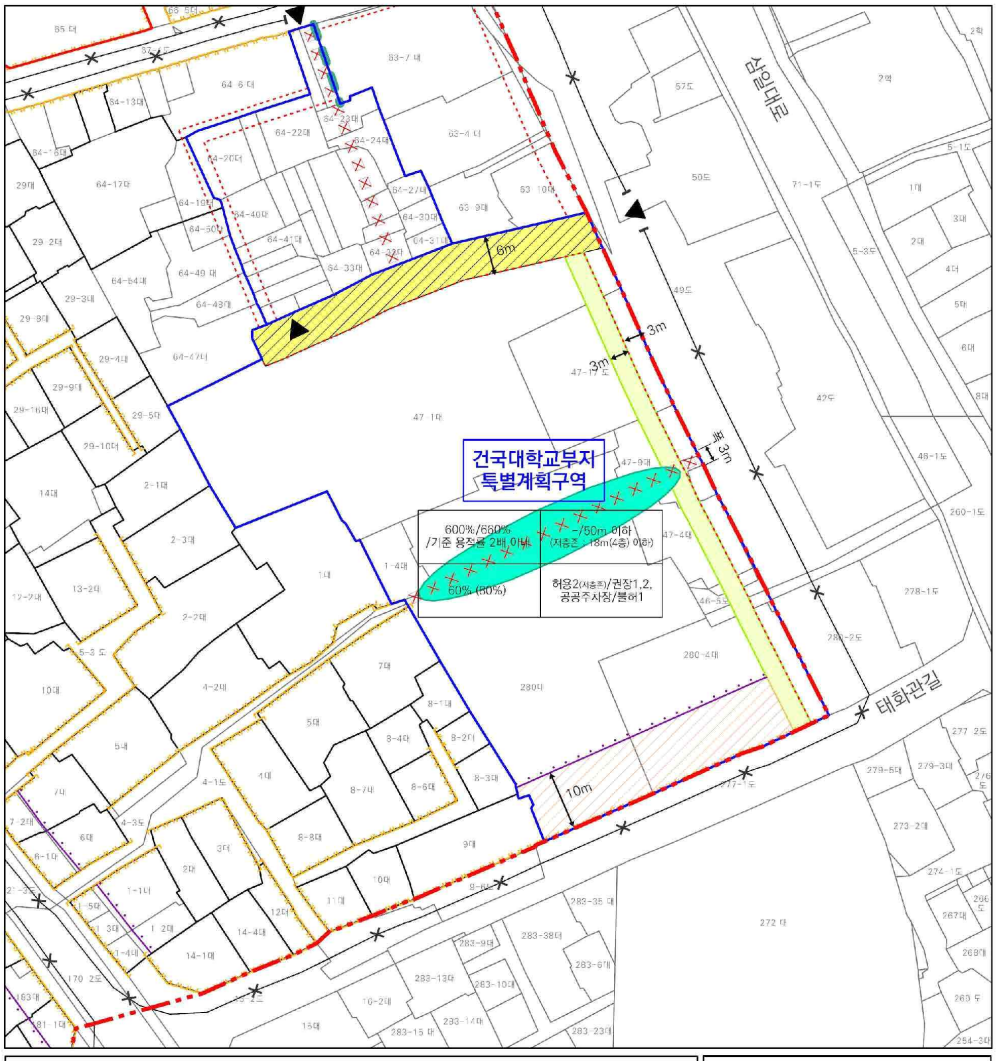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 도시계획시설
- 연속지적도
- 획지선
- 분할가능선
-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 고층부벽면한계선
- 공개공지
- 대지안의조경
- 저층ZONE
-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 도로조성

용적률 (기존/허용/상한)	높이 (기존/초고)
건폐율 (완화건폐율)	용도 (허용/권장/불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건국대학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 (변경)

scale 1:750
0 5 10 20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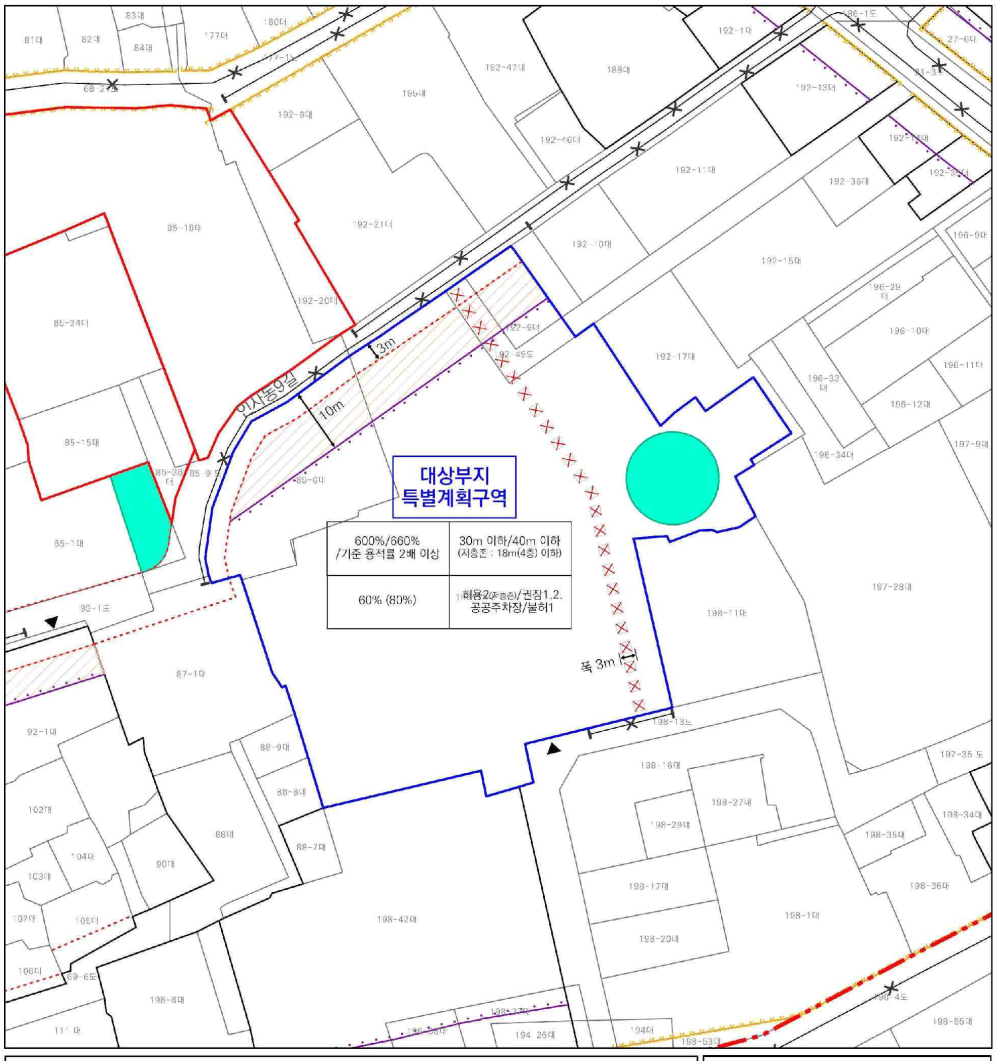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 도시계획시설
- 연속지적도
- 획지선
-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 고층부벽면한계선
- 공개공지
- 저층ZONE
-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용적률 (기존/허용/상한)	높이 (기존/최고)
건폐율 (완화건폐율)	용도 (허용/권장/불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대상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 (신설)

scale 1:750
0 5 10 20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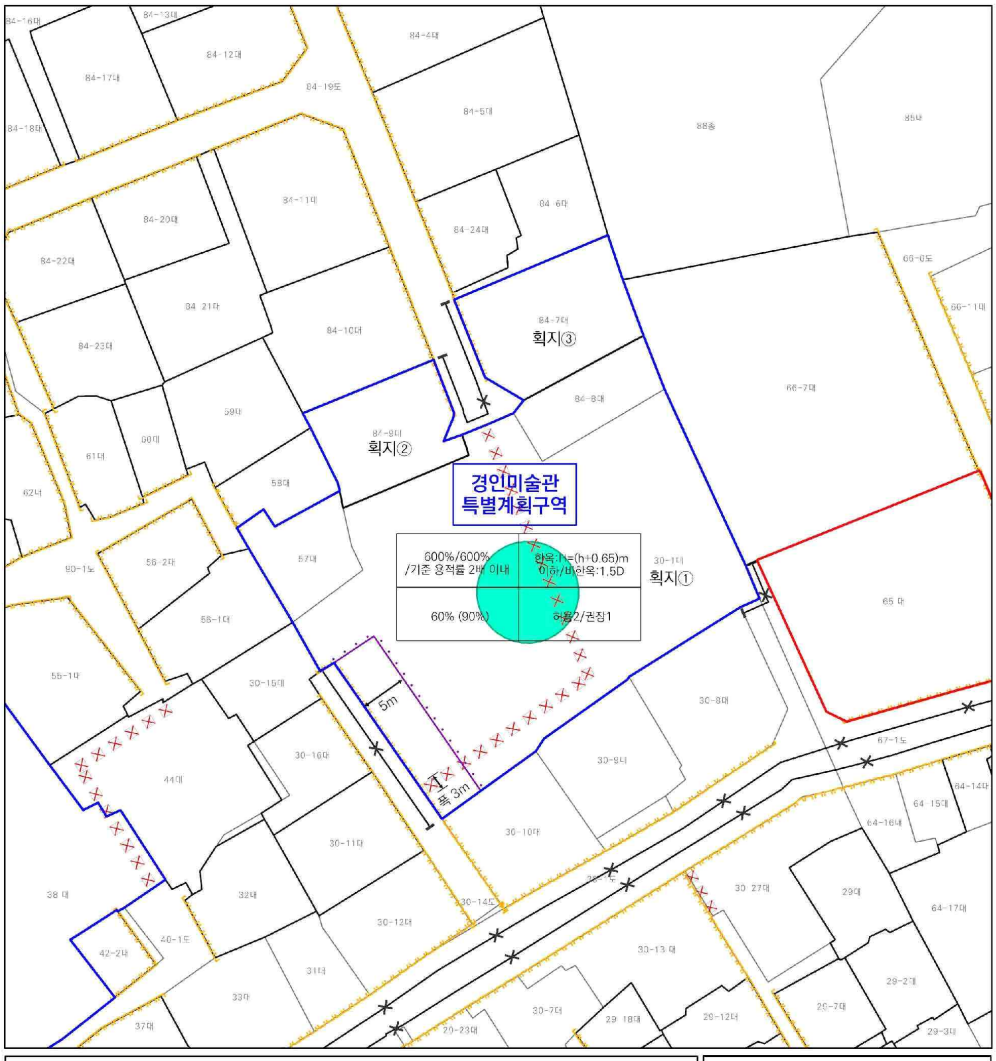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 연속지적도
- 획지선
- 건축지정선
- 고층부벽면한계선
- 공개공지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 (기준/최고)
건폐율 (완하건폐율)	용도 (허용/권장/불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경인미술관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 (신설)

scale 1:500
0 3.5 7 14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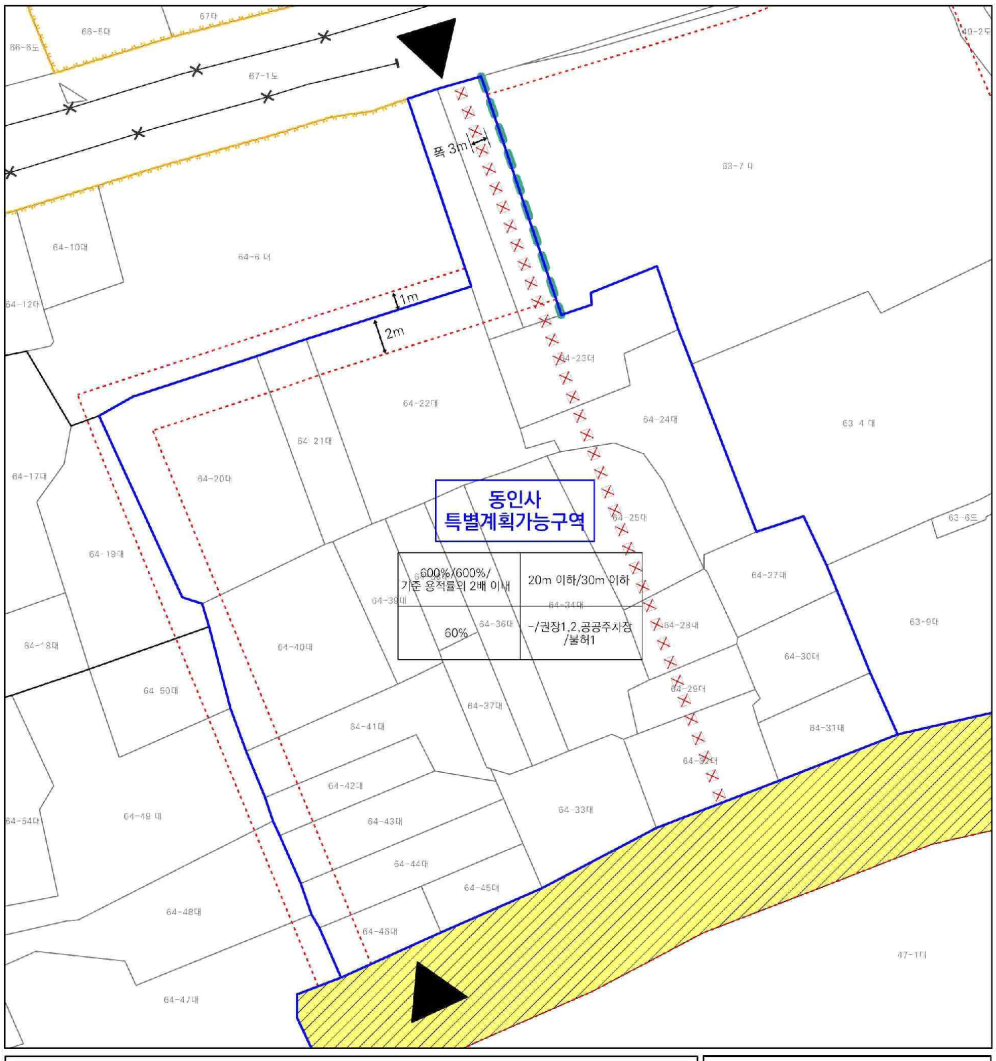
폭 3m
1m
2m
동인사
특별계획가능구역
600%/600%/
기준 용적률의 2배 이내
20m 이하/30m 이하
60%
-/권장1,2,공공주차장
/불허1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도시계획시설
연속지적도
획지선
분할가능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주차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도로조성
용적률 (기존/허용/상한)
높이 (기존/최고)
건폐율 (완화건폐율)
용도 (허용/권장/불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동인사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지침도 (신설)
scale 1:250
0 1.75 3.5 7
Meter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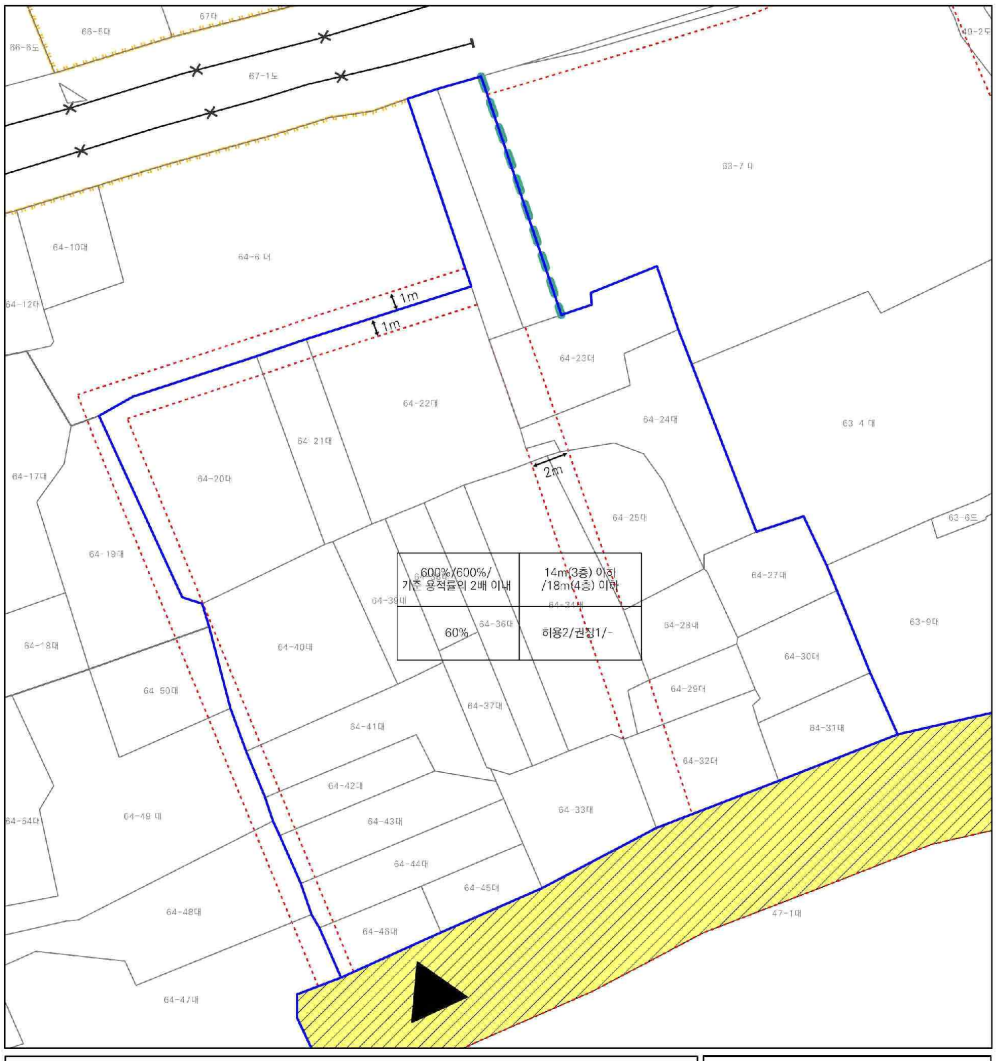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 도시계획시설
- 연속지적도
- 획지선
- 분할가능선
-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 도로조성

용적률 (기존/허용/상한)	높이 (기존/최고)
건폐율 (완화건폐율)	용도 (허용/권장/불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동인사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후 분할개발 시 계획지침도

scale 1:250
0 1.75 3.5 7
Meters

N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1호

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181호(1966.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07호(2026.3.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변경) 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호(1990.4.2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8호(2023.10.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사업 변경사항과 공원 부지 변경사항(편입, 부분실효)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번지 일대
3. 공원면적 : 총면적 518,140.7㎡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0) 및 은평구청 공원녹지과(☎351-800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산11번지 일대) - 서대문구+은평구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527,838.10	88,797	12동	10,227.98	25,693.32	261	518,140.70	88,620	11동	9,973.98	25,315.32	231	부지면적 감) 9,697.4㎡ 시설면적 감) 177㎡
기반시설	소 계	27,111	27,111					27,354	27,354					시설면적 증) 243㎡
	도 로	24,932	24,932					24,889	24,889					시설면적 감) 43㎡
	광 장	2,179	2,179					2,465	2,465					시설면적 증) 286㎡
조경시설		4,701	4,701				172	4,701	4,701				172	
휴양시설		3,184	3,184				50	3,360	3,360				14	시설면적 증) 176㎡
유희시설		2,999	2,999				6	2,999	2,999				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27,258	27,258	4동	4,181.18	10,742.52	30	27,291	27,291	4동	4,181.18	10,742.52	35	시설면적 증) 33㎡
교양시설	18,492	18,492	4동	5,660.80	14,440.80		18,412	18,412	4동	5,660.80	14,440.80		시설면적 감) 80㎡
편익시설	4,475	4,475	3동	278.00	402.00	1	3,926	3,926	2동	24.00	24.00	2	시설면적 감) 549㎡
관리시설	577	577	1동	108.00	108.00	2	577	577	1동	108.00	108.00	2	
녹지.기타	439,041.10						429,520.70						부지면적 감) 9,520.4㎡
공원시설율 (법정40%)	(88,797㎡/527,838.1㎡)*100%=16.82%						(88,620㎡/518,140.70㎡)*100%=17.10%						
공원건폐율 (법정10%)	(10,227.9㎡/527,838.1㎡)*100%=1.93%						(9,973.98㎡/518,140.70㎡)*100%=1.93%						

※ 총괄표(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계	527,838.10	88,797	12동	10,227.98	25,693.32	261	518,140.70	88,620	11동	9,973.98	25,315.32	231	부지면적 감) 9,697.4㎡ 시설면적 감) 177㎡
서대문구	322,747.20	71,197	8동	7,393.18	19,172.77	137	312,967.20	71,197	8동	7,393.18	19,172.77	137	부지면적 감) 9,780.0㎡ (실효면적)
은평구	205,090.90	17,600	4동	2,834.80	6,520.55	124	205,173.50	17,423	3동	2,580.80	6,142.55	94	부지면적 증)82.6㎡ (실효면적 감3.0㎡ 응암2구역 증85.6㎡) 시설면적 감) 177㎡

2. 시설조서 (총괄)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527,838.10	88,797		12동	10,227.98	25,693.32	261			518,140.70	88,620		11동	9,973.98	25,315.32	231	감) 177㎡
기반시설	소계			27,111	27,111								27,354	27,354						증) 243㎡
	도로			24,932	24,932								24,889	24,889						감) 43㎡
	광장	가	10개소	2,179	2,179						가	10개소	2,465	2,465						증) 286㎡
		가-3	응암동 산6-46	312	312						가-3	응암동 산6-46	312	312						
		가-4	홍은동 산26-170	806	806						가-4	홍은동 산26-170	806	806						
		가-5	홍은동 산11-279	220	220						가-5	홍은동 산11-279	220	220						
		가-6	홍은동 산11-313	46	46						가-6	홍은동 산11-313	46	46						
		가-7	홍은동 산11-313	56	56						가-7	홍은동 산11-313	56	5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가-8	홍은동 산11-313	134	134						가-8	홍은동 산11-313	134	134						
		가-9	홍은동 산11-41	99	99						가-9	홍은동 산11-41	99	99						
		가-10	홍은동 산11-41	98	98						가-10	홍은동 산11-41	98	98						
		가-12	홍은동 산26-134	408	408						가-12	홍은동 산26-134	408	408						
											가-13	응암동 산7-266	286	286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소계		4,701.00	4,701.00					172			4,701.00	4,701.00					172	
잔디밭	가	홍은동 산11-279	533	533							홍은동 산11-279	533	533						
생태연못	나	3개소	1,568	1,568							3개소	1,568	1,568						
	나-2	홍은동 산11-313	1,119	1,119							홍은동 산11-313	1,119	1,119						
	나-3	홍은동 산11-41	173	173							홍은동 산11-41	173	173						
	나-4	홍은동 산11-41	276	276							홍은동 산11-41	276	276						
암석원	다	1개소	293	293							1개소	293	293						
	다-2	홍은동 산11-41	293	293							홍은동 산11-41	293	293						
초화원	아	홍은동 산11-41	709	709							홍은동 산11-41	709	709						
피크닉장	자	홍은동 산11-41	113	113							홍은동 산11-41	113	113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태육교	챠	응암동 산1-120							1		응암동 산1-120							1	
	잔디마당	캬	3개소	1,485	1,485						캬	3개소	1,485	1,485						
		캬-1	홍은동 산11-313	752	752						캬-1	홍은동 산11-313	752	752						
		캬-2	홍은동 산11-313	225	225						캬-2	홍은동 산11-313	225	225						
		캬-3	홍은동 산11-313	508	508						캬-3	홍은동 산11-313	508	508						
	장의자		시설지내							146		시설지내							146	
	야외탁자		시설지내							25		시설지내							2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소계			3,184	3,184					14			3,360	3,360					14	증) 176㎡ 공작물 (367기)감소
임간 휴게소	나	4개소	265	265						나	4개소	265	265						
	나-9	홍은동 산11-313	146	146						나-9	홍은동 산11-313	146	146						
	나-10	홍은동 산11-41	49	49						나-10	홍은동 산11-41	49	49						
	나-11	홍은동 산11-41	35	35						나-11	홍은동 산11-41	35	35						
	나-12	홍은동 산11-41	35	35						나-12	홍은동 산11-41	35	35						
등의자	①	서설지내							2	①	서설지내							2	
팔각쉼터	②	체력단련장 내 (타-2) 홍은동 산11-279							1	②	체력단련장 내 (타-2) 홍은동 산11-279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 탁자 및 의자	③	시설지내							9	③	시설지내							9	
평상	④	시설지내							31										폐지
헬링쉼터	⑤	시설지내							5										폐지
파고라	⑥	시설지내							2									2	
노인정																			
휴게소	다	10개소	2,082	2,082						다	17개소	2,370	2,370						주) 288㎡
	다-1	응암동 산6-48일대	400	400						다-1	응암동 산6-48일대	400	400						
	다-3	응암동 산1-231	298	298						다-3	응암동 산1-231	298	29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게소	다-5	홍은동 산11-325	78	78						다-5	홍은동 산11-325	78	78						
	다-6	응암동 산6-46	226	226						다-6	응암동 산6-46	226	226						
	다-9	응암동 산7-247	86	86						다-9	응암동 산7-247	86	86						
	다-10	홍은동 산11-123	148	148						다-10	홍은동 산11-123	148	148						
	다-11	응암동 산6-50	216	216						다-11	응암동 산6-50	216	216						
	다-12	응암동 산6-50	204	204						다-12	응암동 산6-50	204	204						
	다-13	홍은동 산11-18일대	320	320						다-13	홍은동 산11-18일대	320	320						
	다-14	홍은동 산11-313	106	106						다-14	홍은동 산11-313	106	106						
										다-15	응암동 산7-84	38	38						신설
										다-16	응암동 산7-84	62	62						신설
										다-17	응암동 산7-84	14	14						신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마휴게소										다-18	응암동 산7-84	58	58						신설
										다-19	응암동 산7-84	49	49						신설
										다-20	응암동 산7-84	27	27						신설
										다-21	응암동 산7-84	40	40						신설
	라	6개소	837	837						라	5개소	725	725						감) 112㎡
	라-1	홍은동 산26-170	57	57						라-1	홍은동 산26-170	57	57						
	라-2	홍은동 산19-19	68	68						라-2	홍은동 산19-19	68	68						
	라-3	홍은동 산19-19	29	29						라-3	홍은동 산19-19	29	29						
	라-4	홍은동 산19-19	80	80						라-4	홍은동 산19-19	80	80						
	라-5	홍은동 산19-19	491	491						라-5	홍은동 산19-19	491	491						
	라-6	응암동 산7-84	112	112															폐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소계			2,999.00	2,999.00					6			2,999.00	2,999.00					6	
어린이 놀이터	라	7개소	2,947	2,947					5	라	7개소	2,947	2,947					5	
여흥시설	라-1	홍은동 산11-279	594	594					1	라-1	홍은동 산11-279	594	594					1	
	라-2	응암동 산6-48	192	192					4	라-2	응암동 산6-48	192	192					4	
	라-3	응암동 산6-46	424	424						라-3	응암동 산6-46	424	424						
	라-4	홍은동 305-3	370	370						라-4	홍은동 305-3	370	370						
	라-5	홍은동 산11-325	171	171						라-5	홍은동 산11-325	171	171						
	라-6	홍은동 산11-313	690	690						라-6	홍은동 산11-313	690	690						
	라-7	홍은동 산11-313	506	506						라-7	홍은동 산11-313	506	50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모래놀이장	타	홍은동	52	52					1		타	홍은동	52	52					1		
소계			27,258	27,258		4동	4,181.18	10,742.52	30				27,291	27,291		4동	4,181.18	10,742.52	35		지하 33㎡ 공작물(57기) 증가
체육관	2	홍은동 산26-155일대	4,125	4,125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3층 2동	3,155.18 (체육회관1,587.62㎡ 다목적체육관 1,567.56㎡)	8,983.77 (체육회관4,695.69㎡ 다목적체육관 4,288.08㎡)			2	홍은동 산26-155일대	4,125	4,125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3층 2동	3,155.18 (체육회관1,587.62㎡ 다목적체육관 1,567.56㎡)	8,983.77 (체육회관4,695.69㎡ 다목적체육관 4,288.08㎡)			
골프연습장	3	홍은동 산11-275일대	9,930	9,93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1동	522	1,140.00			3	홍은동 산11-275일대	9,930	9,93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1동	522	1,140.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베드민턴장	마	5개소	2,914	2,914						마	5개소	2,914	2,914						
	마-2	홍은동 산11-279	652	652						마-2	홍은동 산11-279	652	652						
	마-3	응암동 산6-48	589	589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층 1동	504	618.75		마-3	응암동 산6-48	589	589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층 1동	504	618.75		
	마-4	홍은동 산19-19	300	300						마-4	홍은동 산19-19	300	300						
	마-5	응암동 산6-48	327	327						마-5	응암동 산6-48	327	327						
	마-6	홍은동 산26-170	1,046	1,046						마-6	홍은동 산26-170	1,046	1,046						
테니스장	파	홍은동 산26-170	1,046	1,046						파	홍은동 산26-170	1,046	1,046						
다목적운동장	바	2개소	8,457	8,457						바	2개소	8,457	8,457						
	바-1	홍은동	7,772	7,772						바-1	홍은동	7,772	7,77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산26-157									산26-157								
		바-2	홍은동 산11-279	685	685						바-2	홍은동 산11-279	685	685						
	체력단련장	타	2개소	786	786						타	3개소	819	819						증) 33㎡
		타-1	응암동 산6-48	234	234						타-1	응암동 산6-48	234	234						
		타-2	홍은동 산11-279	552	552						타-2	홍은동 산11-279	552	552						
											타-3	응암동 산7-84	33	33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7개소							30		8개소							35	공작물(5기) 증가
체력단련시설		자연체험장내 (하-5) 응암동산6-46							2		자연체험장내 (하-5) 응암동산6-46							2	
		자연체험장내 (하-5) 응암동산6-46							2		자연체험장내 (하-5) 응암동산6-46							2	
		자연체험장내 (하-5) 응암동산6-46							2		자연체험장내 (하-5) 응암동산6-46							2	
		체력단련장내 (타-1) 응암동산6-48							4		체력단련장내 (타-1) 응암동산6-48							4	
		체력단련장 2개소내 (타-1) 응암동산6-48							6		체력단련장 2개소내 (타-1) 응암동산6-48							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내 (타-2) 홍은동산11-279							9		체력단련장내 (타-2) 홍은동산11-279							9	
		광장내 (가-7) 홍은동산11-313							5		광장내 (가-7) 홍은동산11-313							5	
											체력단련장내 (타-3) 응암동산7-84							5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소계			18,492	18,492		4동	5,660.80	14,440.80				18,412	18,412		4동	5,660.80	14,440.80		감 80㎡
조각원	아	응암동 산6-46	123	123						아	응암동 산6-46	123	123						
청소년 수련원	4	응암동 산6-46	2,974	2,974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1동	2,064.80	5,511.80		4	응암동 산6-46	2,974	2,974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1동	2,064.80	5,511.80		
문화회관	5	흥은동 305-3	4,712	4,712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지상 3층 1동	3,032.00	8,365.00		5	흥은동 305-3	4,712	4,712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지상 3층 1동	3,032.00	8,365.00		
자연학습장	하	4개소	7,902	7,902						하	4개소	7,902	7,902						
	하-1	흥은동 산26-170	447	447						하-1	흥은동 산26-170	447	447						
	하-2	흥은동 산11-313	433	433						하-2	흥은동 산11-313	433	433						
	하-3	흥은동 산11-123	4,758	4,758						하-3	흥은동 산11-123	4,758	4,758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5	응암동 산6-46	2,264	2,264						하-5	응암동 산6-46	2,264	2,264						
	생태습학원										거	2개소	80	80						증) 80㎡
											거-1	응암동 산7-84	22	22						신설
											거-2	응암동 산7-84	58	58						신설
	관찰데크	먀	3개소	195	195						먀	1개소	35	35						감) 160㎡
		먀-2	홍은동 산7-84	128	128															폐지
		먀-3	홍은동 산7-84	32	32															폐지
		먀-5	홍은동 산11-313	35	35						먀-5	홍은동 산11-313	35	3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육시설	숲속 교실	바	홍은동 11-332	69	69						바	홍은동 11-332	69	69						
	유아 숲 체험원	하	홍은동 산19-19	1,079	1,079						하	홍은동 산19-19	1,079	1,079						
문화시설	마당	파	2개소	874	874						파	2개소	874	874						
		파-1	홍은동 산26-170	98	98						파-1	홍은동 산26-170	98	98						
		파-2	홍은동 산26-133	766	766						파-2	홍은동 산26-133	766	766						
	산림휴 치유센터	11	홍은동 산11-41임	317	317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동	317	317		11	홍은동 산11-41임	317	317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동	317	317		
	자연놀이 학습센터	12	홍은동 산11-313	247	247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동	247	247		12	홍은동 산11-313	247	247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동	247	247		
	소계			4,475	4,475		3동	278	402	1			3,926	3,926		2동	24	24	2	감) 549㎡
편의시설	주차장	카	5개소	3,806	3,806						카	5개소	3,806	3,806						
		카-1	홍은동 305-3	900	900						카-1	홍은동 305-3	900	900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카-2	홍은동 산11-275	1,875	1,875						카-2	홍은동 산11-275	1,875	1,875						
		카-3	응암동 산6-46	555	555						카-3	응암동 산6-46	555	555						
		카-4	홍은동 산11-313	33	33						카-4	홍은동 산11-313	33	33						
		카-4	홍은동 산11-313	443	443						카-5	홍은동 산26-170	443	443						
	전망대	8	응암동 산7-266	613	613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1동	254	378		8	광장 내 (가-13) 응암동 산7-266	64	64					1	감) 549㎡
	전망데크	샤	홍은동 산19-19	32	32						샤	홍은동 산19-19	32	3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의시설	간이화장실	10	2개소	24	24		2동	24	24		10	2개소	24	24		2동	24	24		
		10-1	응암동 산6-48	12	12	PE	지상1층 1동	12	12		10-1	응암동 산6-48	12	12	PE	지상1층 1동	12	12		
		10-2	홍은동 산11-313일대	12	12	PE	지상1층 1동	12	12		10-2	홍은동 산11-313일대	12	12	PE	지상1층 1동	12	12		
	음수대	⑩	홍은동 산11-325							1	⑩	홍은동 산11-325							1	
관리시설	소계			577	577		1동	108	108	2			577	577		1동	108	108	2	
	관리사무소	9	1개소	577	577		지상1층 1동	108	108		9	1개소	577	577		지상1층 1동	108	108		
	서설	④	홍은동							1	④	홍은동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안내판		산11-313일 대									산11-313일 대								
	종합안내판	⑤	흥은동 산11-313일 대							1	⑤	흥은동 산11-313일 대							1	
녹지 및 기타				439,041.10									429,520.70							감) 9,520.40㎡

3. 도로조서 (총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0,893	24,932				
변경					10,895	24,889				3,115㎡
당초	중로	소 계			306	2,420				
당초		3	1	8	306	2,420	진 입 로	산책로15 (종점)	서측구역계	
당초	소로	소 계			1,504	7,229				
당초		2	1	7.5	126	880	진 입 로	남측구역계	소로2-2 (종점)	
당초		2	2	8	421	3,370	진 입 로	남측구역계	소로2-1 (종점)	
당초		3	2	2	425	889	산 책 로	소로3-7 (기점)	홍은동 산11-151	
당초		3	3	6	39	236	진 입 로	동측구역계	주차장 (카-2)	
당초		3	4	3	118	353	진 입 로	소로3-3 (분기점)	홍은동산11-276	
당초		3	5	4.5	77	354	진 입 로	소로3-7 (기점)	산11-294 도	
당초		3	6	5	27	137	산 책 로	광장(가-5)	소로3-7 (분기점)	
당초		3	7	3.5	271	1,010	산 책 로	소로3-2 (기점)	산책로16 (기점)	
당초	산책로	소 계			9,083	15,283				
변경					9,085	15,240				3,115㎡
당초		3	1	2.5	29	67	산 책 로	산책로37 (종점)	산26-157수	
당초		3	2	1.5	129	190	산 책 로			
당초		3	3	1	125	139	등 산 로	산책로96 (기점)	산책로25 (분기점)	
당초		3	4	1.5	119	161	등 산 로	산책로96 (기점)	소로3-2 (분기점)	
변경		3	4	1.5	293	440	등 산 로	북측구역계	소로3-2 (분기점)	279㎡
당초		3	5	2	369	643	등 산 로	산책로96 (기점)	산책로98 (기점)	
변경		3	5	2	329	658	등 산 로	산책로4 (분기점)	산책로98 (기점)	15㎡
폐지		3	6	3	70	180	등 산 로	산책로96 (분기점)	산책로96 (기점)	180㎡
당초		3	7	2	171	353	등 산 로	산책로8 (종점)	산책로20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8	1.5	327	468	등 산 로	산책로96 (분기점)	산책로7 (기점)	
변경		3	8	1.5	360	540	등 산 로	산책로23 (분기점)	산책로7 (종점)	72㎡
당초		3	9	1	275	275	등 산 로	산책로29 (기점)	산책로42 (분기점)	
당초		3	11	2	60	105	등 산 로	홍은동 산11-18	산책로80 (분기점)	
당초		3	12	1	15	15	등 산 로	산책로11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5	6	42	202	등 산 로	홍은동 산19-2	중로3-1 (기점)	
당초		3	19	1.5	37	57	등 산 로	산책로20 (기점)	산책로33 (분기점)	
당초		3	20	1.5	157	271	등 산 로	산책로98 (기점)	배드민턴장 마-3	
당초		3	21	1.5	64	94	등 산 로	산책로98 (분기점)	산책로20 (분기점)	
폐지		3	22	1.5	390	585	등 산 로	산책로96 (분기점)	관찰데크 마-3	585㎡
폐지		3	23	1.5	50	74	등 산 로	북측구역계	산책로96 (분기점)	74㎡
당초		3	24	1.5	16	24	등 산 로	응암동 (산1-89)	응암동 (산1-27)	
당초		3	25	2.5	90	212	등 산 로	응암동 산1-4임	소로3-2	
당초		3	29	1.5	238	313	등 산 로	산책로9 (기점)	산책로106 (분기점)	
당초		3	31	4	27	106	산 책 로	동측구역계	청소년수련원 -4	
당초		3	32	1.5	56	84	산 책 로	산책로31 (분기점)	자연학습장 (하-5)	
당초		3	33	2	93	186	산 책 로	응암동 227-8	산책로35 (분기점)	
당초		3	34	2	10	21	산 책 로	산책로33 (분기점)	배드민턴장 (마-3)	
당초		3	35	2	116	232	산 책 로	휴게소 (다-6)	산책로9 (기점)	
당초		3	36	2.5	26	65	산 책 로	산책로35	휴게소(다-1) (분기점)	
당초		3	37	2	101	202	산 책 로	중로3-1 (분기점)	산책로1 (기점)	
당초		3	38	1	54	54	산 책 로	산책로39 (분기점)	전망데크 (사)	
당초		3	39	2	331	367	산 책 로	홍은동 산11-96임	테마휴게소 라-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40	1	6	6	산 책 로	산책로106 (분기점)	홍은동 산11-54임	
당초		3	41	0.5	280	140	산 책 로	산책로42 (분기점)	산책로106 (분기점)	
당초		3	42	1.5	158	281	등 산 로	홍은동 산19-19	산책로106 (분기점)	
당초		3	54	1	127	130	산 책 로	홍은동 산11-17	산책로112 (분기점)	
당초		3	58	0.5	20	10	산 책 로	홍은동 산11-17	산책로106 (분기점)	
당초		3	62	2	12	25	산 책 로	산책로63 (분기점)	홍은동 산11-1	
당초		3	63	2	39	87	산 책 로	광장 (가-9)	소로3-7 (분기점)	
당초		3	64	1.2	15	22	산 책 로	소로3-7 (종점)	홍은동 산11-1	
당초		3	67	1.5	33	46	산 책 로	산책로68 (분기점)	체력단련장 (타-7)	
당초		3	68	3.5	140	403	산 책 로	소로3-7		
당초		3	71	1.5	45	82	산 책 로	산책로68 (분기점)	소로3-7 (분기점)	
당초		3	72	2	36	60	산 책 로	산책로68 (분기점)	파크닉장 (쟈)	
당초		3	73	1.5	20	31	산 책 로	산책로77 (분기점)	산책로68 (분기점)	
당초		3	74	1.5	5	8	산 책 로	광장(가-10)	산책로68 (분기점)	
당초		3	75	1.5	66	120	산 책 로	광장(가-10)	산책로77 (분기점)	
당초		3	76	1.5	33	49	산 책 로	홍은동 산11-41	광장(가-10)	
당초		3	77	1.5	115	170	산 책 로	홍은동 산11-41	광장(가-10)	
당초		3	78	1	27	27	산 책 로	산책로77 (분기점)	산책로72 (분기점)	
당초		3	80	1.2	53	88	산 책 로	산책로84 (종점)	산책로88 (분기점)	
당초		3	81	1	18	18	산 책 로	산책로88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라-6	
당초		3	83	3	24	71	산 책 로	산책로88 (분기점)	광장 가-8	
당초		3	84	1.5	140	222	산 책 로	산책로54 (분기점)	산책로80 (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85	1	13	15	산 책 로	광장 가-8	산책로111 (분기점)	
당초		3	88	5~10	215	670	산 책 로	산책로83 (기점)	산책로80 (기점)	
당초		3	89	2	55	97	산 책 로	산책로91 (분기점)	응암동 산1-120	
당초		3	90	1.2	98	120	산 책 로	음암동 산1-194	홍은동 산11-1	
당초		3	91	2	45	101	산 책 로	홍은동 산11-1	생태육교 (차)	
당초		3	92							도자구역
당초		3	93	2	69	141	산 책 로	128 (기점)	종로3-1 (분기점)	
당초		3	94	1.2	54	66	산 책 로	홍은동 산11-214	산책로2	
당초		3	95	1.2	91	110	등 산 로	산책로96 (기점)	소로3-2 (분기점)	
당초		3	96	2	523	1,074	등 산 로	북측구역계	산책로4 (기점)	
변경		3	96	1.8	313	564	등 산 로	휴게소 (다-16)	휴게소 (다-21)	510㎡
당초		3	98	1	210	219	등 산 로	산책로5 (종점)	산책로9 (기점)	
당초		3	99	2	62	124	산 책 로	응암동 산6-46	청소년수련원(4)	
당초		3	101	1.2	69	95	산 책 로	산책로102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2	1.5	48	94	산 책 로	남측구역계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3	1.2	28	34	산 책 로	산책로102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4	1.2	30	47	산 책 로	산책로101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5	1.5	61	52	산 책 로	남측구역계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6	3	1,173	2,504	산 책 로	응암동 산7-251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7	1	46	46	산 책 로	산책로106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8	1.5	43	64	산 책 로	광장 (가-12)	홍은동 산26-17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109							도자구역
당초		3	110							도자구역
당초		3	111	21	69	69	산 책 로	산책로88 (분기점)	산책로 112 (종점)	
당초		3	112	2	100	209	산 책 로	산책로117 (분기점)	산책로88 (분기점)	
당초		3	113	1.5	71	105	산 책 로	산책로88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라-6	
당초		3	117	2	90	160	산 책 로	동측구역계	주차장 (카-4)	
당초		3	120	1	135	135	산 책 로	북측구역계	산책로25 (분기점)	
폐지		3	121	2	83	166	산 책 로	산책로118 (분기점)	교양시설 마-2	166㎡
폐지		3	122	2	63	126	산 책 로	교양시설 마-3	산책로96 (분기점)	126㎡
당초		3	123	2	17	34	산 책 로	산책로35 (분기점)	응암동 산6-53임	
당초		3	124	1	150	155	산 책 로	남측구역계	홍은동 산11-18임	
당초		3	125	1.8	73	125	산 책 로	테마휴게소 (라-4)	전망데트 (샤)	
당초		3	126	1.5	31	47	산 책 로	산책로125 (분기점)	테마휴게소 (라-3)	
당초		3	127	2	150	307	산 책 로	산책로37 (종점)	산책로37 (분기점)	
당초		3	128	1	107	107	산 책 로	산책로93 (기점)	산책로127 (분기점)	
당초		3	129	2	74	148	산 책 로	산책로37 (종점)	산책로37 (분기점)	
신규		3	130	1.8	231	415	산 책 로	북측구역계	휴게소 (다-15)	415㎡
신규		3	131	1.8	22	40	산 책 로	휴게소 (다-15)	산책로8 (분기점)	40㎡
신규		3	132	1.8	104	188	산 책 로	산책로140 (분기점)	산책로8 (분기점)	188㎡
신규		3	133	1.8	43	78	산 책 로	산책로8 (분기점)	휴게소 (다-16)	78㎡
신규		3	134	1.5	7	10	산 책 로	산책로96 (분기점)	산책로136 (분기점)	1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규	산책로	3	135	1.5	11	16	산 책 로	휴게소 (다-18)	산책로96 (분기점)	16㎡
신규		3	136	1.5	3	5	산 책 로	휴게소 (다-17)	휴게소 (다-18)	5㎡
신규		3	137	1.5	7	11	산 책 로	휴게소 (다-19)	산책로96 (분기점)	11㎡
신규		3	138	1.5	4	6	산 책 로	산책로4 (분기점)	휴게소 (다-19)	6㎡
신규		3	139	1.5	9	13	산 책 로	휴게소 (다-20)	산책로96 (분기점)	13㎡
신규		3	140	1.5	73	110	산 책 로	산7-84임	산책로8 (분기점)	110㎡
신규		3	141	2.0	3	6	산 책 로	생태학습원 (거-1)	산책로140 (분기점)	6㎡
신규		3	142	2.3	10	24	산 책 로	생태학습원 (거-2)	산책로132 (분기점)	24㎡
신규		3	143	1.5	21	34	산 책 로	산책로106 (분기점)	광장 (가-13)	34㎡
신규		3	144	1.5	19	33	산 책 로	산책로106 (분기점)	광장 (가-13)	33㎡
신규		3	145	1.8	66	119	산 책 로	산책로143 (분기점)	산책로144 (분기점)	119㎡

조성계획도[기정]

백련근린공원

SCALE=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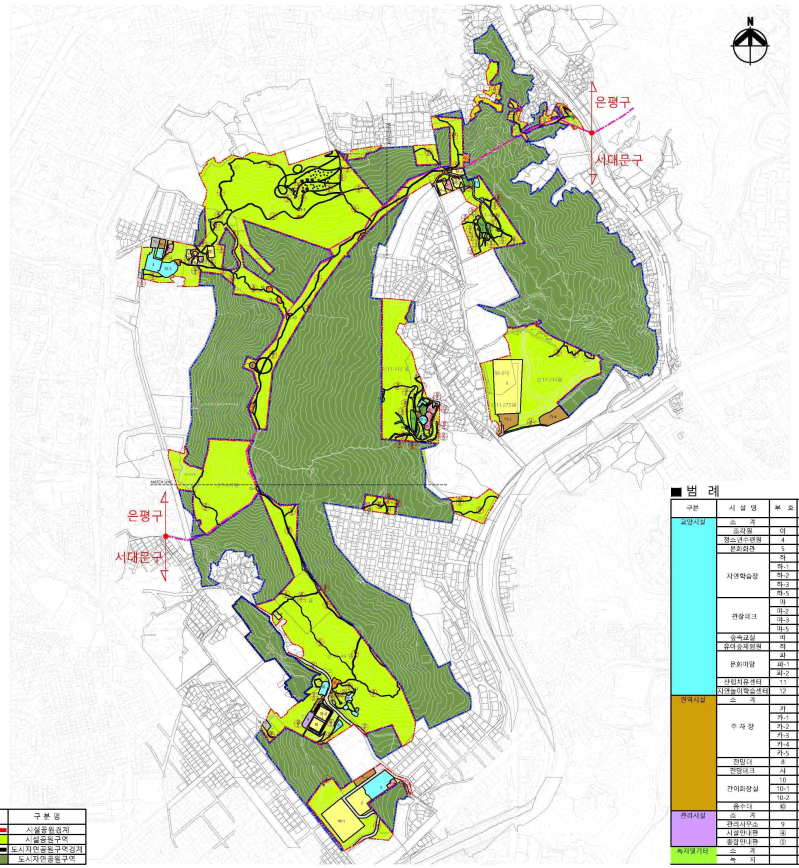

■ KEYMAP

■ 범 례

구 분	구 분 동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개)	비고
교양시설	소 계		18,492	18,492		
	조각물	아	123	123		
	청소년수련원	4	2,574	2,574		
	문화원관	5	4,712	4,712		
	사연학습장	하	7,902	7,902		
		하-1	447	447		
		하-2	433	433		
		하-3	4,758	4,758		
		하-5	2,264	2,264		
	관람대크	마	195	195		
		마-2	128	128		
		마-3	32	32		
		마-5	35	35		
	유속교실	바	69	69		
	숲이숲체험원	차	1,079	1,079		
	문화마당	파	874	874		
		파-1	98	98		
		파-2	776	776		
	산림치유센터	11	317	317		
	디엔씨학습센터	12	247	247		
편의시설	소 계		4,475	4,475	1	
	주 차 장	카	3,806	3,806		
		카-1	900	900		
		카-2	1,875	1,875		
		카-3	555	555		
		카-4	33	33		
		카-5	443	433		
	전망대	8	613	613		
	전망데크	사	32	32		
	간이화장실	10	24	24		
		10-1	12	12		
		10-2	12	12		
	음수대	왕			1	
관리시설	소 계		577	577	2	
	관리사무소	9	577	577		
	시설안내판	파			1	
	종합안내판	①			1	
녹지및기타	소 계		449,041.1			
	녹 지		449,041.1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개)	비고
계			527,838.1	88,797	267	
기반시설	소 계		27,111	27,111		
	도 로		24,932	24,932		
	광 장	가	2,179	2,179		
		가-3	312	312		
		가-4	806	806		
		가-5	220	220		
		가-6	46	46		
		가-7	56	56		
		가-8	134	134		
		가-9	99	99		
		가-10	98	98		
		가-12	408	408		
공간시설	소 계		4,701	4,701	172	
	잔디밭	가	533	533		
	생태연못	나	1,568	1,568		
		나-2	1,119	1,119		
		나-3	173	173		
		나-4	276	276		
	암석원	다	293	293		
		다-2	293	293		
	조화원	마	709	709		
	폐크닉장	사	113	113		
	생태폭교	자			1	
	잔디마당	카	1,485	1,485		
		카-1	752	752		
		카-2	225	225		
		카-3	508	508		
	장대지				146	
	이정안내				25	
휴양시설	소 계		3,184	3,184	50	
	임간휴게소	나	269	269		
		나-9	146	146		
		나-10	49	49		
		나-11	35	35		
		나-12	35	35		
	등기사	①			2	
	등각대체	②			1	
	야외학습장이지	③			9	
	경상	⑥			3	
	철봉설치	⑦			1	
	세고대	⑧			2	
	휴게소	다	2,082	2,082		
		다-1	400	400		
		다-3	298	298		
		다-5	78	78		
		다-6	226	226		
		다-9	86	86		
		다-10	148	148		
		다-11	216	216		
		다-12	204	204		
		다-13	320	320		
		다-14	106	106		
	테마휴게소	라	837	837		
		라-1	57	57		
		라-2	68	68		
		라-3	29	29		
		라-4	80	80		
		라-5	491	491		
		라-6	112	112		
유희시설	소 계		2,999	2,999	6	
	어린이놀이터	파	2,947	2,947	5	
		파-1	594	594	1	
		파-2	192	192	4	
		파-3	424	424		
		파-4	370	370		
		파-5	171	171		
		파-6	690	690		
		파-7	506	506		
	모래놀이장	하	52	52		
운동시설	소 계		27,258	27,258	30	
	체 육 관	2	4,125	4,125		
	골프연습장	3	9,930	9930		
	테 니 스 장	파	2,914	2,914		
		파-2	652	652		
		파-3	589	589		
		파-4	300	300		
		파-5	327	327		
		파-6	1,046	1,046		
	테니스장	파	1,046	1,046		
	다목적운동장	마	8,457	8,457		
		마-1	7,772	7,772		
		마-2	685	685		
		마	780	780		
	체력단련장	마-1	234	234		
		마-2	552	552		
	체력단련시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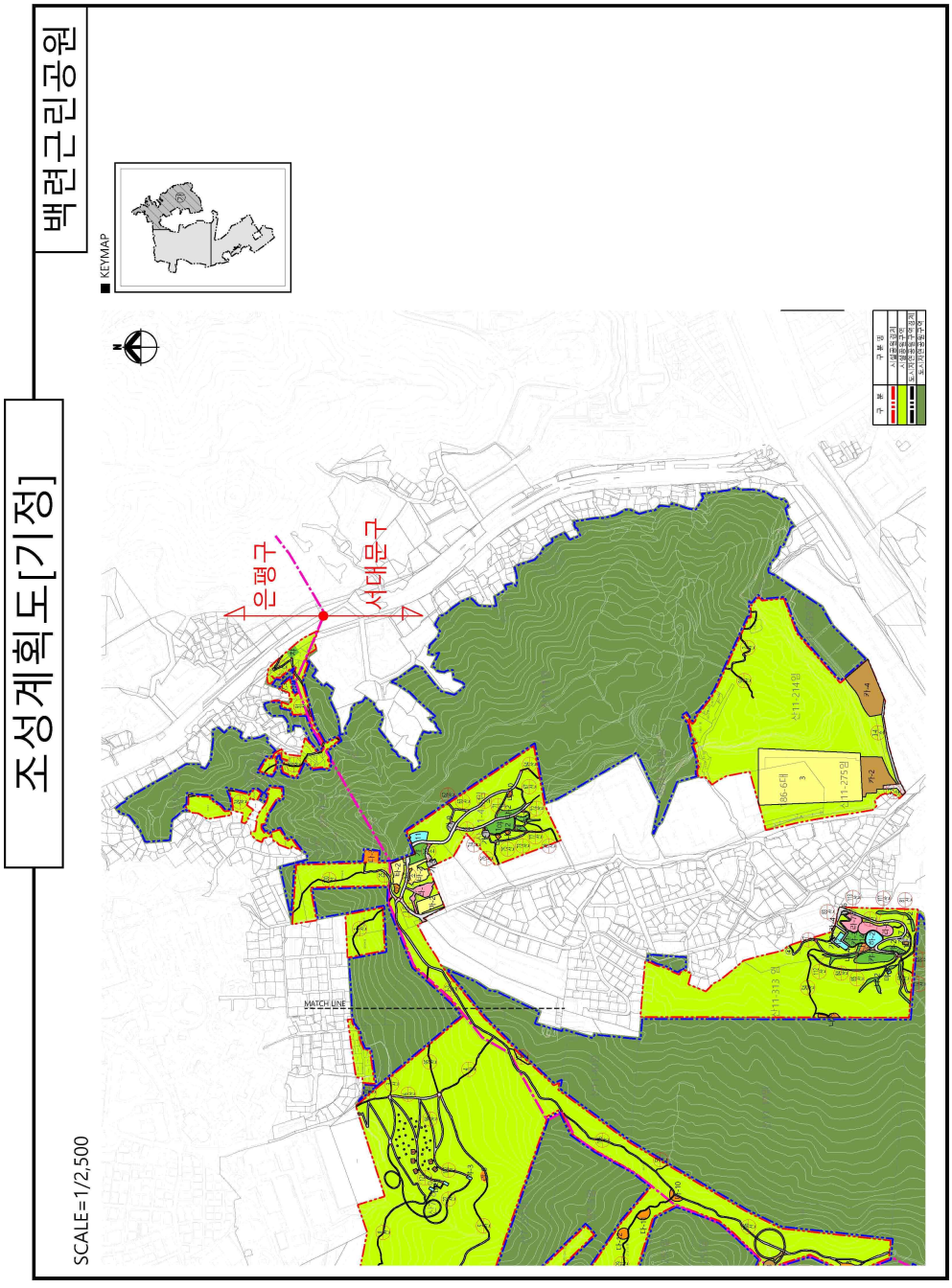
조성계획도[기정]
백련근린공원
KEYMAP
은평구
서대문구
MATCH LINE
SCALE=1/2,500

조성계획도[기정]

백련근린공원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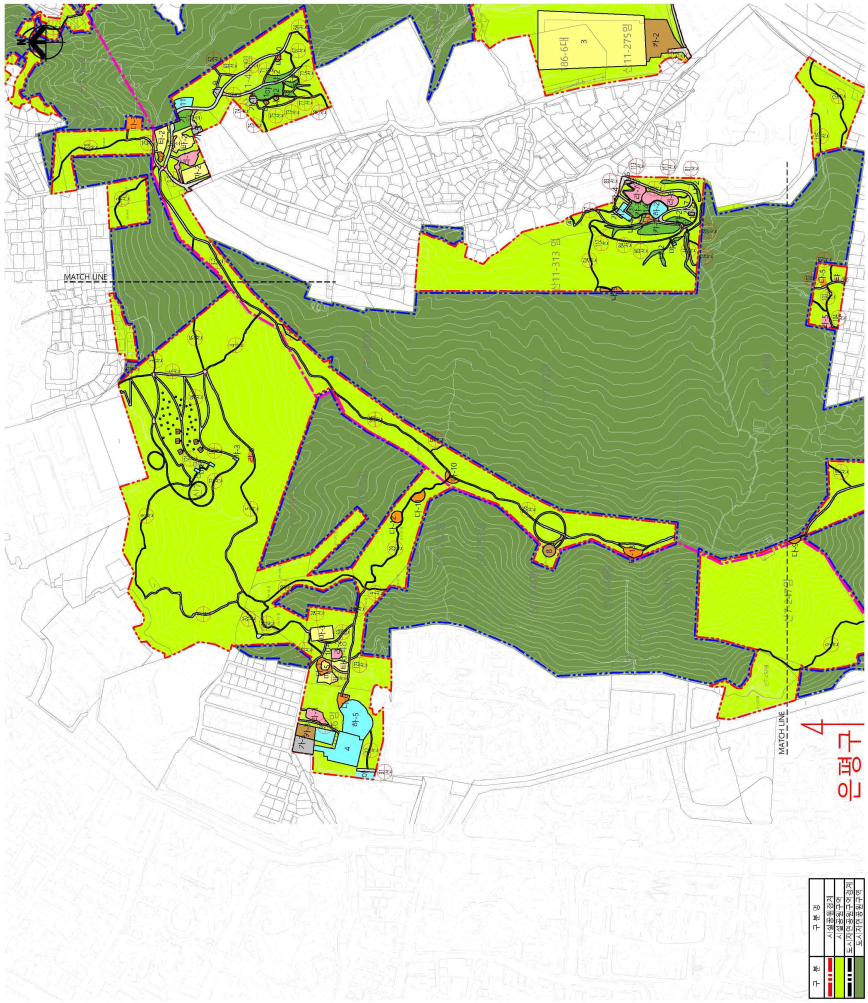

SCALE=1/2,500

조성계획도[기정]

백련근린공원

KEYMAP

SCALE=1/2,500

조성계획도[변경후]

백련근린공원

SCALE=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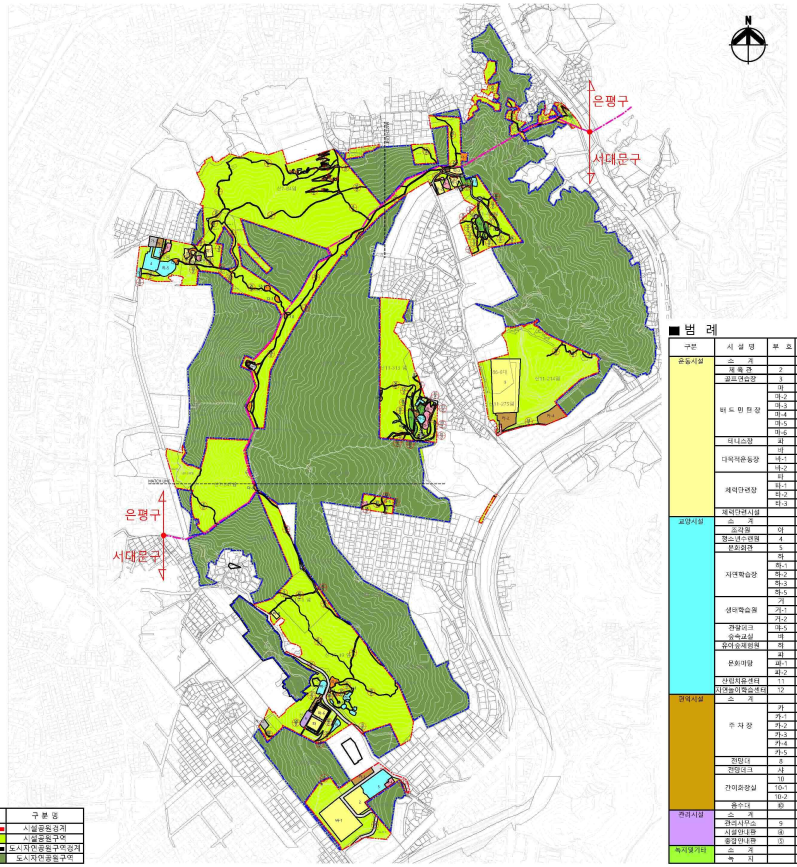

■ KEYMAP

■ 범 례

구 분	구 분 명
	시설용도경계
	시설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개)	비고
운동시설	소 계		27,291	27,291	35	
	체 육 관	2	4,125	4,125		
	골프연습장	3	5,930	5,930		
	테 니 스 장	가	2,914	2,914		
		마-2	652	652		
		마-3	589	589		
		마-4	300	300		
		마-5	327	327		
		마-6	1,046	1,046		
	택시소장	사	1,046	1,046		
	다목적운동장	아	8,457	8,457		
		바-1	7,772	7,772		
		바-2	685	685		
	체력단련장	타	819	819		
		타-1	234	234		
		타-2	552	552		
		타-3	33	33		
	체력다목시설				35	
교양시설	소 계		18,412	18,412		
	종합원	아	123	123		
	청소년수련원	4	2,574	2,574		
	문화회관	5	4,712	4,712		
	지역학습장	하	7,902	7,902		
		하-1	447	447		
		하-2	433	433		
		하-3	4,758	4,758		
		하-5	2,264	2,264		
	생애학습원	거	80	80		
		거-1	22	22		
		거-2	58	58		
	관찰로크	마-5	35	35		
	유아교실	자	69	69		
	공선공제원원	차	1,079	1,079		
	문화마당	파	874	874		
		파-1	98	98		
		파-2	776	776		
	전통차문구터	너	317	317		
	디엔엘미학습센터	갸	247	247		
관리시설	소 계		3,926	3,926	2	
	주 차 장	카	3,806	3,806		
		카-1	900	900		
		카-2	1,875	1,875		
		카-3	555	555		
		카-4	33	33		
		카-5	443	433		
	전망대	5	64	64	1	
	전망데크	사	32	32		
		10	24	24		
	간이화장실	10-1	12	12		
		10-2	12	12		
	음수대	80			1	
관리시설	소 계		577	577	2	
	관리사무소	5	577	577		
	시설안내판	90			1	
	종합안내판	⑬			1	
녹지및기타	소 계		429,515.7			
	녹 지		429,515.7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개)	비고
합 계			518,140.7	88,620	231	
기반시설	소 계		27,354	27,354		
	도 로		24,889	24,889		
	광 장	가	2,465	2,465		
		가-3	312	312		
		가-4	806	806		
		가-5	220	220		
		가-6	46	46		
		가-7	56	56		
		가-8	134	134		
		가-9	99	99		
		가-10	98	98		
		가-12	408	408		
		가-13	286	286		
조경시설	소 계		4,701	4,701	172	
	잔디밭	가	533	533		
	샘터연못	나	1,568	1,568		
		나-2	1,119	1,119		
		나-3	173	173		
		나-4	276	276		
	영석원	다	293	293		
		다-2	293	293		
	조화원	아	709	709		
	폭크내장	자	113	113		
	생태폭교	차				
	잔디마당	카	1,485	1,485		
		카-1	752	752		
		카-2	225	225		
		카-3	508	508		
	장미지				140	
	야외학지				25	
휴양시설	소 계		3,360	3,360	14	
	임간휴지소	나	265	265		
		나-9	146	146		
		나-10	49	49		
		나-11	35	35		
		나-12	35	35		
	동의자	⑪			3	
	부대장비	⑫			3	
	마련지식열의지	⑭			5	
	세고라	⑯			3	
	휴지소	다	2,370	2,370		
		다-1	400	400		
		다-3	298	298		
		다-5	78	78		
		다-6	226	226		
		다-9	86	86		
		다-10	148	148		
		다-11	216	216		
		다-12	204	204		
		다-13	326	326		
		다-14	106	106		
		다-15	38	38		
		다-16	62	62		
		다-17	14	14		
		다-18	58	58		
		다-19	49	49		
		다-20	27	27		
		다-21	40	40		
	띄미휴지소	라	725	725		
		라-1	57	57		
		라-2	68	68		
		라-3	29	29		
		라-4	80	80		
		라-5	491	491		
유희시설	소 계		2,999	2,999	6	
	어린이놀이터	라	2,947	2,947	5	
		라-1	594	594	1	
		라-2	192	192	4	
		라-3	424	424		
		라-4	370	370		
		라-5	171	171		
		라-6	690	690		
		라-7	506	506		
	보리놀이장	타	52	5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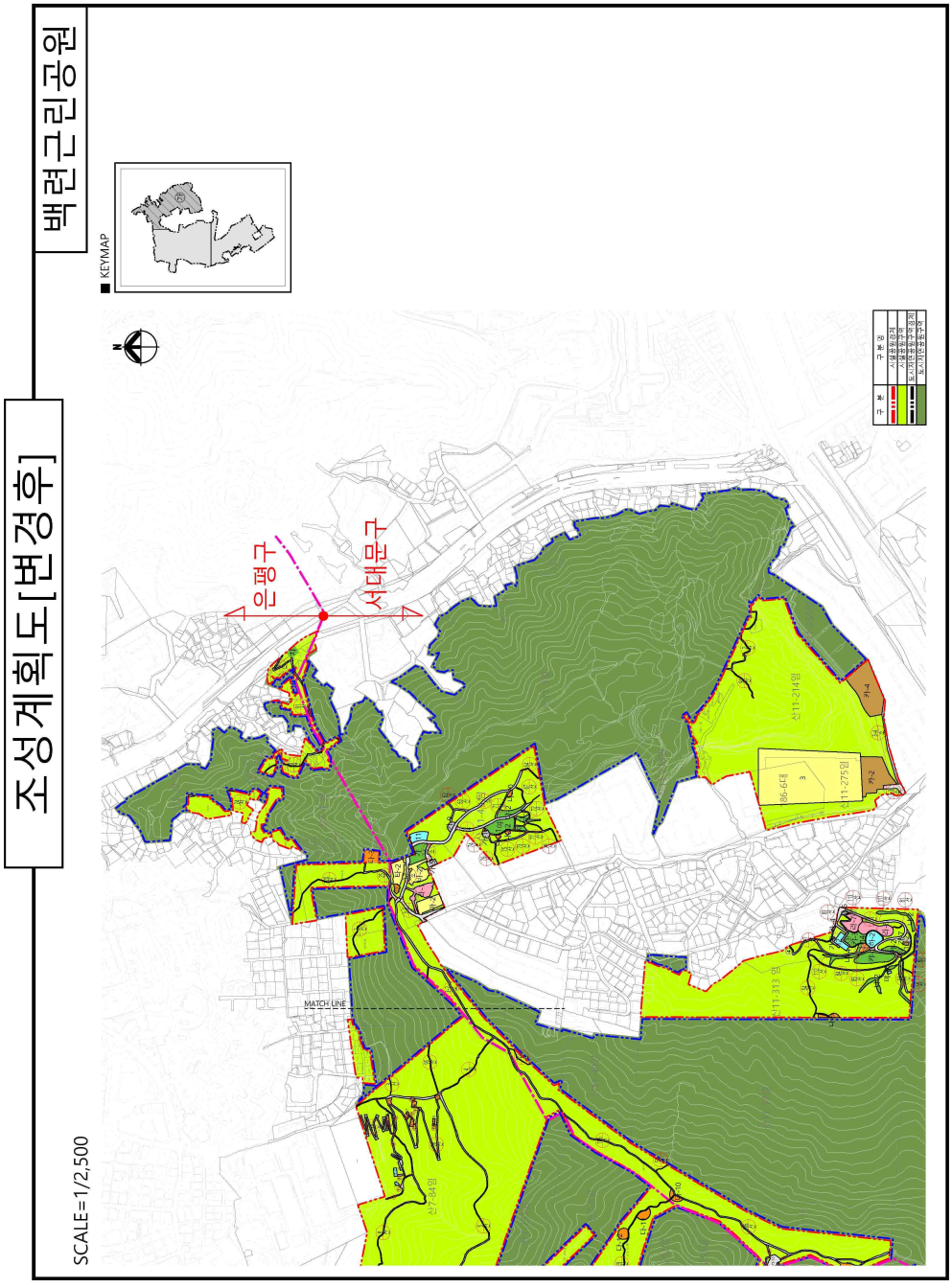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백련근린공원
KEYMAP
은평구
서대문구
MATCH LINE
SCALE=1/2,500

조성계획도[변경후]

백련근린공원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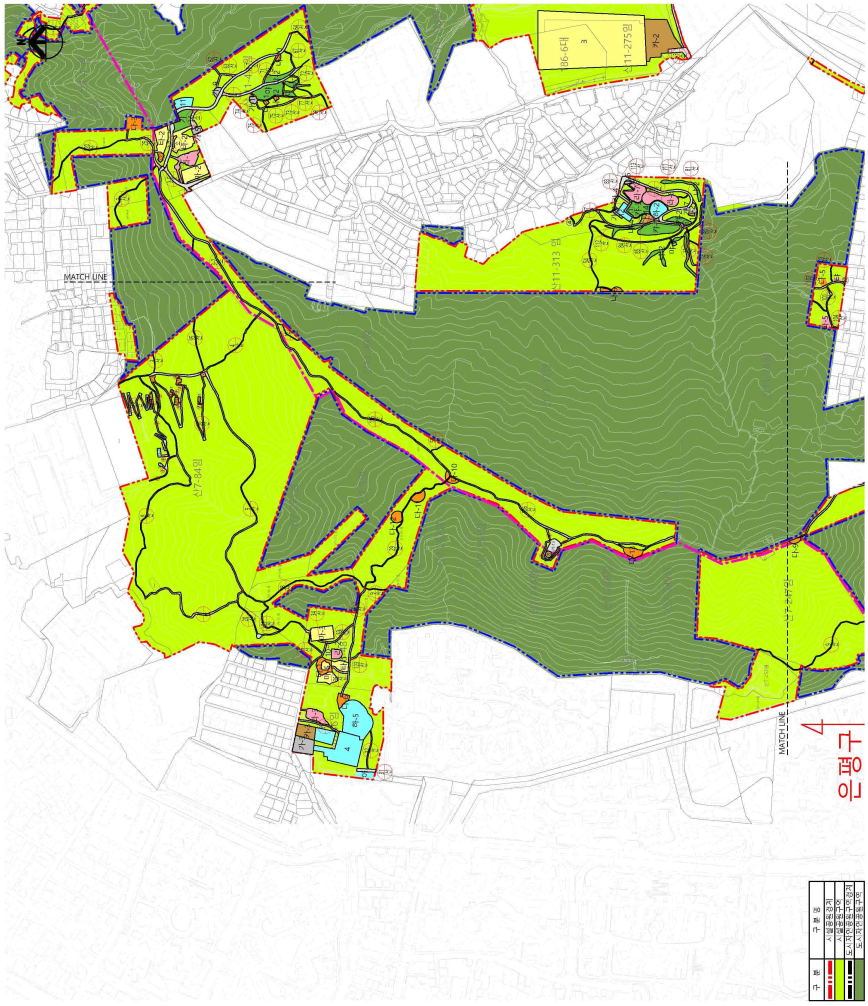

SCALE=1/2,500

조성계획도[변경후]

백련근린공원

SCALE=1/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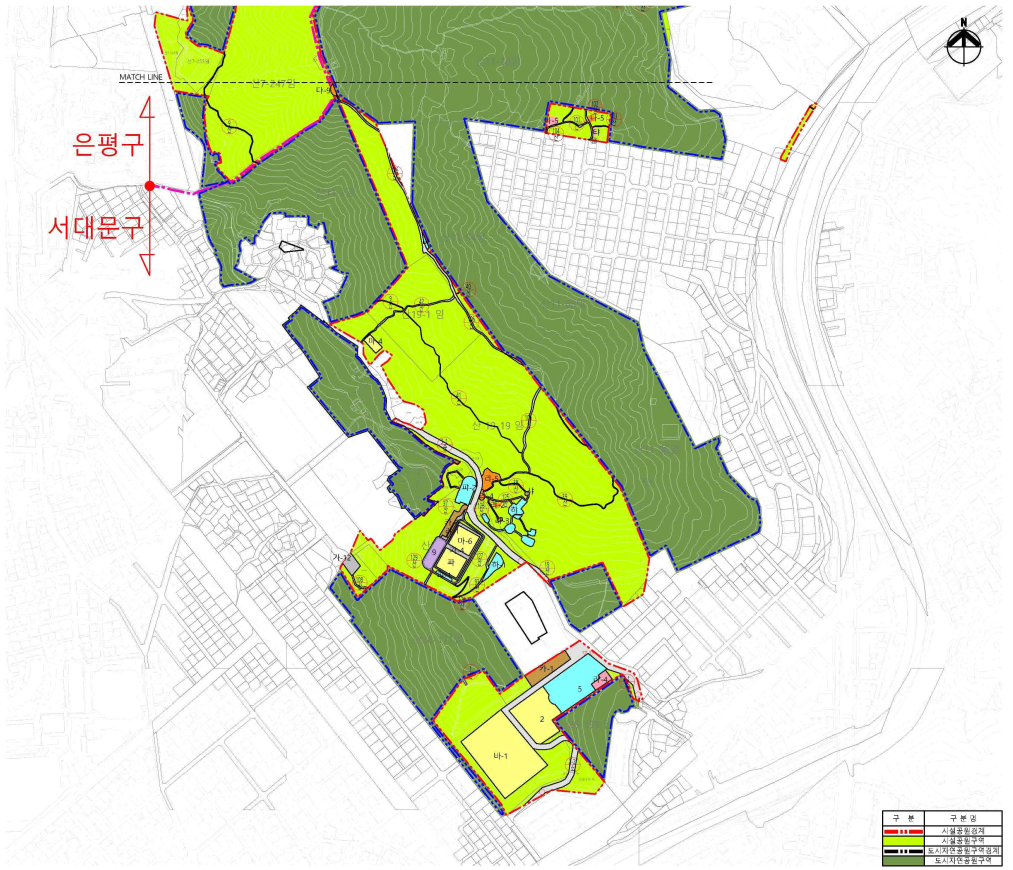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2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 해제 고시 내용

무형유산명	기 · 예능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연월일
칠장	남태칠	정병호	남	1939. 5.26.	2026. 5.30.

2. 해 제 일 : 2026. 5.30.
3. 해제사유 : 명예보유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3호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5호(2023.12.28.)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같은 법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된 근린공원을 재정비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89번지 일대
3. 면 적: 368,959㎡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5). 동작구 공원녹지과(☎02-820-138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대방동 375-78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68,959.00	88,043.96 (15,125.00)	10	2,684.45	8,643.64	642	368,959.00	87,860.60 (15,125.00)	11	2,711.65	8,670.84	679	공원면적 변경없음, 시설면적 감)183.36㎡
기반시설	소 계	42,578.52	42,578.52 (15,125.00)				11	44,090.57	44,090.57 (15,125.00)				11	증)1,512.05㎡
	도 로	34,651.60	34,651.60 (15,125.00)					35,287.10	35,287.10 (15,125.00)					공원내도로 증)635.50㎡
	광 장	7,926.92	7,926.92					8,803.47	8,803.47					증)876.55㎡
조경시설		496.50	496.50				70	496.50	496.50				92	
휴양시설		9,861.85	9,770.85	1	54.00	107.00	185	8,953.95	8,862.95	1	54.00	107.00	213	감)907.9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희시설	1,830.10	1,450.10				3	1,607.39	1,407.39				4	감)222.71㎡
운동시설	27,168.97	27,168.97	(1)			23	26,381.97	26,381.97	(1)			30	감)787.00㎡
교양시설	3,897.00	3,127.64	3	2,243.98	8,150.17	1	3,897.00	3,127.64	3	2,243.98	8,150.17	1	
편익시설	3,209.80	3,181.21	4	126.40	126.40		3,237.00	3,208.41	5	153.60	153.60	0	증)27.20㎡
관리시설	270.17	270.17	2	260.07	260.07	327	285.17	285.17	2	260.07	260.07	328	증)15.00㎡
녹지 및 기타	279,646.09						280,009.45						증)363.36㎡
시설률 (법정 40%)	(88,043.96/ 368,959.00) × 100 = 23.86%						(87,860.60/ 368,959.00) × 100 = 23.81%						감)0.05%
건폐율 (법정 10%)	(2,684.45 / 368,959.00) × 100 = 0.73%						(2,711.65 / 368,959.00) × 100 = 0.73%						변경없음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합계				368,959.00	88,043.96 (15,125.00)			2,684.45	8,643.64	642			368,959.00	87,860.60 (15,125.00)			2,711.65	8,670.84	679	시설면적 감)183.36㎡
기반시설	소계			42,578.52	42,578.52 (15,125.00)					11			44,090.57	44,090.57 (15,125.00)					11	증)1,512.05㎡
	도로		전지역	34,651.60	34,651.60 (15,125.00)							전지역	35,287.10	35,287.10 (15,125.00)						공원내도로 증)635.50㎡
	광장	가	소계	7,926.92	7,926.92						가	소계	8,803.47	8,803.47						증)876.55㎡
		가-1	대방동 350-2	(1,350.00)	(1,350.00)						가-1	대방동 350-2	(1,350.00)	(1,350.00)						
		가-2	대방동 23-176	(853.00)	(853.00)						가-2	대방동 23-176	(853.00)	(853.00)						
		가-3	대방동 23-176	(250.00)	(250.00)						가-3	대방동 23-176	(250.00)	(250.00)						
		가-4	대방동 23-176	(680.00)	(680.00)						가-4	대방동 23-176	(680.00)	(680.00)						
		가-5	대방동 350-2	(1,400.00)	(1,400.00)						가-5	대방동 350-2	(1,400.00)	(1,400.00)						
		가-6	대방동 335-218	(27.00)	(27.00)						가-6	대방동 335-218	(27.00)	(27.00)						
		가-7	상도동 산4-4	(360.00)	(360.00)						가-7	상도동 산4-4	(360.00)	(360.00)						
		가-8	노량진동 공325-2	(294.00)	(294.00)						가-8	노량진동 공325-2	(294.00)	(294.00)						
		가-9	노량진동 공325-2	(50.00)	(50.00)						가-9	노량진동 공325-2	(50.00)	(50.00)						
		가-10	노량진동 대221-31	(276.00)	(276.00)						가-10	노량진동 대221-31	(276.00)	(276.00)						
		가-11	상도동 363	(111.41)	(111.41)						가-11	상도동 363	(111.41)	(111.4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가-12	상도동 363	(339.76)	(339.76)						가-12	상도동 363	(339.76)	(339.76)						
		가-13	상도동 363	(52.79)	(52.79)						가-13	상도동 363	(52.79)	(52.79)						
		가-14	상도동 363	(54.94)	(54.94)						가-14	상도동 363	(54.94)	(54.94)						
		가-15	상도동 363	(183.05)	(183.05)						가-15	상도동 363	(183.05)	(183.05)						
		가-16	상도동 363	(730.84)	(730.84)						가-16	상도동 363	(730.84)	(730.84)						
		가-17	상도동 363	(121.00)	(121.00)						가-17	상도동 363	(121.00)	(121.00)						
		가-18	상도동 363	(20.69)	(20.69)						가-18	상도동 363	(20.69)	(20.69)						
		가-19	상도동 363	(15.14)	(15.14)						가-19	상도동 363	(15.14)	(15.14)						
		가-22	대방동 3-15잡	(112.50)	(112.50)						가-22	대방동 3-15잡	(112.50)	(112.50)						
		가-23	대방동 13-23대	(101.50)	(101.50)						가-23	대방동 13-23대	(101.50)	(101.50)						
		가-24	대방동 350-2	(443.30)	(443.30)						가-24	대방동 350-2	(443.30)	(443.30)						
		가-26	상도동 453	(86.00)	(86.00)						가-26	상도동 453	(86.00)	(86.00)						
		가-27	노량진동 294-32	(14.00)	(14.00)						가-27	노량진동 294-32	(14.00)	(14.00)						
											가-28	본동 489	(123.11)	(123.11)						신설 증)123.11㎡
											가-29	본동 489	(374.39)	(374.39)						신설 증)374.39㎡
											가-30	본동 489	(258.73)	(258.73)						신설 증)258.73㎡
											가-31	본동 489	(120.32)	(120.32)						신설 증)120.3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계단	①	상도동 453							3	①	상도동 453							3	
		㉔								8	㉔								8	
조경시설	소계			496.50	496.50					92			496.50	496.50					92	
	그늘시렁	②								28	②								28	
	쉘터	③								36	③								36	
	벽천	④	대방동 23-176	330.00	330.00						④	대방동 23-176	330.00	330.00						
		⑤	노량진동 공325-2	18.00	18.00						⑤	노량진동 공325-2	18.00	18.00						
		⑥	노량진동 대221-31	45.00	45.00						⑥	노량진동 대221-31	45.00	45.00						
	음악분수	⑦	노량진동 공325-2	56.00	56.00						⑦	노량진동 공325-2	56.00	56.00						
	플랜터	⑳								1	⑳								1	
	앉음벽	㉑	상도동 453	11.50	11.50					1	㉑	상도동 453	11.50	11.50					1	
	디딤석 놓기	㉒	상도동 453							22	㉒	상도동 453							22	
	조형 플랜트	㉓	상도동 453	24.00	24.00					1	㉓	상도동 453	24.00	24.00					1	
	조형 앉음벽	㉕		12.00	12.00					3	㉕		12.00	12.00					3	
휴양시설	소계			9,861.85	9,770.85		1동	54.00	107.00	185			8,953.95	8,862.95		1동	54.00	107.00	213	감)907.9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경로당	1	본동 산 11-1	145.00	54.00		2층	54.00	107.00		1	본동 산 11-1	145.00	54.00		2층	54.00	107.00		
	휴게소	나		9,697.85	9,697.85						나		8,789.95	8,789.95						감)907.90㎡
		나-1	대방동 350-1	(790.00)	(790.00)						나-1	대방동 350-1	(790.00)	(790.00)						
		나-2	대방동 23-213	(91.00)	(91.00)						나-2	대방동 23-213	(91.00)	(91.00)						
		나-3	상도동 335-207	(73.00)	(73.00)						나-3	상도동 335-207	(73.00)	(73.00)						
		나-4	상도동 4-4	(60.00)	(60.00)						나-4	상도동 4-4	(60.00)	(60.00)						
		나-5	대방동 23-176	(1,350.00)	(1,350.00)						나-5	대방동 23-176	(1,350.00)	(1,350.00)						
		나-6	노량진동 225-161	(113.00)	(113.00)						나-6	노량진동 225-161	(113.00)	(113.00)						
		나-7	노량진동 공325-2	(314.00)	(314.00)						나-7	노량진동 공325-2	(314.00)	(314.00)						
		나-8	노량진동 공325-2	(437.00)	(437.00)						나-8	노량진동 공325-2	(437.00)	(437.00)						
		나-9	본동 11-1	(980.00)	(980.00)						나-9	본동 489	(72.10)	(72.10)						감)907.90㎡
		나-10	본동 126-249	(4,050.00)	(4,050.00)						나-10	본동 126-249	(4,050.00)	(4,050.00)						
		나-11	본동 126-249	(600.00)	(600.00)						나-11	본동 126-249	(600.00)	(600.00)						
		나-12	상도동 363	(153.80)	(153.80)						나-12	상도동 363	(153.80)	(153.80)						
		나-13	상도동 363	(131.99)	(131.99)						나-13	상도동 363	(131.99)	(131.99)						
		나-14	상도동 363	(110.56)	(110.56)						나-14	상도동 363	(110.56)	(110.56)						
		나-18	대방동 13-65대	(37.10)	(37.10)						나-18	대방동 13-65대	(37.10)	(37.10)						
		나-19	대방동 13-58대	(148.40)	(148.40)						나-19	대방동 13-58대	(148.40)	(148.4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나-20	상도동 453	(76.00)	(76.00)						나-20	상도동 453	(76.00)	(76.00)						
		나-21	노량진동 294-32	(48.00)	(48.00)						나-21	노량진동 294-32	(48.00)	(48.00)						
		나-22	노량진동 294-185	(22.00)	(22.00)						나-22	노량진동 294-185	(22.00)	(22.00)						
		나-23	노량진동 294-517	(31.00)	(31.00)						나-23	노량진동 294-517	(31.00)	(31.00)						
		나-24	노량진동 294-329	(81.00)	(81.00)						나-24	노량진동 294-329	(81.00)	(81.00)						
휴양시설	벤치									169									169	
	피크닉 테이블	⑯								3	⑯								6	
	평상	⑱	상도동 453	19	19					3	⑱	상도동 453	19	19					6	
	등의자	⑲								10	⑲								22	
	수목보호벤치										㉝	본동 489							6	신설
	파고라 벤치										㉞	본동 489							4	신설
유희시설	소계			1,830.10	1,450.10					3			1,607.39	1,407.39					4	감)222.71㎡
	어린이 놀이터	⑧	소계	1,830.10	1,450.10						⑧	소계	1,607.39	1,407.39						감)222.71㎡
		⑧-1	노량진동 225-269	(362.00)	(362.00)						⑧-1	노량진동 225-269	(362.00)	(362.0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⑧-2	본동 산 11-1	(480.00)	(300.00)						⑧-2	본동 489	(257.29)	(257.29)						감)222.71㎡
		⑧-3	상도동 356-220대	(600.00)	(400.00)						⑧-3	상도동 356-220대	(600.00)	(400.00)						
		⑧-4	대방동 13-65대	(266.10)	(266.10)						⑧-4	대방동 13-65대	(266.10)	(266.10)						
		⑧-5	노량진동 294-192	(122.00)	(122.00)						⑧-5	노량진동 294-192	(122.00)	(122.00)						
	조합놀이대	㉖								1	㉖								1	
	흔들놀이대	㉗								2	㉗								2	
	모노레일										㉟								1	신설
운동시설	소계			27,168.97	27,168.97					23			26,381.97	26,381.97					30	감)787.00㎡
	배드민턴장	다	소계	6,012.00	6,012.00						다	소계	6,012.00	6,012.00						
		다-1	대방동 23-176	(1,904.00)	(1,904.00)		(8면)				다-1	대방동 23-176	(1,904.00)	(1,904.00)		(8면)				
		다-2	대방동 15-45일대	(728.00)	(728.00)		(3면)				다-2	대방동 15-45일대	(728.00)	(728.00)		(3면)				
		다-3	본동 산6-9	(540.00)	(540.00)		(1면)				다-3	본동 산6-9	(540.00)	(540.00)		(1면)				
		다-4	본동 산6-9	(1,940.00)	(1,940.00)		(3면)				다-4	본동 산6-9	(1,940.00)	(1,940.00)		(3면)				
		다-5	본동 126-249일대	(900.00)	(900.00)		(1면)				다-5	본동 126-249일대	(900.00)	(900.00)		(1면)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테니스장	라	소계	5,283.93	5,283.93						라	소계	5,283.93	5,283.93						
		라-1	대방동 23-189일대	(2,889.93)	(2,889.93)		(4면)				라-1	대방동 23-189일대	(2,889.93)	(2,889.93)		(4면)				
		라-2	본동 126-249일대	(2,394.00)	(2,394.00)		(4면)				라-2	본동 126-249일대	(2,394.00)	(2,394.00)		(4면)				
	축구장	마	대방동 350-2일대	9,000.00	9,000.00						마	대방동 350-2일대	9,000.00	9,000.00						
	다목적구장	바	소계	5,028.28	5,028.28						바	소계	4,078.28	4,078.28						감)950.00㎡
		바-1	대방동 23-176	(3,253.00)	(3,253.00)						바-1	대방동 23-176	(3,253.00)	(3,253.00)						
		바-2	본동 산11-1	(950.00)	(950.00)															폐지
		바-3	상도동 363	(290.08)	(290.08)						바-3	상도동 363	(290.08)	(290.08)						
		바-4	대방동 13-60대	(535.20)	(535.20)						바-4	대방동 13-60대	(535.20)	(535.20)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사	소계	1,844.76	1,844.76					23	사	소계	2,007.76	2,007.76					30	
		사-1	대방동 23-176	(632.00)	(632.00)						사-1	대방동 23-176	(632.00)	(632.00)						
		사-2	본동 126-249	(53.00)	(53.00)						사-2	본동 126-249	(53.00)	(53.00)						
		사-3	대방동 350-2	(114.00)	(114.00)						사-3	대방동 350-2	(114.00)	(114.00)						
		사-4	대방동 375-78	(238.00)	(238.00)						사-4	대방동 375-78	(238.00)	(238.00)						
		사-5	대방동 375-78	(272.00)	(272.00)						사-5	대방동 375-78	(272.00)	(272.00)						
		사-6	상도동 363	(194.06)	(194.06)						사-6	상도동 363	(194.06)	(194.06)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사-8	대방동 13-66대	(268.70)	(268.70)						사-8	대방동 13-66대	(268.70)	(268.70)						
		사-9	상도동 453	(73.00)	(73.00)						사-9	상도동 453	(73.00)	(73.00)						
											사-10	본동 489	(163.00)	(163.00)						증)163.00㎡
	체력단련시설	⑬								23	⑬								29	
	복합운동시설										㊱								1	
교양시설	소계			3,897.00	3,127.64		3동	2,243.98	8,150.17	1			3,897.00	3,127.64		3동	2,243.98	8,150.17	1	
	도서관	3	대방동 23-189	1,850.00	1,084.00		5층	994.00	4,959.00		3	대방동 23-189	1,850.00	1,084.00		5층	994.00	4,959.00		
	어린이도서관	3-1	노량진동 225-161	781.00	781.00		2층	192.00	488.22		3-1	노량진동 225-161	781.00	781.00		2층	192.00	488.22		
	청소년수련시설	4	상도동 산4-4	500.00	500.00			1,057.98	2,702.95		4	상도동 산4-4	500.00	500.00			1,057.98	2,702.95		
		4-1	상도동 산4-4	(500.00)	(500.00)		지하1층 지하3층	(330.00)	(1,320.00)		4-1	상도동 산4-4	(500.00)	(500.00)		지하1층 지하3층	(330.00)	(1,320.00)		
		4-2	대방동 350-2	-	-		지하2층	(727.98)	(1,382.95)		4-2	대방동 350-2	-	-		지하2층	(727.98)	(1,382.95)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다목적 공연장	5	노량진동 공325-2	584.00	584.00						5	노량진동 공325-2	584.00	584.00						
	탑	⑨	-	119.00	115.64						⑨	-	119.00	115.64						
	공군탑	⑨-1	대방동 23-176	(115.00)	(115.00)						⑨-1	대방동 23-176	(115.00)	(115.00)						
	자매결연탑	⑨-2	대방동 23-176	(4.00)	(0.64)						⑨-2	대방동 23-176	(4.00)	(0.64)						
	야외무대	⑩	노량진동 공325-2	63.00	63.00						⑩	노량진동 공325-2	63.00	63.00						
	야외서고	㉘	노량진동 294-329							1	㉘	노량진동 294-329							1	
편익시설	소계			3,209.80	3,181.21		4동	126.40	126.40				3,237.00	3,208.41		5동	153.60	153.60		증)27.20㎡
	주차장	아	소계	1,813.81	1,813.81		32대				아	소계	1,813.81	1,813.81		32대				
		아-1	대방동 15-45일대	(1,294.21)	(1,294.21)		15대				아-1	대방동 15-45일대	(1,294.21)	(1,294.21)		15대				
		아-2	대방동 350-2	(265.60)	(265.60)		8대				아-2	대방동 350-2	(265.60)	(265.60)		8대				
		아-3	상도동 산4-4	(254.00)	(254.00)		9대				아-3	상도동 산4-4	(254.00)	(254.00)		9대				
	약수터	자	소계	1,020.00	1,020.00						자	소계	1,020.00	1,020.00						
		자-1	본동 126-249	(120.00)	(120.00)						자-1	본동 126-249	(120.00)	(120.00)						
		자-2	대방동 350-2	(900.00)	(900.00)						자-2	대방동 350-2	(900.00)	(900.00)						
	화장실	6	소계	94.99	66.40		2동	66.40	66.40		6	소계	122.19	93.60		3동	93.60	93.60		
		6-1	대방동 23-189	(74.79)	(59.40)		1동	(59.40)	(59.40)		6-1	대방동 23-189	(74.79)	(59.40)		1동	(59.40)	(59.4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6-2	대방동 350-2	(20.20)	(7.00)		1동	(7.00)	(7.00)		6-2	대방동 350-2	(20.20)	(7.00)		1동	(7.00)	(7.00)		
											6-3	본동 489	(27.20)	(27.20)		1동	(27.20)	(27.20)		증)27.20㎡
	전망대	7	소계	281.00	281.00		2동	60.00	60.00		7	소계	281.00	281.00		2동	60.00	60.00		
		7-1	대방동 23-213	(136.00)	(136.00)						7-1	대방동 23-213	(136.00)	(136.00)						
		7-2	본동 126-249	(50.00)	(50.00)		1동	(41.00)	(41.00)		7-2	본동 126-249	(50.00)	(50.00)		1동	(41.00)	(41.00)		
		7-3	노량진동 225-291	(95.00)	(95.00)		1동	(19.00)	(19.00)		7-3	노량진동 225-291	(95.00)	(95.00)		1동	(19.00)	(19.00)		
관리시설	소계			270.17	270.17		2동	260.07	260.07	327			285.17	285.17		2동	260.07	260.07	328	증)15.00㎡
	관리사무소	8	소계	260.07	260.07		2동	260.07	260.07		8	소계	260.07	260.07		2동	260.07	260.07		
		8-1	대방동 23-176	(150.00)	(150.00)	철근CONC	1동	(150.00)	(150.00)		8-1	대방동 23-176	(150.00)	(150.00)	철근CONC	1동	(150.00)	(150.00)		
		8-2	대방동 20-118	(110.07)	(110.07)	경량철골조	1동	(110.07)	(110.07)		8-2	대방동 20-118	(110.07)	(110.07)	경량철골조	1동	(110.07)	(110.07)		
	조명시설	㉙								267	㉙								267	
	휴지통									35									35	
	안내판	㉚								3	㉚								3	
	볼라드									15									15	
	안전휀스									1									1	(129경간)
	문주									1									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	(㎡)			바닥면적	연면적	(기)	
	경계휀스	⑭								1	⑭								1	(144경간)
	목재휀스	⑮								1	⑮								1	(16경간)
	CCTV	㉛								2	㉛								2	
	놀이시설 안내판	㉜								1	㉜								1	
	창고										㊲	본동 489	15	15					1	증)15.00㎡
녹지 및 기타				279,646.09									280,009.45							증) 363.36㎡

3. 도로조서

– 도로총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총괄	합 계			8,076.20	34,651.60 (15,125.00)				
변경					9,069.20	35,287.10 (15,125.00)				증)635.50㎡
당초	중로	소 계			578	(7,744.00)				
당초	소로	소 계			8,128.20	26,907.60 (7,381.00)	공원내도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8,491.20	27,543.10 (7,381.00)	공원내도로 (도시계획도로)			증)635.50㎡

– 공원내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없음	합 계				1,242.60	15,125				
변경 없음	중로	소 계			578	7,744				
		3	1	6-15	154	1,700	도시계획도로	대방동23-186	소 3-6	
		3	2	18	158	2,844	〃	대방동23-188	대방동23-188	
		3	3	4-15	266	3,200	〃	대방동466-57	대방동15-4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없음	소로	소계			665	7,381				
		1	3	2-12	200	1,880	〃	본동 산11-1	본동 산11-1	
		1	4	12	169.6	2,035	〃	본동 10-5	본동 산127-78	
		1	5	2-12	27	250	〃	본동 30-25	본동 30-66	
		1	6	12	204	2,448	〃	상도동 7-87	흑석동 241-36	
		1	7	12	64	768	〃	상도2 재개발	소3-21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소 계			7,463.60	19,526.60				
변경	소로	소 계			7,826.60	20,162.10				증)635.50㎡
당초	소로	3	1	10	72	720	진입로	중 3-3	주차장(자-1)	
당초		3	2	3	10	30	산책로	중 3-1	배드민턴장(다-1)	
당초		3	6	3-5	340	1,584	〃	중 3-1 종점	대방동 360-2	
당초		3	8	3	54	162	〃	소 3-9	광장(가-1)	
당초		3	9	4	60	240	〃	다목적운동장	소 3-8	
당초		3	10	2	52	104	〃	광장(가-1)	광장(가-3)	
당초		3	11	3	54	162	〃	도서관(3)	소 3-13	
당초		3	12	4	74	296	〃	대방동 350-2	소 3-13	
당초		3	13	2	426	852	〃	주차장(자-1)	대방동 15-4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14	3	28	84	〃	소 1-1	배드민턴장(다-2)	
당초		3	15	1.5	268	402	〃	소 3-133	상도동 335-194	
당초		3	16	1.5	435	652	〃	소 3-15	상도동 446	
당초		3	17	1.5	315	445	〃	소 3-15	소 3-16	
당초		3	18	4	42	168	〃	소 3-16	휴게소(나-4)	
당초		3	22	6	45	270	〃	노량진동 225-294	노량진동 225-294	
당초		3	23	6	40	240	〃	본동 산 11-1	소 1-3	
변경		3		3	12	35.4	〃	본동 산 11-1	가-31	
당초		3	24	4	160	640	〃	소 3-23 종점	어린이놀이터(④-3)	
변경		3		3	409	1,235.19	〃	가-31	본동 산 11-1	
당초		3	25	2	35	70	〃	소 3-26	소 1-4	
당초		3	26	2	192	384	〃	소 1-4	소 3-32	
당초		3	27	2	40	80	산책로	소 3-32	소 3-26	
당초		3	28	2	15	30	〃	소 3-26	배드민턴장(다-6)	
당초		3	29	2	54	108	〃	약수터(차-1)	본동127-52북측	
당초	소로	3	31	2	16	32	〃	소3-29	배드민턴장(다-6)	
당초		3	32	2	240	480	〃	본동 129-249서측	소 3-33 기점	
당초		3	33	4	38	152	〃	소 3-34 종점	본동 126-15북측	
당초		3	34	2	50	100	〃	소 3-32	소 3-33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35	2	7	14	〃	소 3-36	본동30-17 북동측	
당초		3	36	2	76	152	〃	소 3-33	소 3-39	
당초		3	37	4	14	56	〃	소 3-36	본동30-17 동측	
당초		3	38	2	52	104	〃	소 3-26	소 3-32	
당초		3	39	2	180	360	〃	소 3-42	소 3-34	
당초		3	40	2	34	68	〃	소 3-39	흑석동 200-52	
당초		3	41	2	30	60	〃	소 3-39	배드민턴장 (다-7)	
당초		3	42	2	88	176	〃	소 3-45	〃	
당초		3	43	2	30	60	〃	소 3-44	소 3-42	
당초		3	44	2	108	216	〃	흑석동 211-33	흑석동 200-63	
당초		3	45	2	72	144	〃	소 3-44	휴게소 (나-8)	
당초		3	46	2	12	24	〃	소 3-45	배드민턴장 (다-7)	
당초		3	47	2	23	46	〃	소 3-45	〃	
당초		3	48	2	48	96	〃	소 3-4	흑석동 211-33서측	
당초		3	49	2	50	100	〃	소 3-51 종점	소 3-44	
당초		3	50	2	32	64	산책로	흑석동 211-33	소 3-51	
당초	소로	3	51	2	80	160	〃	흑석동 211-33	흑석동 211-33	
당초		3	52	2~3	274	822	〃	다목적운동장	광장(가-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53	4	75	300	〃	진입광장(가-3)	광장(가-4)	
당초		3	54	3	40	120	〃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아-1)	
당초		3	55	4	156	624	〃	주차장(자-1)	중 3-2	
당초		3	56	1.2	178	213.6	〃	소 3-12	소 3-58	
당초		3	57	2	3	6	〃	배드민턴장(다-3)	소 3-13	
당초		3	58	4	45	180	〃	광장(가-3)	소 3-11	
당초		3	59	2	273	546	〃	중 3-3	소 3-15	
당초		3	60	4	13	52	〃	대방동 2-2	대방동 2-2	
당초		3	61	20	35	700	〃	중 3-3	축구장(바)	
당초		3	62	6	80	480	연결로	상도동 산4-80임	소 3-63	
당초		3	63	6	26	156	〃	소 3-62	소 3-18	
당초		3	64	4	25	100	〃	소 3-63	상도동 산4-69임	
당초		3	65	4	10.2	41	〃	소 3-64	상도동 356-220	
당초		3	66	3	10	30	〃	기존도로	어린이도서관(3-1)	
당초		3	67	2	24	48	〃	어린이도서관(3-1)	소 3-68	
당초		3	68	2	22	44	〃	휴게소 (나-6)	전망대 (7)	
당초		3	69	2	17	34	〃	음악분수 ⑦	휴게소 (나-8)	
당초		3	70	4	16.5	66	〃	광장(가-9)	휴게소(가-10)	
당초		3	71	5	3	15	〃	기존도로	광장(가-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72	4	3	12	〃	기존도로	어린이놀이터(⑧)	
당초		3	73	3	11	33	〃	기존도로	휴게소(나-7)	
당초		3	74	4	39	156	〃	광장(가-13)	광장(가-15)	
당초		3	75	4	60	240	〃	광장(가-15)	광장(가-16)	
당초		3	76	5	31	155	〃	광장(가-16)	광장(가-11)	
당초		3	77	2	14.5	29	〃	광장(가-19)	휴게소(나-12)	
당초		3	78	2	7.6	15	〃	광장(가-18)	광장(가-16)	
당초		3	79	3.4	23.1	79	〃	광장(가-15)	광장(가-12)	
당초		3	80	1.5	155.6	233	〃	광장(가-15)	광장(가-12)	
당초		3	81	1.2	37.3	45	산책로	광장(가-16)	휴게소(나-16)	
당초	소로	3	82	1.2	16.5	20	〃	휴게소(나-13)	광장 (가-11)	
당초		3	83	1.2	28	34	〃	광장(가-11)	소 3-77	
당초		3	84	1.2	47	56	〃	소 3-77	소 3-78	
당초		3	85	1.2	21.3	26	〃	소 3-78	소 3-75	
당초		3	86	1.2	17.9	21	〃	광장(가-14)	소 3-74	
당초		3	87	1.2	49.8	60	〃	광장(가-17)	소 3-75	
당초		3	88	6.2	45.1	280	〃	기존도로	기존도로	
당초		3	89	3.9	5.1	20	진입로	기존도로	소 3-75	
당초		3	90	4.5	11.2	50	〃	기존도로	광장(가-17)	
당초		3	91	4.5	20.2	91	〃	기존도로	광장(가-1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92	4	7.6	30	〃	기존도로	소 3-91	
당초		3	93	4	14	56	〃	기존도로	광장(가-17)	
당초		3	94	1.2	5.3	6	〃	기존도로	소 3-87	
당초		3	101	2.5	115.8	289.5	산책로	광장(가-22)	소 3-103	
당초		3	102	2.5	71.4	178.6	〃	소 3-103	소 3-103	
당초	소로	3	103	3	53.7	161.1	진입로	대방동 13-133대	대방동 13-22대	
당초		3	104	2.5	145.6	364	산책로	소 3-103	상도동 451도	
당초		3	105	2	11.3	22.6	진입로	소 3-104	상도동 451도	
당초		3	106	1.5	30.5	45.7	연결로	소 3-104	소 3-101	
당초		3	107	2	5	10	진입로	기존도로	화장실(6-2)	
당초		3	108	1.5	28	42	연결로	광장(가-24)	소 3-12	
당초	산책로	3	109	3	11	33	진입로	진출입로	소3-114	
당초		3	110	3	4.5	13.5	〃	〃	소3-110	
당초		3	111	4	17	68	〃	〃	소3-111	
당초		3	112	3	18	54	연결로	소3-114	소3-114	
당초		3	113	2	39.5	49	〃	〃	〃	
당초		3	114	2.5	210	525	〃	진출입로	가-26	
당초	소로	3	115	2	68.5	137	연결로	광장(가-27)	진입부	
당초		3	116	2	4	8	진입로	진입부	소 3-1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131	1.5	105	158	산책로	소 3-59	휴게소 (나-2)	
당초		3	132	1.5	69	104	〃	휴게소 (나-2)	대방동 23-213	
당초		3	133	1.5	316	474	〃	휴게소 (나-2)	소 3-16	
당초		3	134	1.5	52	78	〃	전망대 (1-7)	대방동 23-213	
신설	산책로	3	135	5	5	14.53	〃	동측입구	광장 가-28	
신설		3	136	2	5	14.37	〃	동측입구	광장 가-28	
신설		3	137	1.5	67	102.37	〃	광장 가-28	산책로 3-140	
신설	산책로	3	138	1.2	13	15.71	〃	산책로 3-137	산책로 3-139	
신설		3	139	1.8	29	52.03	〃	광장 가-28	광장 가-29	
신설		3	140	2.5	12	30.55	〃	남측입구	광장 가-28	
신설		3	141	1.35	11	15.35	〃	광장 가-30	소 3-24	

조 성 계 획 총 괄 도(변경전)

노량진근린공원

■ 범 례

구 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M2)	건축물 연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계		368,959.00	88,043.96 (15,125.00)	10	2,684.45	8,643.64	642	
기반시설	소 계	42,578.52	42,578.52 (15,125.00)				11	
	도 로	34,651.60	34,651.60 (15,125.00)					
	광 장	7,926.92	7,926.92					
조경시설		496.50	496.50				92	
휴양시설		9,861.85	9,770.85	1	54.00	107.00	185	
유희시설		1,630.10	1,460.10				3	
운동시설		27,168.97	27,168.97	(1)			23	
교양시설		3,897.00	3,127.64	3	2,243.98	8,150.17	1	
편익시설		3,209.80	3,181.21	4	126.40	126.40		
관리시설		270.17	270.17	2	260.07	260.07	32f	
녹지및기타		279,646.09						
시설률 (법정 40%)		(88,043.96 / 368,959.00) X 100 = 23.86%						
건폐율 (법정 10%)		(2,684.45 / 368,959.00) X 100 = 0.73%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직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직위	주무관	팀장	과장	주무관	팀장
직급	녹지7급	녹지6급	녹지5급	녹지6급	녹지5급
성명	양지수	이인호	최영준	김재희	정창수
확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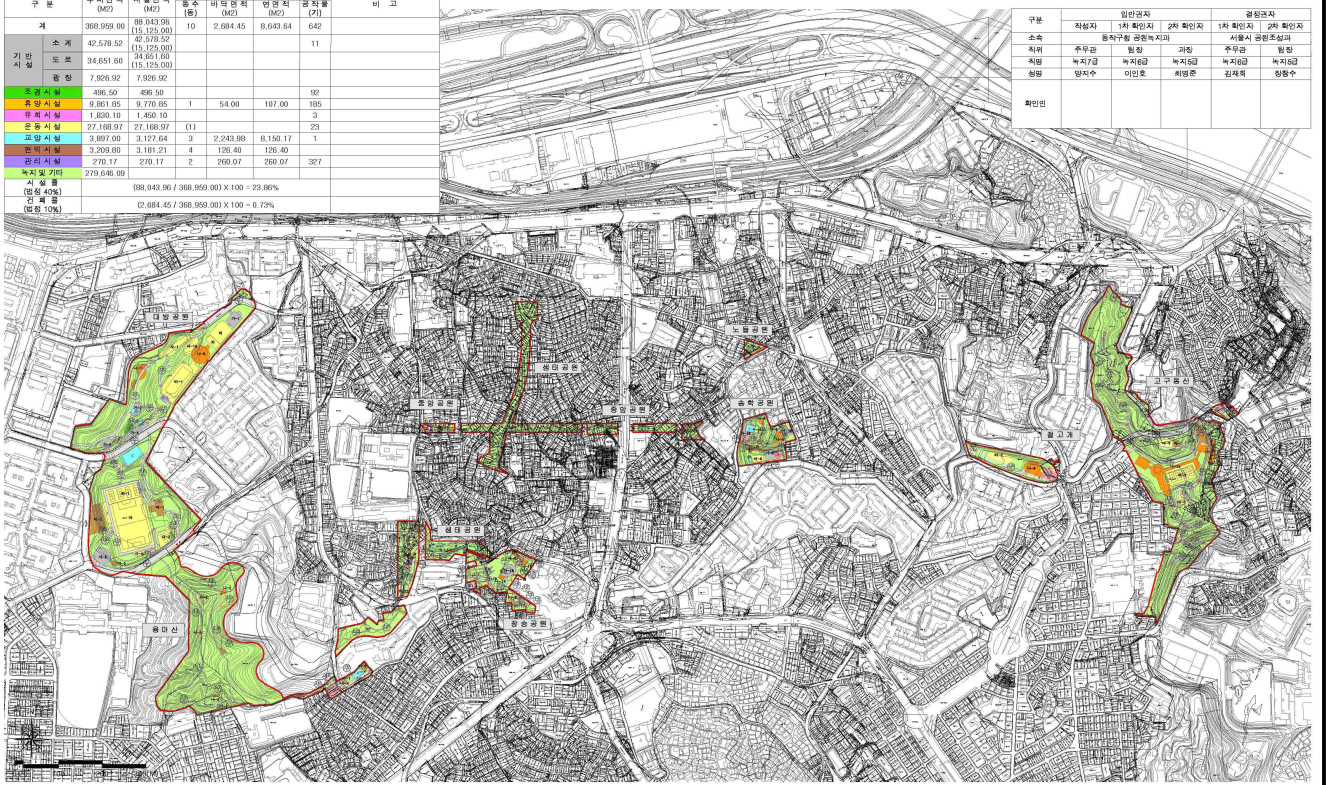

조 성 계 획 총 괄 도(변경후)

노량진근린공원

■범 례

구 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M2)	건축물 연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계		368,959.00	87,860.60 (15,125.00)	10	2,711.65	8,670.84	679	공원등적 변경됨음 시설면적 감) 183.38M2
기반시설	소 계	44,090.57	44,090.57 (15,125.00)				11	증) 1,512.05M2
	도 로	35,287.10	35,287.10 (15,125.00)					증) 635.50M2
	광 장	8,803.47	8,803.47					증) 876.55M2
조경시설		496.50	496.50				92	
휴양시설		8,953.95	8,862.95	1	54.00	107.00	213	감) 907.90M2
유희시설		1,607.39	1,407.39				4	감) 222.71M2
운동시설		26,381.97	26,381.97	(1)			30	감) 787.00M2
교양시설		3,897.00	3,127.64	3	2,243.98	8,150.17	1	
편익시설		3,237.00	3,208.41	5	153.60	153.60		증) 27.20M2
관리시설		285.17	285.17	2	260.07	260.07	328	증) 15.00M2
녹지및기타		280,009.45						증) 363.38M2
시설률 (법정 40%)		(87,860.60 / 368,959.00) X 100 = 23.81%						감) 0.05%
건폐율 (법정 10%)		(2,711.65 / 368,959.00) X 100 = 0.73%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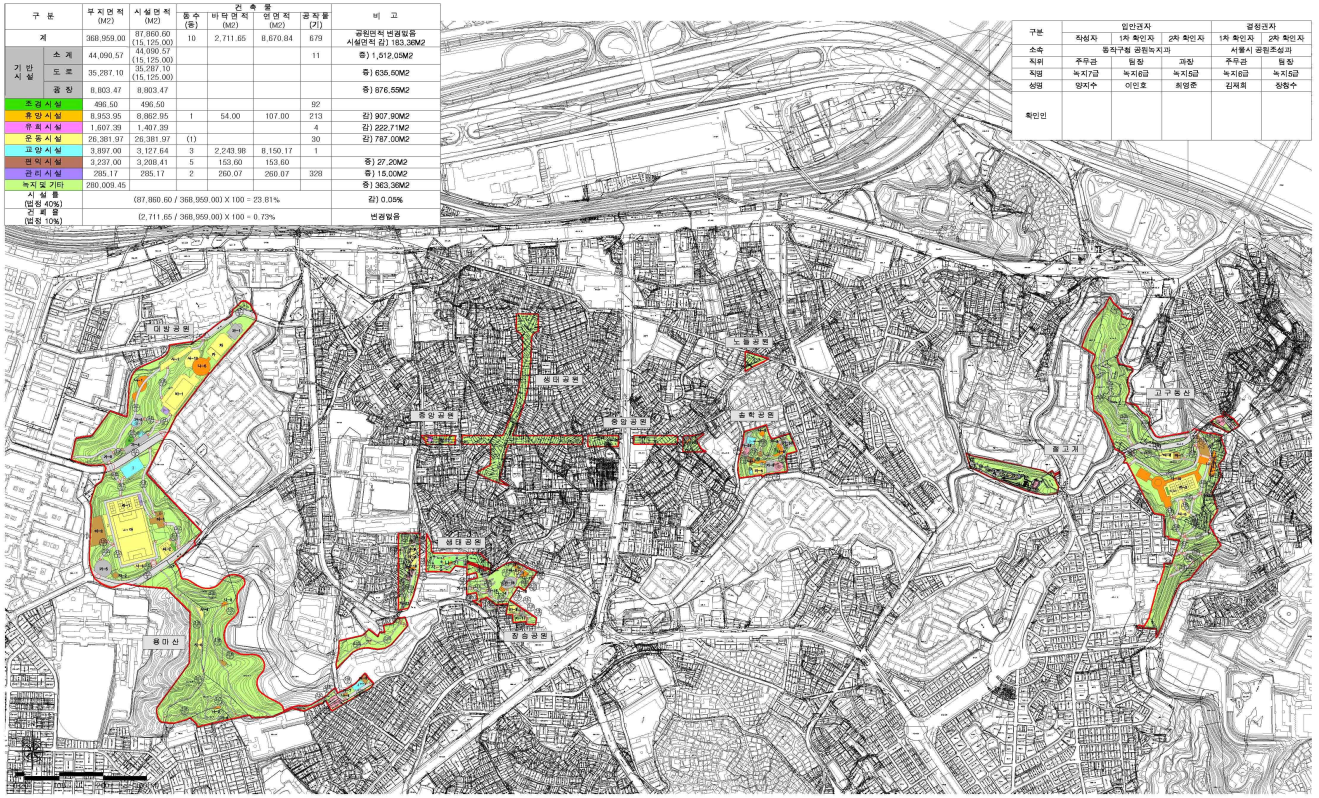

구분	입안근자			결정근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직위	주무관	팀장	과장	주무관	팀장
직원	녹지7급	녹지6급	녹지5급	녹지6급	녹지5급
성명	양지수	이인호	최영준	김채희	정동수
확인인					

조 성 계 획 도(변경전)

노량진근린공원
(절고개공원)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직위	주무관	팀장	과장	주무관	팀장
직영	녹지7급	녹지6급	녹지5급	녹지6급	녹지5급
성영	양지수	이인호	최영준	김재희	장창수
확인인					

■ 범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8,002	3,110	-	
기반시설	소 계		880	880		
	도로	3-23	240	240		
		3-24	640	640		
휴양시설	소 계		980	980	-	
	휴 게 소	나-9	980	980	-	
운동시설	소 계		950	950	-	
	운동공간	바-2	950	950		
유희시설	소 계		480	300	-	
	놀이공간	⑧-2	480	300		
녹지 및 기타	소 계		4,712			
	녹 지		4,712			

조 성 계 획 도(변경후)

노량진근린공원
(절고개공원)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직위	주무관	팀장	과장	주무관	팀장
직명	녹지7급	녹지6급	녹지5급	녹지6급	녹지5급
성명	양지수	이인호	최영준	김재희	장창수
확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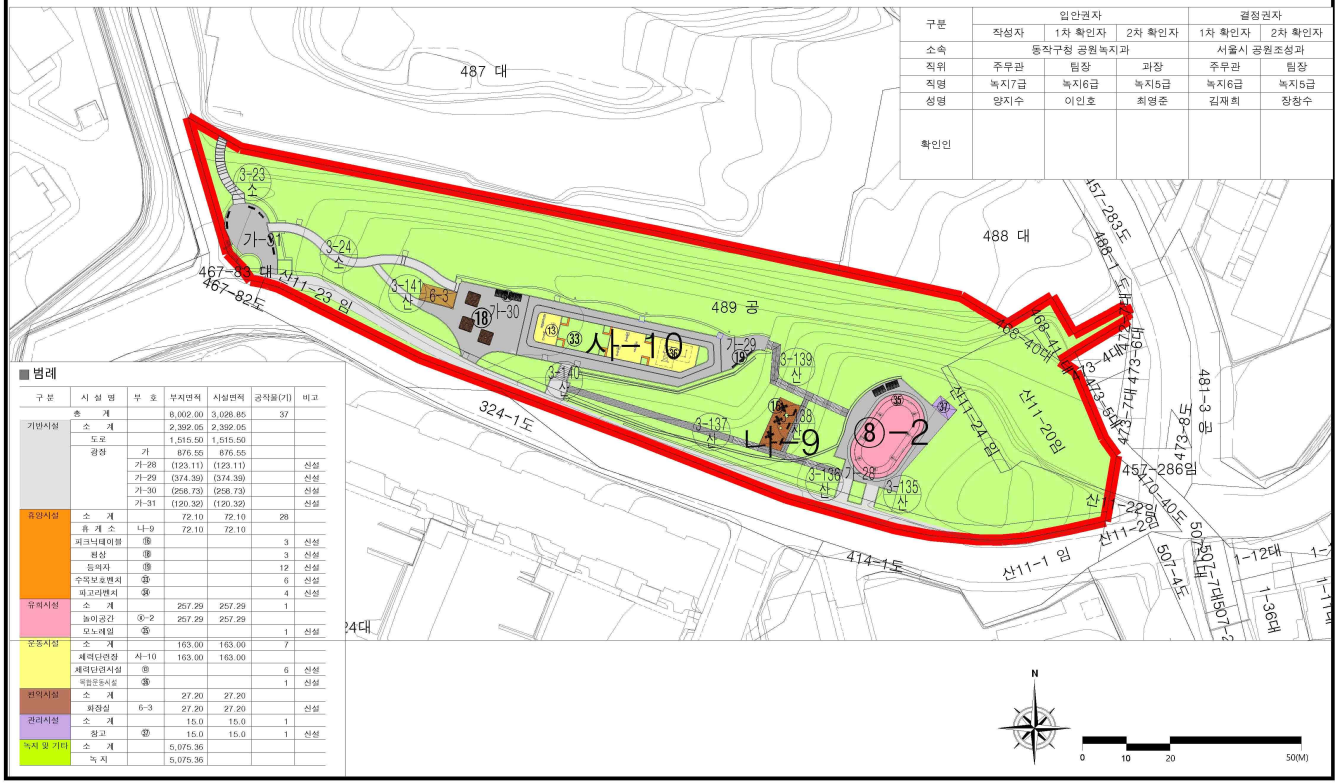

■ 범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8,002.00	3,026.85	37	
기반시설	소 계		2,392.05	2,392.05		
	도로		1,515.50	1,515.50		
	광장	가	876.55	876.55		
		가-28	(123.11)	(123.11)		신설
		가-29	(374.39)	(374.39)		신설
		가-30	(258.73)	(258.73)		신설
		가-31	(120.32)	(120.32)		신설
휴양시설	소 계		72.10	72.10	28	
	휴 게 소	나-9	72.10	72.10		
	피크닉테이블	⑯			3	신설
	평상	⑰			3	신설
	등의자	⑱			12	신설
	주목보호펜스	㉜			6	신설
	파고라펜스	㉞			4	신설
유희시설	소 계		257.29	257.29	1	
	놀이공간	⑧-2	257.29	257.29		
	모노레일	㉟			1	신설
운동시설	소 계		163.00	163.00	7	
	체력단련장	사-10	163.00	163.00		
	체력단련시설	⑮			6	신설
	독립운동시설	㊱			1	신설
편익시설	소 계		27.20	27.20		
	화장실	6-3	27.20	27.20		신설
관리시설	소 계		15.0	15.0	1	
	창고	㉗	15.0	15.0	1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5,075.36			
	녹 지		5,075.3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4호

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53호(2026.03.26.) '로 고시한 '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 고
기 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것	충 족
현 황		29,820.2㎡	전체 : 79동 노후·불량 : 54동(68.4%)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변경)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 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30,111.1	감) 290.9	29,820.2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 변경 · 면적 : 30,111.1㎡ → 29,820.2㎡	· 대상지 남서측 지분쪼개기가 발생한 사도 필지를 구역계에서 제외함

나. 토지이용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안)(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0,111.1	감) 290.9	29,820.2	100.0	-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24,328.5	-	24,328.5	81.6	변경없음
		A-1	사업추진구역 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908.8	-	17,908.8	60.1	
		A-2	사업추진구역 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6,419.7	-	6,419.7	21.5	
	정비기반시설	소계		4,208.5	감) 290.9	3,917.6	13.1	-
		도로		4,208.5	감) 290.9	3,917.6	13.1	-
시행구역 외		도로		1,574.1	-	1,574.1	5.3	변경없음

※ 1)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1항2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4만㎡미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정비기반시설 제외)

○ 토지이용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안)	· 모아타운 구역계 및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 대상지 남서측 지분 쪼개기가 발생한 필지 제척으로 모아타운 구역계 변경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계획(안)(변경)

구 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중로	2	418	15~20	집산도로	980 (40)	정릉동 966-8	정릉동 227-217	일반도로	서고 23 1974. 03.02	
기정	소로	1	1	10~12	국지도로	194	정릉동 산 17-83	정릉동 227-253	일반도로	서울특별시 제2026-153호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5	정릉동 227-254	정릉동 227-10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 제2026-153호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도로	227	정릉동 227-102	정릉동 192-138	일반도로	성고 97 2022. 05.19	
기정	소로	2	1	9	국지도로	141	정릉동 410-7	정릉동 226-8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 제2026-153호	-
변경	소로	2	1	3~9	국지도로	141	정릉동 410-7	정릉동 226-82	일반도로	-	관리지역 내 지분 쪼개기 필지(사도) 제척
기정	소로	2	2	9	국지도로	123	정릉동 970-1	정릉동 410-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 제2026-153호	-

※ 1) 연장의 ( )는 구역내 해당
2)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1	소로 2-1	도시계획시설 상 폭원 감소	관리지역 내 지분 쪼개기 필지(사도) 제척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변경없음

라. 교통처리 계획(안)

○ 변경없음

마.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변경)

도면표시번호	구 분	면 적(㎡)									사업계획
		계			획 지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시설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8,537.0	감)290.9	28,246.1	24,328.5	-	24,328.5	4,208.5	감)290.9	3,917.6	변경 없음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19,922.5	-	19,922.5	17,908.8	-	17,908.8	2,013.7	-	2,013.7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8,614.5	감)290.9	8,323.6	6,419.7	-	6,419.7	2,194.8	감)290.9	1,903.9	

※ 1) 합계 면적인 28,246.1㎡는 관리지역 총면적(29,820.2㎡)에서 사업추진구역 외 도로면적(1,574.1㎡)을 제외함
2)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

아.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변경없음

자.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

차.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변경없음

카.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안)

○ 용도지역 결정조서(안)(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0,111.1	감) 290.9	29,820.2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782.6	감) 290.9	5,491.7	18.4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28.5	-	24,328.5	81.6	-

※ 1)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타.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

파.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계획(안)

○ 해당없음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3.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02-2241-2913)에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관리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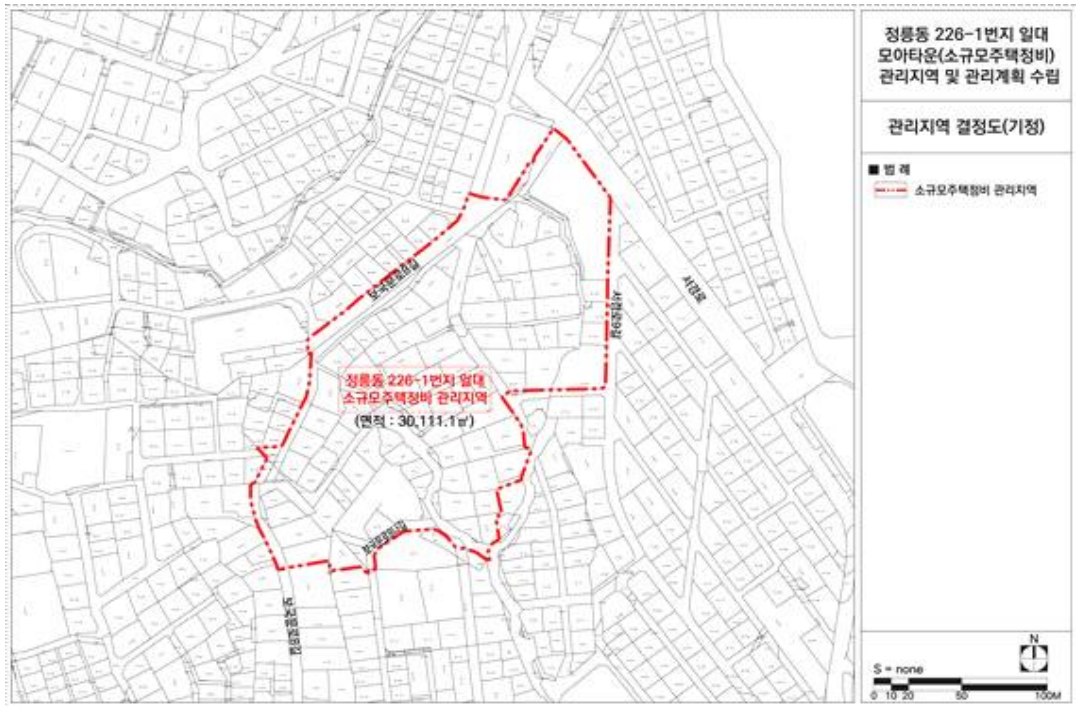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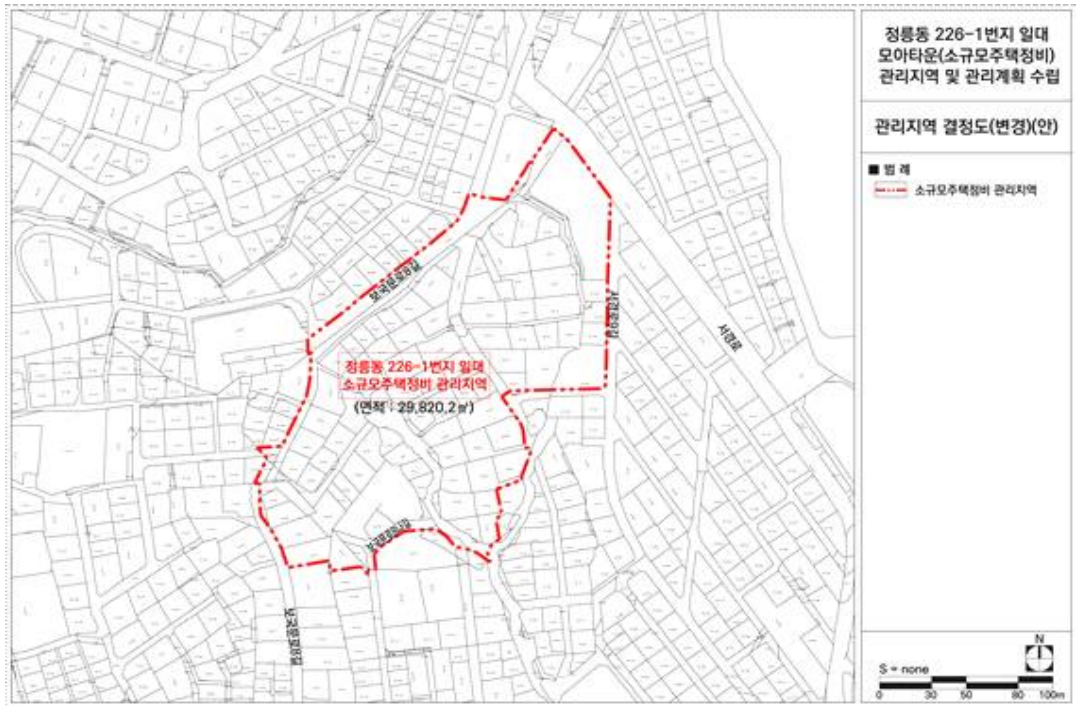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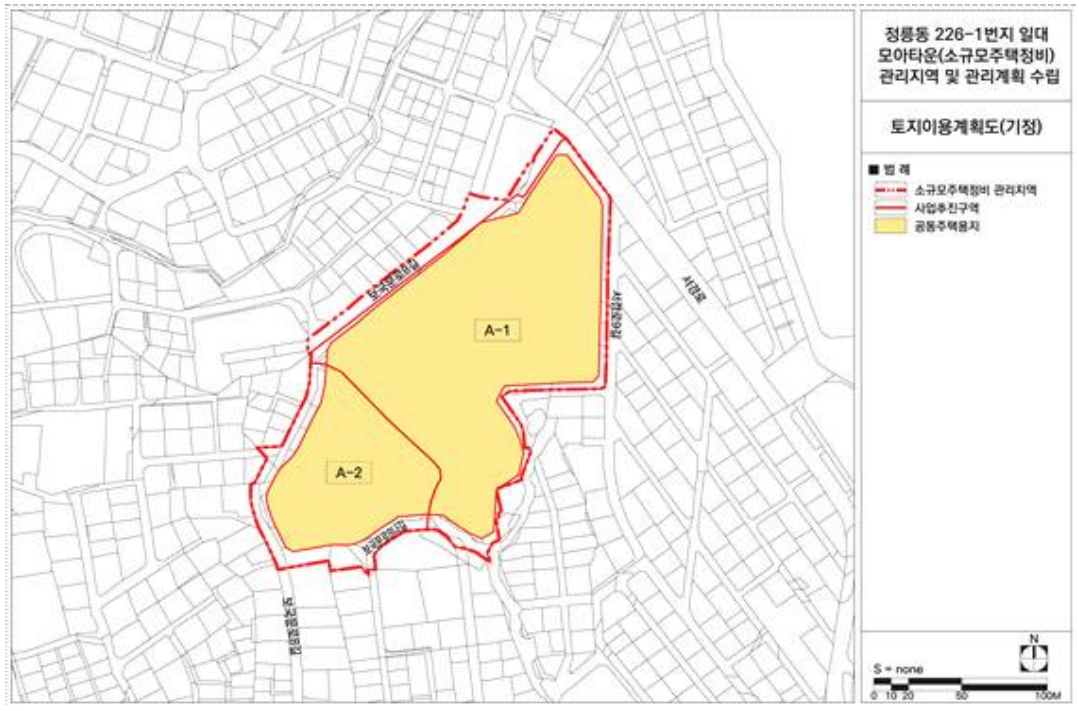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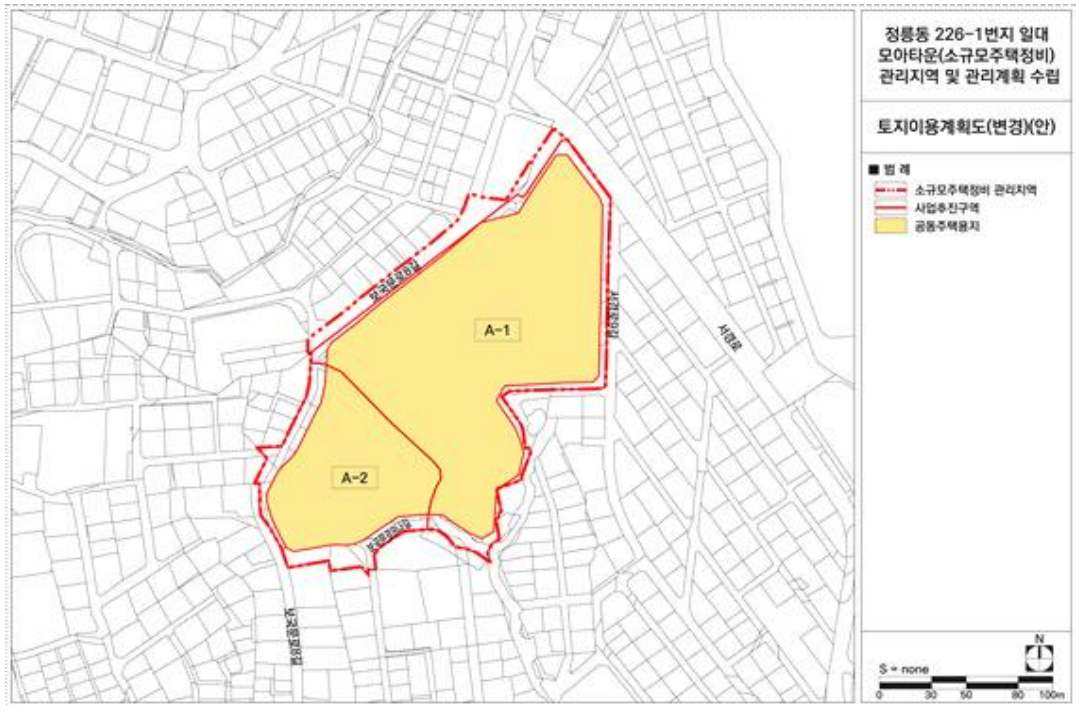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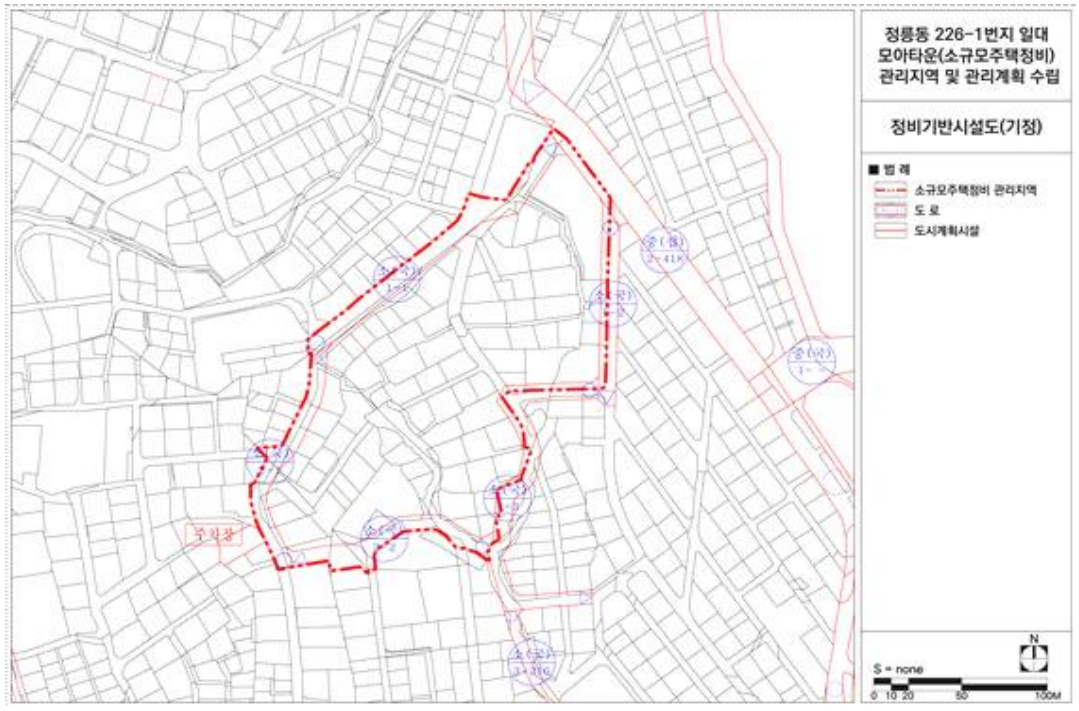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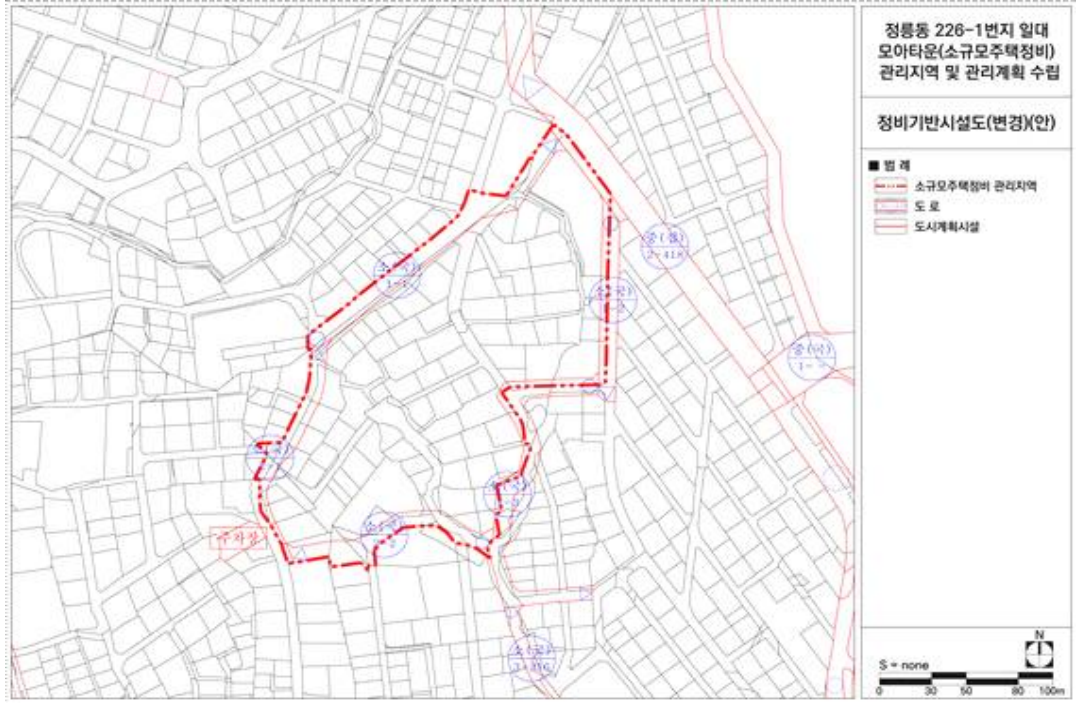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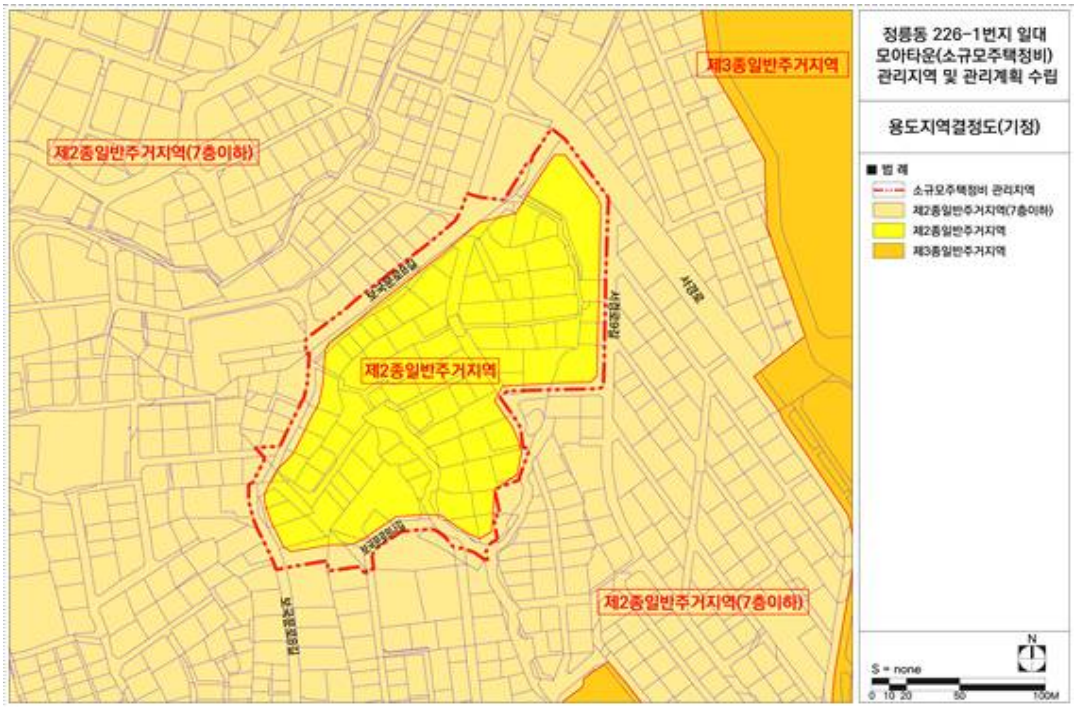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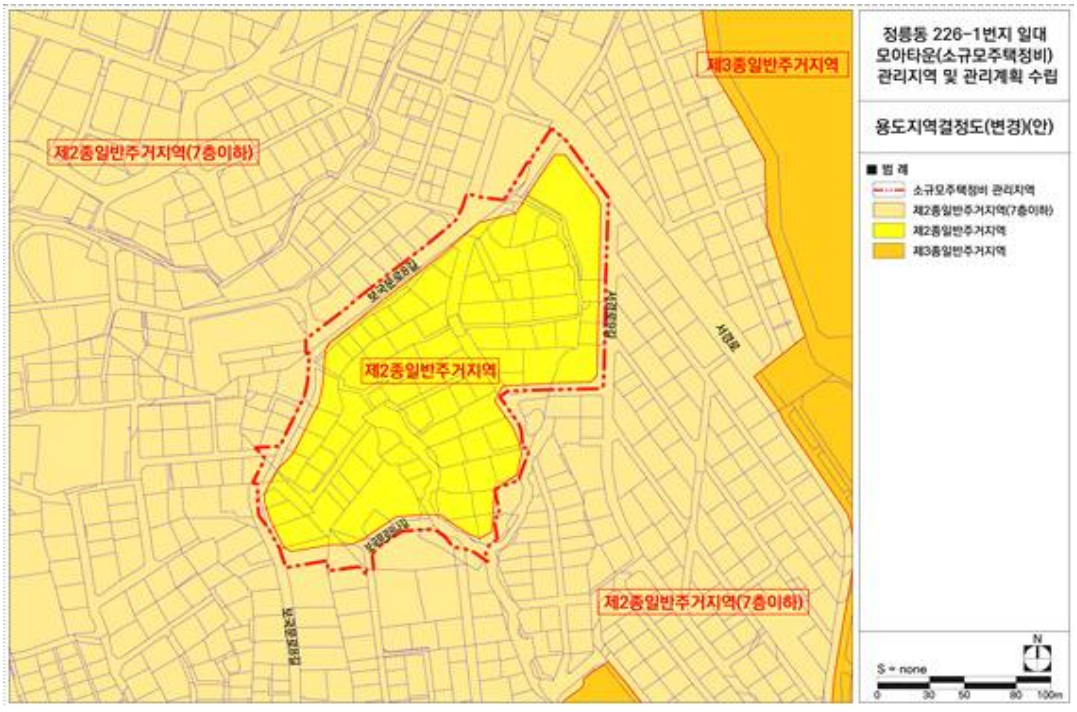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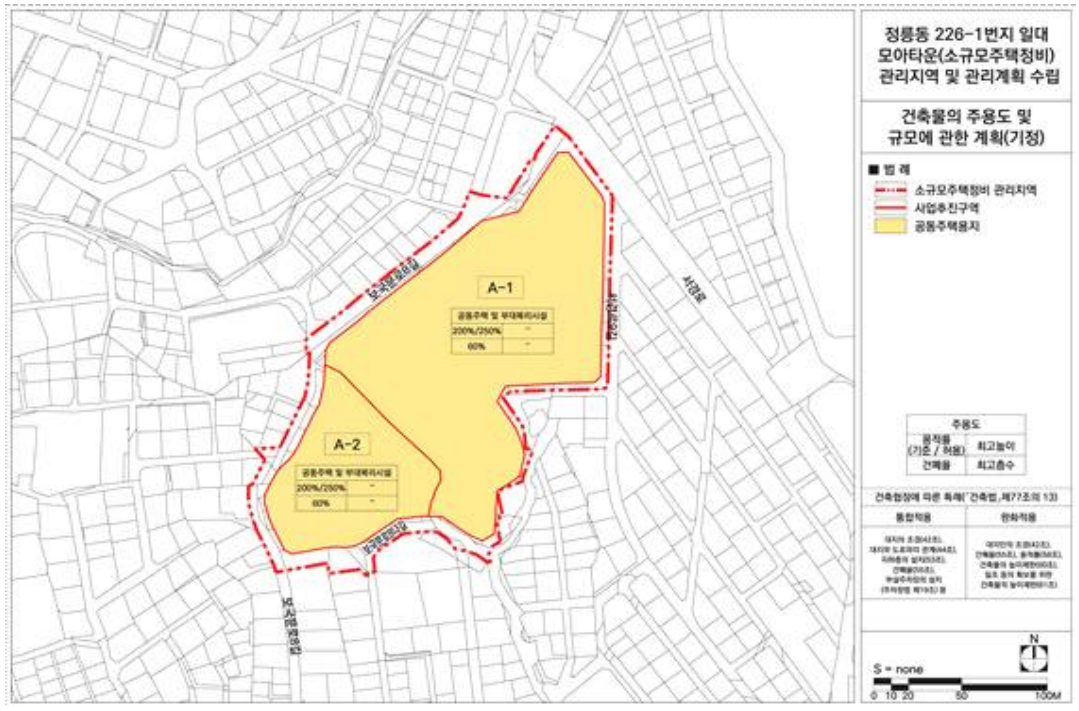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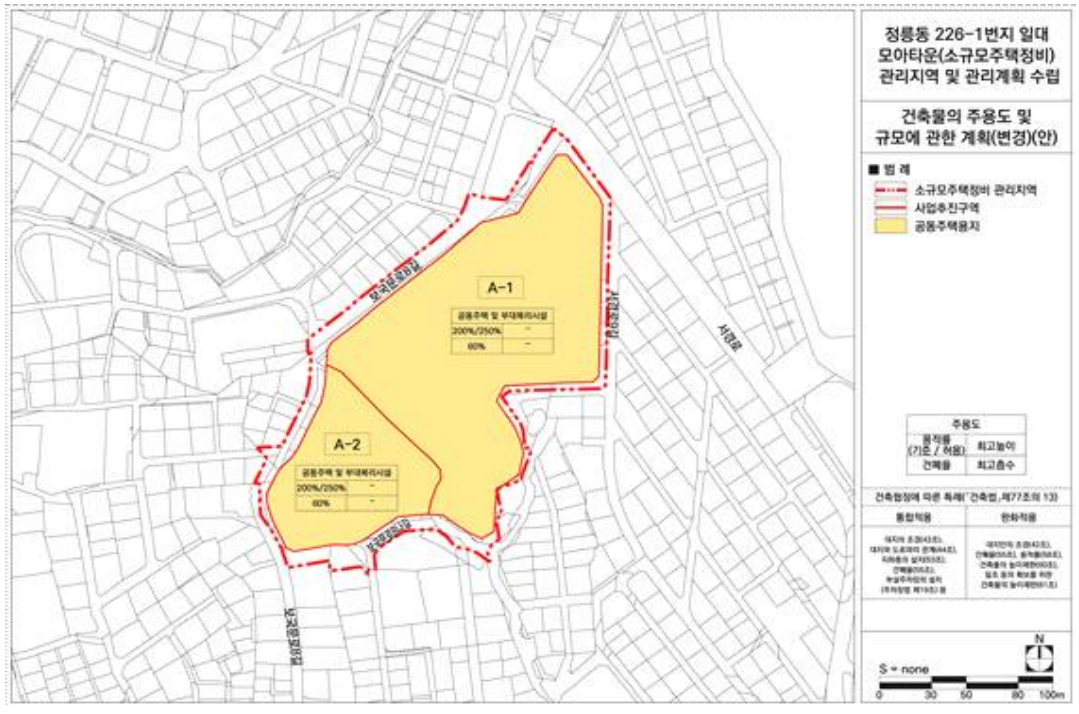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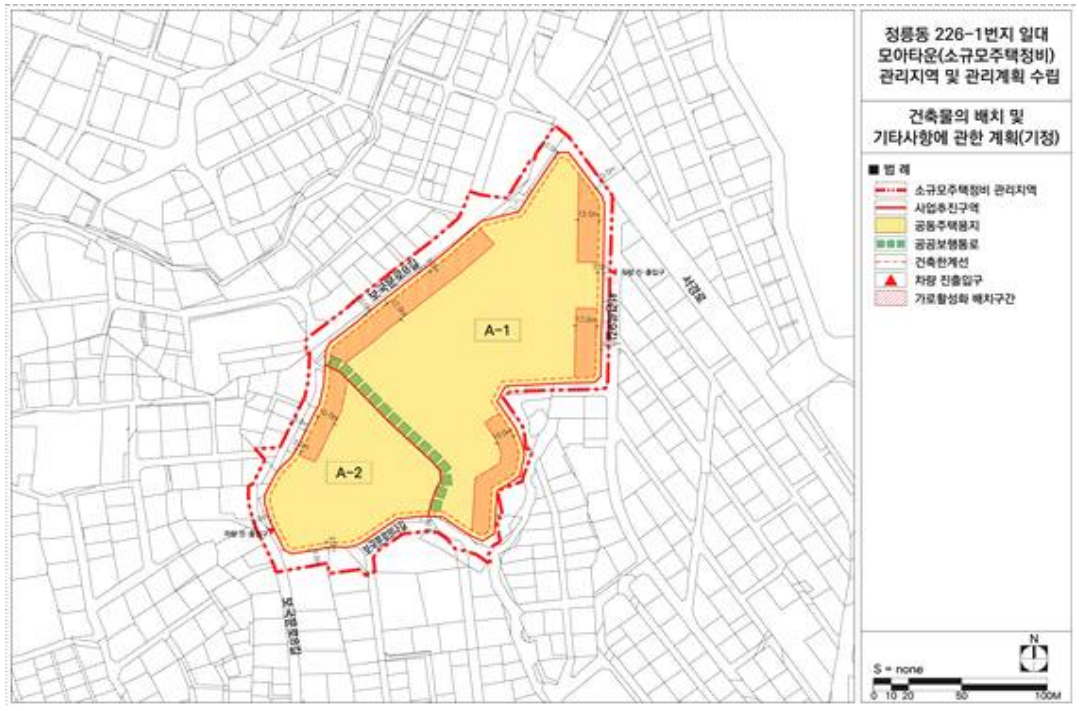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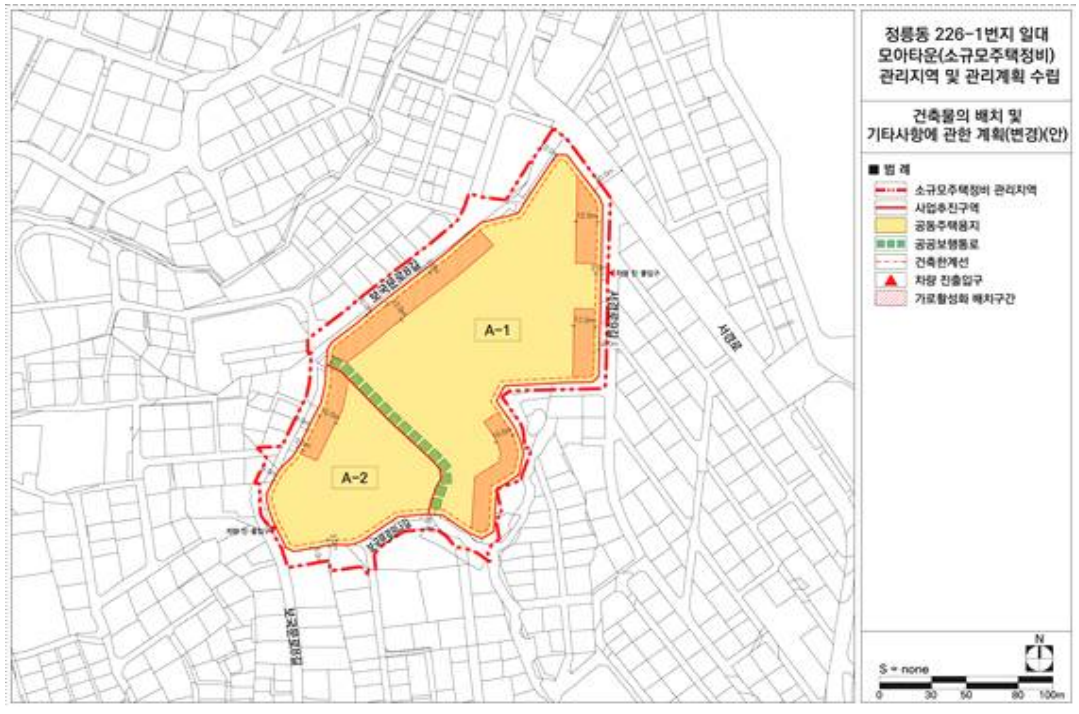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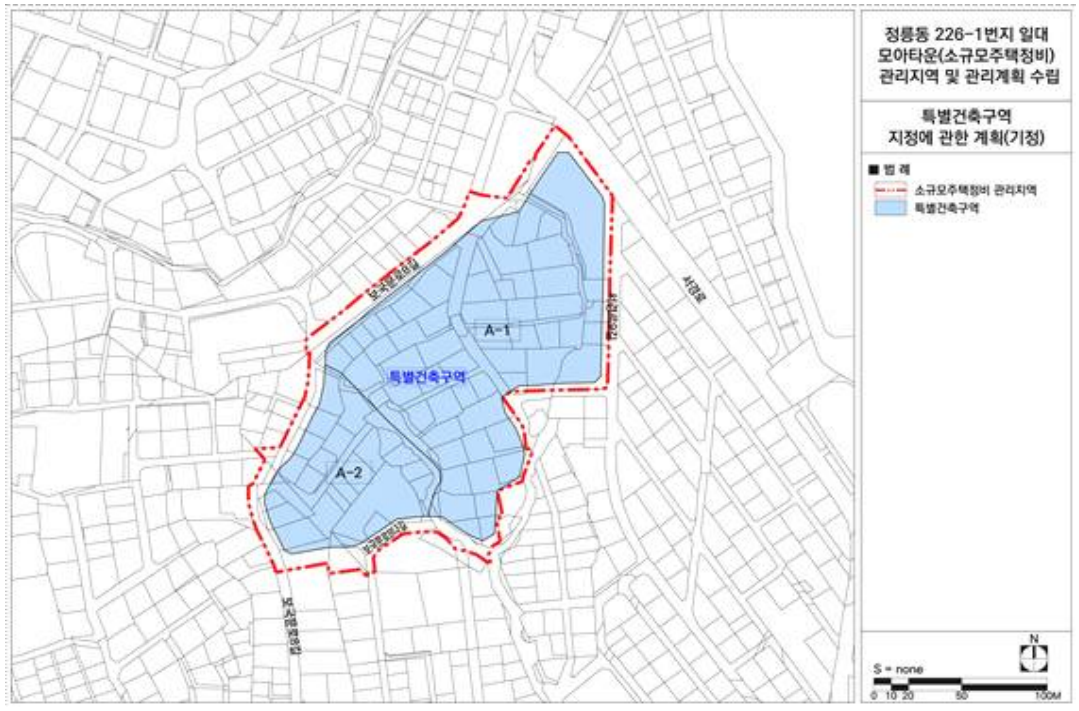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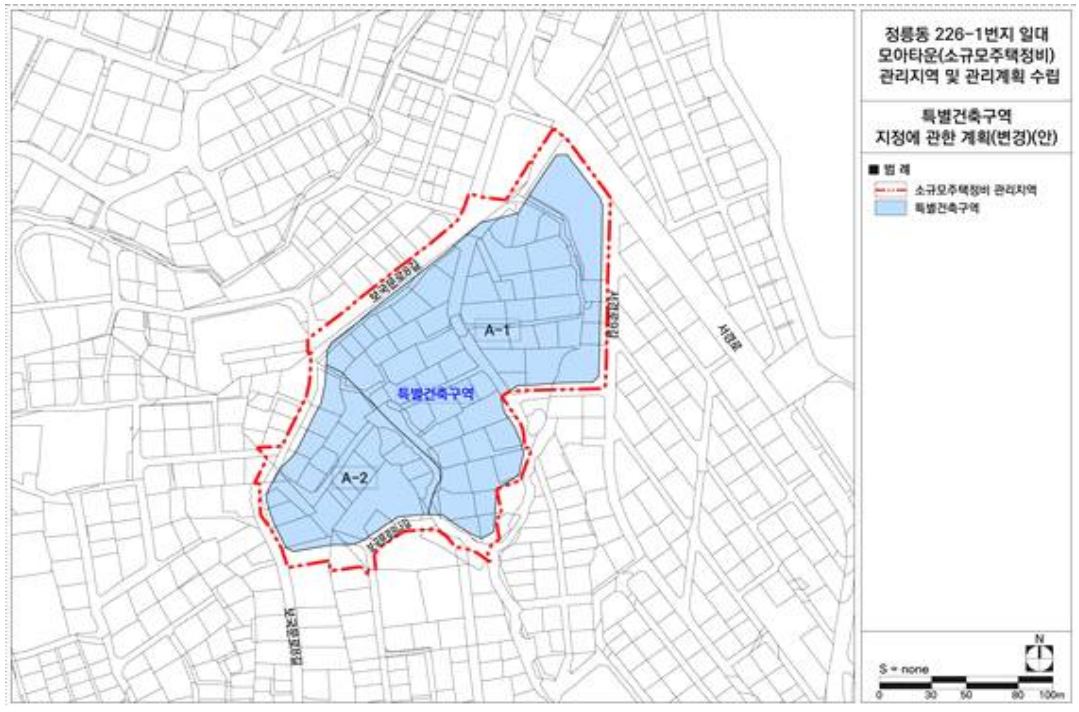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5호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원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따라 2026년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4.1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대	-	증) 34,254.2	34,254.2	

■ 구역 지정 사유서

구 분	위 치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신 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신길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 현황세대수:169세대 • 계획세대수:937세대 • 증) 768세대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34,254.2	100.0	
획지		28,919.1	84.4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777.1	14.0	
	도 로	1,777.1	5.2	
	공 원	3,000.0	8.8	어린이공원
존치 용지	소 계	558.0	1.6	
	종교 1	385.0	1.1	미스바성결교회
	종교 2	173.0	0.5	충일교회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4,254.2	-	34,254.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783.2	감) 27,745.6	5,037.6	14.7	
	제2종일반주거지역	1,471.0	감) 1,173.5	297.5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8,919.1	28,919.1	84.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분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783.2	5,037.6	• 정비구역 내 제2종(7층)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71.0	297.5	• 정비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919.1	• 기정 제2종(7층)주거지역을 일부를 제외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8	6	집산도로	151 (151)	신길동 323-2	신길동 325-65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4)	-
기정	소로	2	32	8	집산도로	- (247)	-	-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
변경	소로	2	32	8~12 (12)	집산도로	- (247)	-	-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폭원확장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36	15	보조간선	1,200 (204)	영등포동 634-1 (신길동 289-6)	신길동 321-13	일반도로	-	건고177 (62.12.8)	-
변경	중로	2	36	15~18 (18)	보조간선	1,200 (204)	영등포동 634-1 (신길동 289-6)	신길동 321-13	일반도로	-	건고177 (62.12.8)	폭원확장
신설	소로	3	A	4	국지도로	37.8	신길동 298-39	신길동 298-36	일반도로	-	-	도로신설
폐지	소로	2	37	8	국지도로	152	신길동 318-2	신길동 314-38	일반도로		건고768 (64.1.24)	

※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2	소로2-32	• 일부구간 폭원 확장 -B=8m→B=8~12m -정비구역내:L=4m, B=247m	• 가마산로61가길 차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도로 확폭
중로 2-36	중로2-36	• 일부구간 폭원 확장 -B=15m→B=15~18 -정비구역내:L=4, B=204	• 가마산로65가길 차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도로 확폭
-	소로3-A	• 도로 신설 -B=4m, L=37.8m	• 노선구분에 따른 도로 1개소 신설
소로2-37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구역 내 도로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신길동 310-51 일대	-	증) 3,000.0	3,000.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공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3,000.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2)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신길동 319-28 일대	266.0	감) 266.0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66.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계획으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종류	위치	기준면적(㎡)		계획면적(㎡)
			법정		
			기 준	면적(㎡)	
합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x 2.5㎡) x 1.25	2,928.13	7,826.84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획지	서울시 주택 조례 [별표1] (500~1000세대 미만) = 330㎡	330.00	341.20
	작은도서관	획지	서울시 주택 조례 [별표1] (500~1000세대 미만) = 158㎡	158.00	248.90
	어린이집	획지	서울시 주택 조례 [별표1] (500~1000세대 미만) = 330㎡	330.00	358.80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66.00	220.54

구 분	시설의종류	위치	기준면적(㎡)		계획면적(㎡)
			법정		
			기 준	면적(㎡)	
	주민운동시설	획지	옥외	-	1,750.00
	어린이놀이터	획지	옥외,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1,155.90	2,550.00
	개방형커뮤니티 (돌봄시설)	획지	-	-	780.00
부대 및 복리 시설	복리시설	획지	-	-	1,177.90
	관리사무소	획지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를 더한 면적	54.35	299.50
	경비실	획지	-	-	100.00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 거 이 주	
신설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34,254.2	영등포구 신길동 314-4번지 일원	225	2	-	223	-	

8.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계획	법적상한	
신설	신길 16-2 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34,254.2	획지	28,919.1	신길동 314-14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00 이하	299.94 이하	300.00 이하	38층 이하 (해발 125m 이하)
			종교1	385.0	신길동 308-1	종교시설	관계 법령에 따름			
			종교2	173.0	신길동 320-2	종교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937세대(분양 702세대, 임대 235세대)

구분	세대수	
	세대수(세대)	비율(%)
계	937	100.0
60㎡ 이하	525	56.0
60㎡초과~85㎡이하	412	44.0
85㎡ 초과	-	-

구분	건립규모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소계	40㎡이하	40㎡초과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835	125	38	87
구성비(%)	100.0	15.0	4.6	10.4
임대주택 구성비(%)	-	100.00	30.4	69.6

•85㎡이하 규모의 주택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 계획: 100.0%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 계획 : 세대수의 15%
※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102세대)
•전용면적 40㎡이하 비율※ [기준 : 임대 30%이상 또는 전체 5%이상] → 계획 : 임대 30.4%
※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102세대) 및 기부채납 주택(59세대) 제외
•국민주택규모(85㎡이하) 건설 [기준 : 초과 용적률의 50%이상] → 계획 : 51.9%

정비계획용적률	계획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의 50%	국민주택 규모 주택공급계획
271.8%	299.94%	28.14%	14.07% (4,068.92㎡)	14.61% (4,225.62㎡)

심의완화 사항

•기준용적률 완화 20.0%(소형주택확보 20.0%)
•허용용적률(30.4%)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0%(공공보행통로9.08%, 열린단지5%, 돌봄시설5%, BF인증5%), 사업성 보정계수 1.52 적용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00%(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공동주택용지
- 3m : 도신로, 가마산로61라길, 가마산로61길, 가마산로61가길, 가마산로65길, 공공보행통로(8m) 북측
- 5m : 가마산로61라길, 공공보행통로(8m) 남측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계획	법적상한	
			종교용지 - 종교시설1 : 3m / 종교시설2 : 1m							
기타 사항	• 공공보행통로 : 폭 8m(1개소), 폭 6m (1개소), 동서방향으로 조성 • 건축물 배치 제한구역 : 공공보행통로 연계, 가마산로61길변으로 남측 결절점에 열린공간(개방형 공개공지 형태)으로 조성 권장 [지역권 설정(등기) 등] • 차량진 · 출입구 : 가마산로61길, 가마산로65길 각 1개소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획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 · 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	유상매입면적(㎡)
		34,254.2	28,919.1	6,452.0	1,890.8	1,777.1	4,103.7	1,103.7
공동주택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환산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유상매입면적 = 6,452.0㎡ + 1,890.8㎡ - 1,777.1㎡ - 4,103.7㎡ + 1,103.70㎡ = 3,565.70㎡(10.41%) ※ 용도지역 상향 공공기여율 : 13.09%(용도지역 상향면적 28,919.1㎡)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이용 : 도로 1,777.1㎡, 어린이공원 : 3,000.0㎡ •임대주택(연면적 8,367.79㎡) 토지지분 : 1,674.9㎡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1,890.8㎡ = 임대주택 연면적(8,367.79㎡) × 표준건축비(지상 : 2,043,813원/㎡, 지하 : 1,024,000원/㎡) ÷ 부지가액(7,210,574원/㎡) = 1,890.8㎡					
		표준건축비	지상 : 2,043,813원/㎡ 지하 : 1,024,000원/㎡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3호) (지상건축비 : 2,043,813원/㎡ = 층별 계획세대 반영 평균 2,248,194원/㎡의 부가세 제외 금액)				
		기부채납 연면적	8,367.79㎡	▷지상 : 4,966.79㎡, 지하 : 3,401.00㎡				
		부지가액	7,210,574원/㎡	▷2025년 구역 평균공시지가X2.1(추정분담금 추정 보정율)				
	기준용적률	•210.0% : 190% + 20%(기준용적률 완화) - '2030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소형주택 추가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20.0%) 적용 (40㎡이하 6.4%, 40~50㎡이하 7.7%, 50~60이하 10.0%)						

구 분		산 정 내 용
	허용용적률	•240.4% : 210.0% + (20% x 1.52) - 서울시 대지 평균 공시지가 5,969,319원 / 구역내 대지 평균공시지가 3,928,390원 = 1.52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공공보행통로(9.08%), 열린단지(5%), 돌봄시설(5%), BF인증(5%)
	상한 용적률	•271.8% : 240.4% + 31.4% = 허용용적률 + [기본계획 허용용적률 x (1.3 x 가중치 × α토지 + 0.7~1.0 × α건축물)] = 240.4% + [210% x (1.3 x 1.0 x 0.0615) + (1 x 0.0694)]
		•가중치 : 1.0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210%)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210%) •계수(0.7~1) : 1(임대주택) •α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대지면적-임대주택 토지지분) - α토지 : 0.0615 = 1,674.9㎡ / (28,919.1㎡-1,674.9㎡) - α건축물 : 0.0694 = 1,890.8㎡ / (28,919.1㎡-1,674.9㎡)
	법적상한 용적률	•299.94% 이하

1) 용도지역별 토지 순부담에 관한 사항

구분		제2종(7층)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합계	비 고
정비기반 시설 (A)	도로	1,483.1㎡	294.0㎡	-	1,777.1㎡	
	공원	3,000.0㎡	-	-	3,000.0㎡	어린이공원
국공유지(B)		5,586.8㎡	294.0㎡	-	5,880.8㎡	
소계(A-B)		-1,103.7㎡	-	-	-1,103.7㎡	유상매입처리
기반시설	임대주택 (토지지분)	-	-	1,674.9㎡	1,674.9㎡	
	임대주택 (건축물환산면적)	-	-	1,890.8㎡	1,890.8㎡	
총합계		-	-	3,565.7㎡	3,565.7㎡	

2) 건축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구분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산정근거
임대주택	1,890.8㎡	공사비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 : 미적용) - 지상 : 2,043,813원/㎡(층별 계획세대별 반영 평균 2,248,194원/㎡, 부가세 제외) - 지하 : 1,024,000원/㎡ 환산부지 면적 :1,890.8㎡ - 지상 : (기부채납 연면적(4,966.8㎡) x ㎡당 설치비용(2,043,813원)) / (공시지가(7,210,574원/㎡) - 지하 : (기부채납 연면적(3,401.0㎡) x ㎡당 설치비용(1,024,000원)) / (공시지가(7,210,574원/㎡) ※ 공시지가(7,210,574원/㎡) : 2025년 구역 평균공시지가 X 2.1(추정분담금 추정 보정율)

3) 가중치 및 a토지·건축물 산정근거

구분	계획(안)
공공임대주택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210.0%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210.0%
가중치	210.0% / 210.0% = 1
a건축물	1,890.8㎡/(28,919.1㎡-1,674.9㎡) = 0.0694
a토지	1,674.9㎡/(28,919.1㎡-1,674.9㎡) = 0.0615

4) 기준용적률 완화(분양주택)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40㎡ 이하	▸기준용적를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53.87㎡(39㎡ 공급)×36세대/28,919.1㎡(대지) = 6.7%	최대 10%
40㎡~50㎡ 이하	▸기준용적를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67.37㎡(49㎡ 공급)×186세대/28,919.1㎡(대지) = 43.3% = 15.0%	최대 15%
50~60㎡ 이하	▸기준용적를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80.87㎡(59㎡ 공급)×126세대/28,919.1㎡(대지) = 35.2% = 10.0%	최대 10%

5) 허용용적률 산출근거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보행 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 a = 1이하 -적용 : 190.00% X (1,381.4/28,919.1) X 1 = 9.08% = 9.08%	10%p 이내
열린단지	▸단지 주변으로 개방되어 소통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함 -기준 : 5%(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 -적용 : 5%	5%p 이내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a ※ a = 0.1이하 -적용 : 190% X (780.0/2,928.1) X 0.1 = 5.06% = 5%	5%p 이내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적용 : 최우수등급 5%	5%p 이내
사업성 보정계수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적용 : 5,969,319 / 3,928,390 = 1.5195 ≒ 1.52	최대 2.0

6) 기부채납 계획

구분	시설명	시 설 규 모	산출 근거	비 고
도로	중로 2-36	•B=15→18m, L=170m	-	-
	소로 2-32	•B=8→8~12m, L=240m	-	-
공원		•공원 신설 면적 : 3,000㎡	-	어린이공원
공공임대주택		•49㎡=23세대, 59㎡=21세대 84㎡=15세대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 (층별건축비 평균, 2,043,813원/㎡(부가세 제외))	공동주택용지 내

9.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북측 '도신로' 상 신호교차로 설치
	Ⓐ Ⓐ2	▸사업지 주변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동측 가마산로65길 : 폭 15m→18m, 연장 190.0m, 왕복3차로 ・서측 가마산로 61길 : 폭 8m→12m, 연장 240.0m, 왕복2~3차로
	-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현시 최적화방안 수립제시(4개소)
진출입 동선	Ⓑ Ⓑ2	▸사업지 출입구 2개소 계획 ・사업지 동측 출입구 : 사업지 동측 가마산로65길 상 4지 형태 비신호 교차로 계획, 왕복 2차로 운영(진입1차로(4.0m), 진출1차로(4.0m)),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확보 ・사업지 서측 출입구 : 사업지 서측 가마산로61길 상 4지형태 비신호 교차로 계획, 왕복2차로 운영(진입1차로(4.0m), 진출1차로(4.0m)),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확보
보행	-	▸사업지 전면 보도형 전면공지 3.0~5.0m 계획
	-	▸출입구 및 횡단 단절 지점 횡단보도 신설 및 연장(9개소)
	-	▸사업지 서측 가마산로61길 상 턱낮춤 보도 설치(130m)
자전거		▸사업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법정의20% 확보) ※ 보관소 인근 편의시설 설치(공기주입기 등)
주차 시설	-	▸적정 규모의 주차대수 확보 ・법정주차대수 : 902대 / 주차수요대수(2031년) : 1,080대 / 계획주차 : 1,257대 (세대당1.32대) (공동주택 : 1,240대, 근린생활시설 : 17대) - 법정주차의 149.9%, 주차수요의 115.5% 규모 확보, 확장형 주차 계획대수의 30%이상 확보, 가족배려주차 계획대수의 10%이상 확보, 경형주차 계획대수의 10%미만 확보, 장애인주차 법정주차대수의 3.0%이상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사업지 주변도로 상 과속방지턱 설치(2개소)
	-	▸주차램프 진출부에 차량 경보등 설치
	-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계기관 협의 후 시행)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 균형 고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 기존 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구역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 유입을 최소화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산사태	• 해당없음	
	화재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도림초등학교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영향을 초래하는 시설설치 지양 •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 학습권을 보호 •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안전 대책 수립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 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15m

12. 정비구역 분할·통합·결합 시행의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225	213	12	225	225	-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264	169	80	89	365	192	173	
단독주택	213	151	70	81	314	153	161	
공동주택	34	9	6	3	27	21	6	
근생/업무	17	9	7	2	24	18	6	

3)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업무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소계	근생	업무
합 계		169	151	151		-	9	-	-	9	-	9	9	-
60㎡ 이하	소계	100	94	42	52	-	-	-	-	-	-	6	6	-
	30㎡이하	5	5	2	3	-	-	-	-	-	-	-	-	-
	30㎡초과~50㎡이하	60	57	29	28	-	-	-	-	-	-	3	3	-
	50㎡초과~60㎡이하	35	32	11	21	-	-	-	-	-	-	3	3	-
60㎡초과~85㎡이하		48	45	23	22	-	2	-	-	2	-	1	1	-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업무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소계	근생	업무
85㎡ 초과	소계	21	12	1	11	-	7	-	-	7	-	2	2	-
	85㎡초과~135㎡이하	11	8	1	7	-	3	-	-	3	-	-	-	-
	135㎡초과	10	4	-	4	-	4	-	-	4	-	2	2	-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고
					소계	의무임대	기부채납	국민주택	
합계		937	287	415	235	125	59	51	
60㎡이하	소계	525	97	251	177	95	44	38	
	39㎡	81	-	36	45	38	-	7	
	49㎡	247	26	160	61	27	23	11	
	59㎡	197	71	55	71	30	21	20	
60㎡~85㎡	소계	412	190	164	58	30	15	13	
	84㎡	412	190	164	58	30	15	13	

14.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도입 및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에 따름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	• 단지 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등 환경설계를 통한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 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지하주차장 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 •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 산책로 및 보행 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1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획지	획지	28,91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원	28,919.1	공동주택 및 편의시설
	종교1	385.0	신길동308-1	385.0	종교시설
	종교2	173.0	신길동320-2	173.0	종교시설

17.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계획

가. 임대주택 건설 계획

1) 의무 임대주택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835세대 [937-102(법적상한 증가분)] •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125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937-102]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835세대×15% = 125세대 또는 28,919.1㎡ X 271.80% X 10.0% = 7,860.21㎡ 이상 ∴ 125세대, 9,730.75㎡ 계획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계획 : 38세대 = 125세대 ×30% = 37.5세대 또는 835세대 × 5% = 41.75세대 이상 ∴ 38세대 계획 > 37.5세대(임대주택 세대수의 30%)

■ 의무임대주택 세대수 산정

건립 규모		세대수(세대)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125	15.0 %	100.00%
40㎡ 이하	39㎡	38	4.6%	30.4%
40㎡~60㎡이하	49㎡	27	3.2%	21.6%
	59㎡	30	3.6%	24.0%
60㎡~85㎡ 이하	84㎡	30	3.6%	24.0%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무임대주택 연면적 산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8">계 획</th></tr>
<tr><td>부지면적</td><td colspan="8">28,919.1㎡</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8">271.8%</td></tr>
<tr><td>확보의무면적</td><td colspan="8">= 28,919.1 X (271.80%) X 10.0% = 7,860.21㎡이상</td></tr>
<tr><td rowspan="6">임대주택 면적</td><td colspan="2">전용</td><td>공급면적</td><td colspan="2">세대수(세대)</td><td colspan="2">연면적(㎡)</td><td></td></tr>
<tr><td rowspan="4">의무
임대주택</td><td>39㎡</td><td>53.87㎡</td><td>38</td><td rowspan="4">125</td><td>2,047.06</td><td rowspan="4">9,730.75</td></tr>
<tr><td>49㎡</td><td>67.37㎡</td><td>27</td><td>1,818.99</td></tr>
<tr><td>59㎡</td><td>80.87㎡</td><td>30</td><td>2,426.10</td></tr>
<tr><td>84㎡</td><td>114.62㎡</td><td>30</td><td>3,438.60</td></tr>
<tr><td colspan="8">→ 9,730.75㎡ 〉 7,860.21㎡</td></tr>
</table>

2) 기부채납 임대주택

전용	공급면적	세대수(세대)		기부채납 면적(㎡)	
				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대지지분
49㎡	67.37㎡	23	59	1,890.8㎡ -지상 연면적 4,966.8㎡ -지하 연면적 3,401.0㎡	1,674.9㎡
59㎡	80.87㎡	21			
84㎡	114.62㎡	15			

※ 기부채납 주택 면적 산출근거

- 기부채납 주택 전체 연면적 : 8,367.8㎡
- 대지지분
  =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8,367.8㎡/144,482.15㎡)×대지면적(28,919.1㎡)
  = 1,674.9㎡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임대주택 전체 연면적(8,367.8㎡) × 표준건축비(지상:2,043,813원/㎡, 지하:1,024,000원/㎡) ÷ 부지가액(7,210,574원/㎡)
  = 1,890.8㎡

표준건축비	지상 : 2,043,813원/㎡ 지하 : 1,024,000원/㎡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 (지상 : 층별 계획세대별 반영 평균 2,248,194원/㎡, 부가세 제외) ※ 산정시 지상연면적 공사비 부가세 제외
임대주택 연면적	8,367.8㎡	▷ 지상 : 4,966.79㎡, 지하 : 3,401.00㎡
부지가액	7,210,574원/㎡	▷ 2025년 구역 평균 공시지가 X 추정분담금 추정 보정률(2.1)

3)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5">계 획</th></tr>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299.94%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71.80% 이하</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99.94% - 271.80% = 28.14%</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28.14% × 0.5 = 14.07%
28,919.1㎡ × 14.07% = 4,068.92㎡</td></tr>
<tr><td>의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td><td colspan="5">4,068.92㎡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6">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39.90㎡</td><td>53.87㎡</td><td>7세대</td><td>377.09㎡</td><td></td></tr>
<tr><td>49.90㎡</td><td>67.37㎡</td><td>11세대</td><td>741.07㎡</td><td></td></tr>
<tr><td>59.90㎡</td><td>80.87㎡</td><td>20세대</td><td>1,617.40㎡</td><td></td></tr>
<tr><td>84.90㎡</td><td>114.62㎡</td><td>13세대</td><td>1,490.06㎡</td><td></td></tr>
<tr><td colspan="2">계</td><td>51세대</td><td>4,225.62㎡</td><td>≧4,068.92㎡</td></tr>
</table>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8.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비고
비오톱 및 동·식물	·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동식물상 보호 · 자연환경 보전	◦현존식생도 : 시가화지역 ◦비오톱유형 : 주거지 비오톱,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 ◦비오톱유형평가도 : 4, 5등급 ◦녹지공간 확충 필요	◦공원조성, 조경녹지 조성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해 생태적 네트워크 기능을 확보해 비오톱 공간 조성	-
녹지 네트워크	· 녹지 · 수생태 연결성 확보	◦생태적 가치를 갖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음 ◦서측 도림천과 남측 소공원 및 신길 근린공원과의 생태적 가교환경 형성	◦사업대상지 내 공원 및 조경 녹지 조성 등을 통해 공원, 녹지공간과의 생태네트워크 형성	-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영등포구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사업 대상지 내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이 없음 ◦공사 시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	◦공사 시 건설장비 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서 정비 ◦불가피하게 폐유 보관 시 폐유보관소 설치 후 위탁처리	-
지형 · 지질	· 지형 · 지질 영향 최소화	◦표고 : 최저 12.0m, 최고 19.2m로 7.2m의 표고차 ◦경사 : 3.5° 미만의 완만한 지형 ◦공사 시 부지조성 및 지하층 터파기에 따른 사토가 발생함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동 등 물리적 변화 최소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토사 처리	-
물순환	· 자연물순환 유지	◦불투수토양포장도 90%이상 지역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로 강우시 지표흡수를 통한 물순환이 어려움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내포한 자연지반, 인공지반, 및 녹지를 조성할 계획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토사 처리	-
수질	· 수질오염 최소화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안양천9' BOD 기준 Ia(매우좋음)~V(나쁨)등급, '도림천' BOD 기준 Ia(매우좋음)~II(약간좋음)등급 ◦공사 시 및 운영시 오수 발생,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저영향개발(LID:LowImpact Development)기법을 반영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	-
바람 · 열	· 기후변화 대응	◦평균기온 13.6℃, 강수량 1,271.6mm, 상대습도 61.8%, 풍속 2.3m/sec, 일조시간 2,404.8hr ◦바람기능 공간 유형 : 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가 혼합 ◦열환경 공간유형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이하 주거지	◦단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해 내부로 최대한 바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바람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미기후 개선 효과를 도모 할 계획임	-
대기질 · 악취	· 대기오염 최소화	◦영등포구 자동측정망 2024년 1년 평균 데이터 값 PM-2.5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사 시 부지정지 작업, 토사이동, 건설장비 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 시 이동오염원(유발교통량) 및 고정오염원(에너지 사용)에 의한 대기질 영향 발생	◦공사 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저감방안 수립 ◦운영 시 : 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온실가스 · 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효율 극대화	◦서울특별시 2022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727천tonCO2eq ◦사업시행 시 건축물 연료사용, 전력사용량에 의한 온실가스 영향 발생	◦운영 시 :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녹지조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비고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 최소화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에 의한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오일 교체 등에 따른 폐유 발생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분별 해체 노력 ◦건축물 신축 시 친환경자재 및 순환골재 활용 ◦운영 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확보	-
소음 · 진동	· 소음 · 진동 최소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 측정망 일반 "다" 지역의 야간기준(55dB(A))을 초과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차음성능 우수한 창호 설치 및 방음방진 설비 계획 수립	-

1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사업대상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사유지) 내에는 자연적인 식재,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여 보호수 또는 양호한 수목이 전무한 상태임

연번	수종	규모	본수	활용계획	비고
-	-	-	-	해당없음	-

2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인구 (명)			주택수 (호)	
현황	가구당 인구※	계획	현황	계획
365	2.08	1,996	247	937

※ 가구당 인구
-현황 : 영등포구 신길3동 세대당 인구 2.13인(2024년 통계연보) 적용
-계획 : 통계청 장래가구 및 인구 추계 2031년 서울시 평균 2.13인/가구

21.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신길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대	-	증) 34,254.2	34,254.2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34,254.2	100.0	
획지		28,919.1	84.4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777.1	14.0	
	도 로	1,777.1	5.2	
	공 원	3,000.0	8.8	어린이공원
존치 용지	소 계	558.0	1.6	
	종교 1	385.0	1.1	미스바성결교회
	종교 2	173.0	0.5	충일교회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4,254.2	-	34,254.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783.2	감) 27,745.6	5,037.6	14.7	
	제2종일반주거지역	1,471.0	감) 1,173.5	297.5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8,919.1	28,919.1	84.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분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783.2	5,037.6	• 정비구역 내 제2종(7층)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71.0	297.5	• 정비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919.1	• 기정 제2종(7층)주거지역을 일부를 제외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8	6	집산도로	151 (151)	신길동 323-2	신길동 325-65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4)	-
기정	소로	2	32	8	집산도로	- (247)	-	-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
변경	소로	2	32	8~12 (12)	집산도로	- (247)	-	-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폭원확장
기정	중로	2	36	15	보조 간선	1,200 (204)	영등포동 634-1 (신길동 289-6)	신길동 321-13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
변경	중로	2	36	15~18 (18)	보조간선	1,200 (204)	영등포동 634-1 (신길동 289-6)	신길동 321-13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폭원확장
신설	소로	3	A	4	국지도로	37.8	신길동 298-39	신길동 298-36	일반 도로	-	-	도로신설
폐지	소로	2	37	8	국지 도로	152	신길동 318-2	신길동 314-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2	소로2-32	• 일부구간 폭원 확장 -B=8m→B=8~12m -정비구역내:L=4m, B=247m	• 가마산로61가길 차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도로 확폭
중로 2-36	중로2-36	• 일부구간 폭원 확장 -B=15m→B=15~18 -정비구역내:L=4, B=204	• 가마산로65가길 차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도로 확폭
-	소로3-A	• 도로 신설 -B=4m, L=37.8m	• 노선구분에 따른 도로 1개소 신설
소로2-37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구역 내 도로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어린이공원	신길동 310-51 일대	-	증) 3,000.0	3,000.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3,000.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2)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신길동 319-28 일대	266.0	감) 266.0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66.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계획으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면적	획지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29,477.1	획지	신길동 314-14 번지 일대	28,919.1	공동주택
		종교1	신길동308-1	385.0	종교시설
		종교2	신길동320-2	173.0	종교시설

6.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신설	획지	28,919.1	신길동 314-14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00 이하	210.0	240.4	271.8	300.0	38층이하 /해발 125m이하
	종교1	385.0	신길동308-1	종교시설	관계 법령에 따름					
	종교2	173.0	신길동320-2	종교시설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신설	건축한계선	획지1	• 3m : 도신로, 가마산로61라길, 가마산로61길, 가마산로61가길, 가마산로65길, 공공보행통로(8m) 북측 • 5m : 가마산로61라길, 공공보행통로(8m) 남측
신설	건축한계선	종교시설1	• 3m
신설	건축한계선	종교시설2	• 1m

8.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공동주택 도로변 등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내	• 폭 8m(1개소), 폭 6m(1개소) 동서방향으로 조성[지역권설정(등기)]
건축배치 제한구역	공동주택 내	• 공공보행통로 연계, 가마산로61길변으로 남측 결절점에 열린공간(개방형 공개공지 형태)으로 조성 권장(지역권 설정(등기) 등)

Ⅲ. 2026년 제5차(`26.04.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수정사항	•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주택공급 계획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하였음	반영
	• 공공보행통로를 폭 5m, 10m에서 6~8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5m → 6m, 10m → 8m로 조성하고, 건축한계선 3m, 5m 계획하였음 • 심의의견 결정사항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공공보행통로 축소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BF인증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 공공공지는 공원으로 변경 결정	• 공공공지 공원으로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였음	반영
조건사항	• 공개공지를 건축배치 제한구역으로 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	• 공개공지 건축배치 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 열린 공간(개방형 공개공지 형태)으로 조성 권장하고, 지역권 설정(등기)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가마산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해당 구간 교차로 설치를 최소화하고, 접근도로가 필요할 경우 가마산로65길을 활용한 진출입 체계를 검토할 것. 단, 인근 학교 보행로와의 간섭 및 학생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할 것	• 가마산로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해당 구간 교차로 설치 최소화 하였음 • 인근 학교 보행로와의 간섭 및 교통흐름 등과 학생 안전대책 수립하여 가마산로65길을 활용하는 진출입체계 최소화 계획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사업통합심의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추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대상지에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를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설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음	추후반영

– 이 하 여 백 –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9), 영등포구 재개발사업과(☎02-2670-3531)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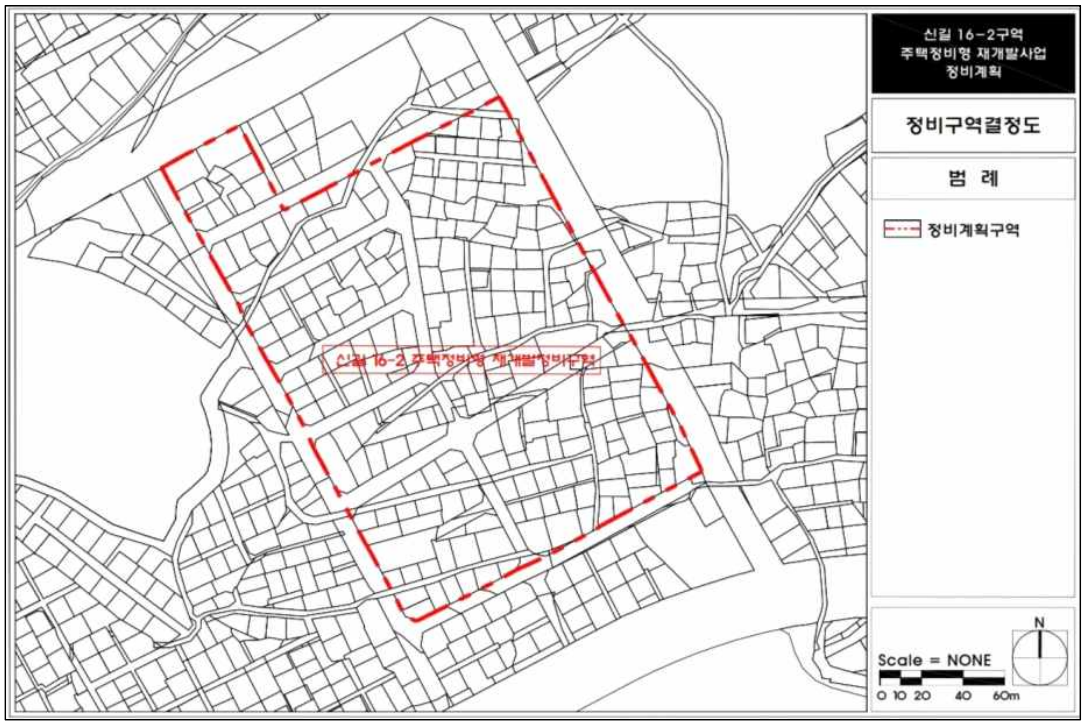

[정비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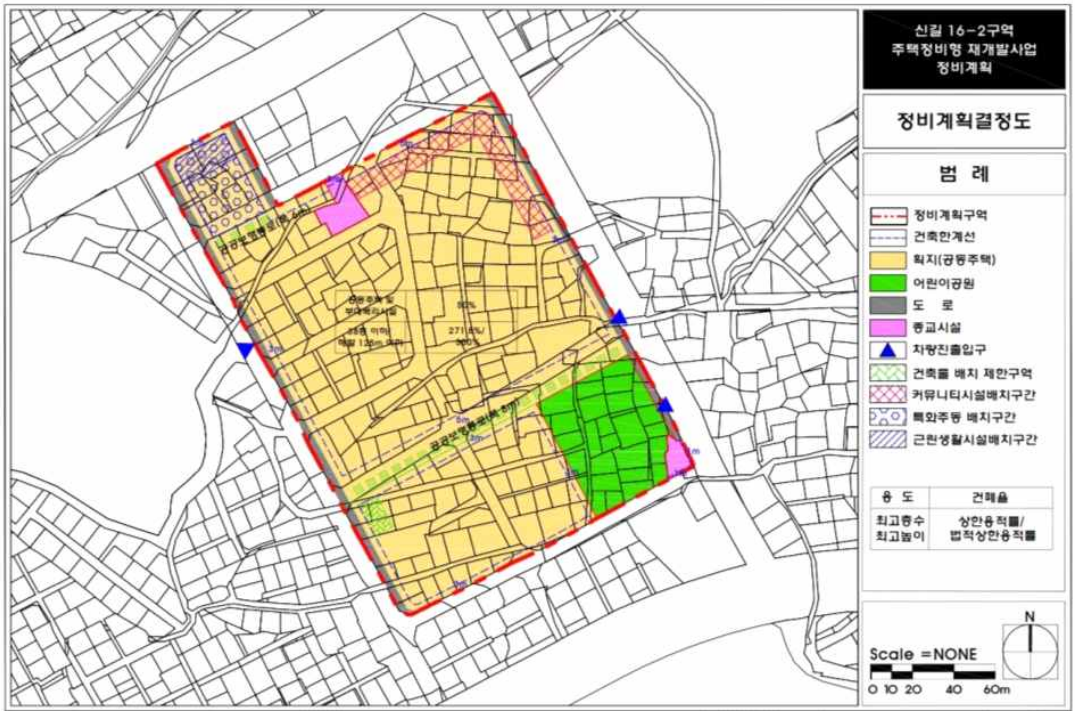

[용도지역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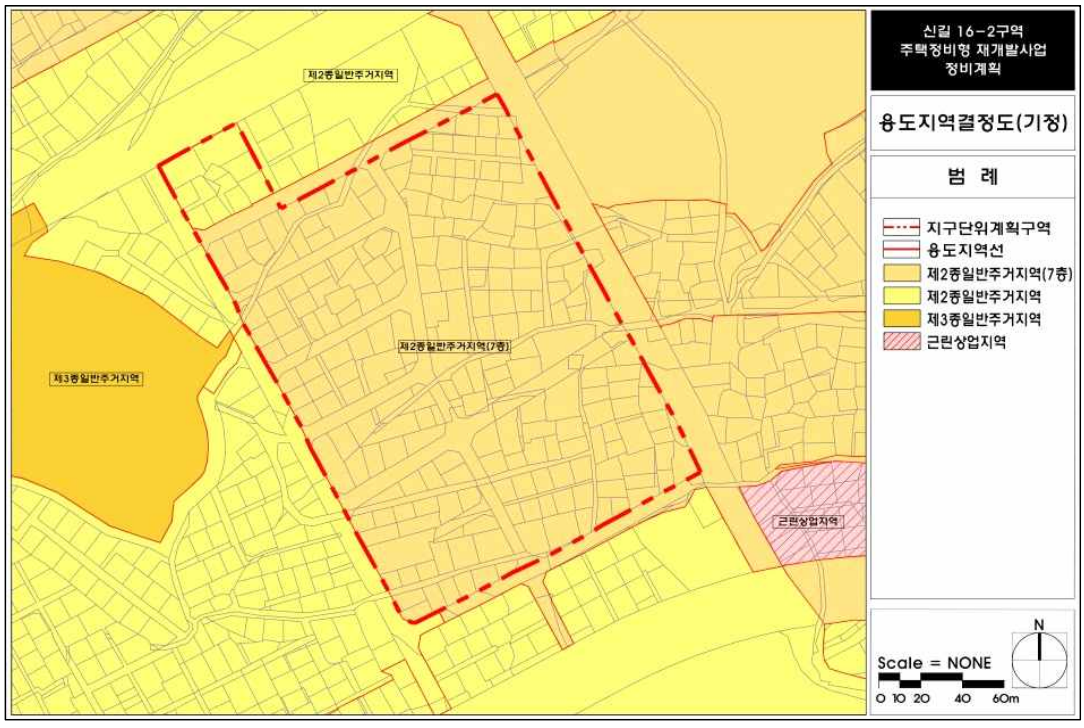

[용도지역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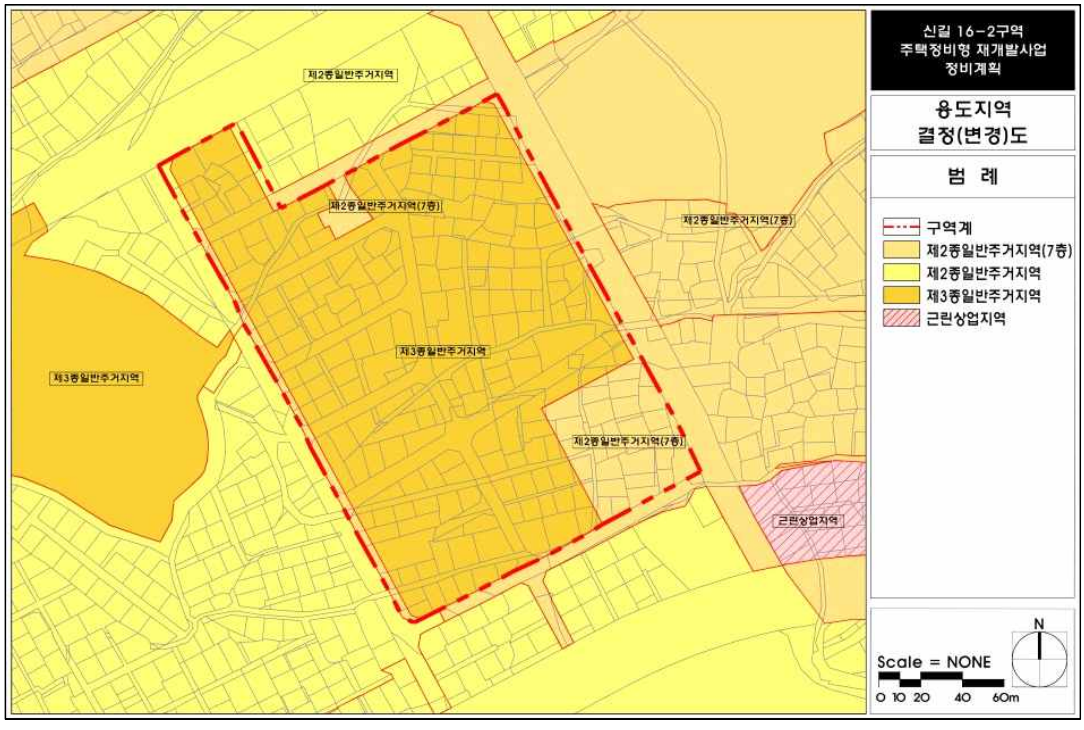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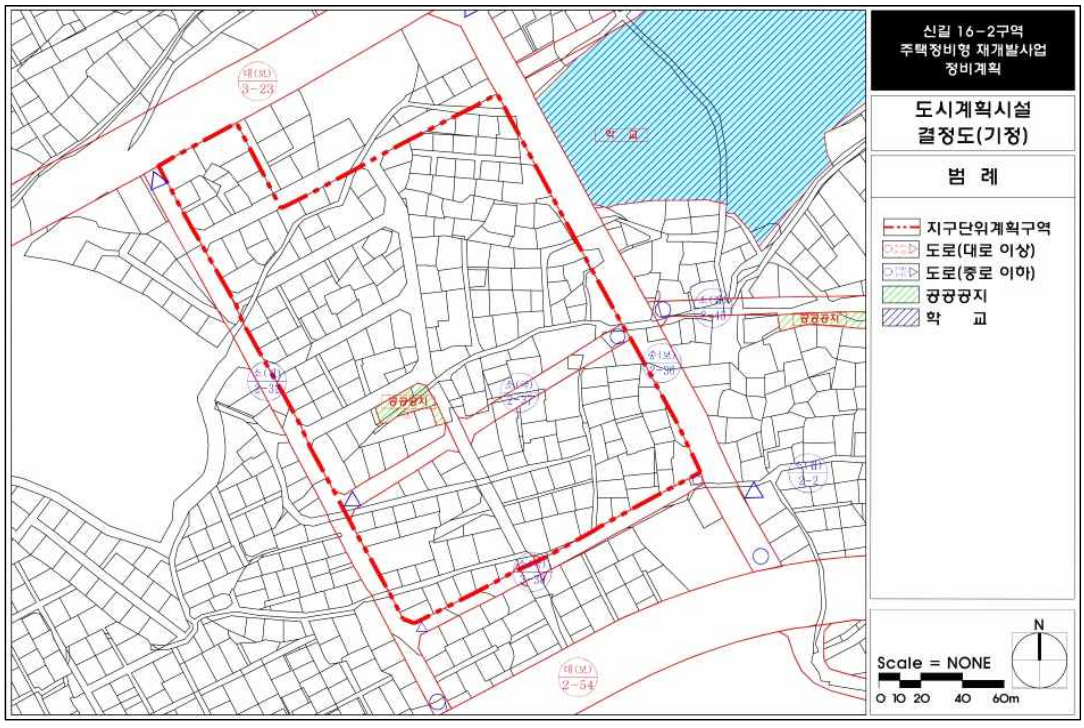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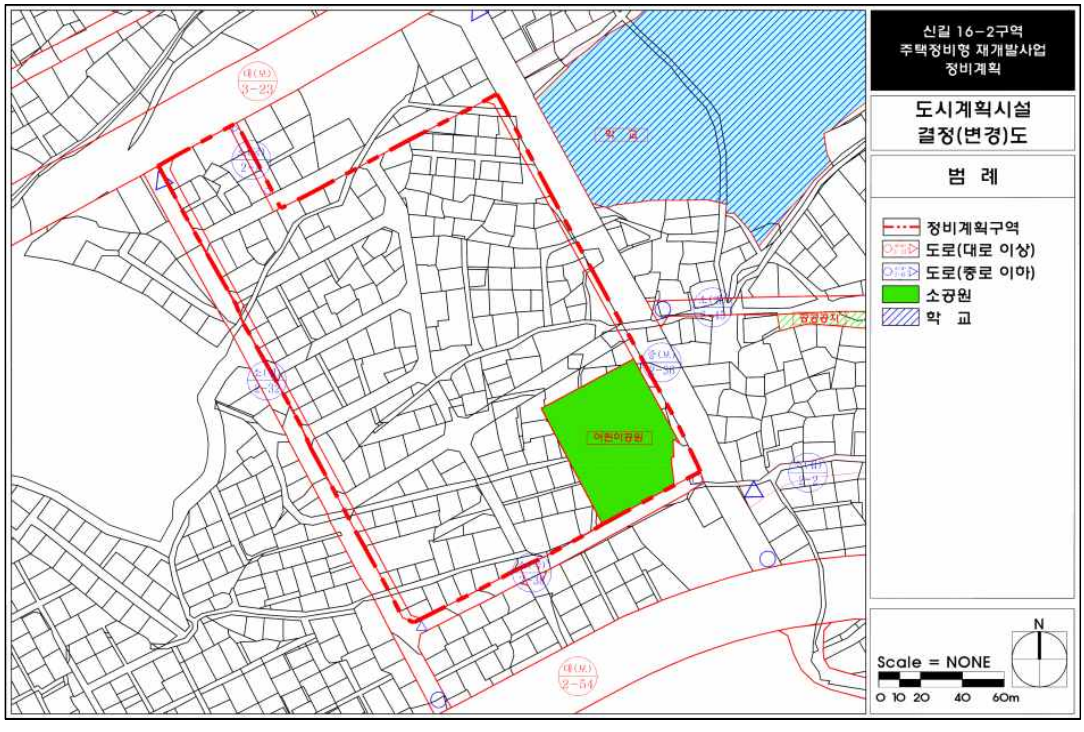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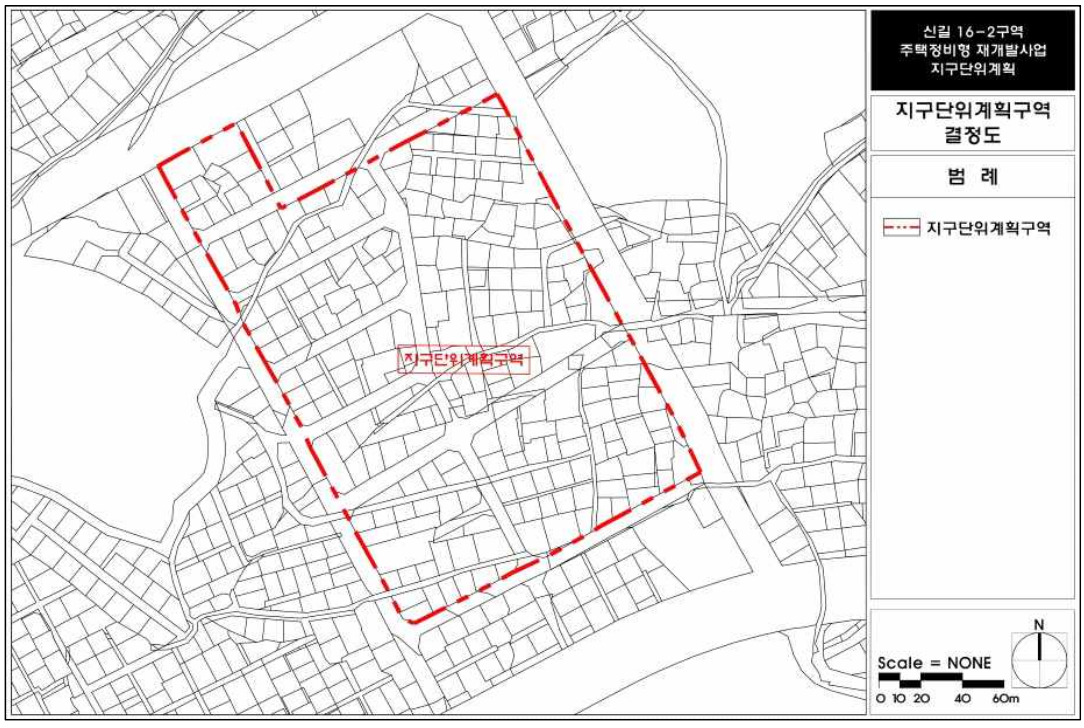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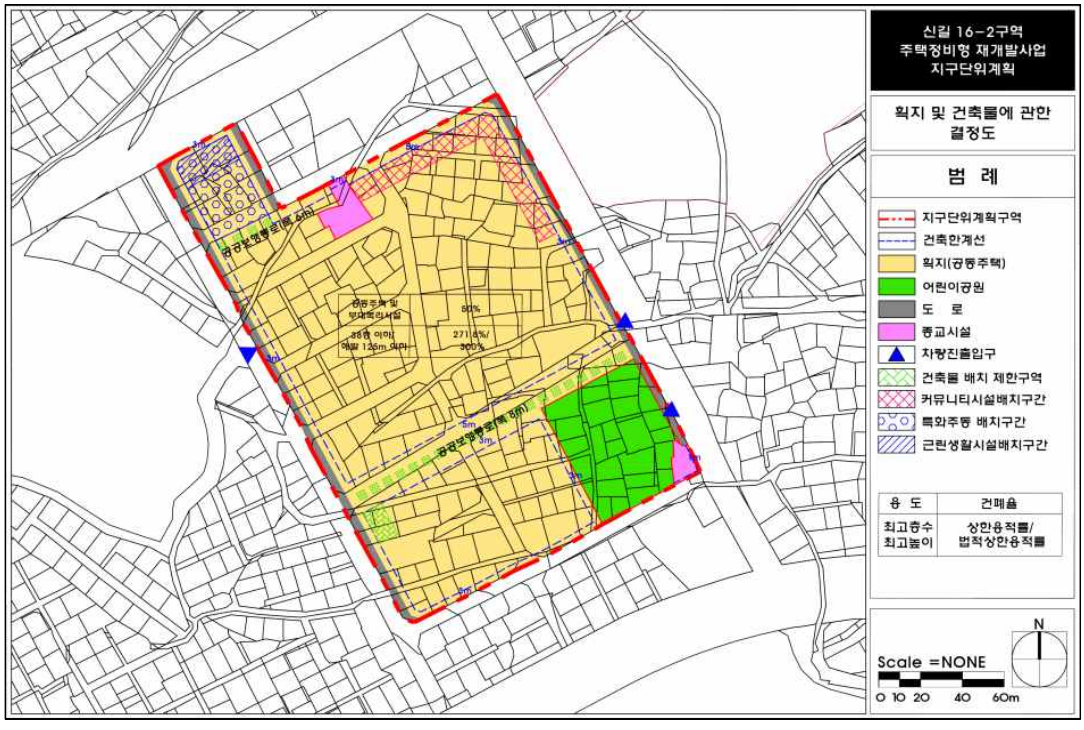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6호

어울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01.)로 조성계획결정된 어울숲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한 어울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 어울숲근린공원의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도심 속 거점공원으로 놀이·여가문화를 확산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69-8번지 일원
3. 면 적
   - 기 정: 13,774.4㎡
   - 변 경: 14,164.0㎡ (증 389.6㎡)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5) 및 영등포구 정원도시과(☎02-2670-3769)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울숲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69-8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3,774.4	3,669.3	1	45.0	45.0	93	14,164.0	4,928.0	2	614.4	614.4	94	증(1,258.7㎡) 증(1기)
기반시설	소 계	2,376.8	2,376.8					2,701.8	2,701.8					증(325.0㎡)
	도 로	1,664.0	1,664.0					1,989.0	1,989.0					증(325.0㎡)
	광 장	712.8	712.8					712.8	712.8					
조경시설		307.0	307.0				8	147.3	147.3				8	감(159.7㎡)
휴양시설		178.8	178.8				35	150.0	150.0				34	감(28.8㎡)
유희시설		204.8	204.8				4	1,313.9	1,313.9	1	569.4	569.4	4	증(1,109.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501.6	501.6				4	501.6	501.6				4	
교양시설	-	-					-	-					
편익시설	100.3	100.3	1	45.0	45.0	1	113.4	113.4	1	45.0	45.0	3	증(13.1㎡)
관리시설						41						41	
녹지 및 기타	10,105.1	10,105.1					9,236.0	9,236.0					감(869.1㎡)
시설율 (법정 40%)	(3,669.3 / 13,774.4) × 100 = 26.64%						(4,928.0 / 14,164.0) × 100 = 34.79%						
건폐율 (법정 10%)	(45.0 / 13,774.4) × 100 = 0.327%						(614.4 / 14,164.0) × 100 = 4.33%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3,774.4	3,669.3			45.0	45.0	93			14,164.0	4,928.0			614.4	614.4	89	감(4기)
기반시설	소 계			2,376.8	2,376.8								2,701.8	2,701.8						증(325.0㎡)
	도로	산~13	전지역	1,664.0	1,664.0						산1~24	전지역	1,989.0	1,989.0						증(325.0㎡)
	광장	가	-	712.8	712.8						가	-	712.8	712.8						
	진입광장	가-1	대상지북측	271.6	271.6						가-1	대상지북측	271.6	271.6						
	진입광장	가-2	대상지서측	441.2	441.2						가-2	대상지서측	441.2	441.2						
조경시설	소 계			307.0	307.0					8			147.3	147.3					8	감(159.7㎡)
	초화원	나		268.0	268.0						나		108.3	108.3						감(159.7㎡)
	플랜터	①	대상지북측, 바	39.0	39.0	석재				8	①	대상지북측, 바	39.0	39.0	석재				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178.8	178.8					35			150.0	150.0					34	증(28.8㎡) 감(1기)
	휴게공간	다-1		100.9	100.9						다-1		100.9	100.9						
	휴게공간	다-2		57.8	57.8						다-2		12.9	12.9						감(44.9㎡)
	휴게공간	다-3		17.0	17.0						다-3		17.0	17.0						
	휴게공간										다-4		11.9	11.9						증(11.9㎡) 현황반영
	휴게공간										다-5		4.2	4.2						증(4.2㎡) 현황반영
	앉음벽	②	다-1	3.1	3.1					2	②	다-1	3.1	3.1					2	
	파고라	③	다-1,2,3							4	③	다-1,2,3							3	감(1기)
	등의자	④	전지역							29	④	전지역							2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소 계			204.8	204.8					4			1,313.9	1,313.9		1동	569.4	569.4	4	증(1,109.1㎡) 감(3기)
	유아놀이터	라	대상지동측	204.8	204.8															감(204.8㎡) 폐지
	조합놀이대	⑤	라							1	⑤	라							1	
	그네	⑥	라							1	⑥	라							1	
	흔들놀이대	⑦	라							1	⑦	라							1	
	흔들놀이대	⑧	라							1	⑧	라							1	
	실내놀이터										아		774.3	774.3		1동	569.4	569.4		증(774.3㎡) 신설
	놀이터										타	대상지동측	539.6	539.6						증(539.6㎡)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야외시설	소 계			501.6	501.6					4			501.6	501.6					4	
	다목적운동장	마	대상지중앙	501.6	501.6						마	대상지중앙	501.6	501.6						
	체력단련시설-1	⑨	마			STS				1	⑨	마			STS				1	
	체력단련시설-2	⑩	마			STS				1	⑩	마			STS				1	
	체력단련시설-3	⑪	마			STS				1	⑪	마			STS				1	
	체력단련시설-4	⑫	마			STS				1	⑫	마			STS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 계			100.3	100.3			45.0	45.0	1			113.4	113.4			45.0	45.0	3	증(13.1㎡)
	화장실	바	대상지남측	98.2	98.2		1동	45.0	45.0		바	대상지남측	98.2	98.2		1동	45.0	45.0		
	음수장	사	다-2	2.1	2.1															폐지,감(2.1㎡)
	음수대	⑬	다-2							1	⑬	나							1	
	세족시설										자	대상지 중앙	15.2	15.2						증(15.2㎡) 현황반영
	세족장										⑲	자							1	증(1기) 현황반영
	음수대										⑳	차							1	증(1기)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41									41	
	공원안내판	⑭	라							1	⑭	라							1	
	이용안내판	⑮	가-1,2, 나							3	⑮	가-1,2, 산책로-2							3	
	공원등	⑯	전지역							33	⑯	전지역							33	
	CCTV	⑰	대상지 북,서,동측							3	⑰	대상지 북,서,동측							3	
	분전함	⑱	바							1	⑱	바							1	
녹지기타	소 계			10,105.1	10,105.1								9,236.0	9,236.0						감(869.1㎡)
	녹지		전지역	10,105.1	10,105.1							전지역	9,236.0	9,236.0						감(869.1㎡)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653.0	1,664.0				
변경					851.0	1,966.0				증(302.0㎡)
당초	산책로	3	1	4	70	282.0	진입로	가마산로	산-3	가각부2
변경		3	1	4	80	335.0	진입로	가마산로	산-3	가각부15
당초		3	2	2	10	27.0	연결로	산-1	산-3	가각부7
변경		3	2	2	11	30.0	연결로	산-1	산-3	가각부8
당초		3	3	2~3	270	756.0	순환로	가-2	가-2	
변경		3	3	2~3	275	775.0	순환로	가-2	가-2	증(19.0㎡)
당초		3	4	2	2.5	5.0	연결로	산-3	바	
변경		3	4	2	2.5	5.0	연결로	산-3	바	
당초		3	5	2	2.5	5.0	연결로	산-3	바	
변경		3	5	2	2.5	5.0	연결로	산-3	바	
당초		3	6	2	67	158.0	연결로	가-2	산-3	가각부24
변경		3	6	2	51	119.0	연결로	가-2	산-3	감(39.0㎡)
당초		3	7	1.5	2	3.0	연결로	산-6	마	
변경		3	7	1.5	2	3.0	연결로	산-6	마	
당초		3	8	1.6	76	146.0	연결로	산-3	산-6	가각부24.4
변경		3	8	1.6	76	146.0	연결로	산-3	산-6	가각부24.4
당초		3	9	1.2	28	34.0	연결로	산-8	가-2	가각부0.6
변경		3	9	1.2	28	34.0	연결로	산-8	가-2	가각부0.6
당초		3	10	1.2	26	34.0	연결로	산-3	산-8	가각부2.8
변경		3	10	1.2	26	34.0	연결로	산-3	산-8	가각부2.8
당초		3	11	1.2	44	53.0	연결로	산-3	산-8	가각부0.2
변경		3	11	1.2	44	53.0	연결로	산-3	산-8	가각부0.2
당초		3	12	09~1.8	18	24.0	연결로	산-8	산-8	
변경		3	12	09~1.8	18	24.0	연결로	산-8	산-8	
당초		3	13	2.2~3.6	26	81.0	진입로	북측종교시설	산-3	
변경		3	13	2.2~3.6	26	81.0	진입로	북측종교시설	산-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3	14	1.3	35	42.0	연결로	산-3	산-1	증(42.0㎡)현황반영
신설		3	15	1.4	45	62.0	연결로	산-20	자	증(62.0㎡) 현황반영
신설		3	16	1.5	26	40.0	진입로	산-3	공원경계	증(40.0㎡)
신설		3	17	4	9	36.0	진입로	산-3	아이마음놀이터	증(36.0㎡)
신설		3	18	2	17	38.0	진입로	산-3	공원경계	증(38.0㎡) 현황반영
신설		3	19	1.7	9	16.0	진입로	공원경계	산-14	증(16.0㎡) 현황반영
신설		3	20	1.0~1.9	40	73.0	연결로	산-3	산-8	증(73.0㎡) 현황반영
신설		3	21	3.3	5	18.0	연결로	산-3	아이마음놀이터	증(18.0㎡)
신설		3	22	5	3	15.0	연결로	산-1	산-23	증(15.0㎡)
신설		3	23	2	2.5	5.0	연결로	산-1	산-3	증(5.0㎡)

조 성 계 획 도(변 경 전)

어울숲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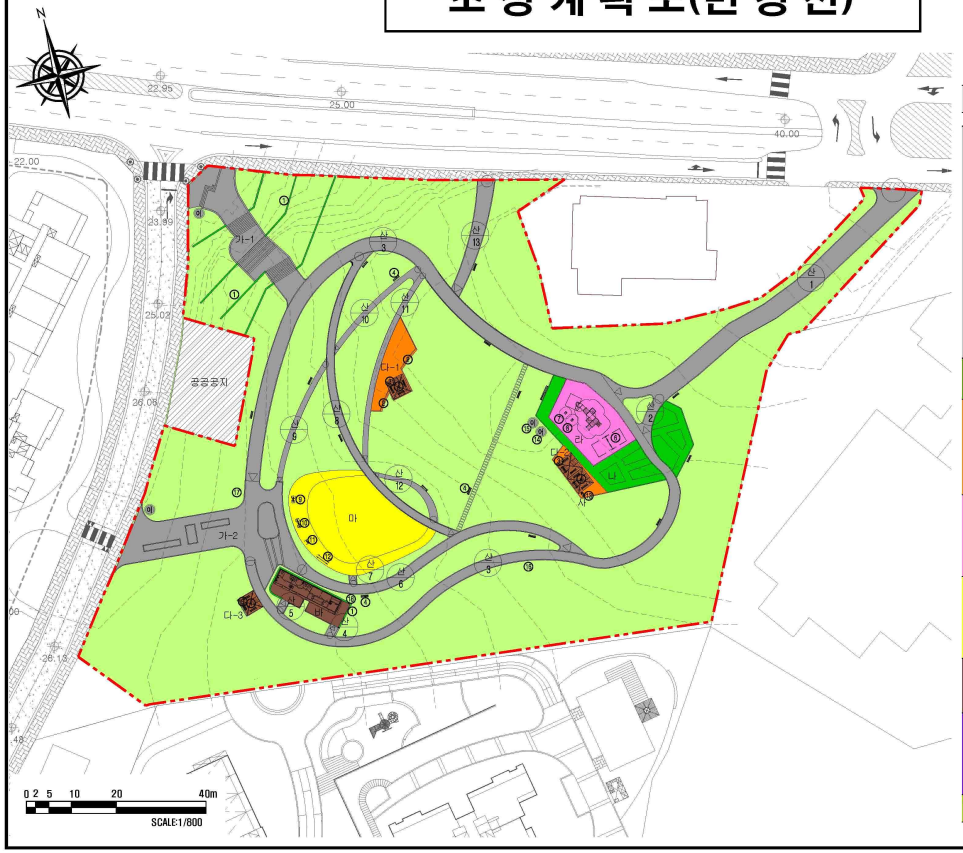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개)	비고
합계			13,774.4	3,669.3	-	-	-	-	93	
기반시설	소계		2,376.8	2,376.8	-	-	-	-	-	
	진입광장	가-1	271.6	271.6	-	-	-	-	-	
	진입광장	가-2	441.2	441.2	-	-	-	-	-	
	도로		1,664.0	1,664.0	-	-	-	-	-	
	산책로	산-1	335.0	335.0	-	-	-	-	-	
	산책로	산-2	30.0	30.0	-	-	-	-	-	
	산책로	산-3	756.0	756.0	-	-	-	-	-	
	산책로	산-4	5.0	5.0	-	-	-	-	-	
	산책로	산-5	5.0	5.0	-	-	-	-	-	
	산책로	산-6	158.0	158.0	-	-	-	-	-	
	산책로	산-7	3.0	3.0	-	-	-	-	-	
	산책로	산-8	146.0	146.0	-	-	-	-	-	
	산책로	산-9	34.0	34.0	-	-	-	-	-	
	산책로	산-10	34.0	34.0	-	-	-	-	-	
	산책로	산-11	53.0	53.0	-	-	-	-	-	
	산책로	산-12	24.0	24.0	-	-	-	-	-	
	산책로	산-13	81.0	81.0	-	-	-	-	-	
조경시설	소계		307.0	307.0	-	-	-	-	8	
	초화원	나	268.0	268.0	-	-	-	-	-	L=131.58m
	플랜터I	①	39.0	39.0	-	-	-	-	8	
휴양시설	소계		178.8	178.8	-	-	-	-	35	
	휴게공간	다-1	100.9	100.9	-	-	-	-	-	
	휴게공간	다-2	57.8	57.8	-	-	-	-	-	
	휴게공간	다-3	17.0	17.0	-	-	-	-	-	
	앉음벽	②	3.1	3.1	-	-	-	-	-	2EA=10.27m
	퍼고라	③	-	-	-	-	-	-	4	
	등의자	④	-	-	-	-	-	-	29	
유희시설	소계		204.8	204.8	-	-	-	-	4	
	유아놀이터	라	204.8	204.8	-	-	-	-	-	
	조합놀이대	⑤	501.6	501.6	-	-	-	-	1	
	그네	⑥	-	-	-	-	-	-	1	
	혼합놀이대A	⑦	-	-	-	-	-	-	1	
	혼합놀이대B	⑧	-	-	-	-	-	-	1	
운동시설	소계		501.6	501.6	-	-	-	-	4	
	다목적운동장	마	501.6	501.6	-	-	-	-	-	
	운동시설A	⑨	-	-	-	-	-	-	1	
	운동시설B	⑩	-	-	-	-	-	-	1	
	운동시설C	⑪	-	-	-	-	-	-	1	
	운동시설D	⑫	-	-	-	-	-	-	1	
편익시설	소계		100.3	100.3	-	-	-	-	1	
	화장실	바	98.2	98.2	-	-	-	-	-	
	음수장	사	2.1	2.1	-	-	-	-	-	
	음수대	⑬	-	-	-	-	-	-	1	
관리시설	소계		-	-	-	-	-	-	41	
	놀이터안내판	⑭	-	-	-	-	-	-	1	
	이용안내판	⑮	-	-	-	-	-	-	3	
	운동등	⑯	-	-	-	-	-	-	33	
	CCTV	⑰	-	-	-	-	-	-	3	
	분전함	⑱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0,105.1	-	-	-	-	-	-	
	녹지		10,105.1	-	-	-	-	-	-	

조 성 계 획 도(변 경 후)

어울숲근린공원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4,164.0	4,928.0	-	-	614.4	614.4	89	
기반시설	소계		2,701.8	2,701.8	-	-	-	-	-	
	진입광장	가-1	271.6	271.6	-	-	-	-	-	
	진입광장	가-2	441.2	441.2	-	-	-	-	-	
	도로		1,989.0	1,989.0	-	-	-	-	-	
	산책로	산-1	335.0	335.0	-	-	-	-	-	
	산책로	산-2	30.0	30.0	-	-	-	-	-	
	산책로	산-3	775.0	775.0	-	-	-	-	-	
	산책로	산-4	5.0	5.0	-	-	-	-	-	
	산책로	산-5	5.0	5.0	-	-	-	-	-	
	산책로	산-6	119.0	119.0	-	-	-	-	-	
	산책로	산-7	3.0	3.0	-	-	-	-	-	
	산책로	산-8	146.0	146.0	-	-	-	-	-	
	산책로	산-9	34.0	34.0	-	-	-	-	-	
	산책로	산-10	34.0	34.0	-	-	-	-	-	
	산책로	산-11	53.0	53.0	-	-	-	-	-	
	산책로	산-12	24.0	24.0	-	-	-	-	-	
	산책로	산-13	81.0	81.0	-	-	-	-	-	
	산책로	산-14	42.0	42.0	-	-	-	-	-	
	산책로	산-15	62.0	62.0	-	-	-	-	-	
	산책로	산-16	40.0	40.0	-	-	-	-	-	
	산책로	산-17	36.0	36.0	-	-	-	-	-	
	산책로	산-18	38.0	38.0	-	-	-	-	-	
	산책로	산-19	16.0	16.0	-	-	-	-	-	
	산책로	산-20	73.0	73.0	-	-	-	-	-	
	산책로	산-21	18.0	18.0	-	-	-	-	-	
	산책로	산-22	15.0	15.0	-	-	-	-	-	
	산책로	산-23	5.0	5.0	-	-	-	-	-	
교경시설	소계		147.3	147.3	-	-	-	-	8	
	휴화원	나	108.3	108.3	-	-	-	-	-	
	물펜터	①	39.0	39.0	-	-	-	-	8	
휴양시설	소계		150.0	150.0	-	-	-	-	34	
	휴게공간	다-1	100.9	100.9	-	-	-	-	-	
	휴게공간	다-2	12.9	12.9	-	-	-	-	-	
	휴게공간	다-3	17.0	17.0	-	-	-	-	-	
	휴게공간	다-4	11.9	11.9	-	-	-	-	-	
	휴게공간	다-5	4.2	4.2	-	-	-	-	-	
	맘음벽	②	3.1	3.1	-	-	-	-	2L=0.27m	
	퍼고라	③	-	-	-	-	-	-	3	
	등의자	④	-	-	-	-	-	-	29	
유희시설	소계		1,313.9	1,313.9	-	-	-	-	4	
	실내놀이터	아	774.3	774.3	-	-	557.5	557.5	-	
	놀이터	라	539.6	539.6	-	-	-	-	-	
	조합놀이대	⑤	-	-	-	-	-	-	1	
	그네	⑥	-	-	-	-	-	-	1	
	혼돌놀이대A	⑦	-	-	-	-	-	-	1	
	혼돌놀이대B	⑧	-	-	-	-	-	-	1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운동시설	소계		501.6		-	-	-	-	4	
	다목적운동장	마	501.6		-	-	-	-	-	
	운동시설A	⑨	-	-	-	-	-	-	1	
	운동시설B	⑩	-	-	-	-	-	-	1	
	운동시설C	⑪	-	-	-	-	-	-	1	
	운동시설D	⑫	-	-	-	-	-	-	1	
편익시설	소계		113.4	113.4	-	-	-	-	3	
	화장실	바	98.2	98.2	-	-	45.0	45.0	-	
	세족시설	자	15.2	15.2	-	-	-	-	-	
	음수대	⑬	-	-	-	-	-	-	1	
	세족장	⑭	-	-	-	-	-	-	1	
	유아물수대	⑮	-	-	-	-	-	-	1	
관리시설	소계		-	-	-	-	-	-	41	
	놀이터안내판	⑯	-	-	-	-	-	-	1	
	이용안내판	⑰	-	-	-	-	-	-	3	
	공원등	⑱	-	-	-	-	-	-	33	
	CCTV	⑲	-	-	-	-	-	-	3	
	분전함	⑳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9,236.0	-	-	-	-	-	-	
	녹지		9,236.0	-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7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 9. 2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936-9번지 일대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6. 5. 1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초구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 경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874-5번지 일원	212,856.4	감) 1,792.8	211,063.6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변경 - 212,856.4㎡ → 211,063.6㎡ (감 1,792.8㎡)	•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12,856.4	감) 1,792.8	211,063.6	100.0	-
주거지역	소 계	212,856.4	감) 1,792.8	211,063.6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1.7	-	1,281.7	0.6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128.3	-	20,128.3	9.5	-
	제2종일반주거지역	65,991.1	-	65,991.1	31.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5,455.3	감) 1,792.8	123,662.5	58.6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792.8	•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나. 용도지구 : 해당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금회 광로3-64호선 및 철도 일부 구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가구번호	가 구		비고
			위 치	면 적(㎡)	
기 정	2	SR13	서초구 방배동 936-12 일대	5,495.8	역세권활성화지역
변 경	〃	〃	〃	4,044.0 (감 1,451.8)	〃

※ 상기 사항 외 변경 없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분	변경사유
-	• 가구 SR13 면적 변경 – 5,495.8㎡ → 4,044.0㎡ (감 1,451.8㎡)	•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대상지 해당 가구에서 제척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5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기준 : 변경 없음

6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7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Ⅲ.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	-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	증) 1,792.8	1,792.8	-

-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 설	-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1,792.8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등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92.8	-	1,792.8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792.8	감) 1,451.8	341.0	19.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451.8	1,451.8	81.0	획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외 1필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1,451.8	• 방배동 936-9번지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중심기능 강화 및 공공필요시설 확충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함

※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은 용도지역 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정	종점	사용행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64	40	주간선도로	4,150 (37.5)	서초동 (84호광장)	사당동	일반도로	1978. 6. 15 (건고 제145호)	서초대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2) 철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m)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서초구 방배동 874번지 일대	22~27	165	6,234 (184.4)	1993. 3. 24. (서고 제77호)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1.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기준	계 획 내 용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50%	800%	획지 면적의 34.38% 이상 (499.12㎡)	• 공공기여율 : 총 34.38%(499.12㎡) - 철도(내방역 8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34% -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4.04%	-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5.10.31.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 공공기여량은 토지주가 제시한 부지가액으로 산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5.10.31.기준) 5-1-1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확정

나. 공공기여계획 세부내역

구 분		공공기여내역				건축물 연면적 (㎡)	위치 및 규모	비 고 (귀속주체)
		계 (㎡)	부지제공면적 (㎡)	환산부지면적 (㎡)	구성비 (%)			
구역 내 (시설)	철도(내방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50.17	-	150.17	10.34 (30.09)	-	1200형 2대	서울시
구역 외 (비용)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348.95	-	348.95	24.04 (69.91)	-	-	서울시 및 서초구
합 계		499.12	-	499.12	34.38 (100.00)	-	-	-

※ 토지주가 제시한 부지가액으로 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5.10.31.기준) 5-1-1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함에 따라 공공기여 세부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비고
신 설	1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936-10번지	1,451.8	획지선 지정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1	• 획지 신설 - 면적 1,451.8㎡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간선도로변 규모 있는 개발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획지 신설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구 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불허용도	A	•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시설 입지 불가 •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획지
	권장용도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물 용도계획 신설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준용하여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

나. 건축물의 밀도

1) 건폐율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신설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준수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폐율 계획 –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계획 신설(「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2) 용적률

구 분		기준(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50% 이하	800% 이하	-

※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용적률 계획 – 기준(허용) 250%, 상한 80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계획 신설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 획지면적의 34.38% 이상	• 획지 면적의 34.38% 계획 - 철도(내방역 8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34%(30.09%) - 현금기부채납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4.04% (69.91%)	기준 (허용)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8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연면적의 100%		
	주거비율	•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 400% 이하 - 임대주택 추가 확보(증가 용적률의 2분의1)시 주거용 용적률 600% 이하	• 해당없음		
주택건설기준	주택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 해당없음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3가지 사항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해당 없음 • 친환경 건축물 : 적용 • 역사문화보전 : 해당 없음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해당없음		
공개공지 등		•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면적 의무 설치 : 대지면적의 10% 이상	• 공개공지 145.81㎡ 설치 (10.04%)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5.10.31.기준) 준용
※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마련

다. 건축물 높이

구 분		최 고 높 이	비고
신설	일반상업지역	75m 이하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최고높이 계획 - 75m 이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하여 최고높이 신설

라. 건축물의 배치 · 행태 · 색채 · 건축선 등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 방배로변, 이면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계획 - 도로변 3m	• 도로변 개방감 확보 및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한계선 신설

2) 건축물의 행태 및 색채

구 분		계 획 내 용
외관 및 의장	1층부 형태(규제)	• 전면도로에 접한 지상1층 외벽은 투시율 50% 이상 확보
	외벽처리(규제)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 제한
전면부 처리	1층 바닥높이(규제)	• 접한 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 차이는 10㎝ 이하로 조성
	건축선 후퇴부분 처리 (규제)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게 조성 • 담장이나 기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의 설치 금지 •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포장재료 사용
건축물 부수 시설	옥외 광고물 (규제, 권장)	•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 광고물 조명 권장
	조명(권장)	• 장소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명 유도 • 야간조명 설치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물 형태·색채계획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준용하여 건축물 형태·색채계획 수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 전면도로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지정 :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전면공지	• 방배로변 3m(보도부속형), 방배로23길변 3m(보 · 차도 혼합형)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접하는 도로(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설치 금지 ※ 전면공지 내 공공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가능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공개공지 위치지정 – 전면도로 가각부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라 주요 보행동선변 지역주민 휴게 · 휴식공간 확보 위한 공개공지 위치지정
-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지정 – 방배로변 3m • 보 · 차도 혼합형 전면공지 지정 – 방배로23길변 3m	• 건축한계선 후퇴구간을 활용한 보행·차량의 원활한 통행여건 마련을 위해 전면공지 지정

나.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가로변 및 교차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가로변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결정도 참고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준용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하나의 획지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상 방배로변 주차출입구 삭제)

5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제4항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면공지 조성방법의 변경
2.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5-1-2.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총량 및 공공기여 세부내역의 변경
3.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2.에 따라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총량 범위 내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2133-4650)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2155-67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면]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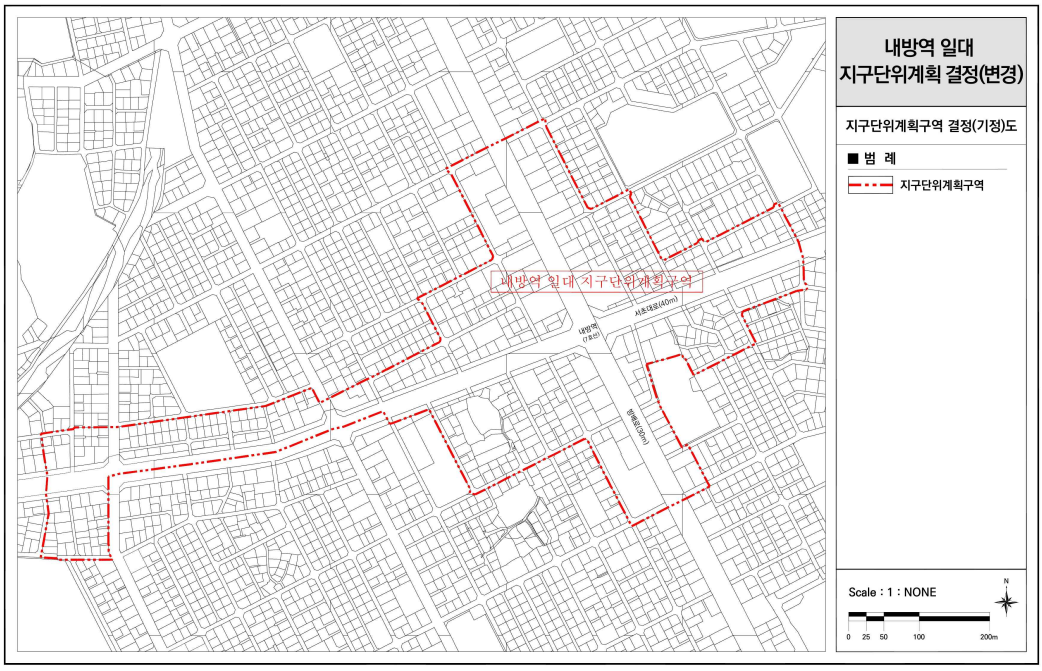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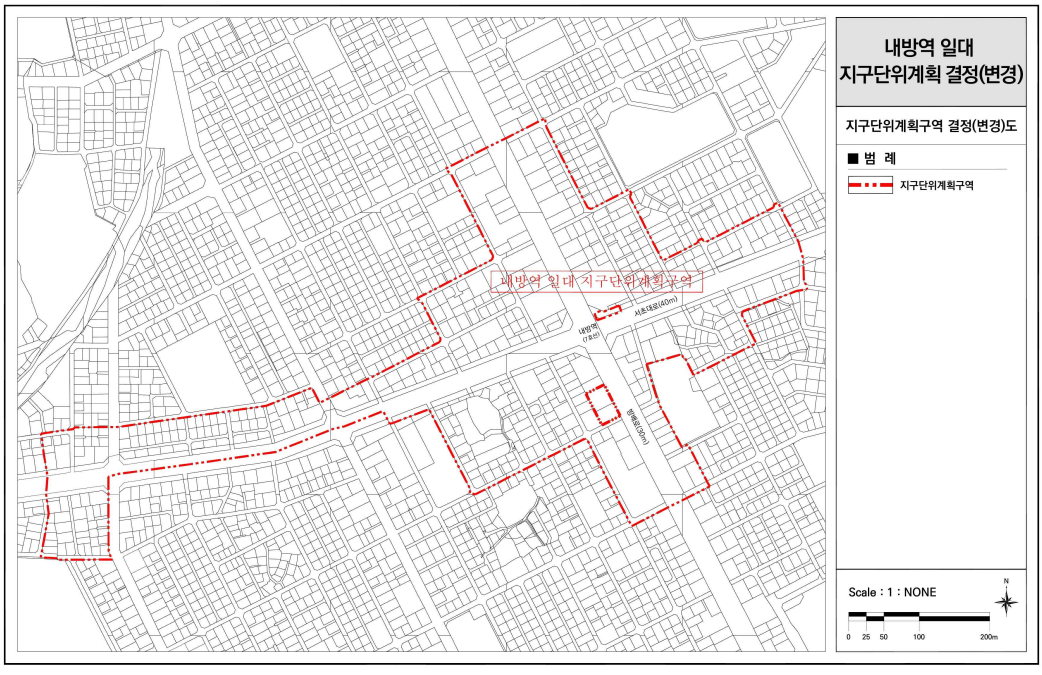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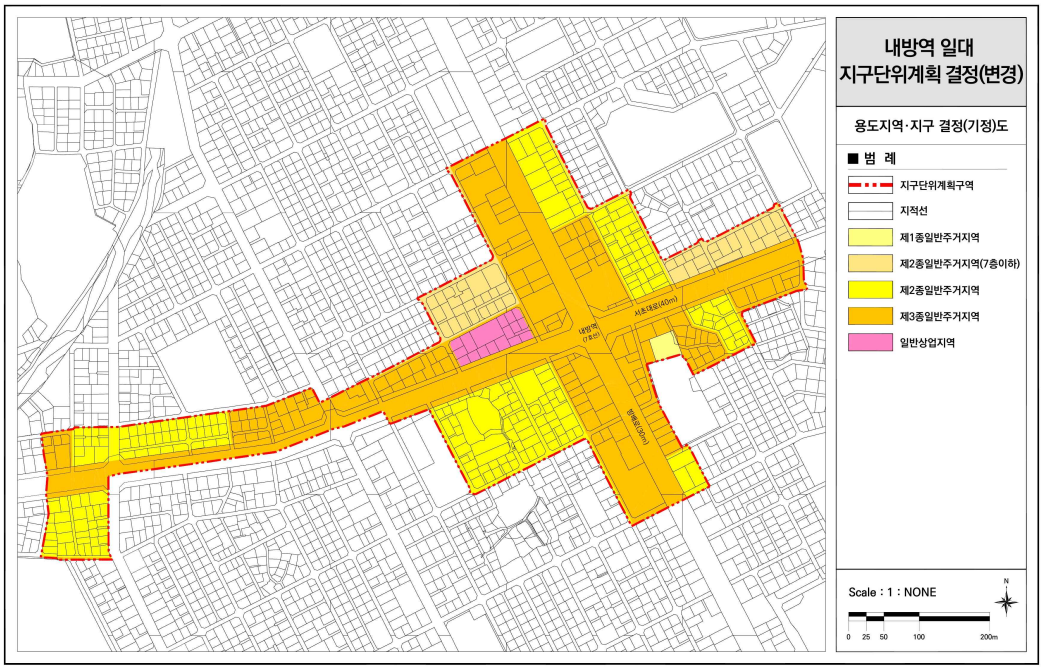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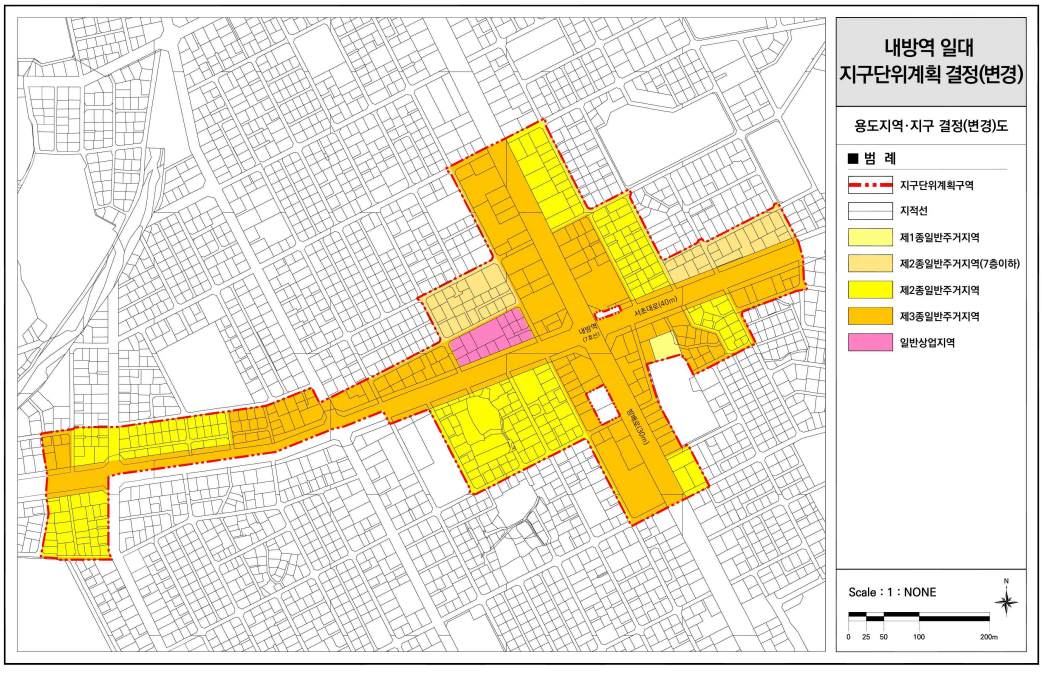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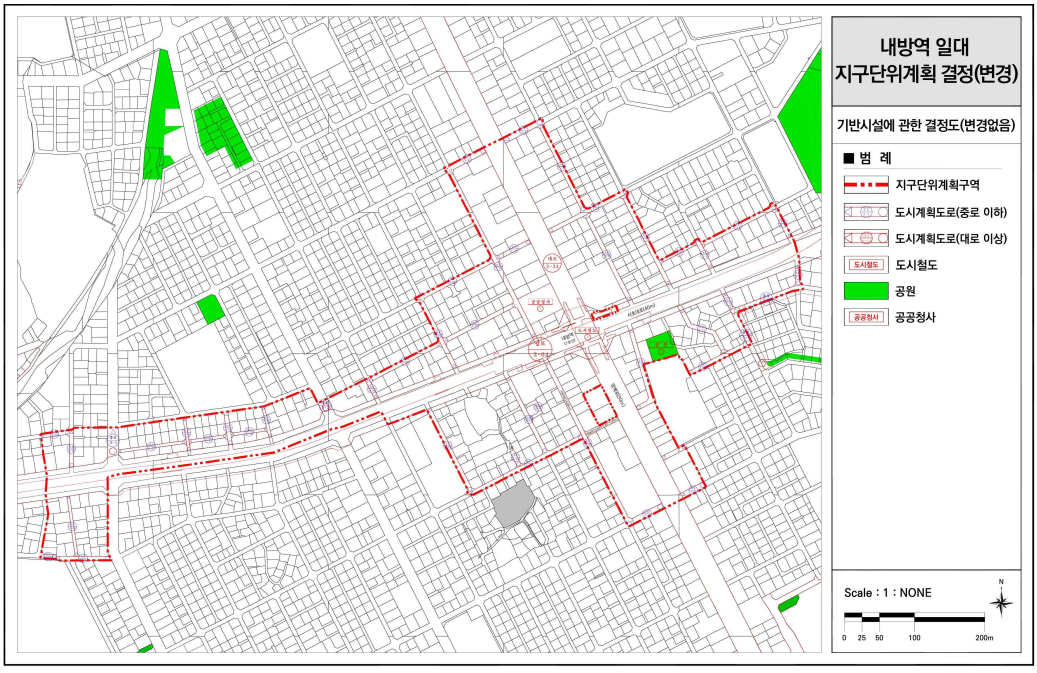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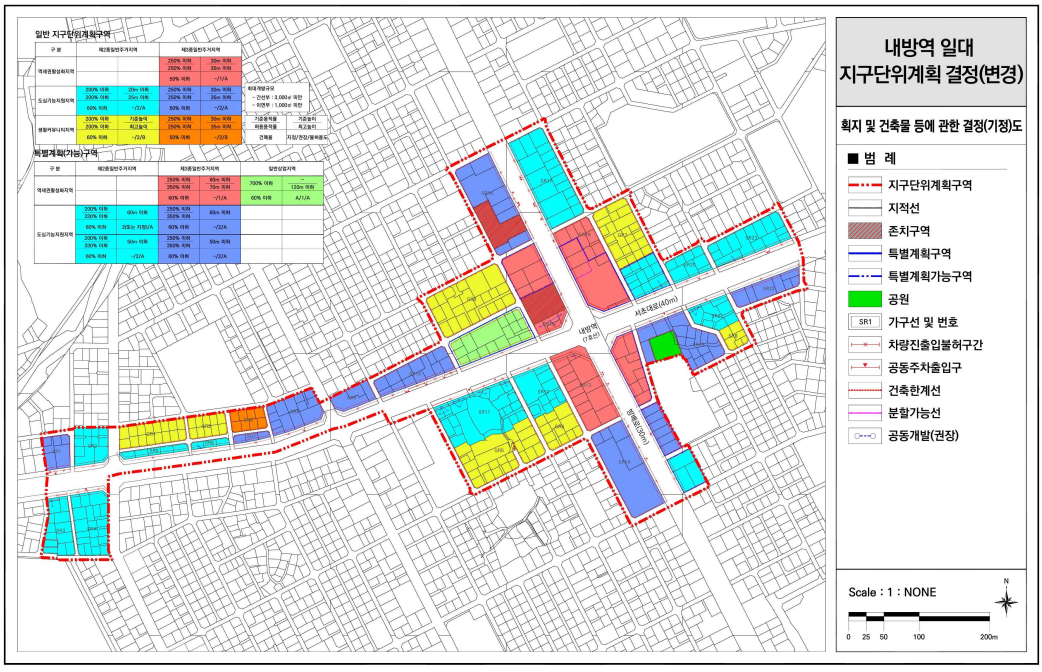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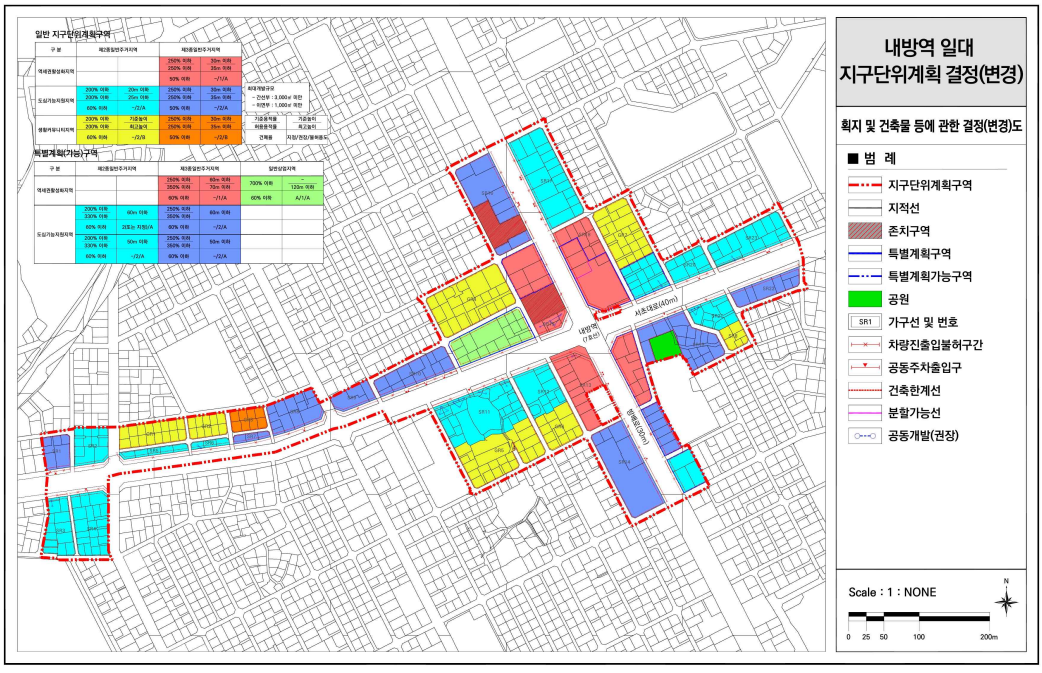

◇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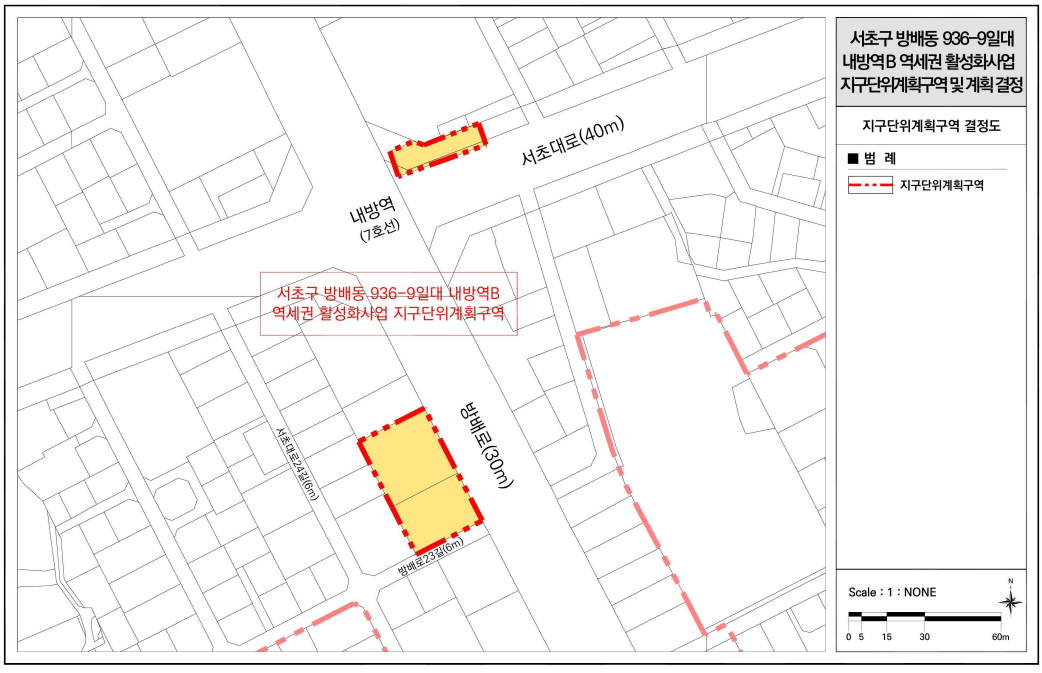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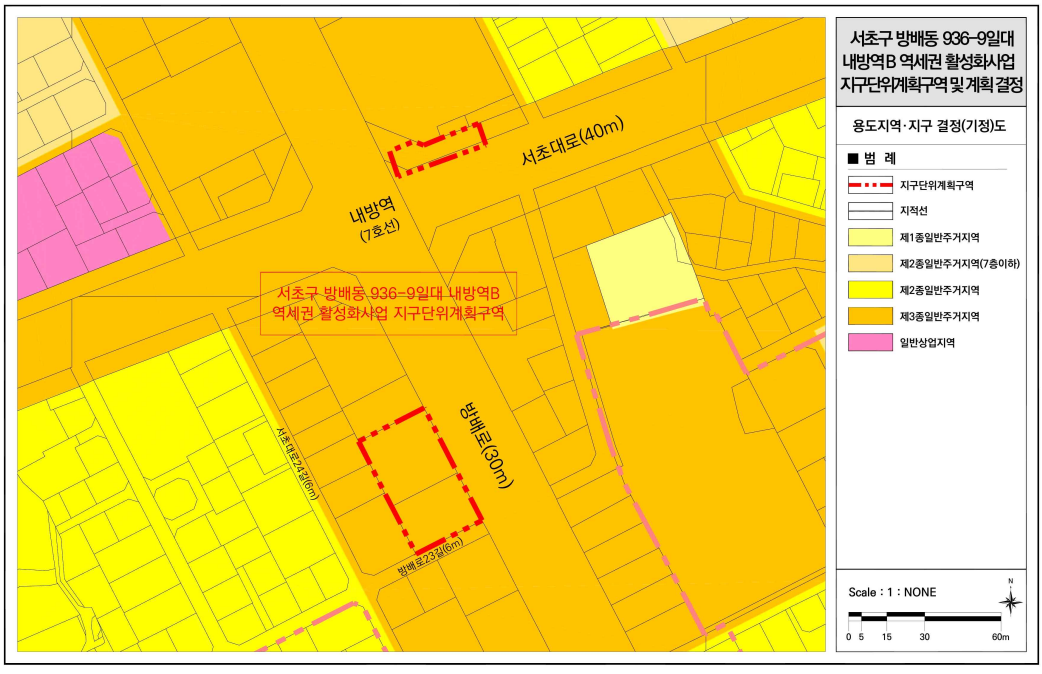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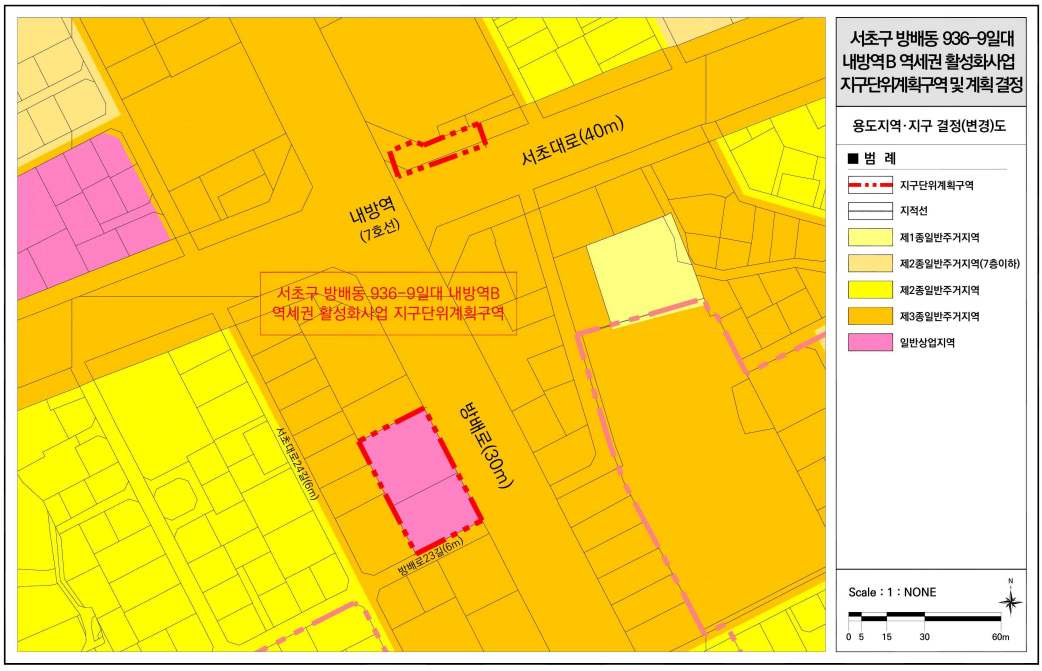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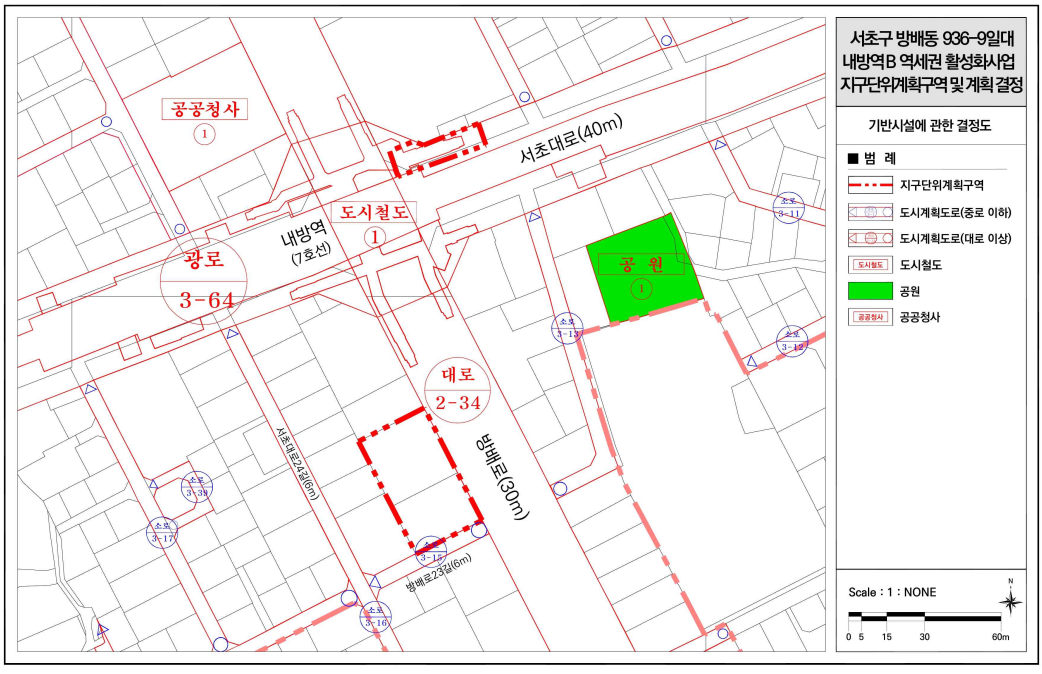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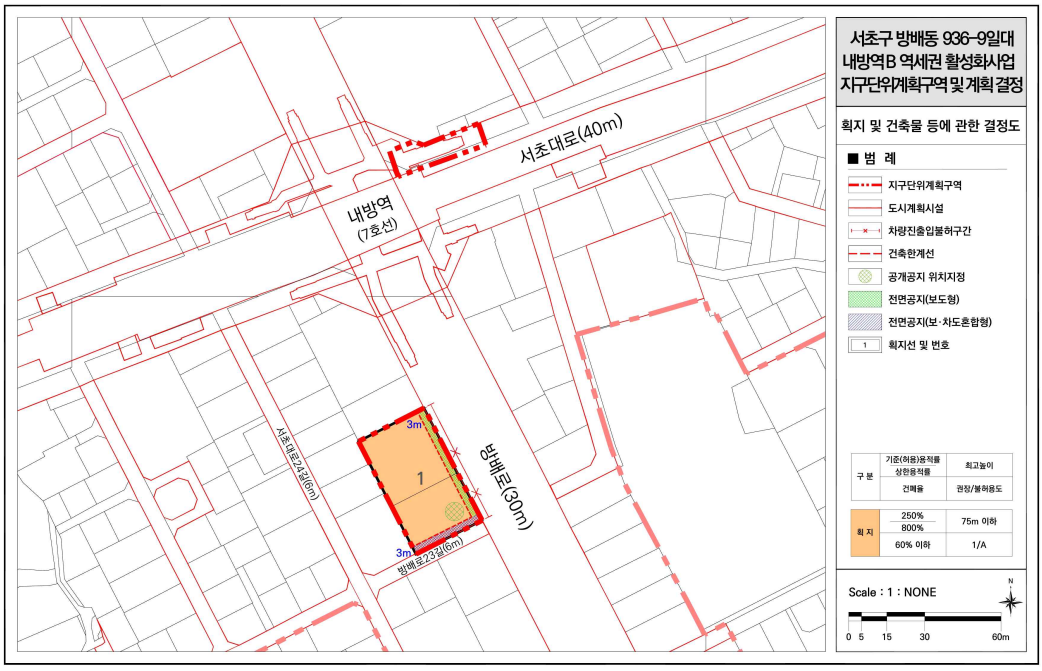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8호

금천구 시흥3동 937-11번지 일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937-1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이 고시는 2026년 6월 11일에 시행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재개발 ·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 모아주택 도입함으로서 미래도시주거의 대안을 제시

나. 거주자에게 다양한 주거유형 제공과 향상된 디자인 도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가로를 중심으로 가로경관을 재정비하여 공공성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범위	면 적(㎡)
시흥동 937-11일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37-11 일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37-11 외 8필지	8,205.10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규 모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시흥동 937-11일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3,258.88	40,302.43	지하4층 ~ 지상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대상	적용취지
시흥동 937-11일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에 부합하는 건축물 배치, 다양한 건축물 형태,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련 규정에 따름

5. 도시·군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5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82호)에 따름

6. 통합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 운영 계획(해당없음)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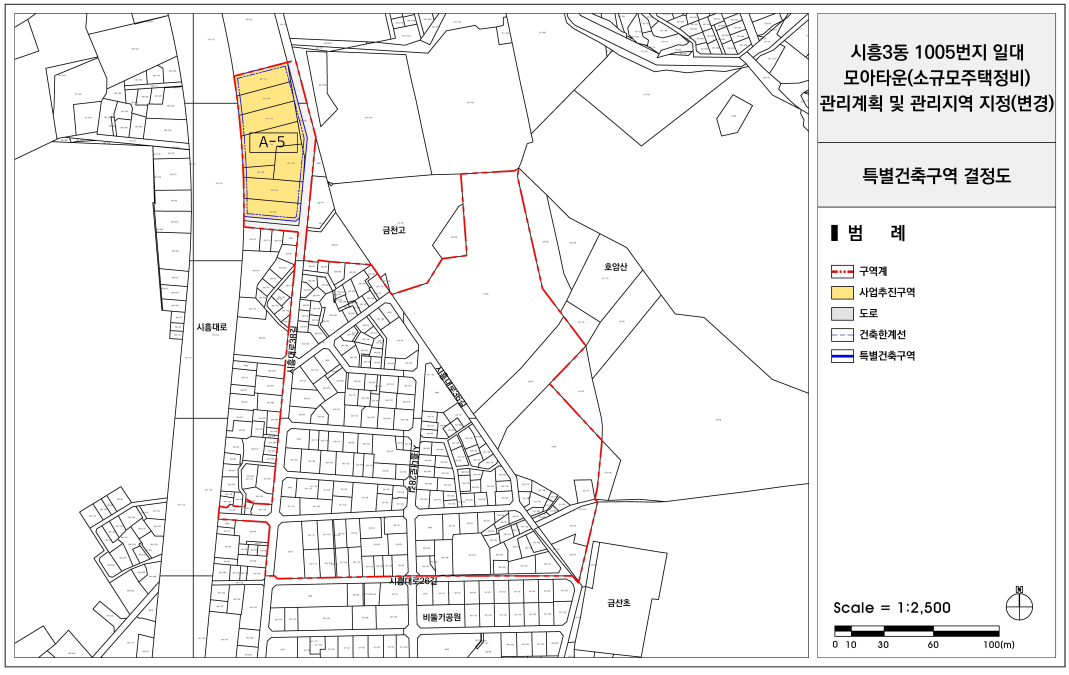
A-5
금천고
호암산
시흥대로
시흥대로28길
시흥대로28길
시흥대로28길
비둘기공원
금산초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지정(변경)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범 례
구역계
사업추진구역
도로
건축한계선
특별건축구역
Scale = 1:2,500
0 10 30 60 10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제정 ·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 3개소 공원에 대하여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 ·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그 명칭을 제정 · 변경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원명칭 제정 내역

연번	구분	공원세분	위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
1	제정	문화공원	금천구 독산동 1160-2	1,011.1	독산말미푸른공원	
2	제정	소공원	도봉구 도봉동 98-2 일대	706.7	웃음꽃공원	

2. 공원명칭 변경 내역

연번	구분	공원세분	위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
1	변경	어린이공원	마포구 성산동 147-5	1,366.9	꾸미꿈공원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02-2133-2036), 금천구 공원녹지과(☎02-2627-1664), 도봉구 공원여가과(☎02-2091-3767), 마포구 공원녹지과(☎02-3153-9554)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2호

도시관리계획(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2020. 6. 25.)로 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0호(2022. 2. 24.)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964호(2026.05.2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하는 사항임

Ⅱ. 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9,185.0	-	9,185.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 (2020.06.2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185.0	-	9,185.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185.0	감) 5,383.0	3,802.0	41.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83.0	5,383.0	58.6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83.0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철도 : 변경없음

2)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 변경없음

유형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	105	2,020.7	-	-	-	1	105	2,020.7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05	2,020.7	-	-	-	1	105	2,020.7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21	15	집산 도로	105	궁동 108-13답	궁동 113-2답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0호 (2022.02.24.)	현황 도로

주) 향후 측량성과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가구	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변경	A	5,556.0	증) 6.0	5,562.0	-
	B	1,608.3	-	1,608.3	-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A 가구면적 변경 - 5,556.0㎡ → 5,562.0㎡, 증) 6.0㎡	• 분할된 필지(궁동 267-1번지) 공부면적 반영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2)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가구		공동개발		대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위치	면적(㎡)		
기정	A	5,556.0	①	5,385.0	108-1답	1,427.0	특별계획구역	
					108-2답	3,852.0		
					108-11답	8.0		
					267도	98.0		
			②	171.0	108-13답	171.0	주차장	
	B	1,608.3	③	1,029.1	113-2답	145.1	-	공동개발(권장)
					138-6전	132.0	-	
					139-2답	376.0	-	
					139-6답	327.0	공동개발(지정)	
					141-2대	49.0		
			④	579.2	140-2대	579.2	단독개발	
변경	A	5,562.0	①	5,383.0	108-1답	1,427.0	특별계획구역	
					108-2답	3,852.0		
					267-1대	104.0		
			②	171.0	108-13답	171.0	주차장	
			⑤	8.0	108-11답	8.0	-	
	B	1,608.3	③	1,029.1	113-2답	145.1	-	공동개발(권장)
					138-6전	132.0	-	
					139-2답	376.0	-	
					139-6답	327.0	공동개발(지정)	
					141-2대	49.0		
			④	579.2	140-2대	579.2	단독개발	

주) 108-1답, 113-2답, 140-2대는 CAD 구적 값으로,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동개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A 가구면적 변경 - 5,556.0㎡ → 5,562.0㎡, 증) 6.0㎡ • A-① 공동개발 면적 변경 - 5,385.0㎡ → 5,383.0㎡, 감) 2.0㎡ • A-① 대지 위치 변경 - 267도 → 267-1대 • A-⑤ 신설 - 궁동 108-11번지 특별계획구역 제척	• 궁동 267번지에서 분할된 필지(궁동 267-1번지) 공부면적 반영 및 궁동 108-11번지 특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가구 및 공동개발 면적 변경

2.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허용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위치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기정	108-13답	P1	•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주차전용건축물 제외)	-
변경	108-13답	P1	•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주차전용건축물 제외)	-
	특별계획구역	R2	• 공동주택(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허용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허용용도(R2) 신설	• 주거 안정 및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허용용도 신설

2)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위치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R1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관련시설, 장의사, 물품의 제조 등을 위한 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변경	특별계획구역	R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이면부	R1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관련시설, 장의사, 물품의 제조 등을 위한 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 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허용

■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R2) 변경	• 주거 안정 및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불허용도 변경

3)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위치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R1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의원, 노유자시설	-
변경	이면부	R1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의원, 노유자시설	-

■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R1) 폐지	• 주거 안정 및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허용용도 신설 및 불허용도 변경에 따른 권장용도 폐지

나. 건축물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용도지역	위치	건폐율(%)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60%이하	-
		주차장	20%이하	108-13답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이면부	60%이하	-
		주차장	20%이하	108-13답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60%이하	-

■ 건폐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계획 신설 - 60% 이하	•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계획 신설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용도지역	위치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18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주차장	50%이하			108-13답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이면부	200%이하	22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주차장	50%이하			108-13답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200%이하	22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용적률은 기준 190% / 허용 200% / 상한 250%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 변경없음

○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용적률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50%p를 추가 계획할 수 있다.

- 대 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이 변경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포함
  ※ 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역에 한함.
- 경미한 변경 범위 내 추가 높이 완화 가능 (단, 고도지구 등 별도의 높이 규제가 있는 경우 준수 필요)
- 완화량 : 50%p 이내
  ※ 허용용적률+완화량(50%p)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적용
  ※ 용적률 체계개편('24.4.)에 따른 허용용적률 체계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는 시행령용적률 범위안에서 적용 가능

<적용예시 : 3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250%/275%/500%>
· 허용용적률 + 한시적 용적률 완화
= 275% + 50% = 325% -> 300% 적용(∵ 시행령용적률 300%)

○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적용 불가

▣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도입 용적률 완화 : 변경없음

○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용적률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 임대주택 :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0.2 이내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에 한함)

구분	용적률 완화량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20%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15%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	10%

○ 2000.7.1. 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4항 적용

<적용예시 : 3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250%/275%/500%>
· 허용용적률 + 공공임대주택 건설
= 275% + (250% × 0.2) = 275% + 50% = 325%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이면부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변경 - 180%이하/2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200%이하/22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계획 변경 •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용적률 체계 적용

3) 최고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용도지역	위치	높이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30m 이하	-
		주차장	3m 이하	108-13답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이면부	30m 이하	-
		주차장	3m 이하	108-13답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40m(13층) 이하	-

■ 최고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 변경 - 30m 이하 → 40m(13층) 이하	• 적정 세대수 확보를 위한 높이계획 변경으로 주거 안정 및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다. 건축물 배치 및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적용구간	건축한계선	비고
기정	건축한계선	오리로	3m	-
		오리로22나길	1m ~ 6m	-
		오리로22길, 오리로22가길	1m	중로 2-521
변경	건축한계선	오리로	3m	-
		오리로22나길	1m ~ 6m	-
		오리로22길, 오리로22가길	1m	중로 2-521
		특별계획구역 남측	3m	-

■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남측 건축한계선 신설 - 폭원 : 3m	• 특별계획구역 남측 동-서방향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건축한계선 신설

2)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전면공지	• 오리로 : 보도형 3m	지침도 참조
		• 오리로22나길(특별계획구역 내) : 보도형 3m, 차도형 3m	
		• 오리로22길, 오리로22가길, 오리로22나길(특별계획구역 외) : 보도형 1m	
	공개(쌈지형)공지	• 1개소 권장	
변경	전면공지	• 오리로 : 보도형 3m	지침도 참조
		• 오리로22나길(특별계획구역 내) : 보도형 3m, 차도형 3m	
		• 오리로22길, 오리로22가길, 오리로22나길(특별계획구역 외) : 보도형 1m	
		• 특별계획구역 남측 : 보도형 3m	
	공개(쌈지형)공지	• 2개소 위치 지정 - 오리로22가길 : 공개공지 1개소 - 오리로22나길 : 쌈지형공지 1개소	

■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남측 건축한계선 이격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신설 - 폭원 : 3m	• 특별계획구역 남측 동-서방향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건축한계선 이격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신설
변경	• 공개공지 2개소 위치 지정 - 오리로22가길 : 공개공지 1개소 - 오리로22나길 : 쌈지형공지 1개소	• 도로 가각부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개공지(1개소) 및 쌈지형공지(1개소) 위치 지정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5,623.0	감) 2.0	5,621.0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623.0㎡ → 5,621.0㎡, 감) 2.0㎡	• 분할된 필지(궁동 267-1번지) 공부면적 반영 및 궁동 108-11번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궁동 108-1번지 일대	-
면적		• 5,623.0㎡	-
용도지역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공공기여계획		• 도로 (238.0㎡)	조성 후 기부채납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관련시설, 장의사, 물품의 제조 등을 위한 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의원, 노유자시설	-
건축물 개발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80%/200%/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높이	• 30m 이하	-
배치 및 형태	건축한계선	• 오리로 : 3m • 오리로22나길 : 6m • 오리로22가길(중로 2-521)변 : 1m	결정도 참조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이격부분 전면공지 조성	
	공개(쌈지형) 공지	• 1개소 권장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오리로변 및 오리로22가길 (중로 2-521)변 차량출입불허	

※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 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허용하고, 용적률은 기준 170% / 허용 190% / 상한 250% 적용하며, 높이는 평균 7층이하 적용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궁동 108-1번지 일대	–
면적		• 5,621.0㎡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공기여계획		• 도로 (238.0㎡)	조성 후 기부채납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물 개발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90%/200%/250%(280%) 이하 ※ ( )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사항임	–
	높이	• 40m(13층) 이하	–
배치 및 형태	건축한계선	• 오리로 : 3m • 오리로22나길 : 6m • 오리로22가길(중로 2-521)변 : 1m • 특별계획구역 남측 : 3m	결정도 참조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이격부분 전면공지 조성	
	공개(쌈지형) 공지	• 2개소 위치 지정 – 오리로22가길 : 공개공지 1개소 – 오리로22나길 : 쌈지형공지 1개소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오리로변 및 오리로22가길 (중로 2-521)변 차량출입불허	

주1)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 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허용하고, 용적률은 기준 190% / 허용 200% / 상한 250% 적용하며, 높이는 평균 13층이하 적용
주2) 특별계획구역 내 오리로22나길변 차도형 전면공지(3m)는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도로 시설물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향후 사업시행 시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함
주3) 제척된 궁동 108-11번지는 추후 토지소유자 간 협의 매수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하도록 함(편입 불가 시 사유 소멸)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623.0㎡ → 5,621.0㎡, 감) 2.0㎡	• 분할된 필지(궁동 267-1번지) 공부면적 반영 및 궁동 108-11번지 특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	• 주거 안정 및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불허용도 변경, 허용용도 신설, 권장용도 폐지
변경	• 용적률 계획 변경 – 180%이하/2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190%이하/200%이하/250%(280%)이하	•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용적률 체계 적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반영
변경	• 최고높이 변경 – 30m 이하 → 40m(13층) 이하	• 적정 세대수 확보를 위한 높이계획 변경으로 주거 안정 및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변경	• 건축한계선 신설 – 폭원 : 3m	• 동-서방향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남측 건축한계선 신설
변경	• 공개공지 2개소 위치 지정 – 오리로22가길 : 공개공지 1개소 – 오리로22나길 : 쌈지형공지 1개소	• 도로 가각부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개공지(1개소) 및 쌈지형공지(1개소) 위치 지정

5.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 변경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변경

(1) 계획기준 : 변경

– 기정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주1]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주2]와 중점 인센티브[주3]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② 허용용적률 산정 시,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합은 해당 인센티브 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중점 인센티브의 합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권장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1)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적용받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함
주2) 계획유도 인센티브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유도 및 규제항목을 준수 시 적용받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함
주3) 중점 인센티브라 함은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항목을 준수 시 적용받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함

– 변경

①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
②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적용 불가
③ 계획기준 준수 시 적용 가능한 다음의 항목은 해당 인증기관의 적정성 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
– 로봇친화형 건축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저영향 개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입체녹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설치
④ 세부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을 결정해야 하는 다음의 항목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서면동의를 통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 결정(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우 적용 가능)
– UAM시설,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특색있는 건축설계,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역사문화 특성 보전,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⑤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절차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가능(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계획기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변경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계획기준 변경

(2)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 변경

■ 유형 1(특별계획구역) : 폐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60%
기준 / 허용용적률	• 180% / 200%
인센티브 유도계획	• 중점 인센티브 : 친환경 (30% 이상) • 계획유도 인센티브 : 건축물 용도, 대지 내 공지 (70% 이하)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중점	친환경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5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 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시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5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의 연면적/연면적)×0.1	• 20%이상 설치시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4	-
		공개(쌈지형)공지 조성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5	-

■ 유형 1(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유형 1(특별계획구역) 폐지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공동주택 건립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유형 1(특별계획구역) 폐지

■ 유형 1(특별계획구역_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기준 적용 시) :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 60%
기준 / 허용용적률	• 170% / 190%
인센티브 유도계획	• 기준용적률+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20% 이내)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 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 12% /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 8% /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 초과 : 3% 20% 이하 15% 초과 : 2% 15% 이하 10% 초과 :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 15% 2등급 : 12% 3등급 : 9% 4등급 : 6%
합계	최대 20% 이내

– 변경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60%
기준 / 허용용적률	• 190% / 200%
인센티브 유도계획	• 기준용적률+공공보행통로 등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10% 이내)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α=1이하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p 이내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준공 후에도 유지)	5%p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α ※α=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기반시설 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 : 기준용적률×(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α ※α=1이하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지역특화 인센티브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기준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0%p 이내 (합산)
합계	최대 20%p 이내	

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변경 시 변경된 기준을 따름

■ 유형 1(특별계획구역_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기준 적용 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유형 1(특별계획구역_공동주택 건립형) 변경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공동주택 건립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유형 1(특별계획구역_공동주택 건립형) 변경

■ 유형 2 :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60%
기준 / 허용용적률	• 180% / 200%
인센티브 유도계획	• 중점 인센티브 : 친환경 (30% 이상) • 계획유도 인센티브 : 건축물 용도, 대지 내 공지 (70% 이하)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중점	친환경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 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시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5	
계획유도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의 연면적/연면적)×1.2	• 20%이상 설치시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4	–
		공동개발(권장)	• 기준용적률×α	• 1필지 : α = 0.01 • 2필지 : α = 0.02 • 3필지 : α = 0.04

– 변경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 60%
기준 / 허용용적률	• 200% / 220%
인센티브 유도계획	• 기준용적률+시 정책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 적용시 제공되는 용적률(20%이내)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용적률×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 개발	기준용적률×0.05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디자인혁신	특색있는 건축설계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획지계획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α	• 인접한 필지와 규모있는 개발 유도 – 1필지 : α = 0.02, 2필지 : α = 0.03, 3필지 이상 : α = 0.05	
건축물용도	전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의 연면적/연면적)×0.3	• 20%이상 설치시	

주) 시 정책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세부 항목은 위 표와 같으며,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기존의 정책이 변경될 시 조정될 수 있음

■ 유형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유형 2, 유형 3 통합 – 유형 2, 유형 3 → 유형 2	• 특별계획구역 외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유형 2,유형 3 통합 및 지역현황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인센티브 항목 조정

■ 유형 3 : 폐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60%
기준 / 허용용적률	• 180% / 200%
인센티브 유도계획	• 중점 인센티브 : 친환경 (30% 이상) • 계획유도 인센티브 : 건축물 용도, 대지 내 공지 (70% 이하)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중점	친환경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 까지만 허용 • 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시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5	
계획유도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의 연면적/연면적)×1.2	• 20%이상 설치시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2	–
		공동개발(권장)	• 기준용적률×α	• 1필지 : α = 0.01 • 2필지 : α = 0.02 • 3필지 : α = 0.04

■ 유형 3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유형 2, 유형 3 통합 – 유형 2, 유형 3 → 유형 2	• 특별계획구역 외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유형 2,유형 3 통합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변경없음

(1)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변경없음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신설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① 적용대상</td><td>•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td></tr>
<tr><td>② 적용산식</td><td>• 적용산식 = 용적률×(1+완화기준)</td></tr>
<tr><td>③ 완화기준</td><td>•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 가.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table>
<tr><th>완화조건</th><th>최대 완화비율</th></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table>
<tr><th>완화조건</th><th>최대 완화비율</th></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td><td>15%</td></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td><td>14%</td></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td><td>13%</td></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td><td>12%</td></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td><td>11%</td></tr>
<tr><td>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td><td>6%</td></tr>
<tr><td>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td><td>3%</td></tr>
</table>
– 다.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table>
<tr><th>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h><th>최대 완화비율</th></tr>
<tr><td>25%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15%</td></tr>
<tr><td>20%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10%</td></tr>
<tr><td>15%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5%</td></tr>
</table></td></tr>
</table>

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호, 2025.1.2.) 준용)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2.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③	• 경미한 사항 변경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
④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한다.	-
⑤	• 경미한 사항 변경의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경미한 변경기준'을 준용한다.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2.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③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 제4절 2-4-5 기준에 의한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주1) 경미한 사항 변경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주2)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한다.
주3) 경미한 사항 변경의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경미한 변경 기준'을 준용한다.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경미한 사항 항목 신설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 제척된 108-11번지에 대하여 향후 토지소유자간 협의 완료시 특별계획구역 편입을 위한 변경

Ⅲ.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5,623.0	감) 2.0	5,621.0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623.0㎡ → 5,621.0㎡, 감) 2.0㎡	• 분할된 필지(궁동 267-1번지) 공부면적 반영 및 궁동 108-11번지 특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621.0	-	5,621.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621.0	감) 5,383.0	238.0	4.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83.0	5,383.0	95.8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83.0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철도 : 변경없음

2)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21	15 (5~8)	집산 도로	105 (44)	궁동 108-13답	궁동 113-2답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0호 (2022.02.24.)	현황 도로

주1) 향후 측량성과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획지	궁동 108-1 일대	5,383.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R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획지
	허용용도	• 공동주택(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획지

나. 건축물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 60% 이하	좌동	획지

2) 용적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 기준 : 190% 이하 • 허용 : 200% 이하 • 상한 : 250%(280%) 이하	좌동	획지

※ ( )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사항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적용량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준공 후에도 유지) → 개방공간 : 맘스카페, 아이돌봄시설, 작은도서관 열린단지 : 담장 미설치	5%p	5.00%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α ※α=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 190 × (199.0㎡ / 5,383.0㎡) × 1 = 7%	5%p 이내	5.00%
합계	최대 10%p 이내		10.00%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시설 등 제공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200.00%×(1+1.3×1×0.0442) = 211.5%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비율 = 도로 238.0㎡ / 5,383.0㎡(구역면적 5,621.0㎡-도로 238.0㎡) = 0.0442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48조에 따른 용적률(200%)의 20% • 적용산식 = 용적률×20% = 200%×20% = 4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친환경 항목 적용	• 적용산식 = 용적률×(1+완화기준) = 200%×(1+15%) = 230% = 친환경 항목 적용에 따른 완화 용적률 230% - 조례용적률 200% = 30% - 가.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녹색건축 우수 등급 / 최대 완화비율: 3% -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최대 완화비율: 12%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호, 2025.1.2.) 준용)

3) 높이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이	• 40m(13층) 이하	좌동	획지

다. 건축물 배치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오리로 : 3m • 오리로22나길 : 6m • 오리로22가길(중로 2-521)변 : 1m • 특별계획구역 남측 : 3m	좌동	획지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이격부분 전면공지 조성 – 오리로 : 3m – 오리로22나길 : 6m – 오리로22가길(중로 2-521)변 : 1m – 특별계획구역 남측 : 3m	좌동	지침도 참조
공개(쌈지형) 공지	• 2개소 위치 지정 – 오리로22가길 : 공개공지 1개소 – 오리로22나길 : 쌈지형공지 1개소	좌동	지침도 참조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오리로변 및 오리로22가길(중로 2-521)	좌동	지침도 참조

3.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여 계획	• 도로 (238.0㎡)	좌동	–

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위치		• 궁동 108-1번지 일대	• 좌 동	-
면적		• 5,621.0㎡	• 좌 동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좌 동	-
공공기여계획		• 도로 (238.0㎡)	• 좌 동	조성 후 기부채납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좌 동	-
	허용용도	• 공동주택(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건축물 개발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좌 동	-
	용적률	• 190%/200%/250%(280%) 이하 • ※( )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사항임	• 좌 동	-
	높이	• 40m(13층) 이하	• 좌 동	-
배치 및 형태	건축한계선	• 오리로 : 3m • 오리로22나길 : 6m • 오리로22가길(중로 2-521)변 : 1m • 특별계획구역 남측 : 3m	• 좌 동	결정도 참조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이격부분 전면공지 조성	• 좌 동	
	공개(쌈지형) 공지	• 2개소 위치 지정 - 오리로22가길 : 공개공지 1개소 - 오리로22나길 : 쌈지형공지 1개소	• 좌 동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오리로변 및 오리로22가길 (중로 2-521)변 차량출입불허	• 좌 동	

주1)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 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허용하고, 용적률은 기준 190% / 허용 200% / 상한 250% 적용하며, 높이는 평균 13층이하 적용
주2) 특별계획구역 내 오리로22나길변 차도형 전면공지(3m)는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도로 시설물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향후 사업시행 시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함
주3) 제척된 궁동 108-11번지는 추후 토지소유자 간 협의 매수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하도록 함(편입 불가 시 사유 소명)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2)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303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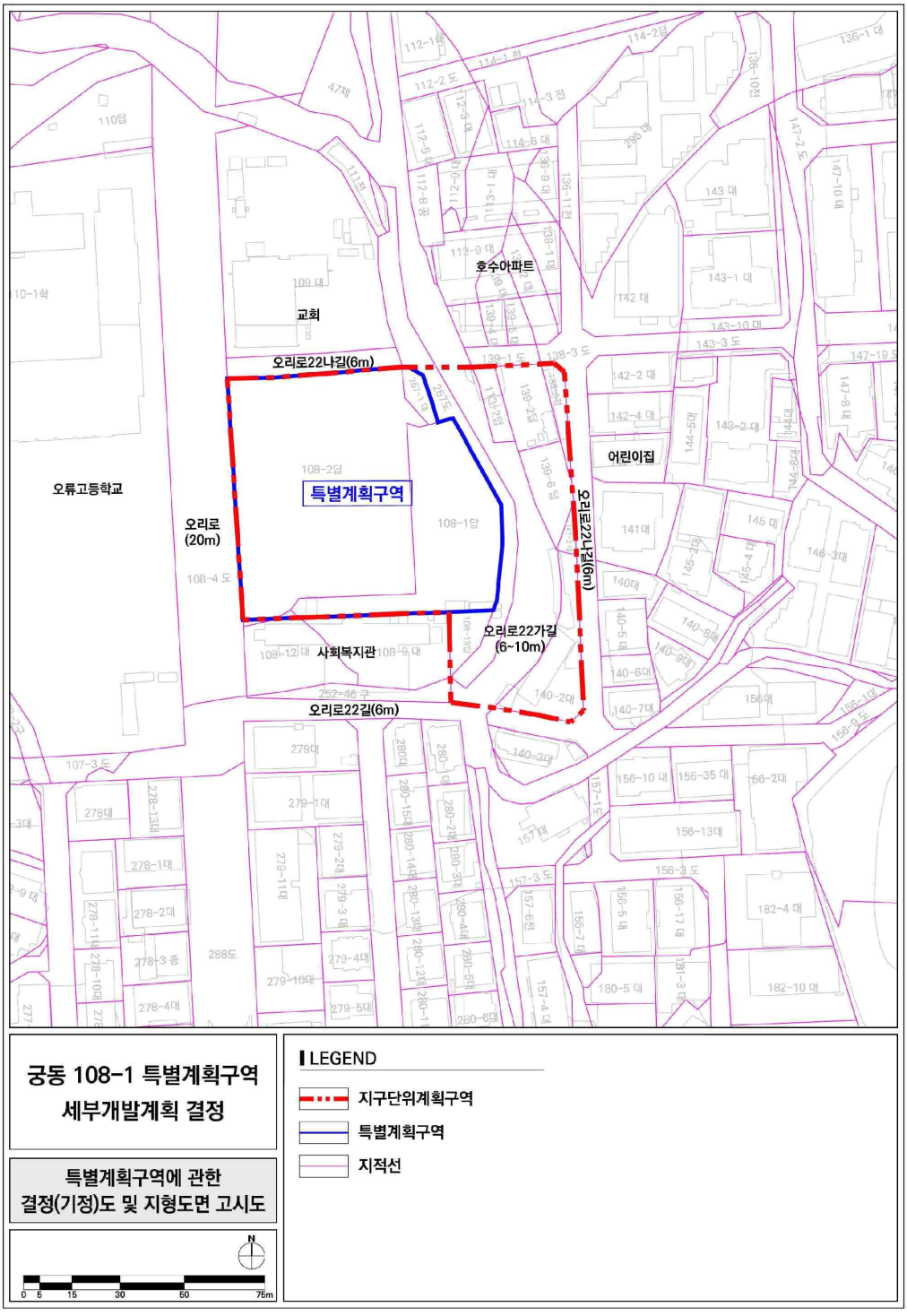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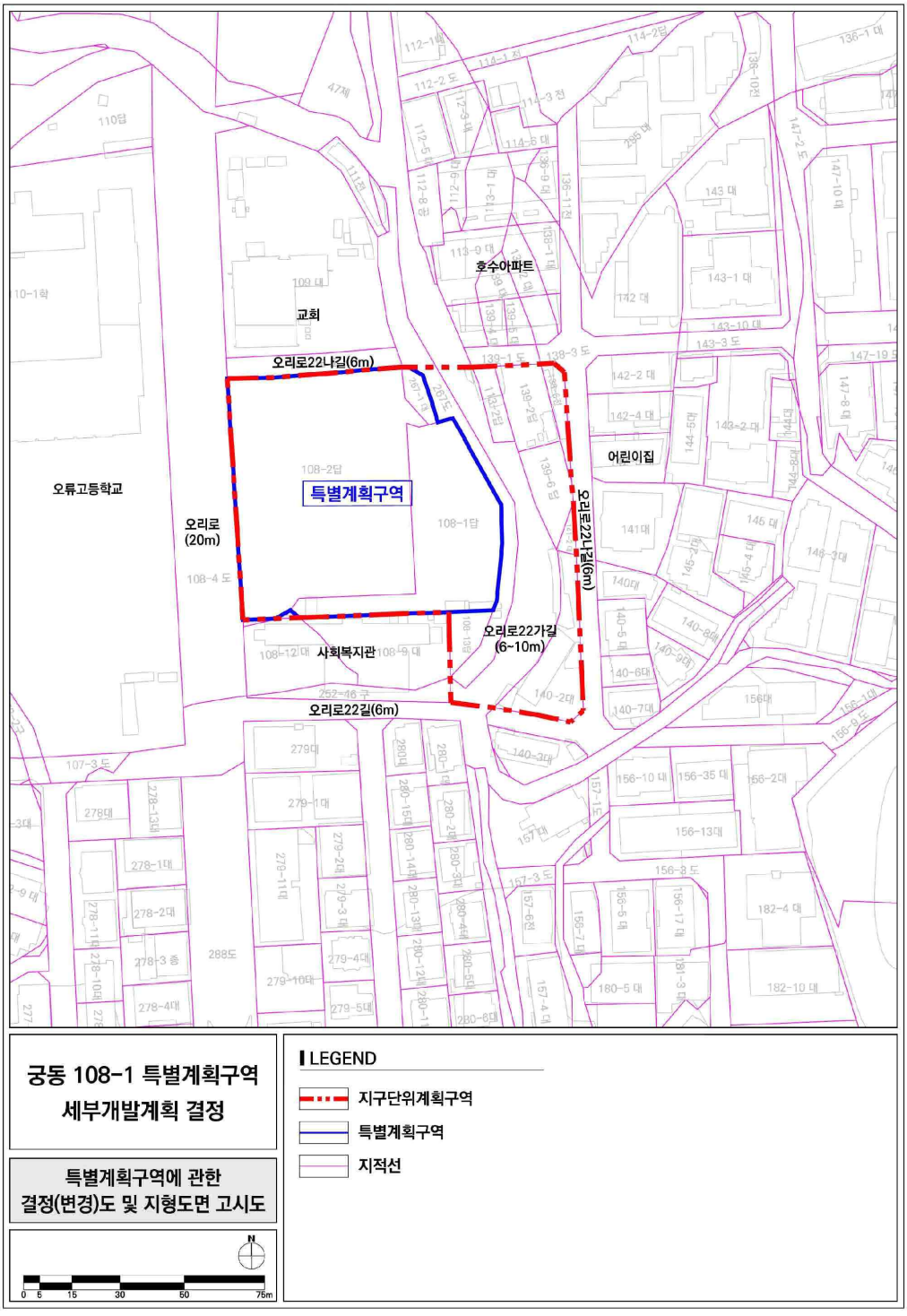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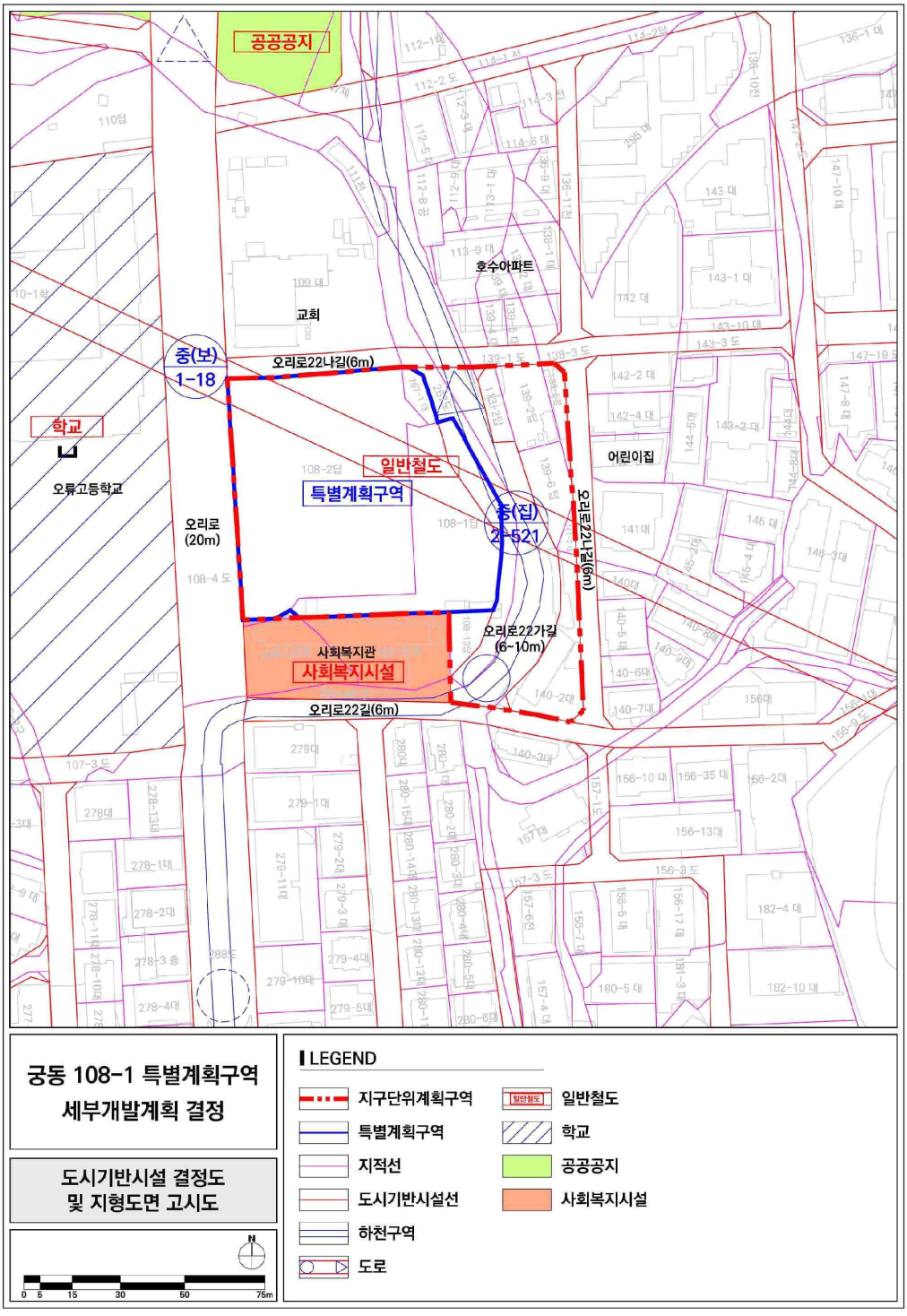

■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3호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2016.08.04.)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정비예정 구역으로 의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9호(2018.08.16.)로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69호(2020.09.0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동대문구고시 제2022-102호(2022.05.06.), 동대문구고시 제2023-97호(2023.08.24.), 동대문구고시 제2024-80호(2024.06.13.)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호(2025.01.23.)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5.12.18.)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7,882.0	-	17,882.0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7,882.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788.0	21.1	-
	도로		2,093.0	11.7	-
	공원		1,695.0	9.4	공원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획지	기정	소계	14,094.0	78.9	-
		획지1	1,887.0	10.6	- 업무시설 - 판매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 근생시설
		획지2	4,294.0	24.0	- 공동주택 - 판매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 근생시설
		획지3	4,840.0	27.1	
		획지4	3,073.0	17.2	
	변경	소계	14,094.0	78.9	-
		획지1	1,887.0	10.6	- 업무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 판매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획지2	4,294.0	24.0	- 공동주택 - 판매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획지3	4,840.0	27.1	
		획지4	3,073.0	17.2	

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7,882.0	-	17,882.0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95.0	-	1,695.0	9.5	공원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187.0	-	16,187.0	90.5	획지 등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79	20	국지도로	300	답십리동	답십리동 467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74호 (78.06.12)	-
기정	중로	1	172	20	국지도로	1,030	답십리동 498	군자동 20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10호 (78.01.10)	-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주차장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1,695.0	-	1,695.0	서울시고시 제2020-369호 (20.09.03)	소공원 하부 중복결정

※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과 정합하게 도면표시번호 기재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	소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1,695.0	-	1,695.0	서울시고시 제2020-369호 (20.09.03)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로당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248.57	증) 91.44	340.01	법정 330㎡이상
어린이집		390.58	감) 20.89	369.69	법정 330㎡이상
작은도서관		220.28	증) 59.61	279.89	법정 158㎡이상
어린이놀이터		1,200.0	-	1,200.0	-
다목적실		206.2	-	206.2	-
다함께돌봄센터		131.91	증) 93.31	225.22	법정 66㎡이상
노유자시설		107.33	-	107.33	-
주민공동시설		679.43	감) 11.28	668.15	-
주민운동시설(옥외)		600.0	-	600.0	-
맘&키즈카페		-	증) 196.57	196.57	-
블럭놀이공간		-	증) 118.67	118.67	-
컬쳐클래스		-	증) 168.61	168.61	-
계		3,784.3	증) 696.04	4,480.34	-

※ 변경사유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세대당 2.5㎡더한 면적 × 1.25)

⇒ (기정) : 618세대 × 2.5㎡ × 1.25 = 1,931.3㎡이상(의무면적)

(변경) : 729세대 × 2.5㎡ × 1.25 = 2,278.1㎡이상(의무면적)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	17,882.0	획지1	1,887.0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7번지	1	-	-	1	-	-
			획지2	4,294.0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6번지	1	-	-	1	-	-
			획지3	4,840.0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4번지	1	-	-	1	-	-
			획지4	3,073.0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1	-	-	1	-	-
			도로	2,093.0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2번지	1	-	-	1	-	-
			공원	1,695.0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번지	1	-	-	-	1	-
			합계	17,882.0	-	6	-	-	5	1	-

사. 건축시설계획(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기정)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기준/허용/상한)</th><th rowspan="2">기준/ 최고높이(m)</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8">기정</td><td rowspan="7">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td><td rowspan="7">17,882.0</td><td>획지1</td><td>1,887.0</td><td>답십리동 952-7번지</td><td>-업무시설
-판매시설 (자동차·이동수단관련)
-근생시설</td><td rowspan="4">60이하</td><td rowspan="4">600/750/820</td><td>80m/ 100m이하</td></tr>
<tr><td>획지2</td><td>4,294.0</td><td>답십리동 952-6번지</td><td rowspan="3">-공동주택
-판매시설 (자동차·이동수단관련)
-근생시설</td><td>80m/ 120m이하</td></tr>
<tr><td>획지3</td><td>4,840.0</td><td>답십리동 952-4번지</td><td>80m/ 120m이하</td></tr>
<tr><td>획지4</td><td>3,073.0</td><td>답십리동 952번지</td><td>70m이하</td></tr>
<tr><td>도로</td><td>2,093.0</td><td>답십리동 952-2번지</td><td colspan="4" rowspan="2">-</td></tr>
<tr><td>공원</td><td>1,695.0</td><td>답십리동 952-5번지</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618세대(분양주택 478세대, 임대주택 140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전용면적)</th><th rowspan="2">합계</th><th colspan="2">공동주택</th></tr>
<tr><th>분양주택</th><th>임대주택</th></tr>
<tr><td colspan="2">합계</td><td>618세대(100.0%)</td><td>478세대(100.0%)</td><td>140세대(100.0%)</td></tr>
<tr><td rowspan="4">공동주택</td><td>45㎡이하</td><td>48세대(7.8%)</td><td>17세대(3.6%)</td><td>31세대(22.1%)</td></tr>
<tr><td>45㎡~60㎡이하</td><td>122세대(19.7%)</td><td>84세대(17.6%)</td><td>38세대(27.2%)</td></tr>
<tr><td>60㎡~85㎡이하</td><td>424세대(68.6%)</td><td>353세대(73.8%)</td><td>71세대(50.7%)</td></tr>
<tr><td>85㎡초과</td><td>24세대(3.9%)</td><td>24세대(5.0%)</td><td>-</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기준/허용/상한)</th><th rowspan="2">기준/
최고높이(m)</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6"></td><td rowspan="4">용적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2">기준용적률</td><td colspan="6">· 600%</td></tr>
<tr><td colspan="2">허용용적률</td><td colspan="6">·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0%)
= 600% + 150% = 750% 적용
· 인센티브 = 150%(친환경개발(100%)+도시경제활성화(50%))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인센티브항목</th><th>기준</th><th>계획</th></tr>
<tr><td>의무</td><td colspan="2">친환경개발</td><td>100%</td><td>100%</td></tr>
<tr><td rowspan="8">계획
유도</td><td rowspan="3">도시
경제
활성화</td><td>①</td><td>50%</td><td>50%</td></tr>
<tr><td>②</td><td rowspan="2">최대 30%</td><td rowspan="2">–</td></tr>
<tr><td>③</td></tr>
<tr><td colspan="2">생활문화인프라</td><td>최대 20%</td><td>–</td></tr>
<tr><td colspan="2">주거안정</td><td>50%</td><td>–</td></tr>
<tr><td colspan="2">산업안정</td><td>최대 20%</td><td>–</td></tr>
<tr><td colspan="2">공익시설</td><td>10%</td><td>–</td></tr>
<tr><td colspan="2">보행가로활성화</td><td>20%</td><td>–</td></tr>
<tr><td colspan="3">소계</td><td>200%이내적용</td><td>150%</td></tr>
</table></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6">·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면적/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의 대지면적</td></tr>
<tr><td rowspan="4">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2">동측 한천로변</td><td colspan="6" rowspan="4">·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td></tr>
<tr><td colspan="2">획지 3,4 북측
전농로4길변</td></tr>
<tr><td colspan="2">획지 1,2 황물로변</td></tr>
<tr><td colspan="2">획지1 남측
고미술로변</td></tr>
<tr><td>전면공지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3m) 조성
· 전면공지 조성지침
– 대지경계와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은 주변의 외부공간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
– 보도형으로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환경 조형물 등의 설치 가능(단, 전면공지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td></tr>
<tr><td>교통처리계획</td><td colspan="8">· 전면부(한천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td></tr>
<tr><td>공공시설 등 부담계획</td><td colspan="8">· 기부채납 순부담 10%이상</td></tr>
</table>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기준/허용/상한)</th><th rowspan="2">기준/
최고높이(m)</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8">변경</td><td rowspan="7">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td><td rowspan="7">17,882.0</td><td>획지1</td><td>1,887.0</td><td>답십리동
952-7번지</td><td>-업무시설
(자동차·이동
수단관련)
-판매시설
(자동차·이동
수단관련)</td><td rowspan="5">60이하</td><td rowspan="5">600/700/770</td><td>80m/
100m이하</td></tr>
<tr><td>획지2</td><td>4,294.0</td><td>답십리동
952-6번지</td><td rowspan="3">-공동주택
-판매시설
(자동차·이동
수단관련)</td><td>80m/
120m이하</td></tr>
<tr><td>획지3</td><td>4,840.0</td><td>답십리동
952-4번지</td><td>80m/
120m이하</td></tr>
<tr><td>획지4</td><td>3,073.0</td><td>답십리동
952번지</td><td>70m이하</td></tr>
<tr><td>도로</td><td>2,093.0</td><td>답십리동
952-2번지</td><td colspan="4" rowspan="2">-</td></tr>
<tr><td>공원</td><td>1,695.0</td><td>답십리동
952-5번지</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7">•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729세대(분양주택 582세대, 임대주택 147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전용면적)</th><th rowspan="2">합계</th><th colspan="2">공동주택</th></tr>
<tr><th>분양주택</th><th>임대주택</th></tr>
<tr><td colspan="2">합계</td><td>729세대(100.0%)</td><td>582세대(100.0%)</td><td>147세대(100.0%)</td></tr>
<tr><td rowspan="4">공동
주택</td><td>45㎡이하</td><td>67세대(9.2%)</td><td>30세대(4.1%)</td><td>37세대(25.2%)</td></tr>
<tr><td>45㎡~60㎡이하</td><td>143세대(19.6%)</td><td>95세대(13.0%)</td><td>48세대(32.6%)</td></tr>
<tr><td>60㎡~85㎡이하</td><td>515세대(70.6%)</td><td>453세대(62.1%)</td><td>62세대(42.2%)</td></tr>
<tr><td>85㎡초과</td><td>4세대(0.5%)</td><td>4세대(0.5%)</td><td>-</td></tr>
</table></td></tr>
<tr><td rowspan="4">용적률에
관한 계획</td><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 60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6">•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0%)
= 600% + 100% = 700% 적용
• 인센티브 = 100%(친환경개발(100%))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인센티브항목</th><th>기준</th><th>계획</th></tr>
<tr><td>의무</td><td colspan="2">친환경개발</td><td>100%</td><td>100%</td></tr>
<tr><td rowspan="8">계획
유도</td><td rowspan="3">도시경제
활성화</td><td>①</td><td>50%</td><td>-</td></tr>
<tr><td>②</td><td rowspan="2">최대 30%</td><td rowspan="2">-</td></tr>
<tr><td>③</td></tr>
<tr><td colspan="2">생활문화인프라</td><td>최대 20%</td><td>-</td></tr>
<tr><td colspan="2">주거안정</td><td>50%</td><td>-</td></tr>
<tr><td colspan="2">산업안정</td><td>최대 20%</td><td>-</td></tr>
<tr><td colspan="2">공익시설</td><td>10%</td><td>-</td></tr>
<tr><td colspan="2">보행가로활성화</td><td>20%</td><td>-</td></tr>
<tr><td colspan="3">소계</td><td>200%이내적용</td><td>100%</td></tr>
</table></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6">•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면적/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의 대지면적</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2">동측 한천로변
획지 3,4 북측
전농로4길변
획지 1,2 황물로변
획지1 남측
고미술로변</td><td colspan="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td></tr>
<tr><td>전면공지에 관한 계획</td><td colspan="7">•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3m) 조성
• 전면공지 조성지침
- 대지경계와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은 주변의 외부공간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
- 보도형으로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환경 조형물 등의 설치 가능(단, 전면공지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td></tr>
<tr><td colspan="2">교통처리계획</td><td colspan="6">• 전면부(한천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 등 부담계획</td><td colspan="6">• 기부채납 순부담 10%이상</td></tr>
</table>

※ 변경사유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용적률 변경

○ 용적률 계획(변경)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산정내용</th></tr>
<tr><td rowspan="5">기정</td><td>토지이용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
(획지1+획지2
+획지3+획지4)</td><td>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및
토지제공면적)</td><td>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도로,공원)</td></tr>
<tr><td>17,882.0㎡</td><td>14,094.0㎡</td><td>1,830.36㎡</td><td>-</td><td>3,788.0㎡</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건축물 기부채납) = 1,830.36㎡(획지면적 대비 12.99%)
※ 기부채납 순부담 10%이상(특별계획구역 지침)</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 600%
■ 허용용적률 : 750%</td></tr>
<tr><td>정비계획(상한)
용적률 산정</td><td colspan="5">■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 + 가중치×1.3×α(토지) + 0.7×α(건축물))
= 750%×[1 + 1(가중치)×1.3×0.0153 + 0.7×0.1145] = 825%
≒ 820%이하</td></tr>
<tr><td>α(토지)</td><td colspan="5">■ α=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216.0㎡(공공임대산업시설 토지제공면적) / [17,882.0㎡-1,695㎡(공원)-2,093.0㎡(도로)]
= 0.0153</td></tr>
<tr><td>α(건축물)</td><td colspan="5">■ α=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411.66㎡(공공임대산업시설 토지환산면적) + 1,202.7㎡(주차장 토지환산 면적)] /
[17,882.0㎡-1,695㎡(공원)-2,093.0㎡(도로)]
= 0.1145</td></tr>
<tr><td rowspan="8">변경</td><td>토지이용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
(획지1+획지2
+획지3+획지4)</td><td>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및
토지제공면적)</td><td>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도로,공원)</td></tr>
<tr><td>17,882.0㎡</td><td>14,094.0㎡</td><td>1,920.68㎡</td><td>-</td><td>3,788.0㎡</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건축물 기부채납) = 1,920.68㎡(획지면적 대비 13.63%)
※ 기부채납 순부담 10%이상(특별계획구역 지침)</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 600%
■ 허용용적률 : 700%</td></tr>
<tr><td>정비계획(상한)
용적률 산정</td><td colspan="5">■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 + 가중치×1.3×α(토지) + 0.7×α(건축물(공공임대산업시설)) +
0.7×α(건축물(주차장))
= 700%×[1 + 1×1.3×0.0085 + 0.7×0.0189 + 0.7×0.1100]
= 770%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허용용적률/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 = 700%/700% = 1</td></tr>
<tr><td>α(토지)</td><td colspan="5">■ α=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118.86㎡(공공임대산업시설 토지제공면적)
/[17,882.0㎡-1,695㎡(공원)-2,093.0㎡(도로)-118.86㎡(공공임대산업시설 토지제공면적)]
= 0.0085</td></tr>
<tr><td>α(건축물
(공공임대
산업시설))</td><td colspan="5">■ α= 공공임대산업시설 토지환산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263.91㎡(공공임대산업시설 토지환산 면적)
/[17,882.0㎡-1,695㎡(공원)-2,093.0㎡(도로)-118.86㎡(공공임대산업시설 토지제공면적)]
= 0.0189</td></tr>
<tr><td>α(건축물
(주차장))</td><td colspan="5">■ α= 주차장 토지환산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1,537.91㎡(주차장 토지환산 면적)
/[17,882.0㎡-1,695㎡(공원)-2,093.0㎡(도로)-118.86㎡(공공임대산업시설 토지제공면적)]
= 0.1100</td></tr>
</table>

※ 기정 -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1,830.36㎡) = 토지제공면적(216.0㎡) + 토지환산면적(1,614.36㎡)
※ 변경 -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1,920.68㎡) = 토지제공면적(118.86㎡) + 토지환산면적(1,801.82㎡)
※ 공공시설계획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환산 부지면적 산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건축허가시 최종 결정됨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율을 완화 받기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
-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 상업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또는 연면적의 5% 이상을 건설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의무임대주택(「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6)
  - 증가하는 용적률의 1/2 이상 건설
-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의무임대주택은 중복가능(도시활성화과-10752, '20.09)
-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5">내용</th></tr>
<tr><td rowspan="15">기정</td><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임대주택 건설 :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서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600%이하까지 완화</td></tr>
<tr><td colspan="2">주거복합용적률(기준)</td><td colspan="5">400%</td></tr>
<tr><td colspan="2">주거복합용적률(계획)</td><td colspan="5">597.82%</td></tr>
<tr><td rowspan="3">임대주택 의무 용적률</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597.82% - 400.0% = 197.82%</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 이상</td><td colspan="5">197.82% × 0.5 = 98.91%</td></tr>
<tr><td>계획 용적률</td><td colspan="5">100.66%</td></tr>
<tr><td rowspan="10">임대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 colspan="2">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 colspan="2">59.07㎡</td><td>95.15㎡</td><td>34</td><td>3,235.13</td><td>획지2</td></tr>
<tr><td colspan="2">74.83㎡</td><td>116.24㎡</td><td>23</td><td>2,673.51</td><td rowspan="3">획지3</td></tr>
<tr><td colspan="2">84.12㎡</td><td>130.21㎡</td><td>24</td><td>3,125.04</td></tr>
<tr><td colspan="2">84.9㎡</td><td>130.61㎡</td><td>24</td><td>3,134.64</td></tr>
<tr><td colspan="2">33.71㎡</td><td>51.99㎡</td><td>19</td><td>987.82</td><td rowspan="3">획지4</td></tr>
<tr><td colspan="2">35.27㎡</td><td>55.17㎡</td><td>12</td><td>662.05</td></tr>
<tr><td colspan="2">59.72㎡</td><td>92.12㎡</td><td>4</td><td>368.49</td></tr>
<tr><td colspan="2">합계</td><td></td><td>140</td><td>14,186.68</td><td>-</td></tr>
<tr><td rowspan="15">변경</td><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임대주택 건설 :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서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600%이하까지 완화</td></tr>
<tr><td colspan="2">주거복합용적률(기준)</td><td colspan="5">400%</td></tr>
<tr><td colspan="2">주거복합용적률(계획)</td><td colspan="5">592.26%</td></tr>
<tr><td rowspan="3">임대주택 의무 용적률</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592.26% - 400.0% = 192.26%</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 이상</td><td colspan="5">192.26% × 0.5 = 96.13%</td></tr>
<tr><td>계획 용적률</td><td colspan="5">96.135%</td></tr>
<tr><td rowspan="10">임대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 colspan="2">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 colspan="2">59.07㎡</td><td>92.18㎡</td><td>41</td><td>3,779.38</td><td>획지2</td></tr>
<tr><td colspan="2">74.83㎡</td><td>112.60㎡</td><td>34</td><td>3,828.40</td><td rowspan="2">획지3</td></tr>
<tr><td colspan="2">84.90㎡</td><td>126.49㎡</td><td>28</td><td>3,541.72</td></tr>
<tr><td colspan="2">28.86㎡</td><td>42.81㎡</td><td>9</td><td>385.29</td><td rowspan="3">획지4</td></tr>
<tr><td colspan="2">33.71㎡</td><td>49.86㎡</td><td>28</td><td>1,396.08</td></tr>
<tr><td colspan="2">59.72㎡</td><td>88.34㎡</td><td>7</td><td>618.38</td></tr>
<tr><td colspan="2">합계</td><td></td><td>147</td><td>13,549.25</td><td>-</td></tr>
</table>

※변경사유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비례율 = [종후자산(812,789,817,293원)−사업비(648,977,566,806원)]÷종전자산(163,314,000,000원) =100.3%

추정 총수입

항 목			금액(원)	비율(%)	비고
종후자산 (수 입)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312,640,000,000	38.47%	−
		일반분양	359,082,000,000	44.18%	−
	임대주택		23,438,341,813	2.88%	−
	업무시설 (사무소)	조합원분양	24,500,815,200	3.01%	−
		일반분양	30,626,019,000	3.77%	−
	판매시설	조합원분양	27,778,951,680	3.42%	−
		일반분양	34,723,689,600	4.27%	−
합 계			812,789,817,293	100.00%	−

추정 총비용

구분	금액(천원)	비율(%)	비고
건축시설공사비	490,514,983,035	75.6%	−
보 상 비	29,463,400,000	4.5%	−
관 리 비	4,155,723,000	0.6%	−
설 계 비	8,016,909,000	1.2%	−
감 리 비	5,985,506,000	0.9%	−
부대경비	90,841,045,771	14.0%	−
예 비 비	20,000,000,000	3.1%	−
소 계	648,977,566,806	100%	연면적(3.3㎡) × 13,200천원/3.3㎡

종전자산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토지등소유자 자산총액(181,460,000,000원)−청산대상자 청산금(18,146,000,000원) = 163,314,000,000원

※ 토지토지등소유자 553명 중 분양대상 조합원(청산자55명 제외) 약 498명기준 : 1인당 평균 약 328,000천원으로 추정

공사비 및 분양가에 따른 비례율 변동표

비례율변동표(%)			3.3㎡당 공사비(천원/3.3㎡)				
			−4%	−2 %	0% (現 추정 사업비)	+2%	+4%
			10,400	10,200	10,000	9,800	9,600
일반분양가 84㎡형기준 (천원/3.3㎡)	+4%	36,400	104.3%	112.3%	120.2%	128.2%	136.1%
	+2%	35,700	94.4%	102.3%	110.3%	118.2%	126.2%
	0% (現 기준 분양가)	35,000	84.4%	92.4%	100.3%	108.3%	116.2%
	−2%	34,300	74.5%	82.4%	90.4%	98.3%	106.2%
	−4%	33,600	64.5%	72.5%	80.4%	88.3%	96.3%

※ 일반분양분 평당 분양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84A타입의 공급단가를 표기한 것이며, 분양가변동은 전체를 기준함.

추정 분담금

추정 종전자산 (천원)	추정 비례율	예상 권리가액 (천원)	공동주택(아파트) 주택유형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가액	추정분담금	비고
100,000	100.3%	100,305	28A	347,000	246,695	분담
			33A	404,000	303,695	분담
			59A	906,000	805,695	분담
			59B	875,000	774,695	분담
			59C	874,000	773,695	분담
			74A	1,017,000	916,695	분담
			74B	994,000	893,695	분담
			84A	1,161,000	1,060,695	분담
			84B	1,163,000	1,062,695	분담
			84C	1,166,000	1,065,695	분담
			84D	1,117,000	1,016,695	분담
			84E	1,125,000	1,024,695	분담
			84F	1,119,000	1,018,695	분담
			135A	1,711,000	1,610,695	분담

추정 종전자산(천원)	추정 비례율	예상 권리가액(천원)	공동주택(아파트)		추정분담금	비고
			주택유형	분양가액		
200,000	100.3%	200,610	28A	347,000	146,390	분담
			33A	404,000	203,390	분담
			59A	906,000	705,390	분담
			59B	875,000	674,390	분담
			59C	874,000	673,390	분담
			74A	1,017,000	816,390	분담
			74B	994,000	793,390	분담
			84A	1,161,000	960,390	분담
			84B	1,163,000	962,390	분담
			84C	1,166,000	965,390	분담
			84D	1,117,000	916,390	분담
			84E	1,125,000	924,390	분담
			84F	1,119,000	918,390	분담
			135A	1,711,000	1,510,390	분담
300,000	100.3%	300,915	28A	347,000	46,085	분담
			33A	404,000	103,085	분담
			59A	906,000	605,085	분담
			59B	875,000	574,085	분담
			59C	874,000	573,085	분담
			74A	1,017,000	716,085	분담
			74B	994,000	693,085	분담
			84A	1,161,000	860,085	분담
			84B	1,163,000	862,085	분담
			84C	1,166,000	865,085	분담
			84D	1,117,000	816,085	분담
			84E	1,125,000	824,085	분담
			84F	1,119,000	818,085	분담
			135A	1,711,000	1,410,085	분담
400,000	100.3%	401,220	28A	347,000	-54,220	환급
			33A	404,000	2,780	분담
			59A	906,000	504,780	분담
			59B	875,000	473,780	분담
			59C	874,000	472,780	분담
			74A	1,017,000	615,780	분담
			74B	994,000	592,780	분담
			84A	1,161,000	759,780	분담
			84B	1,163,000	761,780	분담
			84C	1,166,000	764,780	분담
			84D	1,117,000	715,780	분담
			84E	1,125,000	723,780	분담
			84F	1,119,000	717,780	분담
			135A	1,711,000	1,309,780	분담
500,000	100.3%	501,525	28A	347,000	-154,525	환급
			33A	404,000	-97,525	환급
			59A	906,000	404,475	분담
			59B	875,000	373,475	분담
			59C	874,000	372,475	분담
			74A	1,017,000	515,475	분담
			74B	994,000	492,475	분담
			84A	1,161,000	659,475	분담
			84B	1,163,000	661,475	분담
			84C	1,166,000	664,475	분담
			84D	1,117,000	615,475	분담
			84E	1,125,000	623,475	분담
			84F	1,119,000	617,475	분담
			135A	1,711,000	1,209,475	분담

추정 종전자산(천원)	추정 비례율	예상 권리가액(천원)	공동주택(아파트)		추정분담금	비고
			주택유형	분양가액		
600,000	100.3%	601,831	28A	347,000	−254,831	환급
			33A	404,000	−197,831	환급
			59A	906,000	304,169	분담
			59B	875,000	273,169	분담
			59C	874,000	272,169	분담
			74A	1,017,000	415,169	분담
			74B	994,000	392,169	분담
			84A	1,161,000	559,169	분담
			84B	1,163,000	561,169	분담
			84C	1,166,000	564,169	분담
			84D	1,117,000	515,169	분담
			84E	1,125,000	523,169	분담
			84F	1,119,000	517,169	분담
			135A	1,711,000	1,109,169	분담
700,000	100.3%	702,136	28A	347,000	−355,136	환급
			33A	404,000	−298,136	환급
			59A	906,000	203,864	분담
			59B	875,000	172,864	분담
			59C	874,000	171,864	분담
			74A	1,017,000	314,864	분담
			74B	994,000	291,864	분담
			84A	1,161,000	458,864	분담
			84B	1,163,000	460,864	분담
			84C	1,166,000	463,864	분담
			84D	1,117,000	414,864	분담
			84E	1,125,000	422,864	분담
			84F	1,119,000	416,864	분담
			135A	1,711,000	1,008,864	분담

※ 예정 추정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으로 산정되며, 추정 분담금이 (−)인 경우 환급금이 발생됨.
※ 권리가액은 "추정 종전가액 × 추정 비례율"로 산정되며, 추정 비례율은 "(종후자산 − 사업비) ÷ 종전자산"으로 산정됨.

※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자.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 ※ 공사시 저감 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망설치, 사업대상지내 살수실시,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	–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기존 수목들의 자체조사를 통한 활용대상을 선정하여 활용 가능한 식생은 조경식재지로 이식하여 최대한 기존자연환경이 유지되도록 고려할 계획	–

2)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1.생태면적율	30%이상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현재 녹지 없음	· 30%이상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조경녹지 확보로 연결성 확보	· 대상지 내 조경공간 계획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현재 평탄지, 공사시 절·성토 발생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기존 사업지는 평지로서 지형변화는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4.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도 : 상업업무지,주거지비오톱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 도로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조경녹지 조성에 따라 비오톱유형평가도 등급 상향예상 · 조경녹지비오톱 추가 조성
생활환경	5.일조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 북측 단독주택부지는 조밀한 입지로 일조량 불만족세대가 다수 · 건축선 이격을 통한 일조영향 최소화	·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조정, 내부일조 해소를 위한 창면적 확대 등 저감대책 마련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은 공동주택(고층)이 위치	·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물배치 및 통경축 확보
생활환경	7.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소비증가예상	·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계획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도입검토	· 절약형 단지 및 건축설계 기법을 최대한 반영
	8.경관	Skyline보전	· 간선가로변의 경관 고려 필요	·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9.휴식및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공원과 연계된 동선 확보	·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자전용도로 부족	· 공공보행로와 연계, 타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한 보행로 계획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보행로 보도의 바닥패턴을 구분하여 자전거 동선 확보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보관소 설치검토	· 획지별 자전거 보관소 설치예정
추가	11.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예상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살수실시, 가설방진망, 속도제한 등 실시
	12.소음 및 진동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준수
	13.폐기물		· 기존 건축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마련
	14.물순환(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 운영시 오수발생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차.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7,882.0	-	17,882.0	-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 계획세대수 : 618세대 • 증가세대수 : 618세대		-
변경				• 계획세대수 : 729세대 • 증가세대수 : 729세대		-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상지 동측 군자초등학교 입지	• 군자초등학교는 대상지 200m 내에 위치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청소년 유해시설)의 설치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소음·진동저감대책 및 통학로 안전시설설치 등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조경	단지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
조명	단지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 설치	-
자연적 접근통제	단지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 내 출입을 통제	-
영역성 강화	단지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

Ⅱ.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523,805	감) 32	523,7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9호 (2018.08.16.)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변경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변경 - 면적 : 523,805㎡ → 523,773㎡	•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동대문구 고시 제2024-80호, 2024.06.13.) 반영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23,805	감) 32	523,77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69	-	17,369	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613	-	40,613	7.8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38	-	67,838	1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024.2	-	110,024.2	21.0	
준주거지역	88,753.7	-	88,753.7	16.7	
일반상업지역	126,802.1	감) 32	126,770.1	24.2	
유통상업지역	72,405	-	72,405	13.8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합계	17,914	감) 32	17,882	•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 (동대문구 고시 제2024-80호, 2024.06.13.) 반영
		제1종일반주거지역	1,695	-	1,695	
		일반상업지역	16,219	감) 32	16,187	

○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없음)

▪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2019.04.18.)에 따라 중심지·조망가로·일반 미관지구가 폐지 결정되었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용답동 231일대 특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일대	6,398.7	-	6,398.7	
기정	②	미래자동차 혁신센터부지 특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48-14번지 일대	5,790	-	5,790	
변경	③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7,914	감) 32	17,882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③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면적변경 : 17,914㎡→17,882㎡ (감 32㎡)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동대문구고시 제2024-80호, 2024.06.13.) 반영

가) 용답동 231일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나) 미래자동차 혁신센터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다)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변경)

○ 구역개요(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C1	1,887	17,914	어린이공원(1,695㎡), 도로(2,125㎡) 포함
			C2	4,294		
			C3	4,840		
			C4	3,073		
변경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C1	1,887	17,882	소공원(1,695㎡), 도로(2,093㎡) 포함
			C2	4,294		
			C3	4,840		
			C4	3,073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동대문구고시 제2024-80호, 2024.06.13.) 반영

○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반시설 확보 등		• 기부채납 순부담10%이상 – 신축건축물내 공공시설 (공공산업 임대공간, 공공물류창고 등주3)) 복지·문화시설 등(지상권 설정) • 어린이공원*, 도로 조성 – 어린이공원(1,695㎡이상), 도로(2,125㎡이상)	• 기부채납 순부담10%이상 – 신축건축물내 공공시설 (공공산업 임대공간, 공공물류창고 등주3)) 복지·문화시설 등(지상권 설정) • 소공원*, 도로 조성 – 소공원(1,695㎡이상), 도로(2,093㎡이상)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로 정비'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 • 소공원은 대상지 내 기정 면적이상 조성, 위치변경 가능
용도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C4블록에 한함) – 제16호의 위락시설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공공임대공간) – 제7호의 판매시설(자동차 부품판매업)주5)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건폐율		• 60%이하 (조건만족시 저층부주8)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600%이하 / 800%이하 / 법정용적률2배		
높이 (기준/최고)		• 한천로변: 80/120m이하(C1,C1,C3) • 전농로4길변: 최고 70m이하(C4)		
건축선		• 한천로변 건축한계선 3m 지정		
기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3m) 조성		
교통처리계획		• 전면부(한천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설정		
사업방식		• 재개발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동대문구고시 제2024-80호, 2024.06.13.) 반영

주1) C1,C2,C3,C4의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산업 보호를 위하여 순환개발이 필요한 경우 필지별개발 가능(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방식 결정)

주2) 기반시설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로 정비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

주3) 공공산업 임대공간, 공공물류창고 등

- 공공산업 임대공간은 개발사업 이후 임대료 증가에 따라 재입주할수 없거나 지역의 영세한 자동차 및 부품판매 관련 기존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임대산업시설로 조성
- 단, 지역수요에 따라 공공산업임대공간 일부(조성면적의 30%이내)를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음식점 등)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
- 공공물류창고는 대상지 주변지역의 자동차 부품관련 사업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로 조성
-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관련부서와 상호 논의하여 사업시행인가시의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구체적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구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이행담보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주4) 소공원은 대상지 내 기정 면적이상 조성, 위치변경 가능함

주5) 판매시설(자동차 부품판매업)은 한국산업분류표 도매 및 소매업(45) 중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에 한함

주6) 주거복합건축물 입지시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따라 추가되는 용적률은 주거부분과 기타부분을 비례 배분하여 적용함

주7) 주거연면적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제55조 제 3항 관련)을 따름

주8) 저층부는 건축물 높이 5층 이하를 말함

주9)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경관성검토 및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높이완화 검토가능
주10) 전면공지 조성지침
- 대지경계와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은 주변의 외부공간과 서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배치
- 보도형으로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환경 조형물등의설치 가능(단, 전면공지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주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2의 7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현금으로 기부채납 가능
주12)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의 주용도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주용도로 계획하도록 함
-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 함

주13) 자동차부품 관련시설 및 자동차 이동수단 관련용도를 기존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면적 이상(부품, 자동차 관련시설 이외 면적 및 주차장 제외)으로 조성하도록 함

○ 건폐율 완화기준(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없음)

○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높이에 추가하여 적용하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 결정

구분		완화조건		완화량	비고
기정	간선부 (C1,C2,C3)	건축물 용도	• 전체연면적의 30%이상 권장용도 설치(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주1)등)	40m 이하	-
		공공시설 설치	• 건축물 내 공공시설(기부채납 순부담10%이상) 제공시		
		교통처리	• 이면도로 주차출입구 설치		
변경	간선부 (C1,C2,C3)	건축물 용도	• 전체연면적의 20%이상 권장용도 설치(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주1)등)	40m 이하	-
		공공시설 설치	• 건축물 내 공공시설(기부채납 순부담10%이상) 제공시		
		교통처리	• 이면도로 주차출입구 설치		

※ 변경사유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높이 완화 항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권장용도 비율 변경
주1) 건축법상 용도분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 이동수단 관련용도"는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용도의 정의
  - 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는 장안평일대의 자동차(중고차 포함), 부품, 튜닝 등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용도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아래의 분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적용함
  ①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중 451.자동차 판매업, 452.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453.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예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튜닝 및 관련용품 전시·판매·체험용도, 전기차·무인자동차관련용품 전시·판매·체험용,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용품(전동휠,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의 전시·판매·체험용도

Ⅲ.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7,882	-
변경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7,882	-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명칭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 명칭변경 :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과 구역명칭이 정합되도록 명칭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7,882.0	-	17,882.0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95.0	-	1,695.0	9.5	공원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187.0	-	16,187.0	90.5	획지 등

2) 기반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79	20	국지도로	300	답십리동	답십리동 467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74호 (78.06.12)	-
기정	중로	1	172	20	국지도로	1,030	답십리동 498	군자동 20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10호 (78.01.10)	-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주차장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1,695.0	-	1,695.0	서울시고시제2020-369호 (20.09.03)	소공원 하부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	소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1,695.0	-	1,695.0	서울시고시 제2020-369호 (20.09.03.)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획지1	-	17,882.0	답십리동 952-7번지	1,887.0	-업무시설 -판매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근생시설
	획지2			답십리동 952-6번지	4,294.0	-공동주택 -판매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근생시설
	획지3			답십리동 952-4번지	4,840.0	
	획지4			답십리동 952번지	3,073.0	
	도로			답십리동 952-2번지	2,093.0	도로
	공원			답십리동 952-5번지	1,695.0	공원
변경	획지1	-	17,882.0	답십리동 952-7번지	1,887.0	-업무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판매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획지2			답십리동 952-6번지	4,294.0	-공동주택 -판매시설(자동차·이동수단관련)
	획지3			답십리동 952-4번지	4,840.0	
	획지4			답십리동 952번지	3,073.0	
	도로			답십리동 952-2번지	2,093.0	도로
	공원			답십리동 952-5번지	1,695.0	공원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가구	용도	비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제8호 창고시설, 제14호 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 용도는 불허
	허용용도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제7호 판매시설, 제8호 창고시설, 제14호 업무시설(공공임대산업시설등)	
	허용용도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제7호 판매시설, 제8호 창고시설	
	허용용도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제7호 판매시설, 제8호 창고시설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①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②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600% 이하	750% 이하	820%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 750% 상한용적률 : 820%
변경	600% 이하	700% 이하	770%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 700% 상한용적률 : 770%

※ 변경사유 :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용적률 변경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변경)

구분	인센티브			비고
	친환경개발	도시경제활성화	보행가로 활성화	
기정	100%	50%	-	총 150.0%
변경	100%	-	-	총 100.0%

※ 해당 인센티브 계획은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 내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지침 준용
※ 변경사유 : 인센티브항목 변경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없음)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70%	-	총 70.0%

③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획지 1 : 100m이하 획지 2,3 : 120m이하 획지 4 : 70m 이하	높이계획은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지침 준용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동측 한천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획지 3,4 북측 전농로4길변	
	획지1,2 황물로변	
	획지1 남측 고미술로변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개공지	획지1	• 대상지 북측 황물로변 공개공지 조성
	획지2	• 대상지 남측 황물로변 공개공지 조성
	획지3	• 대상지 북측 전농로4길변 공개공지 조성
	획지4	• 대상지 동측 황물로17길변 공개공지 조성
전면공지	동측 한천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 전면공지 조성지침 – 대지경계와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은 주변의 외부공간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 – 보도형으로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환경 조형물등의 설치가능(단, 전면공지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획지 3,4 북측 전농로4길변	
	획지1,2 황물로변	
	획지1 남측 고미술로변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지 동측 한천로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3)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1.생태면적율	30%이상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현재 녹지 없음	· 30%이상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조경녹지 확보로 연결성 확보	· 대상지 내 조경공간 계획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현재 평탄지, 공사시 절·성토 발생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기존 사업지는 평지로서 지형변화는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4.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도 : 상업업무지,주거지비오톱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도로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조경녹지 조성에 따라 비오톱유형평가도 등급 상향예상 · 조경녹지비오톱 추가 조성
생활환경	5.일조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 북측 단독주택부지는 조밀한 입지로 일조량 불만족세대가 다수 · 건축선 이격을 통한 일조영향 최소화	·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조정, 내부일조 해소를 위한 창면적 확대 등 저감대책 마련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은 공동주택(고층)이 위치	·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물배치 및 통경축 확보
생활환경	7.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소비증가예상	·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계획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도입검토	· 절약형 단지 및 건축설계 기법을 최대한 반영
	8.경관	Skyline보전	· 간선가로변의 경관 고려 필요	·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9.휴식및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공원과 연계된 동선 확보	·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자전용도로 부족	· 공공보행로와 연계, 타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한 보행로 계획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보행로 보도의 바닥패턴을 구분하여 자전거 동선 확보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보관서 설치검토	· 획지별 자전거 보관소 설치예정
추가	11.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예상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살수실시, 가설방진망, 속도제한 등 실시
	12.소음 및 진동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준수
	13.폐기물		· 기존 건축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마련
	14.물순환(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 운영시 오수발생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4)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율을 완화 받기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
-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 상업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또는 연면적의 5% 이상을 건설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의무임대주택(「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6)
  - 증가하는 용적률의 1/2 이상 건설
-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의무임대주택은 중복가능(도시활성화과-10752, '20.09)
-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 기정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소형주택
합 계	618	100.0	140	140	–	22.7	100.0	–
40㎡이하	48	7.8	31	31	–	5.0	22.1	–
40㎡초과~50㎡이하	–	–	–	–	–	–	–	–
50㎡초과~60㎡이하	122	19.7	38	38	–	6.1	27.1	–
60㎡초과~85㎡이하	424	68.6	71	71	–	11.5	50.8	–
85㎡초과	24	3.9	–	–	–	–	–	–

– 변경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소형주택
합 계	729	100.0	147	147	–	20.2	100.0	–
40㎡이하	67	9.2	37	37	–	5.1	25.2	–
40㎡초과~50㎡이하	–	–	–	–	–	–	–	–
50㎡초과~60㎡이하	143	19.6	48	48	–	6.6	32.6	–
60㎡초과~85㎡이하	515	70.6	62	62	–	8.5	42.2	–
85㎡초과	4	0.5	–	–	–	–	–	–

※ 변경사유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Ⅳ. 2025년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조건부의결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심의의견</th><th>비고</th></tr>
<tr><td>수정사항</td><td>정비계획(변경)</td><td>
<table>
<tr><th>구분</th><th>공람안</th><th>주관부서 수정가결</th><th>비고</th></tr>
<tr><td>용적률</td><td>기준 600% / 허용 725%
친환경개발 100%
도시경제활성화 25%
상한 796%</td><td>기준 600% / 허용 700%
친환경개발 100%
도시경제활성화 –
상한 770%</td><td></td></tr>
</table>
</td><td></td></tr>
<tr><td rowspan="15">조건사항</td><td rowspan="3">공통</td><td>•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가 소신있는 현장감독을 수행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협약을 체결(허가권자, 건축주, 감리자) 하시기 바람</td><td></td></tr>
<tr><td>• 용적률 완화를 신청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은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시설개방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 입주자모집 공고문 등에 명시하시기 바람</td><td></td></tr>
<tr><td>• 공공보행통로는 주변지역과의 보행연속성을 확보하고 준공 후 차단시설 등 설치 방지를 위해 지상권(지역권) 등을 설정하시기 바람(권장)</td><td></td></tr>
<tr><td>정비계획(변경)</td><td>•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포함) 변경 관련하여 이후 필요시 절차 등을 검토 및 이행하기 바람</td><td></td></tr>
<tr><td rowspan="5">건축/경관</td><td>건축</td><td>•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 배치계획은 소공원, 어린이집 위치 등 고려하여 배치 계획 검토 바람</td><td></td></tr>
<tr><td>건축</td><td>• 2BL과 3BL 사이 자연지반 부분은 합벽처리해서 공영주차장 면적 확대 검토 바람</td><td></td></tr>
<tr><td>건축</td><td>• 지하로 연결되는 출입구(지하주차장 출입구 등)는 물막이판 자동식으로 1m이상 설치 권장</td><td></td></tr>
<tr><td>조경</td><td>• BL1,3 공개공지 조성계획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최소폭원및 조성방법 등 검토바람</td><td></td></tr>
<tr><td>조경</td><td>• 공개공지의 공공성, 접근성 강화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휴식공간 영역을 가로변으로 위치 이동 검토바람</td><td></td></tr>
<tr><td rowspan="5">교통</td><td>• 주차 회전 난이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 평면 조정, 주차 관리실 이동 등 주차장 평면 재검토 바람</td><td></td></tr>
<tr><td>• 소공원하부 공영주차장 좌회전 진입가능하도록 진입부교차로 및 횡단보도 위치 조정을 통해 차량동선체계 개선 바람</td><td></td></tr>
<tr><td>• 비주거시설의 기계식 주차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이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기계식 주차계획(비율조정 등) 검토 권장</td><td></td></tr>
<tr><td>• 지하1층 회차공간은 벽체로부터 차량 길이 고려하여 이격바람</td><td></td></tr>
<tr><td>• 지하주차장 통로 양측 끝단 가각부는 최대 R값으로 계획 바람</td><td></td></tr>
<tr><td rowspan="2">소방</td><td>• 피난용 승강기 승강로는 피난계단에 직접 접근 가능하도록 검토하되, 최악의 상황에서 피난계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계획하기 바람</td><td></td></tr>
<tr><td>• 알람밸브의 압력손실은 체크밸브의 압력 손실을 적용하지 말고 실제 알람밸브제조사 자료를 적용하기 바람</td><td></td></tr>
</table>

Ⅴ.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Ⅵ. 열람장소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02-2133-8640) 및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57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도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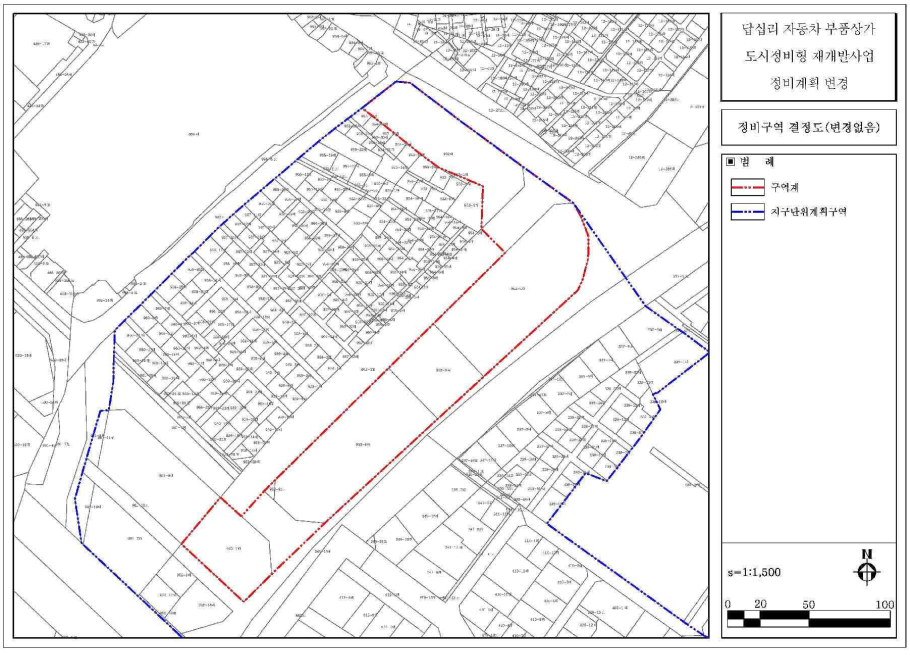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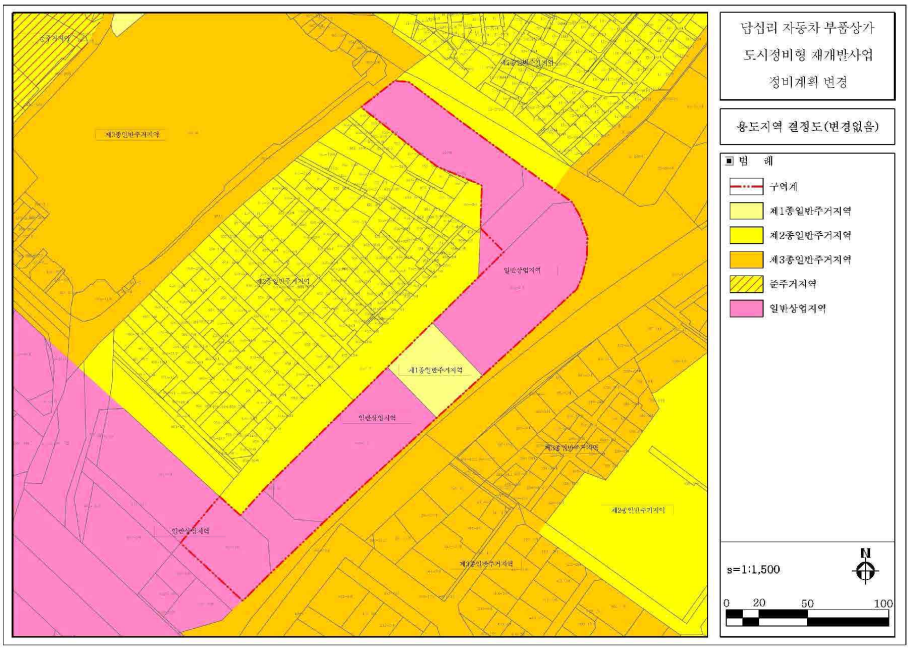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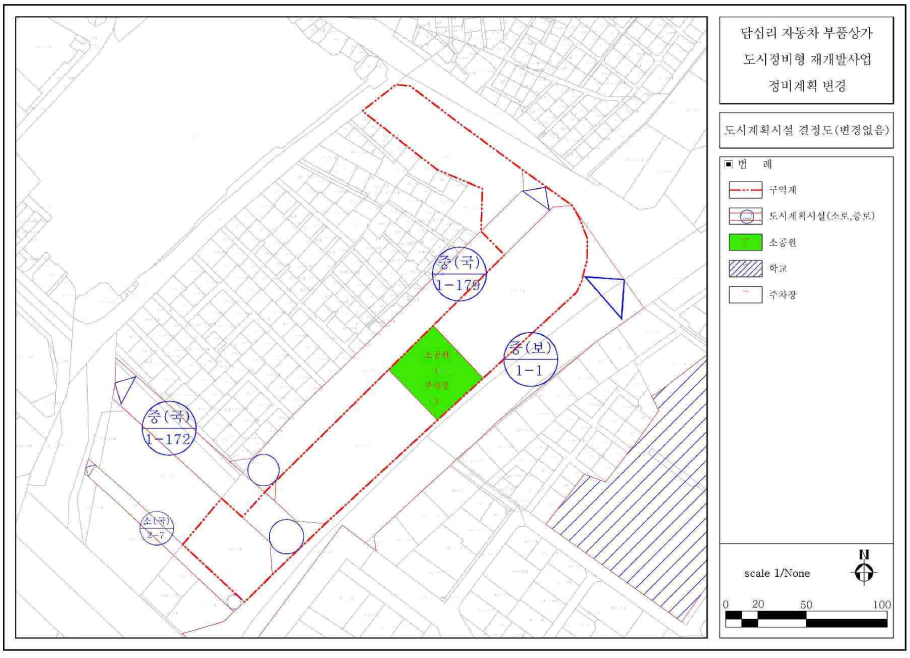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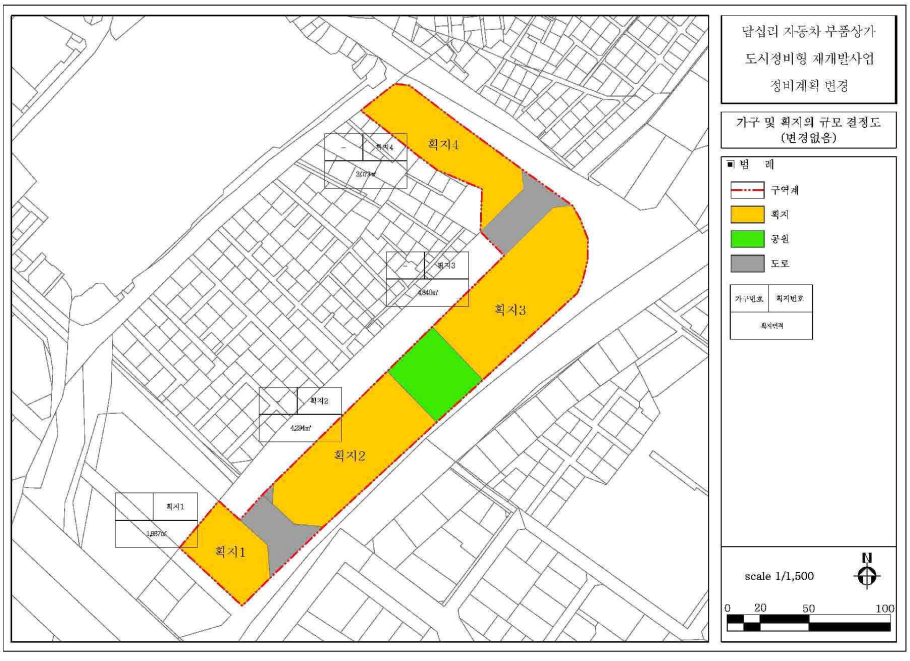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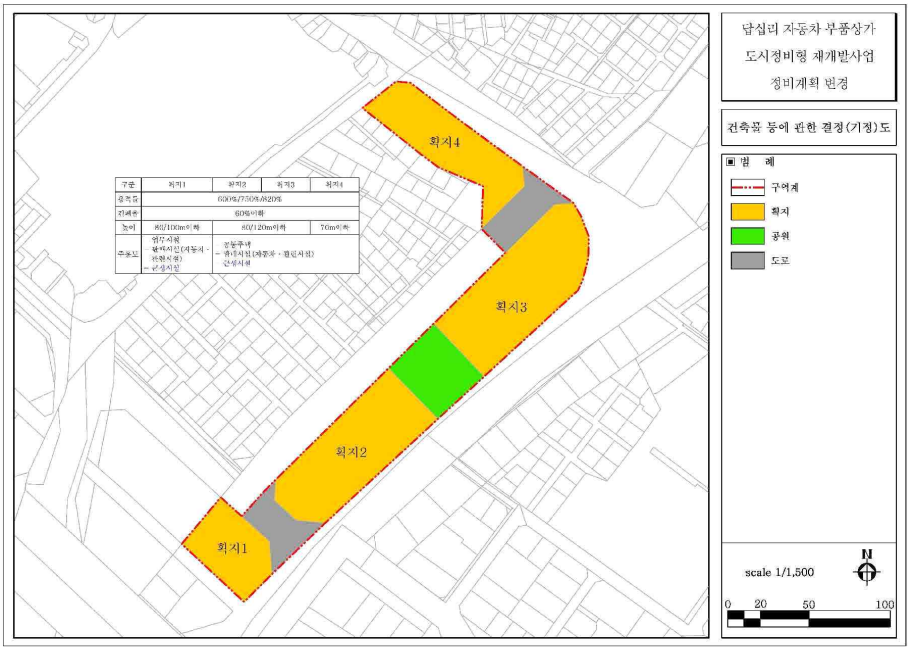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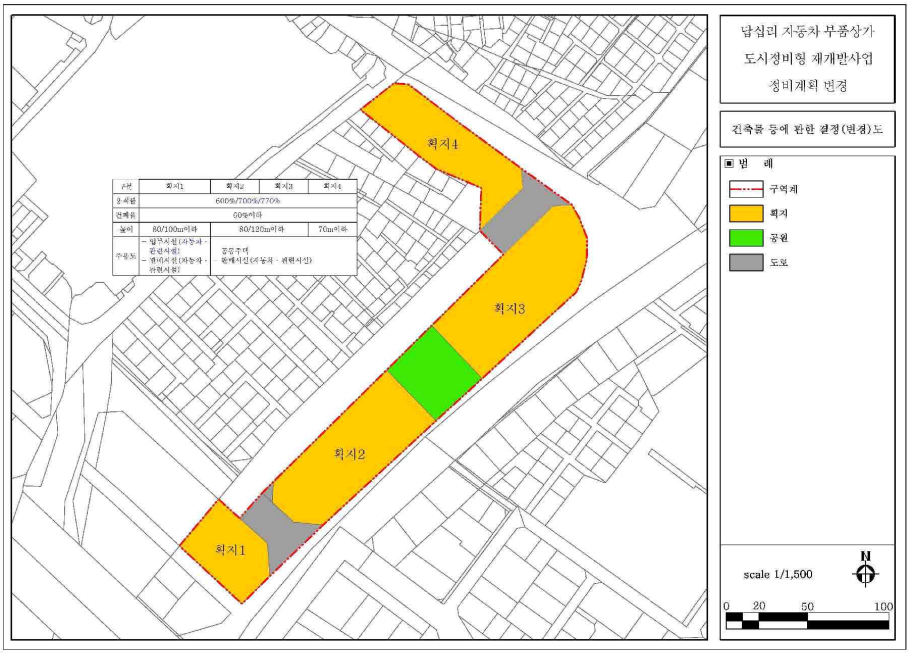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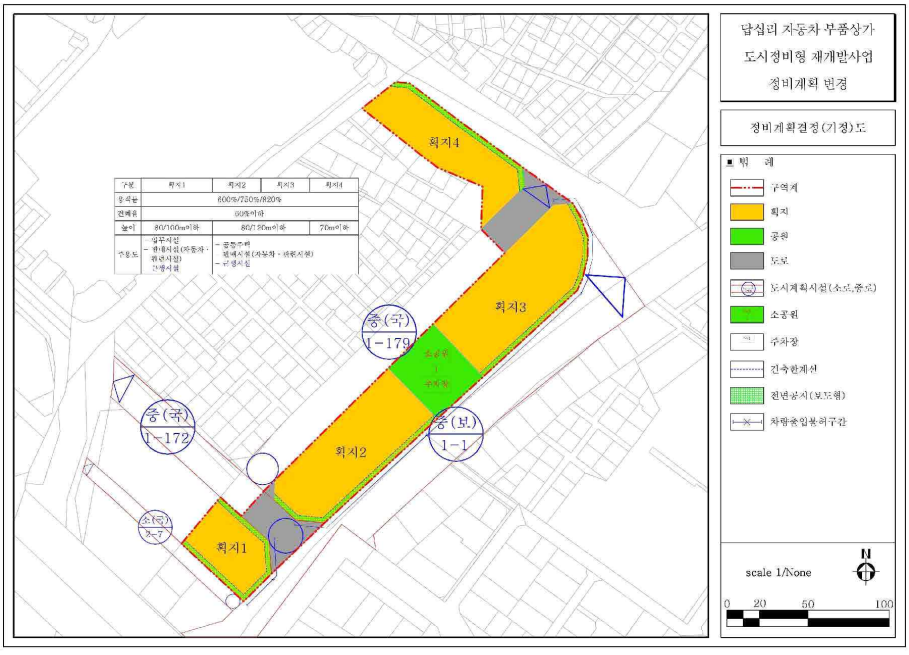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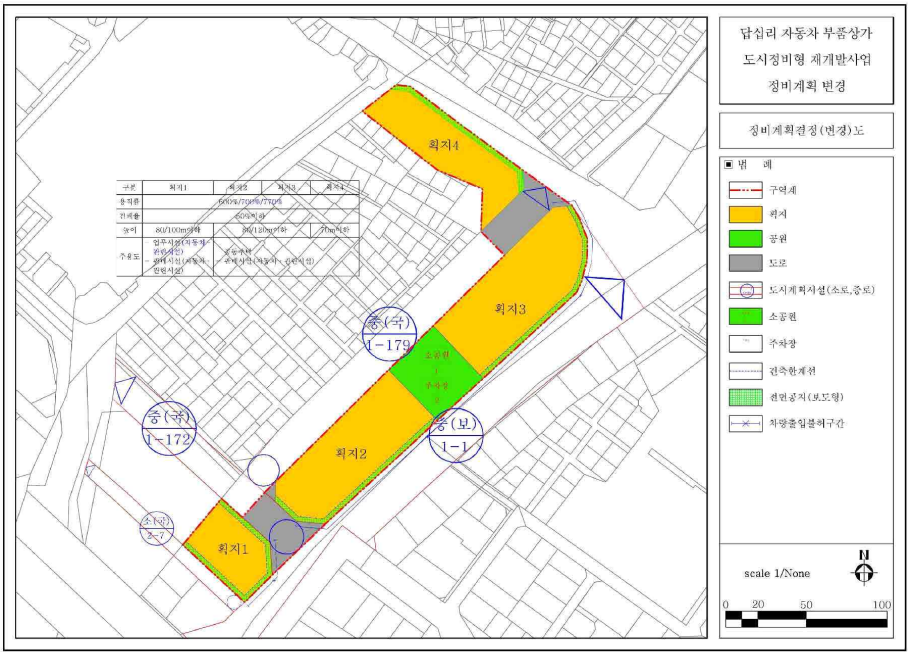

■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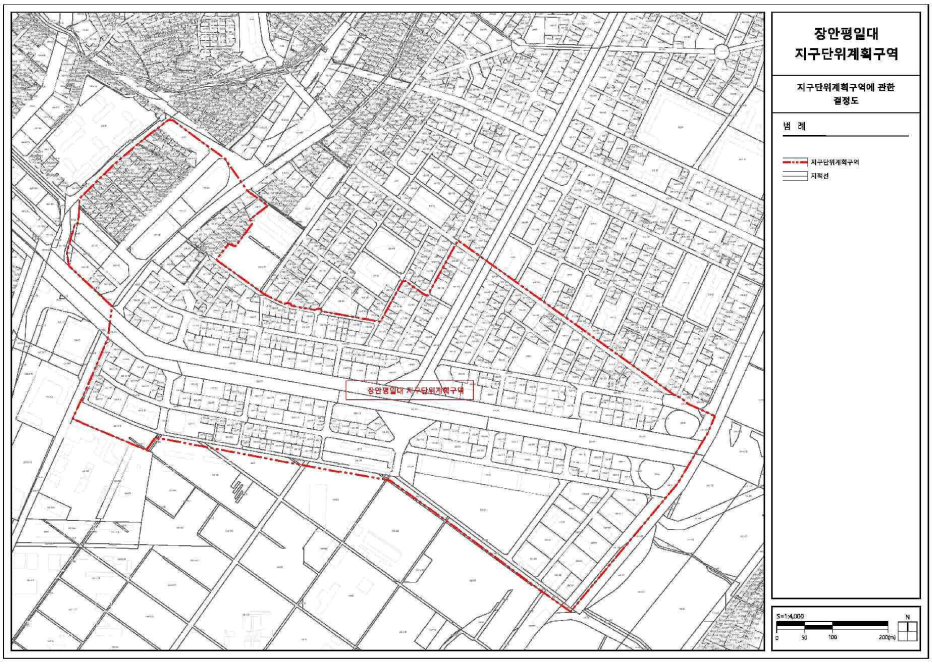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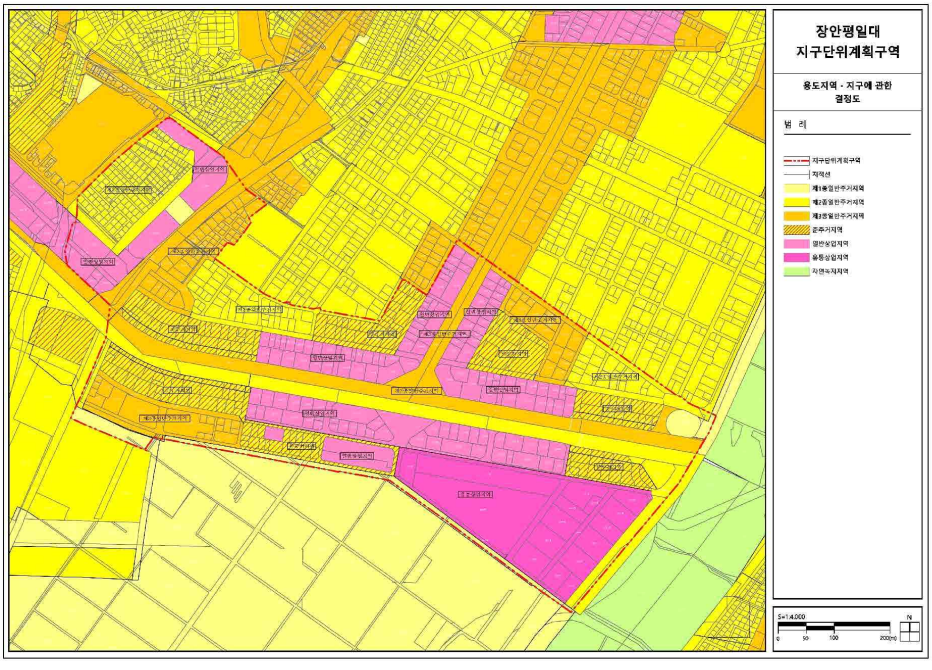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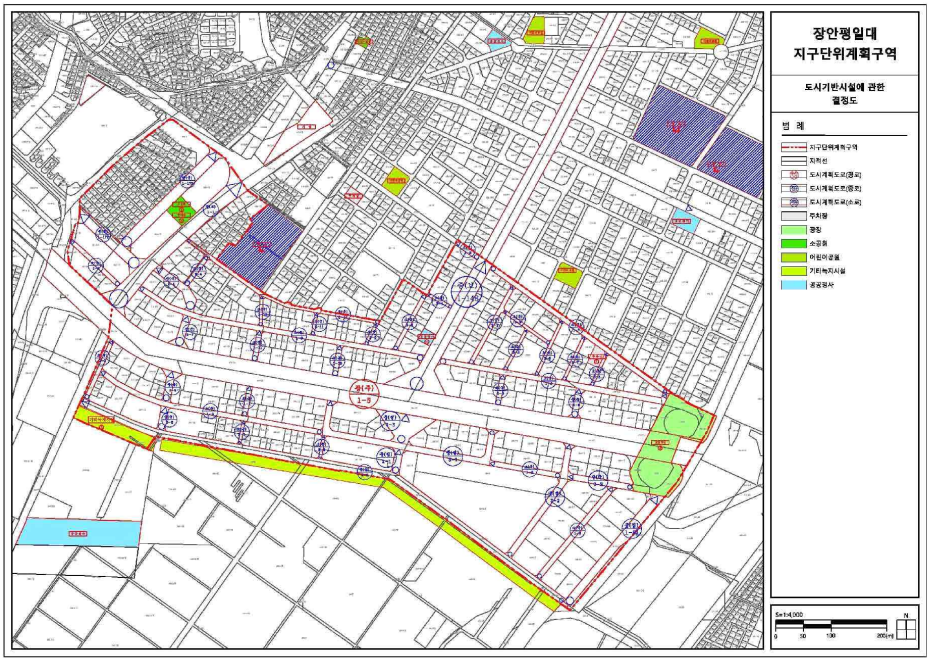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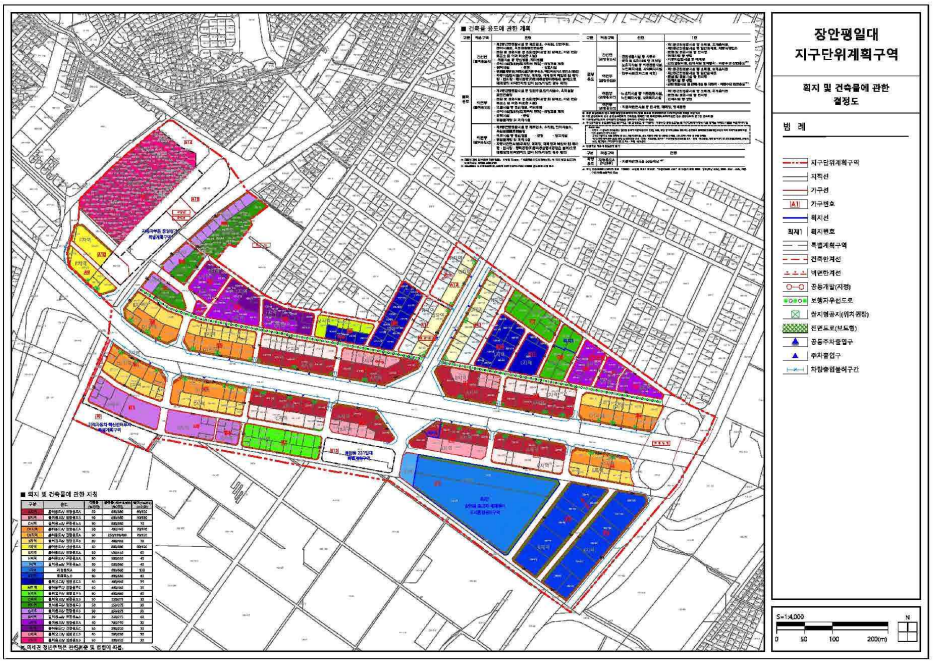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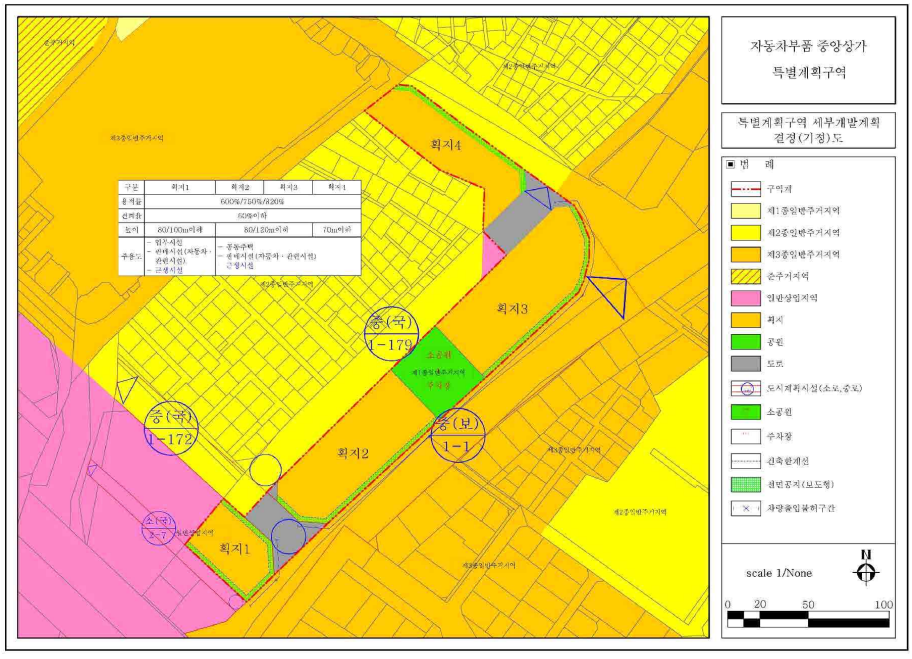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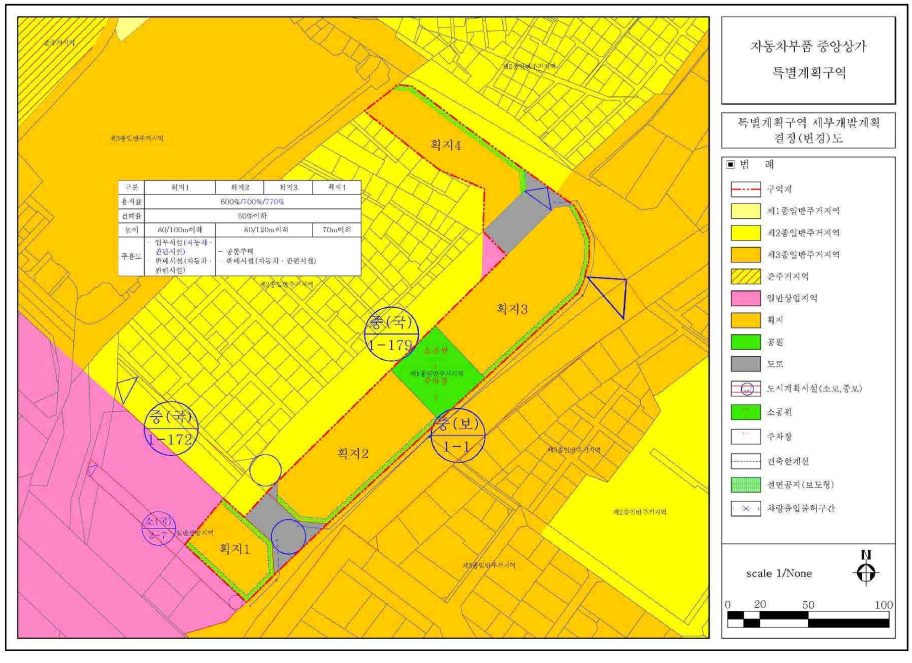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4호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34-15번지 일대(이하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2.0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	증)67,951.8	67,951.8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67,951.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439.0	15.4	-
	도 로	4,552.8	6.7	입체적결정도로 제외
	공 원 ①	2,163.8	3.2	소공원
	공 원 ②	3,722.4	5.5	문화공원
획지	소 계	57,512.8	84.6	-
	획 지 ① (공동주택)	57,046.8	84.0	일부구간 도로 입체적결정
	획 지 ② (종교)	466.0	0.6	-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7,951.8	-	67,951.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9,784.8	감) 40,613.6	9,171.2	13.5	
	제2종일반주거지역	6.5	감) 6.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8,160.5	증) 40,620.1	58,780.6	86.5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2,818.6	•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장안동 475-13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5	• 용도지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장안동 483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163.8	• 기반시설 재배치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총수입 − 총비용) ÷ 종전자산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108.66%
− 총수입(분양) 추정: 1,440,330,709,000원
− 총비용(사업비) 추정: 944,821,605,000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456,013,997,000원</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개별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2025년) × 보정률(2.0)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소유자: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2025년) × 보정률(2.0)
− 건물 = 건물면적 × 건물 재조달 원가 × 잔존년수 ÷ 내용년수
※ 건물의 경우 원가법에 따르되, 건물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관찰감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함</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종전자산 추정액×추정비례율)
<table><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a)</th><th>추정권리가액
(b)</th><th>추정분담금
(a−b)</th></tr><tr><td>전용40㎡형</td><td>549,900,000</td><td rowspan="3">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08.66%)</td><td rowspan="3">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분담/−:환급)</td></tr><tr><td>전용59㎡형</td><td>801,800,000</td></tr><tr><td>전용84㎡형</td><td>1,006,300,000</td></tr></table></td></tr>
</table>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물건에 대한 종전 · 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31	주간선 도로	11,53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 722 (36.12.27)	한천로
변경	대로	3	40	25-31 (1.5)	주간선 도로	11,530 (47)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		한천로36길 ※ 장안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76.06.25)
변경	소로	1	A	10~12 (2)	국지 도로	(14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b)	10~12	국지 도로	183.4	장안동 291-10	장안동 305-1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장한로31길
변경	소로	1	1(b)	10~12 (2)	국지 도로	183.4 (28)	장안동 291-10	장안동 30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10	국지 도로	240.8	장안동 307-4	장안동 296-6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장한로27길
변경	소로	2	1	10~11 (11)	국지 도로	240.8 (70)	장안동 307-4	장안동 296-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	6~10	국지 도로	131 (21)	장안동 293-1	장안동 296-2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장한로29길
변경	소로	3	3	10	국지 도로	127 (17)	장안동 293-1	장안동 296-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a)	10	국지 도로	874	면목동 1049-41	장안동 237-2	일반 도로	-	서고 467 (78.09.12.)	답십리로63길
변경	소로	1	1(a)	10	국지 도로	528 (0)	면목동 1049-41	장안동 237-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616	장안동 138-8	장안동 153-10	일반 도로	-	서고 467 (78.09.11.)	한천로30길 (구역외)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526 (0)	장안동 138-8	장안동 153-1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4.4	장안동 291-10	장안동 291-6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장한로29길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4.4	장안동 291-10	장안동 291-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7.1	장안동 291-16	장안동 293-2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답십리로67길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7.1	장안동 291-16	장안동 29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465	장안동 475-2	장안동 142-7	일반도로	-		답십리로65길
변경	중로	3	A	14	국지 도로	270 (260)	장안동 475-2	중로 3-B	일반도로	-		답십리로65길
변경	중로	3	B	13	국지 도로	123 (123)	중로 3-A	중로 3-C	일반도로	-		답십리로65길, 입체적도시계획시설
변경	중로	3	C	13	국지 도로	72 (72)	중로 3-B	장안동 142-7	일반도로	-		답십리로65길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27.7	장안동 550	장안동 528	일반도로	-		근생진입도로
신설	소로	3	B	4	국지 도로	31	장안동 성당 출입구	중로 3-A	일반도로	-	-	성당진입도로

※( )는 구역 내 도로의 폭원 및 연장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 경	-	중로 3-B	장안동 475-5	길이	-	증) 123m	123m	-	비도시계획시설 :공동주택용지
				폭	-	증) 13m	13m		
				높이	-	증) -2.5m ~지상부 전체	-2.5m ~지상부 전체		
				수평투영면적	-	증) 1,585.6㎡	1,585.6㎡		

※ 입체적결정 범위 높이의 기준은 지표면(계획지반고)로 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40	대로 3-40	• 도로 확폭 B = 25~31m(1.5m), L = 11,530m(47m)	• 완화차로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소로 1-	소로 1-A	• 도로 확폭 B = 10~12m(2m), L = (149m)	• 집입도로 확보를 위한 확폭
소로 1-1(b)	소로 1-1(b)	• 도로 확폭 B = 10~12m(2m), L = 183.4m(28m)	• 집입도로 확보를 위한 확폭
소로 2-1	소로 2-1	• 도로 확폭 B = 10m~11m(11m), L = 240.8m(70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소로 3-3	소로 3-3	• 도로 확폭 B = 10m, L = 127m(17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소로 1-1(a)	소로 1-1(a)	• 도로 일부폐지 B = 10m, L = 528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폐지
소로 1-5	소로 1-5	• 도로 일부폐지 B = 10m, L = 526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폐지
소로 3-1	소로 3-1	• 도로 선형변경 B = 6m, L = 114.4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가각부 선형 일부조정
소로 3-2	소로 3-2	• 도로 선형변경 B = 6m, L = 117.7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가각부 선형 일부조정
소로 2-	중로 3-A	• 도로 신설 B = 14m, L = 270m(260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도로 폭원변경
	중로 3-B	• 입체적 결정을 통한 도로 신설 B = 13m, L = 123m(123m), 높이=지상부,수평투영면적=1,585.6㎡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도로 폭원변경 및 입체적결정 •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로 3-C	• 도로 신설 B = 13m, L = 72m(72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도로 폭원변경
소로 2-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폐지
소로 2-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폐지
-	소로 3-A	• 도로 신설 B = 6m, L = 27.7m	• 구역외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B	• 도로 신설 B = 4m, L = 31m	• 구역외 건축물(장안동성당)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는 구역 내 도로의 폭원 및 연장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장안동 126-14	-	증) 2,163.8	2,163.8	-	-
신설	ⓐ	공원	문화공원	장안동 291-8	-	증) 3,722.4	3,722.4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신설	• 「서울시 경관계획(2016)」등 상위계획 정합성을 고려하여 한천로변 보행녹도와 연계하기 위해 공원 신설
ⓐ	문화공원	신설	• 장이소공원과의 연계해 지역주민 교류 · 휴식 공간으로 계획하여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해 공원 신설

6.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기 준	법정면적 (㎡)	계획면적 (㎡)	비고
주민 공동 시설	계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1.25	5,010.0	5,500.0	
	경로당	1,500 ~ 2,000 미만: 725㎡ 이상	725.0	800.0	
	어린이집	1,500 ~ 2,000 미만: 725㎡ 이상	725.0	800.0	
	작은도서관	1,500 ~ 2,000 미만: 298㎡ 이상	298.0	500.0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66㎡ 이상	66.0	100.0	
	어린이놀이터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1,727.8	1,899.3	
	주민운동시설	-	-	1,400.7	
관리사무소		10㎡에 50세대를 초과하는 매 세대마다 0.05㎡를 더한 면적	95.2	100.0	
경비실		-	-	3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제55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67,951.8	획지①	57,046.8	장안동 34-15번지 일대	333	-	-	333	-	공동주택
			획지②	466.0	장안동 293-16번지 일대	1	-	-	1	-	종교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th><th colspan="4">용적률</th><th rowspan="2">높이 /최고 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기준</th><th>허용</th><th>정비 계획</th><th>법적 상한</th></tr>
<tr><td rowspan="2">신설</td><td rowspan="2">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td><td rowspan="2">67,951.8</td><td>획지①</td><td>57,046.8</td><td>장안동 134-15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50% 이하</td><td>214% 이하</td><td>244% 이하</td><td>263% 이하</td><td>300% 이하</td><td>107m/ 지상36층 이하</td></tr>
<tr><td>획지②</td><td>466.0</td><td>장안동 293-16번지 일대</td><td>종교시설</td><td colspan="6">관계 법령에 따름</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2">
• 주택공급계획 : 1,754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총 세대</th></tr>
<tr><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r>
<tr><td colspan="2">계</td><td>1,754</td><td>100.0</td></tr>
<tr><td rowspan="2">60㎡이하</td><td>40㎡</td><td>228</td><td>13.0</td></tr>
<tr><td>59㎡</td><td>771</td><td>44.0</td></tr>
<tr><td>60~85㎡ 이하</td><td>84㎡</td><td>755</td><td>43.0</td></tr>
<tr><td>85㎡초과</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건립 규모</th><th colspan="3">임대주택</th></tr>
<tr><th>소계</th><th>40㎡ 이하</th><th>40㎡ 초과</th></tr>
<tr><td>초과용적률 전 세대수</td><td>1,548</td><td>233</td><td>93</td><td>140</td></tr>
<tr><td>구성비 (%)</td><td>100.0</td><td>15.1</td><td>6.0</td><td>9.1</td></tr>
<tr><td>임대주택 구성비(%)</td><td>–</td><td>100.0</td><td>39.9</td><td>60.1</td></tr>
</table>
※ 총세대수 및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에 기부채납 임대주택 55세대 포함

• 85㎡이하 규모의 주택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비율 [기준 : 임대세대(초과용적률제외)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중 40%이하]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기준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값에 50%이상 공급]

※ 전체 세대수·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비율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 제외
</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2">
•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완화(공공보행통로 등 인센티브 및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건축심의에서 최종확정)
</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2">
• 답십리로 변 : 5m
• 한천로 변 : 7m
• 공공보행통로 변 : 4m
• 그 외 : 3m
</td></tr>
<tr><td>기타 사항</td><td colspan="12">
• 공공보행통로 : 8m
• 녹지친화적보행구간 : 7m
• 차량출입구 : 3개소
</td></tr>
</table>

※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은 유지하되 보행동선은 건축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적률 계획

1)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table>
<tr><th colspan="3" rowspan="3">구 분</th><th colspan="8">산 정 내 용</th></tr>
<tr><th rowspan="2">사업면적</th><th rowspan="2">대지면적
(획지1)</th><th colspan="4">공공시설 등 제공면적</th><th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th><th rowspan="2">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 공유지</th></tr>
<tr><th>소계</th><th>정비기반
시설토지</th><th>임대주택
대지지분</th><th>임대주택
환산부지</th></tr>
<tr><td colspan="3">토지이용계획</td><td>67,951.8㎡</td><td>57,046.8㎡</td><td>14,675.3㎡</td><td>10,439.0㎡</td><td>2,428.4㎡</td><td>1,807.9㎡</td><td>2,522.7㎡</td><td>7,823.1㎡</td></tr>
<tr><td rowspan="6">공동주택</td><td colspan="2">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면적
)</td><td colspan="8">• 순부담면적 : 4,329.5㎡(6.3%)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 공유지
= 14,675.3㎡ − 2,522.7㎡ − 7,823.1㎡
= 4,329.5㎡ (6.3%)</td></tr>
<tr><td>토지
기부채납</td><td colspan="8">• 토지 기부채납 : 2,521.6㎡
= (도로 + 공원 + 임대주택 대지지분) − 무상양도 국 · 공유지
= (10,439.0㎡ + 2,428.4㎡) − 2,522.7㎡ − 7,823.1㎡ = 2,521.6㎡</td></tr>
<tr><td>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td><td colspan="8">• 건축물(임대주택) 토지 환산면적 : 1,807.9㎡
= (임대주택 연면적 × 공사비(㎡/원)) / 부지가액
= ((4,645㎡ × 2,098(천원)) + (2,640㎡ × 1,040(천원))) / 6,910(천원)
= 1,410.6㎡ + 397.3㎡ = 1,807.9㎡</td></tr>
<tr><td colspan="2">기준
용적률</td><td colspan="8">• 214%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 194% + 소형주택 확보 20% 적용)</td></tr>
<tr><td colspan="2">허용
용적률</td><td colspan="8">• 244% = 기준용적률 214% + (허용용적률 × 사업성보정계수)
= 214% + (20% × 1.5)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20% × 1.5 (30%)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 5,969,319원/㎡ / 4,003,864원/㎡ = 1.50</td></tr>
<tr><td colspan="2">상한
용적률</td><td colspan="8">• 263%
= 완화 허용용적률 + (완화전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완화전 허용용적률 × 1 × α’)
= 244% + (214% × 1.3 × 0.9796 × 0.0461) + (214% × 1 × 0.0331)
= 263%
※ 가중치 = 용도지역 변경 전 기반시설 허용용적률 가중평균 대비 획지 허용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209.6%) ÷ (214.0%) = 0.9796
※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토지면적 비
= 2,521.6㎡ ÷ (57,046.8㎡ − 2,428.4㎡) = 0.0461
※ α’ (임대주택) = 공공시설등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 부지 (현금 및 건축물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비)
= 1,807.9㎡ ÷ (57,046.8㎡ − 2,428.4㎡) = 0.0331</td></tr>
<tr><td colspan="2">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8">• 300.0% 이하</td></tr>
</table>

2) 가중치 산출근거

구분	현황 용도지역	계획 용도지역	면적(㎡)	무상양도(㎡)	순부담(㎡) (A)	허용용적률 (B)	A x B	공공시설 허용용적률	토지 가중치
계	-	-	12,867.4	10,345.8	2,521.6	-	5,286.53	209.6%	0.9796
도로, 공원	제2종(7층)	-	6,534.9	5,911.5	623.4	210%	1,309.14		
	제2종		6.5	6.5	-	210%	-		
	제3종		3,897.6	4,427.8	-530.2	230%	-1,219.46		
임대주택 지분	-	제3종	2,428.4	-	2,428.4	214%	5,196.85		

3) 기준용적률 완화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61.62㎡(전용40㎡이하 공급면적) × 135세대 / 57,046.8㎡(대지면적) = 14.6%	최대 10%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83.09㎡(전용59㎡이하 공급면적) × 540세대 / 57,046.8㎡(대지면적) = 78.7%	최대 10%

4) 허용용적률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적용
공공 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및 입체결정한 도로 포함)	기준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a=1 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10%p (10.7%p)
	산정식	(공공보행통로) 194% × (1,568.8㎡ / 57,046.8㎡) × 1 = 5.3% (입체결정도로) 194% × (1,585.6㎡ / 57,046.8㎡) × 1 = 5.4% ※ a=1 적용	
열린 단지	기준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5%p
친환경 건축물	기준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인증 - ZEB1 7.5%(15%), **ZEB2 7%(14%)**, ZEB3 6.5%(13%), ZEB4 6%(12%), ZEB5 5.5%(11%) 에너지효율 1++ 3%(6%), 에너지효율 1+ 1.5%(3%) ②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 등급 3%(6%), 우수 등급 1.5%(3%)	7%p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계			20%p (22.7%p)
사업성 보정계수	기준	•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 적용 : 5,969,319원/㎡ /4,003,864원 = 1.491 ≒ 1.50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 값 적용	1.5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30.0%

5) 기부채납 계획

구분		공공시설 확보면적	비 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4,552.8㎡	순부담 면적 (정비기반시설 : 10,439.0㎡, 토지지분 : 1,807.9㎡, 건축물 환산부지 : 2,428.4㎡) 중 국공유지 면적 10,345.8㎡ 제외
	공원	5,886.2㎡	
토지	임대주택	2,428.4㎡	
건축물	임대주택 환산부지 면적	1,807.9㎡	
합계		4,329.5㎡	4,281.9㎡ 이상 확보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table>
<tr><td>구분</td><td colspan="5">주요내용</td></tr>
<tr><td>계획 기준</td><td colspan="5">• 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임대주택 중 40%이하 :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세대수 제외</td></tr>
<tr><td>공공주택 산출근거</td><td colspan="5">• 전체 세대수 : 1,548세대
•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건설계획 : 233세대
•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이상]
⇒ 전체 세대수의 15.1%
• 전용면적 40㎡ 이하 비율 [기준: 임대세대(초과용적률제외)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중 40%이하]
⇒ 임대 세대수의 39.9%</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건립규모</td><td colspan="3">공공주택</td></tr>
<tr><td>소계</td><td>40㎡ 이하</td><td>40㎡ 초과</td></tr>
<tr><td>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세대)</td><td>1,548</td><td>233</td><td>93</td><td>140</td></tr>
<tr><td>구성비 (%)</td><td>100.0</td><td>15.1</td><td>6.0</td><td>9.1</td></tr>
<tr><td></td><td>임대주택 구성비 (%)</td><td>-</td><td>100.0</td><td>39.9</td><td>60.1</td></tr>
</table>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 colspan="5">주요내용</td></tr>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5">• 263.0%</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 298.3%</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산출근거 (법적상한 용적률완화)</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98.3% − 263.0% = 35.3%</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35.3% × 0.5 = 17.7%
− 57,046.8㎡(획지면적) × 17.7% = 10,097.3㎡</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10,097.3㎡ 이상</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세대)</td><td>연면적(㎡)</td><td colspan="2">비고</td></tr>
<tr><td>59.99</td><td>83.09</td><td>51</td><td>4,237.8</td><td colspan="2" rowspan="2">획지 ①</td></tr>
<tr><td>84.99</td><td>112.77</td><td>52</td><td>5,864.0</td></tr>
<tr><td colspan="2">합계</td><td>103</td><td>10,101.8</td><td colspan="2">≥ 10,097.3</td></tr>
<tr><td colspan="2">확보방법</td><td colspan="5">•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td></tr>
</table>

※공공주택 및 소형 · 국민주택 규모 · 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부채납 주택 계획

규 모	공급면적	세대수	기부채납 면적		비 고
			대지지분	환산부지 면적	
전용 59.99㎡	83.09㎡	55세대	2,428.4㎡	1,807.9㎡	•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적용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대상지의 지형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
	생활환경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주요 예상지점에 대한 환경영향분석,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후 사업시행	—
	사회 · 경제환경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및 환경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 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 구축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범죄예방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범죄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	—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오톱 및 동·식물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동·식물상 보호	• 비오톱유형평가 : 5등급 • 개별비오톱 : 평가제외 •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녹지 네트워크	녹지 연결성 확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녹지지역 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공원녹지의 경우, 면적상 근린공원이 대부분의 비중 차지	• 조경녹지를 법정면적 이상 확보토록 계획하고 사업대상지 내에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및 식재 계획을 통한 주변과의 녹지 및 생태 단절 예방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공사 시 건설장비 및 공사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 가능성	• 공사시 현장 내 폐유처리 등 금지 및 폐유보관시설 설치시 전량 전문 처리업체 위탁 처리 계획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사업대상지는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 및 90% 이상 불투수토양포장으로 조사 • 공사·운영시 강우시 우수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	• 공사·운영시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저감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수질관련 지구·지역 및 인근 하천현황 조사 •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검토 •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 한강H	• 주변지역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감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
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대기질·악취 (악취제외)	대기오염 최소화	• 사업시행 시 건설장비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 우려	•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
온실가스·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극대화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배출량 산정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동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운영시 인근 도로 소음 예상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휀스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고속운전 및 공회전 금지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칭)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현황 : 1,426세대 계획 : 1,754세대 증) 328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범위		내용	비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절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21조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상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호텔,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행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 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인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방범용 CCTV설치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장안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	증) 67,951.8	증) 67,951.8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7,951.8	-	67,951.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9,784.8	감) 40,613.6	9,171.2	13.5	
	제2종일반주거지역	6.5	감) 6.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8,160.5	증) 40,620.1	58,780.6	86.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42,818.6	•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장안동 475-13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6.5	• 용도지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장안동 483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2,163.8	• 기반시설 재배치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31	주간선 도로	11,53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 722 (36.12.27)	한천로
변경	대로	3	40	25-31 (1.5)	주간선 도로	11,530 (47)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		한천로36길 ※ 장안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76.06.25)
변경	소로	1	A	10~12 (2)	국지 도로	(14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b)	10~12	국지 도로	183.4	장안동 291-10	장안동 305-1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장한로31길
변경	소로	1	1(b)	10~12 (2)	국지 도로	183.4 (28)	장안동 291-10	장안동 30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10	국지 도로	240.8	장안동 307-4	장안동 296-6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장한로27길
변경	소로	2	1	10~11 (11)	국지 도로	240.8 (70)	장안동 307-4	장안동 296-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	6~10	국지 도로	131 (21)	장안동 293-1	장안동 296-2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장한로29길
변경	소로	3	3	10	국지 도로	127 (17)	장안동 293-1	장안동 296-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a)	10	국지 도로	874	면목동 1049-41	장안동 237-2	일반 도로	-	서고 467 (78.09.12.)	답십리로63길
변경	소로	1	1(a)	10	국지 도로	528 (0)	면목동 1049-41	장안동 237-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616	장안동 138-8	장안동 153-10	일반 도로	-	서고 467 (78.09.11.)	한천로30길 (구역외)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526 (0)	장안동 138-8	장안동 153-1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4.4	장안동 291-10	장안동 291-6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장한로29길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4.4	장안동 291-10	장안동 291-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7.1	장안동 291-16	장안동 293-2	일반 도로	-	서고 2010-278 (10.07.22.)	답십리로67길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7.1	장안동 291-16	장안동 29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465	장안동 475-2	장안동 142-7	일반도로	-		답십리로65길
변경	중로	3	A	14	국지 도로	270 (260)	장안동 475-2	중로 3-B	일반도로	-		답십리로65길
변경	중로	3	B	13	국지 도로	123 (123)	중로 3-A	중로 3-C	일반도로	-		답십리로65길, 입체적도시계획시설
변경	중로	3	C	13	국지 도로	72 (72)	중로 3-B	장안동 142-7	일반도로	-		답십리로65길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27.7	장안동 550	장안동 528	일반도로	-		근생진입도로
신설	소로	3	B	4	국지 도로	31	장안동 성당 출입구	중로 3-A	일반도로	-	-	성당진입도로

※( )는 구역 내 도로의 폭원 및 연장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 경	-	중로 3-B	장안동 475-5	길이	-	증) 123m	123m	-	비도시계획시설 :공동주택용지
				폭	-	증) 13m	13m		
				높이	-	증) -2.5m ~지상부 전체	-2.5m ~지상부 전체		
				수평투영면적	-	증) 1,585.6㎡	1,585.6㎡		

※ 입체적결정 범위 높이의 기준은 지표면(계획지반고)로 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40	대로 3-40	• 도로 확폭 B = 25~31m(1.5m), L = 11,530m(47m)	• 완화차로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소로 1-	소로 1-A	• 도로 확폭 B = 10~12m(2m), L = (149m)	• 집입도로 확보를 위한 확폭
소로 1-1(b)	소로 1-1(b)	• 도로 확폭 B = 10~12m(2m), L = 183.4m(28m)	• 집입도로 확보를 위한 확폭
소로 2-1	소로 2-1	• 도로 확폭 B = 10m~11m(11m), L = 240.8m(70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소로 3-3	소로 3-3	• 도로 확폭 B = 10m, L = 127m(17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소로 1-1(a)	소로 1-1(a)	• 도로 일부폐지 B = 10m, L = 528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폐지
소로 1-5	소로 1-5	• 도로 일부폐지 B = 10m, L = 526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폐지
소로 3-1	소로 3-1	• 도로 선형변경 B = 6m, L = 114.4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가각부 선형 일부조정
소로 3-2	소로 3-2	• 도로 선형변경 B = 6m, L = 117.7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가각부 선형 일부조정
소로 2-	중로 3-A	• 도로 신설 B = 14m, L = 270m(260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도로 폭원변경
	중로 3-B	• 입체적 결정을 통한 도로 신설 B = 13m, L = 123m(123m), 높이=지상부,수평투영면적=1,585.6㎡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도로 폭원변경 및 입체적결정 •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로 3-C	• 도로 신설 B = 13m, L = 72m(72m)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도로 폭원변경
소로 2-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폐지
소로 2-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폐지
-	소로 3-A	• 도로 신설 B = 6m, L = 27.7m	• 구역외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B	• 도로 신설 B = 4m, L = 31m	• 구역외 건축물(장안동성당)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는 구역 내 도로의 폭원 및 연장임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장안동 126-14	-	증) 2,163.8	2,163.8	-	-
신설	ⓐ	공원	문화공원	장안동 291-8	-	증) 3,722.4	3,722.4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신설	• 「서울시 경관계획(2016)」등 상위계획 정합성을 고려하여 한천로변 보행녹도와 연계하기 위해 공원 신설
ⓐ	문화공원	신설	• 장이소공원과의 연계해 지역주민 교류 · 휴식 공간으로 계획하여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해 공원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획지①	-	증) 57,046.8	57,046.8	공동주택용지
신설	획지②	-	증) 466.0	466.0	종교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허용용도	비 고
신설	획지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 용도는 불허
신설	획지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 설	획지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신 설	획지②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관계 법령에 따름	종교용지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획 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비고
신 설	획지①	214% 이하	244% 이하	263% 이하	300% 이하	공동주택용지
신 설	획지②	관계 법령에 따름				종교용지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내 용	적용
공공 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및 입체결정한 도로 포함)	기준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a=1 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10%p (10.7%p)
	산정식	(공공보행통로) 194% × (1,568.8 / 57,046.8) × 1 = 5.3% (입체결정도로) 194% × (1,585.6 / 57,046.8) × 1 = 5.4% ※ a=1 적용	
열린 단지	기준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5%p
친환경 건축물	기준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인증 - ZEB1 7.5%(15%), **ZEB2 7%(14%)**, ZEB3 6.5%(13%), ZEB4 6%(12%), ZEB5 5.5%(11%) 에너지효율 1++ 3%(6%), 에너지효율 1+ 1.5%(3%) ②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 등급 3%(6%), 우수 등급 1.5%(3%)	7%p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계			20%p (22.7%p)
사업성 보정계수	기준	•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 적용 : 5,969,319원/㎡ / 4,003,864원/㎡ = 1.491 ≒ 1.50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 값 적용	1.5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30.0%

다) 높이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높 이	비 고
신 설	획지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107m이하 (36층 이하) ※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변 중저층 배치구간 (15층 이하)	공동주택용지
신 설	획지②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관계 법령에 따름	종교용지

다. 건축물의 배치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①	• 답십리로 변 : 5m • 한천로 변 : 7m • 공공보행통로 변 : 4m • 그 외 : 3m

2)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획지①	•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 동-서 방향의 보행동선 연결하여 보행통경축 및 주요시설 (답십리공원, 버스정류장 등) 접근 동선 확보 ※ 공공보행통로 시종점은 유지하되 보행동선은 건축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
녹지친화적 보행구간	획지①	• 「서울시 경관계획(2016)」의 한천로 변 녹도계획을 반영하여, 소공원과 보도형전면공지를 연결한 녹지친화적 보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저층부 활성화를 유도

3) 공동주택 배치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배치	획지①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4)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권장)	한천로36길	• 한천로와 중랑천을 연결하는 주요동선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활성화 유도
	답십리로	• 병원, 학원 등 상업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한 연도형 상가 배치 및 통학로변 교육기능 연계
커뮤니티활성화 배치구간 (권장)	답십리로65길, 공공보행통로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답십리로65길 및 공공보행통로 변에 주민공동시설 배치
	한천로 변	• 대상지 서측 한천로 변 녹도 활성화를 고려해 주민공동시설 배치

Ⅲ. 2026년 제1차('26. 02. 06.)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 결과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제1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 수정사항		
		- 순부담 면적 및 공공기여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순부담 면적 및 공공기여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하였음	반영
		- 입체적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기준」(시설계획과-13266, ' 25.12.16))을 반영	○ 입체적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기준」(시설계획과-13266, ' 25.12.16))을 반영하였음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부 범위 추가 결정 (높이 : 지상부 → - 2.5m ~ 지상부 전체)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하부 범위 추가 결정하였음 (높이 : - 2.5m ~ 지상부 전체)	반영
		○ 조건사항		
		- 공공보행통로 시종점은 유지하되 보행동선은 건축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 마련	- 건축배치계획과 연계될수 있도록 보행동선 지침 제시 하였음	반영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사전협의 하였으며 기반시설 개선 방안은 통합심의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939)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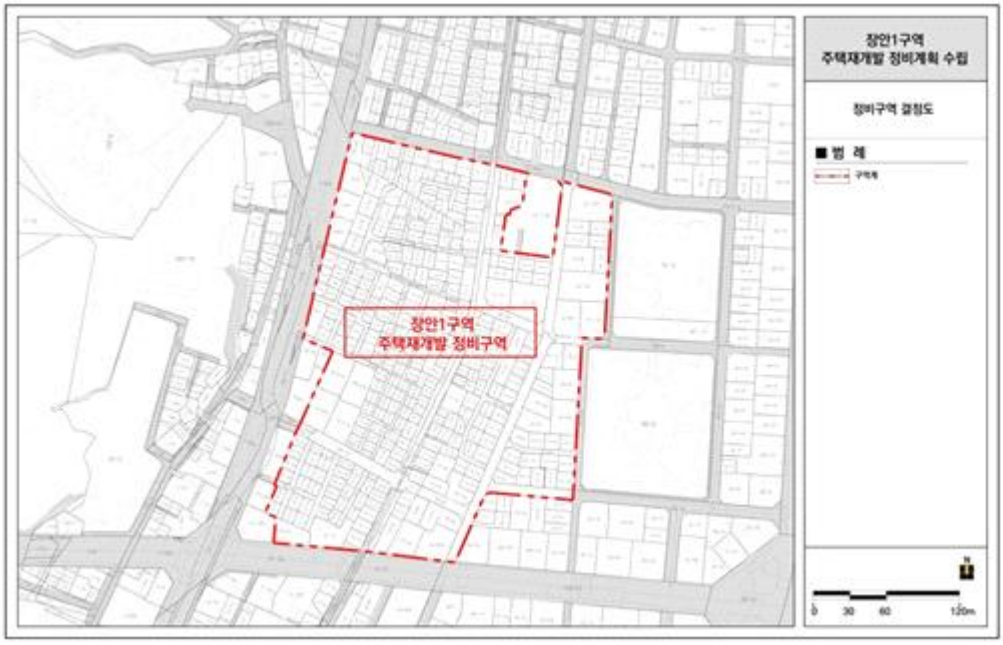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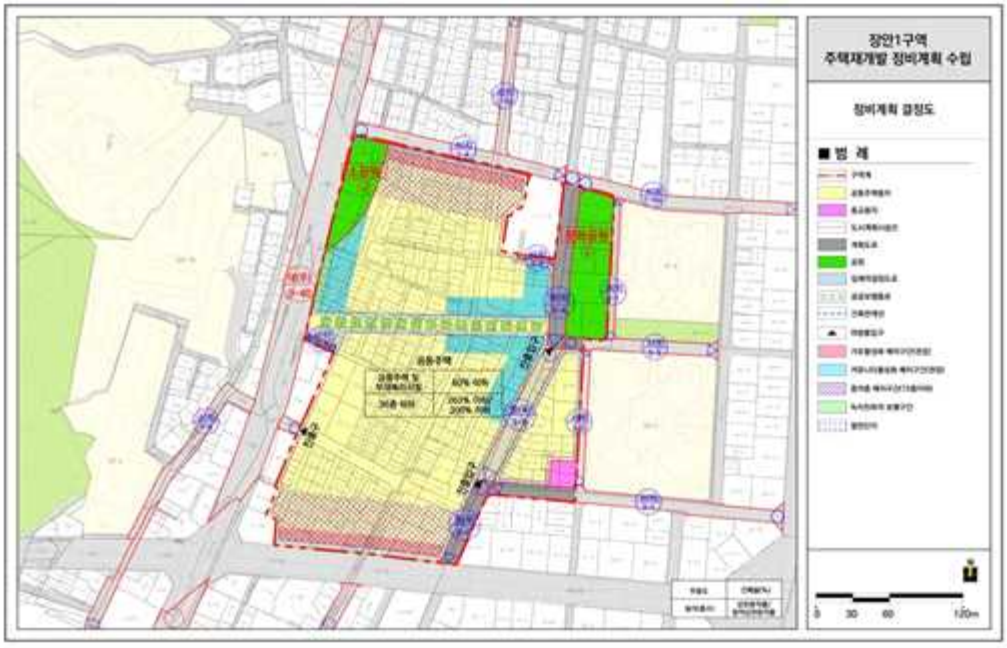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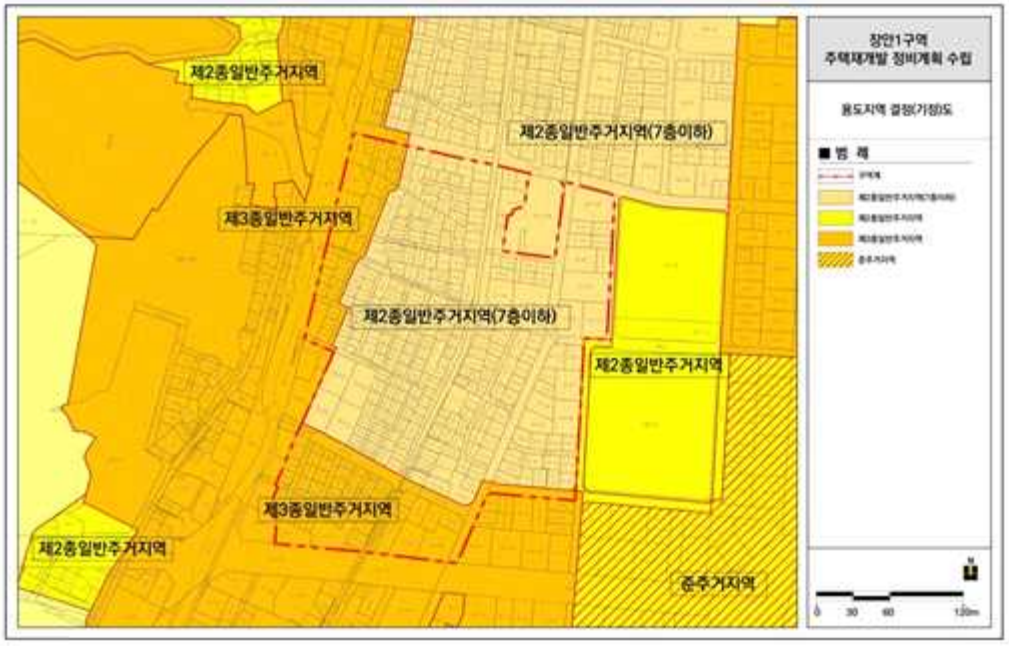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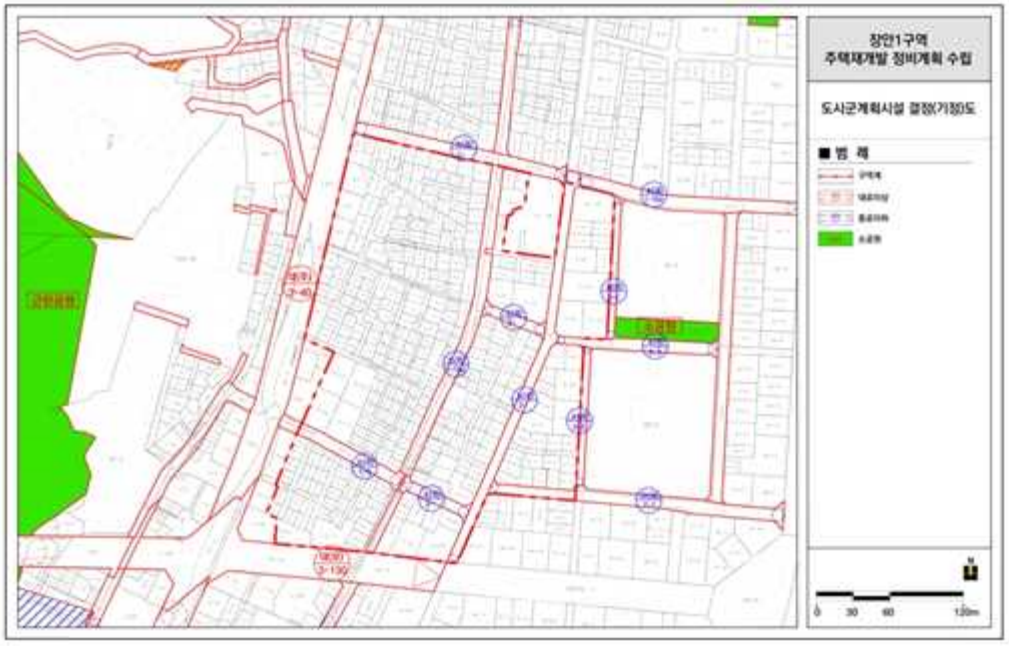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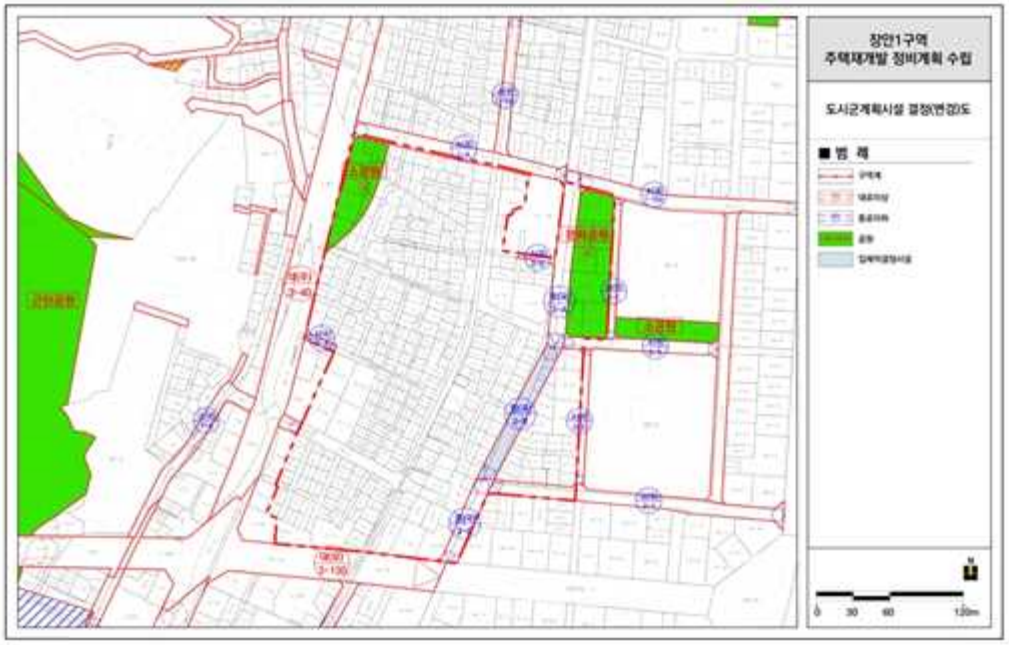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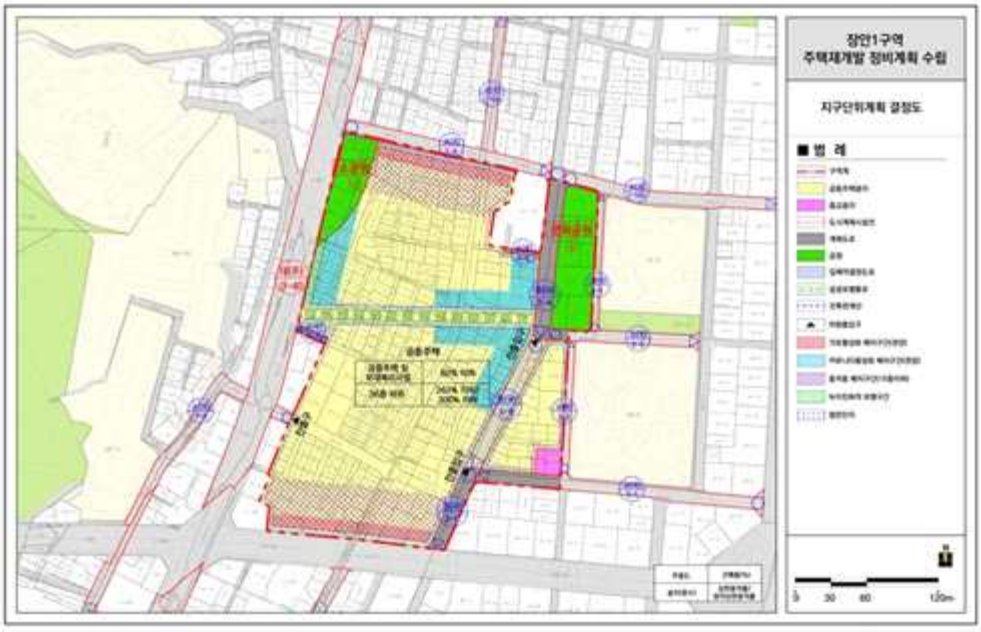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5호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이하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5.0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원	-	증) 40,798	40,798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40,798.0	40,798.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6,649.0	6,649.0	16.2	-
	도 로	-	증) 2,004.0	2,004.0	4.9	-
	공 원1	-	증) 3,445.0	3,445.0	8.4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공 원2	-	증) 800.0	800.0	1.9	119안전센터
	공 원3	-	증) 400.0	400.0	1.0	노인복지시설
획지	소 계	-	증) 34,149.0	34,149.0	83.8	-
	획 지1	-	증) 34,149.0	34,149.0	8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798.0	-	40,79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926.0	감) 17,512.0	5,414.0	13.3	
	제3종일반주거지역	17,872.0	증) 17,512.0	35,384.0	86.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제2종일반	제3종일반	17,512.0	·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 및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수입-총 사업비) ÷ 종전자산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114.39%

- (1조 3,885억 - 7,560억) ÷ 5,529억 x 100 = 114.39%
- 총수입 추정: 1조 3,885억, 총지출 추정: 7,560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5,529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2.4)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소유자: 토지가액+건물가액

- 토지=토지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보정률(2.5)
- 건물=개략단가 (평균 약 100만원/3.3㎡) x 연면적

※ 건물의 개략단가는 주거용 평균 건물 단가 수준을 의미함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종전자산 추정액x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천원)		추정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공급면적:60.60㎡)	843,200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14.39%)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분담/-:환급)
전용49㎡형 (공급면적:72.00㎡)	1,062,900		
전용59㎡형 (공급면적:83.60㎡)	1,279,600		
전용74㎡형 (공급면적:101.70㎡)	1,458,200		
전용84㎡형 (공급면적:114.60㎡)	1,594,700		
전용109㎡형 (공급면적:144.60㎡)	1,933,400		

※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결정함.

주) 비례율 및 추정 분담금은 경제 사정이나 정책 변경 또는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620	자양동 7-25대	자양동 227-336대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1	16	35~38	주간선도로	688 (32)	자양동 7-25대	자양동 227-6대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	-	25	집산도로	526 (304)	자양동 580-13대	자양동 227-1대	일반도로	-	건설부공고 제10호`67.1.21	
변경	대로	3	A	25~28	집산도로	526 (304)	자양동 580-13대	자양동 227-1대	일반도로	-	건설부공고 제10호`67.1.21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35	자양동 227-326대	자양동 227-268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A	6~8	국지도로	58	자양동 227-6대	자양동 227-19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28	자양동 227-247대	자양동 227-270대	일반도로	-	-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도로 변경 - B= 35 → 38m(3m), - L = 620 → 688m(32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선 연장 및 일부구간 도로 확폭
대로 3	대로 3-A	• 도로 변경 - B = 25 → 28m(3m) - L= 526m(304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일부구간 확폭
-	중로 3-A	• 도로 신설 - B = 12m, L = 35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2-A	• 도로 신설 - B = 6~8m, L = 58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3-A	• 도로 신설 - B = 6m, L = 28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자양동 227-279일대	-	증)3,445.0	3,445.0	-	공원하부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면적 : 3,445.0㎡ -연면적 : 1,750.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의 대체시설 및 광진구 공공시설 수요조사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광진구)

■ 주차장 예시

횡단면도	예 시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공원	자양동 227-279일대	-	증)3,445.0	3,445.0	-	주차장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3,445.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자양동 227-267 일대	-	증)800.0	800.0	-	연면적 1,500㎡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면적 : 800.0㎡ -연면적 : 1,500.0㎡	• 서울시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119 안전센터 설치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1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공청사 예시

지상1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공공청사 단면도

지상3층 평면도

지상4층 평면도

2)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자양동 227-217 일대	-	증)400.0	400.0	-	연면적 800㎡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면적 : 400.0㎡ -연면적 : 800.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광진시니어클럽의 대체시설 및 광진구 공공시설 수요조사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광진구)

■ 사회복지시설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1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250% 이하	관련 법령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예시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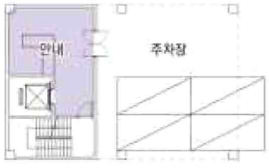

지상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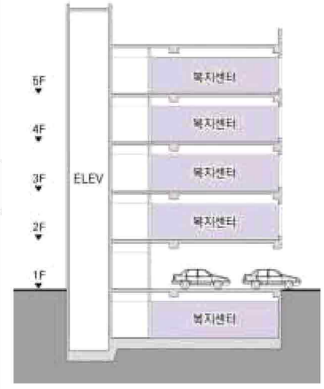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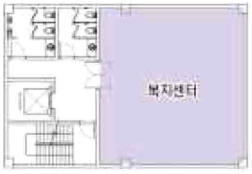

지상2,3,4층 평면도

지상5층 평면도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		계획면적(㎡)	비고
			기준	면적(㎡)		
주민공동시설	소계	-	1,000세대 이상 : [500㎡+(2㎡×1,030세대)]X1.25	3,200.00	6,600.00	
	경로당	획지	-	580.00	600.00	
	어린이집	획지	-	580.00	600.00	
	작은도서관	획지	-	203.00	300.00	
	다함께 돌봄공간	획지	5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66㎡ 이상	66.00	600.00	
	커뮤니티시설	획지	-	-	2,400.00	
	어린이 놀이터	획지	500세대 이상 : 500㎡+0.7㎡×1,030세대	1,221.00	1,300.00	
	주민운동시설	획지	-	-	800.00	
근린생활시설		획지	-	-	5,387.91	
관리사무소		획지	50세대 이상 : 10㎡+(1,030세대-50세대)×0.05㎡	59.00	120.0	
경비실		획지	-	-	10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40,798.0	자양동 227-147번지 일원	215	-	-	215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 (최고층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 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 (㎡)</th><th>정비 계획</th><th>예정 법적상한</th></tr>
<tr><td rowspan="4">신설</td><td rowspan="4">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td><td rowspan="4">40,798.0</td><td>획지 1</td><td>34,149.0</td><td>자양동 227-147</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50.00 이하</td><td>258.00 이하</td><td>299.67 이하</td><td>160m이하 /49층이하</td><td rowspan="4">-</td></tr>
<tr><td>공공 청사</td><td>800.0</td><td>자양동 227-267</td><td>119 안전센터</td><td colspan="4" rowspan="3">관련법규에 의함</td></tr>
<tr><td>사회 복지</td><td>400.0</td><td>자양동 227-217</td><td>노인복지</td></tr>
<tr><td>주차장</td><td>3,445.0</td><td>자양동 227-279</td><td>주차장</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2">• 주택공급계획 : 1,030세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세대수</th></tr><tr><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r><tr><td>계</td><td>1,030</td><td>100.0</td></tr><tr><td>60㎡이하</td><td>464</td><td>45.1</td></tr><tr><td>60~85㎡이하</td><td>476</td><td>46.2</td></tr><tr><td>85㎡초과</td><td>90</td><td>8.7</td></tr></table><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건립규모</th><th colspan="3">임대주택</th></tr><tr><th>소계</th><th>40㎡ 이하</th><th>40㎡ 이상</th></tr><tr><td>초과용적률 전 세대수</td><td>876</td><td>127</td><td>43</td><td>84</td></tr><tr><td>구성비 (%)</td><td>100.00</td><td>14.5</td><td>4.9</td><td>9.6</td></tr><tr><td>임대주택 구성비(%)</td><td>-</td><td>100.00</td><td>33.9</td><td>66.1</td></tr></table>• 85㎡이하 규모의 주택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계획 91.3%
•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계획 연면적의 10.01%
• 전용면적 40㎡이하 비율※ [기준 : 임대30%이상 또는 전체5%이상]▶계획 33.9%, 4.9%
※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154세대) 제외
• 국민주택규모(85㎡이하) 건설 [기준 : 초과용적률의 50%이상]▶계획 50.03%
<table><tr><th>정비계획용적률</th><th>예정법적 상한용적률</th><th>초과용적률</th><th>초과용적률의 50%</th><th>임대주택공급계획 (의무공급면적)</th></tr><tr><td>258.0%</td><td>299.67%</td><td>41.67%</td><td>20.835%</td><td>7,119.20㎡ (7,114.94㎡)</td></tr></table></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2">• 용도지역 상향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완화 20.0% (현황용적률 적용 10.25%, 소형주택 확보 9.75%)
• 허용용적률(20.8%) : 공공보행통로 6.9%, 열린단지 5.0%, 돌봄시설 3.1%, 층간소음 해소 5.0%, 사업성 보정계수 1.04(0.8%)
• 임대주택 건설(도정법 제54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건축심의에서 최종확정)</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2">• 건축한계선
- 획지1(공동주택) : 자양번영로변 3m / 공공보행통로변 3m / 기타 3m
- 사회복지시설 : 아차산로변 3m</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2">•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동서방향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 6m)
• 공개공지 : 자양번영로와 아차산로가 만나는 결절점에 1개소 조성</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7">산 정 내 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
(㎡)</td><td rowspan="2">획지면적
(공동주택용지)
(㎡)</td><td colspan="2">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면적(㎡) ①</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③</td><td rowspan="2">순부담 제외면적
(기존시설)
(㎡) ④</td></tr>
<tr><td>토지</td><td>건축물</td></tr>
<tr><td colspan="2">40,798.0</td><td>34,149.0</td><td>6,649.0</td><td>1,214.3</td><td>158.1</td><td>4,753.3</td><td>169.3</td></tr>
<tr><td rowspan="3">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전체</td><td colspan="7">• 순부담면적 : 2,782.6㎡ (구역면적의 6.8%)
= ① 새로설치되는 기반시설 면적 - ②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③ 대상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 ④ 순부담 제외면적
= (6,649.0㎡ + 1,214.3㎡) - 158.1㎡ - 4,753.3㎡ - 169.3㎡ = 2,782.6㎡</td></tr>
<tr><td>토지</td><td colspan="7">• 토지 기부채납 면적 : 6,649㎡
-도로 2,004.0㎡, 공원 3,445.0㎡, 공공청사 : 800.0㎡, 사회복지시설 : 400.0㎡</td></tr>
<tr><td>건축물</td><td colspan="7">• 공영주차장 환산부지 면적 : 470.3㎡
※ 공영주차장 환산부지 면적 = 470.3㎡ (448.6㎡ + 17.4㎡ + 4.3㎡ = 470.3㎡)
- 공사비 [(1,750.0㎡ × 3,021,000원 ÷ 1.1) ÷ (5,356,000원 × 2)] = 448.6㎡
- 설계비 [(4,806,136,363 × 3.90) ÷ 100] ÷ [(5,356,000원 × 2)] = 17.4㎡
- 감리비 [(4,806,136,363 × 0.96) ÷ 100] ÷ [(5,356,000원 × 2)] = 4.3㎡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 환산부지 면적 : 321.9㎡
※ 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 면적 = 321.9㎡ (305.5㎡ + 13.2㎡ + 3.2㎡ = 321.9㎡)
- 공사비 [(800.0㎡ × 4,500,000원 ÷ 1.1) ÷ (5,356,000원 × 2)] = 305.5㎡
- 설계비 [(3,272,727,272 × 4.33) ÷ 100] ÷ [(5,356,000원 × 2)] = 13.2㎡
- 감리비 [(3,272,727,272 × 1.07) ÷ 100] ÷ [(5,356,000원 × 2)] = 3.2㎡
• 공공청사(119안전센터) 환산부지 면적 : 422.1㎡
※ 공공청사 환산부지 면적 = 422.1㎡ (400.6㎡ + 17.3㎡ + 4.2㎡ = 422.1㎡)
- 공사비 [(1,500.0㎡ × 3,147,000원 ÷ 1.1) ÷ (5,356,000원 × 2)] = 400.6㎡
- 설계비 [(4,291,363,636 × 4.33) ÷ 100] ÷ [(5,356,000원 × 2)] = 17.3㎡
- 감리비 [(4,291,363,636 × 1.07) ÷ 100] ÷ [(5,356,000원 × 2)] = 4.2㎡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부지가액(원/㎡) ÷ (기부채납 연면적×설치비용) ÷ (공시지가×2)
※ 공사비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부가세 제외
※ 설계비·감리비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별표5)(2020)</td></tr>
<tr><td colspan="2">기준용적률</td><td colspan="7">• 219.7% : 199.7%(용도지역 혼재 가중평균) + 20.0%(기준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완화 : 20.0%(현황용적률 인정 10.25% + 소형주택 확보 9.75%)</td></tr>
<tr><td colspan="2">허용용적률</td><td colspan="7">• 240.5% : 공공보행통로 6.9%, 열린단지 5.0%, 돌봄시설 3.1%, 층간소음 해소 5.0%,
사업성 보정계수 1.04(0.8%)</td></tr>
<tr><td colspan="2" row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7">• 258.0% = (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 완화+허용용적률+사업성보정계수)
+ (허용용적률x1.3x가중치xα토지) + (허용용적률x0.7~1.0xα건축물)
= (199.7%+20%+20%+0.8%) + (219.7%x1.3x0.8566x0.04592)
+ (219.7%x0.7x0.02319) + (219.7%x1.0x0.01236)</td></tr>
<tr><td colspan="7">• 가중치 : 0.8566
• α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토지 : 0.04592 = 1,568.3 / 34,149.0
- α건축물 : 0.02319 = 792.2 / 34,149.0
- α건축물(전략육성용도) : 0.01236 = 422.1 / 34,149.0</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7">•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67%(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able>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 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기준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하로 건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 : 전용면적 40㎡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근거	·전체세대수 : 1,030세대 (법적상한 증가분: 154세대)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27세대 – 확보 의무면적 : 8,810.4㎡ 이상 – 전체연면적의 10% 이상 : 대지면적 X 상한용적률 X 10% : 34,149.0 X 258.0% X 10.0% = 8,810.4㎡ < 8,816.2㎡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하로 전용면적 40㎡ 이하주택으로 공급 –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40% 이하 : 127 x 40% = 51세대 ∴ 51세대 ≥ 43세대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127	14.50%	100.00%
40㎡이하	43	4.91%	33.86%
40㎡~50㎡이하	70	7.99%	55.12%
50㎡~60㎡이하	14	1.60%	11.02%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예정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299.67%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258.0% 이하</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99.67% - 258.0% = 41.67%</td></tr>
<tr><td>건립 용적률</td><td colspan="5">41.67% × 0.5 = 20.835%
34,149.0㎡ × 20.835% = 7,114.94㎡</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7,114.94㎡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4">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8㎡</td><td>83.6㎡</td><td>55세대</td><td>4,598.0</td><td rowspan="2">-</td></tr>
<tr><td>84.98㎡</td><td>114.6㎡</td><td>22세대</td><td>2,521.2</td></tr>
<tr><td colspan="2">합 계</td><td>77세대</td><td>7,119.2</td><td>> 7,114.94㎡</td></tr>
</table>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3">환경 보전</td><td>자연환경</td><td>• 절·성토 균형 고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 기존 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td><td rowspan="3"></td></tr>
<tr><td>생활환경</td><td>•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td></tr>
<tr><td>사업시행 시 환경영향</td><td>•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td></tr>
<tr><td rowspan="3">재난 방지</td><td>수재해</td><td>• 구역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 유입을 최소화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 계획 수립</td><td rowspan="3"></td></tr>
<tr><td>산사태</td><td>• 해당없음</td></tr>
<tr><td>화재</td><td>•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td></tr>
</table>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비고
비오톱 및 동·식물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동식물상 보호 ·자연환경 보전	◦ 현존식생도 : 시가화지역 ◦ 개별비오톱평가도 : 평가제외 ◦ 비오톱유형도 : 주거지 비오톱 ◦ 비오톱유형평가도 : 5등급 ◦ 녹지공간 확충 필요	◦ 공원조성, 조경녹지 조성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해 생태적 네트워크 기능을 확보해 비오톱 공간 조성	-
녹지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생태적 가치를 갖는 공간 형성되지 않음 ◦ 사업대상지 주변은 주거지 및 소규모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 공원 및 조경 녹지 조성 등을 통해 공원, 녹지공간과의 생태네트워크 형성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사업 대상지 내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이 없음 ◦ 공사시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	◦ 공사 시 건설장비 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서 정비 ◦ 불가피하게 폐유 보관 시 폐유보관소 설치 후 위탁처리	-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표고 : 최저 14.5m, 최고 19.9m로 5.4m의 표고차 ◦ 경사 : 5°미만의 완만한 지형 ◦ 공사 시 부지조성 및 지하층 터파기에 따른 사토가 발생함	◦ 기존 지형을 활용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동 등 물리적 변화 최소화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토사처리	-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불투수 토양포장도 90%이상 지역 ◦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로 강우 시 지표흡수를 통한 물순환이 어려움	◦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내포한 자연지반, 인공지반, 및 녹지를 조성할 계획 ◦ 저영향개발 기법 활용 등 계획에 반영하여 물순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중랑천6'BOD 기준 Ib(좋음)~IV(나쁨)등급, '뚝도'BOD 기준 Ib(좋음)~III(보통)등급 ◦ 공사 시 및 운영시 오수 발생,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반영 ◦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
바람·열	·기후변화 대응	◦ 평균기온 13.6℃, 강수량 1,271.6mm, 상대습도 61.8%, 풍속 2.3m/sec, 일조시간 2,410.1hr ◦ 바람기능 공간 유형 : 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 ◦ 열환경 공간유형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이하 주거지	◦ 단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해 내부로 최대한 바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바람통로(통경축)를 확보함으로써 미기후 개선 효과를 도모 할 계획임	-
대기질·악취	·대기오염 최소화	◦ 광진구 자동측정망 2024년 1년 평균 데이터 값 PM-2.5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 공사 시 부지정지 작업, 토사이동, 건설장비 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 시 이동오염원(유발교통량) 및 고정오염원(에너지 사용)에 의한 대기질 영향 발생	◦ 공사 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저감방안 수립 ◦ 운영 시 : 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
온실가스·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 효율 극대화	◦ 서울특별시 2022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727천tonCO2eq ◦ 사업시행 시 건축물 연료사용, 전력사용량에 의한 온실가스 영향 발생	◦ 운영 시 :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녹지조성,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오일 교체 등에 따른 폐유 발생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공사 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분별해체 노력 ◦ 건축물 신축시 친환경자재 및 순환골재 활용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확보	-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 측정망 결과, 도로변"가" 및 "나"지역의 주간기준[65dB(A)] 및 야간기준[55dB(A)] 초과 ◦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 ◦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소음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 차음성능 우수한 창호 설치 및 방음·방진 설비 계획 수립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원	-	증) 40,798	40,798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가칭)	- (현황:1,240세대, 계획:1,030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동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교육환경평가 협의 시 아래 사항을 검토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 학습권을 보호하겠음 -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통학안전 대책을 수립하겠음	200m 이내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조합 설립 ~ 착공 전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 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착공 ~ 공사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범죄예방시설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원	-	증) 40,798	40,79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변경사유
신 설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798.0	-	40,79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926.0	감) 17,512.0	5,414.0	13.3	
	제3종일반주거지역	17,872.0	증) 17,512.0	35,384.0	86.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제2종일반	제3종일반	17,512.0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620	자양동 7-25대	자양동 227-336대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1	16	35~38	주간선도로	688 (32)	자양동 7-25대	자양동 227-6대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	-	25	집산도로	526 (304)	자양동 580-13대	자양동 227-1대	일반도로	-	건설부공고 제10호`67.1.21	
변경	대로	3	A	25~28	집산도로	526 (304)	자양동 580-13대	자양동 227-1대	일반도로	-	건설부공고 제10호`67.1.21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35	자양동 227-326대	자양동 227-268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A	6~8	국지도로	58	자양동 227-6대	자양동 227-19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28	자양동 227-247대	자양동 227-270대	일반도로	-	-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도로 변경 - B= 35 → 38m(3m), - L = 620 → 688m(32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선 연장 및 일부 구간 도로 확폭
대로 3	대로 3-A	• 도로 변경 - B = 25 → 28m(3m) - L= 526m(304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일부구간 확폭
-	중로 3-A	• 도로 신설 - B = 12m, L = 35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2-A	• 도로 신설 - B = 6~8m, L = 58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3-A	• 도로 신설 - B = 6m, L = 28m	•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자양동 227-279일대	-	증)3,445.0	3,445.0	-	공원하부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면적 : 3,445.0㎡ -연면적 : 1,750.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의 대체시설 및 광진구 공공시설 수요조사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광진구)

■ 주차장 예시

횡단면도	예 시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자양동 227-279일대	-	증)3,445.0	3,445.0	-	주차장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3,445.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자양동 227-267 일대	-	증)800.0	800.0	-	연면적 1,500㎡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면적 : 800.0㎡ -연면적 : 1,500.0㎡	• 서울시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119안전센터 설치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1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공청사 예시

지상1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공공청사 단면도

지상3층 평면도

지상4층 평면도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자양동 227-217 일대	-	증)400.0	400.0	-	연면적800㎡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면적 : 400.0㎡ -연면적 : 800.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광진시니어클럽의 대체시설 및 광진구 공공시설 수요조사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광진구)

■ 사회복지시설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1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250% 이하	관련 법령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예시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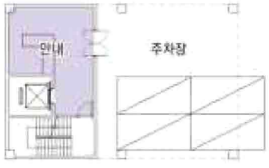

지상1층 평면도

지상2,3,4층 평면도

지상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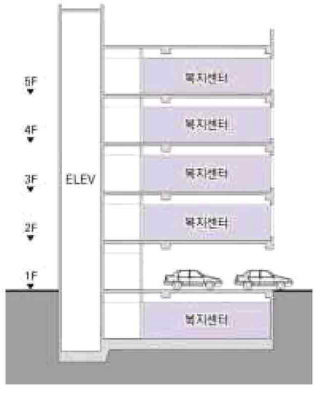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단면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획지	획지1	34,149.0	자양동 227-147 일원	34,14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800.0	자양동 227-267 일원	800.0	119안전센터
	사회복지시설	400.0	자양동 227-217 일원	400.0	노인복지시설
	주차장	3,445.0	자양동 227-279 일원	3,445.0	주차장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지번호	주 용 도	비 고
신 설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신 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획 지	건폐율	비 고
신 설	획지1	50% 이하	공동주택
신 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획지번호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신설	획지1	219.7% 이하	240.5% 이하	258.0% 이하	299.67% 이하	정비계획	상 한 : 258.0% 예정법적상한 : 299.67%
신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기준용적률 완화사항

구 분		제2종일반	제3종일반	비 고
면 적(A)		17,512.0㎡	16,637.0㎡	34,149.0㎡
기준용적률		190%	210%	-
기준용적률 완화	현황용적률 적용	20%	-	-
	소형주택 공급	-	20%	-
	계 (B)	210%	230%	-
기준용적률 가중평균		219.7%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40㎡ 이하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60.6㎡(39㎡공급면적)×28세대/16,637.0㎡(대지면적)=10.20%	최대 10%
40~50㎡ 이하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72.0㎡(49㎡공급면적)×24세대/16,637.0㎡(대지면적)=10.38%	최대 15%
합 계	·총 20.00%(20%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α= 1이하 -적용 : 199.7% X (1,197.0 / 34,149.0) X 1 = 6.9%	10%p 이내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 -기준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적용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 5%	5%p 이내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α ※α= 0.1이하 -적용 : 199.7% X (500.0 / 3,200.0) X 0.1 = 3.12%	5%p 이내
층간소음해소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기준 : 1등급 5%, 2등급 3% -적용 : 1등급 5%	5%p 이내
사업성 보정계수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적용 : 5,969,319 / 5,775,000 = 1.033 ≒ 1.04	1.0~ 2.0

■ 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신설	획지1	17.5%	41.67%	총 59.17%

다) 높이 계획

구 분		높 이	비 고
신 설	획지1	49층 이하(160m 이하)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준수
신 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관련법규에 의함	-

다.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 1	• 자양번영로변 3m / 공공보행통로변 3m / 기타 3m
	사회복지시설	• 아차산로변 3m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단지배치계획	공동주택	• 기존 아파트단지, 상업시설로 3면이 위요된 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역별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 고층 랜드마크형, 중저층 연도형, 인접지 대응형 등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동 형태 및 입면특화 계획 수립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안)] ▸ 고층 랜드마크형 : 대상지 중앙부는 단지의 상징성을 형성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특화 고층 주동 계획 ▸ 중저층 연도형 : 자양번영로(지구보행활동축)변 가로활성화를 고려해 저층부 상가 및 연도형 주동을 가로 대응형으로 배치 ▸ 인접지 대응형 : 경계부 건축물을 고려해 열린 경관과 단계적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판상과 타워의 혼합형 주동계획
대지조성계획	공동주택	• 주변 지역과의 맥락, 지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구나 쉽게 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단지 조성을 원칙으로 함 – 기존 지형으로 인한 부득이한 단차 발생 시 데크 경계부는 주민공동시설 등 배치를 통해 단차 활용 및 자연 경사 슬로프를 계획하여 보행 편의성 고려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안)] ▸ 데크 단차 5m 내외, 2개 단으로 계획하고 단차를 활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지하 주차장 등으로 계획 ▸ 데크를 활용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단지 내 커뮤니티 광장 주변으로 배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저층부 외관	근린생활시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 있는 입면 계획 권장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공동주택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2)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공동주택	• 한강변 경관을 고려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 더샵스타시티(58층), 모아타운 예정지 등 인접 단지를 고려한 입체적 스카이라인 및 경관 형성 • 남-북 통경축(20m) : 한강~건국대학교(남북)로 이어지는 열린 경관 조성 – 한강변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조망, 바람길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주동 계획으로 다채로운 경관 형성 (권장)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공동주택 도로변 등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보도+녹지 가능)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 폭원 6m 이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동서방향으로 조성[지역권 설정(등기)]
공개공지	공동주택	• 자양번영로와 아차산로 결절점에 1개소 조성

2)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돌봄시설	공동주택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500㎡ 이상
열린단지	공동주택	• 자양번영로변 보행활성화 및 한강 접근로변 열린 시야 확보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공동주택	• 공공보행통로로 동-서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 형성 – 통학 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동-서방향의 보행 동선계획으로 기존에 단절된 동-서간 연계성 강화 • 커뮤니티시설과 연결되는 단지 내 순환형 보행체계 구축 – 단지 내 주요 커뮤니티시설, 대중교통 결절점과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체계 계획 • 자양번영로(지구보행활동축) 변 공개공지, 보도형 전면공지, 보도를 연계해 5~8m 내외의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 내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권장) – 자양번영로 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가로활성화 및 기존 상가세입자와의 상생 고려 –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주민의 보행편의성 증진 • 주민공동시설(권장) –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대지 내 단차 발생구간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계획 – 디자인특화동 최상층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권장)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비고
비오톱 및 동·식물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동식물상 보호 ·자연환경 보전	◦ 현존식생도 : 시가화지역 ◦ 개별비오톱평가도 : 평가제외 ◦ 비오톱유형도 : 주거지 비오톱 ◦ 비오톱유형평가도 : 5등급 ◦ 녹지공간 확충 필요	◦ 공원조성, 조경녹지 조성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해 생태적 네트워크 기능을 확보해 비오톱 공간 조성	-
녹지 네트워크	·녹자·수생태 연결성 확보	◦ 생태적 가치를 갖는 공간 형성되지 않음 ◦ 사업대상지 주변은 주거지 및 소규모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 공원 및 조경 녹지 조성 등을 통해 공원, 녹지공간과의 생태네트워크 형성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사업 대상지 내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이 없음 ◦ 공사시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	◦ 공사 시 건설장비 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서 정비 ◦ 불가피하게 폐유 보관 시 폐유보관소 설치 후 위탁처리	-
지형 · 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표고 : 최저 14.5m, 최고 19.9m로 5.4m의 표고차 ◦ 경사 : 5°미만의 완만한 지형 ◦ 공사 시 부지조성 및 지하층 터파기에 따른 사토가 발생함	◦ 기존 지형을 활용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동 등 물리적 변화 최소화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토사처리	-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불투수 토양포장도 90%이상 지역 ◦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로 강우 시 지표흡수를 통한 물순환이 어려움	◦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내포한 자연지반, 인공지반, 및 녹지를 조성할 계획 ◦ 저영향개발 기법 활용 등 계획에 반영하여 물순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중랑천6'BOD 기준 Ⅰb(좋음)~Ⅳ(나쁨)등급, '뚝도'BOD 기준 Ⅰb(좋음)~Ⅲ(보통)등급 ◦ 공사 시 및 운영시 오수 발생,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반영 ◦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
바람 · 열	·기후변화 대응	◦ 평균기온 13.6℃, 강수량 1,271.6mm, 상대습도 61.8%, 풍속 2.3m/sec, 일조시간 2,410.1hr ◦ 바람기능 공간 유형 : 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 ◦ 열환경 공간유형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이하 주거지	◦ 단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해 내부로 최대한 바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바람통로(통경축)를 확보함으로써 미기후 개선 효과를 도모 할 계획임	-
대기질 · 악취	·대기오염 최소화	◦ 광진구 자동측정망 2024년 1년 평균 데이터 값 PM-2.5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 공사 시 부지정지 작업, 토사이동, 건설장비 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 시 이동오염원(유발교통량) 및 고정오염원(에너지 사용)에 의한 대기질 영향 발생	◦ 공사 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저감방안 수립 ◦ 운영 시 : 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
온실가스 ·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 효율 극대화	◦ 서울특별시 2022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727천tonCO2eq ◦ 사업시행 시 건축물 연료사용, 전력사용량에 의한 온실가스 영향 발생	◦ 운영 시 :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녹지조성,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오일 교체 등에 따른 폐유 발생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공사 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분별해체 노력 ◦ 건축물 신축시 친환경자재 및 순환골재 활용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확보	-
소음 · 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 측정망 결과, 도로변"가" 및 "나"지역의 주간기준[65dB(A)] 및 야간기준[55dB(A)] 초과 ◦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소음 발생 ◦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소음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 차음성능 우수한 창호 설치 및 방음·방진 설비 계획 수립	-

Ⅲ. 2026년 제6차('26.05.06.)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제6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수정 사항	·용적률 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하였음	반영
			·정비구역의 명칭은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정비구역 명칭 변경하였음	반영
		조건 사항	·대상지 서측 자양7차우성아파트와 인접한 공공보행통로(폭 6m)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인접 단지 내 상가 주차장 및 화단 등의 공간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향후 사업시행 시 인접 단지 내 상가 주차장 및 화단 등의 공간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계획에 반영할 것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개량 범위 및 비용 분담 등을 협의하여 공공기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7.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안) 건축 및 경관계획(참고)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0) 및 광진구 주거사업과(☎02-450-9729)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비계획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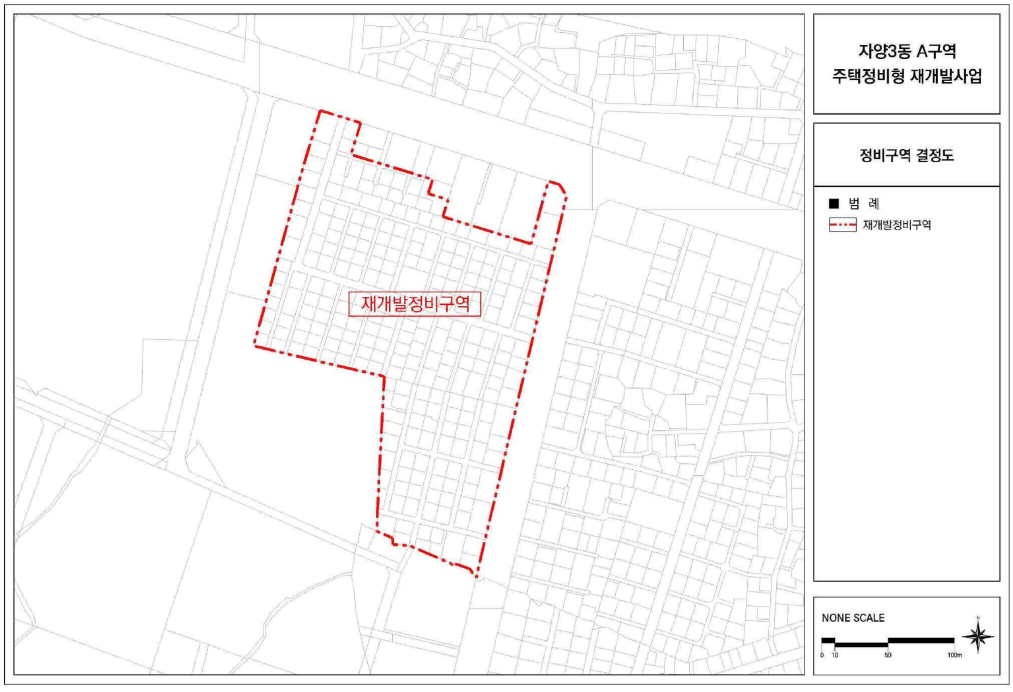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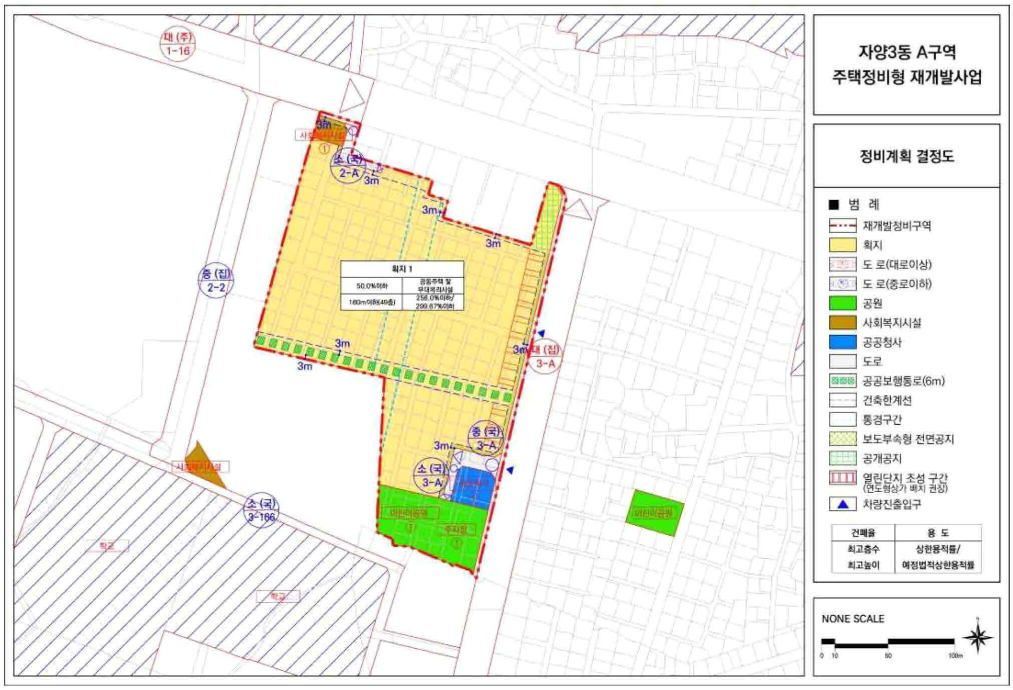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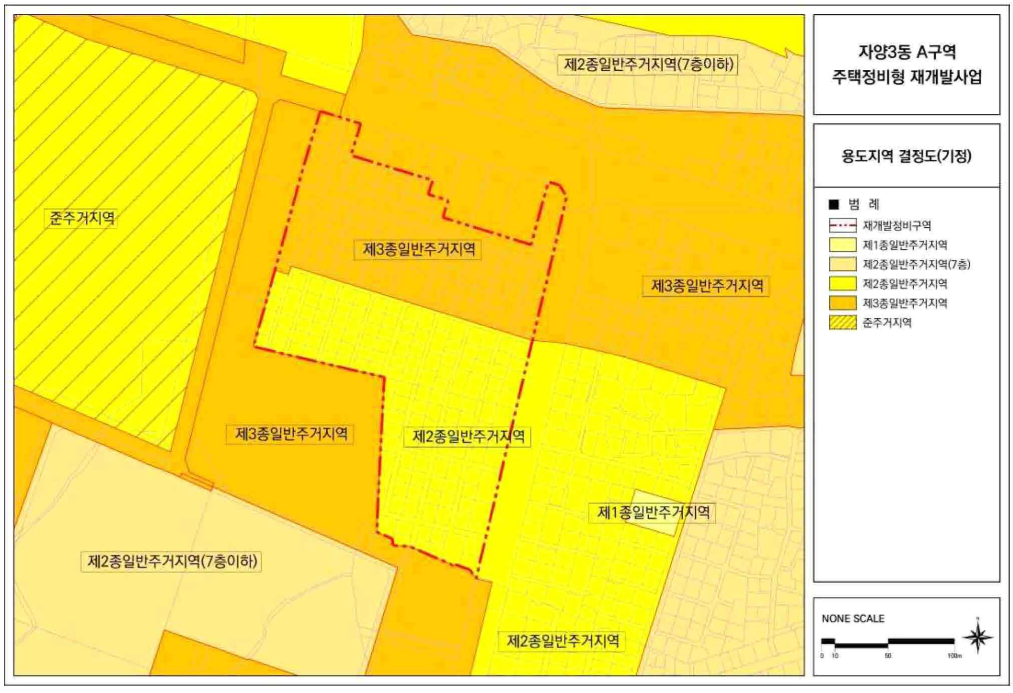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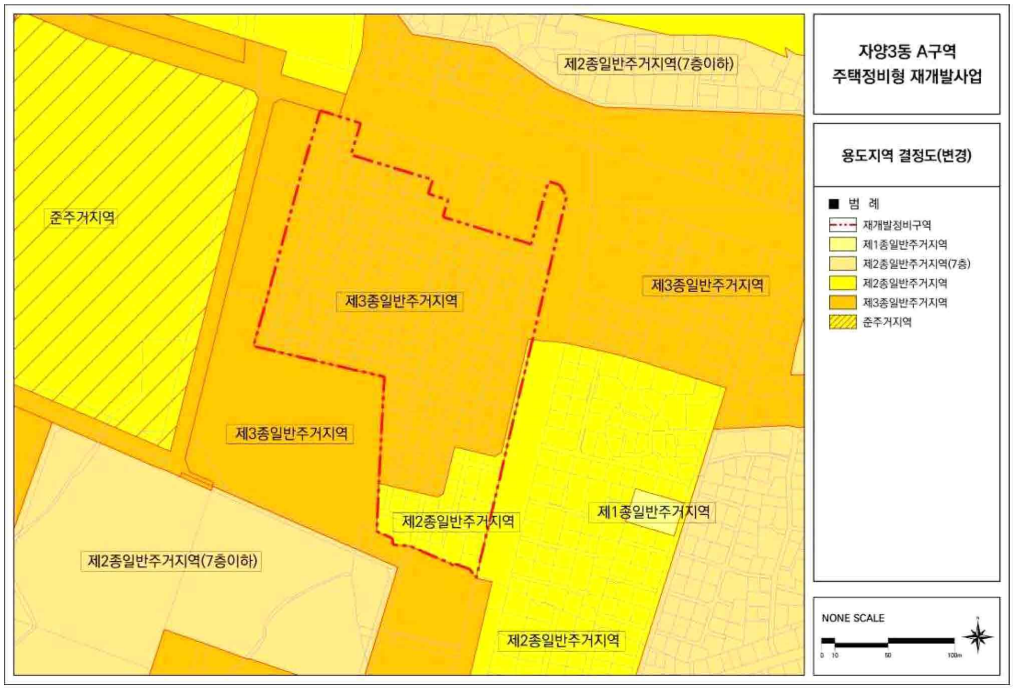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붙임2>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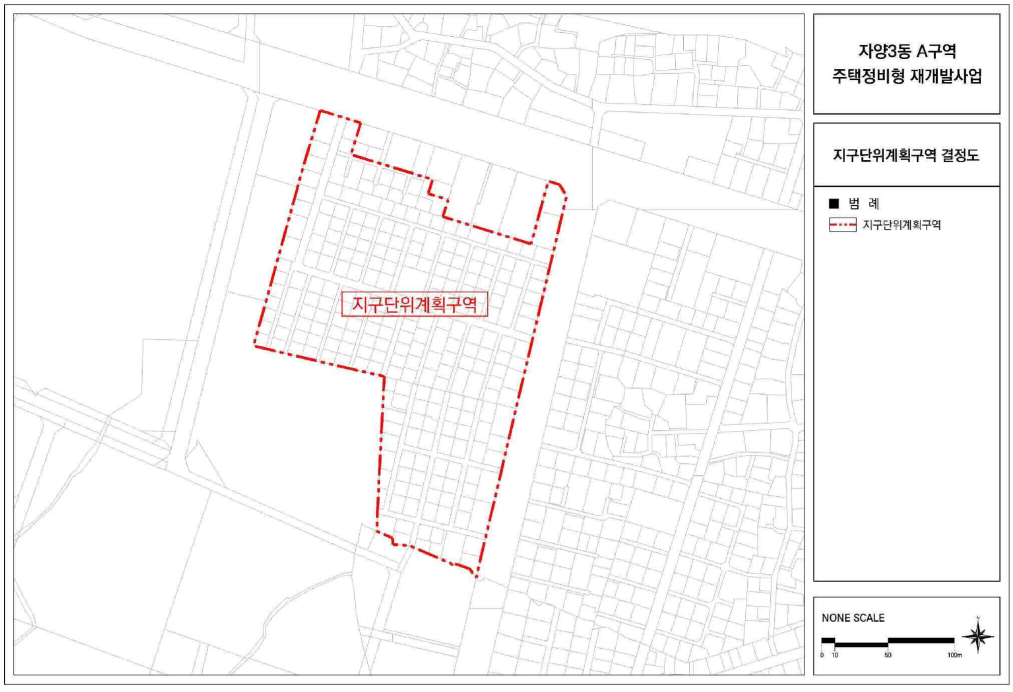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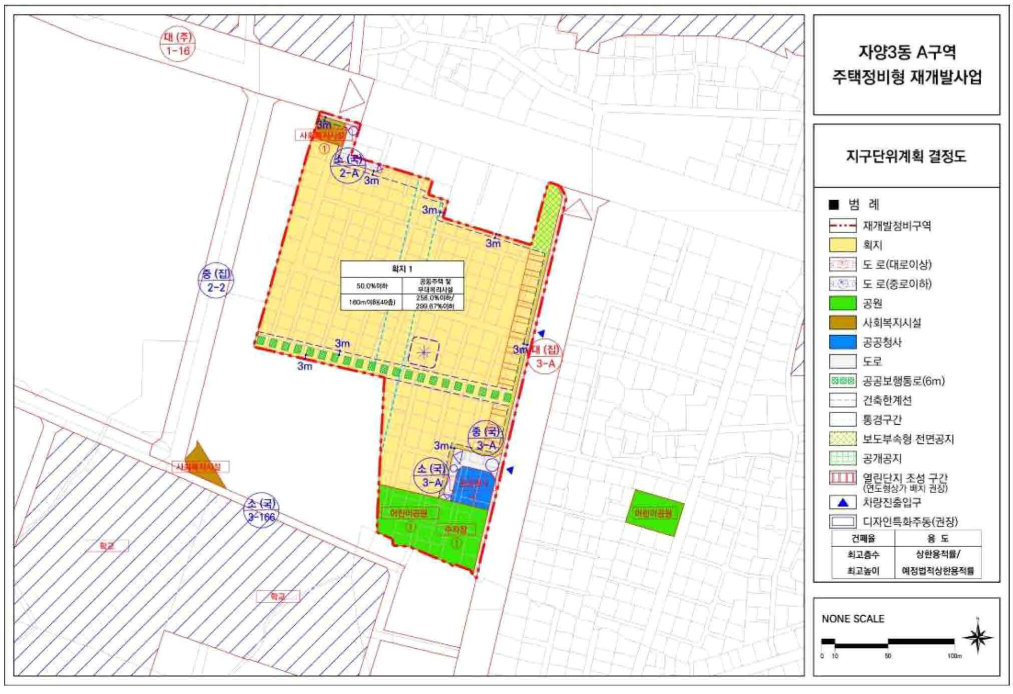

<붙임3>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안) 건축 및 경관계획

구분	내용
특별건축구역	•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 특별건축구역 적용에 따른 인동거리 완화 등은 주거유형 다양화, 경관성,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 (※ 특별건축구역 적용 여부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
단지배치계획	• 기존 아파트단지, 상업시설로 3면이 위요된 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역별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 고층 랜드마크형, 중저층 연도형, 인접지 대응형 등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동 형태 및 입면특화계획 수립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안)] ▸ 고층 랜드마크형 : 대상지 중앙부는 단지의 상징성을 형성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특화 고층 주동 계획 ▸ 중저층 연도형 : 자양번영로(지구보행활동축) 변 가로활성화를 고려해 저층부 상가 및 연도형 주동을 가로대응형으로 배치 ▸ 인접지 대응형 : 경계부 건축물을 고려해 열린 경관과 단계적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판상과 타워의 혼합형 주동계획
대지조성계획	• 주변 지역과의 맥락, 지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구나 쉽게 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단지 조성을 원칙으로 함 – 기존 지형으로 인한 부득이한 단차 발생 시 데크 경계부는 주민공동시설 등 배치를 통해 단차 활용 및 자연 경사 슬로프를 계획하여 보행 편의성 고려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안)] ▸ 데크 단차 5m 내외, 2개 단으로 계획하고 단차를 활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지하 주차장 등으로 계획 ▸ 데크를 활용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단지 내 커뮤니티 광장 주변으로 배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 한강변 경관을 고려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 더샵스타시티(58층), 모아타운 예정지 등 인접 단지를 고려한 입체적 스카이라인 및 경관 형성 • 한강~건국대학교(남북)로 이어지는 열린 경관 조성을 위해 남–북 통경축(20m) 설정 – 한강변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조망, 바람길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주동 계획으로 다채로운 경관 형성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 공공보행통로로 동–서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 형성 – 통학 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동–서방향의 보행동선계획으로 기존에 단절된 동–서간 연계성 강화 • 커뮤니티시설과 연결되는 단지 내 순환형 보행체계 구축 – 단지 내 주요 커뮤니티시설, 대중교통 결절점과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체계 계획 • 자양번영로(지구보행활동축) 변 공개공지, 보도형 전면공지, 보도를 연계해 5~8m 내외의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권장) – 자양번영로 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가로활성화 및 기존 상가세입자와의 상생 고려 –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주민의 보행편의성 증진 • 주민공동시설(권장) –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대지 내 단차 발생구간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계획 – 디자인특화동 최상층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권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6호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19번지 일대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회의견청취, 2026년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수정가결) 및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송파 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재건축 사업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송파구 가락로 187 (송파동 119)	-	증) 49,226.3	49,226.3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8.43% ⇒ (1,545,517,440천원 - 572,185,040천원) / 988,818,000천원 X 100 - 총수입 : 1,545,517,440천원 - 총사업비 : 572,185,040천원 - 종전자산 : 988,818,000천원 ※ 추정 건축계획에 따라 산출한 값으로서 건축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비례율은 변동됨.

개별 종전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 988,818,000천원

구분		적용산식						
	유형(전용)	단지구성				1세대가격		종전자산 추정액(천원)
		세대수	전유면적	공급면적	대지권 면적	공급면적단가(천원/평)	1세대당 가격(천원)	
분양주택	27	144	64.26	88.65	48.197	57,800	1,550,000	223,200,000
	34	96	105.52	113.11	61.521	48,223	1,650,000	158,400,000
	39	48	119.68	129.42	70.735	44,700	1,750,000	84,000,000
	45	168	137.1	148.39	80.969	41,214	1,850,000	310,800,000
	52	120	158.61	171.68	93.547	38,992	2,025,000	243,000,000
합계		576	67,211.28	75,386.64	41,070.19	종전자산소계		1,019,400,000 (약 1조 194억)
사업성분석입력시 종전자산 제외내용		※ 청산대상자 추정가액 : 30,582,800천원 (약 305.8억) (종전가액 합계액의 3%로 추정)						
사업성분석 입력용 종전자산 합계		988,818,000천원 (약 9,888억)						

추정 분담금 산출

•토지등소유자 개별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X 비례율 (단위 : 천원)

종전자산 아파트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액			추정 분담금	
주택형	종전자산	비례율	권리가액	주택형	평형	분양가액	평균 분담금	비고
27평형	1,550,000	98.43%	1,525,726	59	24	1,396,550	-129,176	환급
				74	31	1,679,090	153,364	분담
				84	34	1,749,110	223,384	분담
				98	40	1,965,290	439,564	분담
				114	46	2,196,400	670,674	분담
				128	50	2,365,220	839,494	분담
34평형	1,650,000	98.43%	1,624,160	59	24	1,396,550	-227,610	환급
				74	31	1,679,090	54,930	분담
				84	34	1,749,110	124,950	분담
				98	40	1,965,290	341,130	분담
				114	46	2,196,400	572,240	분담
				128	50	2,365,220	741,060	분담
39평형	1,750,000	98.43%	1,722,594	59	24	1,396,550	-326,044	환급
				74	31	1,679,090	-43,504	환급
				84	34	1,749,110	26,516	분담
				98	40	1,965,290	242,696	분담
				114	46	2,196,400	473,806	분담
				128	50	2,365,220	642,626	분담

종전자산 아파트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액			추정 분담금	
주택형	종전자산	비례율	권리가액	주택형	평형	분양가액	평균 분담금	비고
45평형	1,850,000	98.43%	1,821,028	59	24	1,396,550	-424,478	환급
				74	31	1,679,090	-141,938	환급
				84	34	1,749,110	-71,918	환급
				98	40	1,965,290	144,262	분담
				114	46	2,196,400	375,372	분담
				128	50	2,365,220	544,192	분담
52평형	2,025,000	98.43%	1,993,287	59	24	1,396,550	-596,737	환급
				74	31	1,679,090	-314,197	환급
				84	34	1,749,110	-244,177	환급
				98	40	1,965,290	-27,997	환급
				114	46	2,196,400	203,113	분담
				128	50	2,365,220	371,933	분담

※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 총 수입 추산 : 1,545,517,440천원

구 분			금 액 (천원)	수입계
향후자산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아파트 분양 수입	일반분양수입	463,863,470	1,545,517,440 (약 1조 5,455억)
		조합원분양수입	1,060,453,010	
		소계	1,524,316,480	
	임대 및 국민규모주택 수입	매각 수입	21,200,960	
		소계	21,200,960	

■ 총 사업비 : 572,185,040천원

구분	금 액 (천원)	비율	비고
공사비	440,059,609	76.9%	토목공사비, 건축물 철거비및 잔재물처리비, 대지조성공사비, 단지내조경공사비, 가산공사비 등이 포함
보상비	33,640,200	5.9%	청산대상자 청산금 등
관리비	5,534,092	1.0%	추진위원회 · 조합 운영비, 소송비용 등
설계비	7,660,699	1.3%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문화재조사비, 지질조사비, 기타 설계용역관련비용 등
감리비	10,256,773	1.8%	건축, 전기, 소방 등
부대경비	53,030,687	9.3%	수수료 등 기타사업비,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예비비	22,002,980	3.8%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의 돌발발생 제비용 등 (총 공사비의 약 5%)
소계	572,185,040	100.0%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49,226.3	49,226.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11,630.7	11,630.7	23.6	
	도 로	-	증) 3,445.5	3,445.5	7.0	
	공 원	-	증) 8,052.2	8,052.2	16.4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공지	-	증) 133.0	133.0	0.3	
획지	소 계	-	증) 37,595.6	37,595.6	76.4	
	공동주택	-	증) 37,595.6	37,595.6	76.4	

※ 주차장 연면적 : 5,343㎡ (지하 1개층)

5.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6,729.0	증) 2,497.3	49,226.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111.5	증) 1,940.7	8,052.2	16.4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증) 3,345.2	3,345.2	6.8	
제3종일반주거지역	40,617.5	감) 2,788.6	37,828.9	76.8	

※ 구역계 확장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이 추가되었음(1종 1,806.4㎡, 2종7층 14.8㎡, 2종 676.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송파동 107번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885.3	•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에 따른 면적 증가 및 도로의 용도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변경
-	송파동 3-12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503.6	
-	송파동 3-12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172.5	
-	송파동 119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516.0	
-	송파동 119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2,272.6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6.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31	15~18	보조간선도로	3,000(254)	삼전동(광로19)	방이동(광로23)	일반도로	-	건설부 제324호('74.09.24)	가락로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330(153)	송파동 6-1	송파동 4-8	일반도로	-	서고 제2005-400호('05.12.15)	가락로28길, 백제고분로46길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472(472)	송파동 4-8	송파동 3-13	일반도로	한양1차아파트	-	백제고분로44,46길
변경	소로	1	-	10	국지도로	472(472)	송파동 4-8	송파동 3-13	일반도로	한양1차아파트	-	백제고분로44,46길

※ 도로 번호란의 ( )는 임시 번호, 연장란의 ( )는 구역 내 부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	소로1-	• 선형 변경	•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송파동 119	-	증) 5,343	5,343	-	근린공원② 하부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5,343㎡(지하1층)	• 근린공원② 하부 지역필요시설(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공원	근린공원	송파동 119	6,111.5	증) 1,940.7	8,052.2	서고 제2005-400호 ('05.12.15)	동산공원 (한양1차)
폐지	-	공원	어린이 공원	송파동 107	1,806.4	감) 1,806.4	-	건설부 제125호 ('74.12.06)	새싹공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근린공원	• 공원 면적 변경 - 6,111.5㎡ → 8,052.2㎡ (증 1,940.7㎡)	•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에 따른 공원 면적 증가
-	공원	어린이공원	• 폐지(면적 : 1,806.4㎡)	• 근린공원 통합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라.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송파동 107	-	증) 133.0	133.0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133.0㎡(증 133.0㎡)	• 새싹어린이공원 통합에 따른 자투리공간을 공공공지로 계획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A	A1	송파동 119번지 일원	37,975.6	한양1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1)
변경	A	A1	송파동 119번지 일원	37,595.6	한양1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1)
기정	A	A2	송파동 121	4,779.3	기존 중심시설용지

※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A	A1	•A1 : 면적변경 (37,975.6㎡ → 37,595.6㎡)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획지 변경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명	계획기준		면적(㎡)	비고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 10㎡ + (건립세대수 - 50) × 0.05㎡		2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
경비실	-		100	
주민공동시설	• 설치총량 : 500㎡ + (세대수 × 2.5㎡) × 1.25		6,680	
		경로당	340	
		어린이집	730	
		작은도서관	180	
		다함께돌봄센터	120	
		주민공동시설	3,400	
		어린이놀이터	1,410	
		주민운동시설	500	
근린생활시설	-		-	

9.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송파한양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9,226.3	-	-	송파구 가락로 187 (송파동 119)	6	-	-	6	-	

10. 건축물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용적률(%)</th><th rowspan="2">최고층수/
높이(m)</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
(㎡)</th><th>기준/허용/
상한/법적상한</th></tr>
<tr><td>신규</td><td>송파한양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td><td>49,226.3</td><td>A1</td><td>37,595.6</td><td>송파동
119</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50
이하</td><td>192.47/192.47/
228.85/299.98이하</td><td>최고29층이하/
133m이하</td><td>-</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세대수(공공주택)</th><th>비율(%)</th><th>비고</th></tr>
<tr><td colspan="2">계</td><td>954(156)</td><td>100.0(16.4)</td><td></td></tr>
<tr><td>60㎡
이하</td><td>59㎡</td><td>249(116)</td><td>26.1(12.2)</td><td></td></tr>
<tr><td rowspan="2">60~
85㎡이하</td><td>74㎡</td><td>136(40)</td><td>14.2(4.2)</td><td></td></tr>
<tr><td>84㎡</td><td>219</td><td>23.0</td><td></td></tr>
<tr><td rowspan="3">85㎡
초과</td><td>98㎡</td><td>57</td><td>6.0</td><td></td></tr>
<tr><td>114㎡</td><td>201</td><td>21.1</td><td></td></tr>
<tr><td>128㎡</td><td>92</td><td>9.6</td><td></td></tr>
</table>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3.3%
</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0">-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 용적률(228.85%) → 법적상한용적률(299.98%)</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td></tr>
<tr><td>기타</td><td colspan="10">- 단지 중앙부 통경축 계획(동서 : 20m 내외 / 남북 : 10m 내외)</td></tr>
</table>

11. 용적률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산정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구역
면적</td><td>대지
면적</td><td>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공원,도로,공공공지)</td><td>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td><td>건축물
토지환산면적
(주차장)</td><td rowspan="2"></td></tr>
<tr><td>49,226.3㎡</td><td>37,595.6㎡</td><td>11,630.7㎡</td><td>2,497.3㎡</td><td>5,660.8㎡</td><td>719.3㎡</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6">•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건축물 토지환산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4,191.9㎡(10.2%)</td><td></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192.47%</td><td></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6">•192.47%
(허용용적률인센티브 10% 의무이행 : 층간소음 1등급(5%), 에너지효율 1++(3%), 녹색건축 최우수(3%))</td><td></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6">•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①)}
= 192.47% + 192.47%×{(1.3×1.4626×0.092367) + (0.7×0.019133)}
= 228.85%(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228.85%

[가중치]
•가중치 = 공공시설등제공 부지의 허용용적률/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281.51% / 192.47% = 1.4626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허용용적률
= (-5,660.8㎡×150%+9,133.4㎡×200%) / (-5,660.8㎡+9,133.4㎡)
= 281.51%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5,660.8㎡×150%) + (31,934.8㎡×200%)} / 37,595.6㎡
= 192.47%

[α값]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3,472.6㎡ / (49,226.3㎡-11,630.7㎡) = 0.092367
•α건축물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719.3㎡ / (49,226.3㎡-11,630.7㎡) = 0.019133</td><td></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6">299.98%</td><td></td></tr>
<tr><td>공공주택
건립용적률</td><td colspan="6">35.565%
(299.98% - 228.85% = 71.13%) × 0.5</td><td></td></tr>
</table>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항목			인센티브	적용
세대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층간소음 해소	계획 기준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5%p 이내	5%p
		계획 내용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1등급(5%)		
환경 친화 안전한 주거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계획 기준	‣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1 7.5%(15%), ZEB2 7%(14%), ZEB3 6.5%(13%), ZEB4 6%(12%), ZEB5 5.5%(11%), 에너지효율 1++ 3%(6%), 에너지효율 1+ 1.5%(3%) ‣ ②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 등급 3%(6%), 우수 등급 1.5%(3%)	7.5%p 이내	6%p
		계획 내용	‣ ① 에너지효율등급 : 1++(3%) ‣ ②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 등급(3%)		
합계					11% (10%적용)

※ 가락아파트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한양1차) 계획지침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10%이상) 의무 이행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건설

구분	내용
법적상한용적률	• 299.98%
상한용적률	• 228.85%
용적률증가분	• 299.98%-228.85% = 71.13%
증가용적률의50%	• 71.13% X 0.5 = 35.565%
공공주택의무연면적	• 35.565% X 37,595.6㎡ = 13,370.88㎡ 이상

구분	내용			
	면적(㎡)		세대수	연면적(㎡)
	전용	공급		
공공주택 확보계획	합계		156	13,372.40
	59	80.40	116	9,326.40
	74	101.15	40	4,046.00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획지(A1)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으로 조성	도면 참조

나. 건축물 건축선 등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A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을 준용하여 계획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배치로 다양한 건축물 경관 형성 및 일률적 경관형성 방지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계획	
	부대복리시설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도로변)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 도로(통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 단지 내 복리시설은 3층이하, 1층부 층고는 4m 이상 •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가락로변	• 벽면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경관 창출 • 저층부(1~3층) 부대복리시설, 근생시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등 배치 • 저층부(1~3층) 가로와의 개방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외벽면 투시형 재료 사용	
중저층 배치구간	백제고분로 46길	•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입체적이고 개방감 있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저층(15층이하)으로 배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도면 참조
기타 외관요소	획지(A1)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색채 – 외벽면의 색채는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통일성 있는 색채 사용 권장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옹벽 설치시 자연석, 조경석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다.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보행동선	단지내 보행동선	• 학교, 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 및 인접단지와 연계되는 곳에 보행자도로로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도면 참조
차량동선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재료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이 우선되도록 조성	도면 참조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도면 참조

14.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토양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최대한 틈새투수포장 활용 •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 소규모 비오톱을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 단지 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 차음성능이 우수한 창호 사용 등을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재난방지	• 사업대상지내 전면공지 등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공사는 원칙적으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 방지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 시행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 비오톱 및 동·식물상	비오톱 등급 향상 동식물상 보호 자연환경 보전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하지 않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및 생물서식공간 확보
2. 녹지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평가지표 I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 I,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 III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3.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도 양호 •공사시 지장물 철거 등 토양오염 발생 우려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4.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계획구역의 대부분은 평탄지형임 - 표고 : 25.0~30.0m - 경사 : 5° 이하 97.2%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절성토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보전계획 수립
5.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생태면적률 30% 확보 대상임 •저영향개발기법 사전협의 대상임	•생태면적률 30.99% •저영향개발기법 사전협의 이행 예정임
6.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공사중 토사유출에 의한 오탁부하 가중 •운영시 오수발생	•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7. 바람·열	기후변화 대응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8.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연료사용 등에 따른 대기오염발생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친환경보일러 설치방안 검토
9. 온실가스·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효율극대화	○	•에너지사용량 증가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10. 자원순환	폐기물발생 최소화	○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11.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저소음 장비 사용
12.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사업시행 후 주변 주거시설에서 추가적인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 없음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1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건축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	기존세대수 : 576 계획세대수 : 954 증) 378세대	

1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상지와 가까운 교육시설은 솔방울 · 예은유치원, 송파초, 가락중, 잠실여고로 최소 500m 이내 거리에 있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교육환경 보호</td><td>계획시</td><td>-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교통영향분석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td><td></td></tr>
<tr><td>공사시</td><td>•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
-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 진동을 규제
-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table>
<tr><th>구분</th><th>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th><th>주간
(07:00~18:00)</th><th>야간
(22:00~05:00)</th></tr>
<tr><td>주거지역내 공사장</td><td>60dB(A) 이하</td><td>65dB(A) 이하</td><td>50dB(A) 이하</td></tr>
</table>
주)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함
- 생활진동 규제기준
<table>
<tr><th>구분</th><th>주간(06:00~22:00)</th><th>심야(22:00~06:00)</th></tr>
<tr><td>주거지역</td><td>65dB(V) 이하</td><td>60dB(V) 이하</td></tr>
</table>
주)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소음 · 진동 발생 저감대책
- 저소음 · 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 · 진동관리법(제49조2)' 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 공사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 효과를 높임</td><td></td></tr>
</table>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내용
공동주택 주·부 출입구	•단지 출입구 보행동선에 CCTV 설치 •자연감시가 낮고 활동인지의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경비실 또는 CCTV 설치 •단지 출입구에 출입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 통제 •출입구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주동출입구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식별 용이 •경비실이 없는 주동에서는 자동 방범키와 CCTV 설치
경비실	•경비실 주변으로는 관목류를 설치하여 외부조망 확보 •방법시스템 모니터링이 경비실에서 가능하도록 구축 •위치는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와 주동출입구의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
담장	•공동주택 외곽은 조경이나 울타리 등으로 거주자의 영역감 증진 •단지경계 울타리(수목울타리 포함)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진입금지, 단지전용공간 등의 표지판 설치 •단지 내 인접하여 유해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공간적 분리를 위해 비투시형 담장을 설치
건축물	•편복도 방향 창문에는 방범창과 안전잠금장치 등으로 외부침입 대비 •외벽에 각종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도출물이 없도록 계획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통행이 많은 장소와 주동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주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며 CCTV 설치 •단지 내 상가는 외부인의 이용이 빈번하므로 단지 내 상가 주출입구는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지 않고 출입하도록 동선 분리
주차장	•주차장 입구에는 모든 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CCTV와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 야간인지를 위해 조명설치 •지하주차장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가 벽면을 규칙적으로 배치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방문자 주차장 별도 설치·운영 •장애인 및 여성배려주차장은 건물 출입구와 인접하여 설치
승강기	•CCTV 모니터링에 지장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 조도는 바닥면 50Lux 이상이 되도록 계획 •정전 시 비상조명의 경우 램프중심으로부터 2미터 이상 조도가 1Lux 이상으로 하고 정전 시 30분 이상 규정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축전지를 설치 •승강기 내부 및 1층 승강기 홀에 CCTV 설치

구 분	내용
복도 및 계단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각 층 복도와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CCTV를 설치하고 반경 15미터마다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복도와 계단은 인접한 주동에서 내·외부가 관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창문 설치
조경	•주동 앞 정원의 관목은 주거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종과 주된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및 관리 •지하주차장 출입구 좌우 3미터 구간에는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교목 또는 지엽이 치밀한 관목 등의 조경수 식재를 지양 •조경수가 건물 출입구와 조명을 가리지 않게 식재
벤치 및 파고라	•유동인구가 적은 곳을 피하고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 권장

Ⅱ.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동 151번지 일원	117,715.5 (46,729.0)	증) 2,497.3 (증) 2,497.3)	120,212.8 (49,226.3)	서고 제2024-179호 ('24.04.04.)	-

※ ( )는 사업구역 면적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 117,715.5㎡ → 120,212.8㎡ (증 2,497.3㎡)	• 근린공원과 주변 새싹어린이공원 통합조성에 따른 구역계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7,715.5 (46,729.0)	증) 2,497.3 (증) 2,497.3)	120,212.8 (49,226.3)	100.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1,083.5 (6,111.5)	증) 1,940.7 (증) 1,940.7)	13,024.2 (8,052.2)	10.8 (16.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82.3 (-)	증) 3,345.2 (증) 3,345.2)	4,327.5 (3,345.2)	3.6 (6.8)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57.4 (-)	- (-)	1,357.4 (-)	1.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4,292.3 (40,617.5)	감) 2,788.6 (감) 2,788.6)	101,503.7 (37,828.9)	84.4 (76.8)	-

※ ( )는 사업구역 면적임
※ 구역계 확장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이 추가되었음(1종 1,806.4㎡, 2종7층 14.8㎡, 2종 676.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송파동 107번지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885.3㎡	•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에 따른 면적 증가 및 도로의 용도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변경
-	송파동 3-12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503.6㎡	
-	송파동 3-12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172.5㎡	
-	송파동 119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516.0㎡	
-	송파동 119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2,272.6㎡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가락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송파동 151번지 일원	62,370.3	건고제398호 (1979.11.07.)	-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31	15~18	보조 간선도로	3,000 (254)	삼전동 (광로19)	방이동 (광로23)	일반 도로	-	건설부 제324호 ('74.09.24)	가락로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330 (330)	송파동 6-1	송파동 4-8	일반 도로	-	서고 제2005-400호 ('05.12.15)	가락로28길 백제고분로46길
기정	중로	2	(2)	18	집산 도로	170 (170)	송파동 5-4	중2-131	일반 도로	-	-	송이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31 (31)	송파동 6-3	송파동 5-4	일반 도로	-	서고 제2025-239호 ('25.05.0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	7	국지도로	41 (41)	송파동 6-1	송파동 6-1	일반도로	-	서고 제2025-239호 ('25.05.01)	(구역외)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472 (472)	송파동 4-8	송파동 3-13	일반도로	한양1차아파트	-	백제고분로 44,46길
변경	소로	1	-	10	국지도로	472 (472)	송파동 4-8	송파동 3-13	일반도로	한양1차아파트	-	백제고분로 44,46길

※ 도로 번호란의 ( )는 임시 번호, 연장란의( )는 구역 내 부분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	소로1-	• 선형 변경	•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송파동 119	-	증) 5,343	5,343	-	근린공원② 하부 중복결정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5,343㎡(지하1층)	• 근린공원② 하부 지역필요시설(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공원	근린공원	송파동 119	6,111.5	증) 1,940.7	8,052.2	서고 제2005-400호 ('05.12.15)	동산공원 (한양1차)
기정	③	공원	근린공원	송파동 152	4,972.0	-	4,972.0	서고 제1985-233호 ('85.04.06)	한양공원 (한양2차)
폐지	-	공원	어린이 공원	송파동 107	1,806.4	감) 1,806.4	-	건설부 제125호 ('74.12.06)	새싹 공원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근린공원	• 공원 면적 변경 - 6,111.5㎡ → 8,052.2㎡ (증 1,940.7㎡)	•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에 따른 공원 면적 증가
-	공원	어린이공원	• 폐지(면적 : 1,806.4㎡)	• 근린공원 통합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라.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송파동 107	-	증) 133.0	133.0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133.0㎡(증 133.0㎡)	• 새싹어린이공원 통합에 따른 자투리공간을 공공공지로 계획

마.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송파동 151번지 일원	600.0	-	600.0	서고 제2025-239호 ('25.05.01)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공공청사	5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변경없음)

구분	설정기준	비고
가구	•6m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2개소
획지	•정비계획 등으로 기 결정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계획 등에 따른 계획적 개발단위 •단일 건축물이나 다수의 필지로 된 경우	5개소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A	A1	송파동 119번지 일원	37,975.6	한양1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1)
변경	A	A1	송파동 119번지 일원	37,595.6	한양1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1)
기정	A	A2	송파동 121	4,779.3	기존 중심시설용지

구분	가구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B	B1	송파동 151번지 일원	52,913.1	한양2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2)
		B2	송파동 152번지 일원	1,357.4	유치원 (특별계획구역2)
		B3	송파동 151번지 일원	600.0	공공청사 (특별계획구역2)

※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A	A1	•A1 : 면적변경 (37,975.6㎡ → 37,595.6㎡)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획지 변경

5.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6.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7. 건축물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8.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유형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1	송파동 119 일대	46,729.0	증) 2,497.3	49,226.3	서고 제2024-179호 (2024.04.04.)	한양1차 아파트
기정	특별계획구역2	송파동 151 일대	62,370.3	-	62,370.3	서고 제2024-179호 (2024.04.04.)	한양2차 아파트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1	•특별계획구역1 면적 증가 - 46,729.0㎡ → 49,226.3㎡ (증 2,497.3㎡)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에 따른 구역계 변경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특별계획구역1 (한양1차아파트)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위치		•송파구 송파동 119 일원		한양1차
구역면적		•46,729.0㎡	•49,226.3㎡(증 2,497.3㎡)	주택용지
용도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그에 따름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반시설 계획		•공원 및 녹지 - 공원부지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 (공원과 중복결정) 검토 - 근린공원②는 인접한 새싹어린이 공원과 통합(정형화) 조성 검토 (새싹어린이공원으로 단절된 이면 도로의 직결방안 등 가로망 계획 포함)	•공원부지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 계획 •근린공원②와 새싹어린이공원 통합 조성 계획 •공공공지 계획	도면 참조
용도 계획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권장용도	전층	저층부(1~3층)	-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 작업장, 일자리지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 200%이하 ※2005년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 주거(12층)→제3종일반주거)된 주택용지는 공공 기여10% 별도 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을 따르되, 기준 · 허용용적률은 본 기준을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10% 이상) 의무 이행 •상한용적률 : 300%이하	•기준(허용)용적률 : 200%이하 ※2005년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 주거(12층)→제3종일반주거)된 주택용지는 공공 기여10% 별도 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을 따르되, 기준 · 허용용적률은 본 기준을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10% 이상) 의무 이행 ※사업부지 용적률은 당초 제1종일반 주거지역(공원)과 가중평균하여 적용 •상한용적률 : 300%이하	기준/허용 (192.47%) 상한 (228.85%) 법적상한 (299.98%)
	높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에 따름		-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으로 조성		도면 참조
	공공보행 통로	•인접아파트단지, 시설과의 소통 및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8m이상) 조성 •공공보행통로주변 부대복리시설 배치 등 커뮤니티가로 조성 •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형조정은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이내에서 변경 가능		도면 참조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건축 한계선	•가락로, 백제고분로46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그 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도면 참조
	전면공지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으로 조성		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을 준용하여 계획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배치로 다양한 건축물 경관 형성 및 일률적 경관형성 방지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계획 •부대복리시설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도로변)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 도로(통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단지 내 복리시설은 3층이하, 1층부 층고는 4m 이상 -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
	가로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벽면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경관 창출 •저층부(1~3층) 부대복리시설, 근생시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등 배치 •저층부(1~3층) 가로와의 개방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외벽면 투시형 재료 사용		도면 참조
	중저층 배치구간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입체적이고 개방감 있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저층(15층이하)으로 배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도면 참조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타 외관요소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색채 - 외벽면의 색채는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통일성 있는 색채 사용 권장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옹벽 설치시 자연석, 조경석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원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재료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이 우선되도록 조성 •단지내 보행동선 - 학교, 공원 등 보행유발 시설 및 인접단지와 연계되는 곳에 보행자도로로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도면 참조
기타에 관한 사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가능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통해 결정 •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공공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백제고분로46길 하단부에서 근린공원②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동선 확보 검토 •신속통합기획(한양2차아파트)시 제시된 진출입구 및 차로계획(가락로 포함) 등 교통처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특별계획구역2 (한양2차아파트)(변경없음) : 생략

9.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Ⅲ.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공원 및 상가측 건축한계선도 도로측과 동일하게 6m 반영	‣ 공원 및 상가측 건축한계선(3m)을 도로측과 동일하게 6m로 확대 조정하였음.	반영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효용성이 낮은바 삭제하고, 관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층간소음 해소, 친환경 건축물 등 타 항목으로 조정	‣ 효용성이 낮은 공공보행통로(2개소, 폭8m) 계획을 삭제하고 인센티브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를 대신하여 층간소음 및 친환경 관련 항목으로 대체하였음. - 상정(안) : 공공보행통로 8.7%, 돌봄시설 3.6% → 10% 적용 - 조치(안) : 층간소음1등급 5%, 에너지효율1++ 3%, 녹색최우수 3% → 10% 적용	반영
•기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한양2차와 연계되는 통경축(20미터 내외)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상 명시할 것	‣ 한양2차 단지와 연계되는 통경축을 기존 10m에서 20m 내외로 확보하도록 정비계획 상 명시하였음.	반영
•가락로 변 주동 형태는 저층주거지 및 가로변에서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로대응형(신속통합기획 자문 1차 또는 2차 배치계획안) 등 배치계획 재검토	‣ 가락로 변 및 이면부는 저층주거지 및 가로변에서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정비사업 통합심의시 가로대응형 등으로 배치계획에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전까지 기반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 이하 여백 -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146)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88)에 송파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도면]

1.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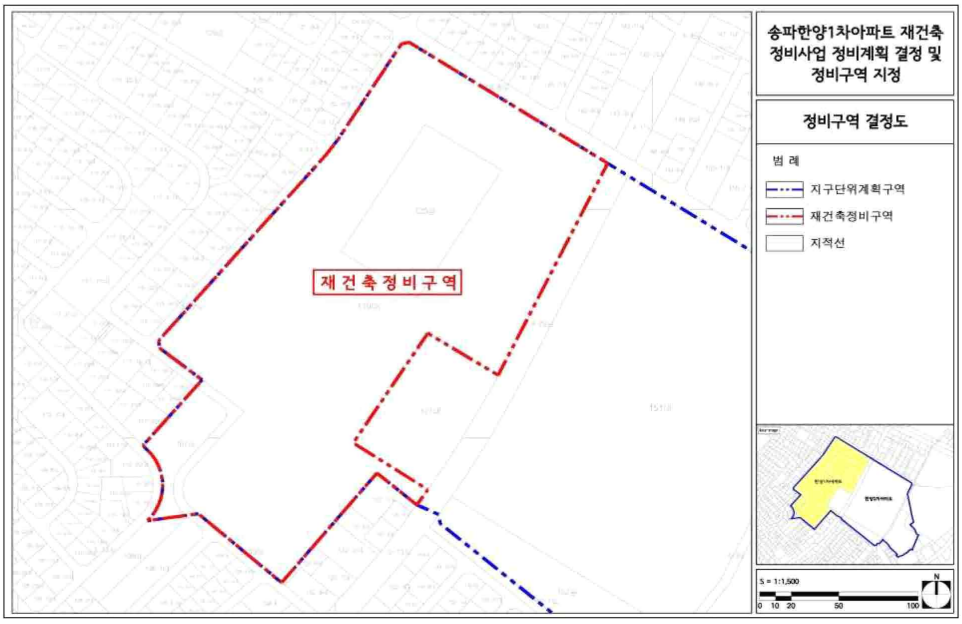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도

3.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5.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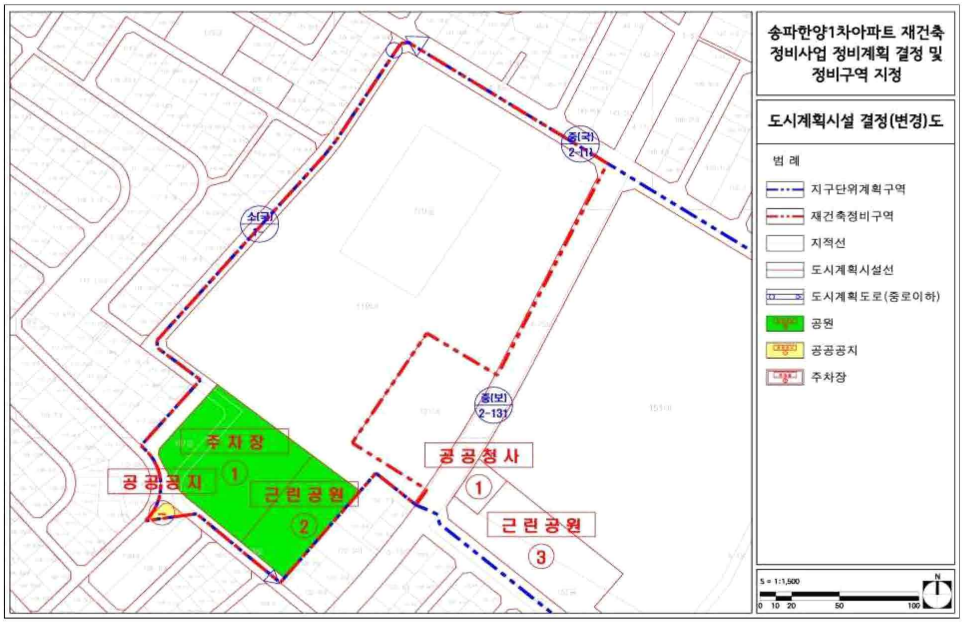

7.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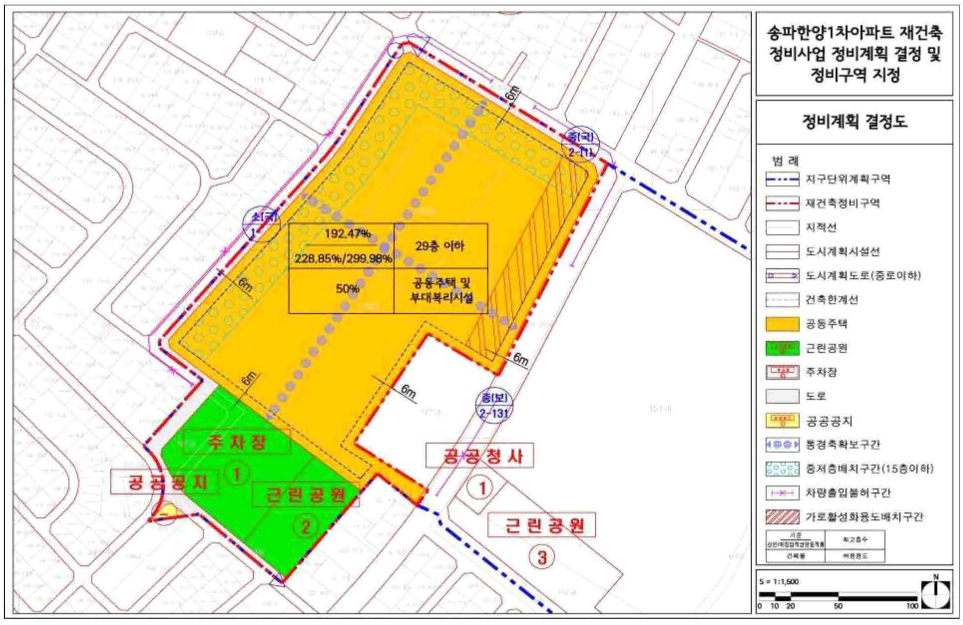

- 이하 여백 -

8.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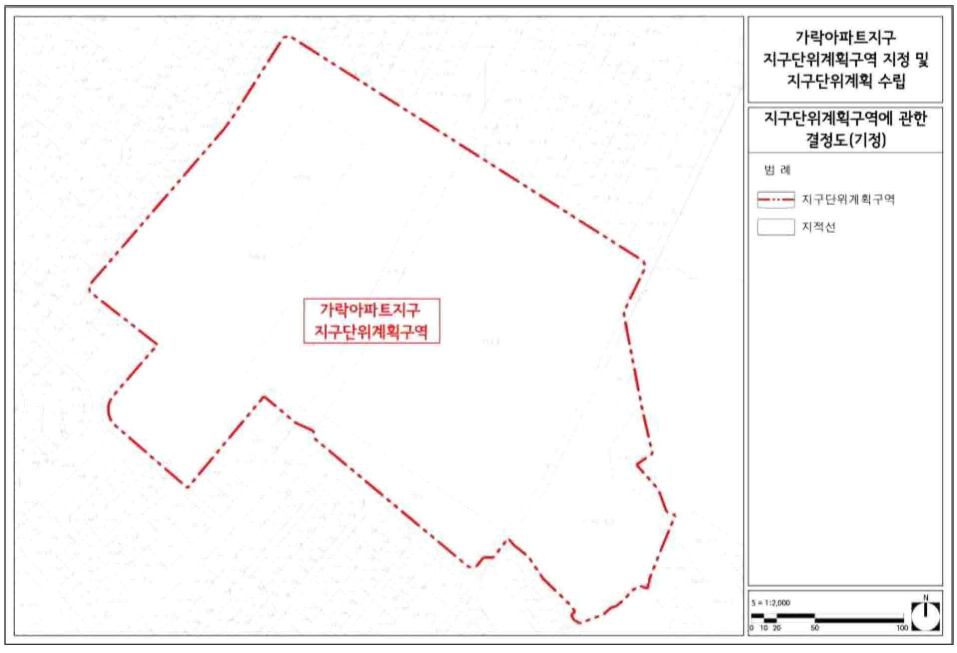

9.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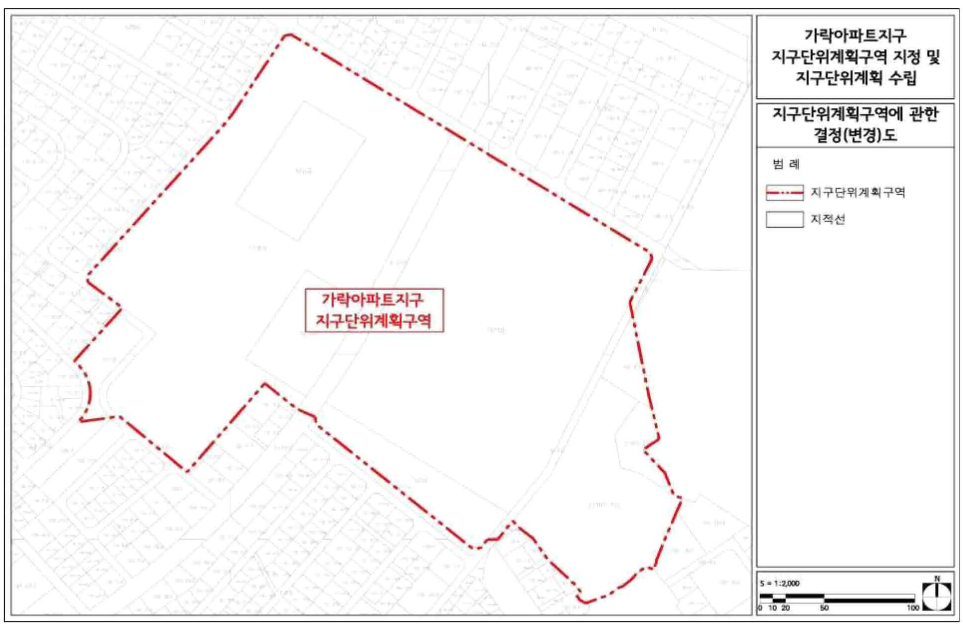

10.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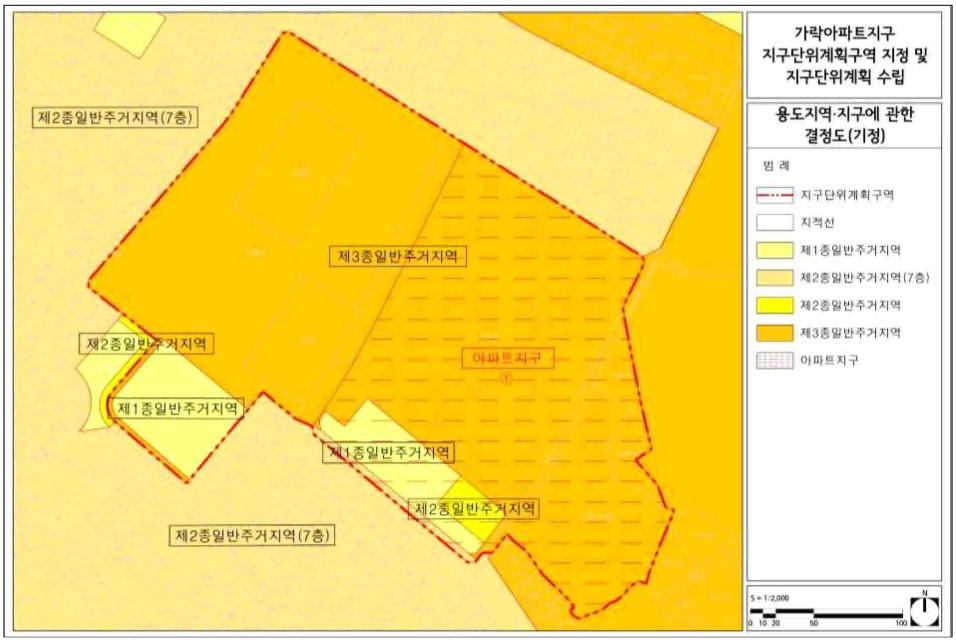

1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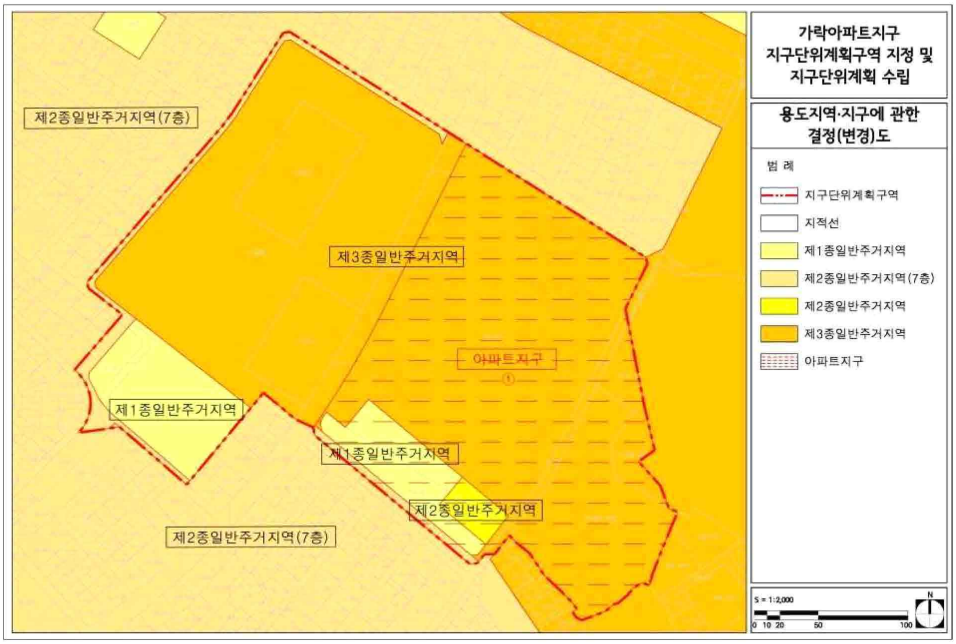

12.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1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1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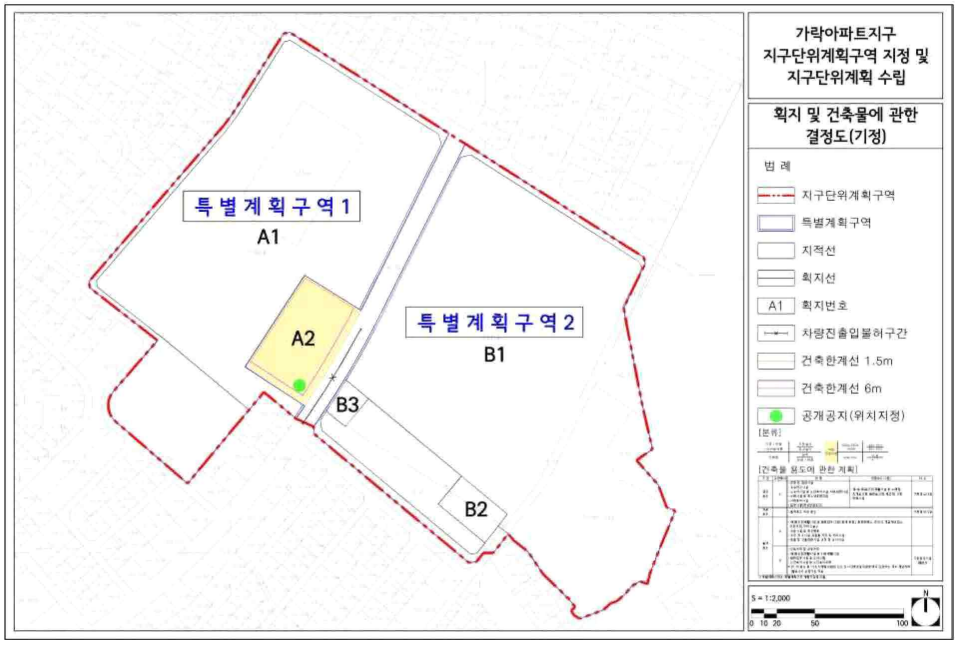

15.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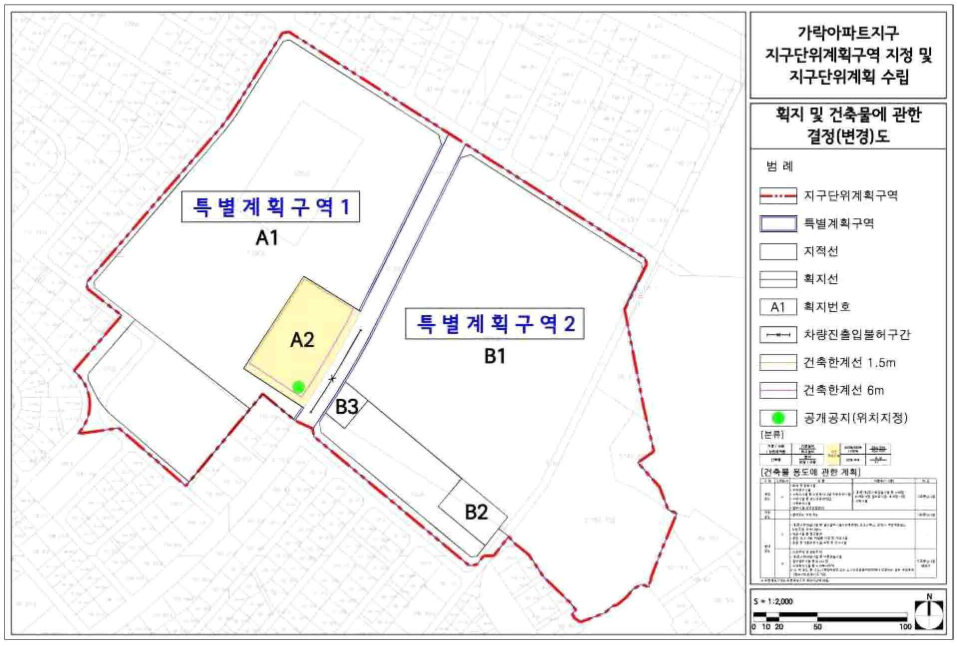

16. 특별계획구역1 계획지침(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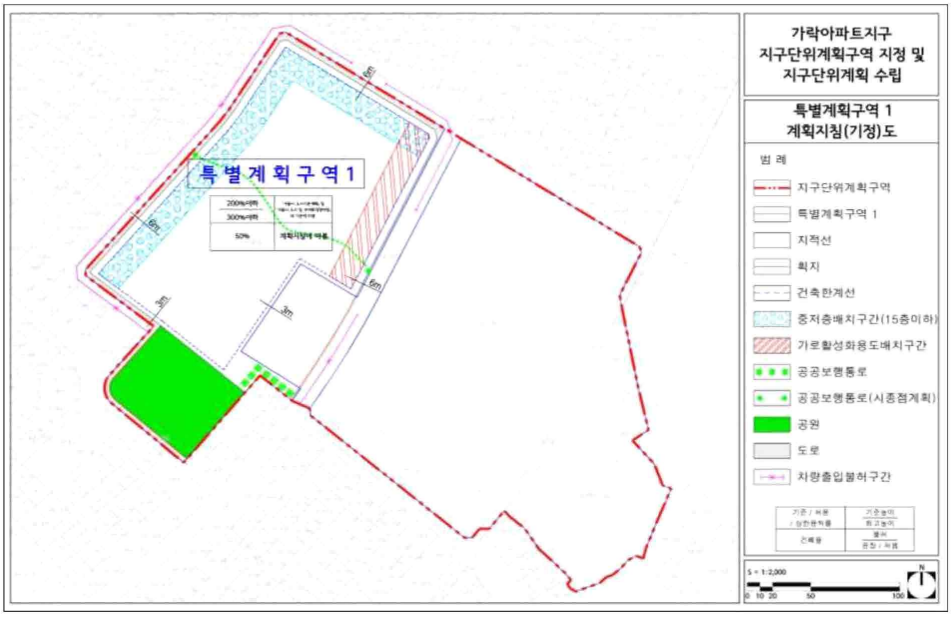

17. 특별계획구역1 계획지침(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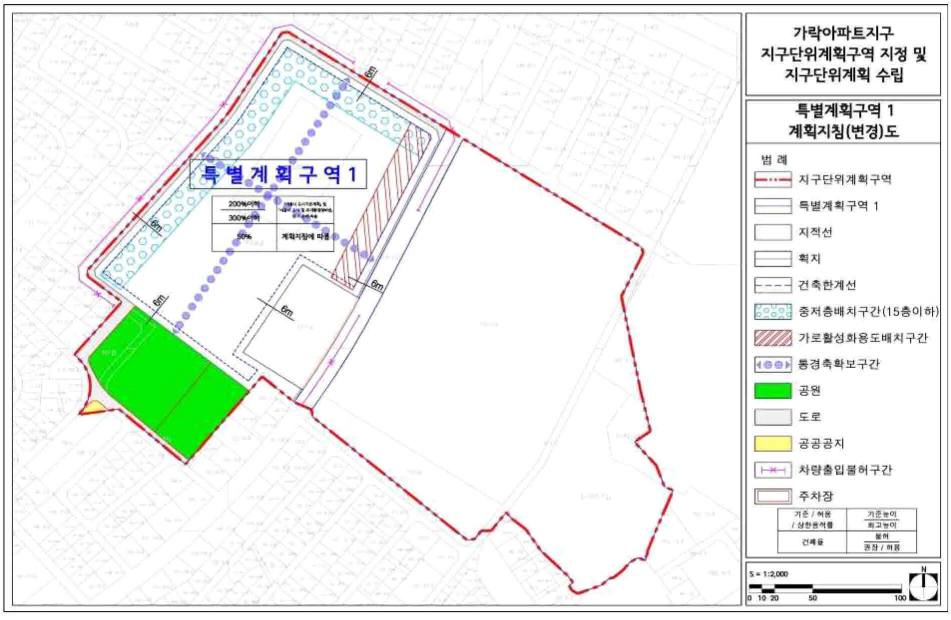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76.12.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1호(2009.6.1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동작구 사당동 200-1번지 일대 총신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대학의 시설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신축계획 등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대학 (총신대학교)	동작구 사당동 200-1일대	42,309	-	42,309	서고시 제354호 (1976.12.30)	

※ 기정 면적 고시근거(42,309㎡) : 서고시 제2003-90호(2003.4.21.)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구역계획(변경)

구 분	구 역	연 번	면 적(㎡)	비 고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24,266	
		②	14,147	
	소 계		38,416	
유 지	외부활동구역	③	3,006	
	소 계		3,006	

보 존	녹지보존구역	④	357	
		⑤	533	
	소 계		890	
합 계			42,309	

※ ⑤녹지보존구역 면적(533㎡) : 비오톱 1등급지(296㎡)가 포함된 면적임.

나. 밀도계획(변경)

○ 밀도계획(기정)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1캠퍼스	22이하	93이하	7층이하	

※ 기정 결정 고시근거 : 서고시 제2009-241호(2009.6.18.)

○ 건폐율 계획(변경)

구 분	밀도산정기준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계획건폐율(%)	관리건폐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42,013	60.0	16.9	19.9	22.0	
합 계	42,013	60.0	16.9	19.9	22.0	

※ 밀도산정기준면적(42,013㎡) : 총면적(42,309㎡) - 비오톱1등급지(296㎡)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밀도산정기준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계획건폐율(%)	관리건폐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42,013	200.0	72.0	89.8	93.0	
합 계	42,013	200.0	72.0	89.8	93.0	

※ 밀도산정기준면적(42,013㎡) : 총면적(42,309㎡) - 비오톱1등급지(296㎡)

○ 구역별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	사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이전용적률 (%)	관리용적률 (%)	비 고
①일반관리구역	24,266	200.0	102.4	133.2	-	137.0	
②일반관리구역	14,147	200.0	38.1	38.1	-	41.0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	사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이전용적률 (%)	관리용적률 (%)	비 고
③외부활동구역	3,006	200.0	-	-	-	5.0	
④녹지보존구역	357	200.0	-	-	-	-	
⑤녹지보존구역	237	200.0	-	-	-	-	
합 계	42,013	200.0	72.0	89.8	-	93.0	

※ ⑤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 기준면적(237㎡) : ⑤녹지보존구역 총면적(533㎡) - 비오톱1등급지(296㎡)

다. 높이계획(변경)

구 분	높 이(m)	비 고
①일반관리구역	• 지표로부터 최대 +35m이하	• 학교 경계부 관리 높이기준 완화 : 기숙사 ※ 지상부 노출연면적 기준 30% 이상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해당 용도면적의 70% 이상을 커뮤니티용도 계획)
②일반관리구역	• 지표로부터 최대 +28m이하	-
③외부활동구역	• 지표로부터 최대 +5m이하	-
④녹지보존구역	-	-
⑤녹지보존구역	-	-

※ 녹지보존구역 : 보존구역으로 높이계획 해당없음

라. 변경 건축물 조서

번호	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지하/지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8	기숙사	-	1,516.98	-	9,994.85	-	8,153.55	-	2/7	금회신축
2	6	여자기숙사	229.68	-	689.04	-	650.76	-	1/3	-	금회철거
3	7	수위실	24.84	-	24.84	-	24.84	-	0/1	-	금회철거
4	10	생활관 및 주차장	1,618.21	-	22,646.90	-	8,940.40	-	4/7	-	신축계획취소
합 계			1,872.73	1,516.98	23,360.78	9,994.85	9,616.00	8,153.55			

※ 생활관 및 주차장 고시근거 : 서고시 제2009-241호(2009.6.18.)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02-2133-8413)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8층 (☏02-820-1935)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시관리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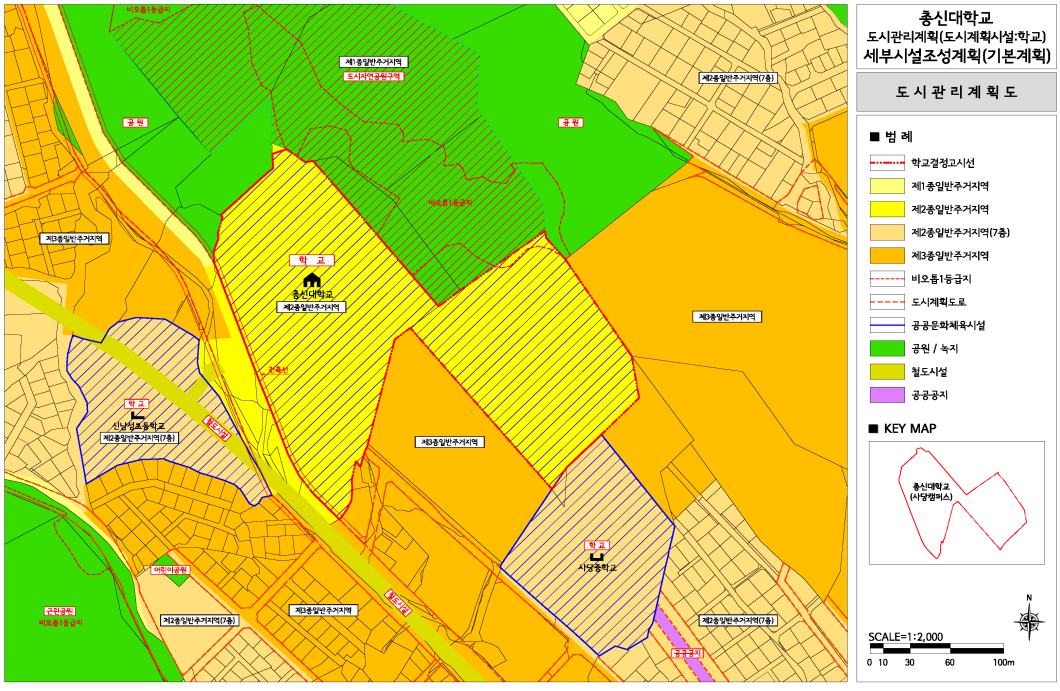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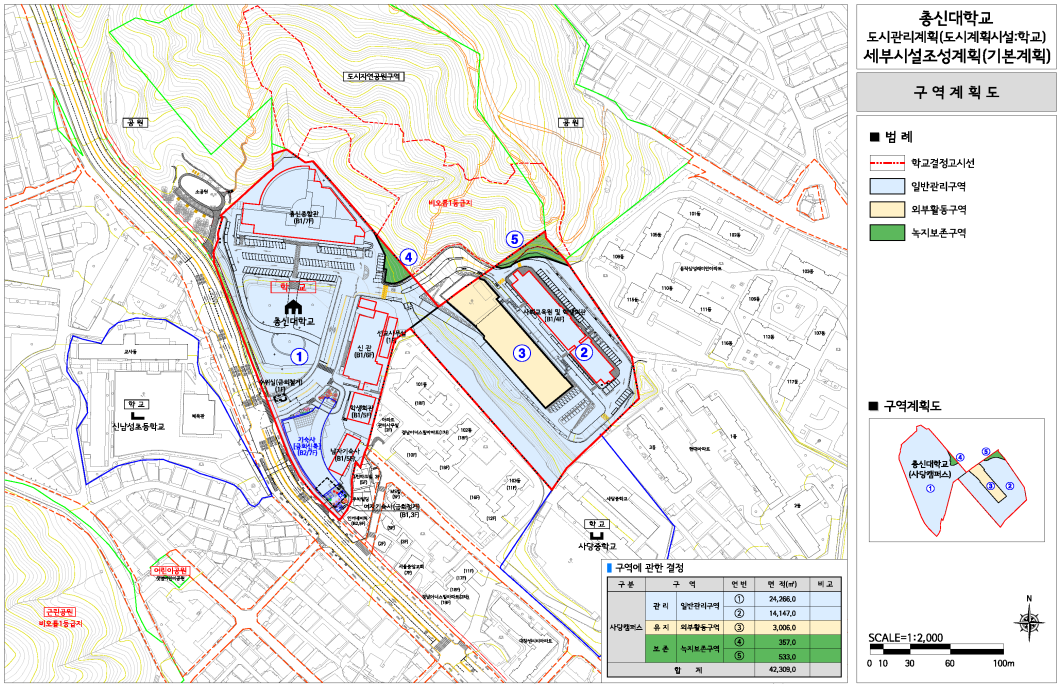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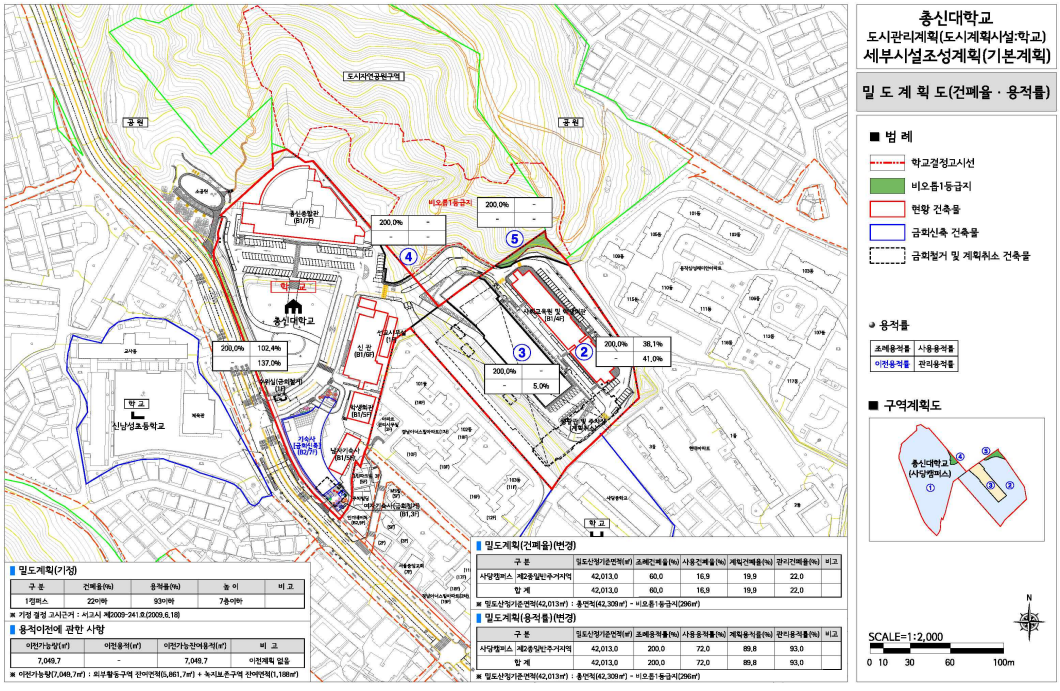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높이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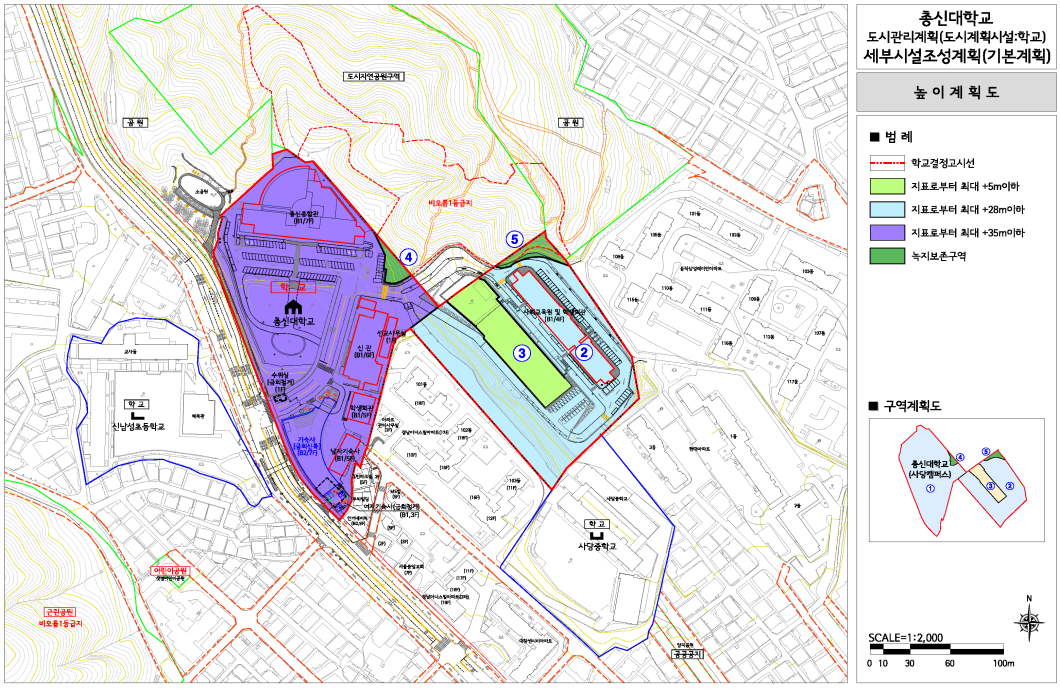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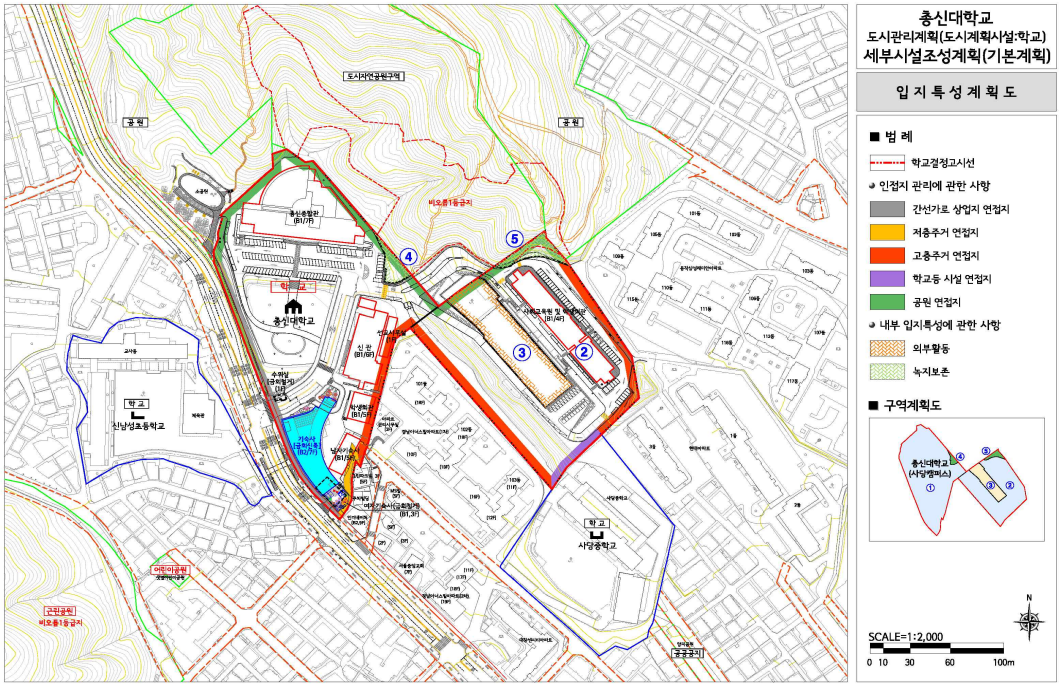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배치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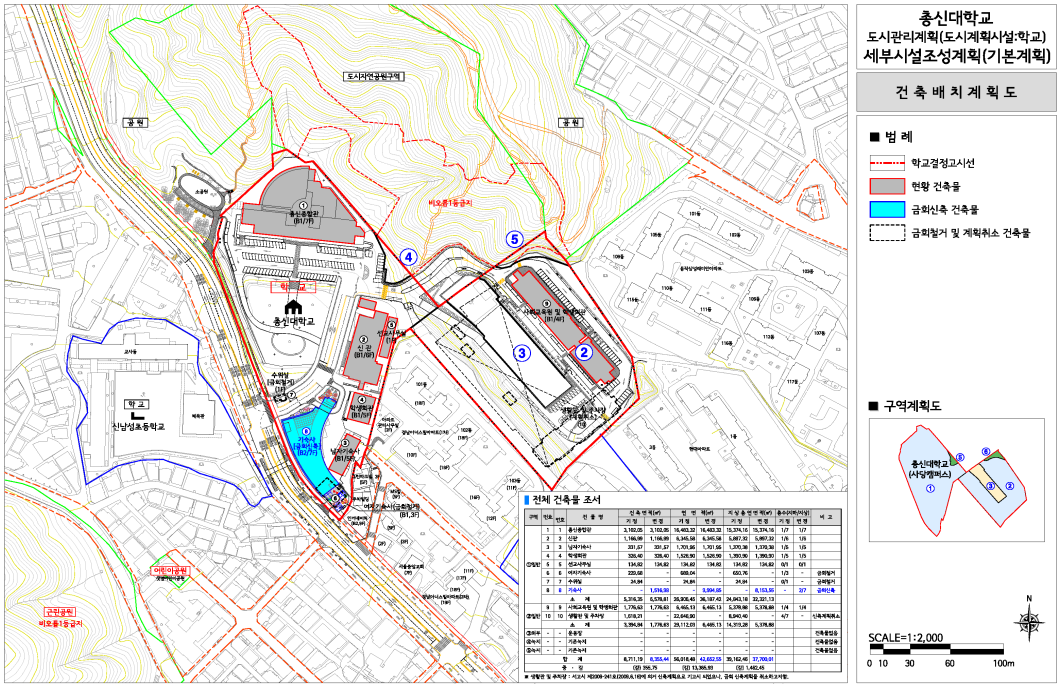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숙사배치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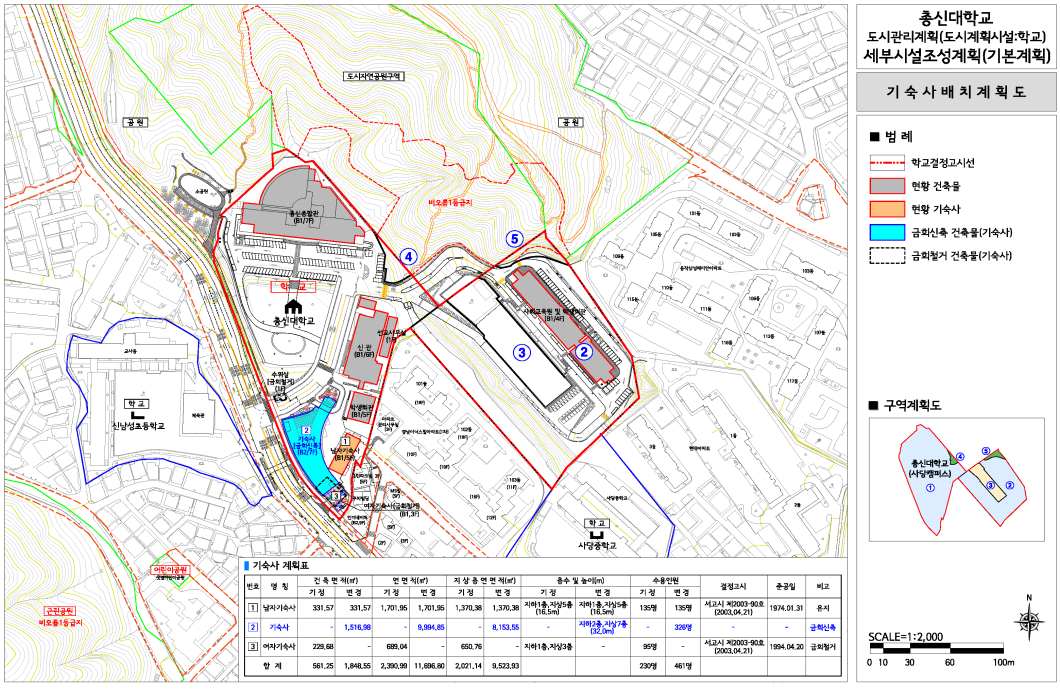

■ 기숙사 계획표

번호	명 칭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및 높이(m)		수용인원		결정고시	준공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남자기숙사	331.57	331.57	1,701.95	1,701.95	1,370.38	1,370.38	지하1층,지상5층 (16.5m)	지하1층,지상5층 (16.5m)	135명	135명	서고시 제2003-90호 (2003.04.21)	1974.01.31	유지
2	기숙사	-	1,516.98	-	9,994.85	-	8,153.55	-	지하2층,지상7층 (32.0m)	-	326명	-	-	금회신축
3	여자기숙사	229.68	-	689.04	-	650.76	-	지하1층,지상3층	-	95명	-	서고시 제2003-90호 (2003.04.21)	1994.04.30	금회철거
	합 계	561.25	1,848.55	2,390.99	11,696.80	2,021.14	9,523.93			230명	461명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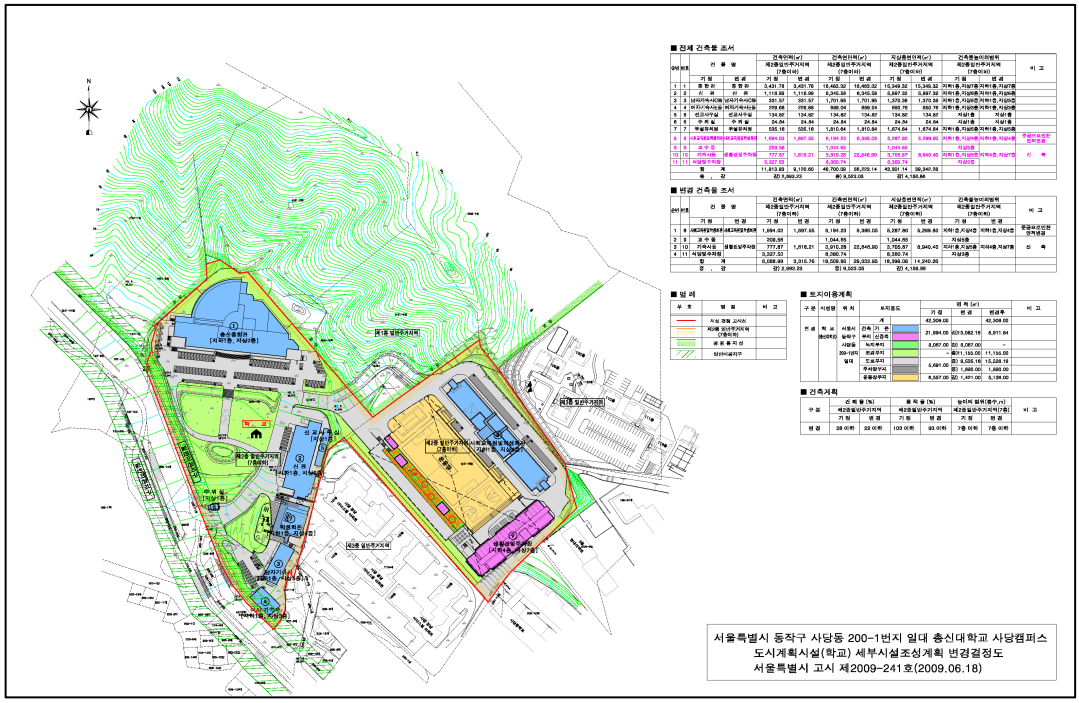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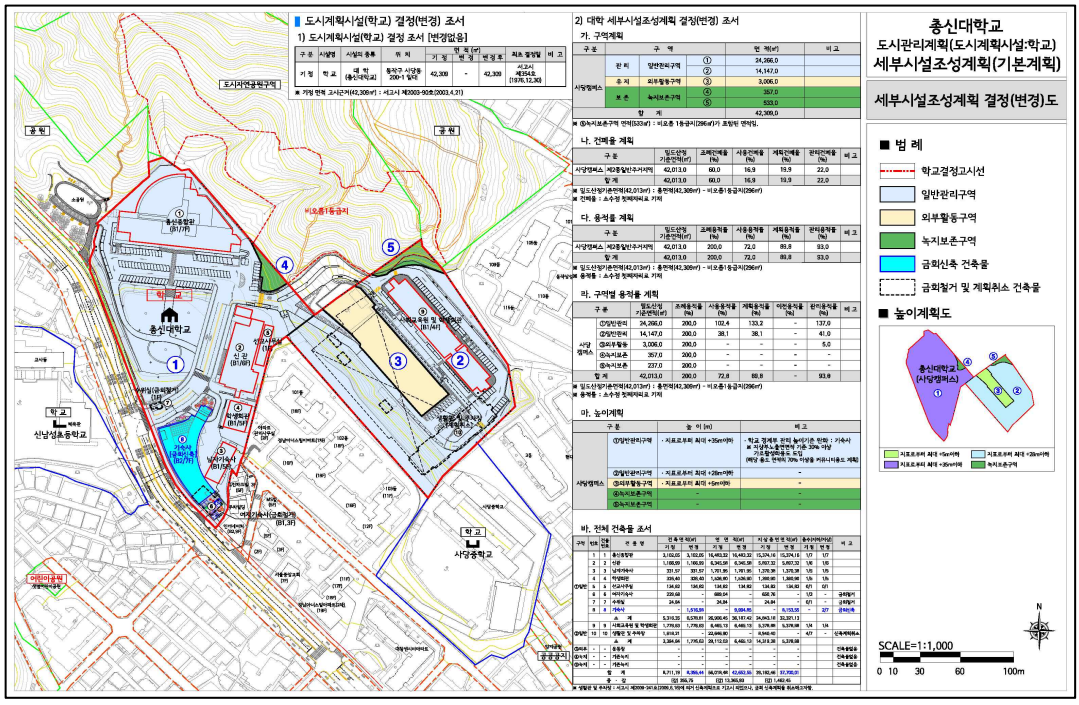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30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1849	㈜제일보안네트 (김*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381, 명진빌딩(면목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06.11.~2026.06.25.)
2	620265	주식회사 제이앤피정보통신 (정*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23길 46, 비01호(수유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06.11.~2026.06.25.)
3	200408	주식회사 지아이네트웍스 (이*복)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9길 59, 제비101호(중곡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06.11.~2026.06.25.)
4	204007	주식회사 이앤오즈 (조*옥)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제16층 제1602호(가산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06.01.~2026.06.15.)
5	203928	주식회사 가시 (강*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1702, 비102호(문래동5가)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06.11.~2026.06.25.)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6	204152	세이지 주식회사 (홍*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4, 3층(역삼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06.11.~2026.06.25.)
7	202745	주식회사 테트라 (신*욱)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8, 423호(성수동1가, 홍성빌딩)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06.11.~2026.06.25.)
8	203988	주식회사 코어코드시스템 (강*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6층 622호~624호(등촌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6.06.11.~2026.07.10.)
9	202363	㈜서린 (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4길 40(중화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6.06.11.~2026.07.10.)
10	201997	주식회사 엠디에스모빌리티 (김*욱)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비동 1703-1호(가산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6.06.11.~2026.07.10.)
11	203132	주식회사 정이엔지 (권*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0(역삼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6.06.11.~2026.07.10.)
12	201813	하하정보통신(주) (송*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39길 14(독산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026.06.11.~2026.09.10.)
13	203511	로봇앤컴 주식회사 (이*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나길 26, 102호(자양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자본금확인서)	영업정지 3개월 (2026.06.11.~2026.09.10.)
14	202605	㈜넥스트코어테크놀로지 (서*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에이610호(문정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026.06.11.~2026.09.10.)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5	202430	주식회사 아이티에스노아 (양*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1810~1815호(가산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026.06.11.~2026.09.10.)
16	202576	㈜오투정보통신 (양*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1길 86, 비01호(구의동)	하도급 규정 위반	영업정지 45일 (2026.06.01.~2026.07.15.)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3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7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7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8조 및 별표 10
3. 대 상

연번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세목	위반내용	부과 금액	위반 일시	반송 사유
1	누리종합전기 주식회사 (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12*2호(논현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 (기술자)	260,500원	2025.07.31.	보관기간 경과 등

4. 공고 기간: 2026. 6. 11. ~ 2026. 6. 25.(15일간)
5. 납부기한: 2026. 6. 30.
6. 유의사항
   -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02-2133-2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36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6.11. ~ 2026.6.25.(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누림종합건설㈜ (박종훈)	건축 공사업 01-5549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7동 316호 (시흥동,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보증가능금액 실효(2025.5.29.)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 (2026.5.18.)까지 보증가능금액 미보완	등록말소	2026.7.3.(금) 11: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법 제83조 제3호의2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40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6.11. ~ 2026.6.25.(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6.11.~2026.7.10.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첩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6.7.10.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과태료		주소		차량번호	발송일자	납부기한	본세금액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06	2026-05-05	160000	2026-04-04 06:34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87우36**	2026-04-06	2026-05-04	160000	2026-04-04 07:17	흥인지문(종로, 진입)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06	2026-05-05	160000	2026-04-05 15:54	백범광장(소월로3길)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08	2026-05-07	160000	2026-04-07 19:06	백범광장(소월로3길)
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08	2026-05-07	160000	2026-04-06 18:59	백범광장(소월로3길)
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13	2026-05-12	160000	2026-04-12 16:34	백범광장(소월로3길)
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13	2026-05-12	160000	2026-04-11 14:30	백범광장(소월로3길)
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원*백	전라남도	진도군	95누98**	2026-04-13	2026-05-10	80000	2026-04-10 20:11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13	2026-05-12	160000	2026-04-09 16:43	백범광장(소월로3길)
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인*내*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01보68**	2026-04-13	2026-05-12	160000	2026-04-09 15:0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87우36**	2026-04-13	2026-05-09	160000	2026-04-09 07:2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16	2026-05-15	160000	2026-04-13 16:36	백범광장(소월로3길)
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16	2026-05-15	160000	2026-04-14 16:45	백범광장(소월로3길)
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하*스	경기도	용인시	89다70**	2026-04-16	2026-05-15	160000	2026-04-15 13:45	경희궁(새문안로)
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박*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2고15**	2026-04-16	2026-05-15	80000	2026-04-15 14:0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16	2026-05-15	160000	2026-04-15 19:16	백범광장(소월로3길)
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식외이*섭(공채면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28버10**	2026-04-20	2026-05-11	160000	2026-04-11 18:37	백범광장(소월로3길)
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20	2026-05-19	160000	2026-04-19 19:04	백범광장(소월로3길)

연번	과태료		주소		차량번호	발송일자	납부기한	본세금액	단속일자	단속장소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20	2026-05-19	160000	2026-04-18 19:23	백범광장(소월로3길)
2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96너57**	2026-04-20	2026-05-19	160000	2026-04-18 14:3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23	2026-05-22	160000	2026-04-20 19:10	백범광장(소월로3길)
2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23	2026-05-22	160000	2026-04-21 19:20	백범광장(소월로3길)
2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23	2026-05-22	160000	2026-04-22 19:04	백범광장(소월로3길)
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86소64**	2026-04-27	2026-05-26	160000	2026-04-23 19:10	백범광장(소월로3길)
2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홍*표(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47러56**	2026-04-27	2026-05-26	160000	2026-04-26 15:07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 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41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6.11. ~ 2026.6.25.
5. 공고내용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6.7.31.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연번	상태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부과	가* 디*씨㈜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4	10주29**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04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6	87우36**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06	흥인지문(종로, 진입)
3	부과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8	86소64**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11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4	부과	김*민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9	91고85**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1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5	부과	김*민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0	91고85**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1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2	87우36**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16	경희궁(새문안로)
7	부과	장*정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5	63두19**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21	청운공원(인왕산로)
8	부과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7	89다70**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2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9	부과	김*민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8	91고85**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27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	부과	임*성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9	68주73**	1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2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1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41	87우36**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30	경희궁(새문안로)
12	부과	김*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19	57수55**	50,000	2026-04-06	2026-05-31	2021-01-2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연번	상태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3	부과	김*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0	57수55**	50,000	2026-04-06	2026-05-31	2021-07-04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4	부과	김*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1	57수55**	50,000	2026-04-06	2026-05-31	2021-07-05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5	부과	(*)하*디*엘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2	경기80거15**	200,000	2026-04-06	2026-05-31	2024-12-0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6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5	87우36**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0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7	부과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27	87우36**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0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8	부과	주*회사 바*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1	86소64**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16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9	부과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3	88어34**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19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0	부과	김*민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4	91고85**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20	백범광장(소월로3길)
21	부과	홍*표(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36	서울47러56**	1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2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2	부과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4	수시분	000140	89다70**	200,000	2026-04-06	2026-05-31	2025-12-29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621~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td><td></td><td>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Email)</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위반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4">(신청인과의 관계)</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td><td>처분근거</td><td colspan="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td></tr>
<tr><td>납부번호
(부과일자)</td><td>(년 월 일)</td><td>과태료 금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일시</td><td></td><td>처분사유</td><td colspan="2">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td><td colspan="5">※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td></tr>
</table>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42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6.11. ~ 2026.6.25.
5.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6.6.30.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자	위반장소
1	독촉고지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1	수시분	000002	89다70**	200,000	2026-01-08	2026-05-31	2025-09-0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	독촉고지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1	수시분	000003	89구39**	200,000	2026-01-08	2026-05-31	2025-09-0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	독촉고지	주*회사 세*타*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6-01	수시분	000009	99저24**	200,000	2026-01-08	2026-05-31	2025-11-08	흥인지문(종로, 진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5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6.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4058626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11, B동 B01호	수도요금	2024년 7월 등 9납기	9회	659,10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11, B동 B01호	김*숙	600212-2****** (폐문부재 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11, B동 B01호		659,100원	2026. 5. 11.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상열(☎ 02-3146-45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60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05월)

연번	등록번호 (처리일자)	구분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224 ('26.05.13.)	합병된 법인	주식회사 케빅 권혁준 (110111-1099103)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층 607호
			주식회사 씨아이케크 김대영 (110111-00744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라목 업무동 11층 동관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씨아이케크 김대영 (11011-00744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라목 업무동 11층 동관
2	200345 ('26.05.22.)	합병된 법인	주식회사 서경엔씨에스 오범근 (110111-14715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8길 6, 2층
			주식회사 라피치 김경회, 이재혁 (110111-334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8길 6, 2층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라피치 김경회, 이재혁 (110111-334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8길 6, 2층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6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26년 05월)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315	'26.05.04.	아이비전 김효성 (1969-09-25) (804-61-008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11층 1108호 (가산동)
2	204316	'26.05.07.	주식회사 플러스인포 박영수 (280-86-0357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3, 1004호 (가산동)
3	204317	'26.05.07.	주식회사 밸류포인트 임진우 (211-87-1744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4길 98 (등촌동)
4	204318	'26.05.08.	주식회사 뷰런테크놀로지 김재광 (110111-725597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1901호 (서초동)
5	204319	'26.05.18.	위템 주식회사 이유승 (134511-0202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비동 1916호 (가산동)
6	204320	'26.05.18.	주식회사 서비스플러스 김다연 (135311-00129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18, 후암빌딩 5층 (창천동)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7	204321	'26.05.21.	주식회사 그린월드 윤명순 (280211-012932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가길 96, 비102호 (도봉동)
8	204322	'26.05.28.	주식회사 가전각색 김윤기 (110111-77113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14길 6, 4층 (도원동)
9	204323	'26.05.28.	주식회사 엠지토탈서비스 반영식 (110111-447738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4, 5층 (화곡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7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혹은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6. 11. ~ 2026. 06. 26.(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0337726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20-14, 501호 (북가좌동)	상하수도 요금	2023.03.31. 외 18 납기	19회	858,240원	등기번호 : 11050-0700-5615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거주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20-14, 501호 (북가좌동)	조**	7903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20-14, 501호(북가좌동)		858,240원	2026.05.21.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한동수 주무관(☎02-3146-35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7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회*퍼*픽*소* 등 295명
4.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7. 1.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6. 11. ~ 2026. 7. 1.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7 13:5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7 13:5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7 13: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	08오31**	주*회*차*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5-06 15:2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	822모53**	사*법*대*기*궁*사*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5-02 17:01	천호대교남단ic~광장사거리	50,000
6	서울80배25**	한*택*업*동*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5-06 11:13	잠실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7	391소81**	주*회*검*컴*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5-07 17: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8	103호66**	주*회*언*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17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9	35라07**	(*)*씨*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30 19: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50,000
10	09누80**	(*)*아*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5-07 08: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50,000
11	134누68**	(*)*즈*이*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5-07 20:0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2	801더88**	주*회*와*알*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06 07: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3	155루11**	스*디*블*블*블*주*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14 20:4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4	804누85**	수*건*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9 13:44	서울글로벌센터	50,000
15	177하73**	주*회*지*이*지*이*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24 17:41	양남사거리~오목교	50,000
16	111주84**	제*스*코*레*션*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5-07 07:4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	823수80**	주*회*한*미*	경기도 평택시	2026-05-04 11:45	한남ic~잠원ic	50,000
1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5-06 17:50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9	서울31바20**	송*용	경기도 의정부시	2026-05-04 09: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	경기73아32**	파*여*(*)	경기도 파주시	2026-05-06 13:25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60,000
21	147나47**	(*)*산*엔*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5-04 18:03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22	179하93**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5-09 12:2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3	95노04**	(*)*호*술*업	인천광역시 서구	2026-05-08 10:5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	경기85사51**	주*회*민*로*스	경기도 의정부시	2026-05-06 17:21	서울교통공사사거리~장한평역교차로	50,000
25	197하10**	주*회*메*스*그*처	경기도 파주시	2026-04-17 19: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6	경기73아32**	파*여*(*)	경기도 파주시	2026-05-04 15:24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60,000
27	149오64**	(*)*앤*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23 10:18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8	62구52**	주*회*윤	경기도 안양시	2026-05-07 16: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9	228루82**	주*회*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6-05-08 18:53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30	63버69**	주*회*엘*스	경기도 수원시	2026-03-04 17:58	양재IC~서초IC	50,000
31	03어29**	주*회*씨*브*지	경기도 시흥시	2026-05-08 18:4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	343도55**	씨*이*에*(*)	경기도 김포시	2026-05-07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33	249노51**	주*회*엠*스*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5-09 17: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4	경기90바91**	주*회*한*름*합*류	경기도 의왕시	2026-05-05 07:14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35	320루98**	A*D*R*O*C*R*S*I*E*E*E*H*A	경기도 평택시	2026-05-08 10:3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	831오15**	주*회*온*정	경기도 화성시	2026-05-08 07: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7	222호67**	주*회*케*엠*넷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29 09: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38	13주71**	주*회*우*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5-07 12:35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39	78도98**	주*회*이*에*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5-07 12: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40	78구37**	주*회*이*에*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5-06 11:4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41	78구37**	주*회*이*에*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5-07 13:2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42	361두46**	(*)*하	경기도 광주시	2026-05-04 13:57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43	166호62**	스*디*홈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4-20 20:1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4	104호71**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5-07 17:5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45	82오82**	주*회*대*이*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5-06 11: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6	395구53**	엠*스*디*주*회*	경기도 고양시	2026-05-08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7	83우24**	제*에*주*회*	경기도 광주시	2026-05-07 13:48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48	12소71**	김*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30 10:0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26	50,000
49	167허57**	(*)*이*러*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30 18: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0	324로99**	기*안*(*)	충청남도 태안군	2026-04-23 10:23	기상청입구교차로~대림삼거리	50,000
51	367버76**	주*회*리*티*컴	충청북도 청주시	2026-05-08 17:2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52	222호96**	주*회*새*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27 20:12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53	230하72**	사*법*한*음*콘*츠*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25 15:2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4	395저43**	주*회*웰*드*대*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6-04-30 09: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대치동)	50,000
5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5-06 1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56	146다33**	주*회*프*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5-06 09:3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7	67거89**	(*)*티*코*레*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5-04 17:4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8	369노67**	(*)*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5-06 07:54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59	831오15**	주*회*온*정	경기도 화성시	2026-05-08 07: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0	150러12**	전*현*모*스*프*주*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5-09 16:1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1	831오15**	주*회*온*정	경기도 화성시	2026-05-08 07: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2	226모73**	에*티*주*회*	경기도 화성시	2026-04-17 17:5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3	226모73**	에*티*주*회*	경기도 화성시	2026-04-17 17: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4	226모73**	에*티*주*회*	경기도 화성시	2026-04-17 17:5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5	30도34**	주*회*조*	경상남도 통영시	2026-05-04 16:3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66	73구84**	주*회*세*기*	경상북도 안동시	2026-05-08 17:4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60,000
67	331고68**	C*L*M*N*A*R*N*E*E*I*H	경상북도 칠곡군	2026-05-09 16: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8	331고68**	C*L*M*N*A*R*N*E*E*I*H	경상북도 칠곡군	2026-05-09 16: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9	331고68**	C*L*M*N*A*R*N*E*E*I*H	경상북도 칠곡군	2026-05-09 16:4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0	59서10**	안*인	경기도 부천시	2026-05-08 20: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1	114누83**	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06 18:17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72	284두62**	김*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04 11: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3	05노61**	박*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5-08 19:1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74	358노31**	방*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5-07 16: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5	185어32**	조*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5-08 20:1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76	서울32사59**	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5-09 18:49	논현역~신사역	50,000
77	03라73**	이*채	경기도 부천시	2026-05-08 17:2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8	경기98바89**	박*신	경기도 부천시	2026-05-04 08:39	백석초등학교앞	60,000
79	84모14**	서*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22 07:30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80	72저98**	신*균	경기도 부천시	2026-05-08 13:13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81	138라63**	이*아	경기도 동두천시	2026-05-04 15: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2	43거09**	김*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30 09:30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83	14거41**	임*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07 10:26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84	109부91**	신*종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08 15:02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85	200누91**	기*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08 18:25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86	서울86자59**	고*예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5-08 17: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7	46조07**	임*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5-04 20: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8	37모50**	박*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5-08 17: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9	69두07**	P*A*C*E*G*U	경기도 수원시	2026-05-04 06:2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90	33가05**	김*신	경기도 수원시	2026-05-08 14: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1	33가05**	김*신	경기도 수원시	2026-05-08 14: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2	281로59**	최*옥	경기도 수원시	2026-05-07 19:39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93	234마40**	윤*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06 19: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4	193하30**	박*복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25 1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5	193하30**	박*복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25 10: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6	52다07**	김*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29 17:0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97	204서52**	전*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08 12: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8	395너79**	김*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5-07 13:1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9	121보85**	Y*N*W*N*O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5-06 0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0	48보37**	김*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5-06 09:2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01	12호16**	김*찬	경기도 성남시	2026-04-16 20: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2	101버54**	신*훈	경기도 성남시	2026-05-07 17:54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03	253더23**	강*예	경기도 성남시	2026-05-06 08:24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104	서울32사84**	신*순	경기도 성남시	2026-05-06 13:38	잠실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105	163루18**	윤*연	경기도 성남시	2026-05-09 10:3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6	126라14**	N*U*E*Q*O*D*O*G	경기도 수원시	2026-05-04 18: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7	111조36**	L*M*R*N*	충청북도 청주시	2026-05-09 15: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8	45마04**	양*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30 16:27	삼성교교차로~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109	109마82**	정*진	경기도 군포시	2026-05-04 15:5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0	702노76**	김*철	경기도 군포시	2026-05-09 05:16	방배동 남태령고개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111	170머66**	홍*아	경기도 구리시	2026-05-08 16:04	성수대교~압구정역	50,000
112	03하90**	장*원	경기도 구리시	2026-04-26 13:2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13	79가72**	이*현	경기도 광주시	2026-05-09 13:5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60,000
114	35부21**	조*희	경기도 광주시	2026-05-08 14: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5	94모85**	유*기	경기도 광주시	2026-05-06 12:2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6	57보88**	변*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26 15:40	말죽거리공원사거리~양재역	50,000
117	111조36**	L*M*R*N*	충청북도 청주시	2026-05-09 15:2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18	111조36**	L*M*R*N*	충청북도 청주시	2026-05-09 15: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9	145두31**	송*이	충청남도 천안시	2026-05-08 18:24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20	243우61**	김*호	충청남도 아산시	2026-05-04 13:5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1	36보13**	L*M*E*I*E*G*N*E*I*H	충청남도 아산시	2026-05-10 19:1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22	97더79**	공*열	충청남도 당진시	2026-05-07 18:49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123	40조55**	김*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5-08 20: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24	서울91자69**	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5-08 18:1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5	295도63**	김*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5-07 10:25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126	51루72**	송*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5-04 19:0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27	159나79**	유*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5-04 20:3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28	171고99**	김*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6-05-06 18:0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29	서울31자78**	심*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6-05-09 13:57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30	21머07**	정*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6-05-04 19: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31	168수32**	김*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5-08 17: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32	93오75**	권*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5-08 07:4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33	서울31아21**	이*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5-04 08: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4	서울31바78**	허*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5-04 14:17	퇴계로2가교차로	50,000
135	16누47**	황*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5-04 13:55	삼성교~잠실운동장교차로	50,000
136	01모74**	김*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5-10 15: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37	서울32사95**	김*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4-29 1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7-1	50,000
138	55보30**	노*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5-08 16: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9	182루59**	원*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5-06 17:51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140	서울80자38**	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4-24 11:18	의원회관앞교차로~국회의사당앞교차로	50,000
141	서울32자44**	이*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5-07 11: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42	20마13**	강*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5-04 07: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3	101호22**	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4-07 12: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4	178가97**	R*N*H*C*U*	경기도 시흥시	2026-05-09 13: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45	02호69**	신*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22 17:40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146	196하96**	Q*A*L*H*A	경기도 안산시	2026-04-28 09: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47	252너11**	박*석	#VALUE!	2026-04-22 18:31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48	236호13**	김*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20 14:28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49	서울32아44**	신*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5-06 07:23	김포공항교차로	50,000
150	26로23**	신*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5-07 18:3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51	09버42**	강*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5-08 09:32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152	08허70**	최*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4-16 14:54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153	60거86**	전*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4-22 19:36	미아사거리	50,000
154	340버53**	J*N*U*F*N*	경기도 시흥시	2026-05-06 08: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5	경기51바50**	박*수	경기도 시흥시	2026-05-07 19:4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56	368로49**	김*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4 18:2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57	95어05**	전*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6-05-04 16:07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158	05다82**	김*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5-04 09: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59	서울38아87**	김*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5-10 15:52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160	231마95**	L*J*N*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6 10: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1	66고87**	김*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7 17: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2	45서86**	김*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8 20:0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63	194다74**	안*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4 17:34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64	02주82**	강*진	경기도 용인시	2026-05-10 17: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65	02주82**	강*진	경기도 용인시	2026-05-10 17:1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6	06두63**	이*섭	경기도 용인시	2026-05-09 20: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67	329주79**	서*경	경기도 용인시	2026-05-07 08:5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68	329주79**	서*경	경기도 용인시	2026-05-04 08: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69	서울91자50**	신*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8 15: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0	서울91자50**	신*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8 15:31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71	33서80**	김*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7 20:55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72	09마73**	김*태	경기도 의정부시	2026-05-08 08:5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73	경기98자43**	김*현	경기도 하남시	2026-05-06 07:19	한신상가앞	60,000
174	02머03**	이*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6-05-04 17:4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75	116호60**	김*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4-15 20: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76	390저42**	오*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8 18: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77	144루68**	이*연	경기도 하남시	2026-05-07 17: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78	882나83**	이*	경기도 파주시	2026-05-04 09: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48	50,000
179	43모69**	이*호	경기도 파주시	2026-05-04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0	03저16**	김*현	경기도 이천시	2026-05-06 08: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1	389거80**	L*W*Y*M*E*D*W*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10 15:5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82	24저66**	E*K*B*Y*R*N*H*U*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5-08 07:5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83	148하94**	조*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4-24 09:4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84	18누05**	P*K*D*A*D*Y*C*E*L*V*V*C*	서울특별시 중구	2026-05-08 10: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5	824어90**	장*수	서울특별시 중구	2026-05-06 11:26	롯데백화점 본점앞	50,000
186	15오82**	김*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4 17: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87	23누32**	김*엽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4 19: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88	서울31아21**	최*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8 17: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9	서울31사35**	박*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5 07:3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90	24버75**	주*경	경기도 하남시	2026-05-06 15: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1	228호26**	손*욱	서울특별시 중구	2026-04-24 08:53	독립문역 사거리~서대문역	50,000
192	33어62**	이*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5-04 1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93	41두52**	김*성	경기도 안양시	2026-05-04 11:5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4	106두30**	김*명	경기도 안양시	2026-05-04 19: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95	45루82**	임*희	경기도 안양시	2026-05-07 09:52	장지교교차로	50,000
196	21오44**	홍*주	경기도 안양시	2026-05-04 12:4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7	223부91**	K*A*O*E*S*D*R*V*C*	경기도 안성시	2026-05-04 00:5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98	168두48**	임*영	경기도 안산시	2026-05-07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99	20호20**	방*석	충청남도 천안시	2026-04-21 18: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200	05보57**	홍*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5-08 11: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01	197하51**	이*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15 09:0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02	170두70**	송*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30 16:48	종합운동장역~잠실새내역	50,000
203	101호22**	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4-24 13: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4	90수83**	윤*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30 18:35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205	125하20**	모*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27 09:06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06	14거66**	조*덕	경상북도 영천시	2026-04-30 07:20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207	101호22**	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4-21 13: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8	33노77**	권*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8 20:5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09	295로59**	C*I*U*Z*E	경기도 양주시	2026-05-04 17: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10	267저68**	J*N*U*S*E*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8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11	서울84자33**	이*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6 17: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12	62거42**	오*현	경기도 용인시	2026-05-08 18: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3	197수90**	김*호	경기도 오산시	2026-05-09 10: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4	197수90**	김*호	경기도 오산시	2026-05-09 11:4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15	58어71**	조*경	경기도 양주시	2026-05-04 08:22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16	25다51**	김*성	경기도 양주시	2026-05-04 19: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17	49소06**	F*A*K*K*C*U*W*	경기도 양주시	2026-05-04 20: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18	24라35**	J*N*A*S*E*G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5-10 16:4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19	26러54**	오*택	경기도 양주시	2026-05-07 18: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20	61조56**	김*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2 14: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50,000
221	서울31바55**	이*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4 20:5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2	23너79**	설*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02 17:0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여의도동)	50,000
223	서울31자27**	홍*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5-06 08:50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3번출구	50,000
224	133소75**	차*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4 08:5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25	381서17**	하*옥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5-04 08:39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50,000
226	81나18**	조*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5-07 07:0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27	서울35바44**	황*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5-09 17:2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28	30다52**	H*V*N*H*N*	대전광역시 서구	2026-05-04 20:4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29	383루17**	안*수	경기도 고양시	2026-05-06 17:1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30	222호13**	T*A*H*A*A*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5-01 02:5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31	45우91**	N*R*E*O*A*I*	전라남도 해남군	2026-05-10 09:0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32	362무19**	류*빈	인천광역시 중구	2026-05-09 17:3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33	180버46**	김*윤	인천광역시 중구	2026-05-08 18:25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34	314구54**	T*L*A*V*A*J*R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6-05-10 08:1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35	30다52**	H*V*N*H*N*	대전광역시 서구	2026-05-04 20:4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6	13부24**	박*경	경기도 고양시	2026-05-07 14:28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37	30다52**	H*V*N*H*N*	대전광역시 서구	2026-05-04 20:4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38	172서67**	황*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6-05-10 10:1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39	109호32**	유*오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6-04-12 15:4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40	175허30**	Y*L*O*H*V*D*H*M*O*I*R*K*I*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19 15:5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41	139보28**	정*옥	경기도 화성시	2026-04-30 09:5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42	서울31사36**	소*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5-07 17: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243	서울31바90**	정*수	경기도 양주시	2026-05-08 09:5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44	서울38아58**	정*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5-02 18:4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50,000
245	42라64**	황*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5-07 17: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46	220하36**	배*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4-24 17:4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47	02호69**	신*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22 08:53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248	133호57**	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5-01 12:0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49	32우32**	박*형	부산광역시 남구	2026-05-08 17:29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50	225보31**	김*철	충청북도 진천군	2026-05-04 12:0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51	348더88**	김*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5-09 13: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2	153고15**	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5-08 17:42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53	286무99**	W*G*E*B*I*N*T*P*E*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5-08 09: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54	30주27**	김*철	경기도 고양시	2026-05-07 19:5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55	경기32바47**	백*기	경기도 광주시	2026-05-06 18:14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256	52라27**	길*성	경기도 광주시	2026-05-07 19:3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57	817구80**	오*훈	경기도 고양시	2026-05-09 13:1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58	101하29**	양*철	경기도 고양시	2026-04-14 17:0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59	97로33**	김*례	경기도 고양시	2026-05-08 10:5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0	97로33**	김*례	경기도 고양시	2026-05-08 10: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1	97로33**	김*례	경기도 고양시	2026-05-08 10:5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62	서울32사90**	곽*훈	경기도 고양시	2026-05-08 15:59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263	268나85**	이*순	경기도 하남시	2026-05-04 17:3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64	서울31아62**	김*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25 09:06	제기동역~신설동역	50,000
265	47수02**	Z*U*A*Q*A*G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5-07 12:27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66	237부85**	P*A*J*N*H*N*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5-05 14: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7	27마22**	이*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5-08 08:1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268	272우77**	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5-06 11:2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여의도동)	50,000
269	234로34**	M*K*U*A*K*L*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5-05 14:43	오현로(번동 혜모로아파트~번동 동문아파트)	50,000
270	251마24**	유*희	인천광역시 동구	2026-05-04 06:2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71	서울32사46**	최*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5-04 09:0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72	61모60**	조*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5-04 16: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3	113누52**	최*현	경기도 화성시	2026-05-08 18:3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74	295마57**	홍*혁	경기도 화성시	2026-05-08 16:4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75	295마57**	홍*혁	경기도 화성시	2026-05-08 16: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6	서울82배12**	김*곤	경기도 하남시	2026-05-06 15: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7	363라19**	김*안	경기도 하남시	2026-05-07 12: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8	141부77**	김*이	전라남도 여수시	2026-04-18 08:5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50,000
279	09너35**	김*기	경상북도 봉화군	2026-05-04 20:18	서울역~숙대입구역	50,000
280	59거13**	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5-10 20:0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81	59거13**	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5-10 20: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2	83누01**	황*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5-08 18:05	방배동 남태령고개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83	228호23**	김*훈	경기도 부천시	2026-04-17 09:29	하계역교차로~중계근린공원교차로	50,000
284	175허30**	Y*L*O*H*V*D*H*M*O*I*R*K*I*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19 15: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85	209소98**	O*S*N*Y*	인천광역시 서구	2026-05-08 17: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6	131버62**	K*M*E*E*C*J*N*A*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5-02 13:50	수정아파트앞교차로	50,000
287	서울32사47**	김*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5-06 08:50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3번출구	50,000
288	81러19**	이*숙	경상북도 경주시	2026-05-05 17:4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89	270버53**	I*R*M*O*O*N*Z*M*O*N*S*R*O*U*L*	경상북도 경산시	2026-05-08 08: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0	803노29**	이*오	경기도 화성시	2026-05-08 09:34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291	65두58**	P*S*O*F*D*B*Y*N*A*S*N	인천광역시 서구	2026-05-06 18: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2	25로02**	장*일	인천광역시 서구	2026-05-07 20: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293	106호64**	정*헌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4-23 18:23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94	133호67**	지*무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4-18 13: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95	014가94**	최*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5-08 10:22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6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번**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8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이*지 등 1,283명
4.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30.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무인수납기 (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 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검색창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팩스(02-2133-4904)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사이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단속조회 (http://cartax.seoul.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 02-2133-4570~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006다63**	이*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4-03 08:5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60,000
2	007나76**	원*크*인*식*사	경기도 성남시	2026-02-06 08:26	상계동 상계백병원	60,000
6	01가86**	U*E*B*K*V*A*R*T*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13 14: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	01가86**	U*E*B*K*V*A*R*T*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13 14:3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	01가86**	U*E*B*K*V*A*R*T*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13 14: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	01가86**	U*E*B*K*V*A*R*T*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14 18:5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	01누08**	호*개*주*회*	경기도 평택시	2026-03-05 19:2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8	01도74**	최*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02 17: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	01두07**	이*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19 17:59	구산역~연신내역	50,000
10	01마82**	이*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3 09:4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1	01머23**	김*훈	경기도 가평군	2026-03-09 17: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2	01머68**	D*S*N*R*A*	경기도 수원시	2026-02-16 21: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3	01머68**	D*S*N*R*A*	경기도 수원시	2026-02-16 22:2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	01보01**	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7 16:56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15	01소71**	T*S*P*L*T*V*U*H*I*D*N	충청남도 논산시	2026-03-10 20: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6	01호97**	임*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07 11:37	잠원연합상가앞	50,000
17	02다82**	Z*E*G*A*R*	전라남도 곡성군	2026-03-20 0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	02더85**	조*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12 09:3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9	02무50**	유*용	경기도 동두천시	2026-03-26 17:5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0	02버74**	(*)*라*머*넷	경기도 부천시	2026-02-12 09: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	02서85**	J*H*S*N*A*E*I*A*C*T*N*E*	경기도 평택시	2026-02-27 19: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2	02서85**	J*H*S*N*A*E*I*A*C*T*N*E*	경기도 평택시	2026-02-27 19: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	03구62**	주*회*미*클	경기도 양주시	2026-03-15 19:11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50,000
24	03노21**	주*회*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11 18: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	03소90**	(*)*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4 19:5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5	03소90**	(*)*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3 15: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	03수43**	서*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02 11: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	03오50**	김*만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18 16:10	아차산역~아차산역사거리	50,000
29	03하95**	(*)*보*	경기도 화성시	2026-02-10 11:1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0	04구52**	W*N*H*N*U*	경기도 안성시	2026-02-16 21: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1	04서28**	박*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4-04 08:5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2	04소74**	한*중*기*발*협*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13 15:5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3	04오22**	권*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9 15: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	04조11**	오*희	충청북도 청주시	2026-02-24 11:2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5	05나05**	주*회*대*유*판*	경기도 광주시	2026-02-26 14:4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6	05나32**	지*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6-03-03 18: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7	05나81**	최*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08 13: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8	50,000
38	05노04**	김*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5 14: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9	05로62**	(*)*라*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15 10:5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0	05부80**	김*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20 19: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1	05부84**	주*회*조*앤*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9 18: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3	05우58**	윤*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6 0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2	05우58**	윤*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4 09: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4	05허16**	박*해	경기도 성남시	2026-02-16 11:0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5	05호34**	김*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1 07: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6	06가79**	김*국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06 16:53	강남소방서앞	50,000
48	06다28**	(*)*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2 07:51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	50,000
47	06다28**	(*)*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3 08: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0	06버51**	B*A*K*A*,*S*A*I*E*O*T*	경기도 평택시	2026-03-11 09:2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9	06버51**	B*A*K*A*,*S*A*I*E*O*T*	경기도 평택시	2026-03-11 09: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1	06버51**	B*A*K*A*,*S*A*I*E*O*T*	경기도 평택시	2026-03-11 15:1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2	06보57**	김*연	경기도 평택시	2026-02-23 11:41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53	06서32**	이*헌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3 12: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4	06조01**	강*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05 08:05	하계역~중계역	50,000
55	06조02**	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4 07:36	대치역~도곡역	50,000
56	07거08**	강*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3 18:4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57	07거09**	J*N*U*N*M*N*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13 20: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8	07거61**	김*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3 18:5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59	07거78**	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5 12:50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60	07버03**	주*회*인*니*비*얼*뮤*케*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4 08:55	성내교	50,000
61	07버03**	주*회*인*니*비*얼*뮤*케*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2 08:54	성내교	50,000
62	07부31**	S*H*I*H*	경기도 평택시	2026-03-16 19: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3	07부40**	유*나	경기도 용인시	2026-03-10 18:0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64	07부66**	김*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07 09:2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65	07서79**	김*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2 17:17	영등포유통상가교차로~양남사거리	50,000
66	08고73**	전*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06 07:58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67	08누67**	이*주	경기도 이천시	2026-02-04 18:3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69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02-05 19: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68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02-26 18: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0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03-09 18: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1	08로18**	이*주	경기도 이천시	2026-01-31 09:21	양재ic~서초ic	50,000
72	08마11**	김*국	경기도 용인시	2026-02-05 16: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52	50,000
73	08머79**	장*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4-01 08:33	오목교~양남사거리	50,000
75	08부47**	주*회*케*티*인*내*날	경기도 김포시	2026-03-01 18:2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4	08부47**	주*회*케*티*인*내*날	경기도 김포시	2026-03-01 18: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6	08수25**	비*주*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6-01-27 08: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7	09너93**	박*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19 15:47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	50,000
79	09라52**	주*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06 17:2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8	09라52**	주*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06 1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1	09머31**	김*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5 17:50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80	09머31**	김*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6 17:50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82	09머73**	김*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4 08: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3	09버42**	강*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2-23 09:1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84	09버49**	우*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1 10: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5	09버82**	최*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12 18: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86	09수46**	엄*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4 17:03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88	09오17**	N*M*T*V*A*H*I*D*N*A*H*A*I*L*U*L*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6-03-15 11:4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7	09오17**	N*M*T*V*A*H*I*D*N*A*H*A*I*L*U*L*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6-03-15 11:4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89	100머88**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7 20:3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0	100주90**	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03-26 13:23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91	101오30**	주*회*세*푸*	경기도 시흥시	2026-02-25 16: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2	101하18**	김*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25 20:0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3	101하63**	이*용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6-01-30 13:2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94	101하90**	허*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04 08: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5	101하93**	이*혜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9 20: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6	101허42**	최*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3 19:4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8	101호75**	김*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1-21 17: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97	101호75**	김*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2-19 14: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100	103도80**	주*회*일*건*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9 18:5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9	103도80**	주*회*일*건*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5 19: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1	103마57**	허*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1 19:1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2	103소82**	조*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3-10 09:4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3	103호30**	전*옥	대구광역시 북구	2026-02-07 15:3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04	104호47**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5-12-30 18:4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05	104호52**	곽*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1 14: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50,000
106	105구14**	이*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11 07:46	월계1교교차로~하계5-6단지교차로	50,000
107	105하68**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6-01-16 17:1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08	106가65**	김*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0 15: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9	106거72**	정*진	경기도 안산시	2026-03-29 13:16	서울 영등포구 63로 7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50,000
110	106구79**	이*웅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27 18:21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111	107도71**	김*환	경기도 고양시	2026-04-02 21:3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2	107소24**	박*윤	인천광역시 중구	2026-02-03 19:0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13	107소24**	박*윤	인천광역시 중구	2026-02-03 19:0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4	107소24**	박*윤	인천광역시 중구	2026-02-12 10:3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15	107소24**	박*윤	인천광역시 중구	2026-02-12 10: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6	108다73**	주*회*알*건*	경기도 고양시	2026-03-06 07: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7	108라76**	(*)*투*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3-06 17:4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8	108어46**	주*회*굿*코*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1-28 15:4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20	109더88**	이*지	경기도 고양시	2026-02-25 11:0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19	109더88**	이*지	경기도 고양시	2026-02-25 11: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2	109허77**	주*회*한*렌*카	경기도 고양시	2026-02-26 10:0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1	109허77**	주*회*한*렌*카	경기도 고양시	2026-02-26 10:1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3	10나10**	김*경	경기도 파주시	2026-03-13 22:3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24	10도03**	W*N*Z*R*I	경기도 안산시	2026-03-13 1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25	10러45**	최*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5 14:23	미아사거리	50,000
126	110어80**	손*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3 14: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27	111루26**	김*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26 15: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8	111모16**	유*길	경기도 하남시	2026-03-06 17: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29	111보21**	서*경	경기도 안산시	2026-03-28 10: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0	113더74**	이*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09: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1	113조19**	박*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3 19:1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32	114너85**	안*진	경기도 용인시	2026-02-25 18: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33	114버95**	최*영	경상남도 거제시	2026-03-24 11:4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34	114부11**	주*회*디*스*양*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12 17:1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35	115더40**	주*회*대*약*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04 17: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6	115허98**	주*회*알*렌*카	충청북도 괴산군	2026-02-12 19: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7	116나71**	김*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3 19: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8	116루42**	심*융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30 10:3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0	116허72**	주*회*저*트*트*	충청남도 공주시	2026-02-25 19:2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39	116허72**	주*회*저*트*트*	충청남도 공주시	2026-02-25 19: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1	116호20**	P*R*T*I*R*D*	충청북도 음성군	2026-01-07 14: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2	11거26**	고*석	전라남도 장흥군	2026-02-15 07: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43	11누15**	신*룡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6-03-01 09:10	사천교~연희ic	50,000
144	11라95**	이*아	대구광역시 북구	2026-03-30 09: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5	11로54**	공*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31 14: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6	11서62**	이*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6 07:5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48	11수11**	김*경	경기도 성남시	2026-03-13 16:1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7	11수11**	김*경	경기도 성남시	2026-03-13 16:1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49	11어75**	H*L*E*J*S*N*O*	경기도 평택시	2026-02-11 11:5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1	11어92**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0 13: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0	11어92**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4 16: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청담동,신영빌딩)	50,000
152	11오71**	김*탁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6 18: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3	11오71**	김*탁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3 18: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4	11우47**	전*명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1 17: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55	122허11**	(*)*엠*스*리*(*광*)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06 19: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6	122호94**	양*석	경기도 안산시	2026-01-20 13: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57	124하21**	김*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1-30 09: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8	125하23**	오*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0 08:27	삼성교교차로~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159	125하48**	장*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6-02-19 17: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60	125호73**	(*)*신*트*여*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0 07:1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61	125호95**	장*대	경기도 양주시	2026-02-23 07: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2	126다10**	김*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12 08:5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63	126버71**	이*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5 20:3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64	126호53**	(*)*은*	울산광역시 남구	2026-02-18 21:1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65	126호53**	(*)*은*	울산광역시 남구	2026-02-18 21: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66	128서18**	이*형	경기도 파주시	2026-03-13 18:0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67	129누27**	유*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7 17:4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68	129러37**	주*회*창*종*건*	경기도 화성시	2026-03-20 12: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9	12노92**	김*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3-13 16: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70	12누96**	김*영	경기도 성남시	2026-02-03 0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1	12러51**	이*영	경기도 과천시	2026-02-13 07:1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2	12무39**	대*화*켐*식*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20 08:23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173	12소47**	(*)*이*스*컨*팅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10 19:00	봉천고개~은천삼거리	50,000
174	12어80**	장*석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05 08:18	마들역교차로~ 온수골사거리	50,000
175	12저54**	김*옥	경기도 하남시	2026-03-03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6	130오15**	양*근	경상북도 울진군	2026-02-14 16:50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177	130하47**	권*숙	대구광역시 동구	2026-02-04 13:0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78	130호38**	조*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6 08:43	어린이병원~ 청계산입구삼거리	50,000
179	131구88**	심*순	경기도 포천시	2026-02-09 17:5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80	133거74**	주*회*힐*디*티	경기도 광주시	2026-02-14 21:0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81	133거74**	주*회*힐*디*티	경기도 광주시	2026-02-14 21: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82	133도57**	오*민	경기도 김포시	2026-02-20 10:16	강남소방서앞	50,000
183	133하53**	김*철	경기도 성남시	2026-02-12 13:0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4	133하70**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1-26 17: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5	133호54**	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0 14: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50,000
186	133호56**	안*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03 14: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7	133호57**	전*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26 18: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88	133호63**	임*명	경기도 안산시	2026-02-24 20: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89	133호63**	임*명	경기도 안산시	2026-02-24 20: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90	134두23**	알*세*니*레*딩*식*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06 09:1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91	134루11**	한*엽	경기도 평택시	2026-03-11 17:4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92	134모72**	지*주	경기도 하남시	2026-03-13 12:31	망우역교차로~신내지하차도교차로	50,000
194	134호71**	하*수	대전광역시 서구	2026-03-05 16: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93	134호71**	하*수	대전광역시 서구	2026-03-05 16: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5	135버78**	박*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31 19:0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96	135저69**	고*준	경기도 성남시	2026-03-04 0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7	137거73**	이*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3-27 12: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98	138너20**	백*숙	경기도 하남시	2026-02-27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9	138누51**	김*지	경기도 성남시	2026-03-25 08:52	복정역~장지역	50,000
200	138마17**	원*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02-03 17:0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01	138머73**	안*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1-28 08:47	헌릉로(내곡IC~염곡IC)	50,000
202	138부36**	김*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09 18:5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03	13고69**	정*란	경기도 광주시	2026-03-31 18:5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04	13구74**	우*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05 18:0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05	13나55**	M*O*E*J*N*I*L*A*	경기도 평택시	2026-03-31 13:3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06	13너37**	이*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6-02-03 09: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7	13두94**	중*손*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3 08:22	사당역~이수역	50,000
208	13무69**	김*열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03 17:5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9	13주10**	김*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16: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10	140서84**	이*수	경기도 수원시	2026-03-13 17:3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1	141노85**	그*픽*(*)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1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2	141버76**	윤*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17 08:41	봉천고개~은천삼거리	50,000
213	141부59**	장*훈	충청북도 청주시	2026-02-03 19: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4	141부59**	장*훈	충청북도 청주시	2026-02-03 19:1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15	142도71**	박*구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11 17:0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16	142호36**	이*수	충청북도 충주시	2026-02-11 16:3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17	142호36**	이*수	충청북도 충주시	2026-02-12 09:0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8	142호52**	정*	경기도 고양시	2026-03-16 0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9	142호75**	(*)*명	전라남도 여수시	2026-01-30 18:0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20	142호79**	윤*숙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03 14: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1	143가65**	민*식	경기도 양주시	2026-03-24 17:1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22	143거32**	장*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06 20: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3	143마17**	남*미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2 17:4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24	144머74**	강*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3 17:3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26	145거74**	S*B*R*V*E*U*M*K*U*U*L*	경기도 성남시	2026-02-15 23:0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5	145거74**	S*B*R*V*E*U*M*K*U*U*L*	경기도 성남시	2026-02-15 23: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27	145고61**	김*수	경기도 평택시	2026-03-16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8	145다99**	제*박*컴*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3 14: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9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02 12:5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1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02 12: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0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28 10: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2	146버46**	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2026-03-30 18:1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33	146하50**	권*근	경기도 용인시	2026-02-18 23:4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4	148더25**	전*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25 17:4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7	148러70**	J*V*I*O*B*K*O*I*B*K*T*Y*R*G*I	충청북도 증평군	2026-02-15 07: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36	148러70**	J*V*I*O*B*K*O*I*B*K*T*Y*R*G*I	충청북도 증평군	2026-02-15 07: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8	148러70**	J*V*I*O*B*K*O*I*B*K*T*Y*R*G*I	충청북도 증평군	2026-02-15 07: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5	148러70**	J*V*I*O*B*K*O*I*B*K*T*Y*R*G*I	충청북도 증평군	2026-02-15 14:1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39	148머97**	김*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06 18:28	경문고교교차로~이수역사거리	50,000
240	149다98**	주*회*영*엔*	경기도 구리시	2026-03-04 10: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1	14가07**	(*)*스*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07 11:4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42	14너38**	박*자	경기도 안산시	2026-02-08 16:4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43	14너48**	김*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6 19: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44	14노68**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4 11: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46	14노68**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4 11: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45	14노68**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4 11:0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47	14도68**	(*)*인*엉*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1 17: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8	14두15**	임*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7 10:24	잠원로 204주변	50,000
249	14부69**	이*욱	서울특별시 중구	2026-02-07 16:01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50,000
250	152버93**	주*회*신*	경상남도 창원시	2026-02-09 0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1	152오15**	민*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4 19: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2	152호42**	주*회*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1-29 18: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3	152호76**	(*)*진*력	경기도 평택시	2026-01-30 09: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4	153더24**	김*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09:2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5	153호75**	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5 14: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56	154라46**	R*D*I*U*Z*A*L*N*Y*L*Y	경기도 평택시	2026-02-17 14:1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57	154라46**	R*D*I*U*Z*A*L*N*Y*L*Y	경기도 평택시	2026-02-17 14:1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9	154하95**	엄*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6-02-07 15: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8	154하95**	엄*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6-02-20 20:3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0	154하95**	엄*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6-02-20 20:3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1	154하99**	김*아	경기도 화성시	2026-02-22 15:3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63	154하99**	김*아	경기도 화성시	2026-02-22 15: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4	154하99**	김*아	경기도 화성시	2026-03-01 14:5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65	154하99**	김*아	경기도 화성시	2026-03-01 14:5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62	154하99**	김*아	경기도 화성시	2026-03-01 14: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6	155어81**	오*진	부산광역시 북구	2026-02-27 18: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7	155하83**	(*)*에*씨*레*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06 18: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68	156너37**	유*환	경기도 수원시	2026-03-05 15:0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69	156더32**	임*표	경기도 김포시	2026-02-04 22: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70	156허20**	박*민	광주광역시 동구	2026-02-07 16:0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71	156허30**	김*민	충청남도 금산군	2026-03-06 13: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72	156허34**	오*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25 08:35	강남소방서앞	50,000
273	156허38**	한*필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04 08:4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74	156호86**	김*준	경기도 용인시	2026-02-19 00:1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76	157누59**	장*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4 17:3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75	157누59**	장*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4 17: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7	157오22**	안*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6 17:2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78	158거61**	이*섭	경상북도 영주시	2026-03-16 17:1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79	158도65**	문*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26 08:42	성내교	50,000
280	159도32**	최*길	경기도 안양시	2026-02-26 20:2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81	159마41**	정*녕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01 15:3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2	15가81**	김*기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9 17:5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83	15모36**	P*A*C*A*G*H*	경기도 안산시	2026-03-06 11:23	여의대로2길(여의도역 방향)	50,000
284	15소91**	김*세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30 08:49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286	15허07**	신*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1-30 19:4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5	15허07**	신*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0 19: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7	160다59**	김*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1 20:2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88	160허83**	곽*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2 13:5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89	160호33**	주*회*마*스*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04 09:4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90	160호33**	주*회*마*스*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5 16: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91	161하12**	한*성	경기도 안양시	2026-02-06 0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2	161허99**	주*회*을*리*퍼*	경기도 연천군	2026-02-27 08:19	숙명여고앞	50,000
293	162두64**	허*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3 20:0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94	162라55**	안*모	경기도 성남시	2026-03-04 13:2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95	163모89**	진*흥	경상남도 창원시	2026-02-11 18:2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96	163보29**	주*회*우*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1-29 19: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7	163호26**	손*수	대구광역시 북구	2026-03-09 0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8	165누84**	김*미	대전광역시 동구	2026-02-18 00: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99	165부19**	이*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02 17:1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00	165우95**	주*회*글*벌*트*랫*G*P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11 19: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01	165하51**	이*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1-30 20:1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02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5 21: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03	166보54**	주*회*앤*디*인*튜*오	경기도 성남시	2026-01-21 08:58	학여울역~대치역	50,000
304	166호50**	차*레	광주광역시 남구	2026-02-13 20: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05	167버71**	박*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23 19:46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306	167버94**	이*미	경상남도 양산시	2026-03-10 18:4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07	167허55**	공*옥	경기도 용인시	2026-02-26 13:58	강남소방서 앞	50,000
309	167호46**	주*회*레*비*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1-28 18:0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08	167호46**	주*회*레*비*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1-28 19: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10	168도97**	주*회*갈*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6-02-25 19:2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1	169하29**	(*)*웃*브*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26 17:0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0,000
313	169호30**	김*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14 21:4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12	169호30**	김*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14 21: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14	16가49**	(*)*올*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6 17: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15	16다39**	최*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4 12: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6	16마85**	(*)*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8 16:4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17	16부07**	정*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09 08:40	육사야구장~삼육에코팜센터	50,000
318	16오27**	정*준	경기도 화성시	2026-03-10 18:0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19	170가91**	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2026-02-16 21: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20	170어16**	정*미	경기도 용인시	2026-04-03 18:0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21	170주11**	김*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30 08: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22	171도81**	P*R*E*D*N*I*J*R*M*	경기도 평택시	2026-02-27 18:5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23	171하36**	최*호	충청북도 음성군	2026-03-03 08:05	매봉역~양재역	50,000
324	171호52**	김*수	경기도 고양시	2026-03-16 17: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25	171호97**	(*)*은*지*틱*	경기도 고양시	2026-02-16 12:5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26	172가59**	고*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18 23:01	사당역~남태령	50,000
327	172허82**	이*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3 09:3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8	172호97**	임*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05 20: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9	173가75**	김*열	경상북도 경주시	2026-03-14 16:1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0	173노20**	신*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2-12 07:59	노량진역~대방역	50,000
332	173누68**	최*순	경기도 화성시	2026-02-08 08: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31	173누68**	최*순	경기도 화성시	2026-02-10 14: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3	173어89**	안*준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23 18:4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4	174거82**	정*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3 17:5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5	174머50**	임*미	충청북도 음성군	2026-02-03 19:2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36	175로28**	고*석	경기도 고양시	2026-03-23 07: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37	175수96**	(*)*직*초*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10 20:2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38	175허86**	주*회*유*은*랜*이*연*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21 15:24	국제금융로8길	50,000
339	175호26**	(*)*라*어*리*	경기도 광주시	2026-02-25 08: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1	176고80**	성*자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4 22:5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40	176고80**	성*자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4 22: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42	176구56**	H*L*D*S*I*Y*E*A*	경기도 평택시	2026-03-16 08:5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3	176하90**	(*)*치*다*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1-22 17: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44	177하80**	(*)*이*리*우*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4 13:2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45	177허15**	박*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1-12 13: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46	177허65**	케*에*테*주*회*(*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1-26 15: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7	177허95**	이*현	경기도 평택시	2026-03-26 09:1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48	178루34**	김*현	경기도 안산시	2026-02-05 17:5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49	178루83**	주*회*지*테*	광주광역시 서구	2026-02-13 08:20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51	178루83**	주*회*지*테*	광주광역시 서구	2026-03-03 08:07	고촌IC~개화교	50,000
350	178루83**	주*회*지*테*	광주광역시 서구	2026-03-05 08:05	고촌IC ~ 개화교	50,000
352	178버22**	박*빈	경기도 수원시	2026-02-16 21: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53	179보87**	최*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6-02-24 12:58	신사역~논현역	50,000
354	179주81**	한*미	경기도 김포시	2026-03-25 17: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55	179허69**	이*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1-28 17:0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56	179허99**	김*정	경기도 안양시	2026-02-04 09:0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57	179허99**	김*정	경기도 안양시	2026-02-04 09:0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58	179허99**	김*정	경기도 안양시	2026-02-04 09:0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59	179호29**	김*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2-06 06: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60	179호71**	유*경	경기도 오산시	2026-01-27 09: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61	179호71**	유*경	경기도 오산시	2026-01-27 09:5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63	17가81**	(*)*엔*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09 18: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62	17가81**	(*)*엔*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4 20: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64	17누70**	김*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2-11 08: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65	17두18**	박*환	경기도 의왕시	2026-03-13 09:3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66	180구79**	미*산*건*주*회*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7 11: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67	180다41**	이*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7 09:15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68	180로92**	정*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3 08:02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	50,000
370	181허71**	박*훈	경기도 수원시	2026-01-27 15:4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9	181허71**	박*훈	경기도 수원시	2026-01-27 15: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72	181호36**	이*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2-25 11: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1	181호36**	이*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12 09: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3	181호66**	주*회*에*스*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26 18: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74	181호97**	박*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6-03-14 13:4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75	182도57**	전*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26 13:1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76	182라14**	이*새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27 11: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7	182보93**	O*O*B*I*U*U*A*Y*E*	경기도 고양시	2026-03-02 22: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78	183부92**	고*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27 08: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80	183오30**	김*근	전라남도 장성군	2026-02-21 11:5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79	183오30**	김*근	전라남도 장성군	2026-02-21 11: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81	183허22**	오*열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26 17: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82	186나21**	K*A*R*L*A*E*S*A*H*U*H	경기도 이천시	2026-02-16 00: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83	187보37**	고*일	경기도 성남시	2026-03-09 17:0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84	188도80**	이*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5 10:35	양남사거리~영등포유통상가교차로	50,000
385	188호30**	장*형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14 18: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87	188호30**	장*형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25 10:5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86	188호30**	장*형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25 10: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88	189거94**	정*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0 17:0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89	189호28**	주*회*지*인*리*(*정*)	경기도 고양시	2026-02-02 11:5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91	18거22**	J*H*T*W*L*I*M*	경기도 평택시	2026-03-22 18: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90	18거22**	J*H*T*W*L*I*M*	경기도 평택시	2026-03-22 18: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92	18누08**	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4 13:1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93	18러17**	이*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8 17: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94	18로22**	신*희	경기도 용인시	2026-02-26 08:02	매봉역~양재전화국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95	18버21**	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18 10: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96	18오81**	N*U*E*T*I*O*G*I*H	경기도 김포시	2026-02-10 00:55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98	18우66**	J*B*E*A*M*H*M*E*A*I*H*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08 13: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97	18우66**	J*B*E*A*M*H*M*E*A*I*H*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08 13:2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99	190구55**	주*회*코*인*스*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12 07:3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00	190머41**	김*상	경기도 구리시	2026-02-24 11: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02	191보20**	Q*A*Y*N*F*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4 14:0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03	191보20**	Q*A*Y*N*F*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6 20: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01	191보20**	Q*A*Y*N*F*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6 20: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04	191허14**	(*)*리*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3 19: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05	191허60**	종*핫*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4 09: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07	191호21**	류*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7 15: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06	191호21**	류*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7 15:0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08	191호97**	법*법*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4 17: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09	192루92**	정*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6-04-01 08: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10	192허56**	주*회*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1-27 0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11	192호57**	조*래	경기도 화성시	2026-02-13 03: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412	193하49**	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5 09:1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13	193허43**	(*)*자*샘*	대전광역시 서구	2026-02-02 09: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14	193호26**	김*미	경기도 화성시	2026-02-02 09: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15	193호97**	주*회*마*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6-01-21 18: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6	194너54**	곽*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0 09:4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17	194머98**	변*형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05 14:12	풍납사거리~강동구청역	50,000
419	194허47**	전*진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11 16:1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18	194허47**	전*진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11 16:2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20	195다83**	주*회*엠*에*이*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05 20: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21	195하15**	염*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1-22 19:33	영등포역교차로~문래동사거리	50,000
422	195호33**	주*회*라*코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13 10: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23	195호37**	주*회*탑*트*	경기도 수원시	2026-02-16 00: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24	195호41**	분*네*브*브*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1-31 15: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25	196하85**	김*민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13 14:3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26	197고39**	김*주	경기도 평택시	2026-03-02 14: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7	197고39**	김*주	경기도 평택시	2026-03-02 14:0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28	197하13**	이*영	경기도 수원시	2026-02-18 23: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29	197하81**	윤*용	경기도 광주시	2026-02-20 1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30	197호43**	주*회*이*테*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3 15: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31	198우37**	나*욱	경기도 파주시	2026-02-27 09:02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432	199부36**	효*건*주*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3-03 09:0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17	50,000
434	199서84**	주*회*미*어*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13 18: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35	199서84**	주*회*미*어*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13 18:4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33	199서84**	주*회*미*어*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13 18:4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36	199소91**	이*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03 17: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38	199하54**	정*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11 18: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37	199하54**	정*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9 17:5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39	199하70**	현*석	경기도 고양시	2026-01-27 15:5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59 (잠실동)	50,000
440	199하75**	최*준	경기도 화성시	2026-02-18 23:5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41	19너16**	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3 07: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43	19누37**	K*M*L*T*E*O*A*A*A*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10 09: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42	19누37**	K*M*L*T*E*O*A*A*A*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10 09:0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44	19누37**	K*M*L*T*E*O*A*A*A*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10 09: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45	19더45**	이*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8 1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46	19마11**	심*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23 20: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48	19마11**	심*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24 19: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47	19마11**	심*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30 1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49	19버14**	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4 14:3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450	19어01**	윤*길	충청남도 공주시	2026-02-12 13: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51	200더75**	윤*민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1 12:0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52	201부92**	김*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4-03 14:37	중앙시장앞	50,000
453	201소51**	조*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2 17:1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54	203고89**	정*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9 17: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55	204두56**	석*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2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56	204조68**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7 08:05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457	205하69**	주*회*다*	경기도 화성시	2026-02-03 18:5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58	205하74**	정*헌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0 07:31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459	206호18**	상*권*라*임*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1-26 09:4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60	207너28**	이*헌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10 19:0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61	207조53**	이*형	경기도 수원시	2026-04-04 12: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62	209부43**	주*회*파*스*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6-02-05 15:1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63	209저20**	이*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4 09:37	태릉~서울여대	50,000
464	20더20**	김*수	전라남도 구례군	2026-03-09 12: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65	20도34**	김*형	경기도 하남시	2026-02-09 12:51	강남소방서앞	50,000
466	20러86**	양*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10 11: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67	20서26**	박*열	경기도 광주시	2026-03-24 07:45	삼성교교차로~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468	20수55**	H*S*Y*O*R*U*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3-04 17: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69	20하37**	나*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21 09: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70	211수32**	염*영	경기도 과천시	2026-03-13 13: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71	213서52**	김*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06 19: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72	214모57**	최*례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2 17:5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473	215보85**	(*)*텐*홀*스	서울특별시 중구	2026-02-11 08:5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74	216가10**	S*E*M*N*H*I	경기도 광주시	2026-03-10 17:1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75	217무30**	장*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01 10:46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76	219오55**	정*숙	대구광역시 북구	2026-02-11 11:20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77	219주99**	용*무*주*회*	경기도 화성시	2026-02-08 17: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78	21너29**	허*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3-10 19:3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79	21누56**	이*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14 17: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80	21누65**	주*회*하*디*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2-05 18: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81	21도07**	박*철	경기도 안산시	2026-03-18 11:45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82	220하16**	박*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05 17: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83	220하35**	주*회*전*오*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5 10:57	반포역~논현역	50,000
484	220하53**	김*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8 13: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85	220하85**	오*규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03 09:5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486	222무62**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11 08: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87	222하16**	주*회*하*드*스*	경기도 김포시	2026-02-20 15:0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88	222하31**	김*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12 17: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89	222하46**	주*회*스*이*원*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2 19:10	강서구청입구교차로~등촌역	50,000
491	222허95**	박*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2-26 17:0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90	222허95**	박*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2-26 17: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92	223가99**	조*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3-02 10:4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93	223거50**	김*상	경기도 구리시	2026-03-18 09:2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94	223하34**	주*회*5*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5 20: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96	223하91**	(*)*이*이*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02-24 08: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95	223하91**	(*)*이*이*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03-18 09: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97	223하93**	주*회*잔*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1-26 17:11	중앙시장앞	50,000
498	223허43**	주*회*영*사*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05 1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99	223호72**	브*오*주*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6 13:50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501	224고55**	주*회*허*바*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2 14:23	국제금융로7길, 수정상가앞	50,000
500	224고55**	주*회*허*바*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2 14: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여의도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02	224로53**	이*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5 08:47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503	224오13**	황*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30 20:3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504	224하56**	무*무*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1-29 09: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05	224호16**	정*권	경기도 의정부시	2026-01-26 20:1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07	224호37**	김*진	경기도 광주시	2026-01-23 15:1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06	224호37**	김*진	경기도 광주시	2026-01-23 15: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08	224호84**	황*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6 0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09	224호91**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09 19: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510	225하78**	주*회*카*인*4	경기도 구리시	2026-01-13 20: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11	225호41**	하*준	경기도 화성시	2026-02-10 12:4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12	226모55**	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24 20:0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513	226하69**	차*연	경기도 양주시	2026-02-27 13:08	신논현역~논현역	50,000
514	226하95**	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23 08:46	녹번역~홍은사거리	50,000
515	226호21**	정*원	경기도 파주시	2026-03-17 14:1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16	227모97**	주*회*피*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2-26 09:53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517	227저84**	엠*이*듀*식*사	경기도 성남시	2026-02-27 13:01	천호대교북단	50,000
518	227주11**	로*컴*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04 19: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19	229라71**	김*	경기도 부천시	2026-03-19 18: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20	229로83**	농*회*법*명*주*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6-02-06 08: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21	229저68**	주*회*디*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5 17:3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522	229하52**	연*농*주*회*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3 07:2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23	22거62**	전*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6 19: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24	22나35**	(*)*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10:4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25	22노23**	오*원	경기도 광명시	2026-03-25 15: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26	22누70**	전*균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27 08:13	도곡역교차로~매봉터널교차로	50,000
527	22더42**	이*선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04 18: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28	22도01**	주*회*디*인*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18: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29	22무37**	고*진	경기도 고양시	2026-03-27 18: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30	22부43**	(*)*드*스*프*드*레*	경기도 수원시	2026-02-05 17:2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31	22저21**	정*미	경상남도 김해시	2026-03-24 09:2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32	22주38**	염*휘	경기도 시흥시	2026-03-10 17:0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533	230도56**	김*욱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16 07:2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35	230러35**	안*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01 18: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34	230러35**	안*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03 17: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36	230로83**	김*석	경기도 성남시	2026-04-02 19:07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537	230로83**	이*곤	경기도 부천시	2026-03-18 10:3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538	230무94**	김*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6-03-10 14:4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39	230허63**	(*)*산*베*트	경기도 성남시	2026-02-09 18: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40	230허63**	(*)*산*베*트	경기도 성남시	2026-02-25 17: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41	230허56**	김*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4 17:1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542	231러29**	양*운	경기도 평택시	2026-02-12 12: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43	231오46**	김*민	경기도 안산시	2026-04-01 09: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44	231호69**	이*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3 18:1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45	233하25**	이*연	대전광역시 중구	2026-02-11 13:3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46	233호87**	이*동	경기도 수원시	2026-02-15 22:1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47	234라70**	남*식	경기도 고양시	2026-03-28 15:0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548	235부34**	조*철	경기도 오산시	2026-02-21 19:2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49	235부34**	조*철	경기도 오산시	2026-02-21 19: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50	235주58**	조*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02 10:49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551	236나77**	김*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4 11: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52	236더49**	최*화	전라남도 광양시	2026-04-01 18: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53	237더72**	정*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3 16:17	창천동삼거리	50,000
554	237마89**	박*임	경기도 광주시	2026-04-04 18: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55	237버87**	박*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3 15:2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56	237수39**	A*H*A*U	경기도 안산시	2026-02-16 14:4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557	238버14**	강*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27 08:4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50,000
558	238버69**	오*정	경기도 파주시	2026-03-16 18:50	신사역~논현역	50,000
559	239저54**	홍*민	경기도 안산시	2026-03-26 18:5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60	240루26**	유*현	경기도 파주시	2026-03-27 09:5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61	241보19**	서*선	경기도 용인시	2026-04-01 09:0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562	242누98**	김*찬	경상남도 함안군	2026-02-08 23:4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563	242더15**	D*P*E*V*N*E*T*D*A*D	경기도 평택시	2026-03-30 15: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64	243조20**	김*용	전라남도 해남군	2026-02-24 17:5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565	247러60**	구*환	경기도 용인시	2026-03-04 0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66	247부99**	박*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5 11: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67	248마91**	표*진	경기도 군포시	2026-02-15 21: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68	249버95**	이*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1-30 10:27	우이교~수유역	50,000
569	249소81**	L*T*I*I*H*G*C	경상북도 경산시	2026-02-23 09:34	담터1교차로~태릉	50,000
570	249주60**	주*회*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9 19:3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71	24나94**	Z*U*O*G*A*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02 19: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572	24너71**	오*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2 18:5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73	24더96**	D*A*L*A*D*U*A*E*I*U*A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16 22:5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74	24두90**	신*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3-07 16: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575	24라66**	백*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2 18:0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576	24우68**	김*리	광주광역시 동구	2026-03-12 11: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77	24호24**	김*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03 20: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78	250거39**	김*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6 0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79	250오78**	김*재	경기도 파주시	2026-03-03 20: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80	251수56**	김*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3 07: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81	251수56**	김*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0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82	252우93**	최*우	경기도 안양시	2026-03-17 1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83	253머56**	한*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1 13:0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584	254누76**	홍*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06 19: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85	256소48**	L*U*H*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04 14:4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86	256우12**	주*회*라*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04 09: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587	257누57**	(*)*치*	광주광역시 동구	2026-01-23 21:2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588	257러60**	장*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07 15: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89	258서65**	한*법	경기도 고양시	2026-02-12 08: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590	259루38**	이*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05 16:3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591	25고48**	박*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3 08:3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592	25더39**	C*O*U*K*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2-03 19:28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593	25루56**	유*회*호*플*스*딩*	경기도 이천시	2026-02-11 12: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94	25버54**	김*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09 17:4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95	25소05**	박*우	경상북도 경주시	2026-03-06 20: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96	25수60**	박*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6 18: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97	25주31**	이*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4 19:0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598	262우28**	Z*E*G*I*N*L*N	경기도 안산시	2026-02-16 00:4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99	263두23**	배*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6-02-10 10:3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00	263어41**	박*주	경기도 고양시	2026-03-20 18: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01	263저60**	김*아	경기도 파주시	2026-02-23 10: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02	264다89**	장*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03-14 14:0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03	264다89**	장*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03-14 14:0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04	268서66**	지*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05 10:0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05	269마24**	이*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4 19: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06	269우61**	지*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27 09:1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607	26너67**	박*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15 12:49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50,000
608	26모91**	서*일	전라남도 목포시	2026-02-12 22: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09	26버96**	강*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9 15:4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10	26보26**	김*중	경기도 수원시	2026-02-17 11: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11	26수96**	K*A*V*L*R*I	경기도 안산시	2026-02-28 14:5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12	26오94**	주*회*설*터*인*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1 13:37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613	271보52**	인*주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1 09:1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614	271우22**	홍*기	경기도 화성시	2026-02-14 01:02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615	272저52**	(*)*블*에*치*스*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06 09: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16	273러68**	김*환	경기도 성남시	2026-03-21 09:2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17	274무21**	주*회*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1-02 14:47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50,000
618	275구21**	이*한	대전광역시 중구	2026-03-06 19: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19	275수72**	피*지*발*식*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7 15:07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620	277로75**	(*)*익*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11 19: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621	277무21**	박*동	경기도 안산시	2026-03-03 08:31	잠실역~잠실새내역	50,000
622	277저35**	김*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2-15 16:22	잠원ic~반포역	50,000
623	278루66**	구*경	경기도 시흥시	2026-02-09 17: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24	279로10**	김*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11 12:40	영등포유통상가교차로~양남사거리	50,000
628	279루40**	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1-29 16:4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626	279루40**	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1-30 13:25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627	279루40**	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1-30 17:04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629	279루40**	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0 10: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2	50,000
625	279루40**	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3 12:56	종합운동장역~잠실새내역	50,000
631	27마79**	차*정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16 07: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30	27마79**	차*정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16 07:2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32	27모73**	길*신	경기도 고양시	2026-02-26 10:14	홍은사거리	50,000
633	27부09**	김*신	충청남도 아산시	2026-03-14 16:4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34	27수63**	박*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9 07:33	대치역~도곡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35	27조08**	김*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6-02-03 20: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36	280버20**	서*도	경기도 용인시	2026-03-12 12:1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637	281노59**	문*순	경기도 부천시	2026-03-19 08:22	마곡역	50,000
638	281조59**	이*자	경기도 용인시	2026-03-08 21:1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639	281조99**	(*)*람*크	경기도 안성시	2026-02-28 12: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40	282구29**	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4-03 20: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41	283나61**	주*회*루*웍*미*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02 15:1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42	283부18**	박*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10 16: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43	288부76**	박*범	경기도 고양시	2026-03-03 17:4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44	288부76**	박*범	경기도 고양시	2026-03-18 16: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45	288부76**	박*범	경기도 고양시	2026-03-24 18:3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46	289너11**	L*M*I*A*	경기도 평택시	2026-02-15 00:4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47	289도71**	M*N*Q*N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15 10: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48	289도71**	M*N*Q*N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15 10:3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49	289소24**	안*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23 13: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50	28가64**	박*택	경기도 동두천시	2026-02-23 08:46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651	28구57**	정*승	경기도 고양시	2026-03-17 19: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52	28나72**	김*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09 17:32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653	28너53**	한*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2-17 16:3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654	28너53**	한*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02 14:41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50,000
655	28너92**	김*웅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7 08:10	상계11-13단지교차로~상계14-16단지교차로	50,000
656	28루28**	(*)*화*업	경기도 양평군	2026-03-05 17:5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57	28수63**	김*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4-01 14:4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658	28어89**	J*C*S*N*A*Y*A*B*T*A*Y	경기도 평택시	2026-03-11 12: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59	28조13**	김*록	경기도 파주시	2026-03-03 08:57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660	28조84**	김*롱	충청남도 아산시	2026-02-04 19:4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61	290모47**	한*투*자*관*대*주*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1 20:49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662	292서76**	송*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0 19: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63	292주58**	이*희	경기도 용인시	2026-03-04 19: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664	295마57**	홍*혁	경기도 화성시	2026-03-12 17: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65	295마57**	홍*혁	경기도 화성시	2026-03-12 17:3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66	296주66**	김*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3-20 16:36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668	297로75**	클*우*스*어*식*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15 13: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67	297로75**	클*우*스*어*식*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15 13:1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69	297로75**	클*우*스*어*식*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15 13:1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70	298조67**	N*Y*M*N*V*D*N*G*H*R*H*C*A*H*R*N*A	충청북도 음성군	2026-02-18 00:4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71	298조67**	N*Y*M*N*V*D*N*G*H*R*H*C*A*H*R*N*A	충청북도 음성군	2026-02-18 00: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72	29거55**	원*숙	경기도 화성시	2026-02-25 13:1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73	29누63**	이*무	경기도 수원시	2026-02-04 22:3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674	29더92**	M*T*H*A*G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19 18: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75	29부69**	(*)*주*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06 23: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676	29조27**	석*영*조*법*	경기도 화성시	2026-02-06 17:2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677	29하98**	박*진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19 08: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78	300고97**	이*희	충청남도 당진시	2026-03-14 03:1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679	301우63**	E*K*B*A*A*B*T*H*U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15 12:0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680	303저92**	주*회*심*브*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02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81	304오62**	조*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2-13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82	305누82**	안*연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0 09:2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683	306머80**	주*회*엠*스*스*터*셔*	경기도 성남시	2026-02-11 11: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84	306부18**	김*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7 12:5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47	50,000
685	308소40**	주*회*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07:30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686	309로42**	O*J*S*P*K*E*O*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18 14:1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87	309소31**	주*회*오*엔*니*링	인천광역시 중구	2026-01-21 10: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88	309우85**	D*N*J*J*A*	경기도 오산시	2026-02-23 17:0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89	309우85**	D*N*J*J*A*	경기도 오산시	2026-02-23 17:0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90	30거32**	최*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19 13:1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91	30부44**	주*회*밥*트*스*B*b*n*r*c*.*l*d*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2 09: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92	30저70**	J*N*H*N*A*	경기도 수원시	2026-02-25 19:1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693	310가75**	김*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09 20:4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695	310조75**	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4 15:0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94	310조75**	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5 10:5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96	311거72**	(*)*산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19 17:09	하계5.6단지 교차로	50,000
697	314수15**	K*M*C*R*S*I*E	경기도 동두천시	2026-03-15 1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50,000
698	31고32**	안*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6 13:3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99	31다56**	김*오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2-20 18: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00	31두53**	(*)*에*지*크*로*	경기도 화성시	2026-03-16 18: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01	31루19**	김*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03 17: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02	31버25**	정*세	경기도 고양시	2026-03-09 18:4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703	31어08**	한*열*관*식*사	경기도 고양시	2026-02-13 20:3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04	31주95**	원*희	경기도 여주시	2026-04-04 15:4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05	322라20**	김*규	경기도 안산시	2026-03-11 08:0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706	323두86**	최*훈	충청남도 아산시	2026-02-02 13:1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707	324더56**	궁*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14 17: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08	324마97**	박*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3-11 08:1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709	325구62**	송*호	경기도 하남시	2026-03-23 08: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10	325너11**	H*A*G*H*N*Z*U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05 17: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11	326구37**	L*D*N*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1-30 17:02	양남사거리~오목교	50,000
712	326주33**	정*기	경기도 양주시	2026-03-18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13	327누74**	김*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9 08: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14	32노08**	이*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2-23 13:24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715	32도27**	후*즈*이*타*랫*주*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10 09:30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716	32도76**	(*)*브*헤*트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09 09: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17	32두81**	정*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2-06 09:2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718	32러72**	K*R*M*V*S*O*B*K*U*I*E*U*L*	경기도 성남시	2026-02-03 0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19	32로20**	나*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5 07: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20	32무65**	정*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1 19:3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21	32소95**	대*에*엘*이*식*사	경기도 포천시	2026-03-09 11: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722	32수15**	김*진	경기도 포천시	2026-03-08 16:4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723	32조04**	전*아	경기도 성남시	2026-02-27 10: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24	32하43**	김*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1 08:5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25	331로67**	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2-16 16: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726	331어22**	T*A*R*B*R*	경기도 안산시	2026-03-04 18: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727	331우28**	주*회*브*운*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2-23 10: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28	333조25**	(*)*시*뱅*시*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1-19 16: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8	50,000
729	334가70**	정*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13 17: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730	334도79**	주*회*어*스*컴*니*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7 11: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31	334루25**	(*)*밀*웨*브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13 19:3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732	336라61**	(*)*베*라*프	경기도 수원시	2026-02-24 12:1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733	337노91**	배*정	전라남도 완도군	2026-02-02 11:1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34	337도63**	M*N*X*A*G*U	경기도 평택시	2026-03-08 16: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35	338구94**	김*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25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36	338나17**	나*수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05 15:3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737	338주58**	(*)*앤*스*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5 09: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50,000
738	33나94**	J*N*U*H*A	경기도 수원시	2026-02-17 00:0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40	33너70**	조*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3-21 11:5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39	33너70**	조*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3-21 11: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41	33노71**	한*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3 09: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43	33모05**	주*회*팜*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09:1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42	33모05**	주*회*팜*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09:1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45	33무15**	M*X*E*L*I*H*E*P*U*I	충청남도 서산시	2026-02-18 10: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44	33무15**	M*X*E*L*I*H*E*P*U*I	충청남도 서산시	2026-02-18 10:1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46	33부55**	이*숙	경기도 가평군	2025-12-30 18:34	구산역~연신내역	50,000
747	33주37**	R*S*L*V*S*R*F*B*O*E*D*U*L*	경상남도 사천시	2026-02-12 18: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48	342무13**	주*회*타*	경기도 김포시	2026-03-06 09:4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749	342무13**	주*회*타*	경기도 김포시	2026-03-10 11: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50	342오29**	김*호	충청북도 청주시	2026-03-26 16:0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51	349거88**	박*진	경기도 안양시	2026-03-10 10:1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52	349무54**	한*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4 08:52	우장초등학교~화곡역	50,000
754	349무62**	정*귀	경기도 수원시	2026-02-21 14:3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53	349무62**	정*귀	경기도 수원시	2026-02-21 14: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55	349우28**	런*웨*프*자*식*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4-03 1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756	34도50**	이*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2 19:0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757	34루51**	주*회*양*이*씨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19 18: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58	34무59**	주*회*그*팩*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3 14:0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759	34무72**	G*Y*B*E*D*E*A*I*J*N*K*A*J*N*G*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5 13:03	신설동역~동묘앞역	50,000
761	34무72**	G*Y*B*E*D*E*A*I*J*N*K*A*J*N*G*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9 17:3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60	34무72**	G*Y*B*E*D*E*A*I*J*N*K*A*J*N*G*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9 17:3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62	34우77**	비*이*이*주*	경기도 수원시	2026-02-14 21:0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63	34우77**	비*이*이*주*	경기도 수원시	2026-02-14 21: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64	34하98**	애*터*(*f*e*n*n*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9 08: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765	350저52**	윤*희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8 07:4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66	351서74**	S*M*S*N*T*O*A*M*R*	경기도 성남시	2026-02-06 20: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67	351오62**	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30 09:2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68	352다32**	유*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1 20:0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769	353나45**	양*정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20 08:3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770	353모79**	A*H*A*J*N*V*B*U*A*I*N*D*R*O*U*L*	경상북도 경산시	2026-02-14 21:1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71	354서50**	김*호	경기도 하남시	2026-03-09 07: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72	355거31**	정*수	경기도 부천시	2026-03-19 17:5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73	358누25**	신*아*이*스*식*사	경기도 고양시	2026-03-10 08:5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74	358주17**	김*순	경기도 양평군	2026-03-19 17:1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75	35더90**	김*성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5 20: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76	35로28**	정*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27 19: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77	35서03**	H*W*N*E*G	경기도 광명시	2026-02-09 19: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78	360누90**	임*식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27 19:2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779	363서17**	박*주	대전광역시 서구	2026-03-19 19:3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81	365우12**	최*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5 21: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80	365우12**	최*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5 21: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82	367두59**	비*엔*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5 20:2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83	368조51**	P*A*Y*N*Z*E	대구광역시 서구	2026-02-10 16:4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84	36도77**	박*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9 00:5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785	36로71**	권*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9 07: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86	36마01**	이*희	경기도 용인시	2026-02-10 13:0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87	36마71**	W*I*E*N*O*N*L*N*L*	경기도 평택시	2026-03-08 13:1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90	36마71**	W*I*E*N*O*N*L*N*L*	경기도 평택시	2026-03-08 13:1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88	36마71**	W*I*E*N*O*N*L*N*L*	경기도 평택시	2026-03-08 13:1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89	36마71**	W*I*E*N*O*N*L*N*L*	경기도 평택시	2026-03-08 13:5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791	36소95**	이*권	대구광역시 동구	2026-02-08 09:54	은평성모병원앞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92	36주23**	이*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2-12 17: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793	370무13**	하*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2-27 18:1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794	371가97**	신*선*아*데*영*조*법*	전라남도 신안군	2026-02-02 11: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95	374고87**	(*)*원*재*업	경상북도 경주시	2026-02-06 20:0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796	375주31**	K*M*I*O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17:18	롯데백화점앞	50,000
798	376우43**	R*E*E*M*L*I*J*R*A*	경기도 성남시	2026-02-12 14: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97	376우43**	R*E*E*M*L*I*J*R*A*	경기도 성남시	2026-02-12 14: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99	376우61**	이*진	경기도 부천시	2026-03-13 16: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50,000
800	377로42**	김*아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2 10: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801	377소24**	임*석	경기도 파주시	2026-03-16 18:1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02	37가29**	G*L*M*V*R*L*I*O*I*D*N*G*I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07 17:2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03	37구03**	전*임	경기도 수원시	2026-02-25 14:31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804	37너72**	유*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31 18:0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05	37무18**	최*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09 08:37	화랑대사거리~육사야구장	50,000
806	37서37**	정*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16 08:38	등촌역	50,000
814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0 10:5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10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0 10:5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812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0 12: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17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0 18: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18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0 18: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09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2 10:0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07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2 10: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13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2 10:0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808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2 11: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11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4 15: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16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4 15: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15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4 15:3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19	381주98**	주*회*코*교*그*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08 14:1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820	383우12**	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6 08:5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821	383우12**	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6 08: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22	384노53**	F*N*O*G*U*	인천광역시 중구	2026-02-09 10:54	논현역~신논현역	50,000
823	384누82**	우*	경기도 시흥시	2026-01-23 16:21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824	384더80**	주*회*엘*티*스	경상남도 김해시	2026-02-02 16:0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25	388라36**	방*일	충청남도 서산시	2026-03-24 19:0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26	389구78**	이*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6-02-04 18:5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827	38구20**	이*영	경기도 성남시	2026-02-21 14:0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28	38너25**	강*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11 20: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29	38노59**	고*익	광주광역시 북구	2026-03-05 20: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830	38두22**	안*수	경기도 고양시	2026-03-16 07:28	은평뉴타운10단지앞	50,000
831	38러08**	한*석	경기도 광주시	2026-03-16 17:5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32	38부03**	박*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0 09:0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833	38서30**	다*스*주*회*	경상남도 창녕군	2025-12-18 08:04	서초IC~반포IC	50,000
834	38소68**	김*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6-03-13 17:5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835	38어53**	허*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4-01 18: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36	38호01**	주*회*훈*아*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0 16:4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37	390오37**	박*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5 08:26	매봉역교차로~양재전화국교차로	50,000
838	393모20**	S*E*C*U*G*A*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13 10: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839	395구13**	김*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4 16:5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840	396소57**	황*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15 22: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41	39가13**	서*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1 14: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42	39너72**	W*Y*N*A*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05 08: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43	39누23**	김*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1-19 07:01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846	39우08**	구*형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17 19: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45	39우08**	구*형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17 19:3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44	39우08**	구*형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17 19: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47	40거61**	김*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6-03-29 15: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48	40노79**	이*석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6-03-12 07:28	몽촌토성역~송파구청교차로	50,000
849	40라68**	고*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0 07:2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850	40로60**	최*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3 1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851	40루66**	박*한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7 18:1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852	40무34**	손*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04 09: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853	40오02**	김*자	경상남도 밀양시	2026-03-11 18: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54	41수91**	이*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27 1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55	41우56**	T*L*I*J*N*V*H*J*A*B*R*A*H*U*J*N*G*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6 09: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56	41주01**	서*남	경기도 안양시	2026-02-07 21:1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857	42누36**	이*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20 20:3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859	42도21**	랜*마*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6-02-06 14:5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60	42도21**	랜*마*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6-02-06 14:5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858	42도21**	랜*마*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6-02-06 14: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61	42러24**	김*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2-18 19:3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862	42로82**	S*P*R*A*V*U*L*N*M*R*A*V*C*	경기도 화성시	2026-02-06 11:0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63	42로82**	S*P*R*A*V*U*L*N*M*R*A*V*C*	경기도 화성시	2026-02-10 08: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64	42마03**	김*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06 11:05	서울교교차로~여의도공원앞교차로	50,000
865	42머19**	강*모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1 16:4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66	42부02**	김*중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6 20: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67	42조74**	김*민	경기도 의정부시	2026-04-01 17:2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868	43구28**	이*진	경기도 광주시	2026-03-04 09: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69	43러43**	L*B*N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2-27 07: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870	43로44**	D*N*D*Y*I*H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15 02: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71	43로63**	이*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2 10:4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72	43머21**	김*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0 18:3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882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0-28 07:03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도역	50,000
880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1-10 07:26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도역교차로	50,000
877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1-20 07:06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도역	50,000
874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1-22 08:00	광장아파트앞	50,000
881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2-03 07:03	광장아파트앞	50,000
879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2-03 20:36	광장아파트앞	50,000
878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2-04 07:05	광장아파트앞	50,000
875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2-14 07:09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도역	50,000
873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2-17 20:53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도역	50,000
876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12-18 07:01	여의나루로,광장아파트앞	50,000
885	43주94**	C*U*M*R*L*S*I*T*R*	경기도 평택시	2026-03-16 09:3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86	43주94**	C*U*M*R*L*S*I*T*R*	경기도 평택시	2026-03-16 09:3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83	43주94**	C*U*M*R*L*S*I*T*R*	경기도 평택시	2026-03-16 12: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84	43주94**	C*U*M*R*L*S*I*T*R*	경기도 평택시	2026-03-16 12:1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887	43허01**	배*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07 05:3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888	45가10**	이*숙	광주광역시 남구	2026-03-04 17: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89	45가49**	최*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0 20: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90	45너10**	이*	경기도 고양시	2026-03-05 12:1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891	45마49**	K*R*M*O*O*T*I*	경기도 안성시	2026-02-21 21: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894	45어45**	L*N*E*I*	경기도 용인시	2026-02-11 10: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96	45어45**	L*N*E*I*	경기도 용인시	2026-02-11 10: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893	45어45**	L*N*E*I*	경기도 용인시	2026-02-11 10: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95	45어45**	L*N*E*I*	경기도 용인시	2026-02-13 10:2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892	45어45**	L*N*E*I*	경기도 용인시	2026-02-13 10:2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97	45오23**	정*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11 09:11	우장산역교차로~발산역	50,000
901	46고37**	이*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04 16:1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99	46고37**	이*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04 16: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98	46고37**	이*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06 12:2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00	46고37**	이*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06 12: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02	46고46**	김*현	경기도 군포시	2026-03-10 18:5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903	46루20**	안*순	경기도 시흥시	2026-03-20 17: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904	46머34**	(*)*앤*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3 1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05	46보75**	주*회*메*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6-03-05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06	46보95**	주*회*해*에*티*업	경기도 부천시	2026-02-06 15:46	은천삼거리~봉천고개	50,000
907	46부49**	콜*보*주*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11 18:5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908	46오17**	뱅*뱅*한*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2-14 23: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09	46저29**	주*회*신*	경상북도 고령군	2026-02-13 11:0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910	46주35**	정*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2 16:1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11	47누38**	B*L*B*A*A*M*A*M*R*O*J	경기도 여주시	2026-03-13 15:1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12	47두28**	안*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09 1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13	47마62**	김*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3 16:0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14	47부27**	김*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6 17:02	월릉교~태릉입구역사거리	50,000
915	47어09**	김*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8 18: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16	48고48**	고*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09 17:2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917	48라91**	A*Y*A*K*L*V*D*L*T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04 11:10	미아사거리~길음역	50,000
918	48서04**	주*회*자*에*앤*	대구광역시 동구	2026-02-24 18: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19	48서26**	주*회*더*유*스*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31 18:5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920	48어04**	이*연	경기도 김포시	2026-02-21 13: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21	48우10**	최*순	경기도 화성시	2026-02-23 11:43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922	48조62**	김*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04 08:3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923	48주49**	L*X*A*C*U*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026-03-05 17: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24	48주49**	L*X*A*C*U*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026-03-10 17: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25	49고13**	김*영	경기도 안산시	2026-03-28 09: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26	49라43**	박*모	충청북도 청주시	2026-03-02 15: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27	49러99**	정*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13 13: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28	49로39**	김*우	경기도 부천시	2026-02-12 17: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29	49로47**	추*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24 08:34	무악재역~독립문역	50,000
930	49마94**	박*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4-01 18:5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931	49버03**	염*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0 17:54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932	49호49**	박*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18 17: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933	50머37**	임*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9 0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34	50무13**	주*회*왕*	경기도 고양시	2026-02-05 07:5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35	50부59**	하*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03-09 12:4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36	50서89**	P*R*E*A*E*O*A*E*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6-02-07 16:2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37	50우37**	장*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4-02 22:4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38	50조11**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3 1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39	51구30**	(*)*리*개*	경기도 용인시	2026-02-24 10: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40	51더63**	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1-28 09:56	연신내역교차로~불광역	50,000
941	51두89**	(*)*르*오*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01 14:27	강북구청사거리~수유역	50,000
942	51마01**	김*래	경기도 안양시	2026-02-05 08:53	복정역~장지역	50,000
943	52구93**	장*수	경기도 고양시	2026-02-13 09:44	김포공항교차로~김포공항입구교차로	50,000
944	52다36**	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2-25 17: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45	53가92**	이*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2 20:07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946	53두38**	김*철	경기도 부천시	2026-03-10 05:55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947	53두60**	이*종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6 18:28	염창역~등촌역	50,000
948	53수79**	김*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17 17: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49	54구82**	윤*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4 18: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950	54로80**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2-03 17:3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951	54마74**	주*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4 23:5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52	54어52**	L*H*N*M*I	경기도 오산시	2026-03-06 14: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53	54조71**	K*M*A*I*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09 17:0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54	54조71**	K*M*A*I*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09 17: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55	55고73**	정*성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6 20: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56	55서23**	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25 17:2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957	55소31**	김*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16 17:16	천호대교~광나루역	50,000
958	56거13**	박*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1 09:3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50,000
959	56거24**	김*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4 19: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960	56다93**	이*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1-19 16:54	구로교~대림사거리	50,000
961	56라71**	I*R*I*O*I*L*M*O*I*M*I*J*N*G*I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0 18: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62	56라82**	정*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19 20:5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63	56러87**	양*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06 08: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64	56로84**	유*자	경기도 고양시	2026-03-20 13: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65	56무80**	이*엽	경기도 고양시	2026-03-10 08: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66	56어61**	김*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3 08:39	성내교	50,000
967	56주20**	F*R*A*N*K*B*L*A*	경기도 시흥시	2026-02-15 22:4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968	57너15**	배*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23 08:4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969	57도74**	박*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27 08:13	우이교~수유역	50,000
970	57로83**	홍*유	경기도 수원시	2026-03-13 17:2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71	57버12**	이*현	경기도 부천시	2026-04-01 18: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972	58더69**	박*연	경기도 고양시	2026-03-08 12:2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73	58라57**	곽*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1 16:16	등촌역	50,000
974	58수22**	주*회*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11 17: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75	58저75**	J*E*W*N*A*N*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3 08: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76	59거22**	N*R*A*M*T*V*A*A*A*H*R*G*I	충청북도 진천군	2026-03-01 18:3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77	59너58**	주*회*디*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4 0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78	59더01**	(*)*원*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6 18: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79	59라75**	이*열	경기도 부천시	2026-02-27 07:07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980	59오03**	한*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1-29 20:0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981	59조93**	이*기	경기도 용인시	2026-02-10 18: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82	60나84**	이*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4 19: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83	60도05**	김*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15 14:0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84	60도15**	임*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1 10: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85	60머62**	나*엽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09 20: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86	60버12**	최*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3 20: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87	60우37**	삼*종*건*(*)	충청남도 서천군	2026-02-25 09:0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88	60우37**	삼*종*건*(*)	충청남도 서천군	2026-02-25 09:0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89	61구05**	주*회*동*교*아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0 12:4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79	50,000
990	61서05**	강*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27 17: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991	61저06**	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6 15: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1	50,000
992	62구61**	문*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05 23: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93	62러09**	주*회*아*인*스*리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4 18:1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94	62러09**	주*회*아*인*스*리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4 18:1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995	62러09**	주*회*아*인*스*리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4 18:1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96	62모82**	홍*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5 07:23	삼성교교차로~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997	62보05**	송*영	경기도 시흥시	2026-04-02 20:08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998	63너29**	주*회*다*한*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7 1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99	63더16**	권*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3-09 09:15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00	63도38**	이*수	경기도 양주시	2026-03-03 08:5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002	63두59**	이*윤	인천광역시 중구	2026-03-18 08:59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1001	63두59**	이*윤	인천광역시 중구	2026-03-24 09:21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003	63버42**	주*회*스*코*레*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5 13:25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61 (상계동)	50,000
1005	63버42**	주*회*스*코*레*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6 15:51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61 (상계동)	50,000
1004	63버42**	주*회*스*코*레*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9 09:49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6 (상계동, 상계주공15단지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06	63서69**	권*주	대전광역시 서구	2026-02-23 17: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07	63어04**	주*회*아*엠*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3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008	63저71**	임*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09 08:23	강남소방서앞	50,000
1009	63저71**	임*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03 08: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10	64거88**	황*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2-16 22: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11	64구30**	정*울	경기도 광주시	2026-03-25 19:3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12	64다33**	(*)*인*앤*	경기도 양주시	2026-03-13 14:2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13	64보31**	주*회*위*에*앤*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2-16 22: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14	64부01**	김*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07:49	대치역~도곡역교차로	50,000
1015	64오52**	신*수	경기도 성남시	2026-02-26 18: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16	65가75**	박*온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0 17: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017	65나22**	박*용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2 07:4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18	65너86**	고*운	경기도 화성시	2026-02-16 00:2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19	65노93**	주*회*허*닥*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2 20: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20	65마97**	N*U*E*M*N*D*C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09 17: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21	65머75**	B*N*H*I*Y*A*O*N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13 14:1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22	65머75**	B*N*H*I*Y*A*O*N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13 14: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23	65머75**	B*N*H*I*Y*A*O*N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15 12:3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024	65모17**	박*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6-03-03 18:3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25	65무18**	여*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3 18:32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1026	65소72**	주*회*에*피*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5 13:31	청량리역~경동시장교차로	50,000
1027	65오02**	권*태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8 07: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028	65조49**	전*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8 08:0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029	66구93**	K*M*E*N*B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6-02-06 08:5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30	66구93**	K*M*E*N*B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6-02-06 08: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31	66노89**	J*N*O*G*U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2-07 14:06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1032	66누35**	김*영	경기도 김포시	2026-03-04 23:5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33	66로80**	R*K*Y*A*A*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09:5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36	66로80**	R*K*Y*A*A*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09:5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34	66로80**	R*K*Y*A*A*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12: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035	66로80**	R*K*Y*A*A*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12: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37	66보37**	(*)*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2-27 17:3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038	66서79**	남*찬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30 09: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39	66조38**	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2-03 11:0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41	67거45**	P*T*E*S*N*B*L*T*C*A*E*C*	경기도 평택시	2026-03-29 18: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40	67거45**	P*T*E*S*N*B*L*T*C*A*E*C*	경기도 평택시	2026-03-29 18: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42	67루68**	D*N*Y*R*V*A*K*U*J*N*H*K*U*L*U*L*	충청북도 음성군	2026-02-15 00: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43	67머50**	윤*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2 08: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44	67조68**	P*N*,*A*L*S	경기도 동두천시	2026-03-10 12: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45	68무92**	이*순	경기도 광주시	2026-03-01 10: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46	68무92**	이*순	경기도 광주시	2026-03-01 10: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47	69고72**	김*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03 10:49	강동역~강동성심병원교차로	50,000
1048	69더45**	박*호	경기도 수원시	2026-02-24 07:42	고촌IC~개화교	50,000
1049	700호28**	김*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0 07:4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60,000
1050	701노50**	주*회*드*점*줄*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7 10:0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60,000
1051	70라57**	이*수	경기도 용인시	2026-02-17 15:33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52	70라57**	이*수	경기도 용인시	2026-02-25 07:49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54	70저28**	(*)*한*무*협*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9 09:29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053	70저28**	(*)*한*무*협*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9 09:31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055	715하12**	이*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04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60,000
1056	720루49**	이*희	경기도 광주시	2026-03-05 08: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2	60,000
1058	724누50**	김*로	경기도 안산시	2026-02-27 16:27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57	724누50**	김*로	경기도 안산시	2026-02-27 16:28	서초동 반포IC 상행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59	72허29**	노*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7 08:45	국제금융로7길	60,000
1070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5 10:02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06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5 10:04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061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5 16:2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74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07 15:25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060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3 09:56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07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3 09:58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07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3 15:48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6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10:30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071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16:5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64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7 10:38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07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7 17:03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66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9 10:30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06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9 16:35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6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4 10:07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06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4 10:08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06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4 17:12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76	76도97**	이*석	경기도 고양시	2026-03-26 17: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60,000
1077	78구11**	최*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12 08:5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58	60,000
1078	78도98**	주*회*이*에*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7 10:46	삼양입구사거리~미아역	60,000
1079	801오49**	함*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31 17: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80	803수26**	(*)*이*인*스*리*	경기도 시흥시	2026-03-05 08: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81	804고81**	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4-01 07:4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82	804어73**	(*)*자*샘*	충청북도 청주시	2026-02-13 17:5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083	805마16**	이*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27 17: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84	807러56**	우*자	경기도 김포시	2026-03-06 08:4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85	808오79**	주*회*모*즈*니*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26 19: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86	809노20**	정*진	경기도 광주시	2026-03-03 17: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87	809더41**	이*준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04 07: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088	80나37**	박*경	경기도 의정부시	2026-01-30 16:03	천호대교~광나루역	50,000
1089	80부12**	호*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0 08: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90	80소98**	원*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2-14 16:53	녹번역~홍은사거리	50,000
1091	80수98**	이*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13 09: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92	811러48**	주*회*신*축*	경기도 화성시	2026-03-18 12:2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24 (잠실동)	50,000
1093	812너82**	청*렌*(*미*)	경기도 하남시	2026-02-20 07:5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094	814조79**	주*회*이*홀*스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25 19: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95	815도77**	문*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19 08: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2-2	50,000
1096	819가47**	주*회*메*커*코*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06 18: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097	819조52**	김*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27 13:0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98	81고35**	이*영	부산광역시 남구	2026-03-09 19: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99	81루86**	양*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3 09:3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100	81어78**	한*건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6 09:2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01	820가80**	정*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9 17:5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02	820루70**	(*)*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3 20:0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03	820루70**	(*)*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3 17: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04	820루70**	(*)*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9 17: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05	821두93**	(*)*놈*	경기도 시흥시	2026-02-27 07: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06	824너48**	황*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3 07: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107	824두41**	세*인*리*(*지*)	인천광역시 중구	2026-03-04 07:41	고촌IC~개화사거리	50,000
1108	824우81**	(*)*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3 15: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09	82너09**	주*회*일*산*	경기도 광주시	2026-02-03 08: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10	82너64**	오*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6 17: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111	82더11**	김*현	경기도 안산시	2026-03-19 0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12	82러33**	J*N*I*N*Y*	경기도 부천시	2026-02-23 14:09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113	82로06**	안*훈	경기도 부천시	2026-03-04 17: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15	82소11**	황*연	경상북도 포항시	2026-02-14 17: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14	82소11**	황*연	경상북도 포항시	2026-02-14 17: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16	82우80**	오*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30 12: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17	82조73**	김*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27 08:1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18	82주89**	최*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10 07:01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1119	83가41**	한*종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4 18:2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120	83나99**	함*삼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0 12: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21	83누50**	조*진	경기도 하남시	2026-02-23 10:5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122	83라32**	주*회*서*코*레*션	경기도 구리시	2026-03-11 08:31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1123	83무72**	조*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2 06: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24	83보22**	회*환*주*회*(*량*경*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6-02-26 19: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25	83소68**	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6 08:48	성내교	50,000
1127	83우24**	장*원	경기도 성남시	2026-02-09 17: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26	83우24**	장*원	경기도 성남시	2026-02-27 1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28	844무40**	주*회*신*유*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03 09:19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1130	844무57**	이*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03 07: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29	844무57**	이*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05 07: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31	84고76**	장*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10 15:42	영등포로터리~영등포시장교차로	50,000
1132	84누03**	이*섭	경기도 광주시	2026-02-24 07: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133	84더12**	손*완	경기도 부천시	2026-04-03 17: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34	84두05**	주*회*삼*토*솔*션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09 1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35	84부55**	주*회*시*건*디*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23 08:52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관교차로	50,000
1136	84부69**	(*)*테*플*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26 13:5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137	84수16**	삼*지*티*식*사	경기도 고양시	2026-03-14 10: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38	857주96**	강*훈	경기도 안산시	2026-02-27 09:1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39	85거06**	채*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9 08:46	송정역~마곡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140	85구84**	이*복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5 13:2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41	85너50**	이*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11 12:34	영등포로터리~영등포시장교차로	50,000
1142	85노17**	양*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2-11 13:58	잠원로, 한강아파트상가앞	50,000
1143	85로64**	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12 19: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144	85모05**	주*회*삼*공*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3 1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45	85서37**	김*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6 11: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50,000
1146	85소06**	이*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05 0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47	85조92**	농*회*법*고*주*회*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11 18: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48	86구48**	전*조	경기도 성남시	2026-04-04 09: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49	86누84**	송*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6-03-10 15: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50	86서79**	원*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3 18: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51	86어77**	(*)*화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20 15:43	종합운동장역~잠실새내역	50,000
1152	87고93**	홍*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10 20: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53	87모03**	김*	경기도 이천시	2026-02-04 13:2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54	87오65**	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4-01 08:0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155	88노09**	이*배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13 19: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56	88더94**	윤*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11 18: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57	88도29**	주*회*새*미*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5 17: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58	88라94**	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6-03-10 01:2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59	88모37**	(*)*브*드*업*사	경기도 여주시	2026-03-11 08:31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1160	89루12**	민*기	경기도 안산시	2026-03-12 09:00	남태령역~사당역	50,000
1161	89우04**	지*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23 09:1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62	90너65**	(*)*성*코*크	경기도 포천시	2026-03-04 08:4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163	90더94**	주*회*아*모*	경기도 화성시	2026-03-03 14: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64	90오32**	(*)*엔*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9 17:1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165	91버62**	추*영	경기도 시흥시	2026-02-03 18:4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66	91소58**	한*태	경기도 동두천시	2026-04-03 17:20	중계근린공원교차로~중계역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167	91오40**	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4 0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68	92마89**	(*)*일*앤*	경기도 양주시	2026-02-04 09:1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69	93고20**	최*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05 15:14	은천삼거리~봉천고개	50,000
1170	93구98**	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08: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71	93라89**	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0 17: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72	93러01**	기*진	경기도 광주시	2026-03-24 18: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73	93버37**	대*토*주*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12 08:26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1174	93오95**	배*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20 08: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75	95도73**	장*호	경기도 안산시	2026-03-13 16:5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76	95라44**	시*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2-02 14: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77	95로01**	김*호	경기도 의왕시	2026-02-06 18:5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78	95무07**	(*)*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2-12 17:1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179	95버12**	박*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6 09:53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1180	95주06**	정*태	경기도 성남시	2026-03-30 18: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81	96두29**	케*디*씨*주*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10 13: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82	97노88**	최*문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3 15: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83	97도59**	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05 07:2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84	97도76**	이*범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12 19: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185	987무62**	주*회*엠*	경기도 하남시	2026-03-15 10:2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60,000
1186	경기06오67**	(*)*제*산*	경기도 고양시	2026-03-03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60,000
1187	경기37바43**	김*범	경기도 부천시	2026-03-11 17:4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188	경기80아23**	조*민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02 07: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189	경기83사74**	유*화	경기도 부천시	2026-03-20 08: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90	경기83사81**	윤*숙	경기도 부천시	2026-03-05 1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50,000
1191	경기83사81**	윤*숙	경기도 부천시	2026-03-05 12:40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192	경기83사83**	김*오	경기도 부천시	2026-02-05 19:05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50,000
1193	경기84바81**	엄*섭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7 12:2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194	경기84배11**	이*흔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05 17: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196	경기87배40**	이*현	경기도 고양시	2026-02-05 16:1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95	경기87배40**	이*현	경기도 고양시	2026-02-05 16:1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97	경기87사21**	박*희	경기도 부천시	2026-02-26 16:0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98	경기87사22**	(*)*이*카*리*	경기도 고양시	2026-02-09 09: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99	경기88사28**	사*렉*주*회*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1 11: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00	경기88사55**	김*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03 08:3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201	경기88사55**	김*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12 13: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02	경기91사27**	유*근	경기도 화성시	2026-03-05 08: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85	50,000
1203	경기92바68**	박*선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08: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85	60,000
1204	경기92바86**	구*림	경기도 광주시	2026-02-10 07:2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50,000
1205	경기94자58**	김*홍	경기도 용인시	2026-03-23 09: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206	경기98바91**	(*)*드*카*	경기도 부천시	2026-02-28 07:0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60,000
1207	경기98사75**	이*철	경기도 고양시	2026-02-19 12:0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60,000
1208	경기98자61**	박*순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6 08:1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60,000
1209	경기고양더97**	(*)*이*를*탁*(*9*)*임*아*1*)*	경기도 고양시	2026-03-10 17:26	종로5가역~흥인지문교차로	40,000
1210	경기남양주타67**	정*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0 07:45	대치역~도곡역	40,000
1211	경기성남거67**	고*원	경기도 성남시	2026-02-13 13:27	압구정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40,000
1213	경기안양차81**	권*용	경기도 안양시	2026-03-23 08:03	금천소방서~말미사거리	40,000
1212	경기안양차81**	권*용	경기도 안양시	2026-03-24 08:00	금천구청입구교차로~말미사거리	40,000
1214	경북81아22**	삼*운*(*)	경상북도 영주시	2026-04-01 09:4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215	서울06너55**	김*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04 09:0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60,000
1216	서울07나51**	태*전*(*)	경기도 가평군	2026-01-30 13:17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2 (대조동)	60,000
1217	서울31바26**	오*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4 08:3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218	서울31바29**	서*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2 17:2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219	서울31바32**	최*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06 1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220	서울31바41**	한*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25 11:25	삼성교~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1221	서울31바52**	정*열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8 09:5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222	서울31바77**	이*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20 09:4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225	서울31바88**	임*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9 20:1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24	서울31바88**	정*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19 00:1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223	서울31바88**	정*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19 00: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26	서울31바94**	권*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10 12:09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3번출구	50,000
1227	서울31사46**	정*출	경상북도 구미시	2026-02-26 08:34	강남소방서앞	50,000
1228	서울31사47**	노*배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5 15:24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229	서울31사51**	정*복	경기도 고양시	2026-03-21 18:18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1230	서울31사72**	박*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27 17:3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231	서울31사84**	박*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1-29 09:32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1232	서울31사91**	정*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19 00: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33	서울31사92**	배*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12 07: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234	서울31아20**	나*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2-19 19:04	서초ic~반포ic	50,000
1235	서울31아25**	이*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09 18: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8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자센	50,000
1236	서울31아26**	한*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04 07:5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237	서울31아27**	윤*원	경기도 고양시	2026-03-04 11:59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21	50,000
1238	서울31아35**	신*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02 20:2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239	서울31아58**	최*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23 12:53	삼성교~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1240	서울31아60**	전*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31 17:23	서울역~숙대입구역	50,000
1241	서울31아60**	조*익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4 14:4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42	서울31아72**	정*복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27 07:38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1245	서울31아82**	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0 13:2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244	서울31아82**	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3 12:56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1243	서울31아82**	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0 08:5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246	서울31자13**	양*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0 13:13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3번출구	50,000
1247	서울31자28**	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7 16:56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1248	서울31자29**	류*주	경기도 안양시	2026-03-16 19: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49	서울31자62**	변*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27 08:38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1251	서울31자75**	이*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30 11:3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50	서울31자75**	장*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17 23: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52	서울31자82**	천*묵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9 15: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05	50,000
1253	서울32바17**	김*용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24 14:03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1254	서울32바33**	홍*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09 19: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55	서울32사27**	구*찬	경기도 김포시	2026-03-06 18:28	염창역~등촌역	50,000
1257	서울32사49**	구*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04 22:52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256	서울32사49**	이*범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2-07 01:5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258	서울32아19**	최*억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3 16:53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1259	서울32아32**	정*백	경기도 양주시	2026-02-10 08:29	국립현충원교차로~ 흑석역	50,000
1260	서울32아35**	김*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26 08:30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1261	서울32아49**	최*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4 17:5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262	서울32자32**	박*환	경기도 김포시	2026-03-09 11:03	대림삼거리~기상청입구교차로	50,000
1263	서울32자53**	정*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2-26 15:18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1264	서울32자58**	문*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1 18: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65	서울38아34**	박*익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6 09:20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266	서울38아53**	김*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1-31 12:0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267	서울38아84**	이*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06 19: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68	서울38아89**	김*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26 17:0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여의도동)	50,000
1269	서울81배43**	정*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4 12:57	강남소방서앞	50,000
1270	서울81배87**	임*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4 20: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71	서울82배26**	이*엽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7 19:59	제기동역~ 용두동사거리	50,000
1272	서울86바39**	(*)*이*케*로*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4 08:4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273	서울86자15**	박*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13 11:41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1274	서울91자78**	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5 11:03	영등포로터리~영등포시장교차로	50,000
1275	서울91자84**	이*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12 13:18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1276	서울98사65**	(*)*영*경*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22 19:0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60,000
1277	서울관악하14**	정*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6 12:36	롯데백화점앞	40,000
1278	서울서대문차76**	김*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04 09:24	녹번역~홍은사거리	40,000
1279	서울중랑다06**	지*현	경기도 광주시	2026-03-10 17:27	종로5가역~동대문역	40,000
1280	서울중타91**	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10 17:27	종로5가역~동대문역	40,000
1281	인천30바85**	정*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02 07:3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82	인천80머37**	박*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12 09: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83	인천83바17**	김*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2-24 15: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6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81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6.6.11.~2026.6.25.(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8건																
1	20234221	165조8463	K8	000047339214201 20260125003373	종묘	0001:15	2025-12-21	16:35	2025-12-21	17:50	3,000	0	3,000	권*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6길	기타	2026-06-18
2	20234401	41호9859	타이칸	000047339214201 20260225003540	잠실역	0000:20	2026-01-02	10:39	2026-01-02	10:59	800	0	800	김*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수취인불명	2026-06-18
3	20234572	229호8010	K8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60225003428	가양라이품	0012:47	2026-01-04	22:08	2026-01-05	10:55	7,200	0	7,200	박*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17길	기타	2026-06-18
4	20234628	198하9799	카니발 하이리무진	000047339214201 20260225003297	수서역	0034:26	2026-01-06	07:34	2026-01-07	18:00	23,000	0	23,000	씨*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이사불명	2026-06-18
5	20235072	128다2689	액티언	000047339214201 20260325002203	신대방역	0000:21	2026-02-20	12:32	2026-02-20	12:53	700	0	700	지*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20길	수취인불명	2026-06-18
6	20235219	172하6978	G80	000047339214201 20260325001361	수서역	0012:55	2026-02-10	07:42	2026-02-10	20:37	23,000	0	23,000	로*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수취인불명	2026-06-18
7	20235244	32하4308	EV4	000047339214201 20260325001179	한강진역	0007:54	2026-02-24	10:31	2026-02-24	18:25	14,400	0	14,400	윤*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기타	2026-06-18
8	20235258	17허4987	아이오닉5(IONIQ5)	000047339214201 20260325001034	훈련원공원	0005:14	2026-02-20	14:24	2026-02-20	19:38	17,300	0	17,300	김*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기타	2026-06-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82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아모레퍼시픽 성북점	서울 제1243호	김우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10층 (삼선동4가)	소재지 ('26.05.1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52, 3층 (삼선동5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10층 (삼선동4가)
					상호 ('26.05.26.)	아모레 성북특약점	아모레퍼시픽 성북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8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후 재산(부동산)압류 통지를 소유자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6.11. ~ 2026. 6.2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621308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24(필동3가 34)	수도요금	2025. 2납기 등 7납기	7회	711,99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34 토지 및 건물	허지혜	810812-2****** (등기번호 1152113023765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4, 102동 *04호(반포동, 반포푸르지오아파트)	711,990원	2026. 5.2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02-3146-20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8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주식회사 하나루프	제6110000-20-2026-00008호	2026.05.2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5, 403호
2	지디씨컨설팅 주식회사	제6110000-20-2026-00009호	2026.06.0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6, 5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99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6호(2026.4.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7호(2025.11.27.)로 결정(변경)된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0·11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2199-7412)
3. 열람내용

[1]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119,703.10	감) 5,337.10	114,366.00	서고 제1995-53호 ('95.03.10.)	-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9,703.10	감) 5,337.10	114,366.00	10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5.88	-	195.88	0.17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9,507.22	감) 5,337.10	114,170.12	99.83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0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변경)조서

■ 전자상가 주변지구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기정	전3	2,433.4 (1,493.5)	한강로3가	1천	363.8	-	-
				1-8천	531.1	-	-
				2-1천	160.1	-	-
			신계동	28-33천	438.5	-	-
변경	전3	939.8 (0)	-	-	-	-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 면적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가구 면적임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비고
			필지		소계	
합 계			80,797.2	감) 3,085.9	77,711.3	-
변경	㊼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3,085.9	감) 3,085.9	0	구역제척
기정	㊽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3,160.9	-	3,160.9	계획결정
기정	㊾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1,992.9	-	1,992.9	계획결정
기정	㊿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12,894.9	-	12,894.9	계획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비고
			필지		소계	
기정	⑤1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	17,414.3	-	17,414.3	계획수립중
기정	⑤2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2	7,797.3	-	7,797.3	계획수립중
기정	⑤3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3	8,950.6	-	8,950.6	미시행
기정	⑤4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5	5,792.4	-	5,792.4	계획결정
기정	⑤5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9	3,443.2	-	3,443.2	미시행
기정	⑤6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0	6,335.2	-	6,335.2	계획결정
기정	⑤7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1	9,929.6	-	9,929.6	미시행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나진10 · 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나진10 · 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한강로3가 1-3 일대	-	증) 5,337.1	5,337.1	-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337.1	-	5,337.1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337.1	-	5,337.1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한강로3가 1 외 3필지	-	증) 1,493.5	1,493.5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주차장	한강로3가 1 외 3필지	층수	지하1~3층 일부 (비도시계획시설 지하3~지상11층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구간)	-	•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2,069.99㎡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통업무설비	한강로2가 15일대	80,015.8 (757.7)	-	80,015.8 (757.7)	건고-제332호 (85.07.31.)	-

※ ( ) 면적은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면적임

0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1.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나진10·11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공공기여 기준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 미적용 •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사항 ① 토지 ② 공공지원시설 ③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공	-

0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신설(기재생략)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조서 : 신설(기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조서 : 신설(기재생략)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 특별계획구역 4 ①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특별계획구역 4	한강로3가 1-3 일대	-	증) 3,085.9	3,085.9	-	-

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한강로3가 1-3 일대	-
면적		• 3,085.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085.9㎡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의 30% 이상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공중공공보행통로		• 청파로 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새창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6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청파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5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 미적용 •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융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토지 ② 공공지원시설 ③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공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타	• 주거비율 :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개방형녹지(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건축인 · 허가 전 서울시 조경과 등 관련부서와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0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신설(기재생략)

2 나진10 · 11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808호

시금고 지정 공고

서울시에서는 현 시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차기 시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1금고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상　호 : 주식회사 신한은행(대표자 : 정상혁)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2. 제2금고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상　호 : 주식회사 신한은행(대표자 : 정상혁)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3.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4. 약정기간 : 2027. 1. 1.~2030. 12. 31.(4년)

5.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제1금고 : 1순위 신한은행(977.104점), 2순위 우리은행(963.184점)
   ○ 제2금고 : 1순위 신한은행(928.960점), 2순위 국민은행(920.048점)
   3순위 우리은행(906.832점), 4순위 하나은행(890.160점)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6-25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폐지 결정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조문 삭제에 따른 전체 조문 번호 일괄 조정 (현행 제3조의2 및 제9조→ 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 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감사관)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우 04335)
○ 연락처: 전화 02-6033-5316, FAX 02-6033-5349
○ 이메일: hcool81@sen.go.kr

4. 개정훈령안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의2를 제4조로 한다.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 (생 략)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2. 센터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3. 그 밖에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 센터업무 담당 사무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 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삭 제>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행정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문 안건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9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성 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6년 월 일

구 고 시

◈ 동대문구고시 제2026-9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 이문동 256-136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접수되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023. 10. 26.)」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이문동 256-136번지 일대	34,70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제한근거 및 사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사유 :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의 분할

2) 제한제외 대상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

나)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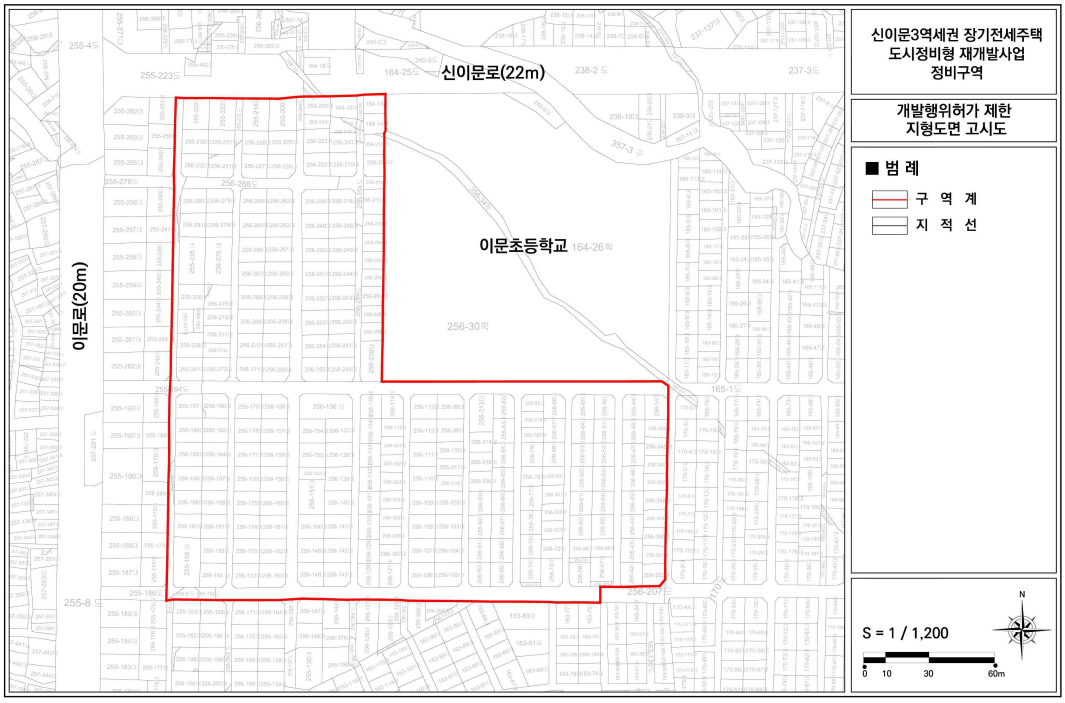

◈ 은평구고시 제2026-56호

도시계획시설[증산문화공원(가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73(2008.05.22.)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61호(2021.12.09.)호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5-134(2024.12.19.)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증산문화공원(가칭)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
2. 공 원 명: 증산문화공원(가칭)
3. 위 치: 은평구 증산동 263
4. 면 적: 4,445.30㎡
5.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도면: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열람장소: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02-351-8008)

증산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63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445.30	2,217.40	1	881.34	3,381.66	19	4,445.3	2,345.0	1	820.66	3,142.2	104	(증 85기)
기반시설	소계	1,066.20	1,066.20	-	-	-	0	1,067.2	1,067.2	-	-	-	1	증 1.0㎡ (증 1기)
	도로	597.4	597.4	-	-	-	-	504.0	504.0	-	-	-	-	감 93.4㎡
	광장	468.8	468.8	-	-	-	-	563.2	563.2	-	-	-	-	증 94.4㎡
조경시설		0	0	-	-	-	7	53.5	53.5	-	-	-	-	증 53.5㎡ (감 7기)
휴양시설		95.5	95.5	-	-	-	5	357.8	357.8	-	-	-	23	증 262.3㎡ (증 18기)
유희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1,055.70	1,055.70	1	881.34	3,381.66	7	866.5	866.5	1	820.66	3,142.2	4	감 189.2㎡ (감 3기)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1	-
관리시설		-	-	-	-	-	0	-	-	-	-	-	75	(증 75기)
녹지 및 기타		2,227.90	-	-	-	-	-	2,100.3	-	-	-	-	-	감 127.6㎡
시설율 (법정제한없음)		(2,217.4 / 4,445.3) x 100 = 49.88%						(2,345.0 / 4,445.3) x 100 = 52.75%						
건폐율 (법정 20%)		(881.34 / 4,445.3) x 100 = 19.83%						(820.66 / 4,445.3) x 100 = 18.46%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증산동 263일대	4,445.3	2,217.4	철골 콘크리트	1동	881.34	3,381.66	19		증산동 263일대	4,445.30	2,345.0	철골 콘크리트	1동	820.66	3,142.2	104	(증 85기)
기반시설	소 계		증산동 263일대	1,066.2	1,066.2							증산동 263일대	1,067.2	1,067.2					1	증 1.0㎡ (증 1기)
	도 로			597.4	597.4								504.0	504.0						감 93.4㎡
	광 장	가		468.8	468.8						가		563.2	563.2						증 94.4㎡
		가-1		121.4	121.4															폐지
											가-1		(154.0)	(154.0)						신설
		가-2		73.7	73.7															폐지
											가-2		(145.9)	(145.9)						신설
		가-3		13.7	13.7															폐지
											가-3		(42.6)	(42.6)						신설
		가-4		260	260															폐지
											가-4		(53.3)	(53.3)						신설
											가-5		(63.0)	(63.0)						신설
											가-6		(23.2)	(23.2)						신설
											가-7		(81.2)	(81.2)						신설
	엘리베이터										①								1	신설
조경시설	소 계		증산동 263일대							7		증산동 263일대	53.5	53.5						증 53.5㎡ (감 7기)
	수경시설	나									나		53.5	53.5						신설
		나-1									나-1		(9.2)	(9.2)						신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나-2									나-2		(44.3)	(44.3)						신설
	계단	①								1										(감 1기)
	옹벽	②								2										(감 2기)
	디딤석	③								4										(감 4기)
휴양시설	소 계		증산동 263일대	95.5	95.5					3		증산동 263일대	357.8	357.8					23	증 262.3㎡ (증 20기)
	휴게소	나		95.5	95.5						다		357.8	357.8						증 262.3㎡
		나-1		26.6	26.6															폐지
											다-1		(84.9)	(84.9)						신설
		나-2		31.1	31.1															폐지
											다-2		(69.8)	(69.8)						신설
		나-3		37.8	37.8															폐지
											다-3		(71.6)	(71.6)						신설
											다-4		(10.7)	(10.7)						
											다-5		(10.1)	(10.1)						
											다-6		(16.0)	(16.0)						신설
											다-7		(94.7)	(94.7)						신설
	파고라										②								1	신설 (증 1기)
	야외테이블										③								8	신설 (증 8기)
	등의자										④								6	신설 (증 6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연식 의자	⑤								3	⑤								8	(증 5기)
운동시설	소 계		증산동 263일대	1,055.70	1,055.70		1동	881.34	3,381.66	7		증산동 263일대	866.5	566.5		1동	820.66	3,142.2	4	감 189.2㎡ (감 3기)
	복합문화 체육센터	다		881.34	881.34	철근콘 크리트 조	1동	881.34	3,381.66		라		836.3	836.3	철근콘 크리트 조	1동	820.66	3,142.2		지하2층, 지상3층 감 45.0㎡
	야외 운동공간	라		174.36	174.36						마		30.2	30.2						감 144.2㎡
	생활체육시설	⑥								7	⑥								4	(감 3기)
편의시설	소 계		증산동 263일대									증산동 263일대							1	(증 1기)
	음수전										⑬								1	신설 (증 1기)
관리시설	소 계		증산동 263일대									증산동 263일대							75	(증 75기)
	공원안내판										⑦								8	신설 (증 8기)
	볼라드										⑧								10	신설 (증 10기)
	볼라드등										⑨								16	신설 (증 16기)
	공원등										⑩								34	신설 (증 34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CCTV										⑪								6	신설 (증 6기)
	분전함										⑫								1	신설 (증 1기)
녹지 및 기타	소 계		증산동 263일대	2,227.9								증산동 263일대	2,100.3							감 127.6㎡
	녹지			2,096.6									1,896.0							감 200.6㎡
	기타	마		131.3							바		204.3							증 73.0㎡
											바-1		(132.8)							부호변경 (마→바-1)
											바-2		(31.8)							신설
											바-3		(39.7)							신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71.2	597.4				
변경					192.0	504.0				
당초	소로	소 계			72.2	106.5				
변경					1.1	7.2				
폐지		3	1	6	48.5	69.2	진입로	녹지 및 기타	복합문화 체육센터 다	감 69.2㎡
신설		3	1	6.5	1.1	7.2	진입로	부지경계	복합문화 체육센터 라	증 7.2㎡
폐지		3	2	6	23.7	37.3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감 37.3㎡
당초	산책로	소 계			299.0	490.9				
변경					222.6	496.8				
폐지		4	1	3	19.1	63.1	연결로	광장-1	복합문화 체육센터 다	감 63.1㎡
신설			1	5	4.7	22.1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 가-1	증 22.1㎡
폐지		4	2	3	19.9	65.9	연결로	복합문화 체육센터 다	광장-2	감 65.9㎡
신설			2	2.0	4.7	11.5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 가-1	증 11.5㎡
폐지		4	3	1.5	19.0	34.2	연결로	부지경계	산책로-1	감 34.2㎡
신설			3	2	9.0	22.5	연결로	산책로 4-1	휴게쉼터 다-3	증 22.5㎡
폐지		4	4	1.5	59.0	32.8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2	감 32.8㎡
신설			4	1.2~4.2	115.8	236.4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2	증 236.4㎡
폐지		4	5	1.5	6.6	11.8	연결로	산책로-2	복합문화 체육센터 다	감 11.8㎡
신설			5	2	19.5	46.7	연결로	광장 가-3	광장 가-2	증 46.7㎡
폐지		4	6	1.5	19.4	10.8	연결로	복합문화 체육센터 다	산책로-2	감 10.8㎡
신설			6	2.7	43.4	109.1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2	증 109.1㎡
폐지		4	7	1.5	35.6	63.9	연결로	산책로-2	광장-2	감 63.9㎡
신설			7	1.5~5.9	9.9	16.5	연결로	광장 가-6	산책로 4-8	증 16.5㎡
폐지		4	8	1.5	37.9	68.3	연결로	광장-4	광장-3	감 68.3㎡
신설			8	2.4	11.1	26.6	연결로	광장 가-5	광장 가-7	증 26.6㎡
폐지		4	9	1~2	60.7	97.2	연결로	부지경계	소로-1	감 97.2㎡
신설			9	1.2	4.5	5.4	연결로	기타 바-3	휴게쉼터 다-7	증 5.4㎡
폐지		4	10	2	21.8	42.9	연결로	부지경계	소로-1	감 42.9㎡

조 성 계 획 도

당 초

증산문화공원(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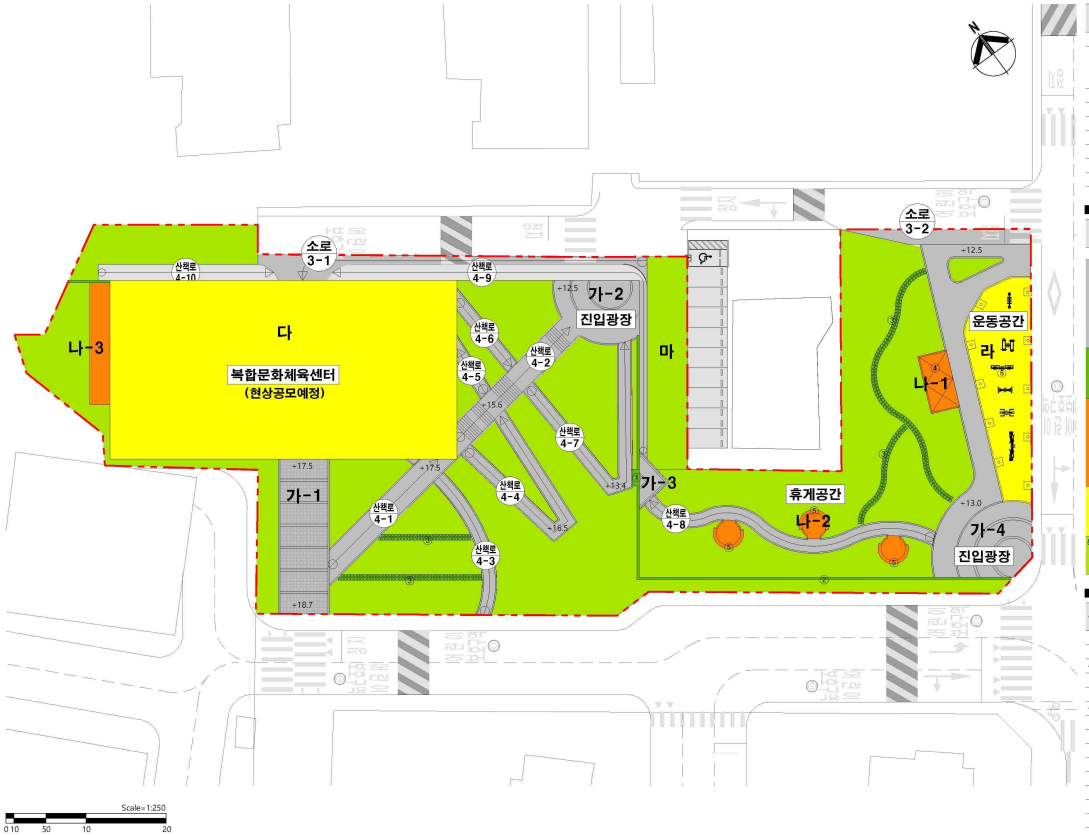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4,445.3	2,217.4	1동	881.34	3,381.66	19	
기반시설	소계	1,066.2	1,066.2	-	-	-	-	
	도로	597.4	597.4	-	-	-	-	
	광장	468.8	468.8	-	-	-	-	
조경시설		-	-	-	-	-	7	
휴양시설		95.5	95.5	-	-	-	5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1,055.7	1,055.7	1동	881.34	3,381.66	7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2,227.9	-	-	-	-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445.3	2,217.4		1동	881.34	3,381.66	19	
기반시설	소계		1,066.2	1,066.2		-	-	-	-	
	도로		597.4	597.4		-	-	-	-	
	광장	가	468.8	468.8		-	-	-	-	
		가-1	121.4	121.4		-	-	-	-	
		가-2	73.7	73.7		-	-	-	-	
		가-3	13.7	13.7		-	-	-	-	
		가-4	260.0	260.0		-	-	-	-	
조경시설	소계		-	-		-	-	-	7	
	계단	①	-	-		-	-	-	1	
	옹벽	②	-	-		-	-	-	2	
	디딤석	③	-	-		-	-	-	4	
휴양시설	소계		95.5	95.5		-	-	-	5	
	휴게쉼터	나	95.5	95.5		-	-	-	-	
		나-1	26.6	26.6		-	-	-	-	
		나-2	31.1	31.1		-	-	-	-	
		나-3	37.8	37.8		-	-	-	-	
	파고라	④	-	-		-	-	-	2	
	안식의자	⑤	-	-		-	-	-	3	
운동시설	소계		1,055.7	1,055.7		1동	881.34	3,381.66	7	
	복합문화체육센터	다	881.34	881.34	철근콘	1동	881.34	3,381.66	-	
	야외운동공간	라	174.36	174.36		-	-	-	-	
	생활체육시설	⑥	-	-		-	-	-	7	
녹지 및 기타	소계		2,227.9	-		-	-	-	-	
	녹지		2,096.6	-		-	-	-	-	
	기타	마	131.3	-		-	-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597.4				
소로	소계					106.5				
신규	소로	3	1	6.0	48.5	69.2	진입로	녹지 및 기타	경불문체육센터 다	
"	소로	3	2	6.0	23.7	37.3	진입로	푸지경계	푸지경계	
산책로	소계					490.9				
신규	산책로	4	1	3.0	19.1	63.1	연결로	광장 가-1	경불문체육센터 다	
"	산책로	4	2	3.0	19.9	65.9	연결로	경불문체육센터 다	광장 가-2	
"	산책로	4	3	1.5	19.0	34.2	연결로	푸지경계	산책로 4-1	
"	산책로	4	4	1.5	59.0	32.8	연결로	산책로 4-2	산책로 4-2	
"	산책로	4	5	1.5	6.6	11.8	연결로	산책로 4-2	경불문체육센터 다	
"	산책로	4	6	1.5	19.4	10.8	연결로	경불문체육센터 다	산책로 4-2	
"	산책로	4	7	1.5	35.6	63.9	연결로	산책로 4-2	광장 가-2	
"	산책로	4	8	1.5	37.9	68.3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3	
"	산책로	4	9	1 ~ 2	60.7	97.2	연결로	광장 가-3	소로 3-1	
"	산책로	4	10	2.0	21.8	42.9	연결로	녹지 및 기타	소로 3-1	

서울특별시
2026. 6. 11. (목)

조 성 계 획 도

변 경

증산문화공원(가칭)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옥외설치물 (기)	비고
계		4,445.3	2,345.0	1동	820.66	3,142.20	104	시설율 52.75%
기반시설	소계	1,067.2	1,067.2	-	-	-	1	
	도로	504.0	504.0	-	-	-	-	
	광장	563.2	563.2	-	-	-	-	
조경시설		53.5	53.5	-	-	-	-	
휴양시설		357.8	357.8	-	-	-	23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866.5	866.5	1동	820.66	3,142.20	4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1	
관리시설		-	-	-	-	-	75	
녹지 및 기타		2,100.3	-	-	-	-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옥외설치물 (기)	비고
합계			4,445.3	2,345.0		1동	820.66	3,142.20	104	
기반시설	소계		1,067.2	1,067.2	-	-	-	-	1	
	도로		504.0	504.0	-	-	-	-	-	
	광장	가	563.2	563.2	-	-	-	-	-	
		가-1	154.0	154.0	-	-	-	-	-	
		가-2	145.9	145.9	-	-	-	-	-	
		가-3	42.6	42.6	-	-	-	-	-	
		가-4	53.3	53.3	-	-	-	-	-	
		가-5	63.0	63.0	-	-	-	-	-	
		가-6	23.2	23.2	-	-	-	-	-	
		가-7	81.2	81.2	-	-	-	-	-	
	엘리베이터	①	-	-	-	-	-	-	1	
조경시설	소계		53.5	53.5	-	-	-	-	-	
	수경시설	나	53.5	53.5	-	-	-	-	-	
		나-1	9.2	9.2	-	-	-	-	-	
		나-2	44.3	44.3	-	-	-	-	-	
휴양시설	소계		357.8	357.8	-	-	-	-	23	
	휴게쉼터	다	357.8	357.8	-	-	-	-	-	
		다-1	84.9	84.9	-	-	-	-	-	
		다-2	69.8	69.8	-	-	-	-	-	
		다-3	71.6	71.6	-	-	-	-	-	
		다-4	10.7	10.7	-	-	-	-	-	
		다-5	10.1	10.1	-	-	-	-	-	
		다-6	16.0	16.0	-	-	-	-	-	
		다-7	94.7	94.7	-	-	-	-	-	
	파고라	②	-	-	-	-	-	-	1	
	아외테이블	③	-	-	-	-	-	-	8	
	등의자	④	-	-	-	-	-	-	6	
	연식의자	⑤	-	-	-	-	-	-	8	
운동시설	소계		866.5	866.5	-	1동	820.66	3,142.20	4	
	복합문화체육센터	라	836.3	836.3	철근콘	1동	820.66	3,142.20	-	지하층 지상3층
	야외문화광장	마	30.2	30.2	-	-	-	-	-	
	생활체육시설	⑥	-	-	-	-	-	-	4	
편익시설	소계		-	-	-	-	-	-	1	
	음수전	⑬	-	-	-	-	-	-	1	
관리시설	소계		-	-	-	-	-	-	75	
	공원안내판	⑦	-	-	-	-	-	-	8	
	볼라드	⑧	-	-	-	-	-	-	10	
	볼라드등	⑨	-	-	-	-	-	-	16	
	공원등	⑩	-	-	-	-	-	-	34	
	CCTV	⑪	-	-	-	-	-	-	6	
	분전함	⑫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2,100.3	-	-	-	-	-	-	
	녹지		1,896.0	-	-	-	-	-	-	
	기타	바	204.3	-	-	-	-	-	-	
		바-1	132.8	-	-	-	-	-	-	
		바-2	31.8	-	-	-	-	-	-	
		바-3	39.7	-	-	-	-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504.0				
소로	소계					7.2				
신규	소로	3	1	6.5	1.1	7.2	진입로	부지경계	계획문화체육센터 라	
산책로	소계					496.8				
신규	산책로		1	4.2	4.7	22.1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 가-1	
	산책로		2	2.0	4.7	11.5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 가-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규	산책로		3	2.0	9.0	22.5	연결로	산책로 4-1	휴게쉼터 다-3	
,	산책로		4	1.2~4.2	115.8	236.4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2	
,	산책로		5	2.4	19.5	46.7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2	
,	산책로		6	2.7	43.4	109.1	연결로	광장 가-2	광장 가-2	
,	산책로		7	1.5~5.9	9.9	16.5	연결로	광장 가-6	산책로 4-6	
,	산책로		8	2.4	11.1	26.6	연결로	광장 가-5	광장 가-7	
,	산책로		9	1.2	4.5	5.4	연결로	기타 바-3	휴게쉼터 다-7	

서울특별시
2026. 6. 11. (목)

◈ 서대문구고시 제2026-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1981.7.30.)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1983.3.29.)로 지적승인된 서대문구 홍제동 161-1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변경 결정 취지

○ 지하철 3호선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홍제역 정거장)	서대문구 홍제동 161-1 일대	4,100	증) 68	4,168	서고시 제287호 (1981.07.30.)	• 경미한 변경 • 도로(중복결정) (4,100m2 → 4,168m2)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면적 변경 - 4,100㎡ ⇒ 4,168㎡ (증 68㎡, 증 1.7%)	•지하철 정거장 교통약자(노인, 임산부) 이용편의를 위한 홍제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면적 변경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330-16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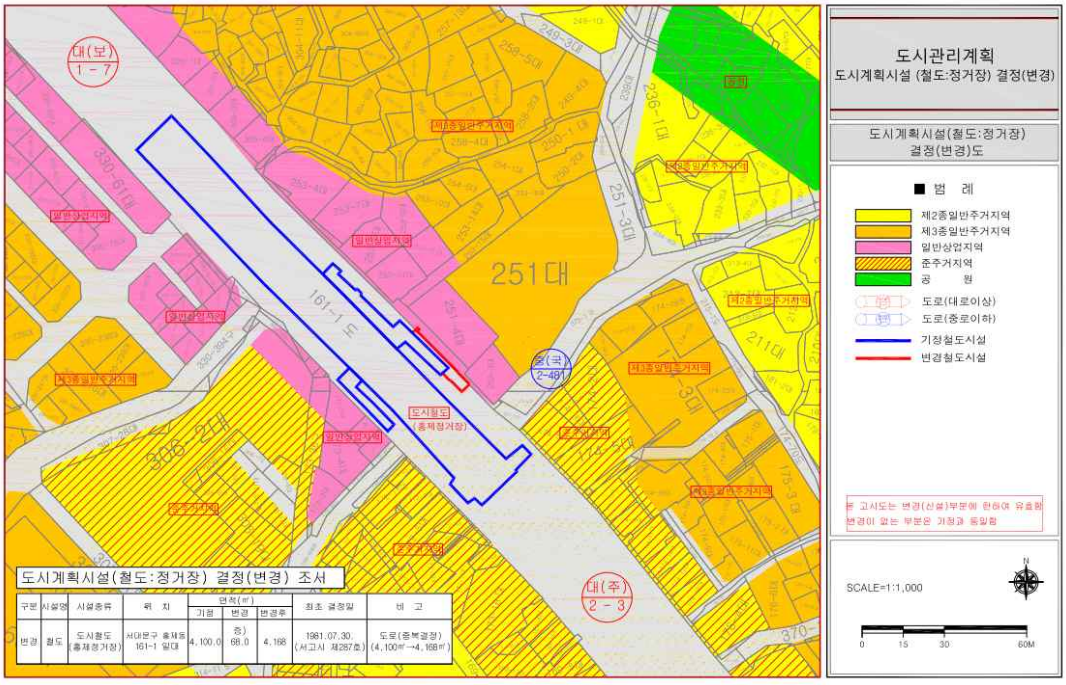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철도:정거장)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도
범 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 원
도로(대로이상)
도로(중로이하)
기정철도시설
변경철도시설
SCALE=1:1,000
0 15 30 60M
251대
306-2대
도시철도 (홍제정거장)
대(보) 1-7
중(국) 2-491
대(주) 2-3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종류 위 치 면적(㎡) 기점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철도 도시철도 (홍제정거장) 서대문구 홍제동 161-1 일대 4,100.0 하) 68.0 4,168 1981.07.30. (서고시 제287호) 도로(중복결정) (4,100㎡→4,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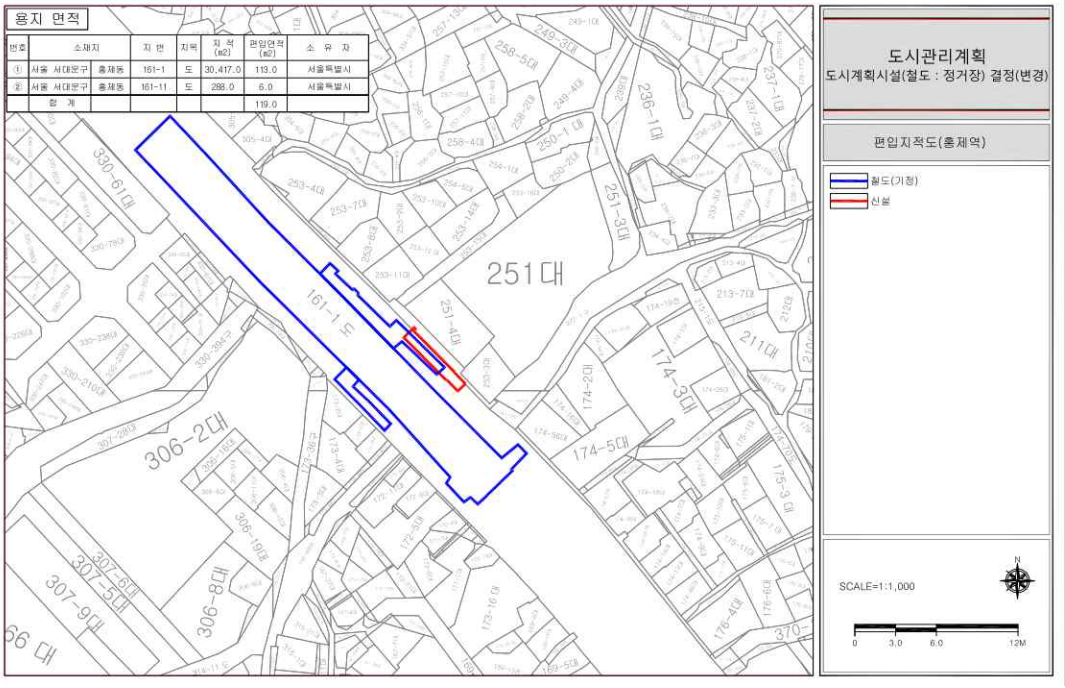
용지 면적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1-1 도 30,417.0 113.0 서울특별시
②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1-11 도 288.0 6.0 서울특별시
합 계 119.0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 결정(변경)
편입지적도(홍제역)
철도(기정)
신설
SCALE=1:1,000
0 3.0 6.0 12M
251대
306-2대

◈ 양천구고시 제2026-54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목동 408-78)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2023.09.14.)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73호(2025.12.0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양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5.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양 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 408-78번지 부지의 목1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원활한 공공청사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선 계획(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기정

구 분	도면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Ⅰ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접부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접가로
	Ⅱ	목동중앙로(4단지 외), 목동서로, 목동동로,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8길, 목동서로10길, 목동서로12길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목동중앙로(4단지)	획지선으로부터 8m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Ⅲ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Ⅳ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Ⅷ	목동서로변 (목동 408-78)	-	획지선으로부터 3m	
	Ⅵ	목동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Ⅶ	목동로3길변	획지선으로부터 6m	-	12단지유치원
	Ⅴ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 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특별계획구역 1-3내 열린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건축한계선	Ⅰ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접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접가로
	Ⅱ	목동중앙로(4단지 외),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8길, 목동서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목동중앙로(4단지)	획지선으로부터 8m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Ⅲ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Ⅳ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구 분	도면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 고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IX	목동서로변 (목동 408-78 가각부)	-	획지선으로부터 1.5m	
	Ⅷ	목동서로변 (목동 408-78)	-	획지선으로부터 3m	
	Ⅵ	목동동로8길	획지선으로부터 6~10m	-	14단지 중앙 가로
	Ⅶ	목동로3길변	획지선으로부터 6m	-	12단지유치원
	V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 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특별계획구역 1-3내 열린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변경	· 경계복원 측량 결과에 따른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복합청사의 기능적 공간 확보 및 디자인을 유지하여 주민 서비스의 질과 도시 미관적 상징성을 제고하고자 건축한계선 변경 (3m → 1.5m)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색채 등 계획 : 변경없음

다) 대지 안의 공지 계획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계획과(☎2620-3507)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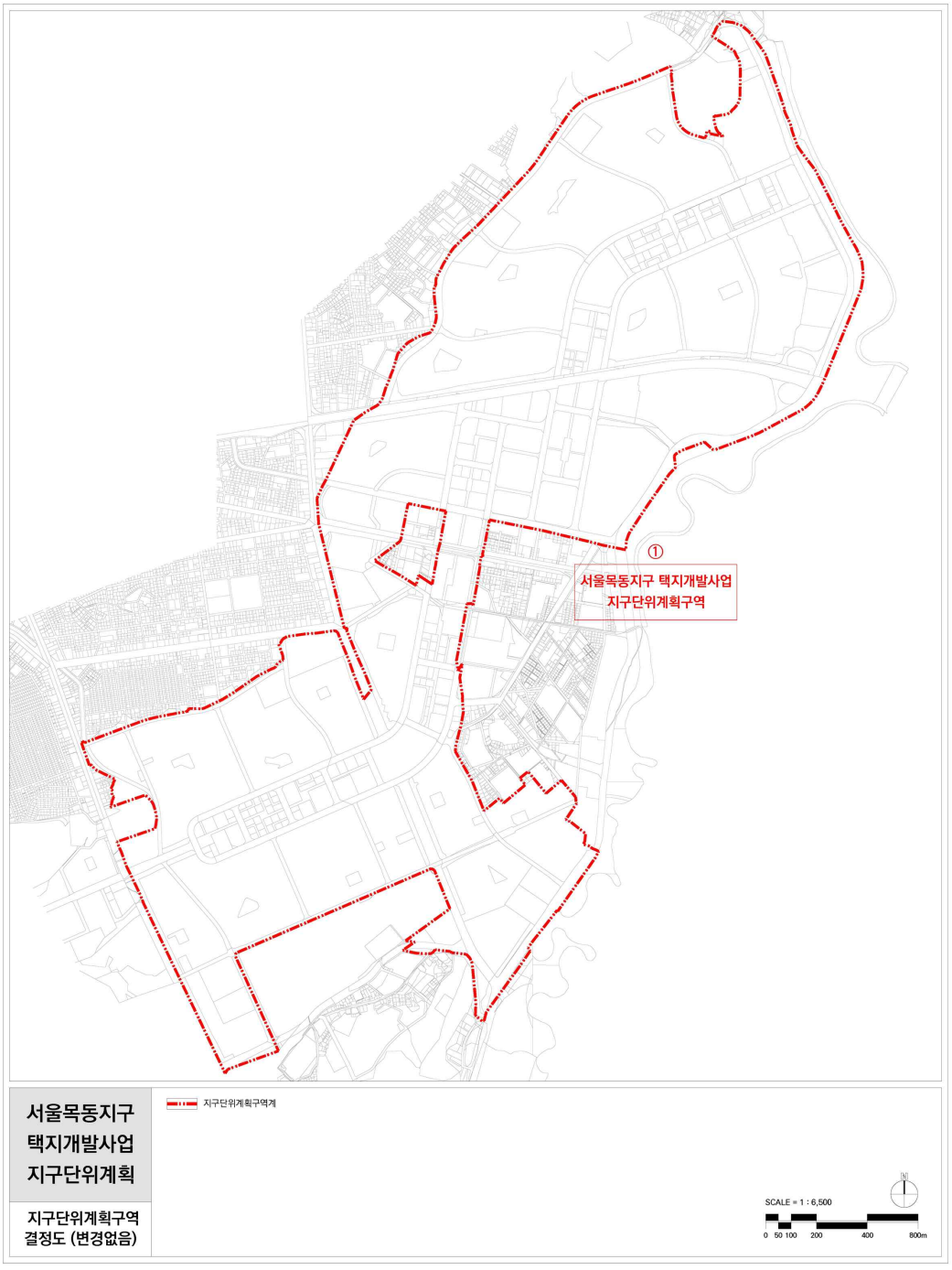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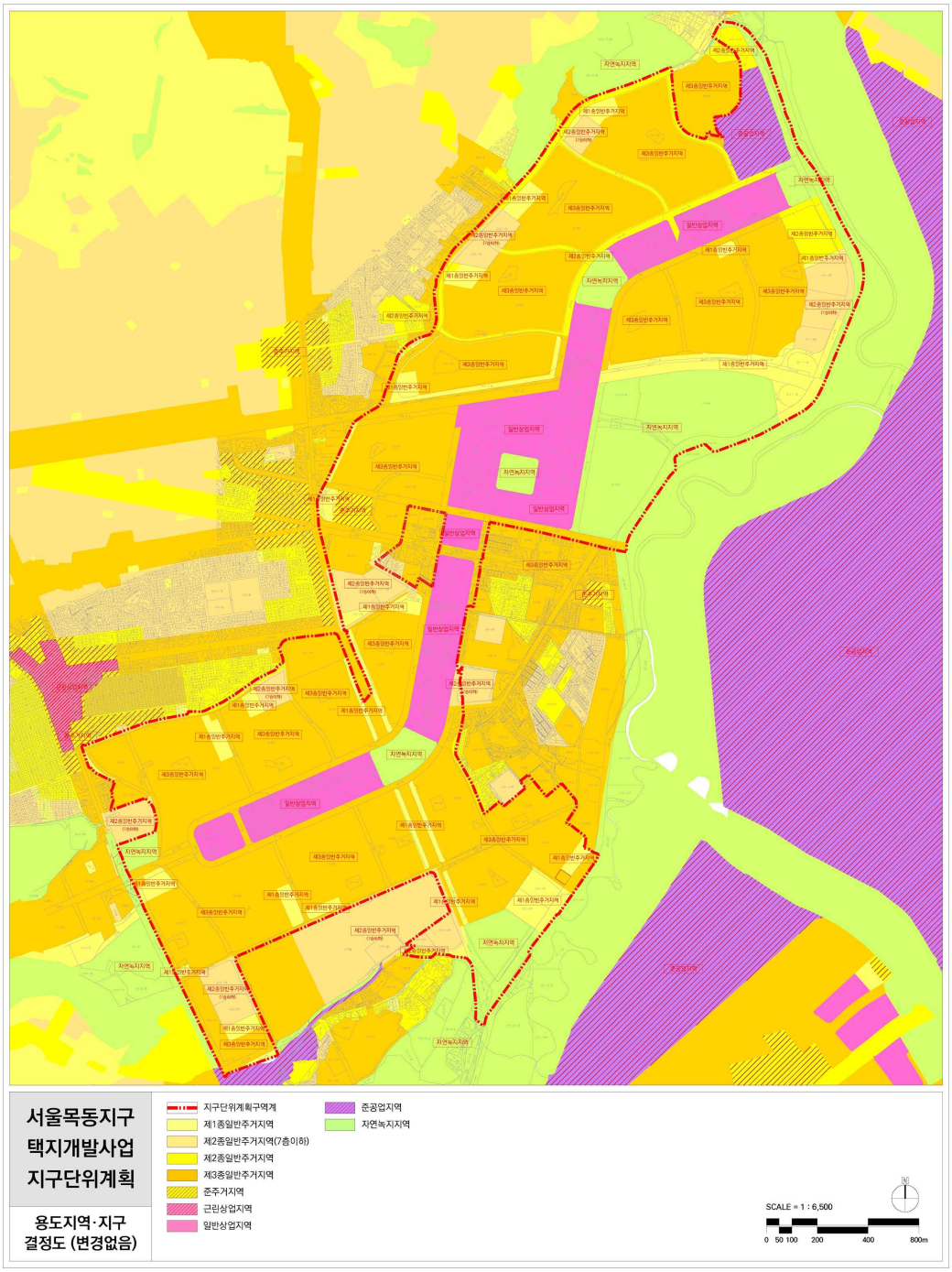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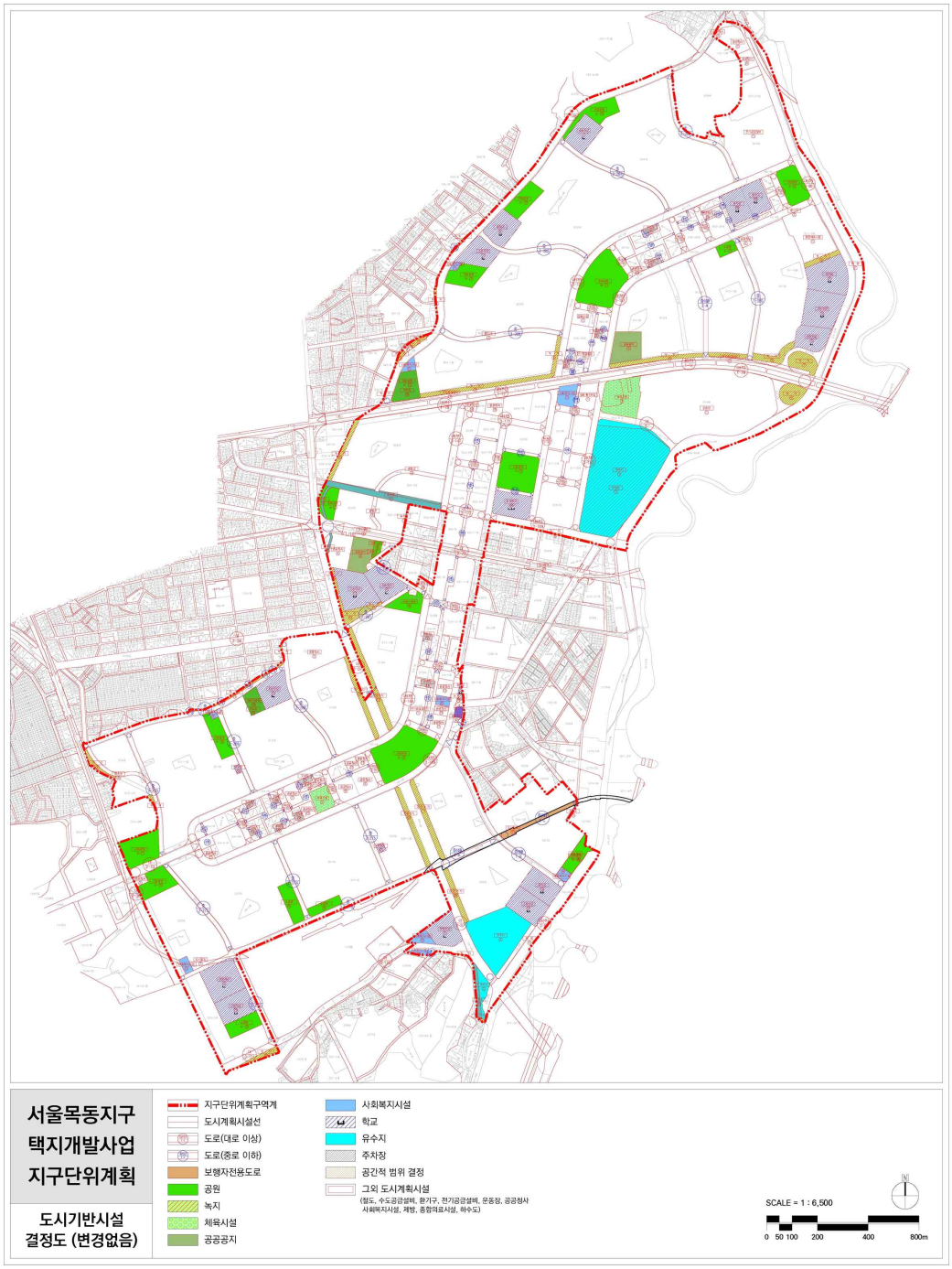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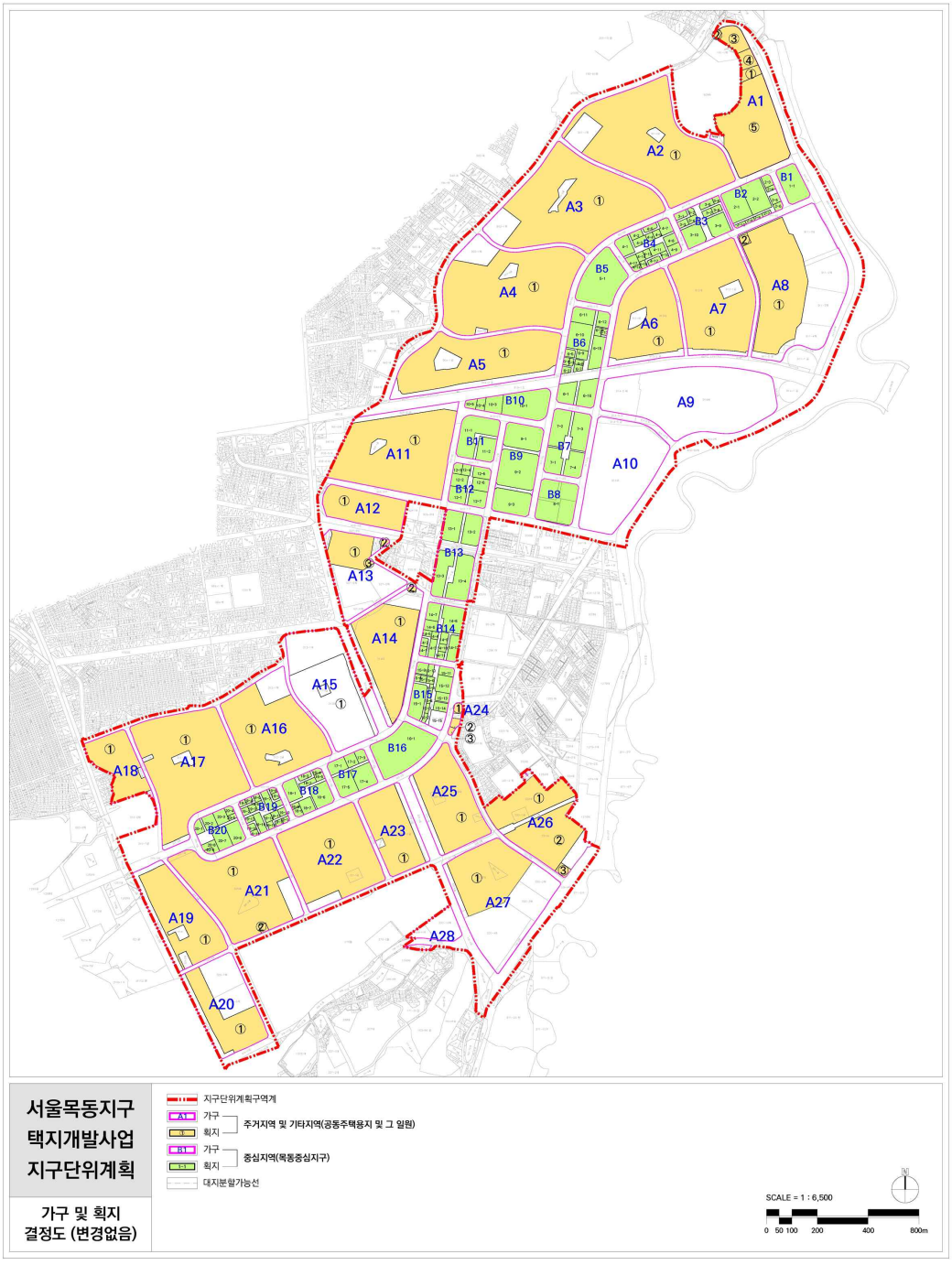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
결정도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계
가구
획지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그 일원)
가구
획지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대지분할가능선
SCALE = 1 : 6,500
0 50 100 200 400 800m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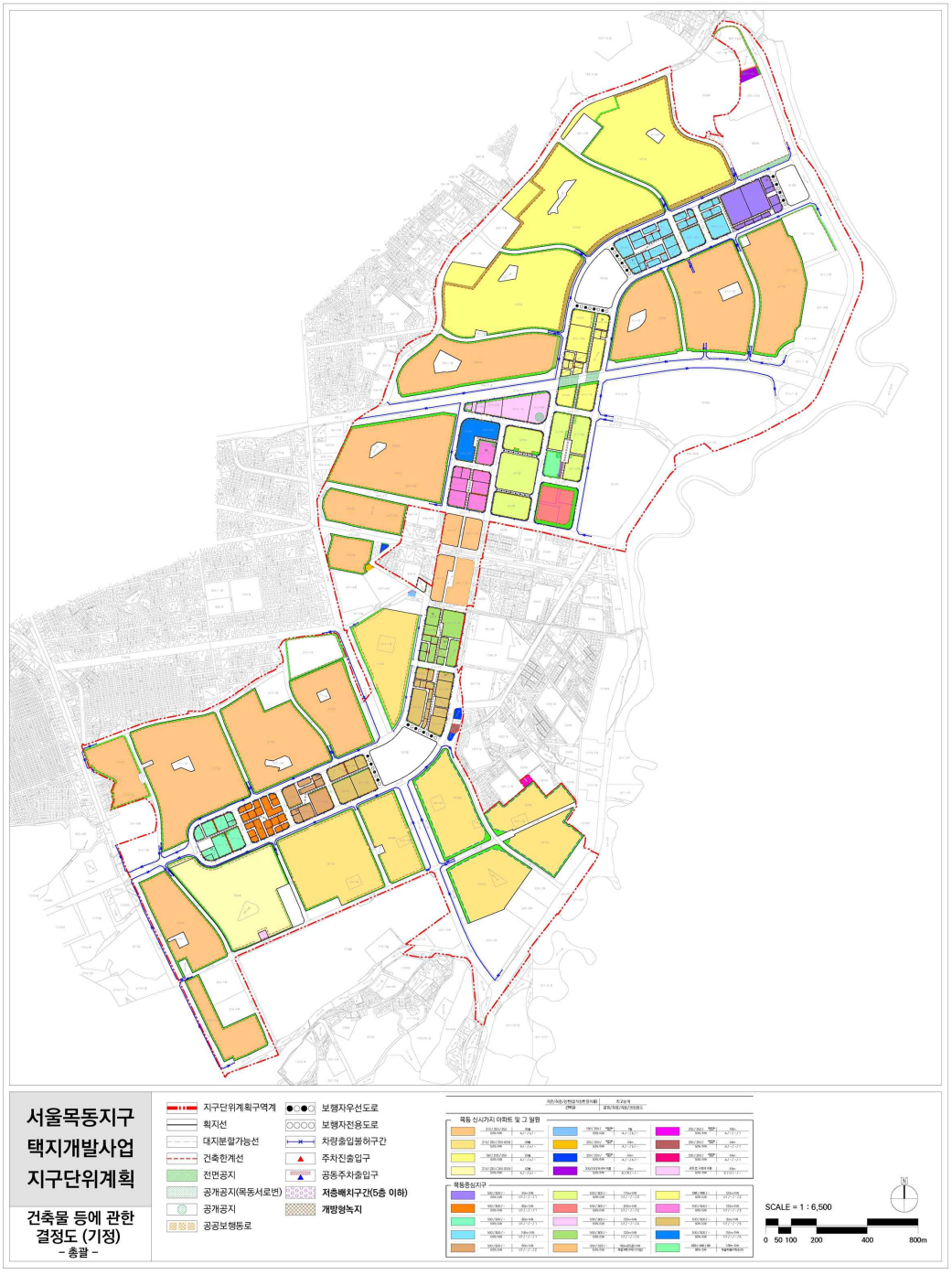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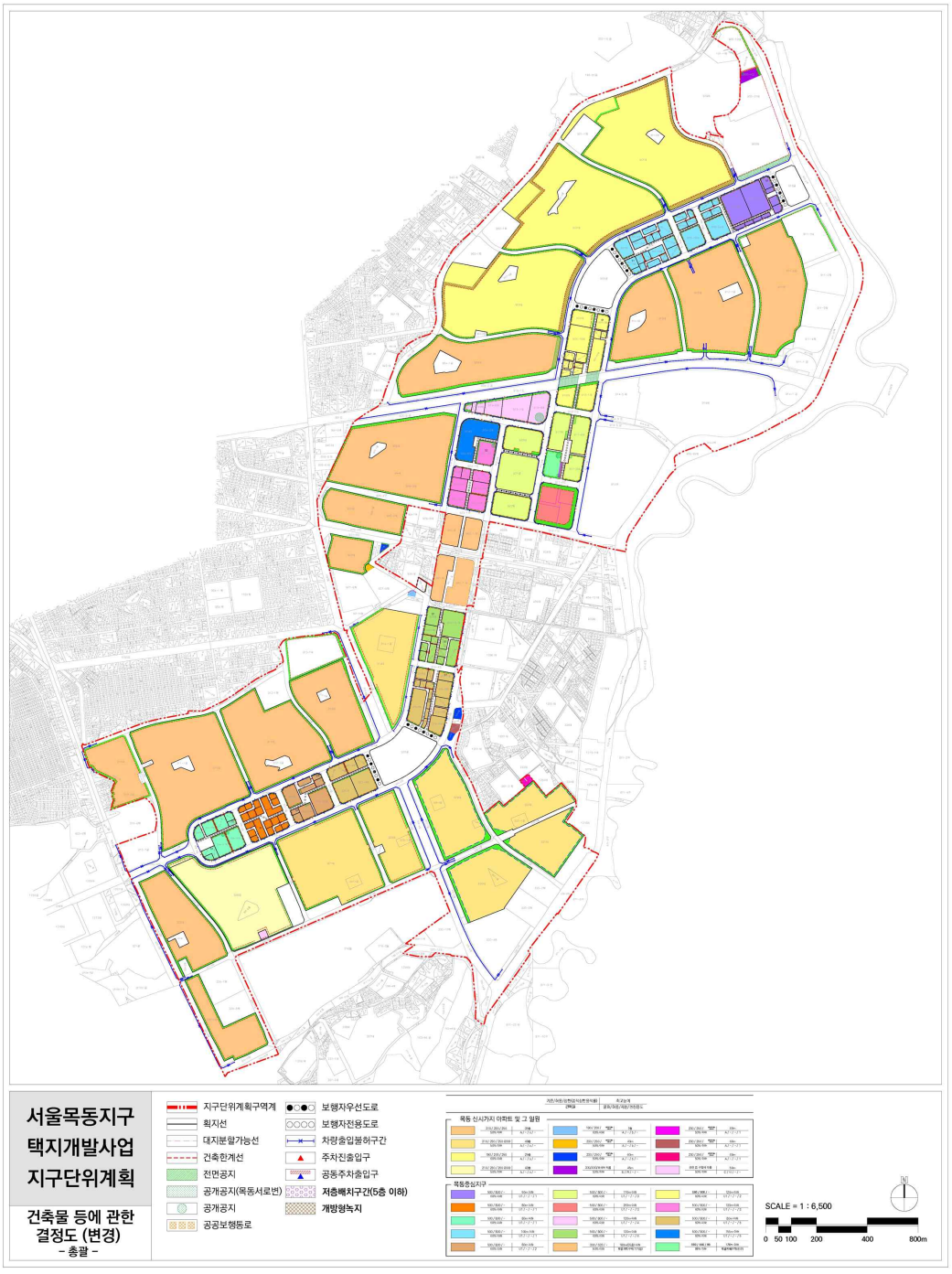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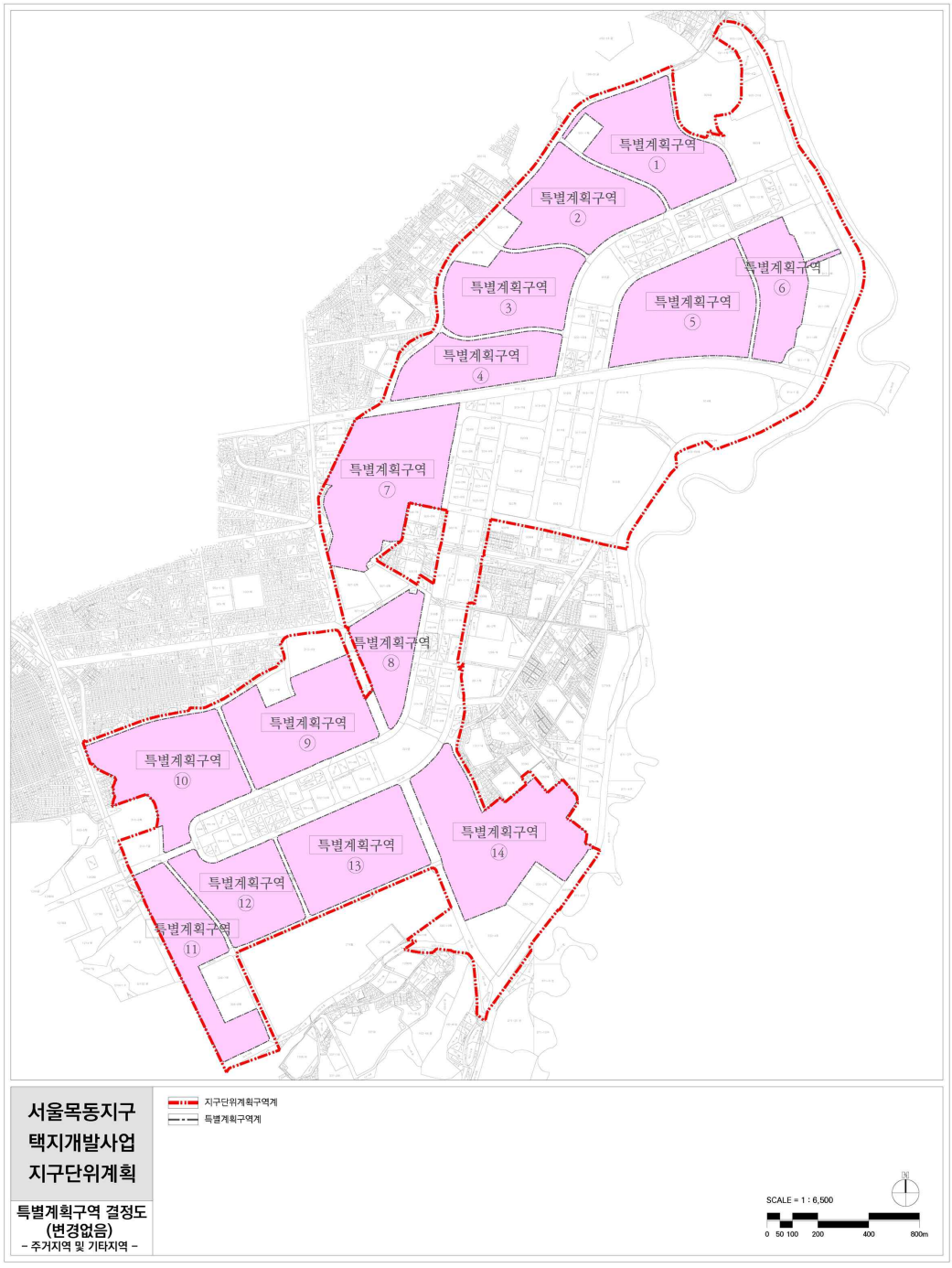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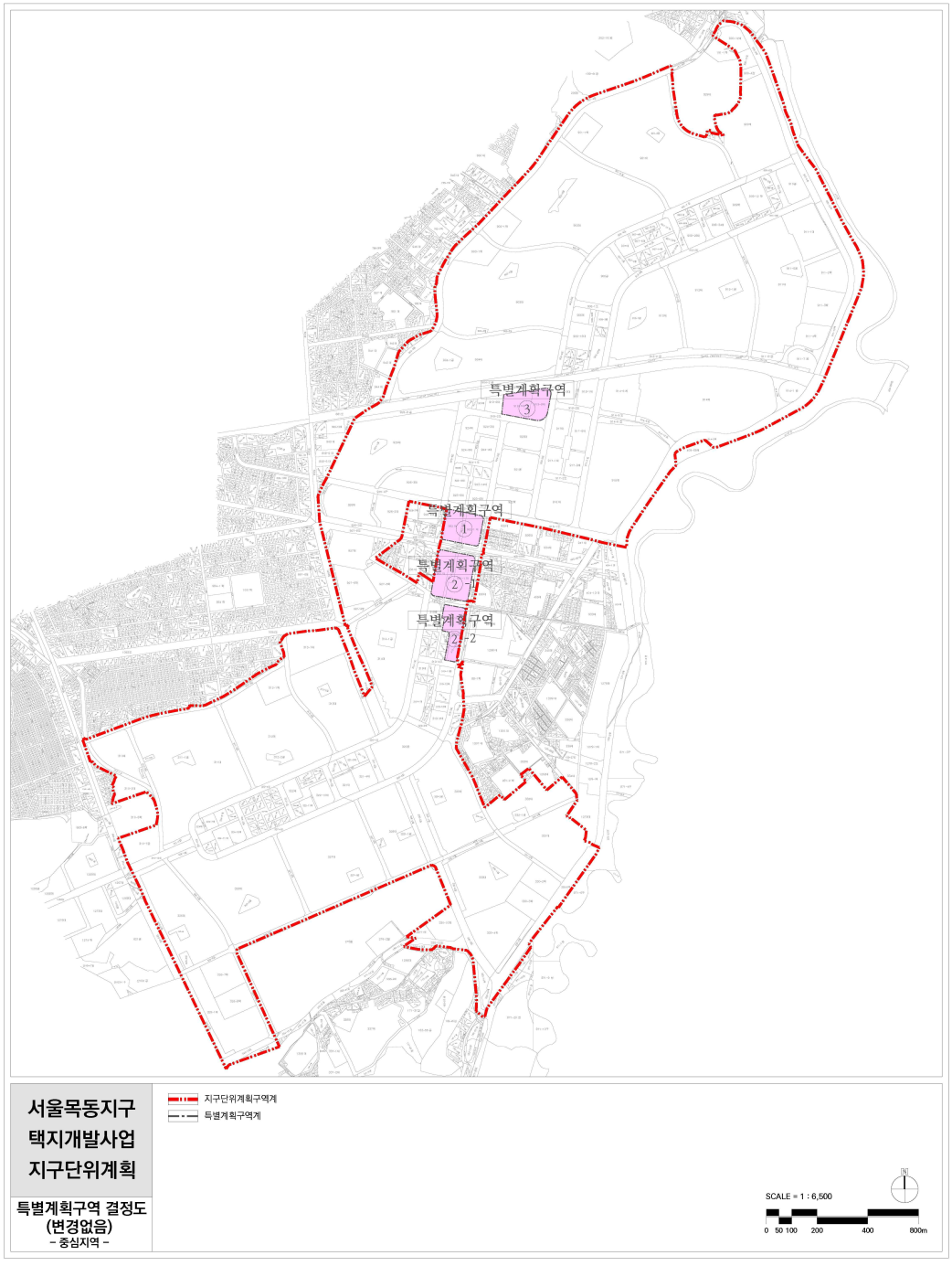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③
특별계획구역 ①
특별계획구역 ②-1
특별계획구역 ②-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중심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계
특별계획구역계
SCALE = 1 : 6,500
0 50 100 200 400 800m

◈ 강남구고시 제2026-109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호(2026.1.15.)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Ⅰ. 결정 취지

공공기여시설 위치 변경 및 감정평가 결과('26. 5. 28.)를 반영한 공공기여 총량 및 공공기여 세부내역의 변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1.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공공기여계획 : 기정

구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기준	계획 내용	비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50%	800%	부지면적의 34.4% 이상 (1,175.8㎡)	• 공공기여율 : 총 34.4%(1,175.8㎡) - 지역필요시설 : 7.2% - 현금기부채납 : 27.2%	-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주2) 공공기여량은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 종전(61,100,000원/㎡, '24.05.31.기준), 종후(73,200,000원/㎡, ' 25.03.31. 기준) 중 종후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5-1-1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확정함

주3)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시행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이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기여 세부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2-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관부서)가 동의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함

■ 공공기여계획 : 변경

구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기준	계획 내용	비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50%	800%	부지면적의 29.2% 이상 (998.81㎡)	• 공공기여율 : 총 29.2%(998.81㎡) - 지역필요시설 : 7.3% - 현금기부채납 : 21.9%	한도규정 적용

주1) 공공기여량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종후가 77,950,000원/㎡, '26.01.15.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 조정
주2) 공공기여 총량 = (종후가 - 종전가) ÷ 단위면적당 산술평균값(종후) = (266,627,975,000원 - 188,771,095,000원) ÷ 77,950,000원/㎡ = 998.81㎡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기여 세부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2-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관부서)가 동의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함

■ 공공기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 공공기여율 : 총 34.4%(1,175.8㎡) - 지역필요시설 : 7.2% - 현금기부채납 : 27.2%	• 공공기여율 : 총 29.2%(998.81㎡) - 지역필요시설 : 7.3% - 현금기부채납 : 21.9%	• 감정평가 결과('26.05.28.)를 반영한 공공기여 총량 및 공공기여 세부내역 변경

■ 공공기여 세부내역 : 기정

구분		공공기여내역					건축물 연면적(㎡)	위치	비고
		계 (㎡)	부지제공면적 (㎡)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구성비 (%)			
구역 내 (시설)	강남 가족 창업·창작 지원센터	247.6	164.4	83.2	-	7.2 (21.1)	2,072.2	지상4층 (지하1층 로비, 지하3층 주차장 면적 포함)	-
구역 외 (비용)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649.7	-	-	649.7	19.0 (55.2)	-	서울시	설치비용 70%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78.5	-	-	278.5	8.1 (23.7)	-	강남구	설치비용 30%
	소계	928.2	-	-	928.2	27.2 (78.9)	-	-	-
합계(㎡)		1,175.8	164.4	83.2	928.2	34.4 (100.0)	2,072.2	-	-

주1) 토지주가 제시한 종후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함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5-1-1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확정함
주3) 공공기여 시설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와 상층부 권장용도 사이에 입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승인 전 저층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로활성화 용도가 아닌 경우) 공공시설 위치를 조정하도록 함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기여 세부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2-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관부서)가 동의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함

■ 공공기여 세부내역 : 변경

구분		공공기여내역					건축물 연면적(㎡)	위치	비고
		계 (㎡)	부지제공면적 (㎡)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구성비 (%)			
구역 내 (시설)	강남 가족 창업·창작 지원센터	250.41	166.57	83.84	-	7.3 (25.1)	2,158.89	지상3층 (지하1층 로비, 지하3층 주차장 면적 포함)	-
구역 외 (비용)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523.88	-	-	523.88	15.3 (52.4)	-	서울시	설치비용 70%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24.52	-	-	224.52	6.6 (22.5)	-	강남구	설치비용 30%
	소계	748.40	-	-	748.40	21.9 (74.9)	-	-	-
합계(㎡)		998.81	166.57	83.84	748.40	29.2 (100.0)	2,158.89	-	-

주1) 공공기여량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 (종후가 77,950,000원/㎡, '26.01.15.기준)으로 산정
주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 조정
주3) 공공기여 시설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와 상층부 권장용도 사이에 입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승인 전 저층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로활성화 용도가 아닌 경우) 공공시설 위치를 조정하도록 함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기여 세부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2-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관부서)가 동의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함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기정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 기여율	• 공공기여 기준 : 34.4%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시행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이 조정될 수 있음	• 부지면적의 34.4% • 세부내용 - 지역필요시설 7.2% - 현금기부채납 27.2%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8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용적률 10% 이상	• 비주거 100%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비주거 100%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85㎡ 이하	• 전체 비주거시설로 해당없음		
건축물 형태		•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1가지 이행 적용 - 친환경 건축물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역사문화 보전 해당없음)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전체 비주거시설로 해당없음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24.12.26.기준)
주2) 향후, 건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변경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 기여율	• 공공기여 기준 : 29.2% 이상주2)	• 부지면적의 29.2%(한도규정 적용) • 세부내용주3) - 지역필요시설 7.3% - 현금기부채납 21.9%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8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용적률 10% 이상	• 비주거 100%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비주거 100%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85㎡ 이하	• 전체 비주거시설로 해당없음		
건축물 형태		•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1가지 이행 적용 - 친환경 건축물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역사문화 보전 해당없음)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전체 비주거시설로 해당없음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24.12.26.기준)
주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 조정
주3) 향후, 건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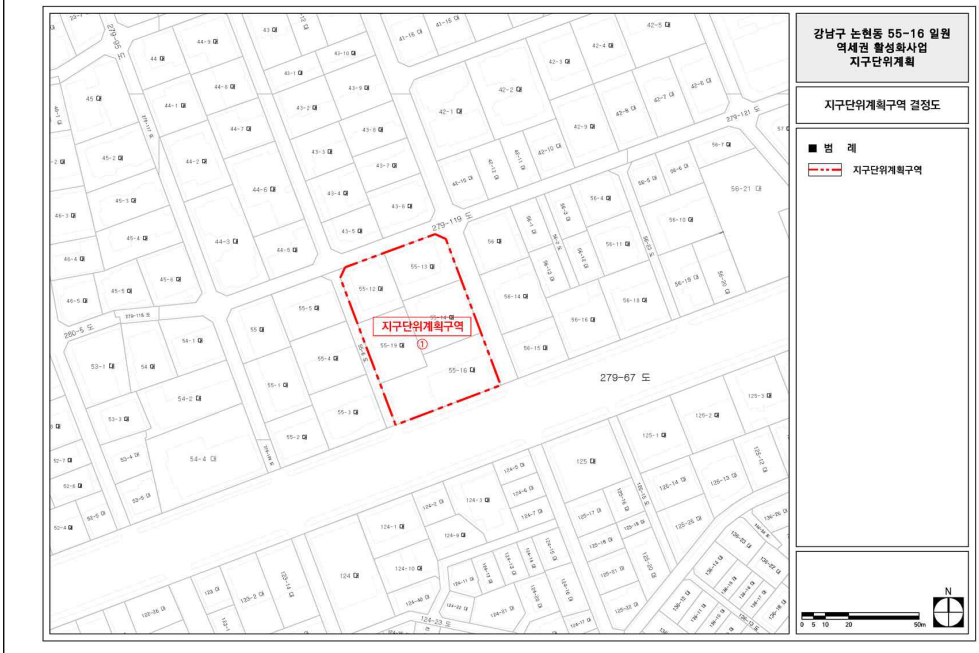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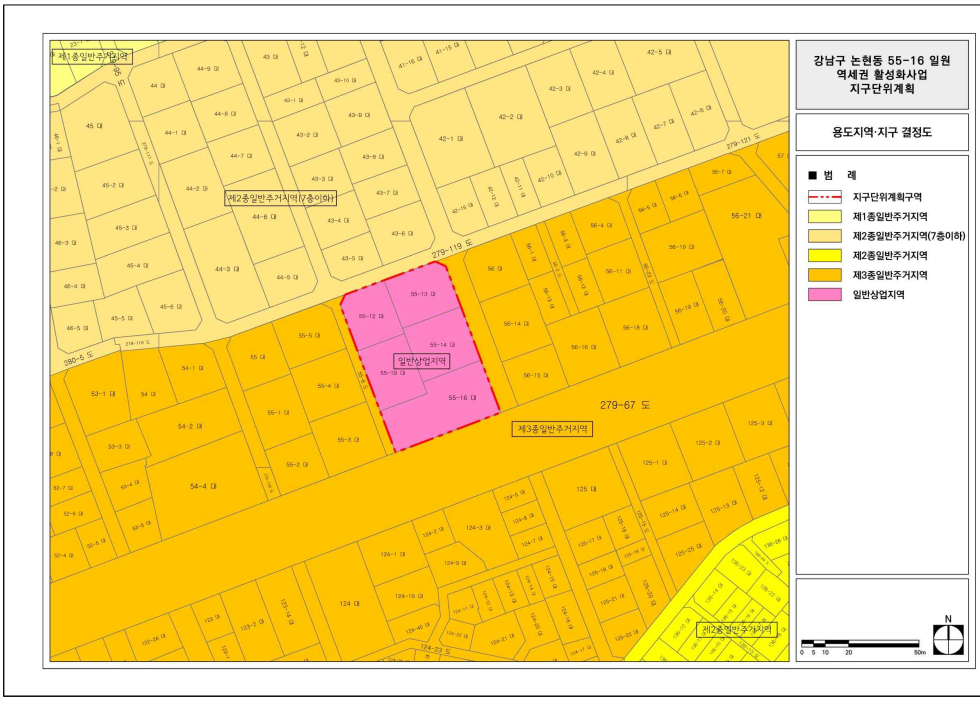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강동구고시 제2026-107호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26호(2026. 3. 12.)로 결정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강 동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명일동 305-51 관련하여 대상지에 지정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 공동주차 출입구를 지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명일동 305-51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단, 공동개발 미이행시 공동주차출입구 설치)	◦양재대로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명일동 305-51) 해제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 출입구		-	◦공동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	

-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명일동 305-51)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 및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이면부 필지와의 공동개발이 어려워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을 통해 개별 필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Ⅲ. 관계도서: 생략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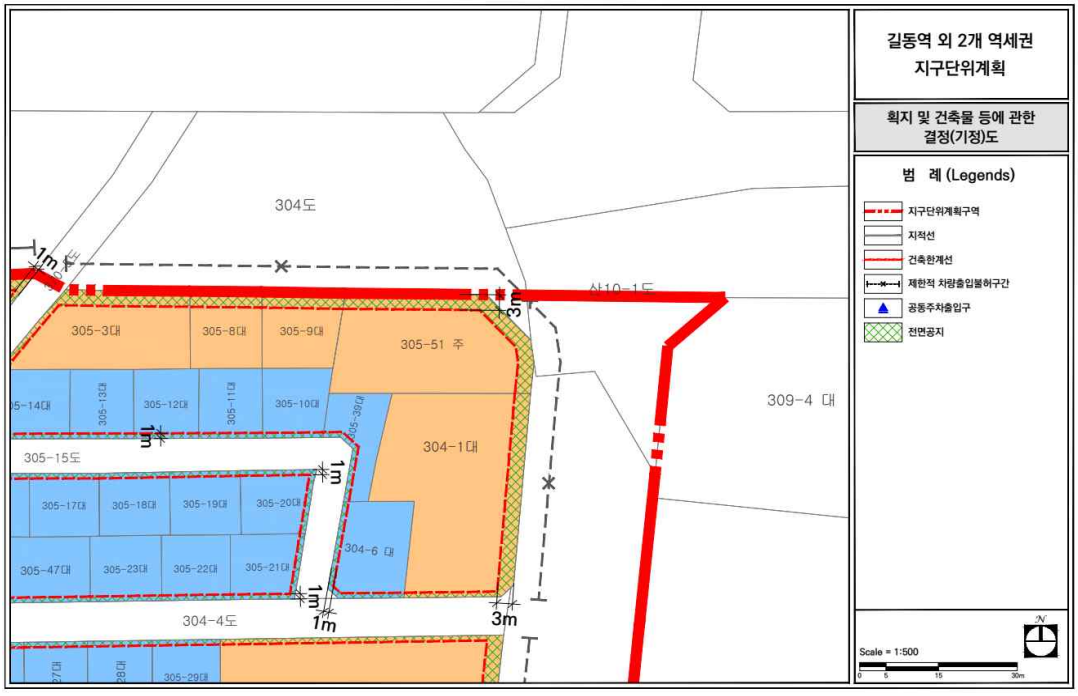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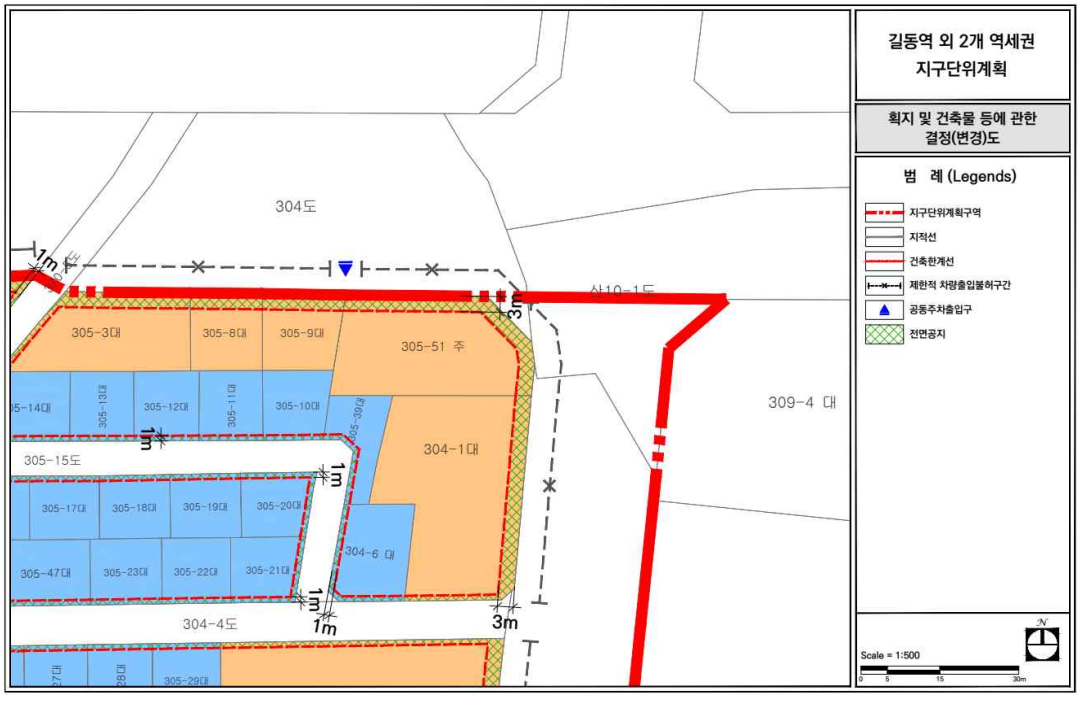

◈ 강동구고시 제2026-108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 12. 31.)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강 동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453-1 외 1필지 관련하여 대상지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 주차출입구를 지정하는 사항임

Ⅱ.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위 치 (가구번호)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길동 453-1 외 1필지 (E3)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천호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길동 453-1 외 1필지)해제 ○ 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	결정도 참조
주 차 출입구		○ 1개소 ※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 2개소 ※ 공동주차출입구 1개소, 주차출입구 1개소	

–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길동 453-1 외 1)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 및 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	○ 공동주차출입구가 천호공영주차장과 저촉되어, 차량 진출입 시 동선 혼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하고 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하고자 함

Ⅲ. 관계도서: 생략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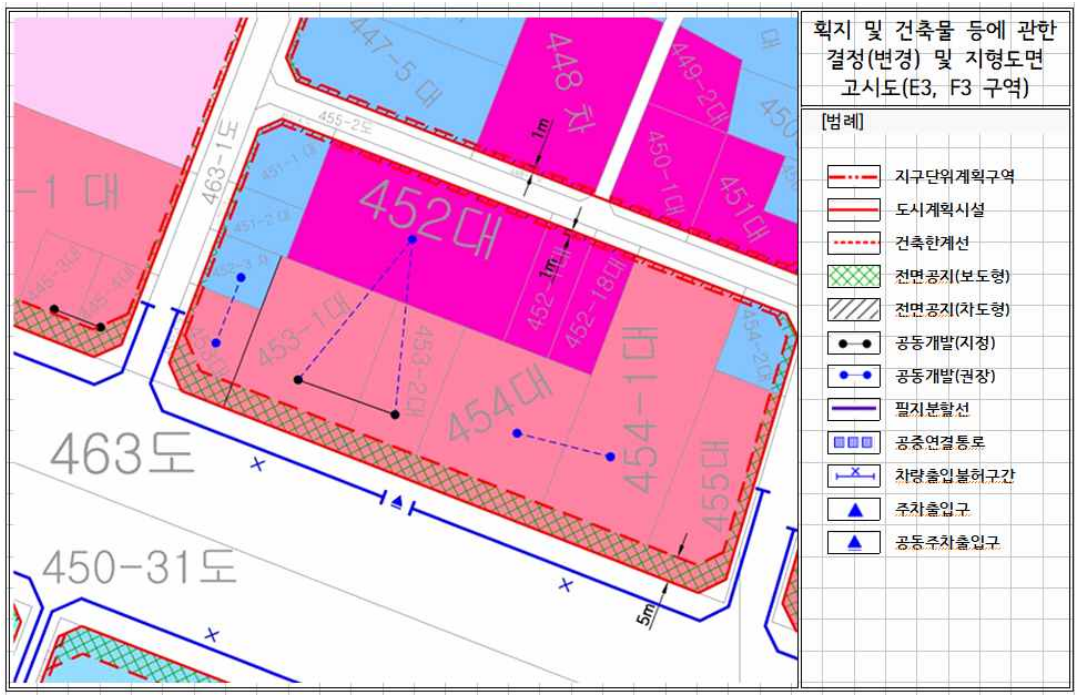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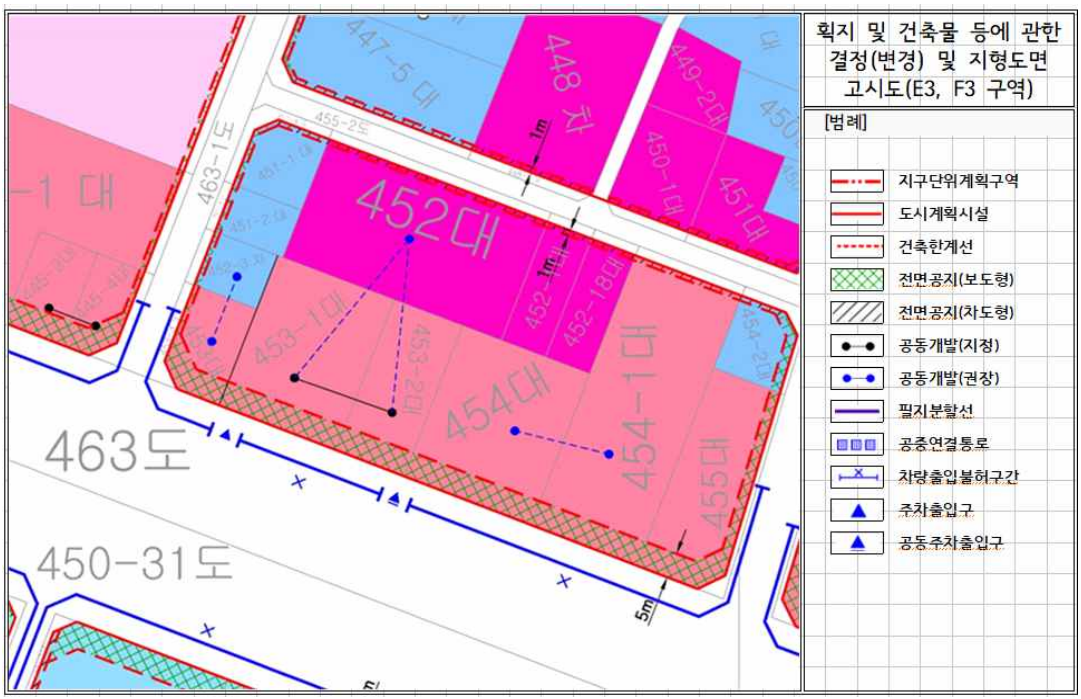

구 공 고

◈ 강북구공고 제2026-890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제설차량 주차장 등 건설사업]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로 · 철도)사업으로 시행하는『제설차량 주차장 등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였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합니다.

2.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강북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서류는 강북구청 건설관리과(☎901-5815)에 비치하고 공고 기간 중에 소유자에게 보입니다.

2026년 6월 11일
강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로 · 철도)사업 「제설차량 주차장 등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49길 1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3.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5-10 외 19필지
4. 공고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6. 5. 26. ~ 2026. 6. 10. [16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14, 미아동복합청사 4층)
6. 재결신청서 사본 및 부동산 등의 표시: 별첨
7. 기타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 불가

◈ 노원구공고 제2026-10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9 ~ 공릉동 382 일대 한천교 확장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6. 6. 11. ~ 2026. 6. 25.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3	20~22	집산 도로	1,800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일반 도로	-	서고제387호 (78.8.3.)	중복결정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 2,579
변경	중로	1	83	20~29	집산도로	1,800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일반 도로	-	서고제387호 (78.8.3.)	중복결정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 2,579 - 교통시설 도로(대2-86):223 - 교통시설 도로(중1-334):1,150 - 공간시설 소공원:329 - 방재시설 방수설비 : 10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83	중로 1-83	· 폭원 변경 - 폭원 20~22m→20~29m	· 한천교 차로 확장을 통한 교통처리능력 증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더불어, 섬밭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열람장소) 또는 온라인 의견제출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주민의견제출) → 주민의견서작성

바. 기타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공고 제2026-1177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6호(2021.06.10.)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제2002-251호(2002.6.2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제2012-22호(2012.1.26.)로 결정(변경)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주민의견 제출)-영등포구-해당 공고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6.06.11.(목) ~ 2026.07.13.(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02-2670-3802)
3. 의견제출 : 서면 제출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전자우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1) 서면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재개발사업과 민간재정비팀
   2) 전자우편 : a30830@ydp.go.kr
4. 공람내용 :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Ⅰ.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23,094.0	증) 26.0	23,120.0	서고시 제2021-266호 (2021.06.10.)	-

○ 구역 지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변경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면적 변경 - 23,094.0㎡ → 23,120.0㎡	2021년 정비구역 결정 당시 일부 편입면적 오기 등에 대한 면적 정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3.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각 지구별 개발에 따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현황:165세대 계획:998세대 (임대 116세대 포함) 증)833세대	-

4. 지구 지정(안)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 지구면적 (㎡)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신 설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지구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20,221.0	16,612.9	3,608.1	일반정비지구
신 설		2지구	영등포동4가 425-2번지 일대	1,955.0	1,813.0	142.0	소단위정비지구
신 설		3지구	영등포동4가 426-8번지 일대	944.0	944.0	-	소단위관리지구

○ 지구 지정(안)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 설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지구	◦ 일반정비지구 신설 - 증) 20,221.0㎡	◦ 영등포 도심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 지구 신설
신 설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지구	◦ 소단위정비지구 신설 - 증) 1,995.0㎡	◦ 기존 도시 조직 보전 및 소유자를 고려한 사업시행지구 신설

구분	구역명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 설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3지구	◦ 소단위관리지구 신설 - 증) 944.0㎡	◦ 기존 도시 조직 보전 및 소유자를 고려한 사업시행지구 신설

5.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3,094	사업시행지구	소계	18,451.9	-	-	-	-	-	-
				1획지	15,913.2	영등포동4가 431-6일대	주거·업무·판매	60이하	460/700/+α	150 이하	복합용지
				2획지	2,538.7	영등포동4가 425-2일대	업무·판매	60이하	460/700/+α	150 이하	복합용지
			존치지구		944.0	영등포동4가 426-8일대	-	60이하	390/515/+α	100 이하	존치정비
변경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3,120	사업시행지구	소계	19,369.9	-	-	-	-	-	-
				1지구	16,612.9	영등포동4가 431-6일대	주거	60이하	460/726/850	제한 없음	일반정비
				2지구	1,813.0	영등포동4가 425-2일대	업무·판매	60이하	460/726/+α	제한 없음	소단위정비
				3지구	944.0	영등포동4가 426-8일대	-	80이하	390/-/+α	제한 없음	소단위관리

Ⅱ.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094.0	증) 26.0	23,120.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3,064.0	증) 26.0	23,090.0	99.9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0.0	-	30.0	0.1	-

※ 구역면적 오기 정정에 따른 면적 증가(증)26.0㎡)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3,094.0	증) 26.0	23,120.0	100.00	-
사업시행지구	소 계		22,150.0	증) 970.0	23,120.0	100.0	
	획 지	소 계	18,451.9	증) 918.0	19,369.9	83.8	
		1획지	15,913.2	감) 15,913.2	-	-	
		2획지	2,538.7	감) 2,538.7	-	-	
		1지구	-	증) 16,612.9	16,612.9	7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지구	-	증) 1,813.0	1,813.0	7.8	영등포 우체국
		3지구	-	증) 944.0	944.0	4.1	신안산선 출입구
	정비기반시설	소 계	3,698.1	증) 52.0	3,750.1	16.2	
		도 로	3,698.1	증) 52.0	3,750.1	16.2	
존치지구			944.0	감) 944.0	-	-	신안산선 출입구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8	35~45	주간선 도로	1,350 (310)	영등포 로터리	문래동광장	일반 도로	서고시 제422호 (84.7.24.)	경인로
변경	대로	1	38	35~45	주간선 도로	1,350 (310)	영등포 로터리	문래동광장	일반 도로	서고시 제422호 (84.7.24.)	일부선형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33	25~39	보조간선 도로	1,560 (62)	영등포3가 대1-38	영등포동4가 151-2	일반 도로	서고시 제288호 (78.6.20.)	영등포 고가도로
변경	대로	3	133	25~39	보조간선 도로	1,560 (62)	영등포3가 대1-38	영등포동4가 151-2	일반 도로	서고시 제288호 (78.6.20.)	일부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0	10	집산도로	335 (335)	영등포동4가 357-9	영등포동4가 440-10	일반 도로	서고시 제2021-266호 (21.06.10.)	-

주) ( )안은 구역 내 포함되는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38	대로 1-38	◦ 도로 일부 선형 변경 - 구역 내 폭원 확장 B=35m → 35~38m (증) 3m	◦ 우체국부지 진입 완화차로 계획에 따라 경인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자 3m 완화차로 추가 확보
대로 3-133	대로 3-133	◦ 도로 일부 선형 변경 - 구역 내 폭원 확장 B=24m → 29m (증) 5m	◦ 1지구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차량 및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대상지 쪽으로 도로(영신로)를 5m 추가 확보

나)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시흥동 765-5철	여의도동 3-2도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 단지역 대림사거리역 신풍역 도림사거리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12,085	234,321.6	국토부고시 제2019 -446호 (19.8.27)	-
기정	2-사	철도	일반철도 (영등포역)	영등포동4가 423-98도	영등포동4가 423-98도	-	133	10,487.0	국토부고시 제2019 -446호 (19.8.27)	본선과 중복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철도	영등포구 대림동 944-30 ~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길이	6,244.4m	국토부고시 제2024-423호 (24.8.14)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에 한함
				폭	도시계획시설 결정 폭		
				높이	해수면(+100) 24.77m ~ 56.35m		

나.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변경)(안)

구 분	사업 지구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 면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
								정비 기반 시설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현금	소계	
기정	사업시행 지구		22,150.0	18,451.9	3,698.1	2,732.0	-	966.1	-	-	-	4.36
변경	일반정비지구	1지구	20,221.0	16,612.9	3,608.1	3,136.2	69.3	402.6	1,929.7	2,071.0	4,403.3	21.78
		2지구	1,955.0	1,813.0	142.0	-	-	142.0	-	-	142.0	7.26

※ 순부담 기준 : 대지면적의 10% 이상 기타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확보

2)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변경)(안)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 면적

구 분	위 치		기반시설 면적(㎡)	비 고
1지구	합계		3,608.1	도로
	영등포동4가	357-9도	352.0	
		357-15도	390.0	
		403-3도	214.9	
		411-3대	5.1	
		411-11대	7.7	
		411-12대	77.4	
		411-18대	48.5	
		411-21대	30.2	

구 분	위 치		기반시설 면적(㎡)	비 고
		411-22대	4.4	
		411-23대	35.3	
		411-25도	6.0	
		429-2대	0.8	
		431-6차	28.8	
		432-1대	5.6	
		432-12대	20.1	
		432-13대	7.2	
		432-16대	1.0	
		432-17대	2.6	
		432-18대	7.9	
		432-19대	0.6	
		432-21대	6.2	
		440-1도	463.0	
		440-4도	237.4	
		440-5도	165.0	
		440-9도	648.9	
		440-10도	811.5	
		442-3도	30.0	
2지구	합계		142.0	도로
	영등포동4가	424-5도	0.6	
		424-8도	4.3	
		425-2대	135.5	
		425-18대	1.6	

※ 1지구 도로 면적은 금회 공부상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한 면적으로 변경(3,698.1㎡ → 3,608.1㎡)

나)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 면적

구 분	위 치	설치면적(㎡)	기부채납면적(㎡)			비 고
			부속토지	환산부지	합 계	
1지구	획지 내	13,359.10	950.0	979.7	1,929.7	공공임대주택 전용 84㎡형 66세대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 부지면적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인허가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평균하여 확정

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 고
1지구	합계			3,136.2	
	영등포동4가	357-9도	도로	352.0	
		357-15도	도로	390.0	
		403-3도	도로	208.0	
		411-25도	도로	6.0	
		440-1도	도로	463.3	
		440-4도	도로	232.3	
		440-5도	도로	154.4	
		440-9도	도로	573.0	
		440-10도	도로	727.2	
		442-3도	도로	30.0	

※ 기반시설 내 부분편입 면적은 CAD상 구적면적 기재

라)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지 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 고
1지구	합계			69.3	
	영등포동4가	403-3도	-	22.2	현황도로
		440-1도	-	15.9	현황도로
		440-4도	-	2.9	현황도로
		440-9도	-	28.3	현황도로

※ 편입면적은 CAD상 구적면적 기재

마) 매입대상 국·공유지 면적

구 분	위 치		지목	편입면적(㎡)	유상매입 면적(㎡)	소유자	비 고
1지구	합계			-	167.8	-	
	영등포동4가	411-22	대	5.0	4.4	기획재정부	
		419-12	도로	7.0	7.0	국토부	
		419-14	도로	135.0	80.4	국토부	
		427-1	대	30.0	30.0	기획재정부	
		427-7	대	46.0	46.0	기획재정부	

※ 편입면적은 CAD상 구적면적 기재

4. 현금 납부에 관한 사항

구 분	구역명	지구명	납부금액(원)	환산부지(㎡)	단위토지가(원/㎡)	비 고
변 경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지구	46,100,000,000	2,071.0	22,259,852	

※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납부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평균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 납부금액 확정
※ 단위토지가(원/㎡)는 개별공시지가(2026.01) 11,129,969(원/㎡)의 2배로 계산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준(㎡)		계획(안)	비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시 주택조례		
신규	관리사무소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57.40	면적기준 없음	239.57	
	경비실			면적기준 없음		50	
	주민공동시설	소 계		2,495	3,118.75	3,779.22	
		경로당		면적기준없음	330	432.78	
		어린이집		면적기준없음	330	626.37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없음	158	247.55	
		다함께돌봄센터		면적기준없음	면적기준없음	222.07	
		주민운동시설(실외)				옥외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1,574.03	
		어린이놀이터		면적기준없음		676.42	

6.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안)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 정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3,094.0	사업 시행 지구	소 계	18,451.9	-	110	-	-	110	-	
				1획지	15,913.2	영등포동4가 431-6일대	110	-	-	110	-	
				2획지	2,538.7	영등포동4가 425-2일대						
			존치지구		944.0	영등포동4가 426-8일대	-	-	-	-	-	
변 경		23,120.0	소 계		19,369.9	-	111	1	-	110	-	
			1지구		16,612.9	영등포동4가 431-6일대	110	-	-	110	-	
			2지구		1,813.0	영등포동4가 425-2일대	1	1	-	-	-	
			3지구		944.0	영등포동4가 426-8일대	-	-	-	-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안)

가.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3,094	사업시행지구	소계	18,451.9	-	-	-	-	-	-
				1획지	15,913.2	영등포동4가 431-6일대	주거·업무·판매	60 이하	460/700/+α	150 이하	복합용지
				2획지	2,538.7	영등포동4가 425-2일대	업무·판매	60 이하	460/700/+α	150 이하	복합용지
			존치지구		944.0	영등포동4가 426-8일대	-	60 이하	390/515/+α	100 이하	존치정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획지	• 기준 - 주택건립규모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준수 - 임대주택의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2025기본계획' 상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2획지	• 해당없음								
최고높이제한			• 1획지 북측BL(영중로3길 북측) 내 최고높이 40m 제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영중로변 : 건축한계선 5m • 경인로변 : 건축한계선 3m(1~2층 저층부 건축한계선 5m) • 경인로~영신로 방면 교차로변 : 건축한계선 6m(우회전 완화차로 설치) • 신안산선 출입구 양측 : 1~2층 저층부 건축한계선 5m • 그 외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m 지정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저층부 공공보행통로	• 2개소 설치								
		공개공지	• 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 주1) 사업시행지구별 주된 용도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영등포 부문 내용에 따라 정한 용도상 권장용도 중 선택함

※ 주2)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등은 관계법률 및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라 법적용적률 이내에서 결정

※ 주3) 주거용도 도입 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고 2019-343)」에 따라 `22.10.16.까지 주거주용도 허용하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그에 따름

※ 주4)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산정시 '주거'로 간주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주택 등'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

※ 주5) 1획지 남측BL(영중로3길 남측) 높이는 150m 이하 유지하되, 향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높이가 상향될 경우, 상향된 높이로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가능

※ 주6) 사업주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21.4.7.) 수정가결 사항을 반영하여 허용용적률계획, 공공기여계획, 건축계획 등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 할 것

○ 변경(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3,120	사업시행지구	소계	19,369.9	-	-	-	-	-	-
				1지구	16,612.9	영등포동4가 431-6일대	주거	60 이하	460/726/850	제한 없음	일반 정비
				2지구	1,813.0	영등포동4가 425-2일대	업무·판매	60 이하	460/726/α	제한 없음	소단위정비
				3지구	944.0	영등포동4가 426-8일대	-	80 이하	390/-/+α	제한 없음	소단위관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지구	• 기준 - 주택건립규모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준수 - 임대주택의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2030기본계획' 상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2,3지구	• 해당없음
최고높이제한	1지구	• 1지구 북측BL(영중로3길 북측) 내 최고높이 40m 제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지구	• 건축한계선 지정 - 영중로변 : 5m - 경인로변 : 4m - 경인로~영신로 방면 교차로변 : 6m(우회전 완화차로 설치) - 영신로24길변 일부 : 5m - 그 외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 : 3m - 인접대지경계 : 1.5m~2m
	2지구	• 건축한계선 지정 - 영중로변 : 5m - 경인로변 : 3m - 인접대지경계 : 2m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1지구	• 공개공지 - 타임스퀘어 남측, 신안산선 출입구변 공개공지 조성 • 저층부 공공보행통로 - 6m 2개소 설치
	2지구	• 공개공지 - 영중로변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보차혼용통로 - 우체국부지의 이면도로 진출을 위한 폭원 4m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 영신로 및 영중로변, 경인로변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주1) 사업시행지구별 주된 용도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영등포 부문 내용에 따라 정한 용도상 권장용도 중 선택함

※ 주2)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등은 관계법률 및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라 법적용적률 이내에서 결정

나. 1지구 건축시설 계획(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지구)	23,120	획지	16,612.9	영등포동4가 431-6일대	주거	60 이하	460/726/850	제한 없음	일반 정비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850%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460%
② 허용용적률 : 579%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19%)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산 식	산정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인센티브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장수명 주택인증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460%×(α/16,612.9)×0.4 α도입시설면적 = 1,866.45㎡	정률부여	2.0 (최대30%)	20.67%
보행가로 활성화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460%×(α/16,612.9)×2.0 α도입시설면적 = 597.20㎡	정률부여	2.0 (최대 30%)	30%
	가로지장물 이전/ 지중화	460%×(α/16,612.9)×3.0 α도입시설면적 = 101.22㎡	정률부여	3.0 (최대 100%)	8.41%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공동소화전, 하수관거(접한도로), 상수관거(접한도로) 등 포함하여 4가지 항목 설치	정량부여	최대 20%	20%
합계			119.08% → 119%		

③ 상한용적률 : 850%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271%)

구 분		산 식	인센티브량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 =579.08%×1.3×1.2537×0.0257	24.26%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임대)	부속토지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 = 579.08%×1.3×1×0.0607	45.66%
	환산면적	허용용적률×1.2×α건축물 = 579.08%×1.2×0.0626	43.46%
친환경 건축물 인증		허용용적률×(0.5~1.0)×∑인증완화비율 (1)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우수등급 3%) = 579.08%×1.0×3%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5등급 11%) = 579.08%×1.0*11%	81.07%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구 분	산 식	인센티브량
현금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0×α현금 = 579.08%×1.0×0.1322	76.57%
합 계		579.08%+271.02% = 850.10% → 850%

최고높이제한	• 1지구 북측BL(영중로3길 북측) 내 최고높이 40m 제한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호수	비율(%)
합계				1,050	-
공동주택	일반분양		39.95	41	4.1
			84.95	754	75.6
			113.95	85	8.5
			185.95	2	0.2
	공공주택		-	116	11.6
		재개발의무	39.95	47	4.7
			84.95	3	0.3
		기부채납	84.95	66	6.6
	소계			998	100.0
주거용 오피스텔			49.95	52	100.0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5.01%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51%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영중로변 : 5m
- 경인로변 : 4m
- 경인로~영신로 방면 교차로변 : 6m(우회전 완화차로 설치)
- 영신로24길변 일부 : 5m
- 그 외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 : 3m
- 인접대지경계 : 1.5m~2m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 공개공지 - 타임스퀘어 남측, 신안산선 출입구변 공개공지 조성 • 저층부 공공보행통로 - 6m 2개소 설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보차혼용통로 - 우체국부지의 이면도로 진출을 위한 폭원 4m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 영신로 및 영중로변, 경인로변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8.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개량계획(동)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기 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5년 이내	-	현황: 165세대 계획: -	없음	
변 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각 지구별 개발에 따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현황: 165세대 계획: 998세대 증가: 833세대 (임대 116세대 포함)	없음	

9.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 추정비례율 = (총수입-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 111.55%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1,847,160,271 - 1,282,659,832) / 506,062,435 X 100 = 111.55%

구분				금액(천원)
총수입	계			1,847,160,271
	분양주택	일반분양	804세대	113,930,889
		조합원분양	77세대	1,579,737,844
		보류지	1세대	706,835
	임대주택	매각	50세대	18,357,885
	오피스텔	일반분양	52호	40,857,102
	근생시설	일반분양		66,200,040
		조합원분양		9,326,081
		보류지		327,524
	업무시설	일반분양		9,811,680
		조합원분양		16,088,707
		보류지		98,977
	매출부가세			-8,283,293
총지출				1,282,659,832
종전자산 총액				506,062,435

* 종전자산은 약식 감정평가에 의함
· 공동주택 소유자 : 없음
· 단독주택, 상가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2026년) X 보정률(2.23)
- 건물 : 원가법에 의한 산출 (건물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관찰감가 병행)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사업비				
			-10.0%	-5.0%	0.0%	5.0%	10.0%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16,328	17,235	18,142	19,049	19,956
분양가 (일반분양 기준)	10.0%	59,013	168.11%	155.44%	142.76%	130.09%	117.42%
	5.0%	56,331	152.50%	139.83%	127.16%	114.48%	101.81%
	0.0%	53,648	136.89%	124.22%	111.55%	98.87%	86.20%
	-5.0%	50,966	121.29%	108.61%	95.94%	83.27%	70.59%
	-10.0%	48,283	105.68%	93.00%	80.33%	67.66%	54.99%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권리가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 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주택 (공급/전용)	56 / 39	7.07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11.55%)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환급)
	119 / 84	14.97억		
	160 / 113	16.08억		
	262 / 185	24.13억		
업무시설	2층 전용 30㎡	2.36억		
	6층 전용 20㎡	1.60억		
근린 생활시설	1층 전용 30㎡	4.43억		
	2층 전용 40㎡	2.81억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은 예시임. (추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면적 확정)

10.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111	29	82	111	89	22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 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65	165	11	154	-	-	-	-
단독주택	165	165	11	154	-	-	-	-
공동주택	-	-	-	-	-	-	-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3)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 계	단 독	다가구	기 타	소 계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기 타
합 계		34	34	7	27	-	-	-	-	-	-
60㎡ 이하	소계	23	23	3	20	-	-	-	-	-	-
	30㎡ 이하	8	8	1	7	-	-	-	-	-	-
	30㎡ 초과 50㎡ 이하	11	11	2	9	-	-	-	-	-	-
	50㎡ 초과 60㎡ 이하	4	4	-	4	-	-	-	-	-	-
60㎡ 초과 85㎡ 이하		7	7	2	5	-	-	-	-	-	-
85㎡ 초과	소계	4	4	2	2	-	-	-	-	-	-
	85㎡ 초과 135㎡ 이하	3	3	2	1	-	-	-	-	-	-
	135㎡ 초과	1	1	-	1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함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율(%)
			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임대주택	오피스텔		
합 계		34	1,050	882	116	52	증)1,016	100.0
60㎡ 이하	소계	23	140	41	47	52	증)117	13.3
	30㎡ 이하	8	-	-	-	-	감)8	-
	30㎡ 초과 50㎡ 이하	11	140	41	47	52	증)129	13.3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율(%)
			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임대주택	오피스텔		
	50㎡ 초과 60㎡ 이하	4	-	-	-	-	감)4	-
60㎡ 초과 85㎡ 이하		7	823	754	69	-	증)816	78.4
85㎡ 초과	소계	4	87	87	-	-	증)83	8.3
	85㎡ 초과 135㎡ 이하	3	85	85	-	-	증)82	8.1
	135㎡ 초과	1	2	2	-	-	증)1	0.2

11.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안)

가. 세대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공동주택			오피스텔	비고
		분 양	임 대	합 계		
규모별	60㎡ 이하	41	47	88	52	
	60㎡ 초과 85㎡ 이하	754	69	823	-	
	85㎡ 초과	87	-	87	-	
	합계	882	116	998	52	

※ 계획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나. 정비사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현 황	계 획	증·감	비 고
세대수	165	1,050	증) 885	
인구수	317	2,016	증) 1,699	

※ 계획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계획인구수는 2026.4 기준 영등포구 세대당 인구 1.92인 적용

1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안)

가.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 분	전 체		재개발임대		기부채납임대		비 고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합 계	998	100.0	50	5.0	66	6.6	전체 세대수 기준
40㎡ 이하	88	8.8	47	4.7	-	-	
40㎡초과 ~ 60㎡이하	-	-	-	-	-	-	
60㎡초과 ~ 85㎡이하	823	82.5	3	0.3	66	6.6	
85㎡초과	87	8.7	-	-	-	-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 22.12.12.)」에 따라 상업지역 내 재개발임대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제외)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제외)으로 건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50	5.0%	43.1%
40㎡ 이하	47	4.7%	40.5%
40㎡초과 ~ 60㎡이하	-	-	-
60㎡초과 ~ 85㎡이하	-	-	-
85㎡초과	3	0.3%	2.6%

• 전체 세대수 : 998세대
• 재개발임대 건설계획 : 50세대(연면적 5,083.77㎡)
-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998세대 × 5% = 49.9세대 < 50세대 계획

2)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	6.6%	56.9%
40㎡ 이하	-	-	-
40㎡초과 ~ 60㎡이하	-	-	-
60㎡초과 ~ 85㎡이하	66	6.6%	56.9%
85㎡초과	-	-	-

• 공공주택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용적률 : 89.12%
•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계획 : 66세대(연면적 13,366.07㎡)
- 토지지분 950.0㎡, 건축물 환산부지 979.7㎡ → 1,929.7㎡

나. 세입자 주거대책

: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

13.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생태환경	가.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나.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확보	○	•대상지는 주거 및 상업시설 혼재지역으로, 별도의 녹지공간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생활환경	다.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임	•대상지는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지로 계획	-
	라.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 변동최소화	○	•사업대상지는 주거 및 상업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마. 물순환, 수리 · 수문	건축유형 및 용도지역별 기준 적용	○	•생태면적률 기준 28.5% 이상으로 계획(계획 30.4%)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용	-
	바. 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최소화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
	사. 바람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
	아.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지역이 열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	-
	자. 대기질 ·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단기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
		온실가스 저감	○	•유입인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증가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생활환경	차.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
	카.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수립	-
	타.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파. 경 관	Skyline보전	○	•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
	하.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 주변 영등포공원, 문래근린공원, 샛강생태공원 등 휴식 및 여가 공간이 산재	•공원 및 조경녹지 조성 •옥상녹화 등 휴게시설 배치	-
	거.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 주변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시설이 혼재함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너.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 계획수립	○	•경인로(35m), 영신로(25~39m), 영신로24길(10m), 영중로(30m) 등 대상지 4면이 도로에 접함 •남측으로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 인접하고 경인로 및 영중로변으로 다수의 시내·외 버스가 지나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뛰어남	•간선변, 이면도로변 및 그 외 대지경계도 건축한계선 지정하고, 지하철 출입구 위치로 인한 협소한 보행환경을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개선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보행로 등 연계를 통한 저층부 가로활성화 도모 •주변의 대규모 건축물 및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보행환경 개선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1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사업시행시 영등포 도심의 쾌적하고 조화로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대상지 주변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건축유형을 도입하여 조화되는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간선도로변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고려	-
환경보전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 소방차 진입, 진입활동 등이 용이하도록 공간확보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가급적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1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6.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 Ⓒ	◦ 사업지 주변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4개소) ◦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 대로3-133호선(영신로) 확폭 : B=21.0→26.0m, L=62.0m(왕복 5차로) - 소로1-0호선(영신로24길, 영중로3길) 확폭 : B=9.0~10.0→10.0m, L=335.0m(왕복 2~3차로) ◦ 경인로상 완화차로 설치 - 감속차로 : B=3.0m, L=42.0m(테이퍼 포함)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진·출입 동선	- -	○ 사업지 차량진출입구 운영계획 수립 - 남측부지 서측 출입구(소로1-0호선) 비신호교차로 계획 - 남측부지 동측 출입구(소로1-0호선) 비신호교차로 계획 - 북측부지 출입구(소로1-0호선) 비신호교차로 계획 ○ 차량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대중교통 및 보행	Ⓓ - -	○ 사업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2개소)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14개소)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의 20.8%(270대) 이상 확보
주차시설	- - -	○ 법정주차대수 : 1,301대 ○ 주차수요대수 : 1,384대(2029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대수 : 1,699대 - 법정대비 130.6%, 수요대비 122.8% - 장애인주차 39대 설치(법정주차대수의 3.0%) - 확장형주차 510대 설치(계획주차대수의 30.0%) - 전기차주차 85대 설치(계획주차대수의 5.0%)
교통안전 및 기타	-	○ 주차장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3개소)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17.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접근통제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되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 불가 ○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자연감시	○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영역성 확보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 설치	
활동의 활성화	○ 지역 공동체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 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유지관리	○ 시설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및 설비의 사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련법 및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19. 구역 내 옛길, 옛 물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792,010.1	99.2.12 (서고1999-32호)	-
변경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99.2.12 (서고1999-32호)	-

※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도심권에서 도심권으로 격상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 (“영등포구 공고 제2026-524호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참조)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안)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23	18,555 (6,233)	557,433 (148,121)	6	8,095 (2,375)	275,623 (75,423)	12	4,910 (2,673)	128,500 (42,875)	5	5,550 (1,185)	153,310 (29,823)
변경	합계	23	18,555 (6,233)	557,789 (148,477)	6	8,095 (2,375)	275,765 (75,565)	12	4,910 (2,673)	128,500 (42,875)	5	5,550 (1,185)	153,524 (30,037)
기정	대로	9	16,250 (3,928)	537,405 (128,093)	3	7,600 (1,880)	269,375 (69,175)	3	3,400 (1,163)	117,140 (31,515)	3	5,250 (885)	150,890 (27,403)
변경	대로	9	16,250 (3,928)	537,761 (128,449)	3	7,600 (1,880)	269,517 (69,317)	3	3,400 (1,163)	117,140 (31,515)	3	5,250 (885)	151,104 (27,617)
기정	중로	3	600	7,665	1	100	2,000	1	225	3,395	1	275	2,270
기정	소로	11	1,705	12,363	2	395	4,248	8	1,285	7,965	1	25	150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6	35	주간선도로	4,700 (435)	한강대교남단 (영등포동 1가19-7)	서울대교남단 (대1-38)	일반도로	건고시 제177호 (62.12.8)	노량진로
기정	대로	1	38	35~40	주간선도로	1,350	영등포로터리	문래동광장	일반도로	서고시 제422호 (84.07.24)	경인로
변경	대로	1	38	35~40	주간선도로	1,350	영등포로터리	문래동광장	일반도로	서고시 제422호 (84.07.24)	일부선형변경
기정	대로	1	53	35	보조 간선도로	1,550 (95)	문래동광장114 (문래동광장114)	신길동광장73 (문래동 경부선)	일반도로	건고시 제393호 (78.12.7)	도림로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64	30~43	보조 간선도로	2,500 (263)	당산동중1-72 (당산동1가15)	문래동 (문래동3가 48-3)	일반도로	건고시 제349호 (79.9.24)	-
기정	대로	2	1	30 (15~30)	보조 간선도로	530	문래동3가55-3	문래동3가18	일반도로	서고시 제430호 (98.12.24)	-
기정	대로	2	2	24~30	보조 간선도로	370	영등포동4가 316-7	영등포동4가 441-21	일반도로	서고시 제412호 (05.12.22)	경방부지북단
기정	대로	3	28	25~28	보조 간선도로	2,900 (105)	영등포94	신길동 192-155	일반도로	건고시 제301호 (93.09.22)	신길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반영
기정	대로	3	119	25~35	보조 간선도로	910 (170)	영등포동415-7 (대1-38)	신길동(대3-28) (영등포동4가 경부선)	일반도로	서고시 제378호 (78.7.31)	영등포 고가도로
기정	대로	3	133	25~39	보조 간선도로	1,560 (610)	영등포3가 대1-38	당산동6가 (영등포동4가 151-2)	일반도로	서고시 제288호 (78.6.20)	영등포 고가도로
변경	대로	3	133	25~39	보조 간선도로	1,560 (610)	영등포3가 대1-38	영등포동4가 151-2	일반도로	서고시 제288호 (78.6.20)	일부선형변경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25	당산동1가 12-1	문래동3가 2-1	일반도로	서고시 제2002-251호 (02.6.22)	서영물류 동측
기정	중로	1	-	20	국지도로	100	영등포동4가 대로3-133	영등포동4가 대로2-2	일반도로	서고시 제412호 (05.12.22)	-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75	영등포동1가 (서울교남단 광장)	영등포동1가 3-5	일반도로	서고시 제251호 (02.6.22)	신길역 북측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27	당산동1가 1-101	당산동1가 1-109	일반도로	서고시 제2000-58호 (00.03.20)	당산1 주택재개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60	문래동3가 28-6	문래동3가 27-3	일반도로	서고시 제22호 (12.01.26)	특별계획구역 Ⅲ-1 서측
기정	소로	1	-	10	집산도로	335	영등포동4가 358-9	영등포동4가 440-10	일반도로	서고시 제266호 (21.06.10)	특별계획구역 Ⅴ-1 북측
기정	소로	3	(1)	6	집산도로	137 (28)	영신로	문래로30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82	영신로	경인로89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38	경인로	영신로23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기정	소로	2	(3)	8	집산도로	282	경인로	경신로90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기정	소로	2	(4)	8	집산도로	38	경인로	경신로92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기정	소로	2	(5)	8	집산도로	32	경인로	경신로94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기정	소로	2	(6)	8	집산도로	38	영신로	경신로90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기정	소로	2	(7)	8	집산도로	34	경인로94길	경인로96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315	영등포동 411-25	경인로90길	일반도로	서고시 제489호 (20.11.26)	-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38	대로 1-38	• 도로 일부 선형 변경 - 일부 폭원확장(35m→35~38m)	• 영등포 도심 역세권 재개발구역 내 우체국부지 진입 완화차로 계획에 따라 경인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자 3m 완화차로 추가 확보
대로3-133	대로 3-133	• 도로 일부 선형 변경 - 일부 폭원확장(24m→29m)	• 영등포 도심 역세권 재개발구역 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단지 내 우회전 완화차로 조성 계획에 따라 구역 내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및 선형 조정

나) 주차장(변경없음)

다) 철도(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변경)(안)
○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건폐율(%)	비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준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경인로 및 영중로 일대)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영등포동3가 이면부 일대)	60% 이하	영등포동3가(이면부) 일대 상업지역 불법건축물 등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완화조건 준수 시 80%까지 완화가능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 영등포동3가(이면부) 일대의 건폐율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내용(공동개발 및 층수제한 등)을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차등 적용하며 적용기준은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4조(건폐율완화) 참조
※ 특별계획구역Ⅴ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그 결정 내용에 따름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적용대상	
기정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	360%이하	신길역 주변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내용을 따름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250%	400%이하	영등포동4가, 문래동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Ⅲ구역)	
	일반	종전	600%	800%이하	간선가로변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적용대상	
변경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00%	600%이하	영등포동1,3가 이면부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내용을 따름
		준공업, 준주거 → 일반상업	300%	400%이하	특별계획구역 (Ⅰ-1, Ⅳ-2, Ⅴ, Ⅶ구역)	
			400%	660%이하	특별계획구역(Ⅰ-2구역)	
	준공업지역		300%	400%이하	당산로1가, 문래동1,2,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Ⅰ-1,Ⅱ,Ⅵ,Ⅶ)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	360%이하	신길역 주변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250%	400%이하	영등포동4가, 문래동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Ⅲ구역)	
	일반상업지역	종전 일반상업지역	600%	800%이하	간선가로변	
			400%	600%이하	영등포동1,3가 이면부	
		준공업, 준주거 → 일반상업	300%	400%이하	특별계획구역 (Ⅰ-1, Ⅳ-2, Ⅶ구역)	
			400%	660%이하	특별계획구역(Ⅰ-2구역)	
	준공업지역		300%	400%이하	당산로1가, 문래동1,2,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Ⅰ-1,Ⅱ,Ⅵ,Ⅶ)	

※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등 하나의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기준을 적용

※ 건축물의 대지가 종전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걸치는 경우 등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기준 및 허용용적률 적용이 2 이상일 경우 용적률 산정은 면적별 가중평균함

※ 특별계획구역Ⅴ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그 결정 내용에 따름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안)

○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적용대상	최고높이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유곽밀집지 : 100m이하 · 쪽방촌 : 150m이하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치 않음
	특별계획구역 Ⅰ-1(경방), Ⅰ-2	95m 이하	
	경인로변 특별계획구역 Ⅱ,Ⅲ-1~3, Ⅶ 등	80m 이하	
	공동주택 기개발지, 경인로변(영등포초교일대)	70m 이하	
	영등포동 3가 상업밀집지역 간선부 (영중로, 영등포로) 특별계획구역 Ⅳ, Ⅵ, 문래동3가 45번지 그 외 간선도로변(12m 이상)	60m 이하	
	이면도로변(12m 미만) 영등포동1,3가 이면부	40m 이하	

구분	적용대상	최고높이	비고
변경	특별계획구역 Ⅰ-1(경방), Ⅰ-2	95m 이하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치 않음
	경인로변 특별계획구역 Ⅱ,Ⅲ-1~3, Ⅶ 등	80m 이하	
	공동주택 기개발지, 경인로변(영등포초교일대)	70m 이하	
	영등포동 3가 상업밀집지역 간선부 (영중로, 영등포로) 특별계획구역 Ⅳ, Ⅵ, 문래동3가 45번지 그 외 간선도로변(12m 이상)	60m 이하	
	이면도로변(12m 미만) 영등포동1,3가 이면부	40m 이하	

※ 특별계획구역Ⅴ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그 결정 내용에 따름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5) 건축물 외관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조서

구역명		대상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Ⅰ	1구역	경성방직	영등포동4가 441-10번지 일대	61,291.4	-	61,291.4	-
	2구역		영등포동4가 318-2번지 일대	3,590.4	-	3,590.4	-
Ⅱ구역		대선제분	문래동3가 9번지 일대	19,570	-	19,570	-
Ⅲ	1구역	영일시장	문래동3가 18번지 일대	6,413.8	-	6,413.8	-
	2구역		문래동3가 16-32번지 일대	4,590	-	4,590	-
	3구역		문래동3가 10번지 일대	4,530	-	4,530	-
Ⅳ	2구역	백화점	영등포동4가 434-5번지 일대	4,450	-	4,450	-
Ⅴ		영등포 도심 역세권 재개발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37,109.0	감)13,989	23,120.0	-
Ⅵ 구역		서영주정	당산동1가 12-0,1번지 일대	14,044.0	-	14,044.0	-
Ⅶ	1구역	대선제분 일대 1구역	문래동3가 8-7번지 일대	2,985	-	2,985	-
	2구역		문래동3가 3-1번지 일대	4,319	-	4,319	
	3구역		문래동3가 20-4번지 일대	8,144	-	8,144	
	4구역		문래동3가 10-6번지 일대	6,667	-	6,667	
	5구역		문래동3가 7-2번지 일대	6,251	-	6,251	
문래동3가 45번지			문래동3가 45번지 일대	6,682	-	6,682	-
영등포동1가 94-2번지 외1필지			영등포동1가 94-2, 94-5번지	4,069.1	-	4,069.1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V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23,120.0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외 특별계획구역 폐지

2)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 특별계획구역Ⅰ~ Ⅳ, Ⅴ~Ⅷ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Ⅴ(영등포 도심 역세권 재개발)(변경)

■ 지정목적(변경)

• 도심부적격시설이 위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관리

•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중심지 기능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

■ 구역개요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조서

구역명	대상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V	영등포 도심 역세권 재개발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37,109.0	감)13,989	23,120.0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V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23,120.0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외 특별계획구역 폐지

■ 특별계획구역 지침

(1) 기정

구분		계획내용
토지이용		• 부도심 중심핵 기능 육성 위해 업무복합용도로 계획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공공시설 확보계획	기부채납	•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설치 조성하여 기부채납
	대상시설	•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등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기반시설로 결정

구분		계획내용	
용적률	구역명	경인로 북측 유곽밀집지	경인로 남측 쪽방밀집지
	기준	390%	600%
	허용	515%이하	800%이하
	상한	• 공공시설 등을 설치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제공면적에 대해 적용	
최고높이		유곽밀집지(대상지북측)	쪽방촌(대상지남측)
		100m이하	150m이하
		•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배제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중 청과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 이상 권장용도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 경인로 8m, 양평로변 3m, 영등포고가도로변 1~2m 대상지 북측 보행자우선도로변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15m 지정(도로포함)	
	공개공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점에서 결정권자와 협의 후 위치를 결정하여 간선가로변 조성	

주1) 일반상업지역에 주거를 도입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내용에 따라 용도용적제를 적용
주2) 경인로 북측 유곽밀지역의 경우 기준 · 허용용적률 산정은 기존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지역의 면적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적용하여 전체 대지의 용적률을 산정한 사항으로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특별계획구역변경 확정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주4) 건축물의 높이가 10층 이상일 경우 5층 이상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을 권장

(2) 변경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4">계획내용</th></tr>
<tr><td colspan="3">위치</td><td colspan="4">•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td></tr>
<tr><td colspan="3">면적</td><td colspan="4">• 23,120.0㎡</td></tr>
<tr><td colspan="3">토지이용</td><td colspan="4">• 도심 중심핵 기능 육성 위해 업무, 상업, 주거복합용도로 계획</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4">•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td></tr>
<tr><td rowspan="2">공공시설
확보계획</td><td colspan="2">기부채납</td><td colspan="4">•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설치 조성하여 기부채납</td></tr>
<tr><td colspan="2">대상시설</td><td colspan="4">•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등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기반시설로 결정</td></tr>
<tr><td rowspan="4">용적률</td><td colspan="2">구역명</td><td>1지구</td><td>2지구</td><td>3지구</td></tr>
<tr><td colspan="2">기준</td><td>460%</td><td>460%</td><td>390%</td></tr>
<tr><td colspan="2">허용</td><td>726%</td><td>726%</td><td>-</td></tr>
<tr><td colspan="2">상한</td><td colspan="4">• 공공시설 등을 설치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제공면적에 대해 적용</td></tr>
<tr><td colspan="3" rowspan="2">최고높이</td><td colspan="4">• 제한없음</td></tr>
<tr><td colspan="4">• 1지구 북측 BL(영중로3길 북측) 내 최고높이 40m 제한</td></tr>
<tr><td rowspan="3">건축물
용도</td><td rowspan="2">불허
용도</td><td>불허1
(1)</td><td colspan="4">• 1지구 해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중 청과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td></tr>
<tr><td>불허2
(2)</td><td colspan="4">• 2지구 해당
- 지정용도 외의 용도</td></tr>
<tr><td colspan="2">지정용도
(A)</td><td colspan="4">• 2지구 해당
- 공공청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 영중로변 5m 지정 • 경인로변 3~4m 지정 • 경인로~영신로 방면 교차로변 6m 지정(우회전 완화차로 설치) • 영신로24길변 일부 5m 지정 • 그 외 도로와 접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인접대지경계 1.5~2m지정
	저층부 공공보행통로	• 6m 2개소 설치
	공개공지	• 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보차혼용통로	• 우체국부지의 이면도로 진출을 위한 폭원 4m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영신로 및 영중로변, 경인로변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주1) 사업시행지구별 주된 용도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영등포 부문 내용에 따라 정한 용도상 권장용도 중 선택함
주2)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등은 관계법률 및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라 법적용적률 이내에서 결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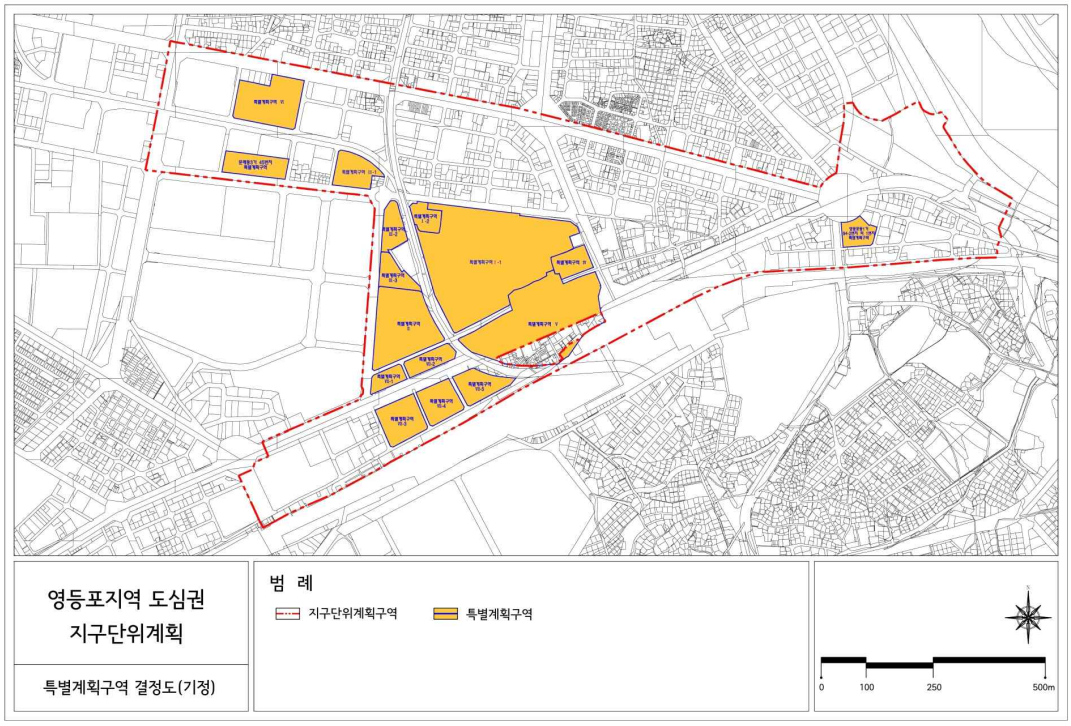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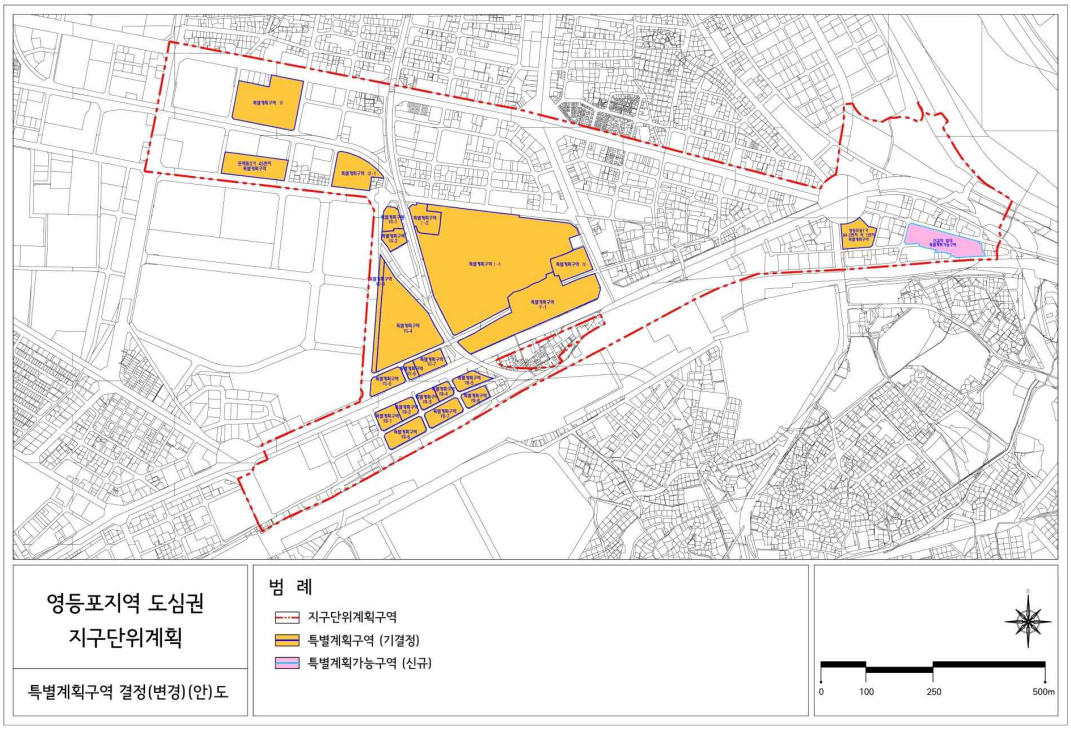

Ⅳ. 특별계획구역Ⅴ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대상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Ⅴ	영등포 도심 역세권 재개발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37,109.0	증)13,989.0	23,120.0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Ⅴ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23,120.0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외 특별계획구역 폐지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120.0	-	23,120.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3,090.0	-	23,090.0	99.9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0.0	-	30.0	0.1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38	35~45	주간선도로	1,350 (310)	영등포로터리	문래동광장	일반도로	서고시 제422호 (84.7.24.)	경인로
변경	대로	1	38	35~45	주간선도로	1,350 (310)	영등포로터리	문래동광장	일반도로	서고시 제422호 (84.7.24.)	일부선형변경
기정	대로	3	133	25~39	보조간선도로	1,560 (62)	영등포3가 대1-38	영등포동4가 151-2	일반도로	서고시 제288호 (78.6.20.)	영등포고가도로
변경	대로	3	133	25~39	보조간선도로	1,560 (62)	영등포3가 대1-38	영등포동4가 151-2	일반도로	서고시 제288호 (78.6.20.)	일부선형변경
기정	소로	1	0	10	집산도로	335 (335)	영등포동4가 357-9	영등포동4가 440-10	일반도로	서고시 제2021-266호 (21.06.10.)	-

주) ( )안은 구역 내 포함되는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안)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38	대로 1-38	◦ 도로 일부 선형 변경 - 구역 내 폭원 확장 B=35m → 35~38m (증) 3m	◦ 우체국부지 진입 완화차로 계획에 따라 경인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자 3m 완화차로 추가 확보
대로 3-133	대로 3-133	◦ 도로 일부 선형 변경 - 구역 내 폭원 확장 B=24m → 29m (증) 5m	◦ 1지구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차량 및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대상지 쪽으로 도로(영신로)를 5m 추가 확보

나)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시흥동 765-5철	여의도동 3-2도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 단지역 대림사거리역 신풍역 도림사거리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12,085	234,321.6	국토부고시 제2019-446호 (19.8.27)	-
기정	2-사	철도	일반철도 (영등포역)	영등포동4가 423-98도	영등포동4가 423-98도	-	133	10,487.0	국토부고시 제2019-446호 (19.8.27)	본선과 중복 결정

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철도	영등포구 대림동 944-30 ~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길이	6,244.4m	국토부고시 제2024-423호 (24.8.14)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에 한함
				폭	도시계획시설 결정 폭		
				높이	해수면(+100) 24.77m ~ 56.35m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안)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 분	가구번호	지번	면 적	획지면적	비 고
신설	-	영등포동4가 431-6일대	23,120.0	16,612.9	1지구
신설	-	영등포동4가 425-2일대	1,955.0	1,813.0	2지구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안) 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	불허용도	불허1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중 청과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좌동	1지구
		불허2 (2)	◦ 지정용도 외의 용도	좌동	2지구
	지정용도 (A)		◦ 공공청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좌동	

2)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획지구분		1지구	2지구	3지구	좌동	-
건폐율		60%	60%	80%	좌동	-
용적률	기준	460%	460%	390%	좌동	-
	허용	726%	726%	-	좌동	-
	상한	공공시설 등을 설치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제공면적에 대해 적용			850%	1지구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최고높이	제한없음	좌동	-
	1획지 북측BL(영중로3길 북측) 내 최고높이 40m 제한	좌동	-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 영중로변 5m ◦ 경인로변 3~4m ◦ 경인로~영신로 방면 교차로변 6m (우회전 완화차로 설치) ◦ 영신로24길변 일부 5m ◦ 그 외 도로와 접한 경계선으로부터 3m ◦ 인접대지경계 1.5~2m	◦ 영중로변 : 5m ◦ 경인로변 : 4m ◦ 경인로~영신로 방면 교차로변 : 6m (우회전 완화차로 설치) ◦ 영신로24길변 일부 : 5m ◦ 그 외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 : 3m ◦ 인접대지경계 : 1.5m~2m	1지구
		◦ 영중로변 : 5m ◦ 경인로변 : 3m ◦ 인접대지경계 : 2m	2지구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저층부 공공보행통로	◦ 6m 2개소 설치	좌동	1지구
공개공지	◦ 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 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 타임스퀘어 남측, 신안산선 출입구변 공개공지 조성	1지구
		◦ 영중로변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2지구
보차혼용통로	◦ 우체국부지의 이면도로 진출을 위한 폭원 4m 계획	좌동	1지구
차량출입불허구간	◦ 영신로 및 영중로변, 경인로변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동	-

4.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안)

구 분	사업 지구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 면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
								정비 기반 시설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현금	소계	
순부담	일반 정비 지구	1지구	20,221.0	16,612.9	3,608.1	3,136.2	69.3	402.6	1,929.7	2,071.0	4,403.3	21.78
		2지구	1,955.0	1,813.0	142.0	-	-	142.0	-	-	142.0	7.26

※ 순부담 기준 : 대지면적의 10% 이상 기타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확보

Ⅴ.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3.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기정, 변경)
5.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도(기정, 변경)
6.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기정, 변경)
7.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8.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관련 도서 : 생략

Ⅶ.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02-2670-3802)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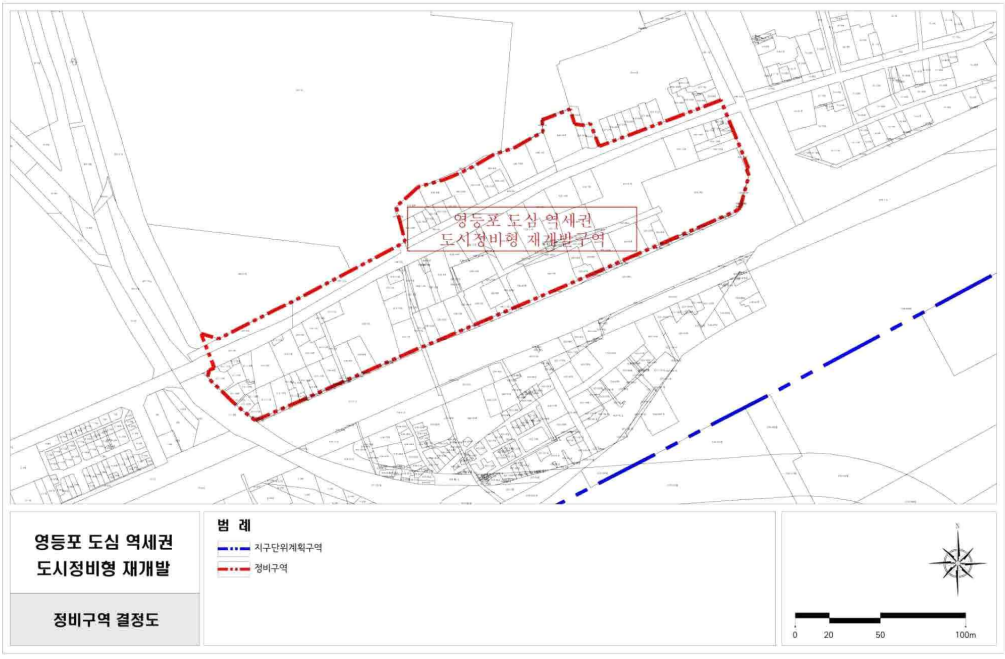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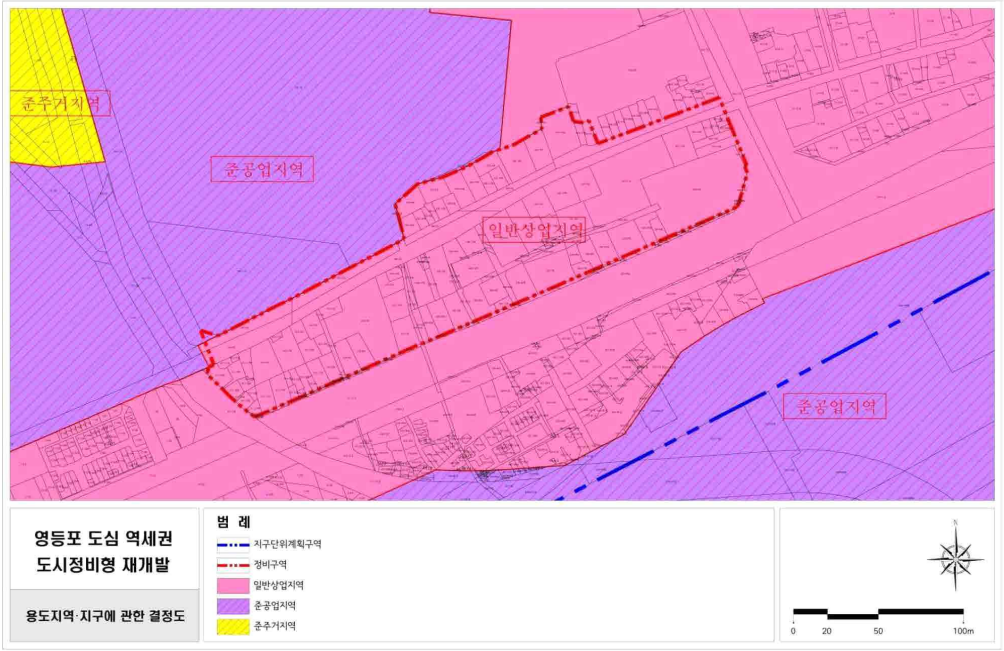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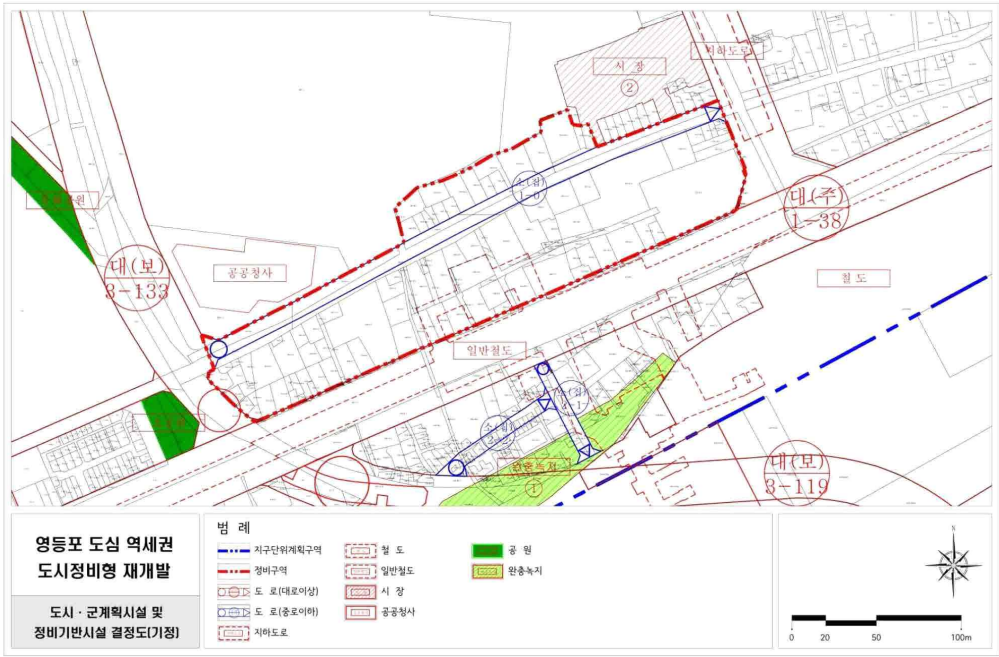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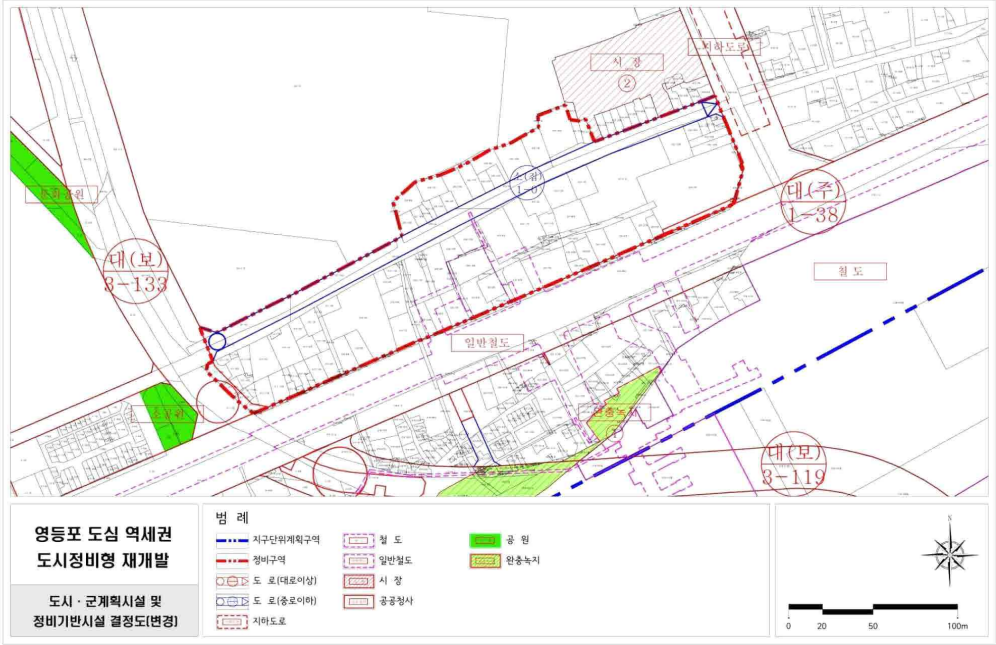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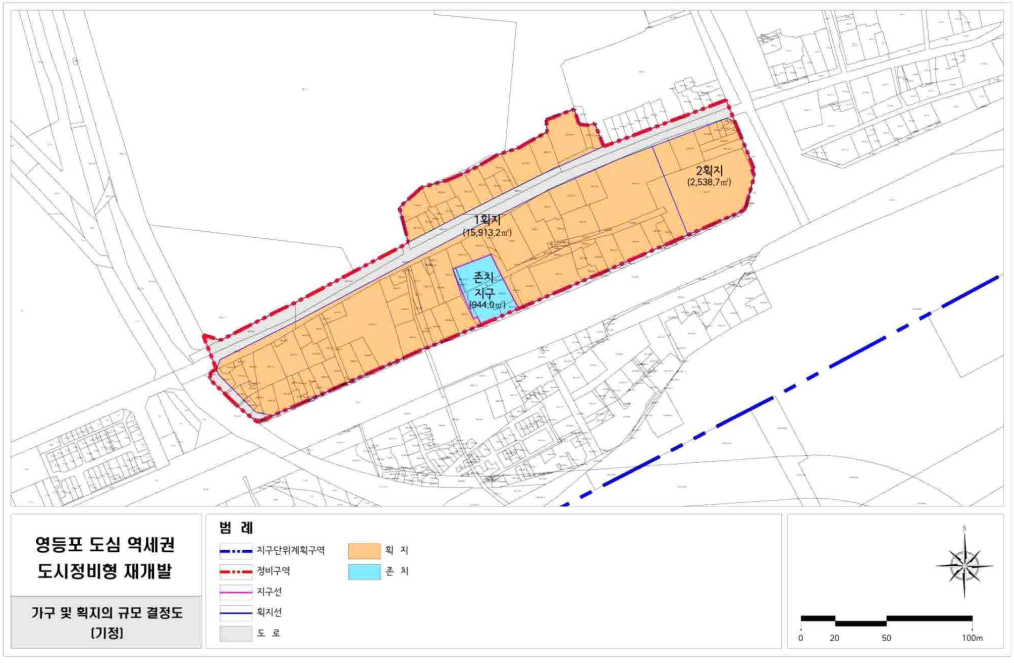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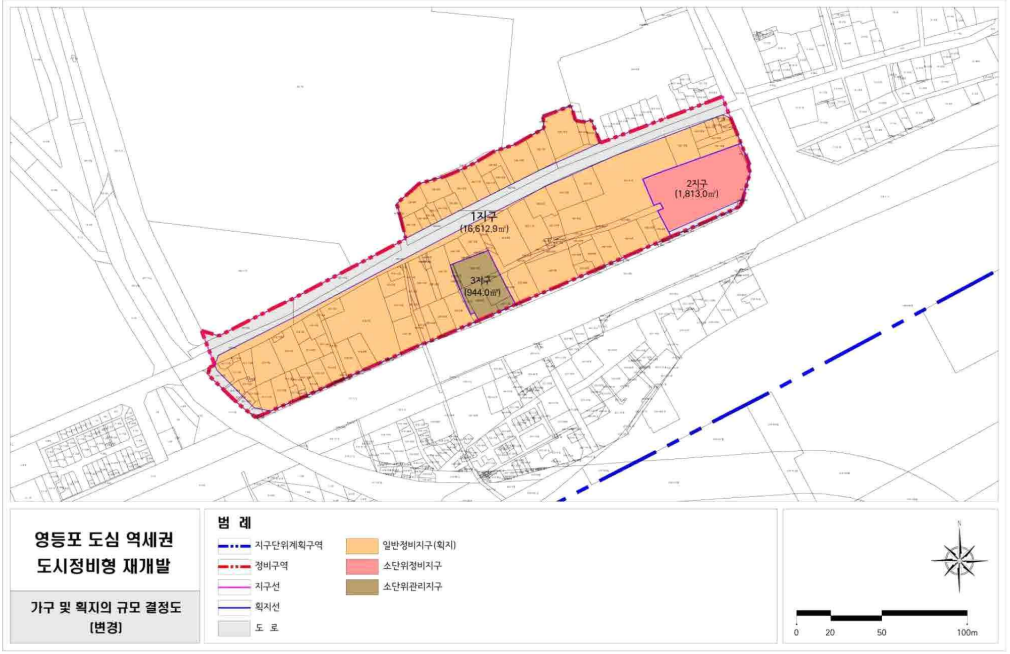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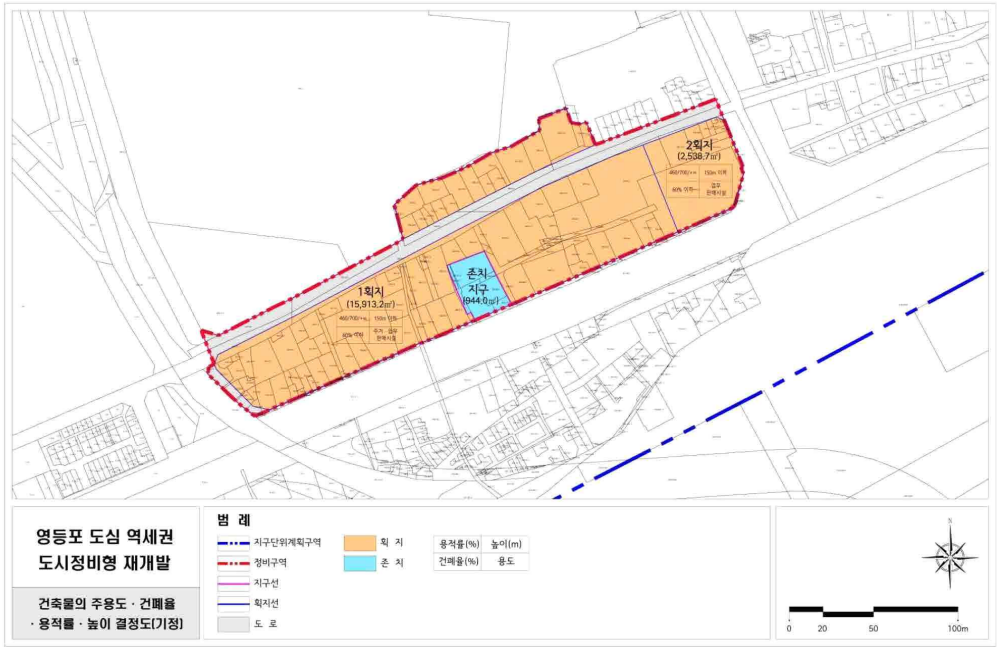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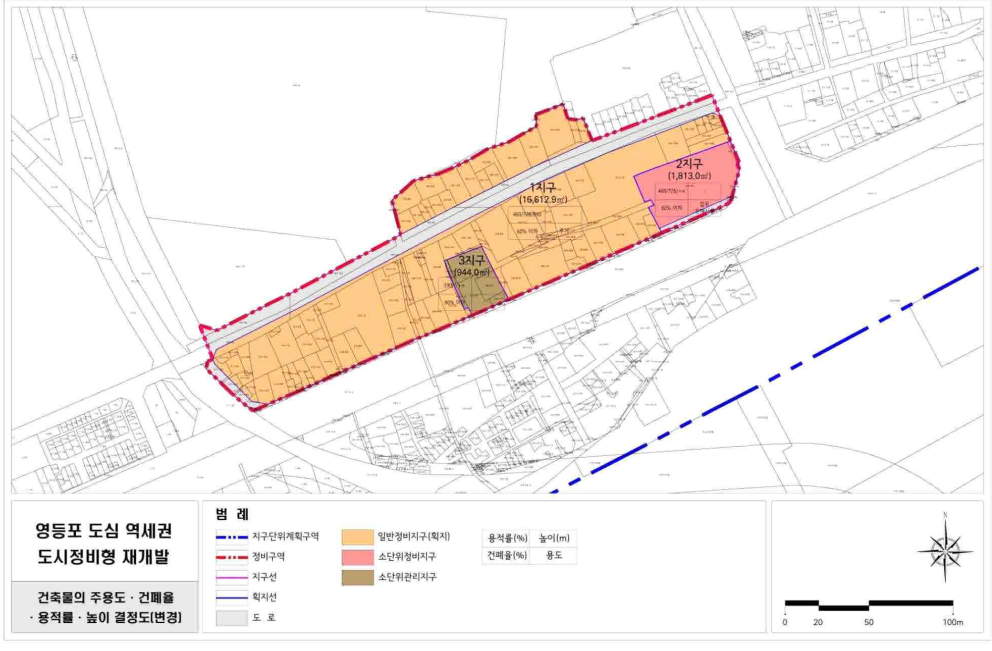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기정)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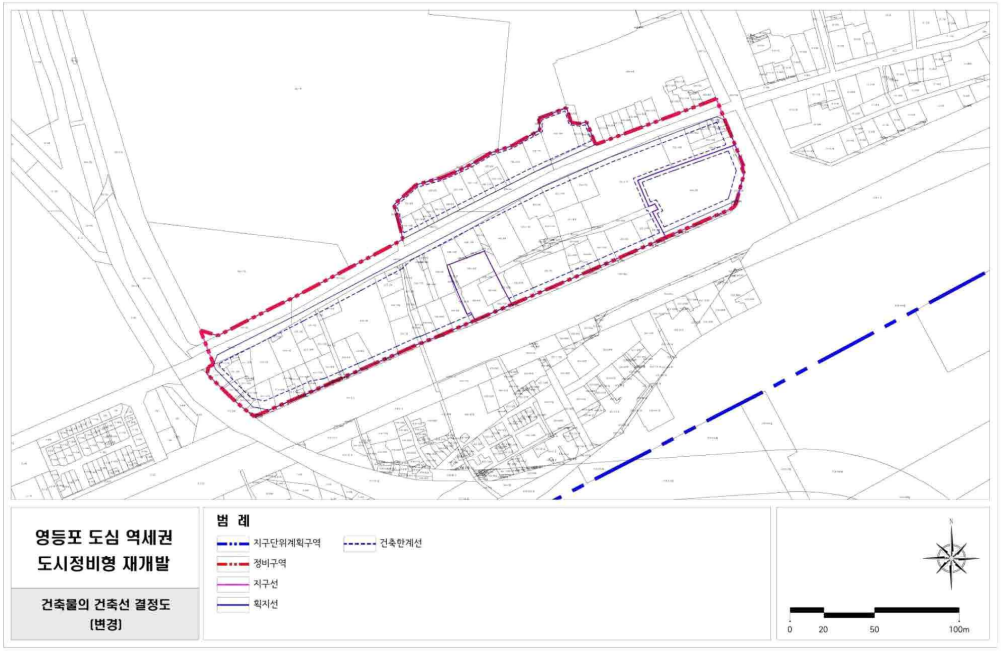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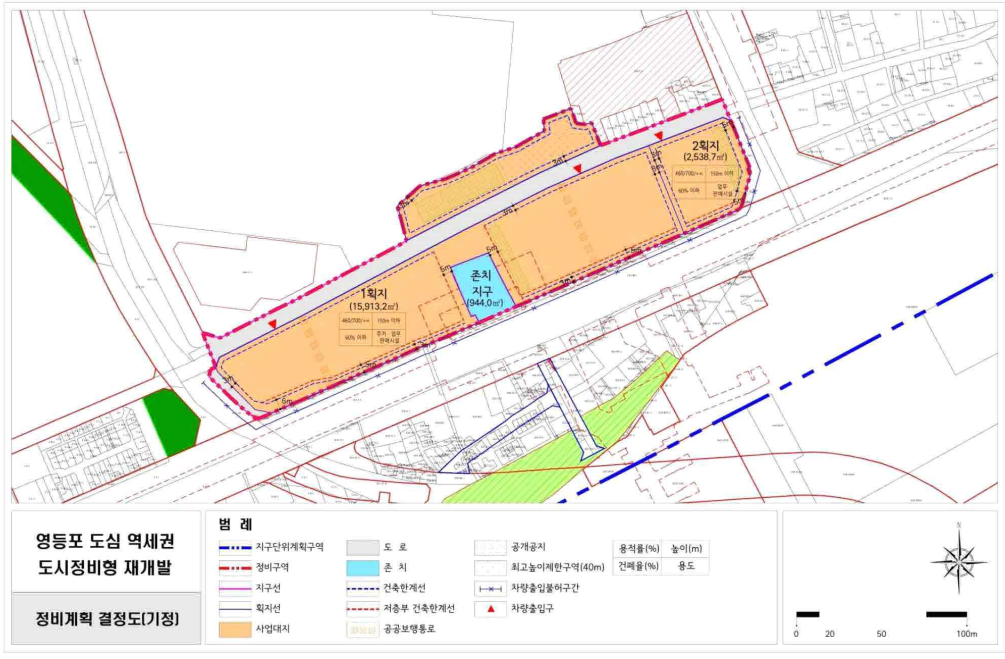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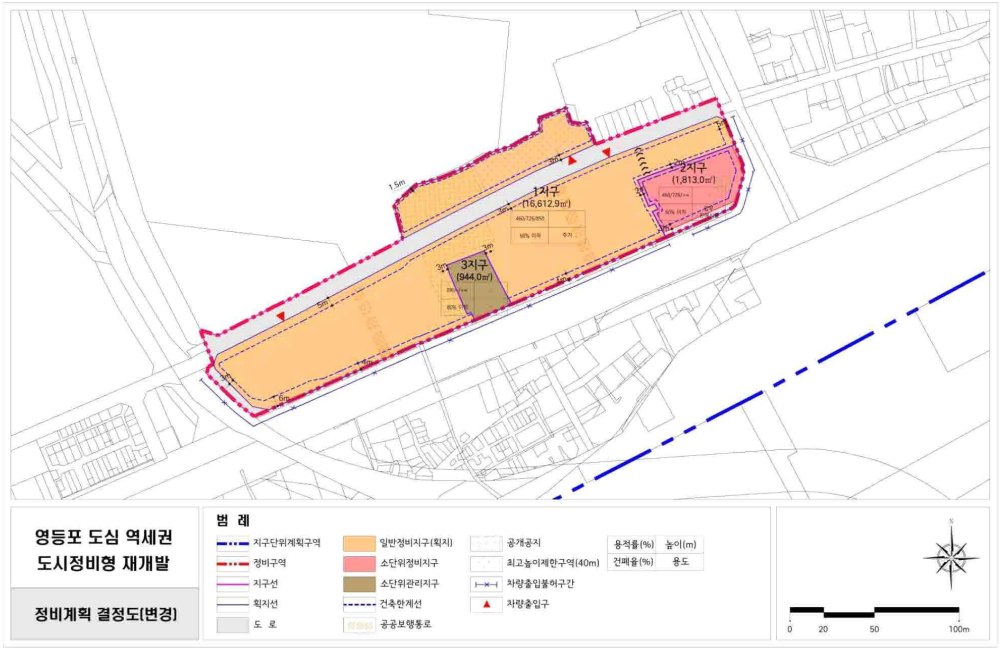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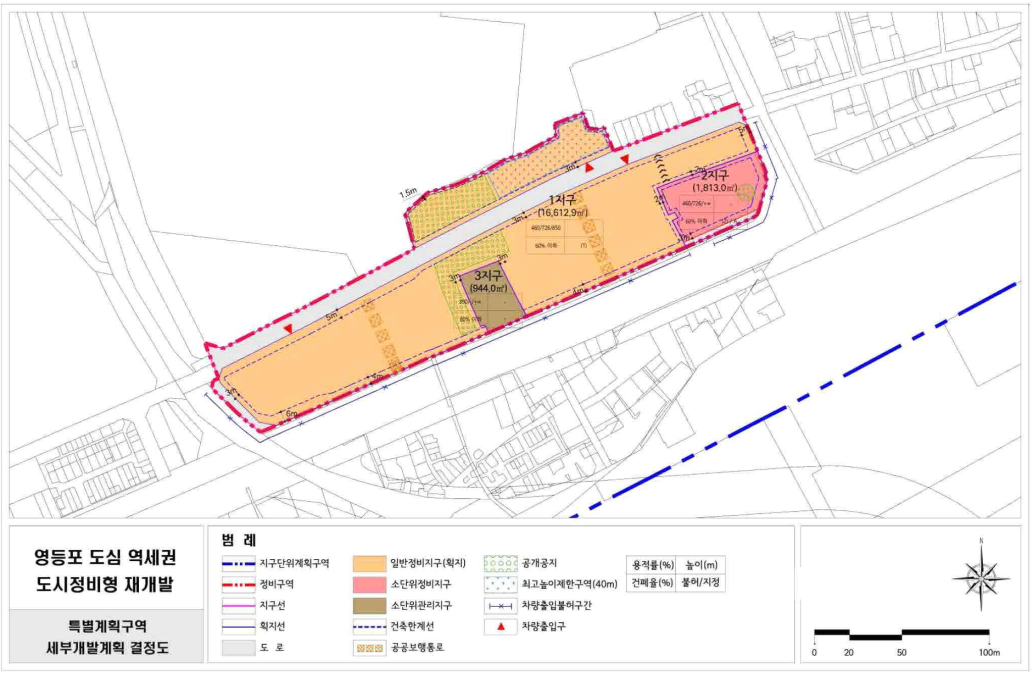

◈ 강남구공고 제2026-1444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삼성동 168-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강남구 삼성동 168-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삼성동 168-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2. 2026. 5. 13.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6. 6. 12. ~ 25.)
나.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12)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가구			획지				비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기정	C9	15,022.4	기정	삼성동 168-1	690.2	1,311.0	•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삼성동 168-2	620.8		
				삼성동 168-20	1,119.6	-	-
			변경	삼성동 168-1	690.2	2,430.6	•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삼성동 168-2	620.8		
				삼성동 168-20	1,119.6		
			(게재 생략)				

▌ 용적률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지(신설): 강남구 삼성동 168-1번지 일대

구 분		기준(허용)	상 한	비 고
삼성동 168-1, -2, -20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354.6% 이하	80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2-1. 준용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련도서: 열람장소 비치

마. 의견제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강남구공고 제2026-1453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6-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강남구 논현동 6-13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6-13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9)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6-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강남구 논현동 6-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논현동 6-13번지	-	증) 1,834.7	1,834.7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련도서: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마.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원효대교)	(선박2척) 330.69㎡	2026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2공구	'26. 06. 08. ~ '26. 06. 30.	'26. 6. 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대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버스 (대표 한상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1, 4층	· 한강버스 106 (선박 1척) · 한강버스 항로 및 선착장 (아라한강갑문~잠실대교)	324.05㎡	도선사업 운영	2026. 6. 5. ~ 2026. 12. 31.	2026. 6. 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사회체육 진흥회 수상스키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상암동 482-48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동력선 1척 (상암파티바지호)	수상레저사업	2026. 6. 9. ~ 2026. 11. 10.	2026. 6. 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광진교)	(선박2척) 362㎡	광진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허가일 ~ '27. 04. 17.	'26. 6. 9.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26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06. 11. ~ 2026. 06. 24.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6. 06. 25. ~ 2026. 07. 08.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서목 코드	서목명	적발 년월일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 17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16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066	2026-05-19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5번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크레페)
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 27	1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21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074	2026-05-18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527	서울특별시양천로443-32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 31	1	820613-*******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23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34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62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로42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감치전)
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 33	1	610628-*******	남*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25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084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5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로80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닭꼬치)
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 36	1	760907-*******	홍*익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27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40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59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가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 (순대/떡볶이)
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 40	1	590207-*******	전*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29	35,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23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1029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123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메트/담요)

순번	서목 코드	서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046	1	010710-*******	위*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33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08	2026-05-20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114 357	운영 총괄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회오리감자)
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047	1	620321-*******	송*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34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096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5600	서울특별시송파구삼학사로19길	6114 357	운영 총괄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타코야끼))
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056	1	601222-*******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40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12	2026-05-20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0831	경기도 파주시 곰탄면	6114 357	운영 총괄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커피/핫도그)
1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058	1	610828-*******	정*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1 16:49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27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040	서울특별시송파구상도로	6114 357	운영 총괄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1주차장 주변(닭꼬치)
1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061	1	610828-*******	정*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6:24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28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040	서울특별시송파구상도로	6114 357	운영 총괄 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1주차장 주변(닭꼬치)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71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6:38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067	2026-05-19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 5번길	6114 357	운영 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크레페)
1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81	1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6:42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075	2026-05-18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52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선유로443 -32	6114 357	운영 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1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85	1	820613-*******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6:44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35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62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선유로42길	6114 357	운영 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김치전)
1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88	1	610628-*******	남*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6:46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085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5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중로80길	6114 357	운영 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닭꼬치)
1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90	1	750907-*******	홍*익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6:48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41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59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 가길	6114 357	운영 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순대떡볶이)

순번	서목 코드	서목명	적발 년월일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094	1	590207-*******	전*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6:51	35,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24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1029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123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매트/담요)
1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01	1	010710-*******	위*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6:59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09	2026-05-20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회오리감자)
1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03	1	620321-*******	송*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7:01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097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6600	서울특별시송파구삼학사로9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타코야끼)
2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13	1	601222-*******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2 17:11	70,000	2026-05-07	2026-07-08	10788 35215 113	2026-05-20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083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커피/핫도그)
2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22	1	980214-*******	MU**** ******* ****** GL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4-25 20:36	50,000	2026-05-08	2026-07-08	10788 35219 971	2026-05-20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4612	서울특별시중구 다산로39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일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2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23	1	850110-*******	최*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25 04:16	50,000	2026-05-08	2026-07-08	10788 35219 970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2442	서울특별시송파구 대뮨구 이문로1 2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슬로프 주변
2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24	1	940903-*******	송*석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26 22:48	70,000	2026-05-08	2026-07-08	10788 35219 975	2026-05-14	주소 불명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5801	서울특별시송파구 새 말로15 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2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25	1	730520-*******	YA***** ******O 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4-26 18:11	50,000	2026-05-08	2026-07-08	10788 35219 974	2026-05-1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6658	서울특별시 초구명 달로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 주변
2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27	1	020715-*******	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4-26 22:57	50,000	2026-05-08	2026-07-08	10788 35219 976	2026-05-21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096	경기도 남양주 시순화 공로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2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31	1	760819-*******	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29 13:13	50,000	2026-05-08	2026-07-08	10788 35219 978	2026-05-21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63627	제주특별자치 도서귀 포시표 선면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슬로 프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2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33	1	940903-*******	송*석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4-30 23:02	70,000	2026-05-08	2026-07-08	10788 35219 980	2026-05-14	주소 불명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5801	서울특별시 파구새 말로15 길	6114 357	운영 총괄 과	반포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GS편의점 주변
2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43	1	110111-*******	주****** *랜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13 19:46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22	2026-05-26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0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6114 357	운영 총괄 과	이촌한강공원내 한강대교북단 하부 운동시설 앞
2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44	1	950829-*******	안*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19 20:18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08	2026-05-26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6114 357	운영 총괄 과	뚝섬한강공원 원 윈드서핑장 입구 주변
3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47	1	940903-*******	송*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4 21:36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06	2026-05-18	주소 불명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5801	서울특별시 파구새 말로15 길	6114 357	운영 총괄 과	뚝섬한강공원 원 1호매점앞 주변
3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48	1	941021-*******	GU**** ****A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5-05 08:30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787	2026-05-18	수취 인불명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6222	서울특별시 남구먼 주로85 길	6114 357	운영 총괄 과	뚝섬한강공원 원 노유나들목 앞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3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54	1	580626-*******	김*승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5-05 12:51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793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1173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46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역아래 주변
3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69	1	851018-*******	정*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38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17	2026-05-21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638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45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주변
3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72	1	940112-*******	박*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43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799	2026-05-22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4327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34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주변
3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74	1	851224-*******	최*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47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26	2026-05-21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8061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29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주변
3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1 82	1	940222-*******	정*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31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18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3614	서울특별시 대문구 통일로4 8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내 테니스장 앞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3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83	1	810224-*******	최*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31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25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21920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말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내 테니스장 앞
3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85	1	960404-*******	배*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33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00	2026-05-21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801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중앙6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내 테니스장 앞
3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88	1	780507-*******	차*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34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23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2025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천동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내 테니스장 앞
4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1 89	1	900225-*******	이*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35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815	2026-05-21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2588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학로26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내 테니스장 앞
4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05	1	740309-*******	박*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5-09 17:03	50,000	2026-05-12	2026-07-08	10788 35234 798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057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22다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양화한강공원내 어린이놀이터부근 보행로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42	10-28 8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12	1	750113-*******	한*혁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5-05 16:09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718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87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잠실한강공원내 주차케이트 합류지점 안전선내 주변(서울 중하4031) 이륜차
43	10-28 8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14	1	850102-*******	AK****** ******* ******* **CH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9:50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561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220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잠실한강공원내 안내센터 주변(378머 8080)자동차
44	10-28 8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21	1	730514-*******	박*영 조*호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59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692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0907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물놀이장 주변 인도주변(141버1427) 자동차
45	10-28 8706	[서울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23	1	730108-*******	서*영 이*태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5:48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697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54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9 37길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66로2 535)자동차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4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2 28	1	020627-*******	고*무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3:43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566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906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12길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입구주변(067가2877)자동차
4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2 29	1	980406-*******	조*환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3:46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714	2026-05-18	주소 불명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8254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3길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입구주변(서울82메4011)자동차
4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2 30	1	860602-*******	허*민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3:44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719	2026-05-21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41172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50길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입구주변(327오6287)자동차
4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2 32	1	780423-*******	송*혜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7:32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700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1812	경기도의정부시송양로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진입로 주변 도로(40더1605)자동차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5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44	1	860829-*******	윤*름 김*석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10 16:55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705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5366	서울특별시강동구 남로49길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출입구 주변(24우8997)자동차
5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46	1	821020-*******	노*미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10 16:53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691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1812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출입구 주변(105조7586)자동차
5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48	1	810525-*******	WA**** AO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10 17:08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562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4904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53길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출입구 주변(36주3464)자동차
5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2 54	1	790315-*******	이*열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10 17:02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706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8301	서울특별시구로구 로중앙로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출입구 주변(47마08408)자동차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일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5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2 58	1	1101111-*******	㔫****벌-아** 카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25 16:15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563	2026-05-22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19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잠실한강공원내 잠실나들목 주변(179하7197)자동차
5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2 59	1	620404-*******	김*예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27 10:11	50,000	2026-05-13	2026-07-08	10788 35237 689	2026-05-26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557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6114 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안쪽지대(167하5183) 자동차
5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8 87	1	890213-*******	김*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8 22:51	5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15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525	서울특별시 서구혜준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내 서울마리나 입구 보행로
5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8 91	1	830220-*******	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5 14:43	5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91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770	서울특별시 서구강서로17길	6114 357	운영총괄과	강서한강공원내 주차장옆 주변
5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29 00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8 16:38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12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80	경기도 하남시 여말로15번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이벤트광장 주변(크레페)

순번	서목 코드	서목명	적발 년월일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5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07	1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8 16:40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22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527	서울특별시양천로443-32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에트광장 주변(삼겹살)
6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11	1	820613-*******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8 16:42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910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6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갈로42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에벤트광장 주변(김치전)
6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13	1	640619-*******	박*숙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8 16:44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50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44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에벤트광장 주변(타코야끼)
6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15	1	750907-*******	홍*익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8 16:47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919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5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43가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에벤트광장 주변(순대/떡볶이)
6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23	1	010710-*******	위*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8 16:54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74	2026-05-28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화오리감자)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6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24	1	660915-*******	양*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8 16:55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68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69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지하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닭꼬치)
6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35	1	750907-*******	홍*익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6:48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920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가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 (순대/떡볶이)
6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38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6:53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13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 5번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크레페)
6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45	1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6:59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23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5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32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6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51	1	820613-*******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7:04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911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 2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감치전)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6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54	1	640619-*******	박*숙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7:08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51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44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에벤트광장 주변(타코야끼)
7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65	1	850401-*******	방*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7:20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56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738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13다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슬러쉬)
7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66	1	010710-*******	위*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7:21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75	2026-05-28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회오리감자)
7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68	1	620321-*******	송*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7:22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61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5600	서울특별시송파구삼학사로19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타코야끼)
7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29 69	1	721214-*******	한*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7:23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916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8602	서울특별시금천구범안로12가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닭강정)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7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70	1	660915-*******	양*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7:24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352398 69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69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닭꼬치)
7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76	1	601222-*******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09 17:31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352398 79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083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커피/핫도그)
7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89	1	750117-*******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6:50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352398 14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80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 5번길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크레페)
7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98	1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6:55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352398 24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5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43 -32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7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02	1	820613-*******	최*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6:57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352398 12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 2길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감자전)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7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 05	1	640619-*******	박*숙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6:58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52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2944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타코야끼)
8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 07	1	750907-*******	홍*익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6:59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921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359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가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순대/떡볶이)
8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 17	1	850401-*******	방*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7:08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57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7738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13다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슬러쉬)
8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 18	1	010710-*******	위*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7:10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76	2026-05-28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회오리감자)
8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 20	1	620321-*******	송*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7:12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62	2026-05-26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5600	서울특별시송파구삼학사로21 9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타코야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8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21	1	721214-*******	한*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7:13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917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86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길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닭강정)
8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22	1	660915-*******	양*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7:15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70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698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닭꼬치)
8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29	1	601222-*******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5-10 17:22	70,000	2026-05-14	2026-07-08	10788 35239 880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083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커피/핫도그)
8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077	1	110111-*******	주*****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4-18 18:18	50,000	2026-05-15	2026-07-08	10788 35243 107	2026-05-21	주소 불명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6039	서울특별시 남구 남대로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슬로프 주변
8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5	003104	1	710517-*******	이*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5-06 16:33	50,000	2026-05-15	2026-07-08	10788 35243 101	2026-05-28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4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로34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1달빛광장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 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8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31 10	1	971027-*******	박*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05-09 16:11	50,000	2026-05-15	2026-07-08	10788 35243 095	2026-05-27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35311	대전광역시서구가장로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슬로프 주변
9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31 12	1	001028-*******	BU**** **E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5-09 18:57	50,000	2026-05-15	2026-07-08	10788 35243 083	2026-05-21	수취 인불명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03097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4나길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수변무대1 주변
9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31 16	1	010519-*******	조*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5-10 18:44	50,000	2026-05-15	2026-07-08	10788 35243 105	2026-05-29	기타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5002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1달빛광장 주변
9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05	0031 17	1	010820-*******	LY***U Y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5-10 18:50	50,000	2026-05-15	2026-07-08	10788 35243 086	2026-05-27	폐문 부재	제2026-260호	1	2026-06-04	2026-06-11	2026-06-24	1403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6114 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2달빛광장 주변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양천구청장(치수과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양천구청)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36-1, 412-6, 137-9, 412-6, 117-3
 - 면 적: 1,879.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안양천 물결광장 및 수상레저시설 조성
 - 개 요: 계류장 고정시설, 이동식컨테이너(2개소), 고무칩 및 데크포장, 잔디식재 등

5. 점용기간: 2026.6.8.~2031.6.7.

6.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7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연구원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서초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 1168-8, 신천동 247-6 (총 3필지)
 - 면 적: 250m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한반도 활성단층지도 제작 관련 단층 지하구조 조사를 위한 지반조사
 - 내 역: 시추조사 5공(굴착깊이 30m, 굴착지름 76mm)

5. 점용기간: 2026.6.8. ~ 2026.7.8.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0호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00호(2026.5.28.)로 결정·고시된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내용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00호(2026.5.28.)로 결정된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 중 기재 오류에 따른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Ⅱ.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4.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정정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정정 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6	30~44	보조간선	1,600	방학동 (광로17)	신내동시계	일반도로	-	1971.4.7.	-
변경	대로	2	26	30~44 (3)	보조간선	1,600 (103)	방학동 (광로17)	신내동시계	일반도로	-	1971.4.7.	구역 내 확폭

※ ( )는 해당 정비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6	대로 2-26	• 도로 폭원 변경(일부 확폭) -노원로변 3m 확폭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도로 확폭

<정정 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6	30~43	보조간선	9,000	방학동 (광로17)	신내동시계	일반도로	-	건교부 고시 제1971-198호 (1971.4.7.)	-
변경	대로	2	26	30~43 (3)	보조간선	9,000 (103)	방학동 (광로17)	신내동시계	일반도로	-	건교부 고시 제1971-198호 (1971.4.7.)	구역 내 확폭

※ ( )는 해당 정비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6	대로 2-26	• 도로 폭원 변경(일부 확폭) -노원로변 3m 확폭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정정사유 :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90호, 2024.6.13.)」의 (변경)고시 사항에 따라 최종 도시계획시설(대로 2-26)의 기정 결정사항 중 기재 오류에 따른 오기사항을 정정함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15.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정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정정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정정 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6	30~44	보조간선	1,600	방학동 (광로17)	신내동시계	일반도로	-	1971.4.7.	-
변경	대로	2	26	30~44 (3)	보조간선	1,600 (103)	방학동 (광로17)	신내동시계	일반도로	-	1971.4.7.	구역 내 확폭

※ ( )는 해당 정비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6	대로 2-26	• 도로 폭원 변경(일부 확폭) -노원로변 3m 확폭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도로 확폭

<정정 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6	30~43	보조간선	9,000	방학동 (광로17)	신내동시계	일반도로	-	건교부 고시 제1971-198호 (1971.4.7.)	-
변경	대로	2	26	30~43 (3)	보조간선	9,000 (103)	방학동 (광로17)	신내동시계	일반도로	-	건교부 고시 제1971-198호 (1971.4.7.)	구역 내 확폭

※ ( )는 해당 정비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6	대로 2-26	• 도로 폭원 변경(일부 확폭) -노원로변 3m 확폭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정정사유 :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90호, 2024.6.13.)」의 (변경)고시 사항에 따라 최종 도시계획시설(대로 2-26)의 기정 결정사항 중 기재 오류에 따른 오기사항을 정정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생략

Ⅳ. 열람장소 :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02-2133-7144) 및 노원구 재건축사업과(02-2116-391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